2007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Ⅲ)

2007. 10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Ⅱ권)

고 진 화 의원 ····· 1
김 애 실 의원 ····· 15
김 양 수 의원 ····· 41
김 영 주 의원 ····· 55
김 정 훈 의원 ····· 193
김 현 미 의원 ····· 325
박 계 동 의원 ····· 413
박 병 석 의원 ····· 441
박 상 돈 의원 ····· 459
서 혜 석 의원 ····· 623
신 학 용 의원 ····· 651

(Ⅲ권)

이 계 경 의원 ····· 1
이 계 안 의원 ····· 129
이 석 현 의원 ····· 151
이 승 희 의원 ····· 275
이 원 영 의원 ····· 383
정 봉 주 의원 ····· 509
진 수 희 의원 ····· 593
차 명 진 의원 ····· 711
채 일 병 의원 ····· 741
황 우 여 의원 ····· 763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계경 의원	1. 1999년 이후 매년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본점, 지점, 출장소 등) 및 임직원 수 현황	3
	2.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활용도가 낮은 원인과 대책	8
	3. 후면계좌의 규모 및 처리대책	10
	4. 금감원이 제출받은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 발간관련 자료 일체	16
이계안 의원	1. 주요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책정금액 현황	131
	2. (기업)워크아웃 추진 실적, (기업)워크아웃제도의 전망 등	134
이석현 의원	1. '04년~'07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증권회사별 주식위탁수수료율 및 수수료수입 현황	153
	2. '07년 8월말 현재 각 은행별 수수료 현황 - 창구/ATM/폰뱅킹/인터넷뱅킹, 자행/타행, 영업시간/영업외시간 구분(총수입 중 수수료 수입비중)	195
	3. 상호저축은행 관련 - '04년~'07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저축은행별 소액대출 취급현황	196
	4. 방카슈랑스 관련 - 도입경위·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9
	5. '04년~'07년 6월말 현재, 연도별, 금융기관별 유가증권 투자금액 및 투자수익 현황(은행, 보험)	211
	6. '04년~'07년 8월말 현재, 연도별 금융기관별 유가증권 투자금액	242
	7. '07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설치이유, 설치근거, 산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	248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석현 의원	8. 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개요 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개최내역 다. 주요 경쟁국 및 개최 가능성 라. 최근 금융감독 관련 국제회의 개최내역 및 성과	268
	9. 2004~2007년 상반기 현재, 연도별 금융권역별 민원 접수 현황	274
이승희 의원	1.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절차	277
	2. 최근 5년간 외국금융감독기관과의 MOU체결 현황	278
	3. 06년도~07년도 현재까지 금감위에 접수된 민원현황 (이첩·직접조정 등 금감위에서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기준별 건수와 이에 대한 주석)	279
	4. 기 제출한 민원현황 자료와 관련하여, 민원의 접수 방법별 및 권역별 민원처리 현황	280
	5. 조직진단 실적 및 진단결과 반영내용	281
	6.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익 현황	369
	7. 은행의 수수료 수익 현황	373
이원영 의원	1. 국제기구 권고·요청에 의해 작성하는 통계 관련 - 관련근거(내용 포함) - 제출현황(기구명, 통계내용, 요구항목수, 제공항목수, 미제공시 사유 등) - 목록(기구명, 통계명, 작성주기, 최근 제출일자, 미제출 및 공시 사유 등) - 최근 5년간 통계자료 및 외국 주요국가와의 비교자료	385
	2.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평가·권고했던 사항 중 금감위/금감원 소관사항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결과 및 계획 포함) - 평가·권고 사항은 해당내용 전문 첨부	387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원영 의원	3. 외화대출 관련 -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외화대출규모(분기별, 기관별, 화폐별) - 환율변동이 외화대출 등 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 기타 외화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	505
	4.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감원에 보고된 내역 및 조치결과	507
정봉주 의원	1. 은행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성과 및 노력 조치사항 관련 - 금감원 발표 보도자료 - 현재 은행권에서 사회적 책임 제고를 추진 중인 사항	511
진수희 의원	1.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원의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업무 추진 내역 일체 및 상세 현황	595
	2. 대부업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규정	598
	3. 외국인의 매수매도 및 FDI 비율	599
	4. 05년 이후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PF ABS 발행 상세 내역	600
	5.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금감원, 금감위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연도별 정리) - 행정처분 대상, 관련규정, 처분내용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규정	601
	6.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중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대출 종류별 연도별 증감 현황	607
	7. '07년 8월말 현재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대부업체 현황	608
	8. 공인회계사 시험 안내자료	610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차명진 의원	1. 불성실공시법인의 유형, 지정절차, 지정 후 패널티 내용 일체	713
	2. 금융권역별 민원처리 현황(2003~2007년 상반기)	733
	3. 금융권역별 고정이하 여신 현황(2007년 6월말 현재) - 은행, 종금,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금융기관(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734
	4. 보험관련 분쟁현황 및 처리 현황	736
	5. 보험관련 합의권고 현황	736
	6. 금융권역별 고정이하 여신 현황 - 은행, 종금,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738
	7. 금융권역별 민원처리 결과 - 2003~2007 상반기까지 연도별 자료	740
채일병 의원	1. 2002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별 수신 규모 및 금리 변동 현황	743
	2. 2007년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 및 개수	744
	3. 헤지펀드 도입에 관한 감독당국의 입장/의견	745
	4. 신용카드 발급 조건 절차 - 발급신청서 수령 시 발급주체 카드사에서 고지하여야 할 사항 포함 - 발급신청자의 신용상태 파악 의무 여부 포함	746
	5. 외국인 투자자 국내주식 보유 현황	748
	6.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금융감독기관 간 국제공조 현황 -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정보 교환하여 공조한 내용과 근거법 포함	749
	7. 파생상품금융 거래에 관하여 -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	752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채일병 의원	8. 파생상품금융 거래에 관하여 - 그에 관한 리스크 실태 현황 및 점검내용	753
	9. 파생상품 금융 거래에 관하여 -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감독시스템 내용	754
	10. 2000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현황 - 분류기준,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755
	11. 2000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개수 및 M&A 내역	756
	12. 대부업 관련 광고심의기관, 근거규정, 광고부적합 사례(사유포함)	757
	13. 국내은행의 해외진출관련 - 해외진출에 필요한 절차 - 당국의 감독 내역/현황, 진출은행의 애로사항 및 지원 현황 - 현재 국내은행 해외점포수, 증감율, 국가(지역)분포	759
	14. 상호저축은행 관련(2002년 이후) ○ 상호저축은행의 PF 관련 - 연도별 PF여신 규모, 증감율, 전체여신대비 비율 - 각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761
황우여 의원	1.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연도별 외국인 지분율 변동 추이	765
	2.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자산 기준 외국계 은행의 연도별 은행산업 시장점유 추이	766
	3.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시중은행들의 연도별 배당금액, 외국인에 대한 배당액 변동 추이	768
	4. 외국인 투자자 주식보유 비중 추이	776
	5.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율 현황	777
	6. 각 시도별 대부업자 관리 현황(관리부서, 관리자 직급, 관리 인원 등)	778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황우여 의원	7. 금감위의 과징금부과와 관련하여	780
	가. 과징금 부과의 법적근거	
	나. 2004년부터 2007. 8월까지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 등)	
	다. 위 기간동안 금감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현황(제기일시, 제기자, 이의 내지 소송결과 등)	
	8.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은행 등 금융산업에 미치는 효과	788
	9.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금지를 우회하여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89
	10. 자통법 시행 이후 삼성증권이 우리 금융산업을 독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 및 자통법 이후 삼성증권의 금융시장점유율 예상 변동 추이?	790
	11.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791
	가. 금산분리 문제에 관한 금감위의 입장	
	나. 최근 5년간 작성된 금산분리 문제에 관한 내부 또는 외부 용역보고서 목록 일체(작성기관, 제목, 요약된 내용 등 포함)	
	다. 금산분리 관련 법규 일체	

이 계 경 의 원

1. 1999년 이후 매년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본점, 지점, 출장소 등) 및 임직원 수 현황

"붙임1~4 참조"

(붙임1-은행)

(단위:개, 명)

구분		2006년12월	2005년12월	2004년12월	2003년12월	2002년12월	2001년12월	2000년12월	1999년12월
은행 수		18	19	19	19	19	20	22	23
점포 수		7,037	6,681	6,512	6,498	6,429	6,193	6,231	6,374
	국내 지점	6,118	5,799	5,618	5,581	5,561	5,276	5,248	5,268
	국내 출장소	804	769	785	807	764	815	867	957
	해외 지점	67	65	64	67	64	65	70	73
	해외 사무소	19	21	17	16	13	11	12	36
	해외 현지법인	29	27	28	27	27	26	34	40
총 임직원		89,972	89,011	89,960	89,511	88,254	89,731	92,545	97,747

주) 자료출처:은행경영통계(연보)

(붙임2-증권사)

(단위:개, 명)

구분		2007년03월	2006년03월	2005년03월	2004년03월	2003년03월	2002년03월	2001년03월	2000년03월
증권사 수		54	54	57	59	60	61	64	58
점포 수									
	국내지점수	1,522	1,463	1,484	1,600	1,698	1,705	1,795	1,493
	국내영업소(출장소)	63	79	47	74	81	124	0	0
총 임직원		32,512	30,562	30,128	33,333	35,835	36,803	33,745	31,904

주) 결산월 기준

(붙임3-보험사)
가. 생명보험회사

(단위:개,명)

구분	2007년03월	2006년3월	2005년03월	2004년03월	2003년03월	2002년03월	2001년03월	2000년03월
보험회사 수	22	22	23	23	23	23	22	23
점포 수	4,552	4,476	4,579	4,828	5,124	5,602	6,570	7,913
본부	58	57	33	35	34	34	35	34
지점	1,190	922	1,068	707	757	766	591	655
영업소	3,284	3,478	3,475	4,083	4,330	4,788	5,925	7,222
출장소	-	-	3	3	3	14	19	2
해외법인	7	7	-	-	-	-	-	-
해외지점	-	-	-	-	-	-	-	-
해외사무소	13	12	-	-	-	-	-	-
임직원 계	26,899	26,033	25,412	26,172	26,726	28,572	31,845	35,663

나. 손해보험회사

(단위:개,명)

구분	2007년03월	2006년3월	2005년03월	2004년03월	2003년03월	2002년03월	2001년03월	2000년03월
보험회사 수	29	29	28	27	25	23	22	17
점포 수	2,470	2,520	2,555	2,532	2,404	2,606	3,001	3,471
본부	67	67	-	-	-	-	-	-
지점	406	352	327	314	334	356	429	465
보상사무소	221	196	157	208	150	119	110	113
영업소	1,739	1,868	1,868	1,816	1,803	2,003	2,445	2,888
출장소	-	-	195	188	109	121	12	-
해외법인	10	9	8	6	8	7	5	5
해외지점	7	8	-	-	-	-	-	-
해외사무소	20	20	-	-	-	-	-	-
임직원 계	25,865	25,842	22,051	21,222	20,925	21,534	23,125	24,524

주 1) 결산월 기준
2) 본부는 지역본부 및 지역영업부 포함
3) 해외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 설립한 외국에 있는 법인
4) 해외지점은 영업점포
5) 해외사무소는 영업을 하지않는 연락사무소 등

(붙임4-상호저축은행)

	점포수				임직원수		
	본점	지점	출장소	합계	임원*	직원	합계
'98.6.말	230	111	-	341	814	8,534	9,348
'99.6.말	203	105	-	308	676	6,787	7,463
'00.6.말	166	105	-	271	533	5,640	6,173
'01.6.말	125	111	-	236	406	4,758	5,164
'02.6.말	117	109	3	229	362	5,688	6,050
'03.6.말	115	112	4	231	354	5,830	6,184
'04.6.말	114	116	15	245	383	5,742	6,125
'05.6.말	112	120	18	250	387	5,741	6,128
'06.6.말	110	130	23	263	390	5,913	6,303
'07.6.말	109	158	30	297	409	6,663	7,072

* 비상근임원 제외

2.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활용도가 낮은 원인과 대책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활용도가 낮은 원인과 대책>

※ 금융사고피해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으로 변경

1) 운영 현황(등록 건수)

(2006년도)

(단위 : 건)

'06.1월	'06.2월	'06.3월	'06.4월	'06.5월	'06.6월	'06.7월	'06.8월
7	7	13	10	16	9	7	13

'06.9월	'06.10월	'06.11월	'06.12월	계
21	10	10	136	259

(2007년도)

(단위 : 건)

'07.1월	'07.2월	'07.3월	'07.4월	'07.5월	'07.6월	'07.7월	계
683	327	1,255	2,842	4,564	4,101	2,874	16,646

2) 활용도가 낮은 원인과 대책

□ 과거에는 금융감독원에서만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 2006.12월 금융회사(은행 영업점)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라 금년들어 활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3. 휴면계좌의 규모 및 처리대책

□ 세부내용 : 붙임1~4 참조

(붙임1-은행 휴면예금)

□ 은행별 휴면예금 현황(2007년 4월말 기준)

(단위 : 만건, 억원)

금융기관명	계좌수	금액
산 업	6	13
농 협	402	572
신 한	235	455
우 리	188	254
SC제일	313	401
하 나	409	468
기 업	139	188
국 민	500	750
외 환	258	290
한국씨티	138	144
수 협	20	28
대 구	77	106
부 산	45	50
광 주	21	11
전 북	31	45
경 남	43	34
계	2,825	3,809

*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2006. 4. 27. 가동)에 의하여 집계된 2003년 이후 은행의 비활동계좌 중 잡익처리분

** 휴면계좌 정보의 범위는 개인 저축성 및 요구불 예금

*** 전산화 작업 중인 제주은행 제외

□ 처리대책

○ '07.8월 「휴면계좌이체에관한특별법」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재경부 산하에 설립될 예정

(붙임2-비은행 휴면예금)

□ 비은행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현황(2007년 6월말 기준)

(단위: 좌수, 백만원)

구 분		계 좌 수	금 액
종합금융회사		1,157	350
상호저축은행		183,152	5,884
상호금융기관		9,446,957	121,357
	신협	606,787	17,834
	농협	7,406,137	86,786
	수협	1,355,644	16,268
	산림조합	78,389	470

□ 처리대책

○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이 국회를 통과('08.2월 시행)함에 따라 휴면예금 처리를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재경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

(붙임3-증권회사 휴면계좌)

□ 증권회사별 휴면계좌 현황(2007년 6월말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금융기관명	계좌수	금액
유화증권	75,966	500
미래에셋증권	97,753	850
대우증권	637,111	6,998
브릿지증권(7월말 기준)	76,973	553
한누리투자증권	37	0
하나대투증권	88,006	218
한화증권	142,929	1,138
삼성증권	425,705	4,816
한양증권	61,142	417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3,827	-
도이치증권	214	-
크레디 아그리콜 슈브르증권	1	0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138	2
제이피모간증권	158	4
ABN amro 증권	10	0
HSBC 증권	3,616	0
다이와증권	11	0
메릴린치증권	5,114	3
현대증권	1,055,889	3,699
키움	131,344	359
교보증권	249,586	401
한국투자증권	692,615	2,944
NH투자증권	95,992	632
이트레이드증권	3,128	21
부국증권	7,383	64
코리아알비증권중개	991	9

신흥증권	29,403	251
리딩투자증권	845	6
우리투자증권	2,494,603	6,598
SK증권	246,978	1,638
CJ투자증권	706	7
BNG증권중개	361	4
대신증권	423,648	3,347
동양증권	231,006	2,427
메리츠증권	172,125	704
서울증권	62,926	478
푸르덴셜투자증권	35,831	207
동부증권	30,286	219
KGI증권	2,023	16
신영증권	50,951	125
굿모닝신한증권	564,121	2,755
합 계	8,201,452	36,452

* 산출 기준 : 현금 및 유가증권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

** 작성방법 : 각 증권회사가 제출한 자료로 작성(증권검사1국에서 취합)

□ 처리대책

○ 증권업협회에서 증권업계와 공동으로 2003년 1월부터 총 3회에 걸쳐 휴면계좌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붙임4- 보험회사 휴면보험금)

07.3월말 현재 회사별 휴면보험금 현황 및 07.8.3에 휴면보험금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 주요 내용

□ 휴면계좌의 규모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주요 내용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 휴면보험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원권리자의 명의로 개설된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휴면보험금 권리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4. 금감원이 제출받은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 발간관련 자료 일체

□ 붙임 참조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

제1장 보험사기 개요

Ⅰ. 보험사기의 개념
Ⅱ. 보험사기의 특성
Ⅲ. 보험사기의 규모

제2장 보험사기 방지체제

Ⅰ.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Ⅱ.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Ⅲ. 외국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제3장 보험사기 적발현황

Ⅰ. 보험사기 적발현황
Ⅱ.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조치내용
Ⅲ. 보험사기자 혐의자의 성향

제4장 보험사기 조사사례

Ⅰ. 고의 보험사고
Ⅱ. 보험사고 가공
Ⅲ. 피해과장(과다청구)
Ⅳ.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보험계약 조작)
Ⅴ. 운전자 바꿔치기
Ⅵ. 사고차량 바꿔치기
Ⅶ. 기타

(부록)

1. 보험사기 관련법규
2.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

제1장 보험사기 개요

Ⅰ. 보험사기의 개념

1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1. 보험범죄

□ 보험범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하는 인위적인 불법행위를 의미함

> ◇ 보험범죄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로 불법한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를 말함
>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손해보험, 1997, 108면)
>
> ◇ 보험범죄의 본질은 보험계약을 사기적으로 성립시킬 뿐 아니라 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사취하는데 있는 것임
> (月足一淸(이홍무, 이미영 역), 보험과 범죄, 1997, 21면.)

□ 보험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수반됨

- ㅇ 보험에 관련된 주요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 또는 허위진술
- ㅇ 보험혜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망
- ㅇ 다른 사람의 손해 발생

2.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 행위를 말함

- ㅇ 사전적으로는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청구를 제시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청구에 대한 보상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함

□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가 성립되어야 함

○ 따라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산적 이득, 기망행위, 보험업무, 보험관계인, 제3자 등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됨

□ 보험범죄가 구체적인 범법행위로 나타난 결과인 반면에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시의 악의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임

○ 그러나, 보험범죄와 보험사기가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 이익은 보험회사에 의해 지불될 보험금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경성사기와 연성사기

1. 경성사기

□ 경성사기(Hard fraud)는 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재해, 상해, 도난, 방화, 기타 손실을 의도적으로 각색 또는 조작하는 행위를 말함

2. 연성사기

□ 연성사기(Soft fraud)는 기회사기(Opportunity fraud)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를 과장·확대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청구하거나 갱신할 때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낮은 보험료를 낸다던지 거절체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인수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말함

3.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1. 보험의 특성에 기인한 범죄 유발적 요소

□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의 경제력에 비해 보험금액이 고액일 때 발생함

○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고액이라는 점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보험사기에는 위험 보장이라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소멸성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내재하고 있음

○ 이러한 보상적 범죄심리는 죄의식을 약화시켜 모방과 동조의 원인이 됨

□ 또한, 보험계약의 사행성도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요인에 해당함

○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수수하는 가치가 동가교환계약(同價交換契約)임

○ 그러나 보험계약은 적은 보험료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비동가교환계약(非同價交換契約)이라는 사행성을 띠고 있음

○ 따라서 적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고를 조작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려는 유혹이 발생함

2.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보험사기에 대한 관용적 사회 분위기와 이로 인한 경미한 처벌도 보험사기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저지른 보험사기에 대해 사회분위기가 관용적임

○ 저축성 보험료에 비해 소멸성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이라는 잘못된 보상심리로 인해 범죄의식이 적음

Ⅱ. 보험사기의 특성

1 보험사기의 특성

1. 사기피해의 간접성과 광범위성

□ 보험사기는 외견상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됨

○ 따라서, 보험사기의 피해는 많은 사람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음

2. 사기의 복잡성과 다양성

□ 다른 범죄의 결과로서 보험사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 방화와 같은 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띰

○ 또한, 보험은 일상생활 주변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수법이 매우 다양함

3. 입증의 곤란성

□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보험사고를 위장하는 지능적 범죄로써 중대한 과실과 고의의 입증이 어려움

○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한 재산적 이득을 얻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중대한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보험회사가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4. 공범에 의한 범죄

□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주범이 대부분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범행에 능숙한 공범이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보험금청구 절차를 밟음

□ 보험사기는 보험약관이나 계약내용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내부종사자의 묵인, 방조, 공모행위가 많아지고 있음

5. 조직화 및 지능화

□ 최근 보험사기는 폭력조직, 병·의원, 정비업체, 퀵서비스업체 등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불법U턴 등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설탕물을 섭취한 후 당뇨병 진단 받는 등 지능화 경향이 있음

2 보험사기 관련자의 특성

1. 경제적 궁핍

□ 보험사기 관련자는 보편적으로 금전 소유욕이 강한 반면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많음

2. 죄의식 결여

□ 보험사기의 경우는 살인이나 방화 등과 같이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사취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

○ 보험사기를 죄악시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보험사기 관련자의 죄의식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음

3. 범죄행위에 대한 경제적 평가

□ 범죄자가 범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보험료와 범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비교·평가한 후에 범행을 실행함

3 보험사기의 영향(폐해)

1. 인명경시풍조의 조장

□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혈연·지연 등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고의적으로 살상하고 훼손함

○ 돈을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악용하여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불건전한 사고를 사회에 전염시킴으로써 건전한 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음

2. 배금·기회주의자 양산

□ 정당한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하거나 경제적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경제적 횡재를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결국은 타락시킴

3. 보험요율의 인상

□ 보험사기로 인하여 예정된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 보험계약자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함

4. 보험제도 존립기반 약화

□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하여 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 계약인수를 제한하거나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음

○ 이는 일부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대부분 선의의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본질을 흔들어 보험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킴

Ⅲ. 보험사기 규모

1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

□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를 보험금 사기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료사기로 구분하여 FY2004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 및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예방효과 분석(2005년 12월, 보험개발원)

○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규모총액은 1조 6,569억원이며 이중 보험금 사기규모는 1조 3,871억원,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사기 규모는 2,6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총 8,701억원으로 이중 보험금 사기규모는 7,691억원, 보험료 사기규모는 1,010억원이며

○ 생명보험은 총 7,868억원으로 이중 보험금 사기규모는 6,180억원, 보험료 사기규모는 1,688억원으로 나타남

□ 보험금 사기규모가 전체 보장성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며, 보험료 사기규모가 전체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인 것으로 추정됨

보험사기 규모 추정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보험료	1,688	1,010	2,698
보험금	6,180	7,691	13,871
계	7,868	8,701	16,569

2. 외국의 보험사기 규모

□ 미국의 보험사기 규모

○ CAIF(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는 1997년 미국 보험산업 전체의 보험사기 규모를 797억달러로 추정하였음

보험종목	사기금액(억달러)
자동차보험	139
가정종합보험	21
기업성보험	98
건강보험	539
보험전체	797

○ Conning & Co는 2000년에 보험산업 전체의 보험사기 규모를 968억달러로 추정하였음

보험종목	사기금액(억달러)
일반손해보험	200
자동차물적손해담보	30
장애보험	10
건강보험	610
생명보험	118
보험전체	968

□ 유럽의 보험사기 규모

○ 유럽 25개국은 연간 보험사기 규모를 최소 80억유로(연간 보험료의 2%)로 추정하고 있음

-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1999년 영국의 보험사기 규모를 6억 5천만 파운드로 추정하였고
- 독일 보험협회(GDV)는 1997년 연간 보험사기 규모를 25억 유로에서 30억 유로로 추정하였음

□ 호주의 보험사기 규모

○ 호주보험협회(ICA)는 1997년 손해보험 사기규모를 보험료의 6.7%에 해당하는 8억 호주달러로 추정하였음

(단위 : 백만 호주달러)

보험종목	보험료(A)	사기규모(B)	비율(B/A)
기업성 보험	1,967	39.3	2%
주택보험	2,352	117.6	5%
자동차책임보험	1,525	30.5	2%
영업용자동차보험	902	36.1	4%
개인자동차보험	2,952	236.2	8%
선박보험	195	13.6	7%
적하보험	175	3.5	2%
상해질병보험	252	2.5	1%
여행보험	163	3.3	2%
산재보험	1,451	319.2	22%
합계	11,934	801.8	6.7%

제2장 보험사기 방지체제

Ⅰ.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1 보험사기 담당조직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담당부서인 보험조사실을 2001년 12월부터 설치하여 보험회사 등의 인지보고, 보험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취득한 보험사기 혐의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2007년 4월 보험조사실 내에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기능과 공보험 및 유사보험 등과의 공동조사 기능을 강화하였음

* 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조사대상, 자료제출 요구권 등은 보험업법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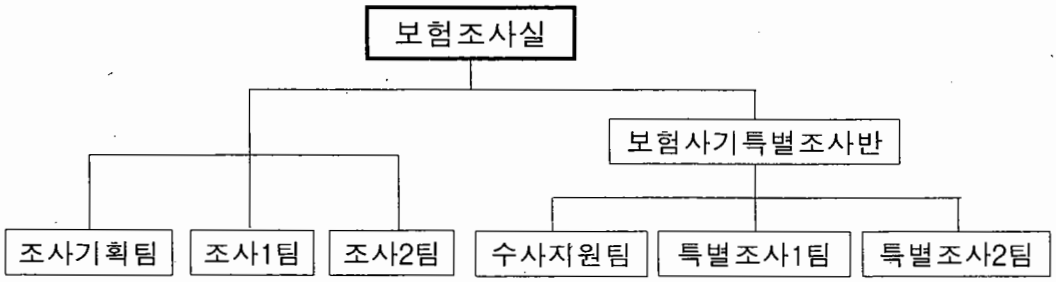

□ 연혁

○ 1999년 1월 : 보험사기 담당부서인 조사3국 신설

○ 1999년 6월 : 조사3국 폐지, 보험감독국 제도개선팀에서 조사업무 수행

○ 2001년 4월 : 보험검사국내에 보험사기 담당 조직인 보험조사팀 신설

○ 2001년 12월 : 보험조사팀에서 보험조사실(보험조사1팀·2팀)로 확대

○ 2003년 2월 : 보험조사실을 확대(조사기획팀, 조사1팀·2팀) 개편

○ 2007년 4월 : 보험조사실내에 보험사기특별조사반(3개팀 구성) 설치

2 보험사기 방지업무 현황

□ 기획 및 상시조사 실시

○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문제분야(손해율 불량지역, 문제 병·의원, 내부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함

○ 보험회사의 실시간(Real-Time) 인지보고와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일반인이 제보한 제반 혐의정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함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과거 조사자의 직관, 경험 등에 의존한 수작업의 조사방법을 탈피하고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로 관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기초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프로그램의 일부 오류 및 시스템의 처리속도 저하 등의 문제 해결과 신종 보험사기 유형 등 시스템 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Best Practice) 운영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을 위한 체제를 마련·운영토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을 제고하기 위함

○ 동 모범규준은 보험사기방지의 기본전략, 보험사기방지체제, 보험사기의 예방 및 조사, 보험사기 조사의 지원 등 4개 분야 16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사기 방지실태를 경영실태평가 제도에 반영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부문에 추가하여 평가함

※ 평가내용
- 보험사기전략 수립여부, 경영진의 보험사기방지업무에 대한 추진의지 및 보험사기방지를 고려한 경영정책 시행 여부 등
-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제도의 마련 여부
- 보험사기방지업무의 수행을 위한 제도의 작동상태 및 보험사기조사전담조직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 보험범죄신고센터 운영

○ 일반인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및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보험조사실 및 4개 지원에 설치함

○ 전화,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인터넷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Link) 화면을 설치하였음

○ 또한,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포상금 제도
-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또는 경감, 환수)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 적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보험사기방지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실시

○ 일반인들의 인식제고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하철 광고, 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실시함으로써 보험사기의 정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험사기 방지의 필요성 및 보험사기 신고요령 등을 안내함

○ 계약인수, 보상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 담당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업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 워크샵 및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함

3 보험사기인지시스템

1. 개요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조사자의 직관, 경험 등에 의존한 수작업의 조사방법을 탈피하고,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임

2. 주요 기능

□ 혐의자선정 기능

○ 보험계약의 과다여부, 보험금 지급 및 회수, 사고유형, 사고 발생률 등 228개의 지표(FI : Fraud Indicators)를 개인, 설계사, 병원, 정비업체, 대리점 등 5개의 혐의 주체별로 점수화하여 특정 보험사기 혐의자를 선정해 내는 기능

□ 연계분석 기능

○ 주 혐의자를 중심으로 가해·피해운전자, 설계사·계약자, 피보험자·계약자, 피보험자·보험금수익자 관계 등 혐의자간의 관계와 이들의 보험사기혐의점수를 보여줌으로써 조사대상 혐의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

□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정형 보고서)

○ 관련자를 혐의그룹 메뉴에 등록하면 개인별 혐의점수·사고내역·보험계약·보험금지급·치료내역·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이를 엑셀 형태로 변환하여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 통계분석 기능(비정형 보고서)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되어있는 기초자료(보험계약·사고 자료)를 조사자가 원하는 항목만을 추출하여 비정형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 연계분석(Visualinks)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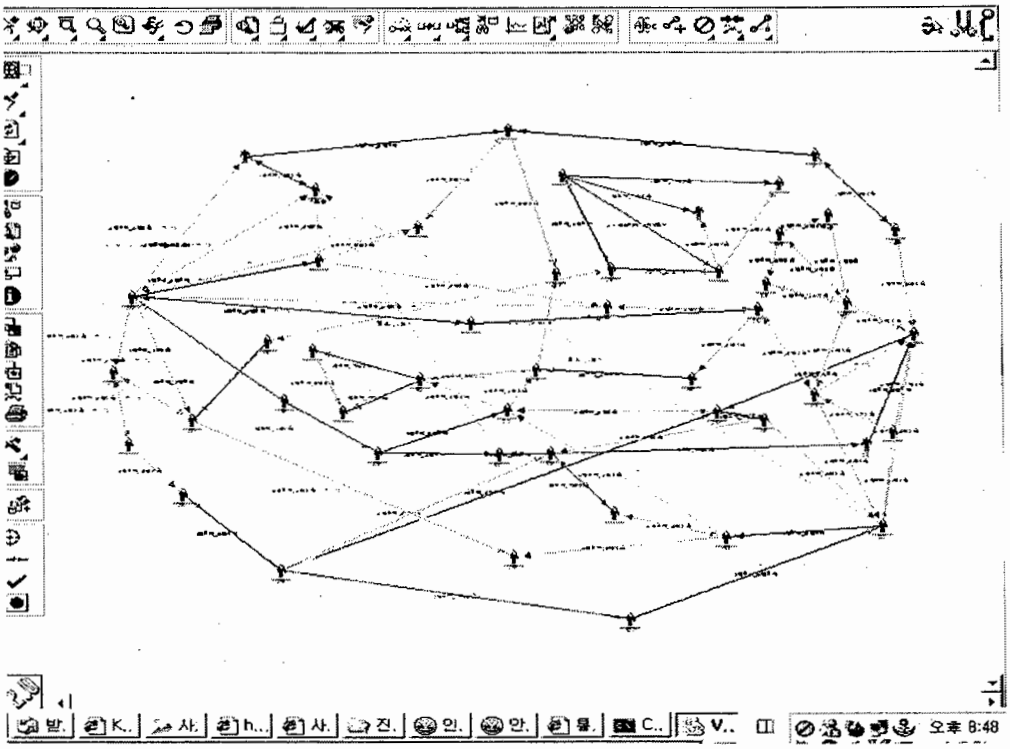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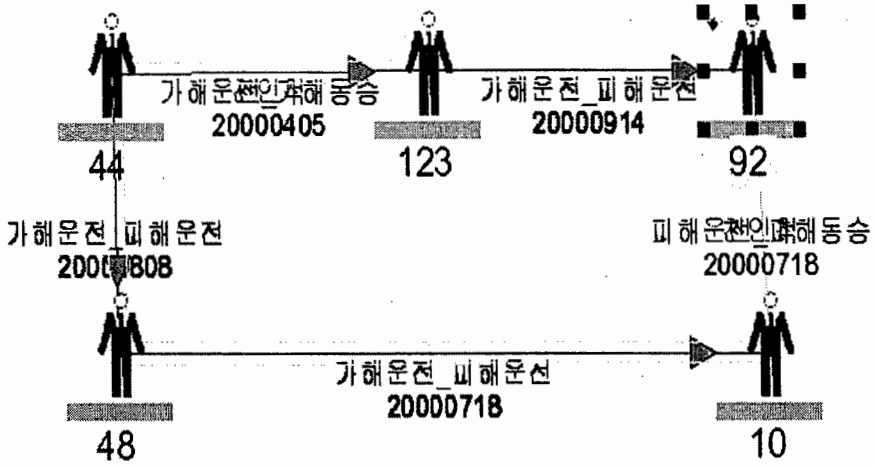

Ⅱ.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1 보험사기 담당조직

1. 손해보험업계

□ 손해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담당조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상당수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독립적인 보험사기 담당조직을 구축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업계와 체계적인 공조를 유도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보험업무부에 보험범죄대책팀을 신설하였고,

○ 현재는 2006년에 설치된 공익사업부의 보험범죄조사팀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삼성화재(1996년), 현대해상(1997년), 동부화재(1998년)등이 1990년대 후반부터 보험사기 담당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 현재 11개사가 독립적인 담당조직을 운영하고 3개사는 보험관련 부서에 조사담당 직원을 배치하는 등 14개사가 보험사기 담당조직을 운영 중임

손보업계 보험사기 담당조직 현황

회사명	조직명	인원	개 요
손보협회	공익사업부	13명	'00년 3월, 보험범죄대책팀 신설 '02년 1월, 보험범죄방지센터로 확대 '06년 5월, 공익사업부 설치
메리츠화재	SIU부	19명	'97년 1월, 교통사고연구실 발족 '03년 4월, 보상본부 내 SIU실 설치 '06년10월, SIU부로 개편

회사명	조직명	인원	개 요
한화손해	SIU팀	13명	'04년 9월, CS지원팀 내 SIU팀 설치
대한화재	특별조사팀	8명	'03년 5월, 보상지원팀 내 특별조사팀 신설 '07년 3월, 보상서비스팀 내 특별조사팀으로 개편
그린화재	SIU팀	8명	보상지원부 내 보험범죄조사반(SIU) 설치
흥국쌍용	특수조사팀	11명	'02년 10월, 자동차보상지원팀 내 특수조사팀 신설
제일화재	SIU팀	13명	'03년 5월, 보상지원부 내 SIU팀으로 신설
삼성화재	특수조사파트	48명	'96년 5월, 보상기획팀 내 '보상조정' 파트 설립 '01년 3월, 송무부 내 'SIU'로 확대 개편 '02년 1월, 보상전략부 내 'SIU'로 소속 변경 '03년 4월, 부서단위 특수조사팀 발족
현대해상	보험조사부	35명	'97년 3월, 보상안심팀 출범 '99년 7월, 보상지원팀 '02년 4월, SIU팀으로 명칭변경 '05년 4월, 독립부서인 보험조사부로 확대 개편
LIG손해	SIU팀	27명	'01년 4월, SIU팀 신설(화재사고 조사 중심) '04년 2월, 자동차사고 조사요원(13명) SIU팀 통합
동부화재	SIU파트	32명	'98년 10월, 보험사고 전문조사팀 신설 '05년 4월, 보상서비스실 SIU 부서로 개편
교보차	특수조사팀	9명	'02년 10월, 보상지원팀 SIU파트 '04년 1월, 특수조사팀으로 승격
AHA	-	2명	손해사정부에 보험사기 담당직원 배치
교원나라	-	1명	보상지원팀에 보험사기 담당직원 배치
다음 다이렉트	-	1명	보상지원팀에 보험사기 담당직원 배치

2. 생명보험업계

□ 손해보험업계와는 달리 생명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담당조직이 200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보험사기 담당조직이 강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2002년 업계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보험리스크관리실내에 보험사기방지팀을 신설하였으며,

○ 2006년 계약관리지원부내에 보험범죄방지팀으로 개편하였음

□ 생명보험회사는 2002년 삼성생명이 SIU를 설치한 이후 대한생명(2003년), 교보생명(2004년)등이 보험사기 담당조직을 설치하였음

○ 2004년 이후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담당직원을 보험금심사 부서에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보험사기 담당조직을 독립부서로 승격시킴

생보업계 보험사기 담당조직 현황

회사명	조직명	인원	개 요
생보협회	보험범죄방지팀	3명	'02년 1월, 보험리스크관리실 내 보험사기방지팀 신설 '06년 3월, 계약관리지원부 내 보험범죄방지팀으로 변경
대한생명	SIU	5명	'03년 7월, 보험심사팀 내 SIU팀 설치
알리안츠	SIU	5명	'07년 1월, 보험심사부 내 SIU 팀 설치
삼성생명	SIU	26명	'02년 10월 SIU 설치 '05년 1월 독립부서로 승격
교보생명	SIU	25명	'04년 4월 보험금 심사팀 내 SIU파트 신설 '06년 1월 지역주재 제도 시행 '06년 5월 SIU부로 확대 개편
금호생명	-	2명	보험조사팀 내 SIU 담당직원 배치
신한생명	-	3명	언더라이팅부 계약조사팀에 SIU 담당직원 배치
미래에셋	-	2명	보험심사팀에 SIU 담당직원 배치
동부생명	-	2명	보험심사팀에 SIU 담당직원 배치
동양생명	-	3명	계약조사파트에 SIU 담당직원 배치
흥국생명	-	2명	U/C부에 SIU 담당직원 배치

2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1. 현 황

□ 현재 보험업계에는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등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보험사기 관련 전산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음

○ 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는 회원사의 전산시스템에 집적된 관련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보험사고정보집중시스템, 보험범죄유의자 검색시스템,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자의 과거 청구내역,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거나 조사과정이나 조사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일부 대형사들은 자체 보험정보를 이용하여 혐의자 추출, 사기유형 분석 등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2. 보험개발원 : 보험사고정보집중시스템(ICPS :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사고정보를 집적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고정보시스템을 2001년 6월부터 운영 중임

○ 동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과거보험금 청구실적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상세한 계층도와 계보도가 자동으로 추출되어 보험사기 관련자의 파악이 가능함

□ 집적정보

○ 생명보험 : 생명보험 사고정보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장기손해보험·상해보험 사고정보

3. 생·손보협회

(1) 손해보험협회 : 보험범죄유의자 검색시스템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On-Line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범죄유의자검색시스템을 200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동 시스템은 데이터 축적 방식이 아닌 전용 통신망을 통해 회원사 전산망에 축적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임

□ 조회가능정보 : 자동차보험 사고정보, 장기·일반상해·개인연금보험 계약 및 사고정보

□ 조회화면

○ 개괄조회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고운전자, 보험수익자의 보험 계약사항, 피해자의 사고사항을 개괄적으로 조회

○ 상세조회 : 개괄조회 화면상의 특정 계약 및 사고자료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조회

○ 연계조회 : 보험사고 관련자와 연계가 있는 모든 사고정보를 조회

(2) 생명보험협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생보사의 보험계약 관련정보를 집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2007년 8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있음

○ 이는 전용통신망을 통해 회원사 전산망에 축적된 정보를 조회하는 현재의 보험범죄유의자검색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든 보험계약 정보를 집적하는 통합DB를 협회에 구축, 필요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임

□ 동 시스템의 구축으로 현행 시스템의 빈번한 오류와 장애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함

4. 손해보험회사

(1) 메리츠 화재 : SIU 조사관리시스템

□ 조사의뢰 건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를 관리하고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 시스템의 주요 기능

- ㅇ 조사 대상건의 정보 및 진행사항, 결과 관리
- ㅇ 조사적발자의 D/B 구축
- ㅇ 조사적발자의 D/B 활용
  - · 보험금지급 심사 시 전산화면에 보험사고 고위험자로 표기되어 정밀조사 대상으로 자동 분류
  - ·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고위험자로 분류되어 인수거절체로 관리

(2) 현대해상 : 신기간계 A-CAPS 조사업무

□ 조사과정에 대한 관리 및 보험사기 건과 관련한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 시스템의 주요 기능

- ㅇ 자체 적발 보험사기건 내역 조회
- ㅇ 보험사기 혐의자 인적사항 조회 및 언더라이팅 반영
- ㅇ 보험사기 혐의자 사고발생시 자동경고
- ㅇ 사고건별 적발금액 및 누적금액 통계 추출
- ㅇ 전문조사요원별 누적 적발금액 및 건수 통계 추출
- ㅇ 제보자(조사의뢰자) 및 제보내용(조사의뢰 내용) 조회
- ㅇ 건별 조사과정 조회
- ㅇ 공동조사 간사 및 비간사 금액 및 건수 통계 추출

(3) LIG 손보 : 신정보 보험사기 전산시스템

□ 조사과정에 대한 관리 및 보험사기 건과 관련한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 시스템의 주요 기능

○ 보험사기 유의자 조회
○ 유관업체 불법행위 정보 조회
○ 사기유형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성별, 수사관서별 등 조회 가능

(4) 동부화재 : e-claim SIU지원 시스템

□ 조사과정에 대한 관리 및 보험사기 건과 관련한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 시스템의 주요 기능

○ 보험사기 관련 제보 현황
○ 보험사기 관련 혐의자 이력 조회
○ 보험사기 관련 조사자료 조회 및 통계 추출

(5) 삼성화재 : SI(Special Investigation)시스템

□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Moral사고 인지 및 사고·보상 경력 조사, 특수조사팀 조사의뢰, 조사결과 회신 업무를 전산화한 시스템

○ Moral사고 조기경보 시스템
: 사고접수, 일보시점에서 Moral사고 개연성이 있는 관련자를 시스템으로 자동 체크하여 통보하는 시스템

○ 사고·보상경력조회 시스템
: 사고 관련자에 대한 "자동차보상", "장기보상", "융자", "계약"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

○ 특수조사업무시스템
: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고의 조사·적발 업무를 위한 보험범죄 대응 시스템

5. 생명보험회사

(1) 대한생명 : 보험사기인지시스템(FDS)

□ 사고보험금 청구 즉시 당사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자동검색하여 현지 텔러 및 사고보험금 심사담당자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케 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 시스템 주요 기능

○ 사고보험금 접수 즉시 지급여부 판단자료 제공
- 계약 및 사고 통계자료 산출(정형분석)
- 보험사기지표에 의한 혐의정도 Scoring 및 유의 등급화
- 사고자 인적정보 제공 및 타사정보 조회시스템과 연계

○ 보험사기혐의자 선정 및 분석
- 기 처리데이터 대상 비정형 조건부여에 의한 혐의자 선정
- 개인별, 가족별, 모집인별, 의사별, 의료기관별 혐의대상자 선정

(2) 알리안츠생명 : 보험사기 혐의자 및 사고 유의자 관리(조회) 시스템

□ 내, 외부에서 수집(금융감독원 자료 제출대상자, 자체 일반 조사건 진행 중 보험사기 유의자로 분류된 건 등)된 역선택 유의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

○ 금융감독원, 생보협회, 경찰서, 동업사 협조 공문에서 수집된 보험사기 혐의자 및 보험사기 조사 대상자 정보를 보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 정보를 집적

□ 시스템의 주요 기능

○ 보험사기유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사기여부 판단 및 사고 조회
○ 보험사기 유의자가 보험금 청구시 접수 단계의 전산 화면에서 한 번에 인지 할 수 있는 팝업창 발생
○ 신계약 심사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여 역선택 유입 방지

(3) 삼성생명

【보험사기 연계분석 시스템】

□ 보험사기 관련 Factor간 연계성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 시스템의 주요 기능

- ㅇ 데이터 통합 및 정제
- ㅇ 혐의자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연관도 분석
- ㅇ 혐의그룹을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네트워크분석
- ㅇ 혐의자에 대한 차트분석(평행좌표차트, 이벤트차트 등)

【보험사기방지 시스템】

□ 보험금 청구건의 RISK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스코어화 하여 사기징후를 자동 검출하고 심사자의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시스템

□ 시스템의 주요 기능

ㅇ 사기유형의 조기발견과 보험금 지급심사시 각종 정보 및 통계제공

ㅇ 사기인지 모델 생성

- · 보험금 청구 시 사기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Indicator를 도출
- · 사기방지를 위한 Rule과 Score를 이용하여 사기징후 감지 건을 자동으로 검출

※ 사기방지 모델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능이 저하될 경우 모델 갱신여부등을 결정

ㅇ 사기징후 조기경보

- · 다양한 유형의 사기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지하여 미연에 방지
- · 병원 및 수진자의 과거이력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사기징후의 점수화

ㅇ 비정형 사기징후 분석

- · 보험금 청구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획조사에 활용
- · 병원 및 피보험자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정형 통계분석

(4) 교보생명 : SIU관리시스템

□ 보험사기조사 완결 및 진행 자료 등 관련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보험사기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 조사원들이 사건 조사시 획득하게 되는 보험사기 관련 인명, 범죄사실 등을 입력하여 데이터화

※ 향후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험하는 성격임

Ⅲ. 외국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1 국제기구

1. IAIF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Fraud Agencies, 국제보험사기방지협의회)

□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기관·정부·보험업계 관계자의 훈련·교육 증진 등을 목적으로 1985년 미국 및 캐나다의 주 감독당국들이 설립함

□ 현재 28개국의 정부 또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제 조직화 되어가고 있음

□ 매년 총회를 개최하여 IAIFA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대책 등과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보험사기현황 및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함

2 미국

1. 보험사기 담당조직

□ 보험사기방지국(IFB)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기구와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 보험사기방지협회(CAIF)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기구가 있음

(1) 정부기구

□ 보험사기조사국(IFB : Insurance Fraud Bureau)

- ○ 1990년대 이후 주 보험법에 의해 보험청 또는 검찰청에 설치되었으며 조직 및 운영체계는 각 주 마다 상이함
- ○ 경찰·검찰·연방수사국 등과 공조하여 보험사기행위의 방지, 보험금 부정청구의 방지 및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법집행기관임 (보험사기 조사권 및 현행범 체포 등 수사권 보유)

- 메사추세츠주, 텍사스주, 뉴욕주 등은 주 보험감독청에 소재하면서 주 검찰당국으로부터 검사를 일정기간 파견 받거나 담당검사를 지정받음
- 커네티컷 주, 테네시 주 등은 보험사기조사국이 검찰당국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법처리의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함
- 뉴저지 주에서는 보험사기검찰국(Office of the Insurance Fraud Prosecutor)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민간조직

□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 :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 1992년 보험사기와 자동차절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조직임
- 미전역을 3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중부(시카고), 서부(LA), 동부(애틀란타)에 지역본부를 두고 각 지역본부 산하에 일선사무소(Field Office)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FBI, 검찰, 경찰, 소방당국 및 보험사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전직 FBI 및 경찰 수사요원 출신을 포함하는 전문직원이 사법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조사를 실시함

○ 보험사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특히 다수 보험회사가 관련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함

○ 보험사기 방지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함
- 홍보용 비디오·포스터·팜플렛 제작 배포, 각종 연수(기초, 고급과정, 인터넷 통신교육과정 등)를 실시하고 있음

□ 보험사기방지연합회(CAIF : 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

○ 공적인 정보유통 및 보험사기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하고 보험사기를 연방범죄로 규정하는 연방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건강보험사기방지연합회(NHCAA : 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

○ 건강보험 보험사기조사 및 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참고 : 미국 뉴욕주의 보험사기 조사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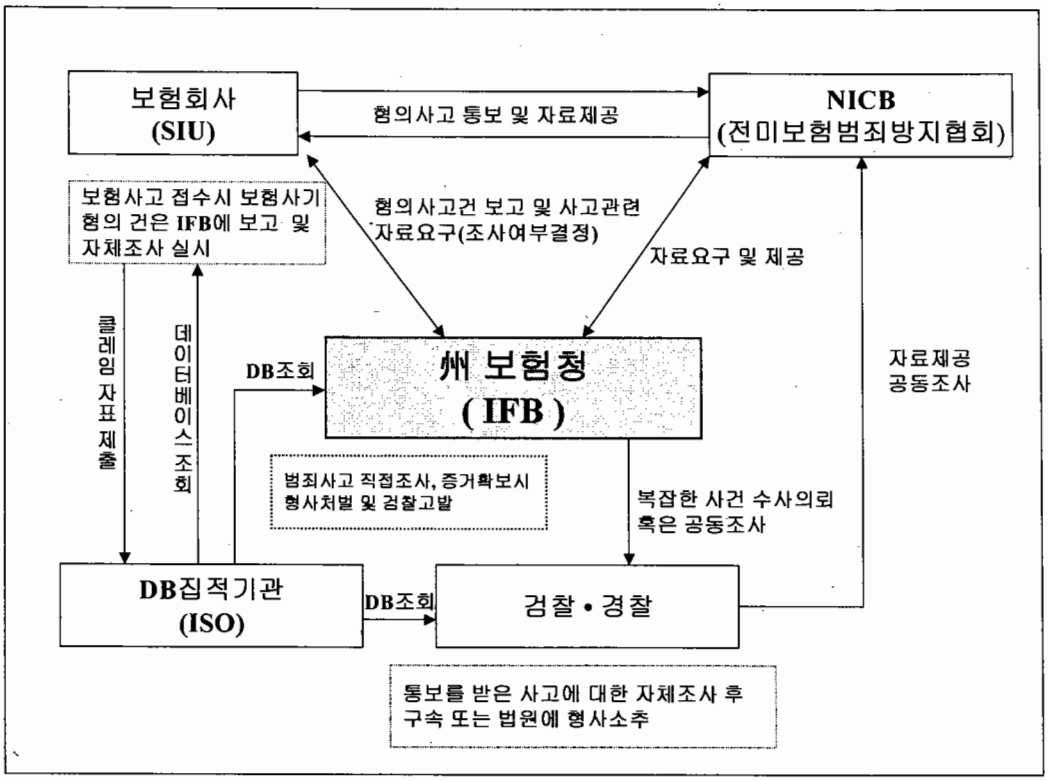

2. 보험사기 관련 법령

□ 1994년 종합범죄통제법률의 일부로 연방보험사기방지법(the 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제정하였고 주 별로 독자적인 보험사기 방지법이 있거나 보험업법 또는 형법 내에 보험사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률들의 기초가 된 것은 CAIF(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등 보험관련 단체들에 의해 제정된 보험사기모델법(Model Insurance Fraud Act)들임

○ 각 모델법은 보험금 사기를 중죄로 처벌할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CAIF 모델법은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벌칙을 등급화하고 있는 반면, NAIC 모델법은 금액에 관계없이 중죄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1) CAIF 모델 보험사기방지법(Model Insurance Fraud Act)

□ CAIF 모델법은 다른 모델법에 비해 보험사기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음

○ 즉, 사기적인 보험행위 또는 불법적인 보험행위로 정의되는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모두 수반하고 있음

□ CAIF의 모델보험사기방지법은 크게 11개의 Section으로 구분함

○ Sec.1은 용어 정의

○ Sec.2는 사기적인 보험행위(Fraudulent Insurance Act)

> · 사기적인 보험행위는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에 의해 행해진 행위를 말함
> · 사기적인 행위에는 피보험자, 청구인 등에 의한 청구사기(claims fraud), 신청사기(application fraud)가 포함되며, 별도로 보험업자에 의한 사기를 다루고 있는 규정도 포함

○ Sec.3은 불법적인 보험행위(Unlawful Insurance Act)

> · 불법적인 보험행위는 신뢰를 유도할 목적을 가진 행위가 허용된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에 의해 행해진 행위를 말함
> · 사기적인 보험행위와 달리 편취의 목적이 요구되지는 않음

○ Sec.4는 형사처벌(Criminal Penalties)규정

> · 형사처벌은 단지 사기적인 보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처벌의 정도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는데 편취한 금액과 이전에 사기로 인해 선고받은 유죄평결을 근거로 하여 증가함
> · 사기적 보험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사기에 대한 기존의 형사처벌을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음

○ Sec.5는 배상규정

○ Sec.6과 Sec.7은 행정상의 처벌규정과 민사상 구제수단

○ Sec.8은 구제수단의 배타성

○ Sec.9는 보험업자에 대한 협력의무

○ Sec.10은 정보공개에 대한 면책규정

○ Sec.11은 법률상의 요건

(2) NAIC의 보험사기방지모델법(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 보험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의 개연성에 대하여 주지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중지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법률의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전체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Sec.1과 Sec.2는 동 모델법의 목적과 사용용어에 대한 정의

· 조사관(Commissioner)
  : 조사관과 그의 위임을 받아 감독하는 자 및 주(州) 보험청
· 보험사기행위(Fraudulent Insurance Act)
  : 그릇된 중요정보를 사기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제공하는 자 또는 숨기는 자에 의해 행해지는 작위 또는 부작위
  -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또는 제출토록 하는 행위
  - 계약당시 지급불능상태에서 행한 권유 또는 승낙행위
  - 보험자의 자산이나 기록을 제거·은폐·변경·파괴하는 행위
  - 보험자의 재산을 착복·횡령·절도하는 행위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불법적 영업행위
  -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공조, 교사 및 공모

○ Sec.3은 사기적인 보험행위, 의도적인 조사의 방해 그리고 중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의 보험업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

· 보험사기행위 금지
· 이 법률에 의한 규정의 시행이나 보험사기의 혐의자 또는 이 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를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 중범죄(부정행위 또는 배임 포함)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보험업계 종사금지
·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사기 또는 배임과 관련하여 중죄의 유죄평결을 받은 자로 하여금 보험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

○ Sec.4는 보험청구서와 신청서에 사기경고문을 게재하도록 요구

○ Sec.5는 보험사기방지위원의 조사권한

· 위원은 혐의가 있는 사기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
· 위원은 이 법의 위반에 대한 기소를 함에 있어서 원조하거나 소추하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할당된 기금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이 법에 확인된 바와 같이 보험사기방지시행의 목적상 기소권한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Sec.6은 사기적인 보험행위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

· 보험사기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보험업계종사자의 조사관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 보험업계종사자 이외의 보험사기행위를 탐지하고 있는 자의 조사관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 Sec.7은 정보제공에 따른 민사상 책임의 면책

○ Sec.8은 조사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밀성 유지

○ Sec.9는 보험사기부의 창설과 목적

· 보험사기조사부서를 주(州)보험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업무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많은 자를 감독·조사 전문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 보험사기조사부서의 업무
  -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업무의 수행
  -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나 민원 처리
  - 보험사기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 및 보험사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연구
· 보험사기조사부서의 권한
  - 기록 및 증거의 검열, 복사, 수집
  - 소환장의 송달
  - 각서나 증언의 관리
  - 법집행기관과 기록 및 증거의 공유
  - 수색영장 및 체포영장의 집행
  - 이 법에 의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현행범)의 무영장 체포권
  - 형사상 기소권
  - 정보 입수지가 주내(州內)가 아닐 경우에도 당해 주의 공공기관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조사토록 할 수 있으며, 他州로부터 수사의뢰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사업무 수행 가능

○ Sec.10은 다른 법집행기관 또는 규제권한

○ Sec.11은 보험업자가 사기방지를 주도하도록 규정

○ Sec.12는 보험사기방지위원의 규제권한

○ Sec.13은 동 모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

·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조치를 받거나 각각의 위법행위마다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 조치는 청문절차를 거쳐 조사관의 명령에 의해 취해 짐
  - 조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을 요구할 수 있음
· 보험사기범이나 조사방해자 또는 중범죄자가 보험업에 종사한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고 추가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도 지게 됨
(원상회복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닌 부가적 벌칙임)
· 전항에 의거 벌칙을 받은 자는 보험업에 종사할 수 없음

(3) 미연방보험사기방지법

□ 1994년 종합범죄통제법률(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의 일부로서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함

○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기금을 횡령·절취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개인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 18 U.S.C. Ch.47 Sec.1033
  -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범죄
  -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금이나 기타 다른 자산을 침해하는 범죄
  - 보험조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사기(dishonesty) 혹은 배임(breach of trust)과 관련하여 형사상 중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업 종사의 금지
· 18 U.S.C. Sec.1034
  - 전항인 Sec. 1033 위반에 대한 민사상 처벌과 금지명령을 규정

(4) 각 주별 보험사기방지법

□ 미국 45개주에서 보험사기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보유하고 있음

- ㅇ 오레곤주와 버몬트주는 보험사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ㅇ 알라바마, 콜로라도, 미시시피, 오클라호마는 산업재해보험의 보험사기만을 중죄로 인정함
- ㅇ 로드아일랜드주는 차량도난을 포함하는 사기성클레임을 중죄로 간주함
- ㅇ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아이오밍주는 방화사건 및 개인이 산재보험클레임을 허위로 청구할 때만 중죄로 처벌함

□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또는 벌금의 형태로 변상함

□ 보험사기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 외에 별도의 민사상 또는 행정상 벌금을 부과하는 주도 33개주가 있음

- ㅇ 대부분의 주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험사기에 대해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행정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함
- ㅇ 아리조나, 아이다호, 노스다코다는 산재보험료사기의 경우에 민사상 벌금을 부과함
- ㅇ 캘리포니아, 루지애나, 버몬트, 워싱턴은 산재보험금사기에 한해서 형사상 처벌 외에 민사 및 행정적 벌금을 부과함

3.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1) FAMS(Fraud and Abuse Management System, 의료비 사기 및 과잉청구 관리시스템)

□ 뉴욕주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Empire사가 사용하는 의료비 사기 및 과다청구 적발을 위한 전산시스템

- ㅇ 20명 이상의 의료전문가가 지금까지 활용했던 900여개의 행동패턴에 기초하여 의료비 사기 혐의지수를 산정하여 의료기관별 점수를 산정함

(2) Spyder

□ 텍사스주에서 사용하는 의료보험 사기적발을 위한 시스템

- ㅇ 보험회사나 정부의 의료보험관련 사기 및 과다청구 여부를 분석하거나 추적함
- ㅇ 보상담당자의 검토 및 분석을 돕기 위한 사기위험점수를 생산하며 사기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reason codes)를 제시함

(3) VeriComp

□ 유타주에서 산재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 ㅇ 각 사고건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백개의 Factor를 이용하여 혐의가 짙은 사고를 추출하는 인공 신경망 모델임
- ㅇ 사기혐의 점수를 0 ~ 1,000점까지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 경우 설명을 제공하여 손해사정인 및 조사원에게 편의를 제공함

3 영국

1. 보험사기 담당조직

□ 정부차원의 보험사기 방지관련 법과 전담조직은 없으며 민간조직 중심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음

- ㅇ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금융범죄 업무를 담당하지만 자금세탁이나 내부자거래를 중점으로 조사함

(1) 범죄사기방지국(CFPB : Crime & Fraud Prevention Bureau)

□ 영국보험자협회(ABI)에 설치된 조직으로 경찰과 민간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추구하는 조정기구임

- ㅇ 경찰, 보험사 등 유관기간 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보험범죄 조사 및 보험범죄신고센터 운영하며 정부보유 보험범죄관련 정보 조회 및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음

(2) 보험사기국(IFB : Insurance Fraud Bureau)

□ 보험업계가 주도하여 설립한 보험사기 조사기구로서 주요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크책임자들이 업무를 주도하며, 보험사 분담금으로 운영경비 조달함

○ 보험업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보험회사, 경찰, 사법당국 간 조사작업 연계 및 조정과 보험사기 제보센터(Fraud Cheatline)를 운영함

(3) CUE(Claims & Underwriting Exchange)

□ 보험회사들과 보험협회가 공동으로 1994년에 설립함

○ 주택·가계보험·개인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DB화하여 회원사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2. 보험사기 관련 법령

□ 형사법 안에는 보험사기가 없으며 사기 또는 배임(dishonesty)으로 처벌함

○ Theft Act 1968하의 사기에 의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가 보험사기에 가장 근접함

3. 보험사기방지 관련 전산시스템(보험사기방지시스템)

□ 영국보험자협회(ABI :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내의 보험사기방지국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Intelligence Database : 보험사기로 판정받은 사람의 상세정보를 보유함

□ Alerting System : 경찰 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가 있거나 보험사기로 밝혀진 사람의 명세를 배포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음

4 프랑스

1. 보험사기 담당조직

□ 보험사기방지국(ALFA : Agence pour la Lutte contre la Fraude a l'Assurance)

○ 보험사기로 인한 화재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자 1989년 보험사기방지를 위하여 보험회사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임

○ 보험사기 조사, 보험회사 간 정보교환, 정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보험사기 관련 법령

□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형법 제313-1조(사기죄)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음

○ 사기죄를 범한 자는 5년 징역 또는 37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5 독일

1. 보험사기 담당조직

□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보험사기 전담조직이 없이 경찰이나 검찰이 담당하고 있음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하여 보험협회내에 중앙데이터뱅크를 설치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음

2. 보험사기 관련 법령

□ 형법 제265조(보험남용죄)에 의거 보험사기를 경죄로 취급함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파괴, 그 사용을 침해·제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교부한 자는 그 행위가 제263조에 의한 형벌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 사기적 행위를 제외한 보험금 지급목적의 다른 범죄(살인, 방화, 상해 등)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 처벌함

○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별도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본 규정은 형법 제263조의 사기죄와 보충적 관계에 있음

○ 보험남용죄는 사기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보험사기를 이미 사기의 이전 단계에서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

6 이탈리아

1. 보험사기 담당조직

(1) ISVAP(Istituto per la Vigilanza sulle Assicurazioni private e di Interesse Collettivo)

□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일상적인 현장감사를 위한 현장감사팀(on-site inspection unit)을 두고 보험사기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직접 조사는 하지 않으며 보험사들의 보험 관련(보험사기 포함) ISVAP 의무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함

○ ISVAP는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등의 수사요원과 업무를 공조함

(2) ANIA(Associazione Nazion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 이탈리아 보험자협회 산하기구로 운송, 건강, 화재보험 등 모든 보험분야의 회원사들이 참여하여 1985년 설립한 기구임

□ 주요 기능

○ 비정상적인 보험사고에 대한 정보입수, 비정상적인 보험금 청구내용의 분석 및 데이터 축적

○ 보험범죄와 관련한 예방 및 억제활동에 있어서 사법기관과의 협조

○ 보험사의 보험범죄 예방활동의 지원 및 공조체제 구축

○ 국내· 외적으로 도난차량에 대한 회수 정보 제공

○ 사기예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토론

□ 보험사기 등 특수분야 담당 부서(Aree Speciali)의 기능

○ 허위청구자 DB 제공

○ 도난기록 보관 및 제공

○ 자동차 차대기록 보관 및 제공

○ 기존조직과 관계당국과의 연계유지 등

2. 보험사기 관련법령

□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형법전 제2장 사기관련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수수은닉죄 등)의 제642조(사기를 통해 사유물이나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음

· 형법 제642(자기물건의 사기적 손괴 및 자기신체의 사기적 손상)

-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상해보험금을 타기위해, 소유물을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은닉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2백만 리라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동일한 목적으로 자해하거나 손상을 악화시키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함
- 동일 유형 범죄로 유죄를 받은 자가 그렇게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됨
- 이 조항의 규정은 (이탈리아)관할영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탈리아 보험회사가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라도 적용됨

7 기타 국가

1. 일본

□ 일본의 경우 보험사기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은 없으며 보험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조직도 없음

○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경찰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적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협회 차원의 방지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지역별로 '손해보험방범대책협의회', '생보·경찰 연락협의회'를 설치하여 보험회사와 경찰청과의 정보교환·공동조사 등 업무공조 관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 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중국

□ 1997년 형사법 각칙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에 관한 규정」들 중「제4절 금융관리질서파괴죄」와「제5절 금융사기죄」의 하나로써 183조와 198조에 보험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 중국 형사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자 각각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보험금액의 규모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며,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함

3. 오스트리아

□ 형법 제6장(타인의 재산에 대한 가벌적 행위, Strafbare Handlungen gegen fremdes Vermögen)에 재물손괴, 절도, 횡령, 사기 등의 규정과 함께 보험의 악용에 관한 규정을 둠

○ 보험범죄가 다른 형벌법규(사기, 살인, 상해 등)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처벌함

○ 자발적인 중지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어 보험범죄의 자발적인 중단을 유도함으로써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있음

제3장 보험사기 적발현황

Ⅰ. 보험사기 적발현황

1 보험사기 적발건수 및 금액

□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및 수사당국과의 협조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동안 보험사기 적발실적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연평균 44.7%가 증가하여 2004년 16,513건에서 2006년에는 34,567건에 이르렀으며, 관련금액은 전년대비 연평균 38.9%가 증가하여 2004년 1,290억원에서 2006년에는 2,490억원에 이르렀음

□ 반면,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인 피해금액은 2004년 368억원에서 2005년 477억원으로 전년대비 29.7%(109억원)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437억원으로 전년대비 22.7%(40억원) 감소하였음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적발건수(A)	16,513	23,607	43.0	34,567	46.4
관련금액(B)	129,039	180,198	39.6	248,995	38.2
건당금액(B/A)	7.8	7.6	△2.6	7.2	△5.3
피해금액	36,779	47,718	29.7	43,697	△22.7

적발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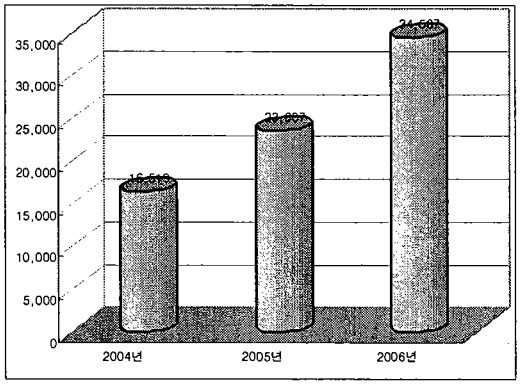

관련금액 및 피해금액(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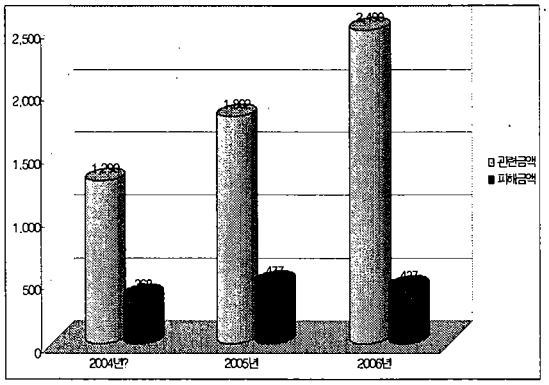

2 사기 유형별 현황

1. 유형별 적발건수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중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은 운전자 바꿔치기이며, 사고후 피해과장이 그 뒤를 따름

- ○ 운전자 바꿔치기는 전체적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30.5%에서 2005년 26.4%, 2006년 26.1%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반면에 사고 후 피해과장의 비중은 2004년 16.9%에서 2005년에는 20.1%, 2006년에는 2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 2004년에는 고의보험사고가 13.3%로 보험사고 가공(5.1%)보다 높았으나 2005년부터 보험사고 가공의 비중(15.6%)이 고의 보험사고의 비중(9.5%)보다 높아짐

유형별 적발건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율	2006년	증감율
고의 보험사고	2,203(13.3)	2,231(9.5)	1.3	2,704(7.8)	21.2
보험사고 가공	849(5.1)	3,686(15.6)	334.2	4,660(13.5)	26.4
사고 후 피해과장	2,789(16.9)	4,742(20.1)	70.0	8,464(24.5)	78.5
사고 후 보험가입	1,449(8.8)	2,018(8.5)	39.3	3,382(9.8)	67.6
운전자 바꿔치기	5,029(30.5)	6,240(26.4)	24.1	9,015(26.1)	44.5
사고차량 바꿔치기	979(5.9)	1,256(5.3)	28.3	1,979(5.7)	57.6
기 타	3,215(19.5)	3,434(14.5)	6.8	4,363(12.6)	27.1
합 계	16,513(100.0)	23,607(100.0)	43.0	34,567(100.0)	46.4

주) ( )는 구성비

유형별 적발건수 현황(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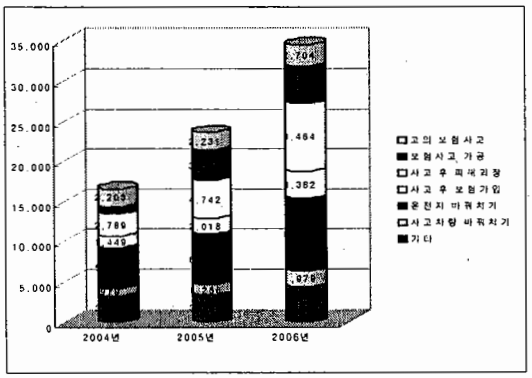

유형별 적발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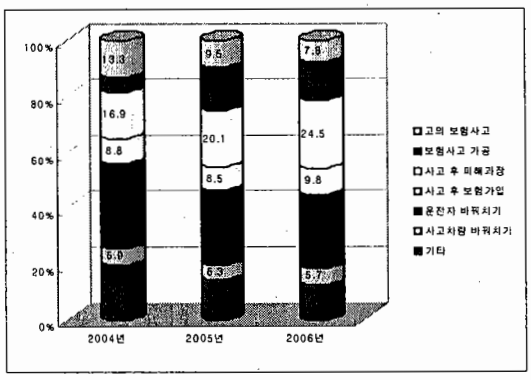

2. 유형별 관련금액

□ 전체 보험사기 관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유형은 2004년에는 25%(322억원)를 차지한 고의 보험사고였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사고 후 피해과장이 각각 22.9%(412억원)와 32.0%(798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사고 후 피해과장의 비중은 2004년 22.7%, 2005년 22.9%에서 2006년 3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고의보험사고는 2004년 25.0%에서 2005년 16.6%로 크게 감소한 후 2006년에는 14.5%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유형별 관련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고의 보험사고	32,227(25.0)	29,849(16.6)	△7.5	36,045(14.5)	20.8
보험사고 가공	15,984(12.3)	29,337(16.3)	84.6	35,371(14.2)	20.6
사고 후 피해과장	29,254(22.7)	41,186(22.9)	40.8	79,799(32.0)	93.8
사고 후 보험가입	12,294(9.5)	18,285(10.1)	48.7	20,303(8.2)	11.0
운전자 바꿔치기	20,432(15.8)	28,224(15.7)	38.1	42,195(16.9)	49.5
사고차량 바꿔치기	5,080(3.9)	6,344(3.5)	24.9	8,310(3.3)	31.0
기 타	13,808(10.7)	26,973(15.0)	95.3	26,970(10.8)	-
합 계	129,039(100.0)	180,198(100.0)	39.6	248,994(100.0)	38.2

주) ( )는 구성비

유형별 관련금액 현황(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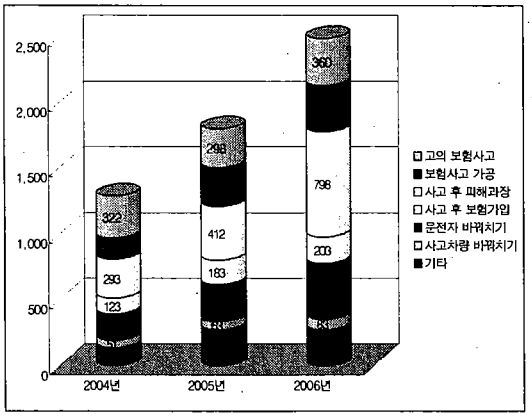

유형별 관련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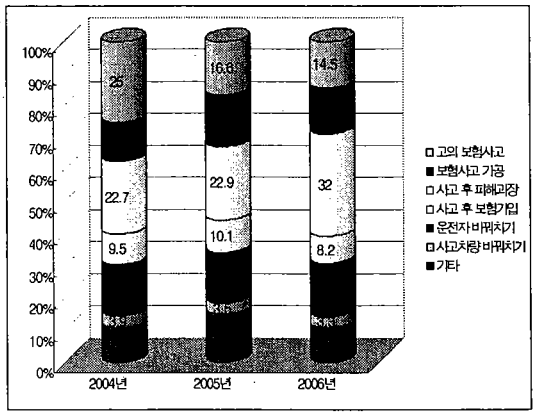

3 생·손보사별 현황

□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구분하여 보면 손해보험사의 적발실적이 생명보험사의 실적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으나 생명보험사의 적발실적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적발실적 중 생명보험사의 적발건수는 2004년 5.3%에서 2006년 13.6%로, 관련금액은 2004년 20.5%에서 2006년 24.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 손해보험의 경우는 적발건수가 2004년 94.7%에서 2006년 86.4%, 관련금액은 2004년 79.5%에서 2006년 75.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생·손보사별 보험사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율	2006년	증감율
생명보험	적발건수	869(5.3)	1,630(6.9)	87.6	4,704(13.6)	188.6
	관련금액	26,492(20.5)	34,751(19.3)	31.2	61,242(24.6)	76.2
	건당금액	30.5	21.3	△30.2	13.0	△39.0
	피해금액	5,930(161.1)	9,869(20.7)	66.4	9,661(22.1)	△2.1
손해보험	적발건수	15,644(94.7)	21,977(93.1)	40.5	29,863(86.4)	35.9
	관련금액	102,547(79.5)	145,447(80.7)	41.8	187,752(75.4)	29.1
	건당금액	6.6	6.6	-	6.3	△4.5
	피해금액	30,849(83.9)	37,849(79.3)	22.7	34,036(77.9)	△10.1

주) ( )는 구성비

생·손보사별 보험사기 적발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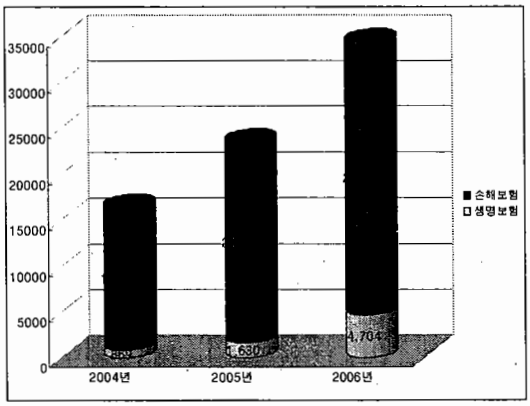

생·손보사별 관련금액 및 피해금액 현황(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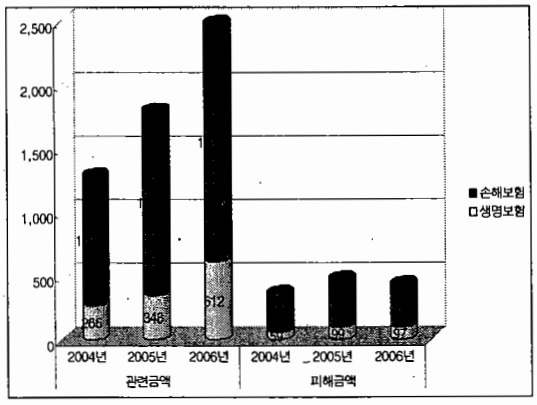

Ⅱ.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조치내용

1 사법처리 현황

□ 보험사기 혐의자는 2004년 5,470명에서 2005년 6,203명으로 전년대비 13.4%(733명)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비 36.5%(2,261명)가 증가한 8,46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적발된 혐의자가 기소되는 비중이 2004년 67.8%에서 2006년 81.1%로 13.3%p 높아졌으며

○ 반면에 기소유예 등의 비율은 2004년 20.1%에서 2006년 5.4%로 14.7%p 감소하였음

사법처리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기 소	3,709(67.8)	4,777(77.0)	28.8	6,858(81.1)	43.6
수 배	461(8.4)	325(5.2)	△29.5	594(7.0)	82.8
수 사 중	104(1.9)	478(7.7)	359.6	274(3.2)	△42.7
기소유예 등	1,097(20.1)	438(7.1)	△60.1	456(5.4)	4.1
기 타	99(1.8)	185(3.0)	86.9	282(3.3)	52.4
합 계	5,470(100.0)	6,203(100.0)	13.4	8,464(100.0)	36.5

주) ( )는 구성비

사법처리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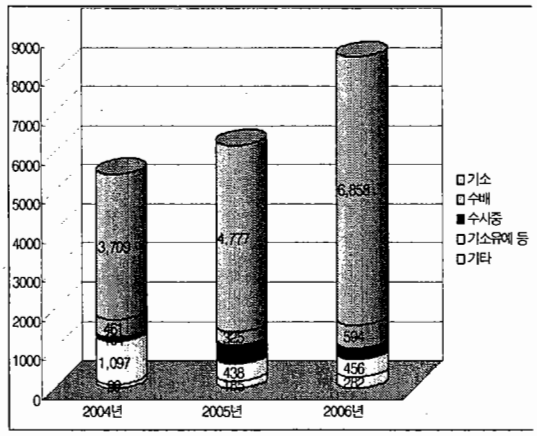

사법처리 현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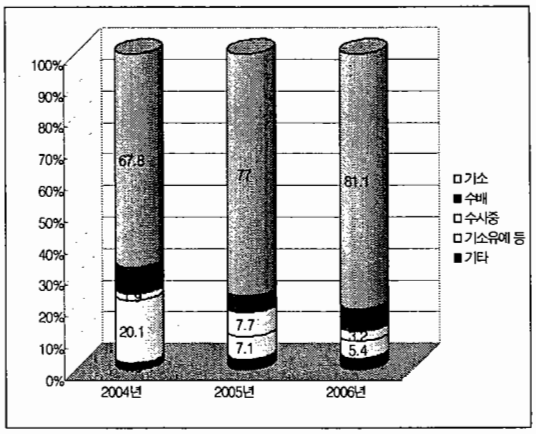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 방지 및 회수현황

□ 2005년에 적발된 보험사기와 관련된 금액(1,802억원) 중 82.8%인 1,492억원을 지급방지 및 회수하였으며 2006년에는 관련금액(2,490억원)의 87.2%인 2,171억원을 지급방지 및 회수하여 지급방지 및 회수율이 전년보다 4.4%p 증가하였음

○ 청구된 보험금에 대해서 사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지급을 방지한 지급방지율은 2005년 73.5%(1,325억원)에서 2006년 82.5%(2,053억원)으로 9.0%p 증가하였으나

○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지급된 피해금액 중 회수금액의 비율은 2005년 34.9%(167억원)에서 2006년 27.0%(118억원)로 7.9%p 감소하였음

적발금액 중 지급방지 및 회수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년	2006년	
			증감율
관련금액(A)	180,198	248,995	38.2
지급방지금액*(B) (지급방지율, B/A)	132,480 (73.5)	205,298 (82.5)	55.0
피해금액**(C)	47,718	43,697	△8.4
회수금액***(D) (회수율, D/C)	16,674 (34.9)	11,814 (27.0)	△29.1
지급방지 및 회수금액(B+D) (지급방지 및 회수율, (B+D)/A)	149,154 (82.8)	217,112 (87.2)	45.6

* 지급방지금액 :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왔으나 보험사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

** 피해금액 : 보험사기 혐의건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험금

*** 회수금액 : 피해금액 중 회수한 금액

Ⅲ. 보험사기 혐의자의 성향

1 연령별·성별 현황

1. 연령별 현황

□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의 연령대는 주로 20대와 30대이며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대가 2004년 41.5%(2,272명)에서 2005년 42.3%(2,623명), 2006년 47.1%(3,983명)로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30대는 2004년 21.8%, 2005년 25.8%, 2006년 25.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10대	456(8.3)	198(3.2)	△56.6	451(5.3)	127.8
20대	2,272(41.5)	2,623(42.3)	15.4	3,983(47.1)	51.8
30대	1,194(21.8)	1,598(25.8)	33.8	2,116(25.0)	32.4
40대	1,037(19.0)	1,177(19.0)	13.5	1,324(15.6)	12.5
50대	366(6.7)	480(7.7)	31.1	482(5.7)	0.4
60대	145(2.7)	127(2.0)	△12.4	108(1.3)	△15.0
합계	5,470(100.0)	6,203(100.0)	13.4	8,464(100.0)	36.5

주) ( )는 구성비임

연령별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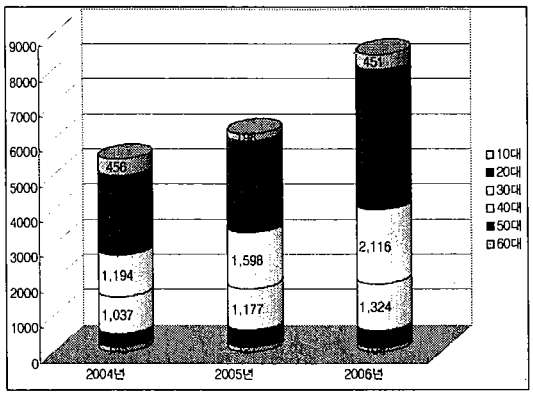

연령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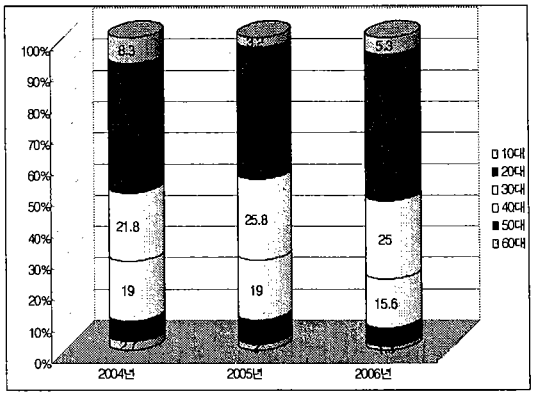

2. 성별현황

□ 보험사기 혐의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2004년 80.9%, 2005년 79.2%, 2006년 82.2%를 차지하고 있음

성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남 성	4,425(80.9)	4,910(79.2)	11.0	6,958(82.2)	41.7
여 성	1,045(19.1)	1,293(20.8)	23.7	1,506(17.8)	16.5
합 계	5,470(100.0)	6,203(100.0)	13.4	8,464(100.0)	36.5

주) ( )는 구성비

성별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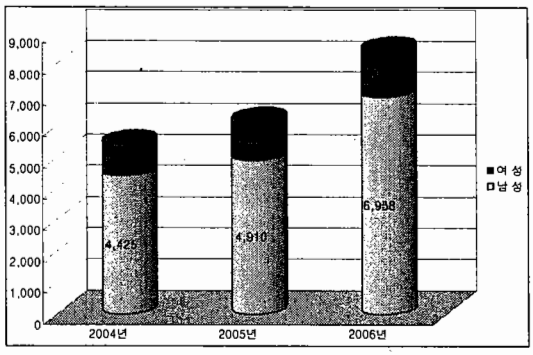

성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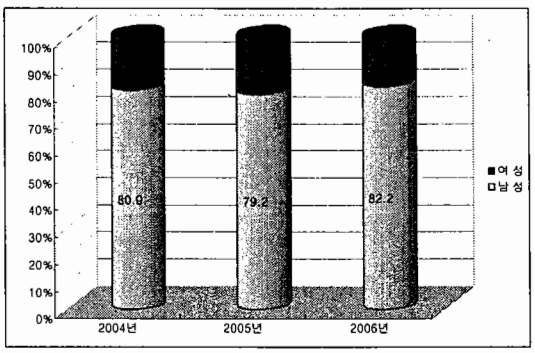

2 직업별 현황

□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 등 직업이 불분명한 경우가 가장 많고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의 순임

○ 무직 등 직업이 불분명한 경우가 전체 혐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44.8%에서 2005년 55.7%, 2006년 6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 반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의 비중은 각각 2004년 18.6%와 12.2%에서 2006년 12.8%와 6.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설계사	59(1.1)	116(1.9)	96.6	70(0.8)	△39.7
대리점	10(0.2)	35(0.6)	250.0	7(0.1)	△80.0
보험사직원	8(0.1)	8(0.1)	-	3(0.1)	△62.5
유흥업소 종사자	105(1.9)	109(1.8)	3.8	312(3.7)	186.2
자영업	669(12.2)	490 7.9)	△26.8	508(6.0)	3.7
운수업 종사자	261(4.8)	297(4.8)	13.8	282(3.3)	△5.1
봉급 생활자	1,018(18.6)	698(11.3)	△31.4	1,085(12.8)	55.4
학생	223(4.1)	165(2.7)	△26.0	193(2.3)	17.0
무직(파악불가 등 포함)	3,117(44.8)	3,460(55.7)	11.0	5,345(63.1)	54.5
의료업계 종사자	-	340(5.5)	-	471(5.6)	38.5
차량정비업체 종사자	-	485(7.8)	-	188(2.2)	△61.2
합 계	5,470(100.0)	6,203(100.0)	13.4	8,464(100.0)	36.5

주) ( )는 구성비

직업별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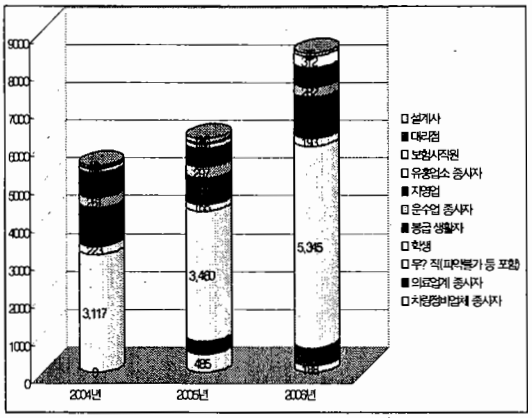

직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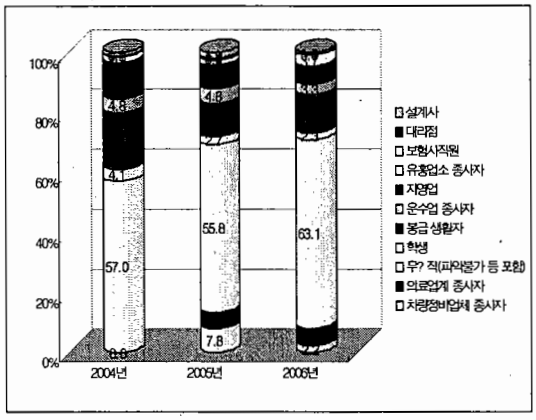

제4장 보험사기 조사사례

Ⅰ. 고의 보험사고

【사례1】

◇ 2006년 3월 종교인(대처승)인 혐의자 박OO는 전북 완주의 OO산 부근에서 도로 갓길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킴

○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3개 보험사로부터 200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함

○ 사고현장에서 119로 신고하여 응급차량으로 후송되었으며 불경 모서리 부분에 혈흔을 묻혀 놓고 입원병원을 안과전문병원으로 정하는 등 보험사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대로 행동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사고일로부터 불과 3일전 영업소로 피의자가 직접 전화하여 일반인들은 잘 가입하지 않는 자손확장담보 보상한도를 최고 2억원으로 가입함

□ 혐의자가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차량 전면 유리창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파손됨

○ 과거 다수의 사고경력이 있고 본인 및 자녀의 장기보험금 수령사실이 수회 있음

조사 내용 및 결과

□ 최초 조사 시에는 눈 부위의 부상경위를 유리창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함

○ 유리창 파손형태가 눈꺼풀만을 부상하기 불가능한 형태라고 설명하자 불경 모서리에 부상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등 정확한 진술을 회피함

□ 안과장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검사를 하였으나 혐의자가 허위로 증상을 호소하여 입증이 불가능 함

□ 혐의자는 브로커를 통해 치료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57백만원을 수령함

□ 혐의자가 주로 거처하는 암자부근에서 사복차림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조사자가 목격하고 수사의뢰한 결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을 밝혀냄

· 혐의자 중 1명 구속, 1명 불구속
· 관련금액 : 200백만원

시 사 점

□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보험범죄의 경우 보험사의 조사에 대비하여 목격자 확보, 경찰 및 119 신고 등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므로 눈에 보이는 증거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며

○ 보험계약을 자진청약 한 사고 건은 고의사고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사례2】

◇ 2003년 1월 새벽 2시경 경기도 OO시 소재 섬유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함

- ㅇ 현장조사, 주변조사, 관련자 진술 등에서 방화 혐의를 포착하여 진정, 고소, 항고 등 형사적 대응을 하였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부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림

◇ 민사 재판부에서는 고의사고를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국내최초)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발화장소가 명확한 발화원이 없이 여러 곳으로 추정되어짐

□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화재발생 후 행적이 의심스러움

□ 섬유공장의 영업이 부진한 상태임

□ 화재발생 직전 심한 개 짖는 소리, 새로 구입한 컴퓨터가 화재발생 직전 다른 장소에 옮겨진 점 등 방황로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이 있었음

조사 내용 및 결과(민사 재판부가 방화를 인정한 사유)

□ 영업부진으로 인한 심각한 재무상태

- ㅇ 27개의 기계중 7~8대만 주간 가동했고, 미수금의 회수도 부진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
- ㅇ 8.5억의 채무에 대해 매월 7~8백만원의 이자가 지출되고 있었으며 매달 도래하는 만기어음 약 1억원이었고 종업원 급여가 미지급 상태인 반면, 월 매출액은 6~7천만원 정도임

□ 계약자의 도덕성 의심

- ㅇ 어려운 회사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직전 고가의 TV 구입하고 과다하게 허위로 작성된 건물공사견적서를 제출함

□ 번복 혹은 엇갈린 진술

- ㅇ 혐의자가 화재 상황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다르게 진술함
- ㅇ 화재발생 당시 계약 관련자들의 핸드폰 통화 사실에 대한 진술이 다름
- ㅇ 계약 관련자가 화재보험가입 사실의 인지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

□ 의심스러운 행적과 태도

- ㅇ 화재발생 후 귀국한 혐의자가 사고현장에 곧바로 가지 않음
- ㅇ 계약 관련자들의 화재현장 도착 경위와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목격한 경위가 다름
- ㅇ 화재발생 전날 회식을 실시하고 공장내부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퇴근하라고 지시함

□ 계약자의 방심

- ㅇ 평소 다니던 술집에서 혐의자는 불을 질렀는데 보험금 지급시기가 지연되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함

□ 기타

- ㅇ 주변에 거주자하는 목격자가 화재발생 1시간 전 개가 심하게 짖었다고 진술함
- ㅇ 성명미상인으로부터 혐의자가 사주한 방화라는 제보 전화가 있었음
- ㅇ 화재직전에 구입한 신형 컴퓨터가 화재발생이후 옮긴 공장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던 사실

· 관련금액 : 833백만원

시 사 점

□ 증거주의인 형사적 시각에서 인정받지 못한 방화의 정황에 대해 민사 재판부가 "계약자 고의사고"를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례.

□ 사고발생 직후 신속한 사고현장 1차 조사에서 얻은 다수의 증거가 민사 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침

【사례3】

◇ 혐의자 김OO은 2004년 2월 자가용을 운전하여 부산시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바퀴가 건널목 밑으로 빠지자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다가오는 통일호 열차를 피하다가 기차레일에 오른쪽 다리를 절단 당함

◇ 2005년 5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관과 함께 사고경위에 대한 현장조사 후 동일 건널목에서 달리는 열차에 좌측 발목을 2차 고의로 절단한 뒤 8개 보험사에게 12억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함

○ 혐의자는 보험사의 사고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차 사고발생 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 1차 사고가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자 자신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2차로 발목을 절단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혐의자는 운수사업 실패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도 다수의 보험을 계약하였음

□ 1차 사고의 경우 혐의자가 주장하는 사고상황과 상해부위 및 정도가 맞지 않고, 열차 기관사가 승용차량은 발견하였으나 혐의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보험사로 하여금 정확한 사고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고발생 7개월 경과하여 보험금 청구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사고상황을 재현해 본 결과 상해부위와 사고 상황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고 상황과 부상내용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상황과 사고로 인한 상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음

□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혐의자가 극구 부인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됨

□ 이후 민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면책 판결 받음

· 관련금액 : 1,200백만원

시 사 점

□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자의 자백이 없고 고의사고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하였으나 보험사가 자체 조사한 정황증거를 가지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고의사고임을 입증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면책 판결을 받아낸 사례임

【사례4】

◇ 혐의자 허OO은 2002년 12월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여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는 도중 산에서 넘어지면서 굴러온 바윗돌이 자신의 손등을 덮쳐 오른손의 첫째에서 넷째 손가락을 부상당함

○ 병원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 후 장해급여금으로 138백원을 청구하고 이중 44백만원을 지급받음

○ 조사과정에서 고향마을 뒤 야산에서 둔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손가락을 손상시키고 사고에 의한 재해로 위장한 사실이 적발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혐의자 허OO은 산에서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부상했다고 주장하나 손가락 이외의 부분에는 부상이 없었던 점.

□ 손가락 절단술을 한 병원의 수술 전 X-선 사진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가 혐의자의 진술과 일치 하지 않은 점

□ 혐의자가 1차 손가락 절단 수술 후 재 절단 수술을 받은 것은 더 많은 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조사 내용 및 결과

□ 혐의자 면담 및 사고의 경위를 자세히 진술 받고 현장을 답사하여 사고 장소를 비디오로 촬영함

□ 최초 응급치료병원 및 손가락 절단술 시행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법의학 감정을 의뢰함

□ 관할 경찰서에 위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의뢰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됨

□ 민사 소송을 통해 항소하여 전부 승소함

· 관련금액 : 94백만원

시 사 점

□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단독 자해사고 일지라도 혐의자의 진술내용 및 진료기록 확보,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정황증거를 충분히 확보 하는 등 초기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함

Ⅱ. 보험사고 가공

【사례 1】

◇ 중장비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이OO등 혐의자들은 외제덤프트럭 및 중장비의 부품단가가 비싸다는 점을 악용하여

○ 외제트럭을 수리하면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리비청구서에 차량의 고장정도를 부풀리고 부품사용 갯수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12개 보험사로부터 총 270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 혐의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후 견인차량까지 불러 견인하는 등 보험사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가해차량(소형승용)의 파손은 경미한 반면 피해차량(외제트럭)의 수리비가 40백만원 이상 소요

□ 가해차량의 충돌부위가 예리하지 않고 약간 뭉툭한 형태로

○ 주행 중에 충돌한 것이 아니고, 서행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접촉한 형태로 추측됨

□ 가·피해차량 운전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화물트럭 운수업에 종사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협의자인 중장비정비업체 사장으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견인기사가 현장을 찾지 못하자 중장비 사장이 정확하게 현장을 다시 알려줬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조사자는 사고가 사전에 공모되었음을 확신함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정비공장 사장,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등의 핸드폰 통화내역 및 발신자 위치를 확인한 결과

○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수차례 통화한 사실과 사고발생 당시 이미 한 장소에 모여 있었음을 확인함

□ 정비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결과 정비공장에서 2003년 1월부터 조직적으로 보험사고를 가공하거나, 부품 등을 부풀려 허위청구한 사실을 적발함

- 협의자 중 1명 구속, 5명 불구속
- 관련금액 : 390백만원

시 사 점

□ 보험사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사고를 야기하고 견인기사를 불러 사고를 목격하게 하는 등 보험범죄가 갈수록 계획적이고 치밀해지고 있음

□ 고가 부품의 경우 부품공급업체와 공조하여 부품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한 후 차량수리에 실제로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사례2】

◇ 2005년 7월경 건설회사 OO의 대표인 혐의자 강OO은 고가의 외제승용차(BMW)를 도난당했다고 신고 후 보험금 75백만원을 청구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혐의자 강OO은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활동 경험이 있음

○ 혐의자가 도난신고 접수 후 지역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험사에 빠른 지급을 강요함

□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에 비해 차량이 고급임

□ 도난 시간이 주간이고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에서 도난당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혐의자는 2005년 7월 전주 소재의 중고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고가의 외제 승용차(BMW)를 구입

○ 혐의자는 대포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 하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에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험료를 책정함

○ 혐의자는 지방세 등이 미납된 상태로 차량 소유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차량소유주가 ㈜OO캐피탈로 등록)에서 보험에 가입함

□ 도난차량과 같은 고가의 외제 차량은 구입 시에 차량열쇠가 2개 지급되며 차량열쇠 분실 시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열쇠가 새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조사자는 도난 시 열쇠를 소지한 자가 차량을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 혐의자를 상대로 차량 구입 시 차량 열쇠를 몇 개 받았는지 확인한 바 1개만 받았다는 진술 확보함

○ 차량을 매매한 중고 자동차매매 상사의 업주인 백OO를 통해 전차주가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차주와 혐의자가 공모하여 차량을 타 지역으로 옮긴 후 도난 신고하여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함

○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자동차 매매시장에 숨겨져 있는 도난신고 차량을 회수

· 관련금액 : 75백만원

시 사 점

□ 고가의 외제차량을 일명 대포차로 저가에 매수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시세가로 보험에 가입하여 도난 신고 후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 고가 외제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 외제차량은 차량의 열쇠가 2개 지급 되며 재발급 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므로 자동차 열쇠 보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례3】

◇ 2005년 5월 천안 ○○공업사 대표인 혐의자 최OO은 사고로 인해 대파된 승합차량 2대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구입하여

○ 폐차업자, 부품상과 공모하고 엔진은 분리매각하고 차대는 불법폐차한 후 차량을 마치 수리하여 고급AV시스템을 부착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허위고지하고 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한 후 공장내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가장하여 46백만원의 도난보험금을 편취함

◇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차량을 헐값으로 구입하여 차량가액을 높여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은 불법으로 폐차하고 허위로 도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혐의자가 파손차량을 소유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구입하여 고가의 AV시스템을 부착하는 등 수리 후 차량가액을 높게하여 보험에 가입함

□ 과거에도 중고 승용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AV시스템을 부착한 후 도난당하여 도난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사고조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혐의자는 민원을 제기하고 선량한 사람을 사기범으로 취급한다며 조사자를 필요이상으로 협박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인터넷 경매 당시 차량사진을 확인한 바 문짝 등은 활용할 수 있으나 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파손되지 않은 자동차 문의 유통경로를 탐문한 결과 도난차량과 같은 차종의 문을 폐차장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공업사를 확인하고 엔진도 부품상으로 유통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함

□ 피의자가 운영하는 공업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수배하여 조사한 바 재직당시 도난차량들을 수리한 사실이 없고 엔진은 타 차량에 장착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엔진장착 차량을 수배하여 확보함

□ 수사결과, 경매차량들은 차대번호를 대포차량이나 도난차량에 불법이식하고 차량본체는 불법폐차한 후 허위 도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냄

- 혐의자 중 1명 구속, 4명 불구속
- 관련금액 : 46백만원

시 사 점

□ 차량손해등 재물에 관련한 보험은 보험가입 시 재물의 상태를 모집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함

□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차량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부품의 활용보다는 도난차량에 대한 차대번호 이식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사례4】

◇ 혐의자 안OO는 1998년 9월 암보험에 가입하고 2003년 12월 폐암으로 국내 병원에서 폐 부분 절제수술을 받음

○ 2005년 4월 ~ 2006년 10월(19개월) 기간동안 중국○○의대 병원에서 6회에 걸쳐 입원(391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중국 ○○의대병원 발행 입·퇴원 확인서 및 공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암 입원급여금을 청구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청구된 중국 입원기간 중 일부가 국내 병원 입원 기간과 중복됨

□ 국내 진료 병원의 소견은 수술 및 항암 치료 후 적극적인 입원이 필요 없는 경과 관찰 상태임에도 중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음

□ 최근 해외 병원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임

조사 내용 및 결과

□ 중국 현지 해외조사 출장을 실시하여

○ 중국○○의대병원의 입·퇴원 확인서를 확인하고 주치 의사와 면담한 결과 외래 진료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입원 사실은 없으며

○ 원무과를 통해 혐의자가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의 병원 직인 및 의사 도장이 위조된 것을 확인함

□ 중국에서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혐의자와 면담한 결과

○ 혐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직접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 중국 현지의 브로커를 통해 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자백함

· 혐의자 중 29명 구속, 19명 불구속

시 사 점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자 혐의자들이 보험회사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취약한 해외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사례5】

◇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PC방 및 개인 무역을 해온 혐의자 안OO은 사업 관계로 중국출장 중 2004년 4월 중국 OO시 의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 허위사망증명원, 허위진료기록부, 허위진료영수증, OO영사관 확인서류, 그리고 사망말소 처리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청구함

◇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보험사의 여건상 해외 사고조사가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 중국내 공모자와 연계하여 허위 사망증명서와 진료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혐의자의 자녀 및 부모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망한 피보험자의 신분증이 없음(유족은 화장시 타 태웠다고 함)

□ 조선족 출신인 혐의자의 배우자 공OO이 면담과정에서 상당히 불안해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질의 내용에 답변을 잘 하지 않음

□ 혐의자는 국내사업이 잘 안되는 상황으로 사망보험금 (500백만원)이면 중국에서 상당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음

조사 내용 및 결과

□ 중국의 사망증명원 및 진료비 영수증 발행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보험금 청구시 제출된 서류들이 허위 작성되었으며

○ 사고당일 한국인을 응급후송차를 통해 의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함

□ 중국 OO시 부근 화장터에서는 혐의자의 인적사항으로 화장한 사실이 없으며 관할공안국에 확인결과 외국인이 사망했다는 신고는 없었음

□ 공안국에 등록된 혐의자의 주소 및 사망증명원에 기록된 주소지에는 혐의자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전혀 관계없는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음

□ 혐의자는 사고 당시 중국 내 주소지 부근의 개인의원 2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내원한 사실 없음을 확인함

□ OO영사관에서는 해당의료기관에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혐의자의 가족들이 제출한 서류에 영사관 직인을 날인하였음을 확인함

□ 중국현지 출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일반사망보험금을 불지급 처리함

· 관련금액 : 500백만원

시 사 점

□ 해외(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빈번해지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서류 확인이 필요.

o 국내보험사의 여건상 해외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차후 현지조사를 활성화할 필요

□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해지고 한국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정리 후 후진국에서 거주하려는 경향이 증가

o 외국생활의 기반을 잡기위해 보험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증가

【사례6】

◇ 2006년 7월 혐의자 이OO는 10여년 전 가출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법원에 실종신고를 하고

○ 지방법원이 배우자에 대한 사망선고심판을 확정하자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 보험회사가 실종자에 대한 법원의 사망선고 사실을 근거로 별다른 조사 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2006년 7월 △△생명에 배우자(실종자)가 전화하여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자료를 입수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혐의자의 배우자(실종자)와의 면담을 통해 2005년 6월 중순경 배우자(실종자)의 주소지에 혐의자 이OO이 찾아와 전화번호를 남겼으며 이OO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2005년 6월 △△생명에서 사망선고 된 실종자의 △△생명 등록카드로 보험계약을 해약한 사실을 확인함

□ 조사결과를 근거로 혐의자와 면담한 결과 혐의사실을 인정함

- 혐의자 불구속
- 관련금액 : 28백만원

시 사 점

□ 실종신고에 의한 사망선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종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없어 사망 진위 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 없는 바 사고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

Ⅲ. 피해과장(과다청구)

【사례 1】

◇ 혐의자 이OO는 2002년 11월 자기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인해 흉골골절, 뇌진탕, 경추염좌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함

○ 사고 발생 후 1년여가 지난 뒤 사고로 인해 양측 시력이 상실되었다며 169백만원을 편취하고 1,200백만원을 추가 편취하려다 적발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사고발생 치료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상해가 1년여 경과 후 진단됨

조사 내용 및 결과

□ 혐의자의 거주지 등을 탐문하고 혐의자의 행적을 잠복조사하여

○ 사고 후 혐의자가 새 집을 구입하여 이사하고 중형차를 구입하였으며

○ 신차 구입 시 혐의자가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며 자전거 및 자기차량을 손수 운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혐의자의 운전관련 벌점 및 벌금을 조회한 결과 사고이후에도 과속운전(2회)과 오토바이 신호위반(1회)사실을 확인

□ 혐의자는 검거 후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만을 시인하였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음

- 혐의자 불구속
- 관련금액 : 1,369백만원

시 사 점

□ 국내 유명 대학병원 3곳에서 모두 양안 실명으로 진단된 피의자에 대해 잠복 탐문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정상생활 중인 사실을 확인함

【사례2】

◇ 2003년 9월 21시경 경남소재 XX산업에서 태풍 '매미'에 의하여 공장건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 혐의자 XX산업 대표이사 조OO은 실제 파손된 피해물을 재조달하는 비용을 부풀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고, 노후로 사용하지 않던 기계설비를 고의로 침수시켜 태풍에 의하여 침수된 것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313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 재물보험의 피해액 산정이 보험가입자 측에서 제출된 계산서에 기초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자와 이해관계에 있던 거래처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건물의 피해에 대한 재조달 비용이 실제 손해사정 금액보다 높게 청구됨

☐ 최초 사고접수 시 건물손해만 접수되었으나 이후 다른 건물 피해 및 다른 건물에 있던 기계류가 손상되었다고 추가 접수됨

☐ 추가 접수된 건물의 손상부위가 인위적인 파손이 흔적이 있음

조사 내용 및 결과

☐ 건물손해에 대한 피해액 계산서에 대한 세부 내용입증을 못함

☐ 추가 접수된 기계류의 상태가 노후되어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음

□ 수사관서와 공조하여 피해액 계산서를 발급한 수리업체 실사한 결과

○ 혐의자측의 요청으로 과장청구 되었고, 기계류의 파손내용도 가동불능의 기계들을 인위적으로 손괴되었음을 확인함

· 혐의자 불구속
· 관련금액 : 313백만원

시 사 점

□ 재물보험의 경우 피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피보험자측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하므로 제출된 피해금액 산정서류에 대한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추가 접수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가 있음

【사례3】

◇ 혐의자 박OO 은 2000년 9월 부천시 소재 애인집 2층 베란다에 올라가다 추락사고로 부천 ◎◎병원에서 응급치료 및 개두술, 혈종제거술을 받고

○ 목동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2000년 9월 ~ 2000년 12월(74일간) 기간동안 입원하여 뇌경막하 출혈제거술, 두개 성형술, 뇌종양제거 수술을 받음

○ 이후 △△병원에서 2001년 3월 ~ 2001년 4월(25일간) 기간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과장된 행동으로 허위 장해진단서 발급을 유도함

○ 보험사가 환자의 진단내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피해 상태가 경미한 사고임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 할 목적으로 허위장해진단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 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고도의 장해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자가운전을 하는 등 정상인과 동일한 행동을 한 다는 것은 영구장해, 수시간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장해임을 의심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집 부근에서 약 10분간 도보로 보행하면서 행동하는 동영상 사진과 장애진단 후 4개월만에 복학하여 취득한 실기 점수가 기록되어 있는 피의자의 대학교 학적부 그리고 자동차 운전 후 발생한 사고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함

□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등의 전문가들에게 동영상 자료에 대한 의료자문을 구한 결과 장해판정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음

□ 장해를 진단한 의사는 병원에 입원가료 시 보호자의 동행이 꼭 필요하였고, 실어증, 대인공포증 등의 증세를 보임에 따라 퇴원 후 학교생활 등 일반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함

- 혐의자 구속
- 관련금액 : 660백만원

시 사 점

□ 고도의 장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사를 기망하여 과도한 허위 장해진단을 받는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사례4】

◇ 수원시에 위치한 OO병원은 검사결과가 양호한 환자에게 '허혈성심장병', '뇌순환장애' 등 진단이 모호한 병명을 이용하여 장기입원을 종용하고

○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약관상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위궤양' 등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는 등 병원 주도의 불법행위를 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단순 '위염'을 '위궤양' '신장염' 등으로 진단하여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입원을 권유함

□ 환자의 대부분이 단기간 동안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질병으로 상습 입원하였고, 조사자 내방 시 면담을 거절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1998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수원OO병원 입원환자 중 약관상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병명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157명의 보험금 청구 건을 분석하여 의심 건에 대해 의료 자문한 결과

○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 및 투약내용이 진단명과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함

□ 장기입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취득하였고, 특히 병원장이 입원환자들의 외출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밝혀냄

○ 평균 1회 입원 기간은 32 ~ 35일 정도
○ 보장기간 120일 경과 시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
○ 간병자금을 노린 고의적 장기입원

□ 병원장은 보험금 편취 방조에 따른 사기방조 및 요양급여 부당편취에 따른 사기로 구속함

· 혐의자 15명 중 구속6명, 불구속9명
· 관련금액 : 645백만원

시 사 점

□ 보험사기가 개인의 역선택에 의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입원 권유 및 허위진단서 발행 등 병원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임

Ⅳ.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보험계약 조작)

【사례 1】

◇ 2005년 5월 19시경 강원도 강릉소재 KK음식점에서 혐의자 김OO의 자녀인 차△△이 음식점 2층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 ㅇ 보험설계사인 혐의자는 자신의 보험료입금 계좌에 들어있던 타인의 보험료를 유용하여 사고 전에 자녀의 명의로 2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위장하고 보험금 62백여만원을 편취함

- ㅇ 보험모집 종사자의 경우 회사전산에 입력하기 전에 보험료 영수시기를 조작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가입 전 사고를 보험가입 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사고 직전 2개의 상해보험 가입함

□ 가입된 상해보험이 장해 및 특정 담보에 집중 보장되도록 설계됨

조사 내용 및 결과

□ 혐의자의 보험료 입금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 건들의 보험료와 일치하지 않음

□ 자녀명의 신규 보험계약건의 보장내역이 후유장해 및 장기간병비 지급 등 특정담보 보장에 집중 설계됨

□ 수사관서와 공조하여 보험료의 불일치와 특정 담보 집중 보장되도록 설계됨 등의 혐의점을 추궁하여 사고 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시인함

- 혐의자 불구속
- 관련금액 : 62백만원

시 사 점

□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료 영수시기에 대한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므로 사고 직전 보험 가입된 계약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보장에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는지의 확인을 통하여 보험가입 전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고임

【사례2】

◇ 혐의자 정OO은 2006년 4월 고가의 외제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져 선행하던 1톤 화물차량을 후미 추돌하자

○ 보험처리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 후 사고 접수를 하던 중 적발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사고 발생 일시와 접수 일시가 상이함(지연접수)

□ 차량 파손 부위가 사고 접수 내용과 상이함

□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진술이 엇갈림

조사 내용 및 결과

□ 혐의자 정OO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30Km/h정도로 앞 차량과 차량 운전자가 피해가 없어 그냥 갔기 때문에 피해차량의 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일체 모르며

○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견인차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였기 때문에 견인차량 번호 및 운전자 연락처를 모르며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 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된 차량을 확인한 바, 차량의 전면 본넷이 "ㄱ"자로 꺾여 있었으며 엔진은 교체해야할 상태이고 앞 범퍼는 둥근 쇠기둥 등에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파손 상태였음을 확인함

□ 혐의자 정OO이 거주하는 아파트 CCTV를 통해 사고차량의 출입여부를 확인한 바, 사고 1개월 이내 출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탐문한 바 정OO은 당시 공익근무 중 이었으며 간간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은 보았다는 진술을 확보함

□ 정OO이 운영하는 미니홈피에서 보험 가입일 이전에 " 차 다 고쳤냐?", "아직 안 고쳤다", "훈련소 갔다 나와서 고쳐야 겠다"는 등의 대화 내용을 확보함

□ 1톤 탑차 협조를 받아 사고차량의 파손부위와 대조한 바 충돌부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위 조사 내용을 근거로 혐의자를 추궁한 바

○ 혐의자는 2006년 4월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스포츠카 튜닝업체 창고에 차량을 보관하고 3주 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였다고 자백함

· 청구포기서 징구

시 사 점

□ 보험사기 유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에 자랑을 하거나 수법을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사례3】

◇ 혐의자 임OO은 남편 및 동생과 공모하여 당뇨병 치료사실에 대한 고지 없이 보험을 가입한 후 당뇨망막병증에 의한 양안실명으로 장해 1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아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 보험사가 환자의 진단내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피해 상태가 경미한 사고임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 할 목적으로 허위장해진단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 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임OO 가족이 가입한 보험은 총 76건으로 월납보험료가 650만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 500만원을 크게 상회하며 부족한 보험료는 보험약관대출금으로 충당함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확인결과 인지보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

조사 내용 및 결과

□ 임OO 등 혐의자들은 1997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생명 등 16개 보험사에 총 76건(월납보험료 6,553천)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 그 중 53건은 피보험자 및 월납보험료 부담자를 임OO으로 지정하고 지급보험금은 전액 오△△이 수령함

□ 혐의자 임OO은 1999년 9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XX생명보험과 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이 없었고, 7일 이상의 치료투약 사실 등도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의 개인현물급여 명세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치료사실을 확인함

○ 1997년 7월 ◇◇안과의원에서 정액화농성결막염으로 내원치료 및 5일간 투약

○ 1999년 3월 □□병원에서 뇌의 장애로 내원치료 및 2일간 투약

□ 한편, 임OO은 1997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의 기간 중에 ◎◎의원 등에서 동생의 명의로 "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을 치료한 사실이 있음

○ 1997년 11월 ▽▽약국에서 눈 및 눈 부속기염증으로 3일간 투약

○ 2000년 2월 ◉◉의원에서 "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으로 내원치료와 27일간 투약

○ 2000년 2월 ~ 2004년 1월까지 ◈◈안과의원 등에서 56회에 걸쳐 내원치료를 받고, 총 1,402일분의 당뇨치료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됨.

- 혐의자 중 1명 구속, 2명 불구속
- 관련금액 : 1,700백만원

시 사 점

□ 대리진단에 의한 사전 진단 후 보험가입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임

【사례4】

◇ 혐의자 윤OO는 본인 의료보험증의 자격이 상실되자 친 언니의 의료보험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암 진단을 받고 6개사 6건의 암관련 보험을 가입한 후

○ 본인 의료보험증을 부활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본인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수술 및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혐의자 본인 명의로 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직원이 혐의자가 타인 명의로 암 진단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사에 제보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윤OO는 2005년 8월 언니 윤□□의 건강보험증으로 광주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한 결과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병원에서 FNAC검사결과 좌측갑상선암 진단 받음

□ 암 진단 후 2005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6개사의 CI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6건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함

□ 2006년 3월 본인 건강보험증 자격을 회복하여

○ 본인명의로 2006년 4월 FNAC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06년 5월 수술·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함

□ 재 진단병원 및 수술병원(3차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상 2005년 암 진단 사실에 대한 언급 없고, 건강진단 상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함

□ 병원 확인 후 당사자 윤OO에게 확인결과, 순순히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하여 해당 보험금 부 지급하고 계약 해지 처리함

· 관련금액 : 127백만원

시 사 점

□ 타인명의로 진단받고 보험가입 후 보험금 청구되는 건은 제보가 없다면 사실상 인지 및 확인이 불가하므로 병원 관련자 등 제보 채널의 다양화 및 포상 확대 등이 필요함

□ 단기간에 다수보험 가입하고 진료기록지상 내원경위, 과거병력이 의심의 여지없이 기술되어 있으면 가족관계,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정밀 확인이 필요함

□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을 하였으면 해당 사유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 가입 날짜에 근접하여 암 진단 청구되는 건은 전 보험사에 가입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함

Ⅴ.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 1】

◇ 혐의자 윤OO은 2006년 2월,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과 함께 스키장에 가던 중 경기도 양평에서 운전부주의로 승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 동승자 1명이 사지마비가 되는 등 운전자를 제외한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부상을 당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함

◇ 사고조사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아들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발견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였음을 자백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보험계약이 기명 1인 운전한정 특약 건 임

□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기위해 밤1시에 직접 운전함

□ 차안의 메모지에서 젊은 사람의 글씨체로 씌여진 스키장 가는 길 안내 메모가 발견됨

□ 운전자인 아버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음

○ 전복된 차량의 파손부위를 볼 때에 운전자가 안 다쳤다는 것이 역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 경찰관, 견인차량기사와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아버지가 운전자였음을 확인함

□ 차량안에서 젊은 사람의 글씨체로 스키장으로 가는 길을 적어놓은 메모지 발견함

□ 여러 차례에 걸친 차량 및 사고현장 확인과정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의 탈출방법 및 탈출순서가 조금씩 상이함

□ 사고차량에 대한 정밀 조사과정에서 운전석 부근에서 육안으로 안보이던 머리카락을 확대경을 이용해 발견하여

o 머리카락의 길이가 짧아 군 복무중 휴가를 나온 아들이 운전하였다는 것을 확신함

□ 아들의 찬구들을 각기 만나 진술의 상이점과 머리카락을 발견한 사실 등을 알리자 아들이 운전한 점을 시인함

□ 혐의자 윤OO에게 아들 친구들의 진술과 아들 머리카락의 발견등을 알리자 사기 행위 일체를 시인함

o 군대에서 휴가나온 아들이 아버지 차를 운전하여 친구 2명과 스키장을 가다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가 아들인 경우 보험처리가 안됨을 알고 아버지에게 연락하였고

o 부상자가 중상임에도 아버지가 서울에서 오는 동안(1시간 30분) 구호조치도 없이 사고현장에서 대기함

o 사고현장에 도착한 아버지의 신고로 119구급대, 경찰등이 출동하였으므로 사고기록에 아버지가 운전자로 기록됨

- 혐의자 2명 불구속
- 관련금액 : 400백만원

시 사 점

□ 운전자한정특약이나 1인한정특약 보험과 관련한 사고의 경우 우발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할 가능성이 높음

□ 119구급대나 경찰보다 사고 모의자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 사건기록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운행경로와 경위, 사고시간 등을 확인해야 함

□ 차안의 혈흔, 모발 등은 육안으로 찾기 어려우므로 확대경 등으로 정밀하게 확인해야 함

【사례2】

◇ 2006년 12월 새벽 혐의자 백OO는 무면허상태로 운전 중 자유로 진입로에서 선행 5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차량은 화물차라 파손이 없었으며 본인차량만 파손되었음을 주장하며 자차보험금 45백여만원을 청구함

○ 운전자를 지인으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사고차량이 고가의 외제차량으로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45백여만원에 달하나 선행 피해차는 파손이 없어 연락처를 모른다고 주장함

□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 개소되었으나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부상이 없다하며 인사사고에 대한 보험청구는 안함

□ 견인차 기사는 사고당시 가해차량만 현장에 있었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함

□ 피보험자는 무면허 상태임

조사 내용 및 결과

□ 혐의자는 가해차량의 파손 상태로 보아 피해차량도 상당부분 파손이 예상되나 피해차량 파손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 견인차 기사는 사고당시 가해차량만 현장에 있었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함

□ 차량운전석의 시트 넓이가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체형보다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으며, 피보험자의 체형과 동일함을 이유로 혐의자를 설득하자 운전자를 바꿔서 보험금 청구하였음을 시인

· 관련금액 : 45백만원

시 사 점

□ 운전석의 시트 넓이에 대한 조사로 운전자바꿔치기를 적발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운전자에 따른 사고차량의 구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함

Ⅵ. 사고차량 바꿔치기

【사례 1】

◇ 2006년 7월에 OO회사 소속 화물차량이 물통을 싣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적재함에 있던 물통이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 ㅇ 이 사고로 인해 전복된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음
- ㅇ 사고원인 조사 중 물통을 떨어트린 화물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임이 밝혀져 종합보험 면책처리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화물차량이 차량 전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 발생함

□ OO회사 소속 화물차량 4대의 계약사항을 확인하다 1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점이 발견되어 차량 바꿔치기를 의심하게 됨

조사 내용 및 결과

□ 전복사고가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물통을 피하려다 전도된 것임을 고속도로 순찰대 사건기록과 목격자를 통해 확인함

□ OO회사의 화물차량 4대를 조사한 결과 한 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차량바꿔치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각 차량의 운행경로를 조사함

○ 사고운전자는 군산에서 오산으로 사고차량을 운행하여 오던 중 물통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여

○ OO회사 화물차량의 목적지인 오산미군비행장을 방문하여 차량출입 확인 중 당일 운행차량이 2대로 그 중 한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임을 확인함

□ 고속도로순찰대의 도움을 받아 오산톨게이트 CCTV를 확인한결과 사고차량이 나오지 않음

○ 오산톨게이트 CCTV 확인결과를 운전자에게 전달하자 송탄톨게이트 이용 사실을 진술함

○ 송탄톨게이트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고원인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임을 확인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전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으로 후속차량의 사고가 대형사고라 회사와 상의하여 종합보험 가입 차량으로 바꾸어 신고한 사실을 운전자가 자백함

- 혐의자 2명 불구속
- 관련금액 : 200백만원

시 사 점

□ 법인소속의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사고차량 바꿔치기 사고 여부를 조사 할 필요성이 있음

□ 출구에서 정면으로 촬영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CCTV를 이용하여 운전자를 정확히 판별할 필요가 있음

【사례2】

◇ 혐의자 문OO은 2006년 7월 남자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킴

○ 문OO은 보험처리를 위해 피해자를 사고차량에 태운채로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본인 차량으로 옮겨 태운 후 병원으로 후송하고 사고 접수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사고의 내용을 알게 된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인지함

조사 내용 및 결과

□ 사고 관할 경찰서의 사고기록에 따르면 혐의자와 피해자의 사고정황 및 병원까지 이동과정에 대한 진술이 상이함

○ 혐의자 문OO은 본인의 차량을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으나

○ 반면 피해자는 사고 후에 병원으로 바로 오지 않고 차량을 옮겨 탄 후에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함

□ 혐의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의 녹화기록을 통해 사고당일 혐의자의 출입사실을 확인하고

○ 사고현장에서 병원까지의 거리 및 시간과 현장에서 혐의자 아파트까지의 거리 및 시간 등을 확인함

□ 혐의자에게 확인된 사실을 제시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여 청구포기서 징구한 후 면책 처리함

· 관련금액 : 57백만원

시 사 점

□ 피해자를 후송한 후에 바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음주를 하였음에도 경찰서에 자진 사고를 하였기에 현장출동 직원 및 보상직원도 차량을 확인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음

Ⅶ. 기타

【사례 1】

◇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하여 보상금의 약 5~10%를 사례금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합의에 직접 개입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손해사정사 직원 및 병원 사무장 적발함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충남 천안지역에서 △△손해사정 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접근해 보상금을 많이 받아주는 대신 그 대가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아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음

조사 내용 및 결과

□ 혐의자 손OO은 천안시 소재 △△손해사정(주) 소장으로 병원 사무장 3명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고 법률사건의 화해사무를 취급함

□ 2004년 6월경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문OO에게 접근하여 보험사와의 합의절차를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합의금의 5%를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 2005년 8월 A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3백만원을 지급받게 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음

□ 2004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OO씨의 남편 임OO에게 접근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합의금액의 10%를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 보험사와의 합의과정에 개입하여 남편 임OO가 147백만원을 지급받게 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11백만원을 받음

· 혐의자 4명 불구속(변호사법 위반)

시 사 점

□ 교통사고 피해자, 고액 후유장해 피보험자들의 보상처리에 대해 변호사가 아니면 합의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손해사정사, 병원 사무장 등이 사례금 받는 것을 대가로 하여 소위 브로커 행각을 벌이는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한 사례임

【사례2】

◇ 혐의자 배OO은 2000년 7월 ~ 2006년 9월 기간동안 인터넷 채용전문 사이트의 아르바이트생 급구 광고를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137백만원을 청구

조사착수 배경(혐의점)

□ 2006년 9월 혐의자 배OO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37건의 보험사고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인지

조사 내용 및 결과

□ 인터넷 채용전문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모자를 모집한 신종수법으로

○ 혐의자 배OO가 PC방에서 인터넷 채용전문 사이트의 아르바이트생 급구 광고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한 후 혐의자의 지시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실제 사고로 가공함

○ 공모자는 짧은 기간동안(3일 이내) 입원하거나 허위입원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 혐의자는 공모자로부터 받은 통장과 현금체크카드로 보험금에서 공모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함

□ 보험사기 범행의 노출을 막기 위해 매번 다른 공모자를 모집함

· 관련금액 : 137백만원

시 사 점

□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보험사기 공모자의 범위가 친·인척 등에서 크게 확대되어 보험사기건 마다 주범을 중심으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공모자들이 형성될 수 있음

부 록

1. 보험사기 관련 법규

2.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관련 법규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보험사기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음

2. 보험업법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1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①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그 밖의 보험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험업법 시행령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①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인
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생명보험협회의 장·손해보험협회의 장·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조사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7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는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협의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4. 보험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 제16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등

제2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참여기관이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조사지원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협의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보험담당 국장 1인
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관련 부서 국장 1인
3. 생명보험협회장이 추천하는 관련업무 담당 임원 1인
4.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추천하는 관련업무 담당 임원 1인
5. 보험요율산출기관장이 추천하는 관련업무 담당 임원 1인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관련업무 담당 임원 1인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관련업무 담당 임원 1인
8.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관련업무 담당 임원 1인
9.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0. 제6호 내지 제8호 이외의 기관으로서 보험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 대행자를 정한다.

제3장 협의회 회의의 운영

제5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매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소집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위원 중 소속 기관의 지명 또는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안건 중 협의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의 통지)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추천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 ①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폐회의 일시 및 장소
2. 위원의 출석 현황
3. 회의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의사록은 협의회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실무자회의 설치

제9조(실무자회의)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자회의를 둔다.

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 및 심의안건의 발굴
3. 효율적인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간 의견교환
4. 그밖에 협의회가 위임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위원 중 외부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담당 부서장이 실무자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차 하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실무협의회를 주재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업무협조) 협의회는 협의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조 각 호의 위원 중 외부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장이 선임하는 자로 한다. 다만 협의회장의 별도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이 간사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3조 제3호 내지 제10호의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 실무자회의 참가자, 그 밖의 공동조사 실시 등에 참여한 자는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 및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3. 4. 부터 시행한다.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

Ⅰ. 목 적

1. **(목적)** 본 모범규준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을 위한 체제를 마련·운영토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권고)** 본 모범규준은 국내·외 보험회사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각 보험회사가 본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응체제를 마련·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Ⅱ. 보험사기방지의 기본전략

1. **(기본인식)**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영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하는 등 보험사기방지에 주력한다

가. 보험사기방지업무는 보험회사 경영진의 보험사기 피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의지에서 출발한다

나. 보험회사 경영진은 경영정책의 수립 및 추진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음의 대책을 반영한다

(1) 외형성장 위주의 영업전략을 지양함으로써 불량계약을 방지한다

(2) 언더라이팅 기능강화를 통해 사기성 계약을 사전에 점검한다

(3) 보험상품개발시 보험계약자의 사기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2. **(기본전략)** 보험회사는 회사의 규모, 조직 및 인력, 영업전략 등 자체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보험사기방지 전략을 수립·시행한다

가. 보험사기방지 전략에는 추진목표, 추진방침, 세부실행계획, 사기방지체제, 보험사기인지도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가 빈발하는 계약의 모집조직과 지점 또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Ⅲ. 보험사기방지체제

1. **(총괄기구)**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방지업무를 독립된 업무로 인식하고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설치한다

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방지위원회 등 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한다

나. 보험사기방지 총괄기구는 기존 보상조직 등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기본전략의 수립

(2) 보험사기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보험사기관련 영업정책 및 상품개발 심의

(4) 보험사기조사 담당조직의 설치 및 운영

(5) 보험사기지표의 개발 및 활용

(6) 보험사기관련 계약인수 및 보상정책 등

2. **(내부규정)**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방지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업무규정을 제정·운영한다

가. 보험사기방지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험사기조사 담당조직과 담당업무, 부서간 업무 배분 및 권한과 책임

(2) 보험사기조사 개시요건, 조사대상 분류 및 이송기준, 사고조사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등 세부 업무처리절차

(3) 교육 및 홍보, 포상제도 등

3. **(조사시스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방지업무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나. 보험회사는 자체 생산한 보험사기유의자 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보험계약 인수시 활용한다

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해 낼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도입한다

4. **(담당조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조사 담당조직(이하 "담당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가. 담당조직은 회사의 영업방침, 규모, 조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운영한다

(1) 담당조직은 보험사기방지총괄기구가 수립한 정책을 적절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성실히 집행한다

(2) 담당조직은 보험사기 대응전략 수립, 보험사기 조사 및 사기방지활동 등을 수행한다

(3) 보험사기조사 대상은 보험사기지표 및 관련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선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정인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한다

(1) 보험회사는 사고보험금 지급규모, 보험사기 추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한다

(2) 보험사기에 대한 영업현장의 정보 수집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영업지역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3)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입증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직 수사요원, 의료관련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5. **(신고센터)** 보험회사는 회사 내부직원 및 일반인이 보험사기 혐의건을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가. 보험회사는 내부직원 또는 일반인이 보험사기 혐의건을 보험회사에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신고수단을 확보한다

나. 보험회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 장치를 마련한다

Ⅳ. 보험사기의 예방 및 조사

1. **(보험사기예방)**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및 보험계약체결 등 초기단계부터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 보험회사는 보험상품개발시 보험사기 취약성 여부에 대해 담당조직과의 협의 등을 통한 검토를 의무화한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시 불량계약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 확인 등 3대 기본 지키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보험사기 유의자 정보를 활용한다

다. 보험회사는 의료분야의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보험계약 심사 능력을 강화한다

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관행을 개선한다

(1) 보험사기유의자 추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명, 장애, 실손 등 급부유형별 심사를 전문화한다

(2) 보상심사 없이 지급하는 소규모 손해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에 의한 내부보험사기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1)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개입·조장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업무를 강화한다

(2) 사고율이 높거나 문제가 있는 모집조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계약심사를 철저히 한다

2. **(조사업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절차를 마련하고 담당조직과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능력을 구비한다

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보험사기지표 등 인지수단을 개발한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판별하기 위해 전문심사역제를 도입한다

(1) 의료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 및 회사내 보상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전문심사역으로 보임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한다

(2) 보험사기지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보상부서와 담당조직에서 처리하여야 할 보험사고를 분류한다

다. 보험회사는 대형 및 고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 출동체제를 갖추어 보험사기 관련여부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수행한다

라.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적발을 위해 보험사고현장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등 증거수집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마. 보험회사는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사고유형별로 보험사가 조사기법을 개발·활용한다

바. 보험회사는 담당조직과 보상부서간의 협조체제 및 담당조직과 경영진간의 보고체제를 구축하고 수사 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1) 보험사기피해 사례는 신속히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보험금환수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한다

(2)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보험사기는 그 진행과정을 사후관리 한다

사. 보험회사는 타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회사내에서의 자료 및 정보 접근권을 담당조직에 부여한다

3. **(부당이득금 환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환수체제를 마련한다

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 즉시 부당이득금 편취자 및 공모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입요청을 통지하고 관련자의 동산 및 부동산을 파악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한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자의 생존급부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보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업무매뉴얼)**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기법, 조사절차 등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매뉴얼을 작성 활용한다

가.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보험사기조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1) 조사업무수행시 필요한 조사기법

(2) 보험종목별 사기방지대책

(3) 보험사기지표

(4) 조사업무처리절차 등

5. **(유의사항)**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하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한다

가.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법적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회사는 보험거래에 따른 보험사고의 조사자로서 보험약관 등을 근거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고내용 및 면부책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2)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사법당국 등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

나. 보험회사는 피조사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피조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Ⅴ. 보험사기조사의 지원

1. **(홍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가. 보험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한다

2. **(교육)**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 담당직원 및 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 담당직원, 보험계약인수부서 및 보험금지급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1) 보험사기유의자 식별방법, 종목별 조사사례, 보험사기지표의 활용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한다

(2) 보험사기 유형 및 기법의 다양화, 지능화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사기조사 담당직원에 대한 선진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나.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일선 모집조직에 대하여 보험사기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2)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험사기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여를 권장한다

3. **(포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방지 공로자 및 보험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자체 또는 협회와 공동으로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가. 보험회사는 신고포상금 관련규정에 대해 소속 협회 및 타사와의 형평을 유지한다

나. 보험회사는 영업현장의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활용하기 위해 내부직원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를 마련한다

4. **(협조체제)** 보험회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역별 협의체 구성 및 상시 정보 교류 채널을 확보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 계 안 의 원

1. 주요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책정금액 현황

□ 붙임 참조

(붙 임)

주요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현황

(단위 : 원)

소관검사국	금융회사명	수수료 금액(건당)
은행검사1국	우리은행	2,000~3,000
	한국씨티은행	1,000~3,000
	외환은행	2,000
	SC제일은행	2,000
	하나은행	3,000~5,000
	신한은행	2,000~3,000
은행검사2국	국민은행	2,000

소관검사국	금융회사명	수수료 금액(건당)
비은행검사1국	솔로몬상호저축은행	3,000원(일반) 10,000원(개인파산신청 등)
	제일상호저축은행	2,000원
	HK상호저축은행	2,000원(일반) 20,000원(개인파산신청 등)
	한국상호저축은행	10,000원
	부산상호저축은행	2,000원(일반) 30,000원(개인파산신청 등)
	부산2상호저축은행	2,000원(일반) 30,000원(개인파산신청 등)
	토마토상호저축은행	2,000원
	경기상호저축은행	10,000원
	진흥상호저축은행	10,000원
	미래상호저축은행	5,000원
	고려신용정보	50,000원(개인파산신청 등)
	KB신용정보	채권추심업무만 수행
	솔로몬신용정보	채권추심업무만 수행
	미래신용정보	채권추심업무만 수행
	에스지신용정보	채권추심업무만 수행

2. (기업)워크아웃 추진 실적, (기업)워크아웃제도의 전망 등

□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8. 30.(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지도팀			
책 임 자	임철순 팀장 (3786-8392)	담 당 자	송승훈 조사역(3786-8377)	
배 포 일	2007. 8. 28.(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7매

제 목 : '07.2/4분기 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 '07.2/4분기 중 **324개 중소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동 분기 중 국내은행들은 모두 **335개** 중소기업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신규 선정**하는 한편

○ **324개사**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힘입어 경영을 정상화하였고

○ **80개사**는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부도 발생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

□ 한편 '04.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이후 '07.6월말까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모두 **4,869개** 업체로서

○ 이 중 45.9%에 해당되는 **2,237개사**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워크아웃 졸업)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둠

○ '07.6월말 현재 **1,653개사**가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현황

(단위: 개 업체)

구 분	'04.7~12	'05년	'06년	'07년 상반기		'04.7~'07.6말 누계	
				1분기	2분기		
신규 선정	769	2,120	1,416	229	**335**	4,869	(100.0)
졸 업	144	322	1,161	286	**324**	2,237	(45.9)
중 단	216	259	330	94	**80**	979	(20.1)
기말 진행 중	409	1,948	1,873	1,722	**1,653**	1,653	(34.0)

주 : ( )내는 구성비, %임

□ 특히 '06년부터는 그 동안 선정된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워크아웃 졸업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 또한 워크아웃 중단기업의 수도 워크아웃 졸업기업의 수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졸업 : 466개사('04.7~'05.12) → 1,771개사('06.1~'07.6)
* 중단 : 475개사('04.7~'05.12) → 504개사('06.1~'07.6)

□ 한편 '07.2/4분기 중 국내은행의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8,108억원**으로

○ 지원형태별로는 만기연장이 6,542억원(80.7%), 신규여신 1,505억원(18.6%), 이자감면 27억원(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간 추세를 보면 **만기연장 비중이 감소**하고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수단인 **신규여신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기연장 비중 : '04.하반기 89.4% → '05년 92.1% → **'06년 83.8% → '07.상반기 79.2%**
* 신규여신 비중 : '04.하반기 4.9% → '05년 6.4% → **'06년 14.2% → '07.상반기 20.1%**

□ 감독당국에서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 채권은행의 워크아웃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 **「채권은행협약」 가입기관 확대**(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진하여 자구계획대상자산 및 부실채권의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워크아웃이 보다 내실 있게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

* 현재 18개 국내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은행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채권은행협의회는 가입기관 확대 등을 위하여 '07.8월말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여 「채권은행협약」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

붙임 : '07.2/4분기 중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 임)

'07.2/4분기 중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2007. 8.

금융감독원

Ⅰ.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1 워크아웃 선정 및 졸업 현황

('07.2/4분기 중 워크아웃 추진 실적)

□ 금년 2/4분기 중 국내은행의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중소기업은 **총 335개사**

○ 한편 동 분기 중 워크아웃 졸업으로 **경영을 정상화한 업체**는 **324개사**로 집계되었으며,

○ 부도 발생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한 업체**는 **80개사**로 나타났음

신규 선정 335개사 현황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7개사로 49.9%를 차지하는 가운데 도소매업 52개사, 음식숙박업 22개사 등의 순임

업 종	제 조	도소매	음식숙박	건 설	부동산	기 타	계
업체 수	167	52	22	17	10	67	335

■ 한편 신규 선정 현황을 은행별로 보면 시중은행이 175개사, 특수은행이 146개사, 지방은행이 14개사로 나타났으며

■ 개별은행별로는 기업 111개사, 신한 53개사, 시티 47개사, 국민 44개사, 산업 23개사, 하나 23개사 등임

시중은행	신한	씨티	국민	하나	제일	지방은행	전북	특수은행	기업	산업	계
175	53	47	44	23	6	14	8	146	111	23	335

(그간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 실적)

□ '04.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후 '07.6월말까지 **총 4,869개사**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 **2,237개사(45.9%)**가 워크아웃을 졸업하여 **경영**을 **정상화**하였고,

○ **979개사(20.1%)**는 부도 발생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하였으며,

○ '07.6월말 현재 **1,653개사(34.0%)**가 워크아웃을 **진행 중**

□ 특히 '06년부터는 그동안 선정된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워크아웃 졸업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 또한 워크아웃 중단기업의 수도 워크아웃 졸업기업의 수를 크게 하회

* 졸업 : 466개사('04.7～'05.12) → 1,771개사('06.1～'07.6)
* 중단 : 475개사('04.7～'05.12) → 504개사('06.1～'07.6)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현황

('04.7월～'07.6월) (단위: 개)

구 분	'04.7 ~12월	'05년	'06년	'07년 상반기		'04.7~'07.6말 누계	
				1분기	2분기		
기초 추진 중	0	409	1,948	1,873	**1,722**	0	
신 규	769	2,120	1,416	229	**335**	**4,869**	**(100.0)**
졸 업	144	322	1,161	286	**324**	**2,237**	**(45.9)**
중 단	216	259	330	94	**80**	**979**	**(20.1)**
기말 추진 중	409	1,948	1,873	1,722	**1,653**	**1,653**	**(34.0)**

주 : ( )내는 구성비, %임

2 채무재조정 등 금융지원 실적

□ '07.2/4분기 중 은행권이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원한 규모는 8,108억원**

○ 지원 형태별로는 만기연장이 6,542억원(80.7%), 신규여신 1,505억원(18.6%), 이자감면 27억원(0.3%) 순

□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04.7월 이후 '07.6월말까지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총 지원규모는 10조8,923억원**

○ 만기연장이 9조4,124억원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고,

○ 그 외 신규여신 지원이 1조2,584억원(11.6%), 이자감면 373억원(0.3%), 기타 출자전환 등이 1,841억원(1.7%) 순

○ 그러나 '06년부터는 만기연장 비중은 감소하고 신규여신 등 **보다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수단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만기연장 비중 : '04.하반기 89.4% → '05년 92.1% → **'06년 83.8%** → **'07.상반기 79.2%**
* 신규여신 비중 : '04.하반기 4.9% → '05년 6.4% → **'06년 14.2%** → **'07.상반기 20.1%**

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 채무재조정 현황

('04.7월~'07.6월) (단위: 억원)

구 분	'04.7~12월	'05년	'06년	'07년 상반기			'04.7~'07.6 누계
					1분기	2분기	
만기연장	10,926	32,858	36,433	**13,909**	7,365	**6,542**	**94,124**
	(89.4)	**(92.1)**	**(83.8)**	**(79.2)**	(77.9)	**(80.7)**	**(86.4)**
이자감면[1]	18	137	167	**49**	22	**27**	**373**
	(0.1)	(0.4)	(0.4)	**(0.3)**	(0.2)	**(0.3)**	**(0.3)**
신규여신	600	2,278	6,173	**3,534**	2,029	**1,505**	**12,584**
	(4.9)	(6.4)	(14.2)	**(20.1)**	(21.5)	**(18.6)**	**(11.6)**
기 타[2]	680	417	676	**68**	35	**33**	**1,841**
	(5.6)	(1.1)	(1.6)	**(0.4)**	(0.4)	**(0.4)**	**(1.7)**
계	12,224	35,690	43,449	**17,560**	9,452	**8,108**	**108,9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순수 이자감면 금액만을 산정, 2) 출자전환, 채무면제, 채무인수 등
※ ( )내는 구성비, %임

Ⅱ. 종합평가

□ '04.7월부터 은행들이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도입·시행해 온 결과 '07.6월말까지 **4,869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 그 중 45.9%에 해당하는 **2,237개사**가 **워크아웃 졸업**과 함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07.2/4분기 중에도 **경영정상화기업의 수(324개사)**가 워크아웃 중단기업 수(80개사)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제조업**(167개사, 전체의 49.9%)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 내용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수단인 **신규여신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감독당국에서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 채권은행의 워크아웃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 **「채권은행협약」 가입기관 확대**(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진하여 자구계획대상자산 및 부실채권의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워크아웃이 보다 내실 있게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

* 중소기업 워크아웃(W/O)은 여신이 한 은행에 75% 이상 집중되어 있으면 **자체(단독)W/O**, 그렇지 않은 경우 **공동W/O**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 **자체W/O**은 각 은행이 자체 내규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W/O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며, **공동W/O**은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진행
- 현재 18개 국내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은행협약」에 가입
- 채권은행협의회는 「채권은행협약」 가입기관 확대 등을 위하여 '07.8월말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여 동 협약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도 참고 자료

2007. 3. 1. (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지도팀			
책 임 자	이기연 팀장 (3786-8392)	담 당 자	감용규 조사역 (3786-8398)	
배 포 일	2007.2.27 (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8매

제 목 : '06년말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 실적 및 매각추진현황

□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이후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 '01.9월 기촉법 시행이후 '06.12월까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모두 71개사***로서

* 워크아웃 적용기업이었으나 기촉법 제정에 따라 기촉법 소급적용기업 **40개사**, 기촉법 신규적용 **25개사**, '05년말 기촉법 종료 후 채권은행 협약 적용 **6개사**

○ 이 중 **47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종료**함으로써 현재까지의 **구조조정 성공률**은 **66.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 **11개사**는 **채권단 관리가 중단**되어 현재 회생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 나머지 **13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기촉법 시행이후 부실징후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31개*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실적**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 기촉법 신규적용기업 **25개사**와 기촉법 종료 후 협약적용 기업 **6개사**(이 중 회생절차 진행 등 **7개사**는 지원실적이 없음)

○ 유형별로는 출자전환 13.6조원, 만기연장 15.2조원, 신규자금 지원 4.8조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31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액 37.6조원 중 **회수가능 예상액은 44.4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어**

○ 금융지원액 대비 **예상회수율도 118.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편 그 동안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주주**가 된 기업은 모두 **46개사***로서,

* 기촉법에 근거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65개사 중 **38개사**, '01.9월 기촉법 시행 이전에 워크아웃을 졸업·중단한 43개사 중 **8개사**(⇒ 그간 구조조정 총 108개사 중 46개사)

○ 이 중 **33개사**는 '06.12월 현재 채권단 지분의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 특히 '06년중에는 대우정밀, 대우건설, 대림수산, 남선알미늄 등 4개사가 매각 완료

○ 잔여 13개사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07년 이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은 그 동안 부실기업 발생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및 국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 '05년말로 기촉법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재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 이러한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촉법의 기능을 수행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안)**의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 각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회와 협약 가입절차를 거쳐 2월말경 동 협약을 본격 가동할 예정

□ 그러나 동 자율협약의 경우도 적용대상 금융기관 수의 제한, 출자전환 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 미비 등으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06년말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 실적 및 매각추진현황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 임)

'06년말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 실적 및 매각추진현황

2007. 2.

금융감독원

1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적

가. 개 요

□ **채권금융기관이 '01.9월 기촉법 시행이후부터 '06.12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총 71개사**

* 舊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 500억원 이상인 기업

○ '01.9월 기촉법 시행 이후 '05년말까지 총 **25개사**가 기촉법에 근거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 '01.8월 여·야 합의로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을 법제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05년말 종료)

○ 아울러 워크아웃 협약에 의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40개사**에 대하여도 기촉법을 적용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 한편 '05년말 기촉법이 종료된 이후 '06년중 **6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신규 선정되어 채권은행 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등을 추진

나. 추진 실적

□ 구조조정 추진기업 71개사 중 '06.12월말 현재까지 경영정상화, 제3자 매각 등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은 **47개사(성공률 66.2%)**

○ 경영정상화 완료 : 하이닉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8개사

○ 매각 완료 : 현대석유화학, 쌍용 등 29개사

○ 공동관리 중단 : 삼보컴퓨터 등 11개사(법원주도의 회생절차 등 진행 중)

⇒ 이에 따라 '06.12월말 현재 SK네트웍스, 팬택 등 13개사가 구조조정 진행 중

□ 한편 **'06년중** 경영정상화 또는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은 총 **6개사***

* 쌍용, 현대건설, 영진C&I, 대우전자부품(舊 파츠닉), 대우정밀, 대림수산

기업구조조정 추진 성과

('01.9월~'06.12월말)

(단위 : 개사)

구 분		부실징후기업 선정	관리 종료			소계	구조조정 진행중
			경영정상화	매각	중단		
기촉법 적용	신규적용	25	8	8	3	19	6
	소급적용[1]	40	10	21	4	35	5
기촉법 종료 후 신규선정		6	-	-	4	4	2
합 계		**71**	**18**	**29**	**11**	**58**	**13**

주1) 워크아웃협약에 의해 워크아웃 진행 중 기촉법 제정에 따라 동 법 적용대상으로 편입

다. 채무재조정 실적

□ 기촉법 시행 이후 선정된 31개사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한 실적은 '06.12말 현재 **총 32.8조원**

* 기촉법 신규적용기업 25개사와 기촉법 종료 후 협약적용 기업 6개사(이 중 회생절차 진행 등 7개사는 지원실적이 없음)

○ 유형별로는 채무상환 유예가 15.2조원(46.5%)으로 가장 컸으며, 대출금의 출자전환도 13.6조원(41.6%)으로 큰 비중을 차지

○ 기업별로는 하이닉스(9.2조원), 현대건설(6.9조원), SK네트웍스(6.7조원) 등 3개사의 채무재조정이 전체의 69.4%를 차지

□ 또한 채권단은 채무재조정과 함께 11개사에 대해 **총 4.8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 총 지원액 : 24개사 **37.6조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 실적[1)]

('01.9월~'06.12월말)

(단위 : 개사)

채무재조정	채무상환유예	출자전환	채무면제	기타[2)]	신규여신
32.8 (100.0)	15.2 (46.5)	13.6 (41.6)	1.6 (4.8)	2.4 (7.4)	4.8

주1) 졸업(중단)기업은 졸업(중단)시점까지의 실적 기준이며, ( )내는 구성비
2) 예대상계, CBO 및 반대매수, 환율변동 등

라. 채권 회수 실적

□ '06.12월말 현재 상기 31개사에 대한 금융지원액 37.6조원 중 **회수가능액은 4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회수율 118.3%)**

○ 21.2조원은 이미 회수되었고, 향후 출자전환주식 매각, 여신 상환 등을 통해 23.3조원이 추가 회수 가능

○ 특히 출자전환주식의 예상회수율은 172.2%로 여신의 예상회수율 87.7%를 크게 상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채권 예상 회수율

('06.12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 분	지원액 (A)	회수 현황			예상회수율 (B/A)
		기 회수	회수 예상	소 계(B)	
여 신	23.9	14.7	6.3	21.0	87.7
출자전환	13.6	6.4	17.0	23.4	172.2
합 계	**37.6**	**21.2**	**23.3**	**44.4**	**118.3**

주1) 졸업(중단)기업은 졸업(중단)시점까지의 실적 기준

2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추진 현황

□ 그 동안 기촉법 적용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최대 주주가 된 기업은 모두 **46개사**

* 기촉법에 근거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65개사 중 **38개사**, '01.9월 기촉법 시행 이전에 워크아웃을 졸업·중단한 43개사 중 **8개사**(⇒ 그간 구조조정 총 108개사 중 46개사)

○ 이 중 **33개** 기업은 '06.12월 현재 지분의 공동매각을 **완료**

○ 잔여 13개사는 현재 공동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07년 이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

□ 한편 **'06년중** 출자전환주식의 **공동매각**을 **완료**한 구조조정 기업은 총 **4개사***

* 대우정밀(S&T중공업), 대우건설(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대림수산(산은캐피탈 컨소시엄), 남선알미늄(진덕산업)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추진 현황
('06.12월말 현재)

구 분	대상 기업
매각 완료	아남반도체, 현대석유화학 등 **29개사** ('00년 ~ '05년)
	대우정밀, 대우건설 등 **4개사**('06년)
매각 예정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해양, SK네트웍스 등 **13개사**
합 계	총 46개사

3 종합평가

□ '01.9월 기촉법 시행이후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은 대기업 부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 그 동안 **금융시스템과 국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기업구조조정 성과('01.9월 ~ '06.12월)>

○ 기업구조조정 종결률이 66.2%*에 이르는 등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효율적으로 추진

* 기촉법 적용 65개사 중 47개사가 구조조정을 종료하여 72.3%의 성공률을 보였으나 기촉법 종료 후 협약적용 6개사('06년도) 중 4개사가 공동관리를 중단하여 성공률이 66.2%로 하락

○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율이 118.3%*로 기촉법 적용을 통해 문제기업 처리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 구조조정 개시 당시 기업실사를 통해 산정된 청산가치 배당률 30.7%(하이닉스 등 8개사 기준)의 3배를 초과

□ 그러나 '05년도말 기촉법이 종료된 이후 동 법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까지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공백상태가 계속**

* '06년도에 채권단이 자율적 합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6개사 중 4개사가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도중에 이를 중단

□ 이에 따라 이러한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촉법의 기능을 수행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안)**의 가동을 추진중(2월말경 본격 가동 예정)

○ 그러나 동 자율협약의 경우도 적용대상 금융기관 수의 제한*, 출자전환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 미비 등으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

* 적용대상 금융기관 수 : 자율협약 가입(319개사 예상), 舊 기촉법 적용(2,800여개사)

** 대상회사 발행주식 15%초과 취득 금지규정(은행법 §37, 보험업법 §109)의 적용 배제, 대상회사 액면미달 주식 발행시 법원 인가규정(상법 §417)의 적용 배제 등

⇒ 기업구조조정이 법과 제도의 바탕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

* '05.12월 김종률의원(열린우리당)이 기촉법 연장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재경위(금융소위)에 계류중

<참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추진 진행상황

□ '05년말 기촉법이 종료된 이후 구조조정시스템의 장기간 공백상태로 대규모 기업 부실 발생시 금융시장 혼란과 국민경제에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안)의 가동을 추진**

○ '06.12.22일 8개 금융권역별 협회장 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체제를 가동하기로 합의

○ '06.12월 각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기관(협회)으로 특별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07.1월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안)**을 마련

○ '07.2.2~2.9일 각 금융권역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내용 설명 및 가입 절차 진행 중

* '07.2.12일 자율협약 가입대상 금융기관(약 319개) 앞 가입 확인서 발송

⇒ 금융기관들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07.2월중** 대상 금융기관의 협약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체제를 2월말경 본격 가동**할 **예정**

(기촉법 재입법시에는 동 협약의 효력을 중단하고 기촉법으로 대체)

< 자율협약 주요 내용 >

○ **적용기업** :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기촉법과 동일)

○ **가입대상 금융기관** : 은행, 보증기관, 종금사, 신탁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여전사, 상호저축은행, 자산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등 (약 319개)

○ **주요내용** : 舊 기촉법의 규정을 대부분 원용하되, 자율협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

*** 기촉법 보완 사항**

- 주채권은행의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Automatic Stay)
-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 1주) 초과 출자전환주식은 채권단 결의를 거쳐 매각이 가능
- 협약의 구속력 보강을 위해 자율조정기구에 제재권한 부여
- 향후 기촉법 재입법시 동 협약의 효력이 자동 중단 등

이 석 현 의 원

1. 04년-07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증권회사별 주식위탁수수료율 및 수수료수입 현황

□ 연도별 증권회사별 주식위탁수수료율 현황

<붙임1 파일 참조>

□ 연도별 증권회사별 주식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금융회사명	FY2004	FY2005	FY2006	FY2007 1분기
교보증권(주)	560	956	724	316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	1,718	3,015	2,258	1,012
대신증권주식회사	1,580	3,070	2,242	1,004
대우증권주식회사	2,175	4,622	3,420	1,686
신영증권주식회사	245	341	278	134
서울증권주식회사	328	642	457	218
한양증권주식회사	157	306	224	94
메리츠증권	308	622	481	213
우리투자증권	1,922	3,729	2,508	1,090
부국증권주식회사	128	182	133	64
브릿지증권주식회사	170	159	107	54
HFG IB증권(주)	348	602	316	8
현대증권주식회사	2,256	4,138	2,758	1,263
한화증권주식회사	592	1,106	688	325
신흥증권주식회사	130	217	178	67
유화증권주식회사	54	87	66	27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621	1,168	948	461
SK증권주식회사	588	1,061	736	339
KGI증권	68	5	6	4
NH투자증권	218	352	267	117
(주)삼성증권	2,143	3,738	2,733	1,262
동부증권주식회사	228	476	376	176
한누리투자증권(주)	43	84	50	23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주식회사	443	746	656	239

푸르덴셜투자증권(주)	184	295	215	114
CJ투자증권(주)	206	443	371	180
한국투자증권	465	2,535	2,010	859
하나대투증권(주)	319	448	414	378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27	48	27	5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528	1,184	948	407
비엔지증권중개(주)	14	25	21	11
키움증권(주)	313	779	632	267
이트레이드증권(주)	127	202	180	67
코리아RB증권중개주식회사	26	47	35	14
홍국증권중개	26	43	31	10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695	1,091	1,121	577
골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556	734	991	345
다이와증권SMBC(주) 서울지점	48	106	87	30
메릴린치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티드증권서울지점	591	874	827	269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 증권회사서울지점	707	995	1,062	325
바클레이즈캐피탈 증권(주)서울지점	0	0	0	0
크레디아그리콜슈브르 증권 서울지점	24	6	11	1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서울지점	411	710	606	176
에이비엔암로아시아증권	231	237	201	51
도이치증권	572	512	504	217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0	0	0	0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증권서울지점	137	211	251	124
홍콩상하이증권서울지점	55	52	66	0
비엔피파리바증권중개	107	184	139	62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543	692	611	204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86	112	110	42
에스지증권서울지점	11	8	40	11
맥쿼리증권	345	495	590	146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904	1,554	1,090	384
증권사전체계	**25,283**	**46,047**	**35,796**	**15,469**

1)연도별 증권회사별 주식 수수료율 현황

가. 유가증권시장 오프라인(off-line)거래

1. <2005년 3월말 기준>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교 보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굿모닝신한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동 원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대 신	0.45%	0.45%	0.45%	0.45%	0.45%(이하)	0.4%+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대 우	0.5%(미만)	0.45%+1,500(미만)	0.44%+2,500(미만)	0.43%+7,500	0.43%+7,500(미만)	0.40%+67,500(미만)	0.35%+317,500	0.35%+317,500	0.35%+317,500
신 영	0.45%	0.45%	0.45%	0.45%	0.45%(미만)	0.4%+100,000(미만)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서 울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한 양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메리츠	0.45%	0.45%	0.45%	0.45%	0.45%(미만)	0.4%+100,000(미만)	0.35%+355,000	0.35%+355,000	0.35%+355,000
LG투자	0.45%	0.45%	0.45%	0.45%	0.45%(미만)	0.45%+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부 국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브릿지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하 나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현 대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우 리	0.45%	0.45%	0.45%	0.45%	0.45%(미만)	0.40%+100,000(미만)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한 화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신 흥	0.45%	0.45%	0.45%	0.45%(이하)	0.4%+50,000(이하)	0.35%+150,000(이하)	0.30%+400,000	0.30%+400,000	0.30%+400,000
유 화	0.45%	0.45%	0.45%	0.45%	0.45%(이하)	0.4%+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동양종합금융	0.50%	0.50%	0.50%	0.50%	0.50%(미만)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S K	0.50%	0.5%(미만)	0.49%(미만)	0.48%	0.48%(미만)	0.45%+60,000(이하)	0.40%+310,000	0.40%+310,000	0.40%+310,000
K G I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세 종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삼 성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동 부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한누리투자	0.45%	0.45%	0.45%	0.45%	0.45%(이하)	0.4%+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씨티그룹글로벌마켓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푸르덴셜투자	0.50%	0.50%	0.50%	0.50%	0.50%(이하)	0.40%+100,000	0.40%+100,000	0.40%+100,000	0.40%+100,000
CJ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0.45%+100,000(미만)	0.4%+350,000	0.4%+350,000	0.4%+350,000
미래에셋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이트레이드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코리아RB	0.50%	0.50%	0.50%	0.50%	0.50%(미만)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동양오리온투자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리딩투자	0.50%	0.50%	0.50%	0.50%(이하)	0.40%+100,000	0.40%+100,000(이하)	0.30%+600,000(이하)	0.20%+1,600,000(이하)	0.15%+4,100,000
한국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0.45%+100,000(미만)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대한투자	0.50%	0.50%	0.50%	0.50%	0.5%(미만)	0.45%+100,000(미만)	0.4%+350,000	0.4%+350,000	0.4%+350,000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BNG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피데스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도이치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Merrill Lynch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홍콩상하이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J.P. Morgan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Daiwa SMBC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Barclays Capital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UBS	0.50%	0.50%	0.50%	0.50%	0.5%(이하)	0.40%+100,000(이하)	0.30%	0.30%	0.30%
Nomura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맥쿼리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35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ABN AMRO	0.50%	0.50%	0.50%	0.50%	0.50%	0.45%+100,000(이하)	0.45%+350,000	0.45%+350,000	0.45%+350,000
Morgan Stanley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CSFB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CLSA 코리아	0.45%	0.45%	0.45%	0.45%	0.45%(이하)	0.4%+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S G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미만)	0.4%+350,000	0.4%+350,000	0.4%+350,000
Goldman Sachs	0.50%	0.50%	0.50%	0.50%	0.5%(미만)	0.45%+100,000(미만)	0.30%	0.30%	0.30%
Lehman Brothers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BNP 파리바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2. <2006년 3월말 기준>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교 보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굿모닝신한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대 신	0.50%	0.50%	0.50%(이하)	0.45%+25,000(이하)	0.40%+75,000(이하)	0.35%+175,000(이하)	0.35%+425,000	0.35%+425,000	0.35%+425,000
대 우	0.50%	0.50%	0.50%	0.50%	0.5%(미만)	0.45%+100,000(미만)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신 영	0.45%	0.45%	0.45%	0.45%	0.45%(미만)	0.4%+100,000(미만)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서 울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한 양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메리츠	0.50%	0.50%	0.50%(미만)	0.45%+25,000(이하)	0.43%+45,000(이하)	0.40%+105,000(이하)	0.35%+355,000	0.35%+355,000	0.35%+355,000
우리투자	0.50%	0.50%(미만)	0.45%+5.000(미만)	0.43%+15.000	0.43%+15.000(미만)	0.40%+75,000(미만)	0.35%+325,000	0.35%+325,000	0.35%+325,000
부 국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브릿지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하 나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현 대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한 화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신 흥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유 화	0.45%	0.45%	0.45%	0.45%	0.45%(이하)	0.4%+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동양종합금융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S K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K G I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세 종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삼 성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동 부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한누리투자	0.45%	0.45%	0.45%	0.45%	0.45%(이하)	0.4%+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씨티그룹글로벌마켓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푸르덴셜투자	0.50%	0.50%	0.50%	0.50%	0.5%(이하)	0.40%+100,000	0.40%+100,000	0.40%+100,000	0.40%+100,000
CJ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0.45%+100,000(미만)	0.4%+350,000	0.4%+350,000	0.4%+350,000
미래에셋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이트레이드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코리아RB	0.50%	0.50%	0.50%	0.50%	0.50%(미만)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리딩투자	0.50%	0.50%	0.50%	0.50%(이하)	0.40%+100,000	0.40%+100,000(이하)	0.30%+600,000(이하)	0.20%+1,600,000(이하)	0.15%+4,100,000
한국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0.45%+100,000(미만)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대한투자	0.50%	0.50%	0.50%	0.50%	0.5%(미만)	0.45%+100,000(미만)	0.4%+350,000	0.4%+350,000	0.4%+350,000
BNG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피데스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도이치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Merrill Lynch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HSBC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J.P. Morgan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Daiwa SMBC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Barclays Capital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UBS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Nomura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맥쿼리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35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ABN AMRO	0.50%	0.50%	0.50%	0.50%	0.50%	0.45%+100,000(이하)	0.45%+350,000	0.45%+350,000	0.45%+350,000
Morgan Stanley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CSFB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CLSA 코리아	0.45%	0.45%	0.45%	0.45%	0.45%(이하)	0.4%+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S G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미만)	0.4%+350,000	0.4%+350,000	0.4%+350,000
Goldman Sachs	0.50%	0.50%	0.50%	0.50%	0.5%(미만)	0.45%+100,000(미만)	0.4%+350,000	0.4%+350,000	0.4%+350,000
Lehman Brothers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BNP 파리바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키움닷컴	-	-	-	-	-	-	-	-	-

3. <2007년 3월말 기준>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교보	0.50%	0.50%	0.50%	0.50%	0.50%(이하)
굿모닝신한	0.50%	0.50%	0.50%	0.50%	0.50%(이하)
대신	0.50%	0.50%	0.50%(이하)	0.45%+25,000(이하)	0.40%+75,000(이하)
대우	0.50%	0.50%	0.50%	0.50%	0.50%(미만)
신영	0.45%	0.45%	0.45%	0.45%	0.45%(미만)
서울	0.50%	0.50%	0.50%	0.50%	0.50%(이하)
한양	0.50%	0.50%	0.50%	0.50%	0.50%(이하)
메리츠	0.50%	0.50%	0.50%	0.50%	0.50%(이하)
우리투자	0.50%	0.50%(미만)	0.45%+5.000(미만)	0.43%+15.000	0.43%+15.000(미만)
부국	0.45%	0.45%	0.45%	0.45%	0.45%(이하)
브릿지	0.45%	0.45%	0.45%	0.45%	0.45%(이하)
HFG IB	0.50%	0.50%	0.50%	0.50%	0.50%(이하)
현대	0.50%	0.50%	0.50%	0.50%	0.50%(이하)
한화	0.50%	0.50%	0.50%	0.50%	0.50%(미만)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신흥	0.45%	0.45%	0.45%	0.45%	0.45%(이하)
유화	0.45%	0.45%	0.45%	0.45%	0.45%(이하)
동양종합금융	0.50%	0.50%	0.50%	0.50%	0.50%(이하)
SK	0.50%	0.50%	0.50%	0.50%	0.50%(이하)
KGI	0.45%	0.45%	0.45%	0.45%	0.45%(이하)
NH투자	0.50%	0.50%	0.50%	0.50%	0.50%(이하)
삼성	0.50%	0.50%	0.50%	0.50%	0.50%(이하)
동부	0.45%	0.45%	0.45%	0.45%	0.45%(이하)
한누리투자	0.45%	0.45%	0.45%	0.45%	0.45%(이하)
씨티그룹글로벌마켓	0.50%	0.50%	0.50%	0.50%	0.50%(이하)
푸르덴셜투자	0.50%	0.50%	0.50%	0.50%	0.50%(이하)
CJ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미래에셋	0.45%	0.45%	0.45%	0.45%	0.45%(이하)
이트레이드	0.30%	0.30%	0.30%	0.30%	0.30%
코리아RB	0.50%	0.50%	0.50%	0.50%	0.50%(미만)
리딩투자	0.50%	0.50%	0.50%	0.50%(이하)	0.40%+100,000
한국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하나대투	0.50%	0.50%	0.50%	0.50%	0.50%(미만)
BNG	0.50%	0.50%	0.50%	0.50%	0.50%(이하)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흥국증권중개	0.50%	0.50%	0.50%	0.50%	0.50%(이하)
도이치	0.50%	0.50%	0.50%	0.50%	0.50%(이하)
Merrill Lynch	0.50%	0.50%	0.50%	0.50%	0.50%(이하)
HSBC	0.50%	0.50%	0.50%	0.50%	0.50%(이하)
J.P. Morgan	0.50%	0.50%	0.50%	0.50%	0.50%(이하)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0.1~0.2%	0.1~0.2%	0.1~0.2%	0.1~0.2%	0.1~0.2%
Daiwa SMBC	0.50%	0.50%	0.50%	0.50%	0.50%(이하)
Barclays Capital	0.40%	0.40%	0.40%	0.40%	0.40%
UBS	0.50%	0.50%	0.50%	0.50%	0.50%(이하)
Nomura	0.40%	0.40%	0.40%	0.40%	0.40%
맥쿼리	0.50%	0.50%	0.50%	0.50%	0.50%(이하)
ABN AMRO	0.50%	0.50%	0.50%	0.50%	0.50%(이하)
Morgan Stanley	0.50%	0.50%	0.50%	0.50%	0.50%(이하)
크레디트스위스	0.50%	0.50%	0.50%	0.50%	0.50%(이하)
CLSA코리아	0.45%	0.45%	0.45%	0.45%	0.45%(이하)
SG	0.50%	0.50%	0.50%	0.50%	0.50%(이하)
Goldman Sachs	0.50%	0.50%	0.50%	0.50%	0.50%(미만)
Lehman Brothers	0.40%	0.40%	0.40%	0.40%	0.40%
BNP 파리바	0.50%	0.50%	0.50%	0.50%	0.50%(이하)
키움닷컴	-	-	-	-	-

4. <2007년 6월말 기준>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교보	0.50%	0.50%	0.50%	0.50%	0.50%(이하)
굿모닝신한	0.50%	0.50%	0.50%	0.50%	0.50%(이하)
대신	0.50%	0.50%	0.50%(이하)	0.45%+25,000(이하)	0.40%+75,000(이하)
대우	0.50%	0.50%	0.50%	0.50%	0.50%(미만)
신영	0.45%	0.45%	0.45%	0.45%	0.45%(미만)
서울	0.50%	0.50%	0.50%	0.50%	0.50%(이하)
한양	0.50%	0.50%	0.50%	0.50%	0.50%(이하)
메리츠	0.50%	0.50%	0.50%	0.50%	0.50%(이하)
우리투자	0.50%	0.50%(미만)	0.45%+5.000(미만)	0.43%+15.000	0.43%+15.000(미만)
부국	0.45%	0.45%	0.45%	0.45%	0.45%(이하)
브릿지	0.45%	0.45%	0.45%	0.45%	0.45%(이하)
HFG IB	0.50%	0.50%	0.50%	0.50%	0.50%(이하)
현대	0.50%	0.50%	0.50%	0.50%	0.50%(이하)
한화	0.50%	0.50%	0.50%	0.50%	0.50%(이하)
신흥	0.45%	0.45%	0.45%	0.45%	0.45%(이하)
유화	0.45%	0.45%	0.45%	0.45%	0.45%(이하)
동양종합금융	0.50%	0.50%	0.50%	0.50%	0.50%(이하)
SK	0.50%	0.50%	0.50%	0.50%	0.50%(이하)
KGI	0.45%	0.45%	0.45%	0.45%	0.45%(이하)
NH투자	0.50%	0.50%	0.50%	0.50%	0.50%(이하)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삼성	0.50%	0.50%	0.50%	0.50%	0.50%(이하)
동부	0.45%	0.45%	0.45%	0.45%	0.45%(이하)
한누리투자	0.45%	0.45%	0.45%	0.45%	0.45%(이하)
씨티그룹글로벌마켓	0.50%	0.50%	0.50%	0.50%	0.50%(이하)
푸르덴셜투자	0.50%	0.50%	0.50%	0.50%	0.50%(이하)
CJ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미래에셋	0.45%	0.45%	0.45%	0.45%	0.45%(이하)
이트레이드	0.30%	0.30%	0.30%	0.30%	0.30%
코리아RB	0.50%	0.50%	0.50%	0.50%	0.50%(미만)
리딩투자	0.30%	0.30%	0.30%	0.30%	0.30%
한국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하나대투	0.50%	0.50%	0.50%	0.50%	0.50%(미만)
BNG	0.50%	0.50%	0.50%	0.50%	0.50%(이하)
흥국증권중개	0.50%	0.50%	0.50%	0.50%	0.50%(이하)
도이치	0.50%	0.50%	0.50%	0.50%	0.50%(이하)
Merrill Lynch	0.50%	0.50%	0.50%	0.50%	0.50%(이하)
HSBC	0.50%	0.50%	0.50%	0.50%	0.50%(이하)
J.P. Morgan	0.50%	0.50%	0.50%	0.50%	0.50%(이하)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0.1~0.2%	0.1~0.2%	0.1~0.2%	0.1~0.2%	0.1~0.2%
Daiwa SMBC	0.50%	0.50%	0.50%	0.50%	0.50%(이하)
Barclays Capital	0.40%	0.40%	0.40%	0.40%	0.40%
UBS	0.50%	0.50%	0.50%	0.50%	0.50%(이하)
Nomura	0.40%	0.40%	0.40%	0.40%	0.40%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맥쿼리	0.50%	0.50%	0.50%	0.50%	0.50%(이하)
ABN AMRO	0.50%	0.50%	0.50%	0.50%	0.50%(이하)
Morgan Stanley	0.50%	0.50%	0.50%	0.50%	0.50%(이하)
크레디트스위스	0.50%	0.50%	0.50%	0.50%	0.50%(이하)
CLSA코리아	0.45%	0.45%	0.45%	0.45%	0.45%(이하)
SG	0.50%	0.50%	0.50%	0.50%	0.50%(이하)
Goldman Sachs	0.50%	0.50%	0.50%	0.50%	0.50%(미만)
Lehman Brothers	0.40%	0.40%	0.40%	0.40%	0.40%
BNP 파리바	0.50%	0.50%	0.50%	0.50%	0.50%(이하)
키움닷컴	-	-	-	-	-

1)연도별 증권회사별 주식 수수료율 현황

나. 유가증권시장 온라인(on-line)거래

1. <2005년 3월말 기준>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교 보	0.15%+500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4%	0.14%	0.14%	0.14%(미만)	0.13%	0.13%(미만)	0.12%	0.12%(미만)	0.10%	0.10%	0.1%(미만)	0.07%
굿모닝신한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미만)	0.13%(미만)	0.12%(미만)	0.10%	0.10%	0.10%	0.10%
동원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미만)	0.13%+1,500	0.13%+1,500	0.13%+1,500	0.13%+1,500(미만)	0.12%	0.12%(미만)	0.10%	0.1%(미만)	0.08%	0.08%
대 신	0.18%+500	0.18%+500(미만)	0.16%	0.16%	0.16%	0.16%(이하)	0.15%	0.15%(이하)	0.14%	0.14%	0.14%(이하)	0.12%(이하)	0.10%	0.10%	0.10%	0.10%
대 우	0.50%	0.50%	0.5%(미만)	0.145%+1,200	0.145%+1,200	0.145%+1,200	0.145%+1,200	0.145%+1,200(미만)	0.14%+1,500	0.14%+1,500(미만)	0.13%+2,000(미만)	0.1%(미만)	0.08%	0.08%	0.08%	0.08%
신 영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서 울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한 양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미만)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메리츠	0.15%	0.15%	0.15%	0.15%(미만)	0.13%	0.13%	0.13%	0.13%(미만)	0.12%	0.12%	0.12%(미만)	0.1%(미만)	0.09%	0.09%	0.09%	0.09%
LG투자	0.18%+500	0.18%+500	0.18%+500	0.18%+500(미만)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미만)	0.13%+3,000	0.13%+3,000	0.13%+3,000(미만)	0.10%	0.10%	0.10%	0.10%	0.10%
부 국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이하)	0.08%	0.08%	0.08%	0.08%
브릿지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하 나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미만)	0.10%	0.10%	0.10%(미만)	0.08%	0.08%	0.08%	0.08%	0.08%
현 대	0.19%+500	0.19%+500	0.19%+500(미만)	0.19%	0.19%	0.19%	0.19%(미만)	0.17%+500(미만)	0.15%	0.15%(미만)	0.09%	0.09%	0.09%	0.09%	0.09%	0.09%
우 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미만)	0.07%	0.07%	0.07%	0.07%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한 화	0.50%	0.5%(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신 흥	0.15%+1,000	0.15%+1,000(이하)	0.15%+500	0.15%+500(이하)	0.15%	0.15%	0.15%(이하)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 화	0.30%	0.30%	0.30%(이하)	0.15%	0.15%	0.15%	0.15%	0.15%(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동양종합금융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0.14%(미만)	0.10%(미만)	0.08%	0.08%	0.08%(미만)	0.06%	0.06%	0.06%	0.06%
S K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이하)	0.14%+500	0.14%+500	0.14%+500(미만)	0.14%(미만)	0.13%	0.13%	0.13%(이하)	0.12%(이하)	0.10%	0.10%	0.10%(이하)	0.08%
세 종	0.50%	0.5%(미만)	0.05%	0.05%	0.05%	0.05%	0.05%	0.05%(미만)	0.045%	0.045%	0.045%(미만)	0.035%(미만)	0.025%	0.025%	0.025%	0.025%
삼 성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미만)	0.14%	0.14%	0.14%(미만)	0.12%(미만)	0.10%	0.10%	0.10%	0.10%
동 부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	0.40%+100,000(이하)	0.35%+350,000
푸르덴셜투자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이하)	0.10%	0.10%	0.10%	0.1%(이하)	0.07%	0.07%	0.07%	0.07%
CJ투자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미래에셋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이트레이드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코리아RB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리딩투자	1000~0.2%+1,000	1000~0.2%+1,000	1000~0.2%+1,000(이하)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대한투자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미만)	0.07%	0.07%	0.07%	0.07%(미만)	0.05%	0.05%	0.05%	0.05%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	0.45%+100,000(이하)	0.4%+350,000
키움닷컴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한국투자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미만)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2. <2006년 3월말 기준>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교 보	0.15%+500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4%	0.14%	0.14%	0.14%(미만)	0.13%	0.13%(미만)	0.12%	0.12%(미만)	0.10%	0.10%	0.10(미만)	0.07%
굿모닝신한	0.50%	0.50%(미만)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4%+2,000	0.14%+2,000	0.14%+2,000	0.14%+2,000(미만)	0.13%(미만)	0.12%(미만)	0.10%(미만)	0.09%	0.09%	0.09%
대 신	0.17%+700	0.17%+700	0.17%+700(이하)	0.16%+900	0.16%+900	0.16%+900	0.16%+900(이하)	0.15%+1,000(이하)	0.14%+1,200	0.14%+1,200(이하)	0.13%+1,500(이하)	0.10%	0.10%(이하)	0.08%	0.08%	0.08%
대 우	0.50%	0.50%	0.5%(미만)	0.145%+1,200	0.145%+1,200	0.145%+1,200	0.145%+1,200	0.145%+1,200(미만)	0.14%+1,500	0.14%+1,500(미만)	0.13%+2,000(미만)	0.1%(미만)	0.08%	0.08%	0.08%	0.08%
신 영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서 울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한 양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미만)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메리츠	0.20%+1,000	0.20%+1,000	0.20%+1,000	0.20%+1,000	0.20%+1,000	0.20%+1,000(이하)	0.14%	0.14%(이하)	0.13%	0.13%	0.13%(이하)	0.10%(이하)	0.09%	0.09%	0.09%(이하)	0.08%
우리투자	0.50%	0.50%(미만)	0.18%+700(미만)	0.17%+800	0.17%+800	0.17%+800	0.17%+800(미만)	0.16%+1,000(미만)	0.14%+1,200	0.14%+1,200(미만)	0.13%+2,000(미만)	0.11%(미만)	0.10%(미만)	0.09%	0.09%	0.09%
부 국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이하)	0.08%	0.08%	0.08%	0.08%
브릿지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하 나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미만)	0.10%	0.10%	0.10%(미만)	0.08%	0.08%	0.08%	0.08%	0.08%
현 대	0.19%+500	0.19%+500	0.19%+500(미만)	0.19%	0.19%	0.19%	0.19%(미만)	0.17%+500(미만)	0.15%	0.15%(미만)	0.09%	0.09%	0.09%	0.09%	0.09%	0.09%
한 화	0.50%	0.5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신 흥	0.15%+1,000	0.15%+1,000(이하)	0.15%+500	0.15%+500(이하)	0.15%	0.15%	0.15%(이하)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유 화	0.30%	0.30%	0.30%(이하)	0.15%	0.15%	0.15%	0.15%	0.15%(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동양종합금융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0.14%(미만)	0.10%(미만)	0.08%	0.08%	0.08%(미만)	0.06%	0.06%	0.06%	0.06%
S K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이하)	0.14%+500	0.14%+500	0.14%+500(이하)	0.14%(이하)	0.13%	0.13%	0.13%(이하)	0.12%(이하)	0.10%	0.10%	0.10%(이하)	0.08%
K G I	-	-	-	-	-	-	-	-	-	-	-	-	-	-	-	-
세 종	0.50%	0.5%(미만)	0.05%	0.05%	0.05%	0.05%	0.05%	0.05%(미만)	0.05%	0.05%	0.045%(미만)	0.035%(미만)	0.03%	0.03%	0.03%	0.03%
삼 성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3%+3,000	0.13%+3,000	0.13%+3,000(미만)	0.12%(미만)	0.10%	0.10%(미만)	0.08%	0.08%
동 부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미만)	0.05%+28,000	0.05%+28,000	0.05%+28,000	0.05%+28,000
푸르덴셜투자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이하)	0.10%	0.10%	0.10%	0.10%(이하)	0.07%	0.07%	0.07%	0.07%
제일투자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0.12%+1,500(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미래에셋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이트레이드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코리아RB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리딩투자	1000~0.2%+1,000	1000~0.2%+1,000	1000~0.2%+1,000(이하)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0.1%~0.3%
대한투자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미만)	0.07%	0.07%	0.07%	0.07%(미만)	0.05%	0.05%	0.05%	0.05%
크레디아그리콜엠도수에즈슈브르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	0.45%+100,000(이하)	0.4%+350,000
키움닷컴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한국투자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미만)	0.13%+1,500	0.13%+1,500	0.13%+1,500	0.13%+1,500(미만)	0.12%	0.12%(미만)	0.10%	0.10%(미만)	0.08%	0.08%

3. <2007년 3월말 기준>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SK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이하)	0.14%+500	0.14%+500
메리츠	0.20%+2,000	0.20%+2,000	0.20%+2,000(이하)	0.20%+1,000	0.20%+1,000	0.20%+1,000(이하)
푸르덴셜투자	0.15%	0.15%	0.15%	0.15%	0.15%	0.15%
CJ투자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한화	0.50%	0.5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미래에셋	0.03%	0.03%	0.03%	0.03%	0.03%	0.03%
한양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유화	0.30%	0.30%	0.30%(이하)	0.15%	0.15%	0.15%
우리투자	0.50%	0.50%(미만)	0.18%+700(미만)	0.17%+800	0.17%+800	0.17%+800
동부	0.10%	0.10%	0.10%	0.10%	0.10%	0.10%
브릿지	0.15%	0.15%	0.15%	0.15%	0.15%	0.15%
굿모닝신한	0.50%	0.50%(미만)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서울	0.10%	0.10%	0.10%	0.10%	0.10%	0.10%
하나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신흥	0.15%+1,000	0.15%+1,000(이하)	0.15%+500	0.15%+500(이하)	0.15%	0.15%
대우	0.50%	0.50%	0.5%(미만)	0.145%+1,200	0.145%+1,200	0.145%+1,200
키움닷컴	0.03%	0.03%	0.03%	0.03%	0.03%	0.03%
부국	0.10%	0.10%	0.10%	0.10%	0.10%	0.10%
삼성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교보	0.15%+500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4%	0.14%
NH투자	0.50%	0.5%(미만)	0.05%	0.05%	0.05%	0.05%
현대	0.19%+500	0.19%+500	0.19%+500(미만)	0.19%	0.19%	0.19%
한국투자	0.50%	0.5%(미만)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미만)
신영	0.10%	0.10%	0.10%	0.10%	0.10%	0.10%
대신	0.17%+700	0.17%+700	0.17%+700(이하)	0.16%+900	0.16%+900	0.16%+900
이트레이드	0.02%	0.02%	0.02%	0.02%	0.02%	0.02%
코리아RB	0.10%	0.10%	0.10%	0.10%	0.10%	0.10%
동양종합금융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리딩투자	1000~0.2%+1,000	1000~0.2%+1,000	1000~0.2%+1,000(이하)	0.1%~0.3%	0.1%~0.3%	0.1%~0.3%
대한투자	0.10%	0.10%	0.10%	0.10%	0.10%	0.10%

4. <2007년 6월말 기준>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교보	0.15%+500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4%	0.14%
굿모닝신한	0.50%	0.50%(미만)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대신	0.17%+700	0.17%+700	0.17%+700(이하)	0.16%+900	0.16%+900	0.16%+900
대우	0.50%	0.50%	0.5%(미만)	0.145%+1,200	0.145%+1,200	0.145%+1,200
신영	0.10%	0.10%	0.10%	0.10%	0.10%	0.10%
서울	0.18%	0.18%(이하)	0.15%+1,000(이하)	0.14%+500	0.14%+500	0.14%+500
한양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메리츠	0.20%+2,000	0.20%+2,000	0.20%+2,000(이하)	0.20%+1,000	0.20%+1,000	0.20%+1,000(이하)
우리투자	0.50%	0.50%(미만)	0.18%+700(미만)	0.17%+800	0.17%+800	0.17%+800
부국	0.10%	0.10%	0.10%	0.10%	0.10%	0.10%
브릿지	0.15%	0.15%	0.15%	0.15%	0.15%	0.15%
HFG IB	0.10%+2,000	0.10%+2,000	0.10%+2,000	0.10%+2,000	0.10%+2,000	0.10%+2,000
현대	0.19%+500	0.19%+500	0.19%+500(미만)	0.19%	0.19%	0.19%
한화	0.50%	0.5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신흥	0.15%+1,000	0.15%+1,000(이하)	0.15%+500	0.15%+500(이하)	0.15%	0.15%
유화	0.30%	0.30%	0.30%(이하)	0.15%	0.15%	0.15%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동양종합금융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SK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이하)	0.14%+500	0.14%+500
NH투자	0.50%	0.50%(미만)	0.05%	0.05%	0.05%	0.05%
삼성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동부	0.10%	0.10%	0.10%	0.10%	0.10%	0.10%
CJ투자	0.40%	0.40%	0.40%(미만)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미래에셋	0.03%	0.03%	0.03%	0.03%	0.03%	0.03%
이트레이드	0.02%	0.02%	0.02%	0.02%	0.02%	0.02%
푸르덴셜투자	0.15%	0.15%	0.15%	0.15%	0.15%	0.15%
리딩투자	500	500	500	500(이하)	0.03%	0.03%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	-	-	-	-	-
하나대투	0.10%	0.10%	0.10%	0.10%	0.10%	0.10%
코리아RB	0.10%	0.10%	0.10%	0.10%	0.10%	0.10%
키움닷컴	0.03%	0.03%	0.03%	0.03%	0.03%	0.03%
한국투자	0.50%	0.50%(미만)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미만)

1)연도별 증권회사별 주식 수수료율 현황

다. 코스닥시장 오프라인(off-line)거래

1. <2005년 3월말 기준>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교 보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굿모닝신한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동 원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대 신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대 우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신 영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서 울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한 양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메리츠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LG투자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부 국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브릿지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하 나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현 대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우 리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한 화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신 흥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유 화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동양종합금융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S K	0.50%	0.5%(미만)	0.49%(미만)	0.48%	0.48%(미만)	0.45%+60,000(이하)	0.40%+310,000	0.40%+310,000	0.40%+310,000
K G I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세 종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삼 성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동 부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한누리투자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씨티그룹글로벌마켓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푸르덴셜투자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CJ투자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미래에셋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이트레이드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코리아RB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동양오리온투자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리딩투자	0.40%	0.40%	0.40%	0.40%(이하)	0.35%+50,000	0.35%+50,000(이하)	0.30%+300,000(이하)	0.20%+1,300,000(이하)	0.15%+3,800,000
한국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0.45%+100,000(미만)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대한투자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BNG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피데스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도이치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Merrill Lynch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홍콩상하이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J.P. Morgan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Daiwa SMBC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Barclays Capital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UBS	0.4%+350,000	0.4%+350,000	0.4%+350,000	0.4%+350,000	0.4%+350,000(이하)	0.40%	0.40%	0.40%	0.40%
Nomura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맥쿼리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ABN AMRO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Morgan Stanley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CSFB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CLSA 코리아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S G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미만)	0.4%+350,000	0.4%+350,000	0.4%+350,000
Goldman Sachs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Lehman Brothers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BNP 파리바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2. <2006년 3월말 기준>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교 보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굿모닝신한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대 신	0.50%	0.50%	0.50%(이하)	0.45%+25,000(이하)	0.40%+75,000(이하)	0.35%+175,000(이하)	0.35%+425,000	0.35%+425,000	0.35%+425,000
대 우	0.50%	0.50%	0.50%	0.50%	0.5%(미만)	0.45%+100,000(미만)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신 영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서 울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한 양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메리츠	0.50%	0.50%(이하)	0.45%+5000(이하)	0.43%+15,000(이하)	0.43%+45,000(이하)	0.40%+105,000(이하)	0.35%+355,000	0.35%+355,000	0.35%+355,000
우리투자	0.50%	0.50%(미만)	0.45%+5.000(미만)	0.43%+15.000	0.43%+15.000(미만)	0.40%+75,000(미만)	0.35%+325,000	0.35%+325,000	0.35%+325,000
부 국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브릿지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하 나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현 대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한 화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신 흥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유 화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동양종합금융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S K	0.50%	0.50%	0.50%	0.50%	0.50%(이하)	0.45%+100,000(이하)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K G I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세 종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삼 성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이하)	0.4%+350,000	0.4%+350,000	0.4%+350,000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동 부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한누리투자	0.45%	0.45%	0.45%	0.45%	0.45%(이하)	0.4%+100,000(이하)	0.35%+350,000	0.35%+350,000	0.35%+350,000
씨티그룹글로벌마켓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푸르덴셜투자	0.50%	0.50%	0.50%	0.50%	0.5%(이하)	0.40%+100,000	0.40%+100,000	0.40%+100,000	0.40%+100,000
CJ투자	-	-	-	-	-	-	-	-	-
미래에셋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이트레이드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코리아RB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리딩투자	0.40%	0.40%	0.40%	0.40%(이하)	0.35%+50,000	0.35%+50,000(이하)	0.30%+300,000(이하)	0.20%+1,300,000(이하)	0.15%+3,800,000
한국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0.45%+100,000(미만)	0.40%+350,000	0.40%+350,000	0.40%+350,000
대한투자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BNG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피데스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도이치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Merrill Lynch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HSBC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J.P. Morgan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Daiwa SMBC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Barclays Capital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UBS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Nomura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맥쿼리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회사명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ABN AMRO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Morgan Stanley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CSFB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CLSA 코리아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S G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미만)	0.4%+350,000	0.4%+350,000	0.4%+350,000
Goldman Sachs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Lehman Brothers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BNP 파리바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키움닷컴	-	-	-	-	-	-	-	-	-

3. <2007년 3월말 기준>

회사명	1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SK	0.50%	0.50%	0.50%	0.50%	0.50%(이하)
메리츠	0.50%	0.50%	0.50%	0.50%	0.50%(이하)
푸르덴셜투자	0.50%	0.50%	0.50%	0.50%	0.50%(이하)
Morgan Stanley	0.40%	0.40%	0.40%	0.40%	0.40%
Lehman Brothers	0.40%	0.40%	0.40%	0.40%	0.40%
CJ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한화	0.50%	0.50%	0.50%	0.50%	0.50%(미만)
BNP 파리바	0.40%	0.40%	0.40%	0.40%	0.40%
미래에셋	0.40%	0.40%	0.40%	0.40%	0.40%
한양	0.50%	0.50%	0.50%	0.50%	0.50%(이하)
흥국증권중개	0.40%	0.40%	0.40%	0.40%	0.40%
Merrill Lynch	0.40%	0.40%	0.40%	0.40%	0.40%
유화	0.40%	0.40%	0.40%	0.40%	0.40%
우리투자	0.50%	0.50%(미만)	0.45%+5000(미만)	0.43%+15000	0.43%+15000(미만)
동부	0.45%	0.45%	0.45%	0.45%	0.45%(이하)
ABN AMRO	0.40%	0.40%	0.40%	0.40%	0.40%

회사명	1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Daiwa SMBC	0.40%	0.40%	0.40%	0.40%	0.40%
도이치	0.40%	0.40%	0.40%	0.40%	0.40%
씨티그룹글로벌마켓	0.40%	0.40%	0.40%	0.40%	0.40%
SG	0.50%	0.50%	0.50%	0.50%	0.50%(이하)
브릿지	0.40%	0.40%	0.40%	0.40%	0.40%
굿모닝신한	0.50%	0.50%	0.50%	0.50%	0.50%(이하)
Goldman Sachs	0.40%	0.40%	0.40%	0.40%	0.40%
CLSA코리아	0.40%	0.40%	0.40%	0.40%	0.40%
서울	0.50%	0.50%	0.50%	0.50%	0.50%(이하)
Barclays Capital	0.40%	0.40%	0.40%	0.40%	0.40%
Nomura	0.40%	0.40%	0.40%	0.40%	0.40%
BNG	0.40%	0.40%	0.40%	0.40%	0.40%
하나	0.50%	0.50%	0.50%	0.50%	0.50%(이하)
맥쿼리	0.40%	0.40%	0.40%	0.40%	0.40%
신흥	0.45%	0.45%	0.45%	0.45%	0.45%(이하)
대우	0.50%	0.50%	0.50%	0.50%	0.50%(미만)
부국	0.40%	0.40%	0.40%	0.40%	0.40%
HSBC	0.40%	0.40%	0.40%	0.40%	0.40%

회사명	1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삼성	0.50%	0.50%	0.50%	0.50%	0.50%(미만)
교보	0.50%	0.50%	0.50%	0.50%	0.50%(이하)
UBS	0.40%	0.40%	0.40%	0.40%	0.40%
크레디트스위스	0.40%	0.40%	0.40%	0.40%	0.40%
NH투자	0.40%	0.40%	0.40%	0.40%	0.40%
KGI	0.40%	0.40%	0.40%	0.40%	0.40%
현대	0.50%	0.50%	0.50%	0.50%	0.50%(이하)
한국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한누리투자	0.45%	0.45%	0.45%	0.45%	0.45%(이하)
신영	0.40%	0.40%	0.40%	0.40%	0.40%
대신	0.50%	0.50%	0.50%(이하)	0.45%+25,000(이하)	0.40%+75,000(이하)
이트레이드	0.30%	0.30%	0.30%	0.30%	0.30%
J.P. Morgan	0.40%	0.40%	0.40%	0.40%	0.40%
코리아RB	0.50%	0.50%	0.50%	0.50%	0.50%(미만)
동양종합금융	0.50%	0.50%	0.50%	0.50%	0.50%(이하)
리딩투자	0.40%	0.40%	0.40%	0.40%(이하)	0.35%+50,000(이하)
대한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4. <2007년 6월말 기준>

회사명	1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교보	0.50%	0.50%	0.50%	0.50%	0.50%(이하)
굿모닝신한	0.50%	0.50%	0.50%	0.50%	0.50%(이하)
대신	0.50%	0.50%	0.50%(이하)	0.45%+25,000(이하)	0.40%+75,000(이하)
대우	0.50%	0.50%	0.50%	0.50%	0.50%(미만)
신영	0.40%	0.40%	0.40%	0.40%	0.40%
서울	0.50%	0.50%	0.50%	0.50%	0.50%(이하)
한양	0.50%	0.50%	0.50%	0.50%	0.50%(이하)
메리츠	0.50%	0.50%	0.50%	0.50%	0.50%(이하)
우리투자	0.50%	0.50%(미만)	0.45%+5,000(미만)	0.43%+15,000	0.43%+15,000(미만)
부국	0.40%	0.40%	0.40%	0.40%	0.40%
브릿지	0.40%	0.40%	0.40%	0.40%	0.40%
HFG IB	0.50%	0.50%	0.50%	0.50%	0.50%(이하)
현대	0.50%	0.50%	0.50%	0.50%	0.50%(이하)
한화	0.40%	0.40%	0.40%	0.40%	0.40%
신흥	0.45%	0.45%	0.45%	0.45%	0.45%(이하)
유화	0.40%	0.40%	0.40%	0.40%	0.40%
동양종합금융	0.50%	0.50%	0.50%	0.50%	0.50%(이하)
SK	0.50%	0.50%	0.50%	0.50%	0.50%(이하)
KGI	0.40%	0.40%	0.40%	0.40%	0.40%
NH투자	0.40%	0.40%	0.40%	0.40%	0.40%

회사명	1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삼성	0.50%	0.50%	0.50%	0.50%	0.50%(이하)
동부	0.45%	0.45%	0.45%	0.45%	0.45%(이하)
CJ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미래에셋	0.40%	0.40%	0.40%	0.40%	0.40%
이트레이드	0.02%	0.02%	0.02%	0.02%	0.02%
코리아RB	0.50%	0.50%	0.50%	0.50%	0.50%(미만)
하나대투	0.50%	0.50%	0.50%	0.50%	0.50%(미만)
한국투자	0.50%	0.50%	0.50%	0.50%	0.50%(미만)
한누리투자	0.45%	0.45%	0.45%	0.45%	0.45%(이하)
씨티그룹글로벌마켓	0.40%	0.40%	0.40%	0.40%	0.40%
푸르덴셜투자	0.50%	0.50%	0.50%	0.50%	0.50%(이하)
도이치	0.40%	0.40%	0.40%	0.40%	0.40%
Merrill Lynch	0.40%	0.40%	0.40%	0.40%	0.40%
리딩투자	0.30%	0.30%	0.30%	0.30%	0.30%
BNG	0.40%	0.40%	0.40%	0.40%	0.40%
흥국증권중개	0.40%	0.40%	0.40%	0.40%	0.40%
BNP 파리바	0.40%	0.40%	0.40%	0.40%	0.40%
CLSA코리아	0.40%	0.40%	0.40%	0.40%	0.40%
J.P. Morgan	0.40%	0.40%	0.40%	0.40%	0.40%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0.1~0.2%	0.1~0.2%	0.1~0.2%	0.1~0.2%	0.1~0.2%
Barclays Capital	0.40%	0.40%	0.40%	0.40%	0.40%
UBS	0.40%	0.40%	0.40%	0.40%	0.40%
Nomura	0.40%	0.40%	0.40%	0.40%	0.40%

회사명	1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맥쿼리	0.40%	0.40%	0.40%	0.40%	0.40%
ABN AMRO	0.40%	0.40%	0.40%	0.40%	0.40%
Morgan Stanley	0.40%	0.40%	0.40%	0.40%	0.40%
크레디트스위스	0.40%	0.40%	0.40%	0.40%	0.40%
SG	0.50%	0.50%	0.50%	0.50%	0.50%(이하)
Goldman Sachs	0.40%	0.40%	0.40%	0.40%	0.40%
Lehman Brothers	0.40%	0.40%	0.40%	0.40%	0.40%
HSBC	0.40%	0.40%	0.40%	0.40%	0.40%
Daiwa SMBC	0.40%	0.40%	0.40%	0.40%	0.40%

1)연도별 증권회사별 주식 수수료율 현황

라. 코스닥시장 온라인(on-line)거래

1. <2005년 3월말 기준>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교 보	0.15%+500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2%	0.12%	0.12%	0.12%(미만)	0.10%	0.10%(미만)	0.09%	0.09%(미만)	0.07%	0.07%	0.07%	0.07%
굿모닝신한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미만)	0.13%(미만)	0.12%(미만)	0.10%	0.10%	0.10%	0.10%
동원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미만)	0.13%+1,500	0.13%+1,500	0.13%+1,500	0.13%+1,500(미만)	0.12%	0.12%(미만)	0.10%	0.1%(미만)	0.08%	0.08%
대 신	0.18%+500	0.18%+500(미만)	0.16%	0.16%	0.16%	0.16%(이하)	0.15%	0.15%(이하)	0.14%	0.14%	0.14%(이하)	0.12%(이하)	0.10%	0.10%	0.10%	0.10%
대 우	0.40%	0.40%	0.4%(미만)	0.145%+1,200	0.145%+1,200	0.145%+1,200	0.145%+1,200	0.145%+1,200(미만)	0.140%+1,500	0.140%+1,500(미만)	0.130%+2,000(미만)	0.10%(미만)	0.08%	0.08%	0.08%	0.08%
신 영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서 울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한 양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미만)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메리츠	0.15%	0.15%	0.15%	0.15%(미만)	0.13%	0.13%	0.13%	0.13%(미만)	0.12%	0.12%	0.12%(미만)	0.1%(미만)	0.09%	0.09%	0.09%	0.09%
LG투자	0.18%+500	0.18%+500	0.18%+500	0.18%+500(미만)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미만)	0.13%+3,000	0.13%+3,000	0.13%+3,000(미만)	0.10%	0.10%	0.10%	0.10%	0.10%
부 국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이하)	0.08%	0.08%	0.08%	0.08%
브릿지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하 나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미만)	0.10%	0.10%	0.10%(미만)	0.08%	0.08%	0.08%	0.08%	0.08%
현 대	0.19%+500	0.19%+500	0.19%+500(미만)	0.19%	0.19%	0.19%	0.19%(미만)	0.17%+500(미만)	0.15%	0.15%(미만)	0.09%	0.09%	0.09%	0.09%	0.09%	0.09%
우 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미만)	0.07%	0.07%	0.07%	0.07%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한 화	0.50%	0.5%(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신 흥	0.15%+1,000	0.15%+1,000(이하)	0.15%+500	0.15%+500(이하)	0.15%	0.15%	0.15%(이하)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 화	0.30%	0.30%	0.30%(이하)	0.15%	0.15%	0.15%	0.15%	0.15%(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동양종합금융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0.14%(미만)	0.10%(미만)	0.08%	0.08%	0.08%(미만)	0.06%	0.06%	0.06%	0.06%
S K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이하)	0.14%+500	0.14%+500	0.14%+500(미만)	0.14%(미만)	0.13%	0.13%	0.13%(이하)	0.12%(이하)	0.10%	0.10%	0.10%(이하)	0.08%
세 종	0.50%	0.5%(미만)	0.05%	0.05%	0.05%	0.05%	0.05%	0.05%(미만)	0.045%	0.045%	0.045%(미만)	0.035%(미만)	0.025%	0.025%	0.025%	0.025%
삼 성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미만)	0.14%	0.14%	0.14%(미만)	0.12%(미만)	0.10%	0.10%	0.10%	0.10%
동 부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이하)	0.40%	0.40%+100,000(이하)	0.35%+350,000
푸르덴셜투자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이하)	0.10%	0.10%	0.10%	0.1%(이하)	0.07%	0.07%	0.07%	0.07%
CJ투자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미래에셋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이트레이드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코리아RB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리딩투자	1000~0.2%+1,000	1000~0.2%+1,000	1000~0.2%+1,000(이하)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대한투자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미만)	0.07%	0.07%	0.07%	0.07%(미만)	0.05%	0.05%	0.05%	0.05%
크레디아그리콜엥도수에즈슈브르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키움닷컴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한국투자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	0.025%+500(미만)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2. <2006년 3월말>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교 보	0.15%+500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4%	0.14%	0.14%	0.14%(미만)	0.13%	0.13%(미만)	0.09%	0.12%(미만)	0.10%	0.10%	0.10%(미만)	0.07%
굿모닝신한	0.50%	0.50%(미만)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4%+2,000	0.14%+2,000	0.14%+2,000	0.14%+2,000(미만)	0.13%(미만)	0.12%(미만)	0.10%(이하)	0.09%	0.09%	0.09%
대 신	0.17%+700	0.17%+700	0.17%+700(이하)	0.16%+900	0.16%+900	0.16%+900	0.16%+900(이하)	0.15%+1,000(이하)	0.14%+1,200	0.14%+1,200(이하)	0.13%+1,500(이하)	0.10%	0.10%(이하)	0.08%	0.08%	0.08%
대 우	0.50%	0.50%	0.5%(미만)	0.145%+1,200	0.145%+1,200	0.145%+1,200	0.145%+1,200	0.145%+1,200(미만)	0.140%+1,500	0.140%+1,500(미만)	0.130%+2,000(미만)	0.10%(미만)	0.08%	0.08%	0.08%	0.08%
신 영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서 울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한 양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미만)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0.09%+500
메리츠	0.20%+1,000	0.20%+1,000	0.20%+1,000	0.20%+1,000	0.20%+1,000	0.20%+1,000(이하)	0.14%	0.14%(이하)	0.13%	0.13%	0.13%(이하)	0.10%(이하)	0.09%	0.09%	0.09%(이하)	0.08
우리투자	0.50%	0.50%(미만)	0.18%+700(미만)	0.17%+800	0.17%+800	0.17%+800	0.17%+800(미만)	0.16%+1,000(미만)	0.14%+1,200	0.14%+1,200(미만)	0.13%+2,000(미만)	0.11%(미만)	0.10%(미만)	0.09%	0.09%	0.09%
부 국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이하)	0.08%	0.08%	0.08%	0.08%
브릿지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하 나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미만)	0.10%	0.10%	0.10%(미만)	0.08%	0.08%	0.08%	0.08%	0.08%
현 대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이하)	0.45%+100,000	0.45%+100,000(이하)	0.4%+350,000
한 화	0.50%	0.5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신 흥	0.15%+1,000	0.15%+1,000(이하)	0.15%+500	0.15%+500(이하)	0.15%	0.15%	0.15%(이하)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초과
유 화	0.30%	0.30%	0.30%(이하)	0.15%	0.15%	0.15%	0.15%	0.15%(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동양종합금융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0.14%(미만)	0.10%(미만)	0.08%	0.08%	0.08%(미만)	0.06%	0.06%	0.06%	0.06%
S K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이하)	0.14%+500	0.14%+500	0.14%+500(이하)	0.14%(이하)	0.13%	0.13%	0.13%(이하)	0.12%(이하)	0.10%	0.1	0.10%(이하)	0.08%
K G I	-	-	-	-	-	-	-	-	-	-	-	-	-	-	-	-
세 종	0.50%	0.5%(미만)	0.05%	0.05%	0.05%	0.05%	0.05%	0.05%(미만)	0.05%	0.05%	0.045%(미만)	0.035%(미만)	0.03%	0.03%	0.03%	0.03%
삼 성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3%+3,000	0.13%+3,000	0.13%+3,000(미만)	0.12%(미만)	0.10%	0.10%(미만)	0.08%	0.08%
동 부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미만)	0.05%+28,000	0.05%+28,000	0.05%+28,000	0.05%+28,000
푸르덴셜투자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이하)	0.10%	0.10%	0.10%	0.10%(이하)	0.07%	0.07%	0.07%	0.07%
제일투자	0.14%+100,000	0.14%+100,000	0.14%+100,000	0.14%+100,000	0.14%+100,000	0.14%+100,000(미만)	0.12%+1,500(미만)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미래에셋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이트레이드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코리아RB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리딩투자	1000~0.2%+1,000	1000~0.2%+1,000	1000~0.2%+1,000(이하)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대한투자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미만)	0.07%	0.07%	0.07%	0.07%(미만)	0.05%	0.05%	0.05%	0.05%
크레디아그리콜엠도수에즈슈브르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키움닷컴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3. <2007년 3월말>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SK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이하)	0.14%+500	0.14%+500
메리츠	0.20%+2,000	0.20%+2,000	0.20%+2,000(이하)	0.20%+1,000	0.20%+1,000	0.20%+1,000(이하)
푸르덴셜투자	0.15%	0.15%	0.15%	0.15%	0.15%	0.15%
CJ투자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한화	0.50%	0.5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미래에셋	0.03%	0.03%	0.03%	0.03%	0.03%	0.03%
한양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유화	0.30%	0.30%	0.30%(이하)	0.15%	0.15%	0.15%
우리투자	0.50%	0.50%(미만)	0.18%+700(미만)	0.17%+800	0.17%+800	0.17%+800
동부	0.10%	0.10%	0.10%	0.10%	0.10%	0.10%
브릿지	0.10%	0.10%	0.10%	0.10%	0.10%	0.10%
굿모닝신한	0.50%	0.50%(미만)	0.15%+1,500(미만)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서울	0.10%	0.10%	0.10%	0.10%	0.10%	0.10%
하나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0.1%+2,000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신흥	0.15%+1,000	0.15%+1,000(이하)	0.15%+500	0.15%+500(이하)	0.15%	0.15%
대우	0.50%	0.50%	0.5%(미만)	0.145%+1,200	0.145%+1,200	0.145%+1,200
키움닷컴	0.03%	0.03%	0.03%	0.03%	0.03%	0.03%
부국	0.10%	0.10%	0.10%	0.10%	0.10%	0.10%
삼성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교보	0.15%+500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4%	0.14%
NH투자	0.50%	0.5%(미만)	0.05%	0.05%	0.05%	0.05%
현대	0.19%+500	019%+500	0.19+500%(미만)	0.19%	0.19%	0.19%
한국투자	0.50%	0.50%(미만)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미만)
신영	0.10%	0.10%	0.10%	0.10%	0.10%	0.10%
대신	0.17%+700	0.17%+700	0.17%+700(이하)	0.16%+900	0.16%+900	0.16%+900
이트레이드	0.02%	0.02%	0.02%	0.02%	0.02%	0.02%
코리아RB	0.10%	0.10%	0.10%	0.10%	0.10%	0.10%
동양종합금융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리딩투자	1000~0.2%+1,000	1000~0.2%+1,000	1000~0.2%+1,000(이하)	0.1%~0.2%	0.1%~0.2%	0.1%~0.2%
대한투자	0.10%	0.10%	0.10%	0.10%	0.10%	0.10%

4. <2007년 6월말 기준>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삼성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
교보	0.15%+500	0.15%+500	0.15%+500	0.15%+500(미만)	0.14%	0.14%
굿모닝신한	0.50%	0.50%(미만)	0.15%+1,500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대신	0.17%+700	0.17%+700	0.17%+700(이하)	0.16%+900	0.16%+900	0.16%+900
대우	0.50%	0.50%	0.50%(미만)	0.145%+1,200	0.145%+1,200	0.145%+1,200
신영	0.10%	0.10%	0.10%	0.10%	0.10%	0.10%
서울	0.18%	0.18%(이하)	0.15%+1,000(이하)	0.14%+500	0.14%+500	0.14%+500
한양	0.15%+1,500	0.15%+1,500	0.15%+1,50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메리츠	0.20%+2,000	0.20%+2,000	0.20%+2,000(이하)	0.20%+1,000	0.20%+1,000	0.20%+1,000(이하)
우리투자	0.50%	0.50%(미만)	0.18%+700(미만)	0.17%+800	0.17%+800	0.17%+800
부국	0.10%	0.10%	0.10%	0.10%	0.10%	0.10%
브릿지	0.10%	0.10%	0.10%	0.10%	0.10%	0.10%
HFG IB	0.10%+2,000	0.10%+2,000	0.10%+2,000	0.10%+2,000	0.10%+2,000	0.10%+2,000
현대	0.19%+500	0.19%+500	0.19+500%(미만)	0.19%	0.19%	0.19%

회사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한화	0.50%	0.50%(미만)	0.12%+1,000	0.12%+1,000	0.12%+1,000	0.12%+1,000
신흥	0.15%+1,000	0.15%+1,000(이하)	0.15%+500	0.15%+500(이하)	0.15%	0.15%
유화	0.30%	0.30%	0.30%(이하)	0.15%	0.15%	0.15%
동양종합금융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0.14%+1,000
SK	0.15%+1,000	0.15%+1,000	0.15%+1,000	0.15%+1,000(이하)	0.14%+500	0.14%+500
NH투자	0.50%	0.50%(미만)	0.05%	0.05%	0.05%	0.05%
동부	0.10%	0.10%	0.10%	0.10%	0.10%	0.10%
CJ투자	0.50%	0.50%	0.50%(미만)	0.14%+1,000	0.14%+1,000	0.14%+1,000(미만)
미래에셋	0.03%	0.03%	0.03%	0.03%	0.03%	0.03%
이트레이드	0.02%	0.02%	0.02%	0.02%	0.02%	0.02%
코리아RB	0.10%	0.10%	0.10%	0.10%	0.10%	0.10%
하나대투	0.10%	0.10%	0.10%	0.10%	0.10%	0.10%
한국투자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	0.13%+2,000(미만)
푸르덴셜투자	0.15%	0.15%	0.15%	0.15%	0.15%	0.15%
리딩투자	500	500	500	500(이하)	0.03%	0.03%
크레디아그리콜엠도수에즈슈브르	-	-	-	-	-	-
키움닷컴	0.03%	0.03%	0.03%	0.03%	0.03%	0.03%

2. '07년 8월말 현재 각 은행별 수수료 현황
- 창구/ATM/폰뱅킹/인터넷뱅킹, 자행/타행, 영업시간/영업외시간 구분(총수입 중 수수료 수입비중)

□ 창구/ATM/폰뱅킹/인터넷뱅킹, 자행/타행, 영업시간/영업외시간 구분

"붙임" 참조

□ 총수입 중 수수료 수입비중

은 행	영 업 수 입 [1]	수 수 료 수 입	비 중
신 한	29,138	2,430	8.3
우 리	43,403	2,300	5.3
제 일	21,603	656	3.0
하 나	21,447	1,150	5.4
외 환	17,894	1,374	7.7
한 국 씨 티	17,079	783	4.6
국 민	47,282	3,763	8.0
대 구	4,630	297	6.4
부 산	4,192	325	7.8
광 주	2,365	158	6.7
제 주	461	18	3.9
전 북	939	50	5.4
경 남	3,045	189	6.2
산 업	24,380	612	2.5
기 업	23,448	1,135	4.8
수 출 입	5,020	316	6.3
농 협	27,083	1,295	4.8
수 협	2,774	59	2.1
국 내 은 행	296,184	16,911	5.7

1) 영업수익 = 이자수입 + 비이자수입

2) '07년 상반기 기준(단위 : 억원)

3. 상호저축은행 관련

- '04년~'07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저축은행별 소액대출 취급현황

□ 저축은행 소액대출 취급현황 : 붙임 참조

<붙임>

소액신용대출 현황('04년 6월)

(단위: 백만원, %)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HK	238,691	60,609	25.4	54,224
푸른2	30,399	16,070	52.9	12,342
동부	11,639	8,375	72.0	6,879
스카이	50,757	27,767	54.7	21,669
솔로몬	114,503	57,624	50.3	46,033
프라임	2,484	941	37.9	719
민국	178	12	6.7	13
푸른	119,025	72,177	60.6	56,962
삼보	0	0	#DIV/0!	0
삼성	6,208	4,115	66.3	3,746
삼화	16,627	10,678	64.2	8,996
교원나라	6,489	675	10.4	820
서울	9,538	6,785	71.1	4,398
현대스위스이	24,344	8,659	35.6	7,145
신민	140	78	55.7	60
현대스위스	128,112	35,934	28.0	29,697
영풍	31,851	20,494	64.3	18,087
제일	153,803	-	0.0	20,567
신안	8	-	0.0	-
중앙부산	997	308	30.9	259
진흥	10,035	1,260	12.6	1,186
제일2	68,779	15,898	23.1	14,517
한국	9,111	-	0.0	-
대영	32,970	14,480	43.9	12,745
한신	19	3	15.8	3
고려	2,987	36	1.2	-
국제	573	121	21.1	105
부민	3,903	3,208	82.2	2,428
부산	552	-	0.0	-
동광	14	-	0.0	-
화승	248	32	12.9	-
부산2	284	10	3.5	-
흥국	680	7	1.0	12
파라다이스	1,841	1,337	72.6	1,065
우리	1,796	379	21.1	263
인성	8,008	700	8.7	735
금화	347	183	52.7	27
인천	60	32	53.3	-
에이스	416	12	2.9	15
신라	7,864	1,590	20.2	1,388
모아	41,377	10,732	25.9	9,278
대백	7,688	448	5.8	783
유니온	2,365	1,317	55.7	852
엠에스	4,944	2,307	46.7	1,474
안국	622	349	56.1	83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남양	876	117	13.4	-
경기	14,205	6,943	48.9	5,518
부림	80	24	30.0	-
삼신	2,456	-	0.0	-
삼정	168	19	11.3	15
평택	611	52	8.5	71
토마토	13,147	10,322	78.5	7,826
안양	2,182	638	29.2	377
영진	218	20	9.2	-
융창	1,629	629	38.6	571
세람	4,423	139	3.1	202
늘푸른	43	34	79.1	24
한진	480	367	76.5	-
분당	1,667	1,136	68.1	860
새누리	284	141	49.6	112
강원	21	10	47.6	-
도민	4,557	3,219	70.6	2,340
대명	6,819	732	10.7	665
하나로	424	296	69.8	-
청주	10,312	5,014	48.6	3,981
중부	4,976	1,754	35.2	1,579
한성	20,846	3,323	15.9	-
대전	162,364	26,560	16.4	27,943
서일	177	8	4.5	6
세종	28,539	10,247	35.9	8,919
아산	193	98	50.8	62
대성	86	12	14.0	8
한주	1,317	197	15.0	214
고려	25,377	7,152	28.2	8,036
전북	4,035	3,316	82.2	2,498
전일	99,354	46,966	47.3	40,074
스타	20,593	6,820	33.1	5,929
호남솔로몬	8,027	847	10.6	871
한일	2,920	1,107	37.9	1,053
현대	488	121	24.8	86
대한	6,400	1,656	25.9	1,336
동양	454	59	13.0	51
무등	105	12	11.4	-
센트럴	2,677	1,387	51.8	1,442
창업	13,453	4,159	30.9	3,232
한국투자	1,557	333	21.4	310
보해	12,188	3,589	29.4	3,071
상업	1,650	792	48.0	677
구미	215	-	0.0	84
삼화두리	114	10	8.8	25
대아	32,369	7,919	24.5	6,375
삼일	25,290	3,409	13.5	-
대송	83	5	6.0	4
오성	407	69	17.0	3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대원	7,472	3,045	40.8	-
에스앤티	11	6	54.5	6
경은	7,907	4,811	60.8	3,956
밀양	72	4	5.6	4
경남제일	1,641	446	27.2	387
조흥	36	-	0.0	-
진주	1,105	142	12.9	-
으뜸	7,535	5,284	70.1	3,904
미래	49	35	71.4	-
합계	1,719,960	561,294	32.6	484,282

*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07.6월 현재 영업중인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

소액신용대출 현황('05년 6월)

(단위: 백만원, %)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HK	192,727	97,196	50.4	78,944
푸른2	11,771	2,736	23.2	2,351
동부	3,268	1,805	55.2	1,375
스카이	39,823	18,023	45.3	14,926
솔로몬	96,660	35,923	37.2	28,141
프라임	211	102	48.3	83
민국	196	22	11.2	22
푸른	88,163	53,836	61.1	44,501
삼보	2	-	0.0	-
삼성	2,922	2,179	74.6	2,149
삼화	4,252	371	8.7	377
교원나라	3,212	771	24.0	743
서울	8,824	7,623	86.4	5,808
현대스위스이	12,563	3,708	29.5	3,179
신민	14	6	42.9	-
현대스위스	116,448	17,454	15.0	18,059
영풍	18,713	6,848	36.6	6,956
제일	158,050	40,376	25.5	37,824
신안	0	-	-	-
중앙부산	520	163	31.3	136
진흥	2,801	1,409	50.3	1,354
제일2	65,898	22,476	34.1	20,296
한국	2,935	-	0.0	-
대영	21,087	9,766	46.3	9,493
한신	9	1	11.1	1
고려	4,158	34	0.8	-
국제	292	82	28.1	77
부민	1,656	1,275	77.0	978
부산	130	-	0.0	-
동광	8	-	0.0	-
화승	236	43	18.2	-
부산2	72	33	45.8	28
흥국	727	11	1.5	8
파라다이스	594	483	81.3	369
우리	1,193	667	55.9	359
인성	6,521	983	15.1	971
금화	299	110	36.8	18
인천	39	8	20.5	-
에이스	130	17	13.1	16
신라	5,828	218	3.7	352
모아	33,794	9,631	28.5	8,415
대백	6,789	3,759	55.4	3,015
유니온	2,049	1,128	55.1	862
엠에스	624	236	37.8	531
안국	216	38	17.6	14
남양	258	65	25.2	64
경기	5,244	4,333	82.6	28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부림	67	-	0.0	29
삼신	402	68	16.9	-
삼정	72	9	12.5	9
평택	474	166	35.0	133
토마토	1,592	272	17.1	74
안양	1,662	720	43.3	368
영진	95	20	21.1	-
융창	690	234	33.9	224
세람	3,086	873	28.3	859
늘푸른	96	4	4.2	5
한진	296	232	78.4	236
분당	746	402	53.9	347
새누리	208	113	54.3	95
강원	21	11	52.4	-
도민	3,920	3,035	77.4	2,253
대명	4,908	315	6.4	308
하나로	129	62	48.1	31
청주	8,864	3,003	33.9	2,366
중부	3,416	1,617	47.3	1,431
한성	20,289	4,517	22.3	3,152
대전	142,237	33,662	23.7	33,517
서일	56	6	10.7	6
세종	25,112	9,918	39.5	7,984
아산	76	44	57.9	11
대성	40	5	12.5	9
한주	687	410	59.7	341
고려	29,036	7,775	26.8	7,380
전북	3,836	3,317	86.5	2,842
전일	82,753	41,653	50.3	35,581
스타	27,680	7,930	28.6	7,886
호남솔로몬	9,190	1,513	16.5	1,438
한일	586	71	12.1	66
현대	4,611	158	3.4	123
대한	4,113	1,153	28.0	946
동양	400	90	22.5	75
무등	96	7	7.3	9
센트럴	861	526	61.1	538
창업	12,743	4,256	33.4	3,286
한국투자	6,940	6,587	94.9	5,421
보해	21,772	2,896	13.3	2,495
상업	1,134	554	48.9	453
구미	180	7	3.9	90
삼화두리	63	1	1.6	2
대아	28,182	8,650	30.7	7,891
삼일	23,142	3,144	13.6	3,475
대송	64	3	4.7	4
오성	463	84	18.1	80
대원	6,251	1,011	16.2	900
에스앤티	12	4	33.3	4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경은	3,272	940	28.7	881
밀양	72	5	6.9	5
경남제일	1,226	726	59.2	659
조흥	28	-	0.0	-
진주	863	62	7.2	35
으뜸	3,282	2,089	63.7	1,713
미래	27,678	15,712	56.8	418
합계	1,441,696	516,590	35.8	431,307

*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07.6월 현재 영업중인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

소액신용대출 현황('06년 6월)

(단위: 백만원, %)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HK	120,585	78,651	65.2	69,070
푸른2	7,561	2,396	31.7	2,051
동부	1,110	481	43.3	406
스카이	22,655	15,346	67.7	12,018
솔로몬	63,107	10,778	17.1	9,097
프라임	1,636	26	1.6	40
민국	183	44	24.0	45
푸른	36,760	17,730	48.2	17,086
삼보	2	2	100.0	2
삼성	1,751	1,030	58.8	1,113
삼화	3,181	734	23.1	605
교원나라	1,864	807	43.3	804
서울	0	-	-	-
현대스위스이	6,282	2,383	37.9	2,486
신민	18	8	44.4	6
현대스위스	80,081	12,413	15.5	12,133
영풍	5,358	24	0.4	358
제일	154,629	52,705	34.1	42,521
신안	0	0	#DIV/0!	0
중앙부산	351	-	0.0	241
진흥	198	15	7.6	15
제일2	45,052	14,480	32.1	13,013
한국	419	-	0.0	27
대영	19,995	15,487	77.5	14,869
한신	8	-	0.0	-
고려	1,776	12	0.7	-
국제	126	13	10.3	13
부민	1,503	1,177	78.3	1,142
부산	45	-	0.0	263
동광	10	-	0.0	-
화승	110	15	13.6	-
부산2	52	46	88.5	49
흥국	582	4	0.7	118
파라다이스	29	2	6.9	2
우리	1,293	698	54.0	547
인성	3,902	693	17.8	29
금화	207	64	30.9	17
인천	30	7	23.3	-
에이스	19	13	68.4	11
신라	2,746	567	20.6	539
모아	23,544	7,980	33.9	7,422
대백	715	345	48.3	224
유니온	372	165	44.4	136
엠에스	314	164	52.2	334
안국	180	100	55.6	13
남양	149	58	38.9	59
경기	448	162	36.2	135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부림	2	1	50.0	-
삼신	1,486	39	2.6	-
삼정	162	1	0.6	4
평택	345	193	55.9	144
토마토	717	133	18.5	15
안양	1,575	885	56.2	535
영진	18	18	100.0	14
융창	319	277	86.8	242
세람	913	359	39.3	234
늘푸른	341	-	0.0	9
한진	210	152	72.4	152
분당	273	262	96.0	273
새누리	161	109	67.7	95
강원	27	12	44.4	-
도민	3,337	2,815	84.4	2,253
대명	3,813	368	9.7	366
하나로	95	26	27.4	25
청주	6,977	905	13.0	741
중부	2,596	1,714	66.0	1,564
한성	16,231	782	4.8	821
대전	128,854	62,811	48.7	52,955
서일	34	10	29.4	12
세종	18,741	6,566	35.0	5,306
아산	46	26	56.5	6
대성	47	9	19.1	24
한주	366	174	47.5	150
고려	26,975	8,481	31.4	8,375
전북	3,612	3,184	88.2	3,167
전일	49,635	22,635	45.6	18,039
스타	30,800	2,778	9.0	3,011
호남솔로몬	6,371	1,334	20.9	1,242
한일	27	13	48.1	7
현대	2,899	120	4.1	120
대한	2,782	908	32.6	862
동양	299	101	33.8	105
무등	21	21	100.0	21
센트럴	397	338	85.1	288
창업	12,275	4,587	37.4	3,556
한국투자	3,510	3,374	96.1	2,713
보해	22,101	2,673	12.1	2,386
상업	564	198	35.1	175
구미	155	12	7.7	89
삼화두리	36	-	0.0	-
대아	19,017	11,557	60.8	8,839
삼일	20,873	6,892	33.0	6,157
대송	58	2	3.4	3
오성	350	54	15.4	48
대원	5,128	2,374	46.3	1,894
에스앤티	7	3	42.9	3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경은	1,865	148	7.9	169
밀양	59	-	0.0	1
경남제일	704	105	14.9	111
조흥	28	-	0.0	-
진주	625	60	9.6	14
으뜸	3,635	838	23.1	681
미래	24,646	14,822	60.1	285
부산솔로몬	14,218	4,276	30.1	3,365
예가람	1,207	438	36.3	388
파랑새	8,392	5,620	67.0	4,337
합계	1,061,895	414,418	39.0	345,450

*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07.6월 현재 영업중인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

소액신용대출 현황('07년 6월)

(단위: 백만원, %)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HK	54,816	28,343	51.7	27,653
푸른2	6,590	3,297	50.0	3,107
동부	331	39	11.8	49
스카이	11,184	9,709	86.8	7,378
솔로몬	43,546	2,805	6.4	2,765
프라임	1,200	12	1.0	30
민국	141	15	10.6	16
푸른	15,981	8,869	55.5	7,836
삼보	2	2	100.0	2
삼성	1,525	1,117	73.2	1,144
삼화	2,378	640	26.9	578
교원나라	1,539	838	54.5	767
서울	0	-	#DIV/0!	-
현대스위스이	4,061	1,482	36.5	1,622
신민	30	14	46.7	11
현대스위스	47,333	7,732	16.3	6,424
영풍	2,816	406	14.4	440
제일	104,992	24,139	23.0	22,348
신안	0	-	#DIV/0!	-
중앙부산	28	4	14.3	3
진흥	86	12	14.0	18
제일2	29,429	3,755	12.8	4,462
한국	223	223	100.0	224
대영	3,329	1,652	49.6	1,470
한신	6	-	0.0	1
고려	1,869	1	0.1	-
국제	68	-	0.0	-
부민	541	518	95.7	531
부산	78	-	0.0	25
동광	37	-	0.0	-
화승	96	1	1.0	-
부산2	50	45	90.0	41
흥국	620	3	0.5	-
파라다이스	20	-	0.0	-
우리	280	155	55.4	126
인성	0	-	#DIV/0!	-
금화	176	43	24.4	41
인천	15	11	73.3	-
에이스	77	49	63.6	41
신라	1,624	428	26.4	379
모아	13,903	6,591	47.4	11,375
대백	422	270	64.0	228
유니온	264	140	53.0	135
엠에스	236	90	38.1	70
안국	73	18	24.7	13
남양	288	-	0.0	17
경기	162	-	0.0	26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부림	0	-	#DIV/0!	-
삼신	970	35	3.6	-
삼정	78	-	0.0	-
평택	236	195	82.6	162
토마토	495	173	34.9	150
안양	1,010	606	60.0	710
영진	0	-	#DIV/0!	-
융창	218	206	94.5	206
세람	653	253	38.7	226
늘푸른	0	-	#DIV/0!	-
한진	225	146	64.9	-
분당	118	108	91.5	-
새누리	83	34	41.0	28
강원	21	3	14.3	-
도민	2,237	1,872	83.7	1,301
대명	2,485	248	10.0	231
하나로	79	17	21.5	15
청주	7,370	351	4.8	404
중부	1,246	721	57.9	17
한성	11,969	344	2.9	394
대전	115,337	85,311	74.0	86,714
서일	20	7	35.0	1
세종	5,988	931	15.5	980
아산	39	19	48.7	-
대성	25	10	40.0	37
한주	178	83	46.6	32
고려	43,947	1	0.0	-
전북	557	172	30.9	190
전일	42,679	28,046	65.7	25,536
스타	38,756	2,513	6.5	3,160
호남솔로몬	1,790	621	34.7	584
한일	15	4	26.7	-
현대	10,197	258	2.5	298
대한	2,363	959	40.6	948
동양	228	123	53.9	119
무등	66	11	16.7	10
센트럴	310	284	91.6	275
창업	11,626	7,007	60.3	5,406
한국투자	2,896	2,819	97.3	2,367
보해	19,692	1,876	9.5	2,186
상업	503	174	34.6	158
구미	170	11	6.5	78
삼화두리	21	3	14.3	342
대아	7,869	3,282	41.7	3,108
삼일	17,717	10,555	59.6	9,351
대송	112	6	5.4	1
오성	387	61	15.8	56
대원	2,710	1,467	54.1	1,283
에스앤티	12	3	25.0	-

금융회사명	금액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경은	1,086	85	7.8	98
밀양	51	9	17.6	8
경남제일	447	60	13.4	67
조흥	24	3	12.5	-
진주	828	60	7.2	24
으뜸	6,200	748	12.1	556
미래	15,931	8,143	51.1	-
부산솔로몬	11,906	964	8.1	1,026
예가람	936	563	60.1	3
파랑새	4,873	2,400	49.3	1,949
예아름	7,885	2,114	26.8	144
합계	758,335	270,546	35.7	252,335

*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07.6월 현재 영업중인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

4. 방카슈랑스 관련
- 도입경위·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방카슈랑스 제도도입 경과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03.8월) >

○ 03.8월부터 금융이용자 편익 증대 및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03.8월 이후)	2단계(05.4월 이후)	3단계(07.4월 이후)
생명보험	연금, 교육, 생사혼합(양로) 등 개인저축성 보험 신용생명보험	제3분야 보험 등 보장성 보험	완전 허용 (퇴직 보험 등 단체보험)
손해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 보험, 특종보험(단체상해제외), 장기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 제3분야 보험 등 장기보장성 보험	완전 허용 (기타 자동차보험, 기타 화재보험, 해상보험, 퇴직보험 등 단체보험)

○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은행 등의 불공정모집행위** 방지, 일부 보험사의 독과점 문제 등 **보완장치*** **마련**

* 대출등과 연계한 보험 상품 끼워팔기 금지, 보험판매 무자격 자에 의한 모집행위 등을 금지, 특정 보험회사 상품판매비중 제한(49%이하), 지점당 판매직원 2인 이내로 제한 등

< 05.4월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

○ 1단계 시행결과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불완전판매·대출연계 보험판매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 방카슈랑스 **시행일정을 재조정**하는 한편 은행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05.3)

【 시행일정 재조정 】

보험종목	당초 일정		시행시기 재조정
개인 저축성보험	03.8월		-
신용생명보험	03.8월		-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보험	05.4월	→	05.4월(당초와 동일)
제3보험 중 환급형보험	05.4월	→	06.10월(1년6월 유예)
개인 보장성보험	05.4월	→	08.4월(3년 유예)
개인용 자동차보험	05.4월	→	08.4월(3년 유예)
기업성 보험	07.4월	→	보류

【 기타 제도개선 】

- 금융회사의 1개 보험회사 **판매비중 한도 축소**(49%→25%)
- 은행과 보험회사간 **표준제휴계약서 제도 도입**
-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 보험설계사 경력자를 **지점당 판매직원 2인제한**의 **예외 인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
- 판매 채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 금융산업간 균형발전 방안 마련
-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등

5. 04년~07년 6월말 현재, 연도별, 금융기관별 유가증권 투자금액 및 투자수익 현황(은행, 보험)

"붙임1~3 참조"

(붙임1)

15. 04년~07년 6월말 현재, 연도별, 금융기관별 유가증권 투자금액 및 투자수익 현황*

(1) 은행

(단위:억원)

금융회사명	구분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06월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조흥은행	단기매매증권	19,065	1,196	1,824	- 221	-	-	-	-
	주식(원화)	-	-	-	-	-	-	-	-
	국채(원화)	10,344	623	95	- 295	-	-	-	-
	지방채(원화)	147	13	-	-	-	-	-	-
	통안채(원화)	585	100	100	17	-	-	-	-
	금융채(원화)	2,704	74	795	24	-	-	-	-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매도가능증권	83,552	3,144	84,797	3,941	-	-	-	-
	주식(원화)	7,875	- 164	7,194	1,691	-	-	-	-
	국채(원화)	17,095	851	20,158	798	-	-	-	-
	지방채(원화)	1,289	106	63	59	-	-	-	-
	통안채(원화)	10,688	507	21,656	569	-	-	-	-
	금융채(원화)	3,903	70	3,201	154	-	-	-	-
	일반회사채(원화)	3,515	28	4,555	- 1,133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912	- 121	-	-	-	-	-	-
	수익증권(원화)	-	7	-	-	-	-	-	-
	만기보유증권	-	-	-	-	-	-	-	-
	국채(원화)	-	-	-	-	-	-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	-	-	-	-	-
	금융채(원화)	-	-	-	-	-	-	-	-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735	143	3,371	243	-	-	-	-
우리은행	단기매매증권	25,468	836	14,901	1,163	14,049	901	16,391	965
	주식(원화)	1,984	- 57	166	253	4,015	- 43	1,613	270
	국채(원화)	12,336	298	106	- 194	209	131	1,788	39
	지방채(원화)	20	2	19	1	-	0	-	-
	통안채(원화)	4,821	113	496	18	600	118	200	10
	금융채(원화)	3,232	38	579	19	1,254	37	3,390	63
	일반회사채(원화)	1,087	10	-	-	-	3	99	2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140	336	10,204	964	7,002	515	8,203	582
	매도가능증권	97,724	7,450	137,352	5,309	165,810	11,023	157,316	10,735
	주식(원화)	9,131	1,073	12,130	615	14,161	5,578	13,903	6,375
	국채(원화)	6,089	244	4,016	209	8,084	241	11,453	224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24,694	1,387	60,124	1,721	54,522	2,136	53,003	1,245
	금융채(원화)	12,072	432	6,184	481	28,799	598	24,856	642
	일반회사채(원화)	10,596	1,595	3,331	549	2,279	209	2,379	57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541	908	25,156	543	22,177	652	19,299	1,139
	만기보유증권	43,779	4,264	58,718	3,158	50,976	2,677	47,957	1,240
	국채(원화)	1,744	272	8,073	278	9,395	433	8,384	241
	지방채(원화)	18	3	1,251	6	703	57	488	18
	통안채(원화)	2,345	106	38,000	367	28,875	1,623	25,930	668
	금융채(원화)	-	-	8,520	248	10,271	446	11,825	287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1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82	344	1,202	392	1,797	270	2,420	24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단기매매증권	1,126	52	8,361	49	13,754	523	12,633	255
	주식(원화)	-	-	-	-	-	-	-	-
	국채(원화)	925	43	2,978	4	4,209	169	2,554	80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	-	9,545	354	10,079	175
	금융채(원화)	201	9	5,383	45	-	-	-	-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매도가능증권	65,648	3,323	106,070	3,673	110,260	5,205	91,960	2,272
	주식(원화)	333	8	329	10	325	21	325	9
	국채(원화)	1,330	277	14,729	400	16,433	813	15,027	331
	지방채(원화)	-	-	0	-	-	-	-	-
	통안채(원화)	52,388	2,437	74,566	2,589	68,766	3,146	52,553	1,329
	금융채(원화)	2,278	32	9,996	146	20,995	914	20,037	484
	일반회사채(원화)	4,161	400	3,792	229	740	166	1,076	28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만기보유증권	2,520	122	-	-	-	-	-	-
	국채(원화)	21	4	-	-	-	-	-	-
	지방채(원화)	0	0	-	-	-	-	-	-
	통안채(원화)	-	-	-	-	-	-	-	-
	금융채(원화)	-	-	-	-	-	-	-	-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1	20	20	35	34	- 4	-	47

금융회사명	구분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06월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하나은행	단기매매증권	7,303	1,085	4,653	237	5,180	942	3,382	451
	주식(원화)	1,668	797	2,191	180	2,313	798	1,185	415
	국채(원화)	2,255	134	495	- 66	2,241	73	497	23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1,899	143	1,700	106	600	70	1,699	13
	금융채(원화)	1,382	5	197	21	-	1	-	-
	일반회사채(원화)	100	1	-	- 3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0	-	0	-	- 0	-	-
	매도가능증권	114,277	5,379	127,900	5,928	132,314	7,804	148,361	5,730
	주식(원화)	5,155	48	5,063	939	7,160	2,428	8,581	3,256
	국채(원화)	13,660	842	13,781	590	12,838	624	12,826	271
	지방채(원화)	0	0	0	-	0	-	0	-
	통안채(원화)	6,697	416	31,374	700	24,326	1,116	25,394	456
	금융채(원화)	15,062	551	16,736	579	33,736	1,074	48,761	782
	일반회사채(원화)	16,715	698	14,487	789	17,858	699	14,952	401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636	11,700	901	12,900	490	12,900	3
	만기보유증권	22,661	1,375	30,961	1,263	29,824	1,632	37,705	874
	국채(원화)	8,809	497	11,848	560	11,434	645	10,383	305
	지방채(원화)	0	0	0	0	0	-	0	-
	통안채(원화)	500	45	-	9	-	-	-	-
	금융채(원화)	3,816	277	3,944	197	4,446	243	10,002	191
	일반회사채(원화)	2,000	180	2,607	14	2,072	122	3,011	56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36	200	2,565	147	723	- 47	1,030	44
한국외환은행	단기매매증권	7,452	439	11,988	720	13,364	936	27,502	809
	주식(원화)	484	102	776	548	1,565	233	739	432
	국채(원화)	1,169	165	403	- 49	1,045	104	2,803	23
	지방채(원화)	105	2	101	1	83	5	44	2
	통안채(원화)	4,993	90	9,379	139	9,299	554	11,379	246
	금융채(원화)	297	7	904	21	-	5	1,399	8
	일반회사채(원화)	99	7	-	- 4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200	42	100	- 13	-	12
	매도가능증권	95,266	4,220	76,641	7,389	53,218	6,576	52,880	1,350
	주식(원화)	14,649	437	9,583	4,716	5,571	4,077	6,818	284
	국채(원화)	8,690	640	8,575	418	7,338	313	6,146	130
	지방채(원화)	-	-	-	3	-	-	-	-
	통안채(원화)	18,457	1,146	10,889	677	4,849	269	4,946	58
	금융채(원화)	16,531	561	15,046	634	15,834	679	15,853	371
	일반회사채(원화)	6,141	257	5,165	247	3,588	191	3,322	75
	주식관련회사채(원화)	351	- 1	-	-	-	-	-	-
	수익증권(원화)	787	438	3,620	147	551	62	404	11
	만기보유증권	15,585	709	22,956	937	17,536	1,044	19,162	407
	국채(원화)	1,613	67	5,124	182	5,029	204	5,816	103
	지방채(원화)	75	1	77	3	78	3	78	2
	통안채(원화)	-	-	-	-	-	-	2,194	-
	금융채(원화)	2,569	63	3,591	152	2,957	162	2,450	71
	일반회사채(원화)	1,212	287	1,608	65	1,204	71	1,102	29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824	1,132	2,615	561	2,583	640	2,650	283
신한은행(구)	단기매매증권	6,358	328	6,600	473	-	-	-	-
	주식(원화)	606	9	537	394	-	-	-	-
	국채(원화)	1,584	133	1,901	- 55	-	-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1,722	87	2,373	78	-	-	-	-
	금융채(원화)	2,042	79	1,469	36	-	-	-	-
	일반회사채(원화)	-	2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매도가능증권	79,580	7,318	87,374	4,019	-	-	-	-
	주식(원화)	6,458	3,155	8,079	1,281	-	-	-	-
	국채(원화)	15,577	670	7,455	398	-	-	-	-
	지방채(원화)	35	3	46	3	-	-	-	-
	통안채(원화)	10,992	683	12,508	607	-	-	-	-
	금융채(원화)	17,922	368	13,914	435	-	-	-	-
	일반회사채(원화)	9,353	- 13	5,164	- 23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1,471	23,811	610	-	-	-	-
	만기보유증권	30,175	2,105	29,191	1,409	-	-	-	-
	국채(원화)	3,267	278	5,364	211	-	-	-	-
	지방채(원화)	1,034	125	802	68	-	-	-	-
	통안채(원화)	2,281	70	8,302	72	-	-	-	-
	금융채(원화)	9,470	374	3,477	269	-	-	-	-
	일반회사채(원화)	354	119	354	15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47	86	379	350	-	-	-	-

금융회사명	구분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06월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신한은행(신)	단기매매증권	-	-	-	-	4,882	751	7,709	266
	주식(원화)	-	-	-	-	902	- 27	321	49
	국채(원화)	-	-	-	-	609	463	3,252	72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	-	2,831	272	3,633	131
	금융채(원화)	-	-	-	-	- 1	14	400	2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매도가능증권	-	-	-	-	126,689	13,557	173,206	14,394
	주식(원화)	-	-	-	-	16,771	5,869	19,910	10,024
	국채(원화)	-	-	-	-	12,477	777	15,394	310
	지방채(원화)	-	-	-	-	32	6	14	1
	통안채(원화)	-	-	-	-	26,048	1,272	30,197	571
	금융채(원화)	-	-	-	-	14,098	693	37,210	645
	일반회사채(원화)	-	-	-	-	9,805	2,875	17,926	1,616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23,025	1,258	17,689	447
	만기보유증권	-	-	-	-	66,994	2,639	70,638	1,761
	국채(원화)	-	-	-	-	10,766	533	12,884	299
	지방채(원화)	-	-	-	-	134	49	206	7
	통안채(원화)	-	-	-	-	18,262	702	15,665	421
	금융채(원화)	-	-	-	-	24,960	655	25,406	627
	일반회사채(원화)	-	-	-	-	829	23	1,720	28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4,569	907	10,678	505
한국씨티은행	단기매매증권	5,768	166	972	22	230	79	3,498	63
	주식(원화)	-	- 5	-	-	-	-	-	-
	국채(원화)	512	77	482	11	230	64	1,906	35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4,448	48	490	10	-	15	1,593	26
	금융채(원화)	97	1	-	0	-	- 0	-	1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18	-	-	-	-	-	-
	매도가능증권	114,249	3,137	139,580	5,651	128,350	7,768	138,028	3,986
	주식(원화)	3,153	- 104	2,543	604	1,379	2,280	1,130	1,099
	국채(원화)	42,659	1,723	48,855	1,865	44,782	1,830	48,018	948
	지방채(원화)	31	2	13	2	-	1	-	-
	통안채(원화)	39,909	1,014	64,568	2,141	58,720	2,576	62,632	1,314
	금융채(원화)	14,913	150	12,907	402	15,184	632	18,281	437
	일반회사채(원화)	309	15	5	42	-	89	-	0
	주식관련회사채(원화)	44	- 0	44	-	-	-	-	-
	수익증권(원화)	-	- 59	-	-	-	5	-	-
	만기보유증권	-	1,226	-	-	-	-	-	-
	국채(원화)	-	124	-	-	-	-	-	-
	지방채(원화)	-	0	-	-	-	-	-	-
	통안채(원화)	-	830	-	-	-	-	-	-
	금융채(원화)	-	39	-	-	-	-	-	-
	일반회사채(원화)	-	19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90	131	508	62	76	74	113	35
국민은행	단기매매증권	36,119	2,964	35,612	1,289	25,850	1,694	57,313	1,204
	주식(원화)	1,762	332	1,791	847	559	- 130	823	343
	국채(원화)	7,530	860	16,610	- 36	3,637	761	7,926	50
	지방채(원화)	-	-	-	-	100	2	14	2
	통안채(원화)	22,794	1,104	16,014	402	15,031	802	29,105	500
	금융채(원화)	890	58	-	6	4,501	174	15,130	238
	일반회사채(원화)	449	108	-	5	-	-	412	6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109	395	3	6	1,007	29	2,747	42
	매도가능증권	170,238	8,542	155,306	8,471	141,833	8,778	145,818	9,977
	주식(원화)	5,420	- 6	5,377	779	8,320	946	7,010	6,655
	국채(원화)	8,039	670	27,058	643	30,767	1,340	43,032	853
	지방채(원화)	164	13	157	8	158	8	162	4
	통안채(원화)	72,179	2,143	70,123	2,963	52,714	3,514	42,173	1,037
	금융채(원화)	4,994	234	10,315	362	22,282	893	29,205	697
	일반회사채(원화)	9,993	1,786	11,989	906	10,337	266	10,123	266
	주식관련회사채(원화)	1,244	84	-	-	-	-	-	-
	수익증권(원화)	51,454	2,648	20,541	1,858	6,045	912	2,545	80
	만기보유증권	62,375	3,617	101,891	4,645	109,332	4,981	102,322	2,468
	국채(원화)	30,743	1,661	45,907	2,087	66,125	2,939	66,986	1,571
	지방채(원화)	164	14	147	13	228	14	214	5
	통안채(원화)	9,897	99	29,636	987	17,480	932	3,800	240
	금융채(원화)	2,180	85	5,743	222	4,603	183	6,000	114
	일반회사채(원화)	2,144	243	3,648	195	3,249	186	4,749	84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17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015	- 45	5,943	923	6,758	1,249	6,877	558

금융회사명	구분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06월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대구은행	단기매매증권	5,966	132	895	72	1,997	59	684	15
	주식(원화)	255	- 19	201	36	407	- 51	14	- 5
	국채(원화)	1,458	50	-	- 32	-	10	295	2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1,664	37	396	35	1,489	92	300	15
	금융채(원화)	1,985	18	100	23	-	1	-	-
	일반회사채(원화)	101	16	-	1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0	-	-	-	-	-	-
	매도가능증권	18,910	1,093	21,425	1,108	24,792	1,198	23,333	934
	주식(원화)	184	20	172	37	1,121	8	2,756	128
	국채(원화)	2,329	211	3,913	175	7,953	272	6,897	177
	지방채(원화)	201	7	-	-	-	-	-	-
	통안채(원화)	1,629	81	301	27	1,177	46	2,173	43
	금융채(원화)	7,570	278	7,885	320	7,720	327	4,298	134
	일반회사채(원화)	1,919	139	1,011	284	992	51	1,195	32
	주식관련회사채(원화)	225	4	-	4	-	-	-	-
	수익증권(원화)	42	9	2,942	21	2,681	288	2,788	338
	만기보유증권	28,055	1,950	33,089	1,851	26,169	1,711	24,033	619
	국채(원화)	14,805	972	16,724	1,016	10,606	872	7,744	212
	지방채(원화)	4,317	309	5,586	321	5,344	302	5,275	135
	통안채(원화)	-	-	1,197	15	2,199	100	2,200	52
	금융채(원화)	1,784	130	2,345	111	1,982	93	2,082	50
	일반회사채(원화)	972	145	200	12	200	12	200	6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1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	-	-	-
부산은행	단기매매증권	411	27	181	41	-	- 3	115	- 1
	주식(원화)	-	1	82	33	-	- 10	48	- 1
	국채(원화)	411	13	99	- 13	-	0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1	-	1	-	6	-	-
	금융채(원화)	-	0	-	19	-	-	-	-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6	-	0	-	0	-	-
	매도가능증권	13,492	901	17,361	776	16,621	857	16,652	511
	주식(원화)	393	43	311	88	903	9	1,073	15
	국채(원화)	2,320	160	3,605	146	2,549	133	3,085	58
	지방채(원화)	540	43	-	1	-	-	-	-
	통안채(원화)	2,674	132	2,393	103	3,089	127	3,296	69
	금융채(원화)	2,530	181	5,588	212	4,764	225	5,091	101
	일반회사채(원화)	1,608	78	1,610	88	2,301	109	2,153	64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1,503	95	2,000	51	1,511	158	571	81
	만기보유증권	26,388	1,535	31,011	1,349	32,290	1,525	30,888	679
	국채(원화)	4,071	249	7,676	305	6,166	327	6,016	105
	지방채(원화)	1,973	139	1,871	125	1,563	99	1,467	40
	통안채(원화)	3,838	229	6,069	201	5,687	246	4,334	113
	금융채(원화)	9,406	407	7,415	324	12,235	489	11,966	256
	일반회사채(원화)	394	59	200	13	-	6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5	- 3	207	9	210	2	212	2
광주은행	단기매매증권	2,077	92	1,546	68	2,199	94	2,594	61
	주식(원화)	-	-	-	-	-	-	-	-
	국채(원화)	207	6	98	3	399	9	199	4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401	9	198	5	500	14	500	11
	금융채(원화)	674	14	390	15	100	16	494	5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295	18	760	36	1,200	48	1,400	40
	매도가능증권	8,185	365	30,342	587	34,423	1,520	38,589	904
	주식(원화)	39	- 31	21	4	248	- 10	291	2
	국채(원화)	1,097	48	3,584	132	2,383	139	2,073	52
	지방채(원화)	-	-	627	13	591	34	591	17
	통안채(원화)	1,193	37	3,076	60	5,585	175	4,794	114
	금융채(원화)	4,772	181	11,684	199	16,452	691	19,422	433
	일반회사채(원화)	796	108	1,932	105	797	59	797	20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40	3	1,869	18
	만기보유증권	21,289	1,164	-	1,181	-	-	-	-
	국채(원화)	7,158	511	-	521	-	-	-	-
	지방채(원화)	1,918	121	-	124	-	-	-	-
	통안채(원화)	10	1	-	0	-	-	-	-
	금융채(원화)	911	51	-	32	-	-	-	-
	일반회사채(원화)	533	44	-	44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2	-	75	1

금융회사명	구분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06월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제주은행	단기매매증권	-	-	463	14	-	14	100	1
	주식(원화)	-	-	-	-	-	-	-	-
	국채(원화)	-	-	-	2	-	1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443	8	-	13	100	1
	금융채(원화)	-	-	19	4	-	0	-	-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0	-	0	-	-
	매도가능증권	-	-	3,041	114	3,918	170	3,966	129
	주식(원화)	-	-	39	6	14	0	11	9
	국채(원화)	-	-	161	2	161	8	161	4
	지방채(원화)	-	-	0	-	0	0	-	-
	통안채(원화)	-	-	297	19	940	31	838	22
	금융채(원화)	-	-	714	20	2,386	93	2,587	59
	일반회사채(원화)	-	-	10	0	109	2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204	6	-	9	-	-
	만기보유증권	-	-	-	-	300	3	600	13
	국채(원화)	-	-	-	-	-	-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	-	300	3	400	9
	금융채(원화)	-	-	-	-	-	-	200	3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5	-	27	2	32	- 0
전북은행	단기매매증권	1,206	82	-	- 1	195	28	600	11
	주식(원화)	-	- 2	-	0	-	0	10	0
	국채(원화)	209	39	-	- 19	-	2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497	36	-	2	100	17	-	1
	금융채(원화)	-	-	-	7	95	5	-	0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500	9	-	10	-	4	540	9
	매도가능증권	2,487	163	4,339	182	4,160	202	3,818	96
	주식(원화)	6	- 14	12	2	33	10	60	1
	국채(원화)	354	30	349	33	559	21	520	13
	지방채(원화)	361	27	409	30	195	18	60	5
	통안채(원화)	383	30	1,199	40	1,200	47	600	16
	금융채(원화)	308	31	1,764	36	1,618	63	2,249	46
	일반회사채(원화)	100	11	-	3	-	-	96	1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701	26	400	12	451	35	102	13
	만기보유증권	6,373	263	7,398	328	7,922	387	9,241	213
	국채(원화)	756	36	2,061	70	2,401	106	2,377	59
	지방채(원화)	775	41	616	43	1,313	56	1,214	33
	통안채(원화)	200	19	100	7	100	4	100	2
	금융채(원화)	3,058	86	2,790	126	2,743	141	4,146	82
	일반회사채(원화)	-	-	49	1	50	3	150	4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	-	-	-
경남은행	단기매매증권	3,136	142	2,492	111	3,699	184	5,119	141
	주식(원화)	-	-	-	-	-	-	-	-
	국채(원화)	260	12	195	1	-	5	-	- 2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1,392	80	200	28	499	16	1,298	24
	금융채(원화)	733	26	97	14	-	10	-	2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650	21	1,900	66	2,100	105	3,821	115
	매도가능증권	8,221	383	10,071	320	13,048	510	12,571	460
	주식(원화)	297	- 3	349	12	873	21	998	99
	국채(원화)	1,697	60	2,711	98	2,589	104	2,734	53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1,826	126	2,109	62	1,763	62	1,677	42
	금융채(원화)	1,862	58	2,690	45	4,263	208	3,979	106
	일반회사채(원화)	27	- 2	23	2	-	7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6	0	-	0	-	-	-	-
	수익증권(원화)	28	12	100	12	1,005	2	1,039	52
	만기보유증권	21,188	1,377	23,832	1,267	23,408	1,163	22,231	549
	국채(원화)	10,721	541	14,477	715	13,813	712	13,022	329
	지방채(원화)	301	30	0	7	300	7	390	9
	통안채(원화)	800	64	898	37	500	33	100	7
	금융채(원화)	3,899	397	2,600	152	3,200	142	3,196	74
	일반회사채(원화)	100	21	-	1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4	- 0	30	8	36	2	83	4

금융회사명	구분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06월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한국산업은행	단기매매증권	-	818	-	391	-	650	-	446
	주식(원화)	-	- 38	-	138	-	14	-	122
	국채(원화)	-	313	-	- 98	-	216	-	70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	-	-	-	-	-
	금융채(원화)	-	178	-	66	-	27	-	37
	일반회사채(원화)	-	29	-	23	-	23	-	6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120	-	48	-	0	-	-
	매도가능증권	-	3,956	-	8,375	-	12,276	-	7,985
	주식(원화)	-	184	-	2,018	-	3,696	-	2,929
	국채(원화)	-	294	-	292	-	397	-	223
	지방채(원화)	-	-	-	6	-	-	-	-
	통안채(원화)	-	-	-	-	-	-	-	-
	금융채(원화)	-	715	-	555	-	400	-	273
	일반회사채(원화)	-	2,798	-	3,961	-	5,983	-	3,348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278	-	301	-	70	-	126
	만기보유증권	-	1,563	-	1,447	-	378	-	449
	국채(원화)	-	18	-	20	-	21	-	10
	지방채(원화)	-	1,053	-	1,081	-	302	-	428
	통안채(원화)	-	-	-	-	-	-	-	-
	금융채(원화)	-	-	-	-	-	-	-	-
	일반회사채(원화)	-	262	-	308	-	47	-	7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1,430	-	19,579	-	14,995	-	16,780
중소기업은행	단기매매증권	6,070	400	9,067	285	9,297	355	15,815	445
	주식(원화)	107	- 64	365	162	77	- 52	569	154
	국채(원화)	1,007	150	3,725	- 11	2,695	135	1,112	39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4,027	181	4,189	97	2,084	241	6,859	115
	금융채(원화)	-	-	385	9	4,441	32	7,024	138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230	72	-	10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매도가능증권	66,127	3,652	88,045	3,412	106,794	5,501	109,565	7,727
	주식(원화)	3,951	952	4,584	282	6,763	701	386	5,096
	국채(원화)	3,255	309	8,013	400	6,518	406	7,726	147
	지방채(원화)	-	-	200	10	200	10	200	5
	통안채(원화)	9,767	344	13,874	414	19,360	693	16,008	358
	금융채(원화)	25,827	777	23,739	1,050	26,328	1,259	31,386	701
	일반회사채(원화)	2,043	186	4,034	147	4,080	178	4,775	108
	주식관련회사채(원화)	818	214	-	15	-	-	-	-
	수익증권(원화)	39	-	11,549	24	19,021	769	22,521	621
	만기보유증권	46,295	747	47,869	2,481	62,916	3,879	70,917	1,721
	국채(원화)	7,682	396	12,288	531	18,977	832	19,699	468
	지방채(원화)	568	36	98	10	296	8	397	8
	통안채(원화)	17,869	274	15,209	654	20,285	652	20,697	475
	금융채(원화)	4,272	249	6,261	170	7,787	340	11,281	218
	일반회사채(원화)	4,077	- 776	4,214	364	2,860	1,487	3,410	194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72	28	985	130	1,488	327	1,741	288
한국수출입은행	단기매매증권	-	-	-	-	-	-	-	-
	주식(원화)	-	-	-	-	-	-	-	-
	국채(원화)	-	-	-	-	-	-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	-	-	-	-	-
	금융채(원화)	-	-	-	-	-	-	-	-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매도가능증권	15,364	214	18,831	2,679	16,232	1,928	15,983	1,081
	주식(원화)	15,199	-	18,709	2,671	16,125	1,934	15,875	1,077
	국채(원화)	0	-	-	-	-	-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	-	-	-	-	-
	금융채(원화)	-	-	-	-	-	-	-	-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14	0	-	- 13	-	-
	만기보유증권	407	12	70	12	70	4	70	-
	국채(원화)	-	-	-	-	-	-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	-	-	-	-	-
	금융채(원화)	233	-	-	-	-	-	-	-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62	- 2	948	37	948	46	948	23

금융회사명	구분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06월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취득원가	운용손익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기매매증권	4,285	223	4,049	1,245	9,398	236	16,507	684
	주식(원화)	808	46	1,077	520	879	86	952	156
	국채(원화)	1,969	159	794	- 36	3,418	70	2,184	47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25	-	5	3,701	56	10,475	141
	금융채(원화)	-	-	978	25	-	2	1,576	21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매도가능증권	47,241	4,024	71,450	3,433	81,138	4,286	120,454	11,032
	주식(원화)	3,873	102	6,696	265	12,441	269	8,446	9,184
	국채(원화)	839	47	1,489	87	1,470	80	6,839	46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334	344	8,356	376	20,102	762	33,746	501
	금융채(원화)	2,333	206	18,131	621	13,785	577	14,782	349
	일반회사채(원화)	4,393	403	3,076	430	5,814	216	13,260	216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24,558	2,345	25,425	1,267	13,051	1,944	27,188	411
	만기보유증권	275,418	19,681	265,695	15,254	223,888	12,617	224,253	5,829
	국채(원화)	73,828	4,142	107,556	5,255	89,199	5,233	83,907	2,144
	지방채(원화)	375	43	378	23	547	21	556	13
	통안채(원화)	18,768	1,402	3,600	509	-	56	495	10
	금융채(원화)	67,700	4,320	34,468	2,450	34,342	1,706	41,823	968
	일반회사채(원화)	42,433	4,748	46,785	2,479	42,804	2,371	40,173	1,176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80	36	380	27	2,494	- 36	2,449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단기매매증권	3,105	242	2,989	371	4,697	213	7,089	243
	주식(원화)	186	38	331	241	371	- 1	357	129
	국채(원화)	619	71	1,664	15	1,389	86	2,966	23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494	62	296	51	1,354	72	2,677	30
	금융채(원화)	1,207	35	98	15	582	16	381	29
	일반회사채(원화)	-	-	-	-	-	-	-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600	25	600	48	1,000	39	707	32
	매도가능증권	27,808	2,722	30,263	1,794	22,192	1,467	24,183	686
	주식(원화)	43	32	43	111	89	150	94	67
	국채(원화)	1,278	146	2,657	44	1,506	84	2,897	21
	지방채(원화)	200	23	-	2	-	-	-	-
	통안채(원화)	1,493	127	1,993	83	3,797	138	4,198	83
	금융채(원화)	5,301	285	6,771	164	11,649	421	12,771	268
	일반회사채(원화)	3,611	324	3,537	123	2,743	157	1,871	68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341	33	184	154	84	108	379	114
	만기보유증권	-	-	-	-	900	37	700	19
	국채(원화)	-	-	-	-	-	-	-	-
	지방채(원화)	-	-	-	-	-	-	-	-
	통안채(원화)	-	-	-	-	-	-	-	-
	금융채(원화)	-	-	-	-	600	26	400	-
	일반회사채(원화)	-	-	-	-	300	12	300	-
	주식관련회사채(원화)	-	-	-	-	-	-	-	-
	수익증권(원화)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	-	-	-

* 분기 주기로 보고

(붙임2)

15. 04년~07년 6월말 현재, 연도별, 금융기관별 유가증권 투자금액 및 투자수익 현황

(2) 생명보험회사

가. 유가증권 투자금액

(단위:천원)

금융회사명	구분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2007년03월	2007년06월
대한생명(주)	2.단기매매증권	1,622,137,754	1,906,676,070	1,925,398,033	1,542,988,728	1,333,268,956
	가.주식	34,258,923	55,912,255	659,550	3,896,865	1,065,541
	나.국·공채	63,006,304	241,463,106	153,329,188	69,424,734	105,432,133
	다.특수채	17,448,558	381,764,219	287,607,813	335,353,915	295,556,083
	라.회사채	41,057,550	52,816,137	25,136,024	38,062,954	47,838,539
	마.수익증권	420,789,841	387,000,363	370,633,161	368,310,106	357,391,446
	바.해외유가증권	0	70,936,268	86,822,052	72,273,246	173,107,248
	사.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아.기타유가증권	1,045,576,578	716,783,721	1,001,210,246	655,666,909	352,877,966
	3.매도가능증권	7,853,473,763	17,709,149,995	18,658,644,818	21,088,662,031	21,166,716,563
	가.주식	310,299,047	337,019,910	685,064,405	593,897,006	645,565,565
	나.출자금	0	0	16,228,771	66,890,324	67,090,324
	다.국·공채	495,536,439	7,002,465,138	7,574,287,869	11,094,251,160	10,885,926,584
	라.특수채	5,132,622,097	7,534,693,663	6,404,605,308	4,768,328,304	4,636,855,902
	마.회사채	1,460,791,835	1,455,149,519	1,735,644,143	2,121,166,974	2,179,839,188
	바.수익증권	124,948,541	333,920,032	892,001,589	1,045,853,137	1,180,557,594
	사.해외유가증권	11,893,859	810,657,199	904,009,511	998,767,744	1,061,096,575
	아.신종유가증권	0	0	58,393,464	122,447,275	204,322,770
	자.기타유가증권	317,381,945	235,244,534	388,409,757	277,060,107	305,462,061
	4.만기보유증권	7,270,836,093	0	0	0	330,865,021
	가.국·공채	5,986,167,745	0	0	0	330,865,021
	나.특수채	1,284,668,348	0	0	0	0
	다.회사채	0	0	0	0	0
	라.수익증권	0	0	0	0	0
	마.해외유가증권	0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타유가증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79,027,662	84,760,484	83,727,128	153,888,023	173,326,760
	가.주식	79,027,662	84,760,484	83,727,128	153,888,023	173,326,760
	나.출자금	0	0	0	0	0
알리안츠생명(주)	2.단기매매증권	436,886,332	100,480,003	59,097,804	94,031,020	59,416,456
	가.주식	0	0	0	0	0
	나.국·공채	50,658,167	42,618,976	12,530,562	56,338,939	9,388,832
	다.특수채	270,251,533	28,727,038	41,554,959	30,672,582	31,070,175
	라.회사채	106,976,011	20,133,989	0	7,019,499	11,952,008
	마.수익증권	9,000,621	9,000,000	5,012,283	0	7,005,441
	바.해외유가증권	0	0	0	0	0
	사.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아.기타유가증권	0	0	0	0	0
	3.매도가능증권	2,993,712,895	2,894,125,782	3,057,476,112	3,305,402,275	3,523,594,698
	가.주식	156,371,346	157,748,032	230,191,566	184,555,605	223,183,359
	나.출자금	9,228,543	8,044,457	5,287,948	2,236,756	2,005,488
	다.국·공채	1,701,841,456	1,518,268,857	1,542,941,641	1,104,113,856	1,383,259,758
	라.특수채	610,442,829	834,424,240	955,780,628	1,548,429,681	1,421,789,239
	마.회사채	265,248,133	245,773,070	103,944,556	153,943,418	162,653,470
	바.수익증권	220,212,766	50,163,317	65,457,647	77,717,586	100,389,916
	사.해외유가증권	25,293,116	28,200,309	109,584,293	179,035,975	174,118,515
	아.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자.기타유가증권	5,074,706	51,503,500	44,287,833	55,369,398	56,194,953
	4.만기보유증권	1,005,450,924	1,791,572,363	2,148,345,752	2,248,816,922	2,289,906,006
	가.국·공채	905,300,522	1,621,615,972	1,978,379,948	2,058,841,599	2,089,928,326
	나.특수채	100,150,402	169,956,391	169,965,804	189,975,323	199,977,680
	다.회사채	0	0	0	0	0
	라.수익증권	0	0	0	0	0
	마.해외유가증권	0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타유가증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199,800	0	0	0	0
	가.주식	199,800	0	0	0	0
	나.출자금	0	0	0	0	0
	2.단기매매증권	454,546,320	518,268,837	653,307,554	451,588,244	368,799,425
	가.주식	0	0	0	0	0
	나.국·공채	0	0	0	0	0
	다.특수채	0	0	0	0	0
	라.회사채	0	0	0	0	0
	마.수익증권	330,354,320	232,573,140	198,738,763	199,427,413	156,603,352
	바.해외유가증권	0	31,650,870	0	0	0
	사.신종유가증권	94,192,000	75,078,165	300,155,638	252,160,831	212,196,073
	아.기타유가증권	30,000,000	178,966,663	154,413,153	0	0
	3.매도가능증권	44,673,978,214	49,877,841,858	51,285,685,673	55,843,455,831	56,758,664,223
	가.주식	7,147,769,350	6,561,266,564	8,758,192,532	8,243,199,352	8,862,740,678
	나.출자금	6,000,000	6,000,000	2,650,000	1,000,000	474,698
	다.국·공채	11,203,147,715	15,525,262,220	16,493,330,905	18,150,531,816	18,185,541,418
	라.특수채	7,661,405,206	8,558,264,364	7,758,134,738	9,465,572,385	9,681,576,890

삼성생명(주)	마.회 사 채	1,414,347,231	1,667,632,032	2,107,104,120	1,868,713,817	1,857,920,727
	바.수 익 증 권	4,297,071,708	4,024,125,362	4,801,683,147	4,495,548,563	4,595,727,096
	사.해 외 유 가 증 권	4,748,212,084	6,950,141,258	8,816,828,007	10,780,865,179	10,624,464,481
	아.신 종 유 가 증 권	4,791,542,738	3,673,553,621	1,922,288,954	2,182,035,514	2,201,998,478
	자.기 타 유 가 증 권	3,404,482,183	2,911,596,437	625,473,270	655,989,206	748,219,759
	4. 만기보유증권	0	0	3,857,066,757	4,319,389,609	4,176,641,597
	가.국 · 공 채	0	0	3,390,013,676	3,860,718,354	3,727,566,098
	나.특 수 채	0	0	467,053,081	458,671,255	449,075,499
	다.회 사 채	0	0	0	0	0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200,495,453	1,014,756,818	1,095,558,291	1,195,690,273	1,324,979,375
	가. 주식	117,400,179	951,263,983	1,025,810,988	1,161,235,554	1,289,604,790
	나. 출자금	83,095,275	63,492,835	69,747,303	34,454,719	35,374,585
흥국생명(주)	2.단 기 매 매 증 권	341,045,679	213,193,236	269,246,870	293,785,860	309,423,438
	가.주 식	37,136,912	1,098,962	844,677	86,032	0
	나.국 · 공 채	0	3,786,705	0	0	0
	다.특 수 채	823,356	6,409,927	9,176,415	47,022,214	44,584,716
	라.회 사 채	0	1,877,671	6,025,019	40,438,155	51,053,112
	마.수 익 증 권	197,415,358	131,689,384	142,575,930	79,723,656	113,238,617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105,670,053	68,330,587	110,624,829	126,515,803	100,546,993
	3.매 도 가 능 증 권	995,145,036	1,234,925,332	1,642,468,784	2,196,817,011	2,325,518,065
	가.주 식	33,073,397	76,769,108	170,903,642	480,478,283	527,976,512
	나.출 자 금	47,040,147	37,811,943	47,005,608	42,861,101	12,917,930
	다.국 · 공 채	104,860,072	117,324,551	55,690,733	678,969	32,717,571
	라.특 수 채	301,113,184	340,934,255	581,835,243	623,367,004	660,097,712
	마.회 사 채	224,625,086	336,036,090	383,121,875	487,885,627	478,717,148
	바.수 익 증 권	0	0	0	26,195,840	33,758,951
	사.해 외 유 가 증 권	137,132,340	156,896,687	232,673,263	279,936,112	336,711,756
	아.신 종 유 가 증 권	121,154,560	120,098,458	113,542,470	178,920,735	170,338,345
	자.기 타 유 가 증 권	26,146,250	49,054,240	57,695,950	76,493,340	72,282,140
	4. 만기보유증권	205,296,854	168,985,346	157,564,183	189,942,472	188,623,821
	가.국 · 공 채	0	0	0	30,794,638	30,784,916
	나.특 수 채	35,999,672	55,999,706	55,999,740	65,999,774	65,999,782
	다.회 사 채	39,099,804	0	0	0	0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108,348,508	95,077,919	88,901,230	84,525,722	83,302,810
	바.신종유가증권	21,848,870	17,907,721	12,663,213	8,622,338	8,536,313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6,458,067	8,013,986	8,320,450	8,690,725	8,868,764
	가. 주식	6,458,067	8,013,986	8,320,450	8,690,725	8,868,764
	나. 출자금	0	0	0	0	0
교보생명(주)	2.단 기 매 매 증 권	493,507,459	525,053,697	357,530,105	384,575,793	399,254,331
	가.주 식	160,129,253	178,228,459	0	0	0
	나.국 · 공 채	15,529,452	28,093,686	29,957,515	126,462,803	232,420,463
	다.특 수 채	14,295,388	52,309,940	106,377,310	196,773,439	119,765,338
	라.회 사 채	11,522,245	21,968,257	49,239,403	24,524,768	17,386,309
	마.수 익 증 권	292,031,122	244,453,355	171,955,877	28,638,952	21,262,490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8,175,831	8,419,731
	3.매 도 가 능 증 권	5,609,387,729	6,417,671,770	7,305,218,772	8,869,442,081	8,943,593,829
	가.주 식	100,288,052	179,127,256	206,774,124	192,801,840	266,013,913
	나.출 자 금	22,107,416	20,684,353	14,954,191	98,933,937	97,055,306
	다.국 · 공 채	1,622,349,264	1,679,154,797	2,174,466,010	3,206,143,845	3,159,693,591
	라.특 수 채	1,194,712,056	1,550,560,369	1,903,835,979	1,923,004,690	1,923,092,635
	마.회 사 채	438,762,165	583,464,230	481,426,398	534,841,875	566,324,309
	바.수 익 증 권	26,553,976	12,572,322	439,436,246	400,797,166	278,257,063
	사.해 외 유 가 증 권	1,513,290,166	1,825,462,715	1,847,457,412	2,333,845,256	2,474,991,508
	아.신 종 유 가 증 권	622,101,090	553,440,328	209,438,632	156,313,352	154,212,234
	자.기 타 유 가 증 권	69,223,545	13,205,400	27,429,780	22,760,120	23,953,270
	4. 만기보유증권	6,666,313,360	7,872,499,659	8,384,170,130	9,461,143,348	9,829,009,722
	가.국 · 공 채	2,384,306,087	2,889,560,461	3,185,175,396	3,640,542,658	3,784,189,117
	나.특 수 채	2,510,130,273	3,225,859,188	3,470,582,396	4,352,972,276	4,658,502,043
	다.회 사 채	314,086,178	423,263,957	553,300,328	476,703,654	526,401,699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701,845,750	560,759,031	498,493,728	431,264,541	402,970,095
	바.신종유가증권	755,945,071	773,057,022	676,618,282	559,660,219	456,946,768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388,677,458	339,243,346	353,825,435	396,898,524	391,564,722
	가. 주식	388,677,458	339,243,346	353,825,435	396,898,524	391,564,722
	나. 출자금	0	0	0	0	0
	2.단 기 매 매 증 권	74,428,785	121,579,529	151,756,828	166,351,031	161,770,290
	가.주 식	260,750	0	0	10,458,850	12,611,552
	나.국 · 공 채	0	0	0	0	0
	다.특 수 채	0	0	0	10,009,659	19,963,430
	라.회 사 채	0	0	0	0	0
	마.수 익 증 권	41,482,433	83,579,529	138,402,428	125,202,322	103,863,058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녹십자생명(주)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32,685,602	38,000,000	13,354,400	20,680,200	25,332,250
	3.매 도 가 능 증 권	415,790,690	363,798,218	217,396,690	234,209,753	304,832,576
	가.주 식	66,127,120	30,485,766	29,968,425	19,123,800	24,152,892
	나.출 자 금	0	0	865,163	19,468,816	20,333,935
	다.국·공 채	0	0	0	0	0
	라.특 수 채	219,179,898	178,377,898	60,007,049	80,192,894	129,916,341
	마.회 사 채	88,743,672	123,829,044	76,999,825	46,933,318	36,888,616
	바.수 익 증 권	0	0	27,632,228	58,490,925	83,540,792
	사.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41,740,000	31,105,510	21,924,000	10,000,000	10,000,000
	4. 만기보유증권	57,634,618	77,956,293	325,721,788	347,026,904	378,367,686
	가.국·공 채	43,131,640	43,383,442	39,455,651	12,174,874	12,245,781
	나.특 수 채	4,800,934	24,840,095	124,639,981	204,792,912	234,424,988
	다.회 사 채	9,702,044	9,732,756	108,927,556	79,282,918	81,649,717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52,698,600	50,776,200	50,047,20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0
	가. 주식	0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0
신한생명(주)	2.단 기 매 매 증 권	227,175,885	260,813,867	385,608,329	165,210,790	210,484,626
	가.주 식	0	0	0	0	0
	나.국·공 채	9,902,572	11,735,424	7,723,846	1,893,262	21,523,169
	다.특 수 채	71,441,524	91,352,620	31,793,659	1,932,424	29,781,851
	라.회 사 채	183,196	346,552	9,009,449	993,140	996,239
	마.수 익 증 권	56,648,593	135,643,089	317,221,655	160,391,964	158,183,367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10,654,480	19,859,72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89,000,000	11,081,702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1,536,737,909	1,653,262,661	1,888,296,782	1,925,285,464	1,970,698,169
	가.주 식	38,417,020	23,460,904	103,688,697	120,836,183	145,235,867
	나.출 자 금	0	2,000,000	12,359,000	39,998,114	43,242,437
	다.국·공 채	48,700,742	175,889,491	175,922,703	168,362,079	292,315,507
	라.특 수 채	406,994,887	825,400,919	1,150,678,066	1,043,030,647	891,918,625
	마.회 사 채	831,594,153	425,669,503	315,736,381	322,182,887	338,534,709
	바.수 익 증 권	55,444,683	76,402,617	31,604,575	56,262,091	72,004,400
	사.해 외 유 가 증 권	56,374,590	40,265,359	25,084,534	83,819,038	81,945,567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99,211,834	84,173,868	73,222,826	90,794,425	105,501,057
	4. 만기보유증권	0	0	0	636,969,418	636,921,779
	가.국·공 채	0	0	0	75,519,475	75,469,463
	나.특 수 채	0	0	0	561,449,943	561,452,316
	다.회 사 채	0	0	0	0	0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2,378,316	6,887,236	7,244,944
	가. 주식	0	0	0	0	0
	나. 출자금	0	0	2,378,316	6,887,236	7,244,944
LIG생명(주)	2.단 기 매 매 증 권	55,128,122	62,303,366	97,038,568	35,646,361	12,664,924
	가.주 식	0	0	0	0	0
	나.국·공 채	0	0	0	0	0
	다.특 수 채	20,069,814	29,505,717	44,095,627	14,977,041	0
	라.회 사 채	34,567,101	32,797,649	52,076,106	20,669,320	12,664,924
	마.수 익 증 권	491,207	0	866,835	0	0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2,254,897	2,291,192	42,765,214	166,471,972	195,083,184
	가.주 식	0	0	0	0	0
	나.출 자 금	0	0	0	481,200	481,200
	다.국·공 채	0	0	9,593,022	9,751,022	9,642,142
	라.특 수 채	0	0	0	81,555,693	90,718,017
	마.회 사 채	2,254,897	2,291,192	33,172,192	46,605,107	66,177,167
	바.수 익 증 권	0	0	0	28,078,950	28,064,658
	사.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4. 만기보유증권	170,053,016	192,224,996	203,282,375	245,675,975	273,329,668
	가.국·공 채	2,466,216	2,458,260	9,810	2,930	29,270,871
	나.특 수 채	47,067,018	37,152,579	50,002,099	105,002,099	115,000,000
	다.회 사 채	108,983,782	142,371,157	153,270,466	140,670,946	129,058,797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11,536,000	10,243,00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0
	가. 주식	0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0

금호생명(주)	2.단기매매증권	359,395,814	454,039,947	444,175,563	456,808,588	336,049,485
	가.주식	0	2,604,570	11,597,883	17,960,802	34,758,767
	나.국·공채	0	0	98,512,263	89,965,450	9,897,554
	다.특수채			0	0	0
	라.회사채		92,089,606	47,908,822	86,204,149	8,116,553
	마.수익증권	175,095,833	212,086,368	152,299,467	152,290,867	125,536,619
	바.해외유가증권	5,700,488	26,632,521	25,091,682	65,036,282	79,640,197
	사.신종유가증권			0	0	0
	아.기타유가증권	178,599,493	120,626,882	108,765,446	45,351,038	78,099,795
	3.매도가능증권	821,791,876	851,628,461	978,526,182	1,416,620,017	1,627,756,494
	가.주식	33,970,880	85,544,268	209,389,465	273,736,612	351,900,387
	나.출자금	5,700,000	2,600,000	5,900,000	20,410,667	36,187,667
	다.국·공채	9,757,575	25,488,109	6,133,147	0	0
	라.특수채	77,207,859	46,639,222	13,254,167	131,182,854	140,551,424
	마.회사채	333,103,072	409,283,695	259,589,141	81,467,399	34,464,390
	바.수익증권		10,013,470	225,648,535	440,603,688	568,895,738
	사.해외유가증권	213,182,341	99,454,727	153,888,610	360,048,805	358,986,675
	아.신종유가증권	67,797,044	49,896,715	45,500,090	29,443,887	27,354,053
	자.기타유가증권	81,073,105	122,708,255	59,223,027	79,726,105	109,416,160
	4. 만기보유증권	223,713,129	379,673,042	459,161,939	362,474,031	370,003,616
	가.국·공채			0	0	0
	나.특수채			3,816,951	3,856,974	3,867,334
	다.회사채	127,447,057	184,882,667	269,892,288	182,260,726	192,347,476
	라.수익증권			0	0	0
	마.해외유가증권	84,730,072	184,547,375	175,693,700	166,953,331	164,520,806
	바.신종유가증권	11,536,000	10,243,000	9,759,000	9,403,000	9,268,000
	사.기타유가증권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1,668,856	2,143,233	2,972,159	101,796,154	102,740,271
	가. 주식	1,668,856	2,143,233	2,972,159	101,796,154	102,740,271
	나. 출자금			0	0	0
미래에셋생명(주)	2.단기매매증권	471,489,448	599,916,433	605,544,263	204,118,756	284,051,445
	가.주식	770,900	0	0	0	0
	나.국·공채	20,019,722	39,796,166	39,485,479	0	0
	다.특수채	60,330,493	152,240,166	293,903,410	9,527,038	9,531,799
	라.회사채	9,914,880	0	9,829,383	0	0
	마.수익증권	244,075,593	351,117,452	262,325,991	194,591,718	274,519,646
	바.해외유가증권	0	0	0	0	0
	사.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아.기타유가증권	136,377,860	56,762,649	0	0	0
	3.매도가능증권	532,109,854	711,496,061	1,167,780,225	1,648,390,205	1,872,009,478
	가.주식	38,234,487	41,380,241	47,913,674	93,116,051	112,537,924
	나.출자금	0	0	0	90,000,000	96,300,000
	다.국·공채	139,137,638	254,760,457	271,238,461	241,096,072	278,436,529
	라.특수채	101,184,980	150,868,857	228,964,068	301,300,236	293,709,082
	마.회사채	95,503,574	146,055,940	174,097,038	274,797,004	292,321,166
	바.수익증권	0	0	301,512,841	475,738,467	620,203,776
	사.해외유가증권	114,508,283	97,115,169	91,488,743	82,337,341	75,273,459
	아.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자.기타유가증권	43,540,892	21,315,397	52,565,400	90,005,034	103,227,542
	4. 만기보유증권	450,722,800	657,672,407	901,710,418	1,000,445,313	973,142,921
	가.국·공채	65,254,432	132,520,255	268,232,692	280,410,104	274,507,090
	나.특수채	181,329,483	211,926,438	279,331,077	324,513,462	334,144,713
	다.회사채	123,126,885	108,494,214	148,020,649	158,053,747	158,067,118
	라.수익증권	0	0	0	0	0
	마.해외유가증권	0	132,008,500	126,314,500	141,045,000	111,216,000
	바.신종유가증권	81,012,000	72,723,000	79,811,500	96,423,000	95,208,000
	사.기타유가증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58,363,282	59,350,978
	가. 주식	0	0	0	58,363,282	59,350,978
	나. 출자금	0	0	0	0	0
KB생명(주)	2.단기매매증권		52,199,897	18,368,502	32,627,933	41,225,314
	가.주식		0	0	0	0
	나.국·공채		0	0	0	0
	다.특수채		0	0	0	0
	라.회사채		0	0	0	0
	마.수익증권		52,199,897	18,368,502	32,627,933	41,225,314
	바.해외유가증권		0	0	0	0
	사.신종유가증권		0	0	0	0
	아.기타유가증권		0	0	0	0
	3.매도가능증권		88,352,653	347,016,171	667,058,688	762,056,475
	가.주식		0	0	0	0
	나.출자금		0	0	0	0
	다.국·공채		19,619,829	80,409,475	179,039,071	208,116,623
	라.특수채		44,573,608	178,701,791	345,165,493	387,108,470
	마.회사채		15,095,904	87,904,905	142,854,124	140,694,995
	바.수익증권		0	0	0	0
	사.해외유가증권		0	0	0	0
	아.신종유가증권		9,063,312	0	0	0
	자.기타유가증권		0	0	0	26,136,387
	4. 만기보유증권		0	0	0	0
	가.국·공채		0	0	0	0
	나.특수채		0	0	0	0
	다.회사채		0	0	0	0

	라.수 익 증 권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가. 주식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동부생명	2.단 기 매 매 증 권	226,599,868	175,738,531	168,248,862	183,146,353	120,695,491
	가.주 식	2,074,346	4,213,392	1,628,426	2,742,929	11,122,367
	나.국·공 채	30,062,038	39,983,223	0	39,871,096	0
	다.특 수 채	40,124,665	0	69,568,080	49,532,678	0
	라.회 사 채	0	0	0	0	0
	마.수 익 증 권	120,214,350	93,585,088	67,575,009	41,696,257	31,669,882
	바.해 외 유 가 증 권	34,124,469	8,487,451	3,020,947	2,880,932	16,749,344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29,469,377	26,456,400	46,422,461	61,153,898
	3.매 도 가 능 증 권	157,584,163	243,359,731	531,444,072	698,106,256	764,068,457
	가.주 식	10,974,744	16,823,355	58,909,621	60,874,105	80,552,271
	나.출 자 금	0	0	0	0	0
	다.국·공 채	24,889,936	4,339,684	71,117,540	111,975,602	116,582,440
	라.특 수 채	45,891,637	84,350,500	153,631,625	151,526,376	137,223,917
	마.회 사 채	13,126,227	16,510,633	0	0	0
	바.수 익 증 권	0	22,486,354	111,757,834	162,981,718	213,626,906
	사.해 외 유 가 증 권	16,007,354	23,753,312	25,183,679	49,486,188	42,812,851
	아.신 종 유 가 증 권	36,108,253	44,912,455	72,621,365	92,148,148	86,209,037
	자.기 타 유 가 증 권	10,586,012	30,183,438	38,222,408	69,114,119	87,061,035
	4. 만기보유증권	76,357,590	75,337,248	108,841,750	347,177,051	474,283,765
	가.국 · 공 채	61,111,238	46,497,214	66,711,941	129,441,337	259,817,509
	나.특 수 채	3,710,352	18,597,034	29,270,809	205,226,714	205,228,256
	다.회 사 채	0	0	3,100,000	3,100,000	0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11,536,000	10,243,000	9,759,000	9,409,000	9,238,00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15,395,376	24,905,888	27,350,638	23,333,703	23,795,898
	가. 주식	15,395,376	24,905,888	27,350,638	23,333,703	23,795,898
	나. 출자금	0	0	0	0	0
동양생명(주)	2.단 기 매 매 증 권	599,032,523	520,143,616	530,686,590	518,947,447	761,481,046
	가.주 식	10,337,016	16,130,786	63,396	0	1,222,677
	나.국·공 채	69,363,682	20,291,590	0	199,795	0
	다.특 수 채	337,610	306,372	301,211	6,633,483	2,985,859
	라.회 사 채	33,330,897	28,968,442	505,804	4,674,730	4,643,881
	마.수 익 증 권	299,119,441	434,143,342	529,787,406	496,873,968	752,628,629
	바.해 외 유 가 증 권	523,016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186,020,861	20,303,084	28,773	10,565,471	0
	3.매 도 가 능 증 권	881,298,333	1,617,048,535	1,970,281,975	2,379,841,386	2,503,838,870
	가.주 식	12,707,463	8,852,975	10,851,158	296,960,090	363,951,997
	나.출 자 금	4,400,000	5,000,000	6,916,028	13,330,887	17,128,498
	다.국·공 채	104,465,944	241,709,537	295,620,017	583,006,814	561,760,294
	라.특 수 채	324,566,726	489,648,173	498,898,988	419,573,371	414,227,028
	마.회 사 채	305,669,330	722,771,921	947,489,925	764,814,343	776,185,219
	바.수 익 증 권	0	0	65,131,400	107,730,744	127,637,743
	사.해 외 유 가 증 권	92,796,586	65,847,491	77,000,008	103,452,430	103,684,076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36,692,284	83,218,438	68,374,451	90,972,707	139,264,015
	4. 만기보유증권	200,864,836	306,732,706	334,805,295	304,344,264	174,559,597
	가.국 · 공 채	0	0	30,157,015	30,542,970	30,550,069
	나.특 수 채	69,410,980	169,116,549	189,526,980	149,916,577	20,902,630
	다.회 사 채	100,306,656	53,623,557	10,700,000	6,232,731	7,173,649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31,147,200	83,992,600	104,421,300	117,651,986	115,933,249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54,249,400	74,400,645	61,371,069	35,110,057	32,875,028
	가. 주식	28,003,043	42,050,429	38,030,677	24,442,997	25,075,565
	나. 출자금	26,246,357	32,350,216	23,340,392	10,667,060	7,799,463
메트라이프	2.단 기 매 매 증 권	0	0	0	0	0
	가.주 식	0	0	0	0	0
	나.국·공 채	0	0	0	0	0
	다.특 수 채	0	0	0	0	0
	라.회 사 채	0	0	0	0	0
	마.수 익 증 권	0	0	0	0	0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1,140,500,589	1,190,271,818	1,397,138,574	1,776,576,726	1,841,587,424
	가.주 식	1,332,369	78,800	78,100	2,351,033	3,001,195
	나.출 자 금	0	0	0	0	0
	다.국·공 채	353,595,084	432,107,978	535,123,063	741,407,447	795,610,950
	라.특 수 채	523,226,983	637,081,768	712,124,535	890,831,029	902,628,146
	마.회 사 채	45,934,904	45,587,802	34,195,458	33,887,177	33,229,195
	바.수 익 증 권	0	0	0	0	0

	사.해 외 유 가 증 권	169,172,099	53,588,920	78,654,654	76,789,638	72,270,066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47,239,150	21,826,550	36,962,764	31,310,400	34,847,870
	4. 만기보유증권	0	0	0	0	0
	가.국 · 공 채	0	0	0	0	0
	나.특 수 채	0	0	0	0	0
	다.회 사 채	0	0	0	0	0
	라.수 익 증 권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가. 주식			0	0	0
	나. 출자금			0	0	0
PCA생명(주)	2.단 기 매 매 증 권	101,976,229	226,992,388	165,411,240	86,740,474	94,744,577
	가.주 식	0	0	0	0	0
	나.국 · 공 채	101,976,229	102,179,687	126,736,414	59,385,431	88,480,614
	다.특 수 채	0	99,180,984	0	0	0
	라.회 사 채	0	0	0	0	0
	마.수 익 증 권	0	25,631,717	38,674,826	27,355,043	6,263,963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39,511,003	0	9,869,091	10,224,161	9,840,887
	가.주 식	0	0	0	0	0
	나.출 자 금	0	0	0	0	0
	다.국 · 공 채	39,511,003	0	9,869,091	10,224,161	9,840,887
	라.특 수 채	0	0	0	0	0
	마.회 사 채	0	0	0	0	0
	바.수 익 증 권	0	0	0	0	0
	사.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4. 만기보유증권	0	0	0	0	0
	가.국 · 공 채	0	0	0	0	0
	나.특 수 채	0	0	0	0	0
	다.회 사 채	0	0	0	0	0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0
	가. 주식	0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0
뉴욕생명(주)	2.단 기 매 매 증 권	0	0	0	0	0
	가.주 식	0	0	0	0	0
	나.국 · 공 채	0	0	0	0	0
	다.특 수 채	0	0	0	0	0
	라.회 사 채	0	0	0	0	0
	마.수 익 증 권	0	0	0	0	0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0	0	0	0	0
	가.주 식	0	0	0	0	0
	나.출 자 금	0	0	0	0	0
	다.국 · 공 채	0	0	0	0	0
	라.특 수 채	0	0	0	0	0
	마.회 사 채	0	0	0	0	0
	바.수 익 증 권	0	0	0	0	0
	사.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4. 만기보유증권	34,141,258	80,752,727	119,443,914	176,081,491	186,076,410
	가.국 · 공 채	34,141,258	50,512,609	89,389,463	176,081,491	186,076,410
	나.특 수 채	0	30,240,118	30,054,451	0	0
	다.회 사 채	0	0	0	0	0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0
	가. 주식	0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0
	2.단 기 매 매 증 권	31,585,623	46,692,550	96,363,199	107,219,811	136,212,330
	가.주 식	31,585,623	46,692,550	96,363,199	107,219,811	136,212,330
	나.국 · 공 채	0		0	0	0
	다.특 수 채	0		0	0	0
	라.회 사 채	0		0	0	0
	마.수 익 증 권	0		0	0	0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푸르덴셜생명(주)	3.매 도 가 능 증 권	163,079,901	347,764,329	651,310,771	928,279,237	910,727,594
	가.주 식	0	15,091,716	29,390,424	26,848,797	28,410,216
	나.출 자 금	0		0	0	0
	다.국·공 채	2,190,426	12,017,953	87,689,103	112,641,754	70,620,394
	라.특 수 채	57,429,998	112,843,755	243,541,820	452,106,695	461,372,804
	마.회 사 채	89,922,541	112,778,981	174,424,660	221,993,988	238,104,025
	바.수 익 증 권	5,266,106	6,057,462	11,145,903	11,743,912	11,808,722
	사.해 외 유 가 증 권	4,904,830	45,381,941	43,150,079	43,459,431	42,286,283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3,366,000	43,592,520	61,968,780	59,484,660	58,125,150
	4. 만기보유증권	866,240,578	1,083,000,384	1,260,658,748	1,598,665,178	1,734,629,848
	가.국 · 공 채	381,553,703	622,068,561	936,115,717	1,312,215,940	1,439,177,093
	나.특 수 채	317,488,183	338,825,874	247,486,571	222,260,042	231,264,960
	다.회 사 채	167,198,692	122,105,948	77,056,458	64,189,196	64,187,795
	라.수 익 증 권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3,137,512	4,763,200	0	0
	가. 주식	0	3,137,512	4,763,200	0	0
	나. 출자금	0		0	0	0
ING생명(주)	2.단 기 매 매 증 권	73,240,494	78,847,758	105,218,527	111,117,538	127,066,848
	가.주 식	0	0	0	0	0
	나.국·공 채	0	0	0	0	0
	다.특 수 채	0	0	0	0	0
	라.회 사 채	0	0	0	0	0
	마.수 익 증 권	73,240,494	78,847,758	105,218,527	111,117,538	127,066,848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111,575,395	3,697,288,582	4,733,743,469	5,928,646,354	6,005,641,735
	가.주 식	0	0	7,688,651	12,455,216	12,884,596
	나.출 자 금	0	0	2,500,000	29,586,629	31,086,629
	다.국·공 채	0	1,840,942,742	2,019,000,303	3,101,216,377	3,307,155,206
	라.특 수 채	59,715,167	1,009,713,669	1,596,659,996	1,812,795,756	1,628,487,065
	마.회 사 채	39,909,207	329,086,129	435,503,905	375,842,330	371,414,447
	바.수 익 증 권	0	65,819,659	190,152,499	283,220,263	332,367,174
	사.해 외 유 가 증 권	11,951,021	339,211,254	389,142,155	221,444,666	229,930,597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87,453,923	84,227,133	81,344,883	79,028,230
	자.기 타 유 가 증 권	0	25,061,207	8,868,828	10,740,236	13,287,791
	4. 만기보유증권	1,984,544,312	0	0	0	0
	가.국 · 공 채	962,857,719	0	0	0	0
	나.특 수 채	805,943,964	0	0	0	0
	다.회 사 채	12,101,300	0	0	0	0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198,025,911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5,615,417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0
	가. 주식	0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0
하나생명(주)	2.단 기 매 매 증 권	0	12,068,557	21,050,784	6,000,772	16,995,518
	가.주 식	0	0	0	0	0
	나.국·공 채	0	0	0	0	0
	다.특 수 채	0		0	0	0
	라.회 사 채	0	0	0	0	0
	마.수 익 증 권	0	12,068,557	21,050,784	6,000,772	16,995,518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127,063,714	278,986,034	239,590,437	273,678,740	249,082,859
	가.주 식	0	9,676,881	13,982,571	16,306,043	20,677,401
	나.출 자 금	0		0	0	0
	다.국·공 채	47,886,057	100,027,278	109,634,244	107,469,074	39,917,243
	라.특 수 채	43,143,223	105,436,916	49,929,352	61,855,717	72,527,197
	마.회 사 채	7,011,800	17,229,271	16,983,076	38,684,768	67,830,919
	바.수 익 증 권	0		2,049,920	7,317,964	7,418,043
	사.해 외 유 가 증 권	18,907,965	46,615,688	46,422,149	37,796,242	36,056,217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10,114,669	0	589,123	4,248,932	4,655,836
	4. 만기보유증권	15,246,360	15,246,360	88,462,209	91,293,252	105,990,511
	가.국 · 공 채	0	0	51,570,797	54,622,408	59,406,629
	나.특 수 채	0		9,741,775	9,783,685	19,794,483
	다.회 사 채	15,246,360	15,246,360	20,246,360	20,246,360	20,246,360
	라.수 익 증 권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6,903,276	6,640,799	6,543,038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0
	가. 주식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2.단 기 매 매 증 권		0	0	0	0
	가.주 식		0	0	0	0

라이나생명(주)	나.국·공 채		0	0	0	0
	다.특 수 채		0	0	0	0
	라.회 사 채		0	0	0	0
	마.수 익 증 권		0	0	0	0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212,867,585	181,723,676	243,941,513	287,058,818
	가.주 식		0	0	0	0
	나.출 자 금		0	0	0	0
	다.국·공 채		172,103,071	135,757,498	135,298,062	139,374,740
	라.특 수 채		35,539,738	0	9,960,192	29,886,000
	마.회 사 채		5,009,428	45,658,877	98,683,259	117,798,077
	바.수 익 증 권		0	0	0	0
	사.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215,348	307,301	0	0
	4. 만기보유증권		94,410,847	225,887,144	245,450,100	245,599,290
	가.국·공 채		63,155,965	165,958,173	185,823,704	186,049,220
	나.특 수 채		11,182,955	40,878,112	40,563,900	40,484,411
	다.회 사 채		20,071,927	19,050,859	19,062,496	19,065,658
	라.수 익 증 권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가. 주식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아메리카생명 한국지점	2.단 기 매 매 증 권	29,401,550	86,332,605	131,796,832	176,720,785	205,675,950
	가.주 식	29,401,550	86,332,605	131,796,832	176,720,785	205,675,950
	나.국·공 채	0	0	0	0	0
	다.특 수 채	0	0	0	0	0
	라.회 사 채	0	0	0	0	0
	마.수 익 증 권	0	0	0	0	0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273,789,094	569,384,690	1,019,484,007	1,876,457,601	2,078,755,804
	가.주 식	0	4,180,500	1,126,373	2,999,997	2,999,997
	나.출 자 금	0	0	0	0	2,305,435
	다.국·공 채	60,738,016	82,601,208	417,597,160	632,160,017	683,313,799
	라.특 수 채	49,830,010	146,411,466	142,234,120	476,891,890	523,272,870
	마.회 사 채	133,709,106	127,864,001	37,897,128	119,768,655	215,981,180
	바.수 익 증 권	0	0	0	2,336,546	0
	사.해 외 유 가 증 권	29,511,962	208,327,515	394,637,928	557,053,416	547,906,006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56,547,562	74,190,889
	자.기 타 유 가 증 권	0	0	25,991,298	28,699,519	28,785,628
	4. 만기보유증권	446,838,998	946,582,577	1,413,717,590	1,527,927,415	1,519,780,127
	가.국·공 채	263,174,866	463,429,073	629,334,374	605,050,801	600,794,691
	나.특 수 채	99,586,694	257,572,869	387,417,882	535,255,097	535,213,591
	다.회 사 채	75,144,797	68,089,898	127,788,349	118,785,718	118,779,722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8,932,641	157,490,736	269,176,985	268,835,799	264,992,123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0
	가. 주식	0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0
에쓰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식회사	2.단 기 매 매 증 권	0	0	0	0	30,051,107
	가.주 식	0	0	0	0	0
	나.국·공 채	0	0	0	0	0
	다.특 수 채	0	0	0	0	0
	라.회 사 채	0	0	0	0	0
	마.수 익 증 권	0	0	0	0	30,051,107
	바.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사.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아.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3.매 도 가 능 증 권	54,612,254	51,255,198	48,770,139	59,151,964	68,196,483
	가.주 식	0	0	0	0	0
	나.출 자 금	0	0	0	0	0
	다.국·공 채	54,127,167	50,292,680	48,472,247	49,167,491	58,057,675
	라.특 수 채	0	0	0	9,616,403	9,724,856
	마.회 사 채	0	0	0	0	0
	바.수 익 증 권	0	0	0	0	0
	사.해 외 유 가 증 권	0	908,364	0	0	0
	아.신 종 유 가 증 권	0	0	0	0	0
	자.기 타 유 가 증 권	485,087	54,154	297,892	368,070	413,952
	4. 만기보유증권	0	0	0	0	0
	가.국·공 채	0	0	0	0	0
	나.특 수 채	0	0	0	0	0
	다.회 사 채	0	0	0	0	0
	라.수 익 증 권	0	0	0	0	0
	마.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바.신종유가증권	0	0	0	0	0
	사.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5.지분법적용투자주	0	0	0	0	0
	가. 주식	0	0	0	0	0
	나. 출자금	0	0	0	0	0

주) 업무보고서중 대차대조표(일반및총괄) 결산월 기준임

나. 유가증권 투자수익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4년03월				
		총계	주식	출자금	국공채	특수채
대한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1,173,597,627	78,286,401	0	511,475,910	353,375,368
알리안츠생명	당기손익관련소계	342,466,847	132,565,771	177,985	164,227,645	53,899,142
삼성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2,100,009,396	92,436,818	0	624,027,984	518,650,862
흥국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126,490,076	-10,100,531	2,299,005	7,803,746	23,572,430
교보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761,124,895	3,333,837	-7,791,600	185,318,566	208,710,901
녹십자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19,122,008	-185,846	0	2,735,932	6,284,165
신한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83,263,743	-16,271,347	-858,362	15,549,928	32,779,828
LIG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20,118,136	5,840,682	0	864,283	2,539,632
금호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97,303,595	735,827	0	1,452,154	4,772,782
미래에셋생명	당기손익관련소계	87,179,485	5,801,433	0	12,149,060	20,335,949
KB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동부생명	당기손익관련소계	39,363,224	6,253,719	0	10,315,018	3,620,714
동양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96,521,027	-5,511,014	-466,189	9,256,720	13,906,078
메트라이프	당기손익관련소계	54,959,001	-3,241,137	0	20,055,235	27,027,162
PCA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5,820,733	0	0	5,684,514	136,219
뉴욕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1,634,849	0	0	1,634,849	0
푸르덴셜생명	당기손익관련소계	64,514,853	9,830,764	0	25,156,625	16,501,305
ING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128,805,536	0	0	49,496,359	51,368,831
하나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4,897,293	73,135	0	2,749,810	811,708
라이나생명(주)	당기손익관련소계					
아메리카생명	당기손익관련소계	37,067,765	9,391,277	0	14,311,222	4,882,374
에쓰에이치앤	당기손익관련소계	1,408,449	0	0	1,408,449	0

주) 업무보고서중 유가증권손익현황 기준임(결산월)

(붙임3)

15. 04년~07년 6월말 현재, 연도별, 금융기관별 유가증권 투자금액 및 투자수익 현황

(3) 손해보험회사

가. 유가증권 투자금액

(단위:천원)

금융회사명	구분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2007년03월	2007년06월
메리츠화재(주)	II. 단기매매증권	382,632,184	344,952,654	174,769,976	346,000,841	398,781,206
	1.주 식	28,870,481	7,342,356	40,257	299,074	3,130,951
	2.국·공 채	0	19,929,981	0	0	0
	3.특 수 채	52,111,778	89,621,859	9,788,336	19,797,080	0
	4.회 사 채	19,121,403	4,968,832	30,001,773	9,919,765	0
	5.수 익 증 권	235,237,948	215,382,049	112,029,862	127,901,364	151,235,472
	6.해외 유가증권	16,985,606	4,836,745	1,475,561	167,295,214	177,603,935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30,304,968	2,870,833	21,434,187	20,788,344	66,810,848
	III. 매도가능증권	756,209,763	744,281,647	928,702,119	1,099,133,152	1,281,545,570
	1.주 식	56,758,872	77,494,551	49,827,706	34,988,085	60,611,063
	2.출 자 금	1,000,000	524,000	9,511,000	7,209,332	8,250,997
	3.국·공 채	80,860,401	48,262,215	146,143,118	179,791,332	192,131,932
	4.특 수 채	313,039,800	276,242,167	262,803,027	331,967,285	374,199,810
	5.회 사 채	298,782,690	266,549,737	250,795,225	252,358,991	268,006,316
	6.수 익 증 권	0	21,311,852	106,987,721	153,156,843	231,615,328
	7.해 외 유 가 증 권	5,768,000	12,291,600	33,230,468	45,375,522	44,394,722
	8.신종 유가증권	0	0	53,650,103	94,285,762	102,335,402
	9.기 타 유 가 증 권	0	41,605,526	15,753,750	0	0
	IV. 만기보유증권	203,312,184	332,904,258	330,480,539	327,751,272	327,776,229
	1.국·공 채	30,053,793	30,514,771	31,001,702	29,538,892	29,705,810
	2.특 수 채	100,032,067	190,970,694	220,957,421	221,823,199	222,489,621
	3.회 사 채	50,154,324	49,960,793	19,967,416	19,971,181	19,972,798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23,072,000	61,458,000	58,554,000	56,418,000	55,608,00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V.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40,307	6,959,864	58,428,996	79,734,947	81,448,822
	1.주식	10,040,307	6,959,864	58,428,996	79,734,947	81,448,822
	2.출자금	0	0	0	0	0
한화손해보험(주)	II. 단기매매증권	254,431,235	233,376,501	87,278,017	39,646,756	84,764,526
	1.주 식	2,649,719	7,159,245	5,304,809	4,595,930	8,167,630
	2.국·공 채	40,205,002	0	0	0	0
	3.특 수 채	28,972,669	30,267,297	19,981,111	23,623,646	23,595,348
	4.회 사 채	10,036,515	29,790,969	0	0	0
	5.수 익 증 권	109,842,639	57,235,724	49,102,962	9,436,648	33,106,085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108,37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62,616,322	108,923,266	12,889,135	1,990,532	19,895,463
	III. 매도가능증권	84,089,743	155,108,894	318,152,124	434,810,245	421,108,163
	1.주 식	5,311,505	7,940,615	20,661,908	21,816,352	21,344,136
	2.출 자 금	0	0	0	0	0
	3.국·공 채	21,597,413	13,217,252	129,740	143,008	142,550
	4.특 수 채	20,015,842	31,946,799	52,347,921	127,995,691	159,845,648
	5.회 사 채	34,370,676	47,058,351	156,423,784	193,755,161	159,674,159
	6.수 익 증 권	0	0	56,500,000	30,540,210	31,790,325
	7.해 외 유 가 증 권	2,417,179	44,044,631	31,711,643	35,569,770	25,665,911
	8.신종 유가증권	0	0	0	5,002,777	0
	9.기 타 유 가 증 권	377,128	10,901,246	377,128	19,987,276	22,645,434
	IV. 만기보유증권	132,651,691	0	0	0	0
	1.국·공 채	16,002,676	0	0	0	0
	2.특 수 채	41,109,603	0	0	0	0
	3.회 사 채	64,003,412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11,536,00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V.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II. 단기매매증권	78,688,034	102,389,937	150,824,172	66,720,773	185,321,905

대한화재(주)	1.주 식	12,763,170	0	7,261,700	1,818,360	13,273,735
	2.국·공 채		9,914,342	35,877,969	9,949,840	9,977,209
	3.특 수 채	20,411,408	60,214,383	107,620,568	34,155,705	116,986,678
	4.회 사 채	74	6,037,061	0	0	0
	5.수 익 증 권	16,617,234	21,024,794	34,199	20,721,199	45,053,937
	6.해외 유가증권		3,007,23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28,896,147	2,192,127	29,736	75,669	30,346
	III. 매도가능증권	72,516,868	39,987,232	77,227,280	61,067,542	52,856,051
	1.주 식	769,394	770,221	9,544,570	3,490,260	3,788,804
	2.출 자 금	400,000	400,000	0	0	0
	3.국·공 채	11,300,982	10,245,536	23,323,102	19,628,334	19,601,281
	4.특 수 채	41,731,062	28,278,154	44,359,608	32,593,484	23,108,723
	5.회 사 채	358,606	293,321	0	0	0
	6.수 익 증 권		0	0	5,355,465	5,357,243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17,956,824	0	0	0	1,000,000
	IV. 만기보유증권	92,269,081	93,399,143	70,856,074	45,772,731	13,742,974
	1.국·공 채	59,136,930	60,482,957	61,896,218	40,022,731	7,992,974
	2.특 수 채	33,132,150	32,916,186	8,959,856	5,750,000	5,750,000
	3.회 사 채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V.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1.주식		0	0	0	0
	2.출자금		0	0	0	0
그린화재(주)	II. 단기매매증권	238,615,943	164,838,458	212,915,841	320,140,984	385,190,280
	1.주 식	31,774,922	59,935,120	60,779,371	84,286,711	56,013,213
	2.국·공 채	110,512	118,858	10,129,461	30,139,501	120,045
	3.특 수 채	0	0	99,277,542	137,004,520	198,232,721
	4.회 사 채	0	0	4,861,467	6,160,253	47,025,384
	5.수 익 증 권	161,087,578	104,784,480	37,868,000	54,800,000	67,800,00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15,321,405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30,321,526	0	0	7,750,000	15,998,917
	III. 매도가능증권	43,411,394	43,893,593	78,417,404	75,351,922	98,958,574
	1.주 식	19,990,166	26,848,445	69,571,813	64,922,402	63,962,052
	2.출 자 금	1,000,000	1,500,000	4,845,000	8,428,333	8,448,333
	3.국·공 채	0	0	0	0	0
	4.특 수 채	0	0	0	0	24,547,849
	5.회 사 채	1,029,502	3,023,478	4,000,591	2,001,187	2,000,340
	6.수 익 증 권	0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21,391,726	12,521,67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IV. 만기보유증권	10,000,000	10,000,000	5,000,000	6,000,000	6,000,000
	1.국·공 채	0	0	0	0	0
	2.특 수 채	10,000,000	10,000,000	5,000,000	6,000,000	6,000,00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V.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26,384,568	0	0	0
	1.주식	0	26,384,568	0	0	0
	2.출자금	0	0	0	0	0
	II. 단기매매증권	242,515,380	226,505,196	243,509,397	97,365,461	147,610,084
	1.주 식	12,586,463	4,929,800	5,586	0	0
	2.국·공 채	46,974,223	56,702,541	19,510,399	9,660,289	9,588,084
	3.특 수 채	123,741,395	122,098,697	124,457,799	33,664,295	50,492,932
	4.회 사 채	26,647,601	0	8,034,037	0	0
	5.수 익 증 권	12,523,935	32,174,653	63,286,766	30,402,281	60,221,013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20,041,763	0	10,004,706	0	0
	8.기타 유가증권	0	10,599,505	18,210,104	23,638,596	27,308,055
	III. 매도가능증권	236,872,127	225,744,584	327,680,749	462,113,874	429,620,857

흥국쌍용화재	1.주 식	8,402,700	9,660,401	4,451,679	57,077,447	57,097,032
	2.출 자 금	0	0	0	1,513,886	161,222
	3.국·공 채	12,176,190	36,517,617	66,288,705	67,924,575	66,632,104
	4.특 수 채	130,814,180	102,560,096	144,959,510	130,772,035	110,137,401
	5.회 사 채	64,772,408	64,342,999	100,438,779	88,322,667	57,989,532
	6.수 익 증 권	0	0	0	10,112,000	13,040,600
	7.해 외 유 가 증 권	7,586,068	9,644,809	9,135,400	72,349,021	91,528,532
	8.신종 유가증권	13,120,581	3,018,663	2,406,676	28,950,742	27,846,283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5,091,500	5,188,150
	Ⅳ. 만기보유증권	43,168,801	0	0	0	0
	1.국·공 채	0	0	0	0	0
	2.특 수 채	43,168,801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제일화재(주)	Ⅱ. 단기매매증권	281,158,431	459,708,029	427,038,322	339,130,025	282,918,102
	1.주 식	4,185,552	5,445,313	8,044,095	14,860,329	15,009,737
	2.국·공 채	26,546,069	27,137,991	757,638	740,051	728,145
	3.특 수 채	52,669,288	114,680,088	194,512,007	147,113,942	70,434,522
	4.회 사 채	42,134,664	16,657,551	27,505,255	9,516,628	18,939,785
	5.수 익 증 권	71,385,846	148,794,323	54,577,049	27,606,119	33,598,974
	6.해외 유가증권	38,309,457	23,871,149	2,078,667	14,375,333	9,919,011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45,927,555	123,121,614	139,563,611	124,917,623	134,287,928
	Ⅲ. 매도가능증권	149,648,135	91,983,017	56,349,609	220,544,467	347,560,075
	1.주 식	17,188,436	26,237,268	19,788,021	18,922,479	18,527,094
	2.출 자 금	2,310,000	1,212,000	1,195,333	966,667	833,333
	3.국·공 채	24,998,968	14,678,296	5,253,624	38,375,189	56,116,292
	4.특 수 채	41,349,914	32,948,937	25,373,996	67,557,839	142,036,378
	5.회 사 채	63,657,008	16,762,706	4,594,825	59,036,200	85,562,016
	6.수 익 증 권	143,810	143,810	143,810	27,171,404	27,907,587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8,514,689	16,577,375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125,357,593	142,565,424	123,984,819
	1.국·공 채	0	0	48,804,613	49,049,843	49,013,717
	2.특 수 채	0	0	49,052,980	49,015,581	29,501,049
	3.회 사 채	0	0	27,500,000	44,500,000	45,470,053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7,630,985	20,202,933	20,348,849	20,860,805	14,541,365
	1.주식	17,630,985	20,202,933	20,348,849	20,860,805	14,541,365
	2.출자금	0	0	0	0	0
삼성화재(주)	Ⅱ. 단기매매증권	916,887,200	471,284,931	578,017,078	313,043,023	65,024,715
	1.주 식	52,409,590	148,431	0	0	0
	2.국·공 채	194,202,791	73,409,497	106,564,401	91,217,862	9,048,756
	3.특 수 채	455,147,277	255,327,082	413,388,356	119,900,674	9,962,810
	4.회 사 채	50,276,824	30,151,204	11,794,662	0	0
	5.수 익 증 권	20,007,846	20,587,086	0	50,081,200	0
	6.해외 유가증권	100,269,648	61,598,978	46,269,659	51,843,287	46,013,149
	7.신종 유가증권	44,573,223	30,062,654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6,422,246,755	8,047,467,641	9,180,731,184	10,433,378,875	10,906,559,618
	1.주 식	1,244,170,391	1,136,548,115	1,532,663,306	1,357,997,276	1,489,630,067
	2.출 자 금	9,249,732	1,016,907	389,882	245,596	245,596
	3.국·공 채	1,955,556,141	2,863,826,552	3,168,469,914	2,574,050,782	2,662,564,677
	4.특 수 채	1,207,383,299	2,285,410,609	2,388,760,892	3,590,802,951	3,613,157,622
	5.회 사 채	1,232,393,103	1,078,079,342	1,246,532,555	1,313,016,376	1,414,550,634
	6.수 익 증 권	70,880,554	102,725,521	104,604,457	304,933,358	338,078,095
	7.해 외 유 가 증 권	180,031,353	181,503,754	165,735,129	395,147,614	381,251,144
	8.신종 유가증권	490,861,314	381,770,668	565,725,045	891,545,932	998,272,639
	9.기 타 유 가 증 권	31,720,868	16,586,173	7,850,004	5,638,990	8,809,145

	Ⅳ. 만기보유증권	4,890,044	0	0	1,340,000	440,000
	1.국·공 채	4,890,044	0	0	0	0
	2.특 수 채	0	0	0	1,340,000	440,00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28,582	15,827,477	52,937,610	62,656,867	61,374,496
	1.주식	5,836,413	4,654,484	4,959,772	19,325,767	18,089,225
	2.출자금	16,592,169	11,172,992	47,977,839	43,331,100	43,285,271
현대해상(주)	Ⅱ. 단기매매증권	308,486,880	291,419,804	180,175,559	263,310,777	263,922,033
	1.주 식	63,704,968	77,965,487	21,311,542	3,201,917	3,006,247
	2.국 · 공 채	129,006,662	59,295,324	68,770,152	41,199,666	60,889,161
	3.특 수 채	71,420,206	113,682,254	41,343,694	213,205,246	195,721,090
	4.회 사 채	19,768,345	10,017,073	24,864,268	0	0
	5.수 익 증 권	13,585,724	580,028	4,268,998	407,722	409,280
	6.해외 유가증권	8,000,975	8,379,638	5,616,905	5,296,226	3,896,255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3,000,000	21,500,000	14,000,000	0	0
	Ⅲ. 매도가능증권	1,940,582,211	2,135,755,738	2,450,777,655	2,536,296,675	2,784,302,810
	1.주 식	114,184,453	159,818,752	322,020,126	359,296,366	518,275,764
	2.출 자 금	0	1,000,000	12,179,708	25,029,929	25,169,929
	3.국 · 공 채	118,903,619	141,782,975	118,735,443	134,508,043	180,494,737
	4.특 수 채	476,426,296	485,594,922	547,866,282	597,644,475	682,638,873
	5.회 사 채	911,857,331	970,964,161	1,160,512,936	1,087,905,003	1,058,081,240
	6.수 익 증 권	1,237,444	6,314,134	82,677,869	133,711,206	122,154,048
	7.해 외 유 가 증 권	20,530,873	37,636,132	135,707,155	150,115,946	158,478,514
	8.신종 유가증권	289,837,922	327,937,301	69,673,551	33,522,917	33,019,405
	9.기 타 유 가 증 권	7,604,273	4,707,359	1,404,585	14,562,790	5,990,300
	Ⅳ. 만기보유증권	88,216,918	203,312,529	327,592,302	365,469,760	345,064,254
	1.국·공 채	0	0	9,975,188	30,048,269	30,046,770
	2.특 수 채	10,000,000	60,009,394	140,008,228	180,006,228	180,005,845
	3.회 사 채	60,870,144	80,730,796	120,113,176	110,038,092	100,017,434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17,346,774	32,409,504	57,495,710	45,377,171	34,994,205
	6.신종유가증권	0	30,162,836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575,355	26,036,714	58,318,682	116,731,530	146,894,718
	1.주식	20,575,355	26,036,714	58,318,682	92,520,595	122,663,854
	2.출자금	0	0	0	24,210,935	24,230,864
엘아이지손해(주)	Ⅱ. 단기매매증권	255,188,458	310,425,681	197,948,585	157,959,105	153,862,189
	1.주 식	36,958,373	34,252,792	37,435,244	36,064,324	27,701,725
	2.국 · 공 채	40,602,844	30,386,269	19,929,351	9,950,120	9,977,509
	3.특 수 채	50,270,231	118,623,065	20,001,602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107,764,995	105,125,568	86,280,972	62,727,444	68,142,198
	6.해외 유가증권	19,592,015	22,037,987	23,524,760	49,217,217	48,040,757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10,776,657	0	0
	Ⅲ. 매도가능증권	1,188,048,701	1,300,572,046	1,511,911,812	1,760,613,441	1,902,123,671
	1.주 식	162,293,870	207,304,090	276,413,867	268,642,966	361,596,984
	2.출 자 금	10,928,345	8,557,785	2,428,821	3,566,949	5,681,949
	3.국 · 공 채	64,427,487	140,246,305	160,496,056	243,991,391	315,600,139
	4.특 수 채	307,589,169	356,410,653	479,306,341	586,271,432	558,778,297
	5.회 사 채	288,140,544	266,271,527	246,604,243	164,108,120	162,324,846
	6.수 익 증 권	594,132	936,430	11,538,946	97,511,600	134,355,361
	7.해 외 유 가 증 권	183,276,680	153,926,242	196,374,154	243,808,594	259,716,610
	8.신종 유가증권	118,648,914	105,277,685	98,768,502	105,913,775	56,965,407
	9.기 타 유 가 증 권	52,149,560	61,641,330	39,980,883	46,798,614	47,104,078
	Ⅳ. 만기보유증권	157,881,284	190,489,791	236,841,801	214,265,437	203,433,055
	1.국·공 채	0	0	0	0	0
	2.특 수 채	20,985,284	30,989,124	110,662,367	112,756,134	112,779,727
	3.회 사 채	10,000,000	6,000,00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69,216,000	102,285,667	96,902,434	73,300,303	62,849,328
	6.신종유가증권	57,680,000	51,215,000	29,277,000	28,209,000	27,804,00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882,323	3,426,740	39,707,480	49,725,677	61,551,395
	1.주식	3,882,323	3,426,740	39,707,480	49,725,677	61,551,395
	2.출자금	0	0	0	0	0
동부화재(주)	Ⅱ. 단기매매증권	414,147,338	398,876,730	48,116,585	100,552,797	100,048,188
	1.주 식	36,843,085	0	0	0	0
	2.국·공 채	29,713,468	0	0	19,978,849	9,900,002
	3.특 수 채	22,084,918	88,039,671	0	19,837,189	30,034,311
	4.회 사 채	6,777,913	6,789,533	10,962,006	11,203,912	10,113,875
	5.수 익 증 권	273,008,766	279,173,385	11,981,043	0	50,000,000
	6.해외 유가증권	25,759,837	24,874,141	25,173,536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19,959,351	0	0	49,532,847	0
	Ⅲ. 매도가능증권	1,847,235,514	2,302,881,537	2,997,201,703	3,390,747,270	3,667,029,171
	1.주 식	195,162,953	184,414,893	246,212,157	232,782,378	285,323,405
	2.출 자 금	3,535,060	3,131,933	3,760,492	21,092,828	30,295,538
	3.국·공 채	254,904,063	373,801,463	436,672,762	398,245,397	409,756,192
	4.특 수 채	571,279,472	609,206,711	922,185,211	1,286,338,905	1,386,048,615
	5.회 사 채	277,995,087	369,685,292	709,256,841	635,899,108	603,434,988
	6.수 익 증 권	12,019,982	95,543,364	301,550,086	437,140,188	470,492,524
	7.해 외 유 가 증 권	203,742,115	262,023,286	261,495,807	339,148,068	390,060,568
	8.신종 유가증권	290,234,820	402,106,970	50,070,056	38,314,404	37,470,153
	9.기 타 유 가 증 권	38,361,962	2,967,625	65,998,291	1,785,994	54,147,188
	Ⅳ. 만기보유증권	7,900,590	7,937,010	7,935,850	2,508,430	2,433,500
	1.국·공 채	7,900,590	7,937,010	7,935,850	2,508,430	2,433,500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88,681,182	114,963,490	123,619,176	119,412,073	118,613,385
	1.주식	88,681,182	114,963,490	123,619,176	119,412,073	118,613,385
	2.출자금	0	0	0	0	0
서울보증(주)	Ⅱ. 단기매매증권	1,423,870,141	1,444,525,378	719,413,717	710,982,653	737,135,862
	1.주 식	36,513,736	12,408,003	6,044,567	0	0
	2.국·공 채	79,900,998	100,897,849	40,108,607	0	0
	3.특 수 채	139,508,634	99,630,830	30,025,042	0	0
	4.회 사 채	140,400,797	232,201,318	170,128,111	79,940,450	29,960,176
	5.수 익 증 권	835,661,233	913,116,179	390,371,975	571,484,940	584,458,689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56,484,355	10,877,050	0	0	0
	8.기타 유가증권	135,400,388	75,394,150	82,735,415	59,557,262	122,716,996
	Ⅲ. 매도가능증권	803,740,263	1,106,275,317	2,328,314,138	3,121,528,117	3,275,001,491
	1.주 식	502,911,001	551,180,945	776,676,404	677,748,935	749,738,698
	2.출 자 금	23,167,420	23,167,420	23,167,520	23,167,520	23,167,520
	3.국·공 채	60,206,371	139,657,854	242,009,716	335,091,040	340,468,219
	4.특 수 채	59,767,748	91,492,607	671,291,668	1,212,956,922	1,255,655,400
	5.회 사 채	105,520,512	256,687,044	485,226,920	717,588,068	712,350,836
	6.수 익 증 권	16,933,819	23,952,438	57,551,998	97,996,058	117,983,382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30,233,392	20,137,009	10,336,93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5,000,000	0	62,052,982	56,979,572	75,637,433
	Ⅳ. 만기보유증권	1,980,619	1,903,295	1,156,156	1,234,214	1,202,097
	1.국·공 채	354,619	313,295	361,156	439,214	446,097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1,626,000	1,590,000	795,000	795,000	756,00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100,000	8,992,415	11,754,589	14,227,187	14,227,187
	주식	5,100,000	8,992,415	11,754,589	14,227,187	14,227,187
	출자	0	0	0	0	0
	Ⅱ. 단기매매증권	834,332,889	727,025,000	648,189,789	549,782,850	385,936,220
	1.주 식	22,026,758	9,464,540	6,371,872	3,152,663	8,832,355
	2.국·공 채	20,206,280	50,134,660	77,974,810	0	0
	3.특 수 채	280,473,488	229,105,098	217,273,320	248,286,700	188,543,440
	4.회 사 채	220,623,115	140,869,310	148,272,520	98,944,520	128,791,840

코리안리보험(주)	5.수 익 증 권	130,511,373	45,252,997	111,199,416	70,649,215	35,074,082
	6.해외 유가증권	15,365,835	12,258,382	3,410,813	0	0
	7.신종 유가증권	10,076,00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135,050,040	239,940,013	83,687,038	128,749,752	24,694,503
	Ⅲ. 매도가능증권	25,173,665	201,205,710	389,625,896	666,658,470	851,155,946
	1.주 식	3,480,740	3,480,740	10,797,743	31,229,697	45,388,415
	2.출 자 금	3,039,751	3,063,086	1,129,885	729,885	829,885
	3.국 · 공 채	0	78,724,810	162,783,240	165,566,220	173,576,560
	4.특 수 채	0	49,818,630	99,063,000	199,325,600	276,284,810
	5.회 사 채	2,340,713	51,249,050	94,152,980	248,100,940	333,606,130
	6.수 익 증 권	0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16,312,461	14,869,394	21,699,048	21,706,128	21,470,146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188,618,244	251,144,652	361,060,020	350,568,392	350,387,918
	1.국·공 채	57,581,137	119,822,371	209,666,876	211,378,705	221,362,227
	2.특 수 채	75,728,858	85,800,275	95,883,871	103,988,367	94,024,282
	3.회 사 채	55,308,249	45,522,006	55,509,273	35,201,320	35,001,409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829,369	3,716,190	2,033,421	2,702,168	2,923,328
	1.주식	5,829,369	3,716,190	2,033,421	2,702,168	2,923,328
	2.출자금	0	0	0	0	0
교보자동차(주)	Ⅱ. 단기매매증권	20,743,973	17,900,690	22,109,052	34,673,185	14,663,673
	1.주 식	0	0	0	0	0
	2.국 · 공 채	0	0	0	0	0
	3.특 수 채	0	0	0	24,578,885	14,663,673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20,743,973	17,900,690	22,109,052	10,094,30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0	0	0	0	0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 · 공 채	0	0	0	0	0
	4.특 수 채	0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81,958,474	117,020,780	84,423,701	79,579,331	89,627,786
	1.국·공 채	10,006,367	19,579,217	9,675,504	9,768,524	9,790,868
	2.특 수 채	32,230,562	47,662,286	24,900,393	54,852,321	64,868,401
	3.회 사 채	39,721,545	49,779,277	49,847,804	14,958,486	14,968,517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Ⅱ. 단기매매증권	0	0	2,500,525	11,347,789	18,098,033
	1.주 식	0	0	0	0	0
	2.국 · 공 채	0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2,500,525	6,257,100	15,054,854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5,090,689	3,043,179
	Ⅲ. 매도가능증권	0	0	0	16,999,765	27,700,014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 · 공 채	0	0	0	0	0
	4.특 수 채	0	0	0	0	0

교원자동차(주)	5.회 사 채	0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13,999,765	23,700,014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3,000,000	4,000,000
	Ⅳ. 만기보유증권	0	10,443,403	40,094,384	18,835,686	15,825,849
	1.국·공 채	0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0	7,472,040	37,108,800	18,835,686	15,825,849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2,971,362	2,985,584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다음자동차(주)	Ⅱ. 단기매매증권	2,440,000	2,200,000	6,050,291	2,399,015	4,807,648
	1.주 식	0	0	0	415,453	739,000
	2.국 · 공 채	0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2,440,000	2,200,000	6,050,291	0	4,068,648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1,983,562	0
	Ⅲ. 매도가능증권	0	3,005,415	0	1,071,610	3,007,840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 · 공 채	0	0	0	0	0
	4.특 수 채	0	3,005,415	0	0	0
	5.회 사 채	0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1,071,610	3,007,84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15,701,606	36,703,401	39,796,904
	1.국·공 채	0	0	4,891,731	4,969,172	4,985,664
	2.특 수 채	0	0	5,008,667	4,000,389	7,000,874
	3.회 사 채	0	0	5,801,208	9,778,068	6,951,827
	4.수 익 증 권	0	0	0	14,955,772	17,858,539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3,000,000	3,000,00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A.H.A 한국지점	Ⅱ. 단기매매증권	3,722,895	5,737,080	3,623,853	2,258,305	2,389,534
	1.주 식	3,722,895	5,737,080	3,623,853	2,258,305	2,389,534
	2.국 · 공 채	0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55,196,702	70,170,260	38,933,119	53,075,229	53,059,124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 · 공 채	27,612,389	22,860,160	16,251,668	11,308,908	11,240,785
	4.특 수 채	16,927,662	39,630,051	15,136,067	39,255,488	39,313,406
	5.회 사 채	10,656,651	7,680,049	7,545,384	2,510,833	2,504,933
	6.수 익 증 권	0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0
	1.국·공 채	0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0
	1.주 식	0	0	0	0	0
	2.국 · 공 채	0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6,891,344	3,768,548	7,698,122	24,811,471	30,893,676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 · 공 채	6,891,344	3,768,548	7,698,122	24,811,471	30,893,676
	4.특 수 채	0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0
ACE 한국지점	6.수 익 증 권	0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0
	1.국·공 채	0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1.주 식	0	0	0	0	
	2.국 · 공 채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0	0	0	0	
	1.주 식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3.국 · 공 채	0	0	0	0	
	4.특 수 채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RSA 한국지점	6.수 익 증 권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1.국·공 채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1.주식	0	0	0	0	
	2.출자금	0	0	0	0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0

Federal 한국지점	1.주 식	0	0	0	0	0
	2.국·공 채	0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0	0	0	31,910	0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공 채	0	0	0	31,910	0
	4.특 수 채	0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1,075,725	1,121,257	34,775	0	18,490
	1.국·공 채	1,075,725	1,121,257	34,775	0	18,490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퀄른재보험 한국지점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1.주 식	0		0	0	0
	2.국·공 채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56,312,798	62,086,696	47,171,934	47,116,933	67,150,287
	1.주 식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3.국·공 채	52,604,551	57,414,608	34,756,248	34,656,801	54,659,468
	4.특 수 채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3,708,247	4,672,088	12,415,686	12,460,132	12,490,819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0
	1.국·공 채	0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Ⅱ. 단기매매증권	0	0	29,724,258	39,632,872	39,632,872
	1.주 식	0	0	0	0	0
	2.국·공 채	0	0	29,724,258	39,632,872	39,632,872
	3.특 수 채	0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143,476	1,159,153	334,317	421,686	474,827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공 채	0	952,825	0	0	0
	4.특 수 채	0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0
	6.수 익 증 권	143,476	206,328	334,317	421,686	474,827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954,004	0	0	0	0
	1.국·공 채	954,004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뮌헨재보험 한국지점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0
	1.주 식	0	0	0	0	0
	2.국·공 채	0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10,944,624	11,084,423	23,881,641	49,585,140	58,988,923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공 채	6,928,577	6,081,031	17,649	15,093	14,817
	4.특 수 채	4,016,047	5,003,392	23,863,992	49,570,047	58,974,106
	5.회 사 채	0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0
	1.국·공 채	0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퍼스트권원 한국지점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0
	1.주 식	0	0	0	0	0
	2.국·공 채	0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0	0	455,566	0	0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공 채	0	0	0	0	0
	4.특 수 채	0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455,566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1.국·공 채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1.주식		0	0	0	0
	2.출자금		0	0	0	0
미쓰이 한국지점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1.주 식	0		0	0	0
	2.국 · 공 채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0		0	0	0
	1.주 식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3.국 · 공 채	0		0	0	0
	4.특 수 채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1.국·공 채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1.주식	0		0	0	0
	2.출자금	0		0	0	0
ERC 한국지점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1.주 식	0	0	0	0	
	2.국 · 공 채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0	0	0	0	
	1.주 식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3.국 · 공 채	0	0	0	0	
	4.특 수 채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1.국·공 채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1.주식	0	0	0	0	
	2.출자금	0	0	0	0	
동경해상 서울지점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0
	1.주 식	0	0	0	0	0
	2.국·공 채	0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0	0	0	0	0
	1.주 식	0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0
	3.국·공 채	0	0	0	0	0
	4.특 수 채	0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0
	1.국·공 채	0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0
	1.주식	0	0	0	0	0
	2.출자금	0	0	0	0	0
SCORE RE 한국지점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0
	1.주 식		0	0	0	0
	2.국·공 채		0	0	0	0
	3.특 수 채		0	0	0	0
	4.회 사 채		0	0	0	0
	5.수 익 증 권		0	0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0	0	0	0
	1.주 식		0	0	0	0
	2.출 자 금		0	0	0	0
	3.국·공 채		0	0	0	0
	4.특 수 채		0	0	0	0
	5.회 사 채		0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0
	1.국·공 채		0	0	0	0
	2.특 수 채		0	0	0	0
	3.회 사 채		0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0
	1.주식		0	0	0	0
	2.출자금		0	0	0	0
	Ⅱ. 단기매매증권			0	0	0
	1.주 식			0	0	0
	2.국·공 채			0	0	0
	3.특 수 채			0	0	0
	4.회 사 채			0	0	0

RGA재보험 한국지점	5.수 익 증 권			3	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0	0
	Ⅲ. 매도가능증권			1,429,925	0	0
	1.주 식			0	0	0
	2.출 자 금			0	0	0
	3.국 · 공 채			1,429,925	0	0
	4.특 수 채			0	0	0
	5.회 사 채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1,447,864	1,452,383
	1.국·공 채			0	1,447,864	1,452,383
	2.특 수 채			0	0	0
	3.회 사 채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1.주식			0	0	0
	2.출자금			0	0	0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	Ⅱ. 단기매매증권			0	5,898,392	4,961,667
	1.주 식			0	0	0
	2.국 · 공 채			0	0	0
	3.특 수 채			0	0	0
	4.회 사 채			0	0	0
	5.수 익 증 권			0	1,000,000	0
	6.해외 유가증권			0	0	0
	7.신종 유가증권			0	0	0
	8.기타 유가증권			0	4,898,392	4,961,667
	Ⅲ. 매도가능증권			0	0	0
	1.주 식			0	0	0
	2.출 자 금			0	0	0
	3.국 · 공 채			0	0	0
	4.특 수 채			0	0	0
	5.회 사 채			0	0	0
	6.수 익 증 권			0	0	0
	7.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8.신종 유가증권			0	0	0
	9.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Ⅳ. 만기보유증권			0	0	0
	1.국·공 채			0	0	0
	2.특 수 채			0	0	0
	3.회 사 채			0	0	0
	4.수 익 증 권			0	0	0
	5.해 외 유 가 증 권			0	0	0
	6.신종유가증권			0	0	0
	7.기 타 유 가 증 권			0	0	0
	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1.주식			0	0	0
	2.출자금			0	0	0

주) 업무보고서중 대차대조표(일반및총괄) 결산월 기준임

나. 유가증권 투자수익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4년03월				
		총계	주식	출자금	국공채	특수채
메리츠화재(주)	당기손익관련소계	99,753,483	17,794,380	136,981	6,719,981	30,348,628
한화손해보험(주)	당기손익관련소계	30,570,886	357,919	0	5,939,274	8,793,243
대한화재(주)	당기손익관련소계	21,385,494	1,546,518	0	4,875,613	8,558,098
그린화재(주)	당기손익관련소계	13,634,295	1,700,833	64,050	73,405	325,698
흥국쌍용화재	당기손익관련소계	27,970,367	2,222,630	-84,858	1,682,917	13,450,418
제일화재(주)	당기손익관련소계	27,606,293	-1,442,147	493,121	1,734,360	6,354,147
삼성화재(주)	당기손익관련소계	330,194,369	28,682,299	-3,519,815	88,599,418	81,732,565
현대해상(주)	당기손익관련소계	172,350,877	40,838,077	0	9,923,091	38,380,461
엘아이지손해(주)	당기손익관련소계	117,798,138	33,333,827	1,553,670	4,832,884	6,674,146

동부화재(주)	당기손익관련소계	136,332,092	49,279,875	-214,416	17,469,638	24,436,399
서울보증(주)	당기손익관련소계	82,525,983	-38,400,388	32,137,866	2,427,149	9,699,900
코리안리보험(주)	당기손익관련소계	52,049,506	6,702,309	0	3,001,925	21,199,071
교보자동차(주)	당기손익관련소계	4,198,350	0	0	506,507	1,571,751
교원자동차(주)	당기손익관련소계					
다음자동차(주)	당기손익관련소계	50,605	0	0	0	0
A.H.A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5,026,073	1,379,475	0	2,137,363	816,372
ACE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527,708	0	0	432,346	95,362
RSA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524	788	0	-264	0
Federal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104,746	0	0	104,746	0
쾰른재보험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2,507,589	0	0	2,463,764	0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82,402	0	0	82,402	0
뮌헨재보험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144,553	0	0	92,690	51,863
퍼스트권원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미쓰이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ERC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동경해상 서울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SCORE RE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RGA재보험 한국지점	당기손익관련소계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당기손익관련소계					

주) 업무보고서중 유가증권손익현황 기준임(결산월)

6. 04년-07년 8월말 현재, 연도별 금융기관별 유가증권 투자금액

□ 증권회사별 유가증권 투자금액

○ <2005년 3월말 기준>

(단위: 억원)

금융회사명	FY2004					
	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기타	합계
교보증권(주)	106	2,366	13	307	9	2,801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	2,364	6,340	400	55	326	9,485
대신증권주식회사	869	4,451	1,476	422	111	7,328
대우증권주식회사	3,141	13,960	4,769	2,229	330	24,429
신영증권주식회사	708	4,109	1,684	59	193	6,753
서울증권주식회사	102	344	4	77	77	605
한양증권주식회사	90	566	3	45	21	724
메리츠증권	229	2,536	361	404	6	3,536
우리투자증권	1,592	6,434	3,276	1,618	2,557	15,477
부국증권주식회사	99	764	0	67	12	943
브릿지증권주식회사	90	217	112	16	49	484
HFG IB증권(주)	423	2,820	166	384	73	3,866
현대증권주식회사	1,246	3,859	233	1,461	1,387	8,186
한화증권주식회사	1,316	2,693	33	179	58	4,280
산홍증권주식회사	89	201	199	34	0	523
유화증권주식회사	129	1,993	131	11	714	2,978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1,206	7,225	2,150	603	261	11,444
SK증권주식회사	77	3,402	0	236	55	3,771
KGI증권	202	538	0	266	13	1,019
NH투자증권	93	9	17	22	151	293
(주)삼성증권	700	14,564	2,125	2,946	1,477	21,812
동부증권주식회사	176	167	230	59	11	643
한누리투자증권(주)	128	197	303	116	33	77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122	0	0	0	0	122
푸르덴셜투자증권(주)	201	312	0	1	7	521
CJ투자증권(주)	7	296	0	163	1	467
한국투자증권	14	6,074	705	18	1	6,813
하나대투증권(주)	373	547	4,346	3,278	51	8,595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173	1	0	0	0	174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371	733	435	95	59	1,693

비엔지증권중개(주)	0	0	5	0	0	5
키움증권(주)	27	207	0	0	0	235
이트레이드증권(주)	2	69	20	0	0	92
코리아RB증권중개주식회사	14	0	0	0	0	14
홍국증권중개	0	0	0	0	0	0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530	0	0	10	0	540
골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0	0	0	0	0	0
다이와증권SMBC(주)서울지점	0	0	0	0	0	0
메릴린치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증권 서울지점	1	0	0	0	0	1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서울지점	2	0	0	0	0	2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서울지점	0	0	0	0	0	0
크레디아그리콜슈브르증권 서울지점	0	0	0	0	0	0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	0	0	0	0	109	109
에이비엔암로아시아증권	0	0	0	0	0	0
도이치증권	23	0	0	200	129	351
케이아이티비채권중개(주)	2	0	0	0	0	2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0	99	0	0	0	99
홍콩상하이증권서울지점	0	0	0	0	0	0
비엔피파리바증권중개	0	0	0	0	0	0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0	0	0	0	0	0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0	0	0	0	0	0
에스지증권서울지점	0	0	0	0	0	0
맥쿼리증권	0	0	0	0	0	0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서울지점	0	0	0	0	0	0
합계	**17,038**	**88,096**	**23,196**	**15,380**	**8,282**	**151,992**

○ <2006년 3월말 기준>

(단위: 억원)

금융회사명	FY2005					
	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기타	합계
교보증권(주)	55	2,711	94	398	24	3,283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	3,652	6,624	1,220	35	281	11,811
대신증권주식회사	488	8,984	1,023	350	0	10,846
대우증권주식회사	5,164	21,374	4,105	1,243	378	32,265
신영증권주식회사	1,072	5,042	1,119	27	275	7,535
서울증권주식회사	363	978	306	163	247	2,057
한양증권주식회사	73	323	0	4	21	421
메리츠증권	513	2,328	1	279	1	3,121
우리투자증권	2,665	27,112	3,175	1,096	2,613	36,662
부국증권주식회사	72	280	0	80	302	734
브릿지증권주식회사	65	101	0	42	0	207
HFG IB증권(주)	104	2,915	26	299	60	3,404
현대증권주식회사	1,934	15,036	1,361	1,071	715	20,117
한화증권주식회사	1,342	3,589	105	192	27	5,255
신흥증권주식회사	113	825	64	122	0	1,122
유화증권주식회사	281	2,231	566	28	829	3,934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1,238	9,176	2,596	1,000	1,955	15,965
SK증권주식회사	42	3,451	360	536	582	4,972

KGI증권	173	221	0	326	13	734
NH투자증권	277	15	933	15	27	1,268
(주)삼성증권	1,090	19,430	952	1,021	330	22,823
동부증권주식회사	165	509	29	29	12	743
한누리투자증권(주)	176	100	113	16	3	408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388	0	1	0	0	390
푸르덴셜투자증권(주)	199	100	0	1	1	301
CJ투자증권(주)	5	771	0	92	1	868
한국투자증권	3,845	6,743	1,334	334	136	12,393
하나대투증권(주)	16	768	3,147	1	1	3,933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206	1	158	0	8	373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296	2,637	234	301	59	3,527
비엔지증권중개(주)	0	0	5	0	0	5
키움증권(주)	15	285	0	63	0	362
이트레이드증권(주)	0	75	1	0	0	76
코리아RB증권중개주식회사	8	0	0	0	0	8
홍국증권중개	0	0	0	0	0	0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1,863	0	0	86	0	1,949
골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0	0	0	0	0	0
다이와증권SMBC(주)서울지점	0	0	0	0	0	0
메릴린치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증권 서울지점	107	0	0	0	0	107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서울지점	87	0	0	0	0	87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서울지점	0	0	0	0	0	0
크레디아그리콜슈브르증권 서울지점	0	0	0	0	0	0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	109	0	0	0	0	109
에이비엔암로아시아증권	0	0	0	0	0	0
도이치증권	0	0	0	0	0	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2	0	0	0	0	2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0	2,548	0	0	0	2,548
홍콩상하이증권서울지점	1	0	0	0	0	1
비엔피파리바증권중개	0	0	0	0	0	0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0	0	0	0	0	0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0	0	0	0	0	0
에스지증권서울지점	0	0	0	0	0	0
맥쿼리증권	30	1	0	0	0	30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서울지점	0	0	0	0	0	0
합계	**28,292**	**147,283**	**23,026**	**9,250**	**8,903**	**216,754**

○ <2007년 3월말 기준>

(단위: 억원)

금융회사명	FY2006					
	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기타	합계
교보증권(주)	101	4,648	20	114	26	4,909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	5,180	17,503	2,705	223	330	25,942
대신증권주식회사	1,319	13,008	912	388	499	16,126
대우증권주식회사	6,421	24,625	6,876	1,695	912	40,529
신영증권주식회사	3,976	5,994	1,494	92	352	11,908
서울증권주식회사	523	2,015	355	112	168	3,172
한양증권주식회사	79	697	3	0	0	780

메리츠증권	140	2,873	1	188	4	3,205
우리투자증권	4,149	46,620	5,109	1,204	4,194	61,276
부국증권주식회사	64	607	0	114	2	788
브릿지증권주식회사	86	134	0	337	5	562
HFG IB증권(주)	473	2,186	302	238	84	3,284
현대증권주식회사	2,593	21,416	3,258	1,297	1,333	29,896
한화증권주식회사	894	10,676	247	64	107	11,987
신흥증권주식회사	54	1,174	200	219	0	1,646
유화증권주식회사	272	2,351	154	223	602	3,60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1,219	24,905	3,911	498	1,050	31,582
SK증권주식회사	461	9,406	39	380	779	11,065
KGI증권	491	715	0	305	2	1,514
NH투자증권	580	5,381	333	22	115	6,431
(주)삼성증권	1,634	35,872	601	810	827	39,743
동부증권주식회사	156	2,200	36	126	95	2,613
한누리투자증권(주)	226	248	212	16	716	1,418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383	0	0	0	0	383
푸르덴셜투자증권(주)	198	3,174	0	55	0	3,427
CJ투자증권(주)	4	2,407	0	60	0	2,471
한국투자증권	6,305	27,373	13,916	2,173	123	49,890
하나대투증권(주)	43	3,399	4,121	2	10	7,575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380	1	121	25	8	536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585	17,504	216	1,252	259	19,817
비엔지증권중개(주)	0	0	5	0	0	5
키움증권(주)	135	425	0	0	6	566
이트레이드증권(주)	0	134	0	0	0	134
코리아RB증권중개주식회사	7	0	0	0	0	7
홍국증권중개	0	0	0	0	0	0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522	0	0	259	0	781
골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0	0	0	0	0	0
다이와증권SMBC(주)서울지점	0	0	0	0	0	0
메릴린치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증권 서울지점	125	296	0	0	0	421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서울지점	40	0	0	0	256	296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서울지점	0	0	0	0	0	0
크레디아그리콜슈브르증권 서울지점	0	0	0	0	0	0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	0	0	0	0	109	109
에이비엔암로아시아증권	0	0	0	0	0	0
도이치증권	0	0	0	0	0	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2	0	9	0	0	11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268	3,201	0	0	0	3,469
홍콩상하이증권서울지점	1	0	0	0	0	1
비엔피파리바증권중개	0	0	0	0	0	0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0	0	0	0	0	0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0	0	0	0	0	0
에스지증권서울지점	0	0	0	0	0	0
맥쿼리증권	117	1	0	0	105	222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서울지점	1	0	0	0	0	1
합계	**40,208**	**293,170**	**45,156**	**12,491**	**13,079**	**404,104**

○ <2007년 6월말 기준>

(단위: 억원)

금융회사명	FY2007 1분기					
	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기타	합계
교보증권(주)	230	5,536	43	123	17	5,950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	6,688	17,931	1,222	281	439	26,561
대신증권주식회사	1,674	14,652	984	433	57	17,801
대우증권주식회사	8,611	21,864	7,206	1,741	671	40,093
신영증권주식회사	3,870	6,506	1,767	225	430	12,799
서울증권주식회사	450	2,492	373	234	121	3,669
한양증권주식회사	106	1,195	25	112	0	1,438
메리츠증권	266	2,616	1	200	32	3,115
우리투자증권	6,497	61,537	5,248	1,285	6,440	81,006
부국증권주식회사	165	1,202	52	100	302	1,822
브릿지증권주식회사	83	197	60	315	5	660
HFG IB증권(주)	639	2,372	450	220	371	4,051
현대증권주식회사	2,594	21,126	3,526	1,314	1,300	29,861
한화증권주식회사	1,124	12,700	407	68	83	14,382
신흥증권주식회사	54	1,923	151	231	0	2,358
유화증권주식회사	437	2,746	0	232	402	3,817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1,247	23,669	3,588	482	1,264	30,250
SK증권주식회사	499	9,179	40	473	869	11,059
KGI증권	168	1,083	0	321	2	1,574
NH투자증권	628	4,181	311	96	30	5,244
(주)삼성증권	1,827	42,674	948	1,263	1,161	47,872
동부증권주식회사	185	3,800	55	83	32	4,154
한누리투자증권(주)	179	360	308	16	34	89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267	0	0	0	0	267
푸르덴셜투자증권(주)	198	2,561	0	65	0	2,825
CJ투자증권(주)	5	2,334	0	31	0	2,370
한국투자증권	7,214	28,558	12,986	2,858	263	51,878
하나대투증권(주)	578	3,711	7,680	221	482	12,672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522	1	19	0	33	576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1,529	23,321	174	2,602	80	27,706
비엔지증권중개(주)	0	0	0	0	0	0
키움증권(주)	302	452	0	23	6	783
이트레이드증권(주)	26	147	0	0	0	173
코리아RB증권중개주식회사	7	0	0	0	0	7
홍국증권중개	0	0	0	0	0	0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926	0	0	88	0	1,014
골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0	0	0	0	0	0
다이와증권SMBC(주)서울지점	0	0	0	0	0	0
메릴린치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증권 서울지점	538	396	0	0	0	934
모간스탠리인터내셔달증권회사서울지점	217	0	0	12	433	662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서울지점	0	0	0	0	0	0
크레디아그리콜슈브르증권 서울지점	0	0	0	0	0	0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	0	0	0	0	109	109

에이비엔암로아시아증권	0	0	0	0	0	0
도이치증권	0	0	0	0	0	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11	0	0	0	0	11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1,594	999	0	0	0	2,593
홍콩상하이증권서울지점	1	0	0	0	0	1
비엔피파리바증권중개	0	0	0	0	0	0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0	0	0	0	0	0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0	0	0	0	0	0
에스지증권서울지점	0	0	0	0	0	0
맥쿼리증권	170	1	0	0	175	346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서울지점	0	0	0	0	0	0
합계	**52,326**	**324,022**	**47,624**	**15,748**	**15,643**	**455,360**

7. 07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설치이유, 설치근거, 산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

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및 목적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분쟁조정기구) : 제38조 각호의 기관과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인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규정

○ 붙임1 : 금융분쟁조정세칙

Ⅱ. 제재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관한 규정」 제33조

*제33조(심의회의 설치)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설치이유

○ 검사결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제재의 적정성·공정성·객관성을 도모

□ 인원 : 7명으로 구성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규정

○ 붙임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세칙**

Ⅲ. 감리위원회

□ 설치근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동 법 시행령 제4조의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설치이유

○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외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감위·증선위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 인원 : 9명으로 구성

□ 감리위원회 운영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규정(붙임3)

(붙임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제5절,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22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영 및 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4. "금융관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38조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5. "금융분쟁"이라 함은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관련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 위원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3.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6.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중 분쟁조정 담당 부원장보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험분야 또는 비보험분야(은행, 증권, 비은행등)별로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 1주일 전까지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매월 첫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셋째주) 화요일과 셋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다섯째주) 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 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등을 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2]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감독원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①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원장은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원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3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2.2.22)

②전문위원은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손해사정인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0.11.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정의 신청 등

제11조(분쟁조정신청) ①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원장에게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③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진정서, 탄원서 기타 민원서류 중 그 내용이 이 세칙에 의한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분쟁처리 담당자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부서,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등을 유선, 전자우편, 문서 등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2.22)

⑤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신청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2.22)

제12조(대표자의 선정)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있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선임한 신청인들을 위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합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변호사, 기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신청의 중간회신) ①감독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중 사실조사 또는 위원회의 회부 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원장은 지연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사본을 송달하거나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조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정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금융분쟁조정기록부에 조정신청의 접수, 보완,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신청의 보완) ①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 한다.
②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실조사 등) ①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검사,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감정, 조회 기타 필요한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금융관련기관에 대한 금융분쟁에 관련된 검사는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검사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검사 및 그 처리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감독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감독원장의 분쟁처리

제17조(조정신청의 위원회 회부전 처리) ①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4.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7.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8.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부당하거나 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처리를 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8조(조정신청의 취하 등) ①신청인은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조정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이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진행의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절차진행을 중지하고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 원장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당해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①분쟁조정 신청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건의 관할법원
2. 소송일자 또는 조정신청일자
3. 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
4.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
②원장은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합의권고) ①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출석시켜 합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각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감독원에 보관한다.
④당사자인 금융관련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합의 불성립) 당사자가 원장의 합의권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권고절차진행을 위한 출석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위원회의 분쟁조정

제22조(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사건 요약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2)

③제2항의 기피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2)

제23조(자료제출 등) ①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결정) ①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내용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등 위원회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조정 또는 각하결정사항
3. 조정 또는 각하결정이유
4. 조정 또는 각하결정일자

제26조(심의·의결 결과통보) 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원장의 재의 요구) ①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요구의 사유 등을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제28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원장은 재의요구사항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부분인용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개정 2002.2.22)
1. 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2.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할 경우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3.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

제29조(조정의 성립 등) ①당사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당사자쌍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서 각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감독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이 조정결정수락서를 확인하여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1부를 교부 또는 송달하고 1부는 감독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④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일 이내에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⑥금융관련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처리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원장은 조정결정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②제29조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금융관련기관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조정신청) ①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처리한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분쟁조정의 공표) 원장은 공익 또는 금융수요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2조의2(소송지원) ①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8. 26)

1.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2. 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전 사건으로서 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액은 소송지원사건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05. 8. 26).

③원장은 소송지원 결정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5. 8. 26.)

1. 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소송지원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당해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게 된 경우

④기타 소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8. 26)

[본조신설 2002.7.26]

제33조(수당 등) 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감독원의 예산범위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출장비, 자문료 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7.26)

1. 제7조에 의하여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전문위원이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4. 제24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감정인·참고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제34조(세부사항 등)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 설립당시의 은행법, 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세칙에 의하여 감독원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감독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붙임2)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33조 (심의회의 설치)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심의회의 구성)

① 규정 제33조제1항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2.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3.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보 1인
4.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금융전문가 등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②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유고시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규정 제33조제2항 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규정 제17조제9호의 기관주의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요구사항
2. 규정 제21조제2항의 조치사항중 검사실시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7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시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 부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부의한다.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에 동 심의회 부의안을 송부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부의안의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검사원, 기타 참고인(이하"참고인"이라 한다)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장은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기가 속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 위원은 제6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안관리, 의사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3)

감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업무보조)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이를 행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업무보조) 법 및 이 영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금융감독원 정관

제22조(전문심의기구의 설치 등) ①외감법 및 외감법시행령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문심의기구를 둔다.

②전문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전문심의기구의 설치)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법 및 영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감위·증선위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내에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둔다.

제25조(감리위원회의 구성)①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9>

1. 증선위 상임위원
2. 감독원 전문심의위원
3.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4.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
5.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6.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7.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8.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②감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자로 한다.

③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심의사항) ① 생략

②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4.18, 2004.6.16, 2005.6.29, 2006.6.29, 2006.9.13>

1. 제48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에 의한 감리·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1.4.18>
5.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관련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감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개요
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개최내역
다. 주요 경쟁국 및 개최 가능성
라. 최근 금융감독 관련 국제회의 개최내역 및 성과

가. IAIS 개요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현재 보험감독관련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이며 BIS의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자기구)와 더불어 금융감독관련 3대 국제기구임

1. 설립목적

□ 보험감독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제정, 각국의 보험감독 당국자들의 정보교환, 보험감독분야의 협력을 통한 전세계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에 기여 등

2. 회원

□ 정회원: 각국의 보험감독기관 및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현재 130여개국 180여개 기관)

○ 우리나라는 1994년 창립멤버(charter member)이며 **금감위·금감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

□ 옵저버: 각국의 보험관련 협회, 컨설팅회사, 연구소, 보험회사

등(100여개 기관)

○ 현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코리안 리 등 2개 보험유관기관과 7개 보험회사가 옵저버로 가입하여 활동중

3. 주요 조직

□ 총회(General Meeting)

○ 연차총회지 결정, 예산관련 승인, 각종 보험감독관련 기준서(guidance paper) 채택 등 IAIS의 최고의사결정기관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 총회 결정사항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업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전세계 각 대륙을 대표하는 15개의 국가 대표 및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

- 현재 집행위원회 의장은 미국 메인주 보험감독청장겸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 의장인 Mr. Alessaro Iuppa

-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및 사무국 직원 임명(현재 사무총장은 Dr. Yoshihiro Kawai(일본))

□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 각종 보험감독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제정을 담당하며 산하에

보험계약소위원회, 재보험소위원회, 공시강화소위원회 등 12개 소위원회 및 1개의 T/F가 활동중

- 현재 전문위원회 의장은 호주 건전성감독청의 Tom Karp 부총재가 담당하고 있음

□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

○ 전문위원회가 제정한 각종 보험감독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이행 및 개발도상국의 보험감독시스템 구축 지원 및 연수제공 담당

- 현재 이행위원회 의장은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의 임원인 Mr. Carl Hiralal이 담당

□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 IAIS회원국의 연회비 책정 및 경비지출 담당

- 현재 예산위원회 의장은 독일금융감독청(BaFin)의 보험담당 임원인 Mr. Thomas Steffen이 담당

□ 사무국(Secretariat)

○ 집행위원회의 통할을 받으며 IAIS연차총회 주관 및 각종 위원회 기록 유지, 타기관에 대하여 IAIS 대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임무 수행

○ 스위스 바젤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Dr. Yoshihiro Kawai

< IAIS조직도(07. 1월 현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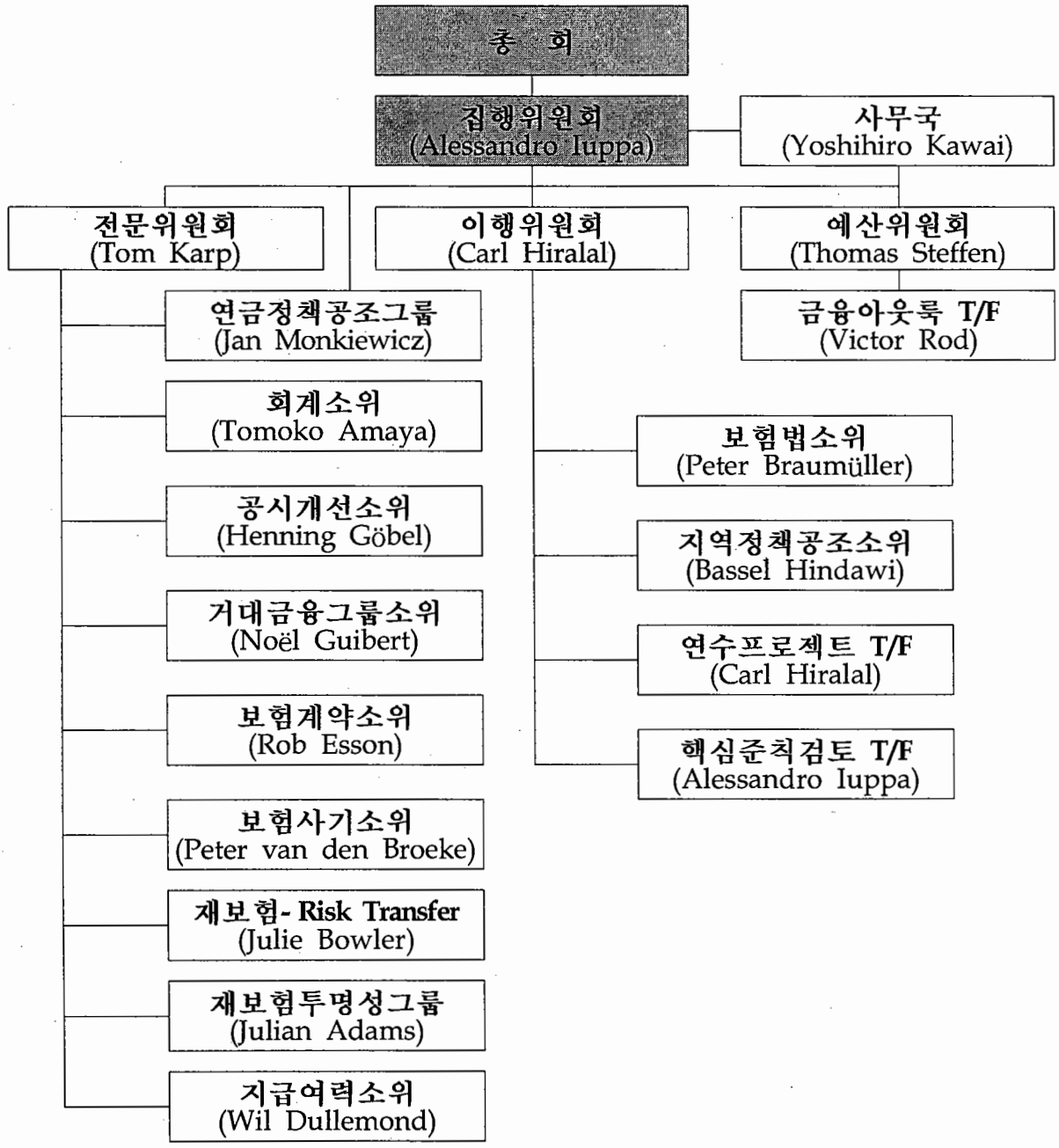

나 개최내역

□ '08년 IAIS Triannual Meeting 및 Global Seminar 개요

○ 일　　시 : '08. 6. 16(월) ~ 20(금)
○ 장　　소 : 서울 하얏트 호텔(예정)
○ 참 가 자 : IAIS 정회원 및 옵저버(약 200~250명 규모)
○ 참 가 국 : 약 70여개 국가
○ 주요일정
- 6.16(월) : IAIS Triannual Meeting
- 6.17(화) : IAIS Triannual Meeting
- 6.18(수) : IAIS Triannual Meeting, Global Seminar
- 6.19(목)~20(금) : Global Seminar

□ 기대효과

○ **국제회의 유치·개최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와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 가능**

○ 특히, 금융감독 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해**

i) 금융관련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ii) 우리 금융시장과 감독정책에 대한 **홍보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금융시장과 감독당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며**
iii) 감독당국의 무형자산인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을 도모**하여 우리 금융시장에 초래될 수 있는 **불안요인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주요 경쟁국 및 개최가능성

□ '08년도 IAIS정기회의는 이미 개최 확정된 국제회의로서 해당사항 없음

라 최근 금융감독 관련 국제회의 개최내역 및 성과

□ 금번 국제회의 개최관련 예산은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금감위 예산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없음

9. 2004~2007년 상반기 현재, 연도별 금융권역별 민원 접수 현황

□ 연도별 권역별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은행·비은행	45,139	35,879	30,296	15,166
보 험	16,886	21,583	27,530	16,217
증권·투신	2,451	2,048	3,035	1,584
합계	64,476	59,510	60,861	32,967

이 승 희 의 원

1.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절차

□ 국내 일반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감위와 사전협의 및 재경부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고, 타 금융권(특수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은 재경부 신고수리만으로 가능

* 제13조 (지점의 신설·이전등) [전문개정 2000.1.21] 금융기관이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거나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또는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최근 5년간 외국금융감독기관과의 MOU체결 현황

□ 최근 5년간 **12개국, 14개** 외국금융감독기관과 MOU 체결

구분	국명	상대기관명	체결시기
1	프랑스	Commission Bancaire	2003.10.18
2	중국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2004.2.11
3	말레이시아	Securities Commission	2004.3.17
4	UAE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6.4.11
5	베트남	State Bank of Vietnam	2006.6.8
6	미국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2006.6.28
7	홍콩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2006.9.1
8	독일	Th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2006.11.3
9	헝가리	Hungar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2006.11.6
10	카타르	Qatar Financial Centre Regulatory Authority	2007.5.10
11	싱가포르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07.5.10
12	UAE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2007.5.22
13	영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7.5.28
14	미국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2007.6.22

3. 06년도~07년도 현재까지 금감위에 접수된 민원현황 (이첩·직접조정 등 금감위에서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기준별 건수와 이에 대한 주석)

□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 연도별 민원의 직접·이첩처리 현황

(단위 : 건)

처리구분	2006년	2007년 상반기
직접처리	144	97
이첩처리*	73	56
합 계	217	153

* 이첩처리: 소관외 민원 또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4. 기 제출한 민원현황 자료와 관련하여, 민원의 접수 방법별 및 권역별 민원처리 현황

□ 접수방법별 민원접수 현황

○ 연도별 접수방법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상반기
인 터 넷	121	80
서류(우편·팩스 등 포함)	96	73
합 계	217	153

○ 연도별 권역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상반기
은행·비은행	94	72
보 험	62	42
증권·투신	24	17
기 타	37	22
합 계	217	153

5. 조직진단 실적 및 진단결과 반영내용

□ 붙임 06.7월 실시한 성과관리 시스템 확대개편 용역(다산 E&E) 결과를 반영한 성과관리 매뉴얼 참조. 끝.

2006. 9

금융감독위원회

목차

Ⅰ. 총론

1. 추진경과

2. 통합성과관리 확대 • 개편방안

Ⅱ. 세부방안

□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 추진배경

2. 프로젝트 범위

3. 기대효과

□ 개인평가 체계

4. 이슈도출 및 개선방향

5.기관평가 연계방향

6. KPI 도출

Ⅲ. Appendix

1. 기관평가 지표분류

2. 팀별 KPI Pool

I. 총론 - 1. 추진경과

□ 참여정부 들어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간 **단계적**으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 (05년 상반기) 성과지표 개발 및 4급 이상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실시
- (05년 하반기) 직무성과계약 등 내부평가와 자체평가결과 등 외부평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05.9)

  * 통합 성과평가의 기본 구조는 실적평가(90%)를 중심으로 혁신마일리지(10%)를 일부 가미하는 방식으로 구성

    실적평가에 있어 대한 내부평가, 자체평가 및 국무조정실 평가 결과의 반영 비율은 50%:20%:20%(총 90%)로 함

- (06년 상반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4급 이상)

□ 다만, 대상이 4급 이상에 한정되는 등의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주의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확대·개편을 추진할 필요**

* ① 대상의 한계 : 성과계약 체결대상인 4급 이상에 한정
  ② 적용의 한계 : 성과급 반영에 한정되어 인사 등에의 반영방안은 미흡
  ③ 성과측정의 한계 : 기관평가를 개인평가로 연계하는 체계 미비

□ 이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설명회(2회)를 거쳐 성과관리 확대·개편 **최종안을 마련**

* 다산E&E(연구용역업체)에서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확대개편안 제시(06.5~7)

I. 총론 - 2. 통합성과관리 확대 · 개편방안

가. 기본 방향

- **외부 기관평가 결과가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주의 문화와 수요자중심** 금융감독의 기반을 마련 **(예시)** 외부 기관평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가점 부여 등
- 소규모 조직으로서의 금감위의 특성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제 업무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계 **(예시)** CEO미션(기관장 지시사항)에 따른 개인별 가점 부여 등
- 다만 인사, 조직 등 관련 **지침**(중앙인사위 등)과의 **정합성을 유지**

나. 통합 성과관리의 기본체계

실적평가	혁신마일리지	다면평가	정부업무평가
60%(60점) 직무성과계약 (4급이상) 근평(5급 이하)	10%(10점)	10%(10점)	20%(20점)

□ **통합** 성과관리의 **기본 취지**는 근평 등 **내부평가**에 더해 **외부평가인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 반영**하자는 것인 바,

➡ **내부평가**(직무성과계약 등, 혁신마일리지, 다면평가)**와 정부업무평가** 비중을 각각 **80%와 20%**로 설정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내부평가는 **직무성과계약**(5급 이하의 경우는 근평) **60%, 혁신마일리지 10%, 다면평가 10%**로 구성

- 다면평가결과의 활용은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다면평가 항목을 배제 (직무성과계약 비중을 60에서 70%로 상향)

○ 근평 등 직접적인 개인별 성과·역량평가의 비중은 절반 이상 높은 비중으로 하되, **기관평가결과를 개인성과로 전환해야 하는 외부평가 비중은 이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

* 주요정책 등에 대한 외부평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기관에 대한 평가임

※ **(연구용역 Recommendation)** 직무성과계약 등과 별도의 평가방법에 의한 반영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성과계약 60%, 혁신마일리지 10%, 다면평가 10%, 외부기관평가 20% 비중이 적절

다.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의 개인성과 연계방안

□ 개인별 외부기관평가 결과(20점)는 ①**부서원 공통의 부서별 평가**와 ②**개인별 가점**의 합으로 구성

○ 이를 위해, 분야별 **평가항목을 부서** 또는 **개인 성과로 연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 필요

* 현재 외부 기관평가는 주요정책, 혁신관리, 정보화, 규제개혁 등 1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평가는 평가항목 별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소관 실무자와의 인터뷰 등을 거쳐 개인 성과와의 연계 가능 여부를 점검한 바 있음

- (예시1) 연두업무보고(주요정책)의 경우 평가항목인 세부과제가 대부분 각 실무부서 또는 사무관 단위까지 연계 가능
- (예시2) 인사분야 평가항목중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같은 경우 기관 전체의 성과로서 개인성과로 보기 어려움

① <u>(부서 공통점수)</u> **부서 및 개인별 연계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부서단위로 통합·평균하여 **실적에 따라 부서별 점수**(20점 만점)를 산정하고 이를 **부서원 공통 점수**로 **공유**

- 동 점수는 각 부서장(국과장)의 외부기관평가 점수로 활용

* (예시) 은행감독과의 주요정책 관련 평가항목(세부과제)

- 은행산업의 장기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추진, 건전성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개선, 기존 건전성 감독제도의 현실화.합리화 추진,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등

② <u>**(개인별 가점)**</u> 평가항목의 **갯수와 실적을 균형적**으로 감안하여 부여하되 시장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해야 하는 **금융감독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CEO미션**을 추가(5점 만점)

- 가점 : 개인별 **업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감안**하기 위해, 개인 책임으로 분류 가능한 평가항목의 **개수와 실적의 매트릭스(matrix)**를 구성하여 점수를 부여

* (예시) 주요정책 세부과제(평가항목) 개수 및 실적에 따른 점수

주요정책과제 개수	5점	4점	3점	2점	1점
10개 이상	90점 이상	89-80	79-70		
8개 이상	95점 이상	94-85	84-75	74-70	
6개 이상		90점 이상	89-80	79-70	
4개 이상			95점 이상	94-85	84-70
2개 이상				90점 이상	89-70

- CEO 미션 :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생한 **현안** 해결에 기여한 경우 **기관장이 부여**(5점 만점)

* (예시) 연두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정감사 등에서 현안이 된 사안이나 기관장의 특별 지시사항을 수행한 직원에게 부여

ⓐ **업무 챔피언(Champion) 선정** : 도전적·창조적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시 **도전성과 창조성이 뛰어난 개별 과제를 선정**(챔피언)하여 개인별 가점 부여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 등 외부평가 우수과제와 CEO미션 등에 대해 가점 부여(5점 이내)

ⓑ (도전적 업무의 실패 용인) **Wild Card 제도 운영**

- 환경변화나 도전적인 목표 설정에 따라 당초 목표 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 (자체평가매뉴얼상 감점 대상 과제)로서 **소관 실무자가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조직내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 감점사항을 50%범위 내에서 면제
- 실패정책은행 운영 : 각 권역별 정책실패사례를 DB화하여 07년 상반기중 06년 실패사례를 분석

- 다만, 부서원 공통점수와 개인별 가점의 합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 과장의 개인별 가점은 소속 과장 및 직원의 개인별 가점 **평균**을 적용

※ **(연구용역 Recommendation)** 기관평가결과를 개개인 모두에게 배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원 공통점수와 함께 CEO미션 등 개인별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적절

라.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

【성과급】

□ **전직원**에 확대 적용된 **통합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06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07년 상반기 적용**)

○ 절대평가인 통합성과평가 결과를 중앙인사위 지침에 따라 직급별 상대평가(4등급)로 전환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

지급 등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인원비율	상위 20%	30%	40%	10%
성과연봉(과장급 이상)지급률	7%	5%	3%	0
성과상여금(4급 이하) 지급률	100%	70%	40%	0

【인사 : 승진, 교육 등】

□ **전직원**에 확대 적용된 **통합성과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 중앙인사위 지침에 따라 작성된 기존 **승진심사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되, 통합성과평가 결과를 승진자 선정시 적극 활용**

* 중안인사위에서는 인사위 지침과 다른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부적절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지적한 바 있음(타부처 사례)

- 승진심사 서열명부 작성기준 : 근평(50%), 경력(30%), 교육(20%)

○ 장기적으로, 인사위 지침의 변경 추이를 보아가며 좀더 적극적인 통합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추진

□ **통합성과평가 우수자**(또는 외부기관평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부서 이동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를 추진

○ 성과평가 우수부서에도 해외유학 유경험자 등 우수인력을 **우선배치**

○ 아울러 해외 유학 후보자 선정시에도 통합성과평가 결과를 감안하는 방안도 검토

목차

Ⅰ. 총론

1. 추진경과

2. 통합성과관리 확대 • 개편방안

Ⅱ. 세부방안

□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 추진배경

2. 프로젝트 범위

3. 기대효과

□ 개인평가 체계

4. 이슈도출 및 개선방향

5.기관평가 연계방향

6. KPI 도출

Ⅲ. Appendix

1. 기관평가 지표분류

2. 팀별 KPI Pool

Ⅱ. 세부방안 - 1. 프로젝트 추진 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BSC'**를 도입한 후, 성과관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실행을 위해 자체 평가역량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 위원회 비전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4대 혁신 목표

-전문성을 갖춘 시장지향적 금융감독시스템 정립

-업무방식 개선과 정책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금융시장 참가자 및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감독행정 구현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혁신에 참여하는 조직문화 형성

◦2006년 정책목표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 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추진 배경 및 방향

◦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의 중요성 강조

◦ 단계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현재 성과관리 시스템의 한계(대상, 활용, 지표개발, 구성원 인식)

◦ BSC(Balanced Scorecard)에 의한 평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평가를 전 조직구성원의 개인별 평가로 전환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설계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 및 인사에 반영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Ⅱ. 세부방안 – 2. 프로젝트 범위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방향과 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추진 방향

- 성과주의 지향
- 단위부서/개인 성과지표의 전략적 정렬
- 성과에 기반한 평가/보상 추구
- 변화관리를 통한 성과주의 문화 구축

프로젝트 수행 범위

1 이슈도출 및 개선방향 수립

- 이슈정의
- 성과관리 개선방향

2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 단위부서/개인 KPI Pool

3 평가체계 재설계

- 평가 체계/프로세스
- 보상 연계 방안

II. 세부방안 – 3. 기대 효과

본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략으로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하며 구성원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젝트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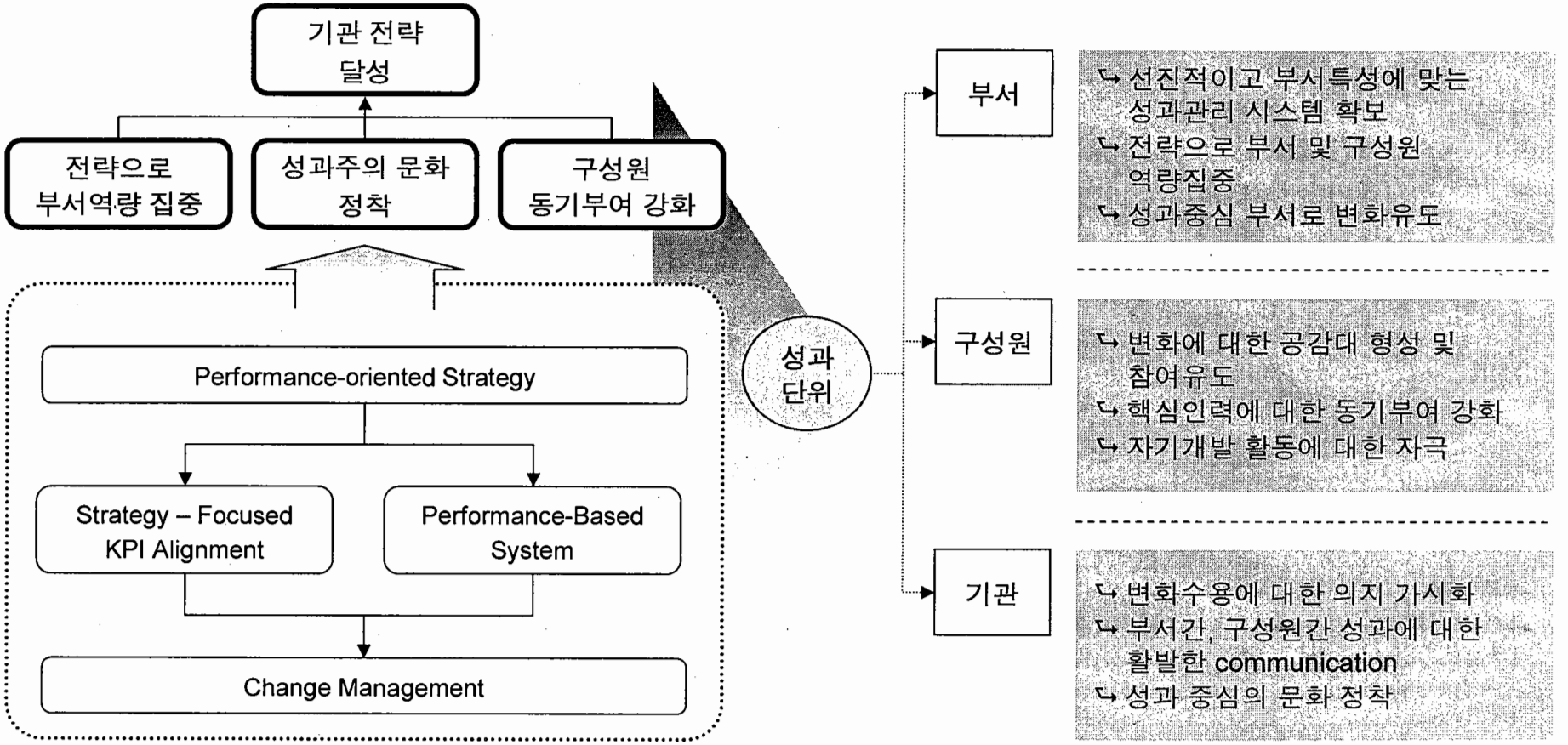

목차

Ⅰ. 총론

1. 추진경과

2. 통합성과관리 확대 • 개편방안

Ⅱ. 세부방안

□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 추진배경

2. 프로젝트 범위

3. 기대효과

□ 개인평가 체계

4. 이슈도출 및 개선방향

5.기관평가 연계방향

6. KPI 도출

Ⅲ. Appendix

1. 기관평가 지표분류

2. 팀별 KPI Pool

II. 세부방안 - 4. 이슈도출 및 개선방향

현행 4급 이상의 성과관리

실적평가	기타평가
내부평가 : 직무성과계약 달성정도	역량평가 : 성과계약 최종평가서의 능력평가 시행
자체평가 :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평가	
국무조정실 기관평가 : 8개 분야(주요정책과제-실적평가표에 반영, 개별 이행과제 가능 분야만 가감점 반영)	혁신평가 : 혁신마일리지 결과를 반영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에 활용

- 내부평가(50%), 자체평가(20%), 국무조정실 기관평가(20%), 혁신마일리지(10%)

개선 필요성

5급 이하의 경우는 인사위 지침에 따라 실적평가 배분의 어려움으로 근무평정(70%), 다면평가(20%), 혁신마일리지(10%)로 성과급 지급 → 성과관리시스템 확대 필요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안)의 변경 → 기관평가로 통합결과 적용

II. 세부방안 - 4. 이슈도출 및 개선방향

금융감독위원회의 성과관리시스템 확대개편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해결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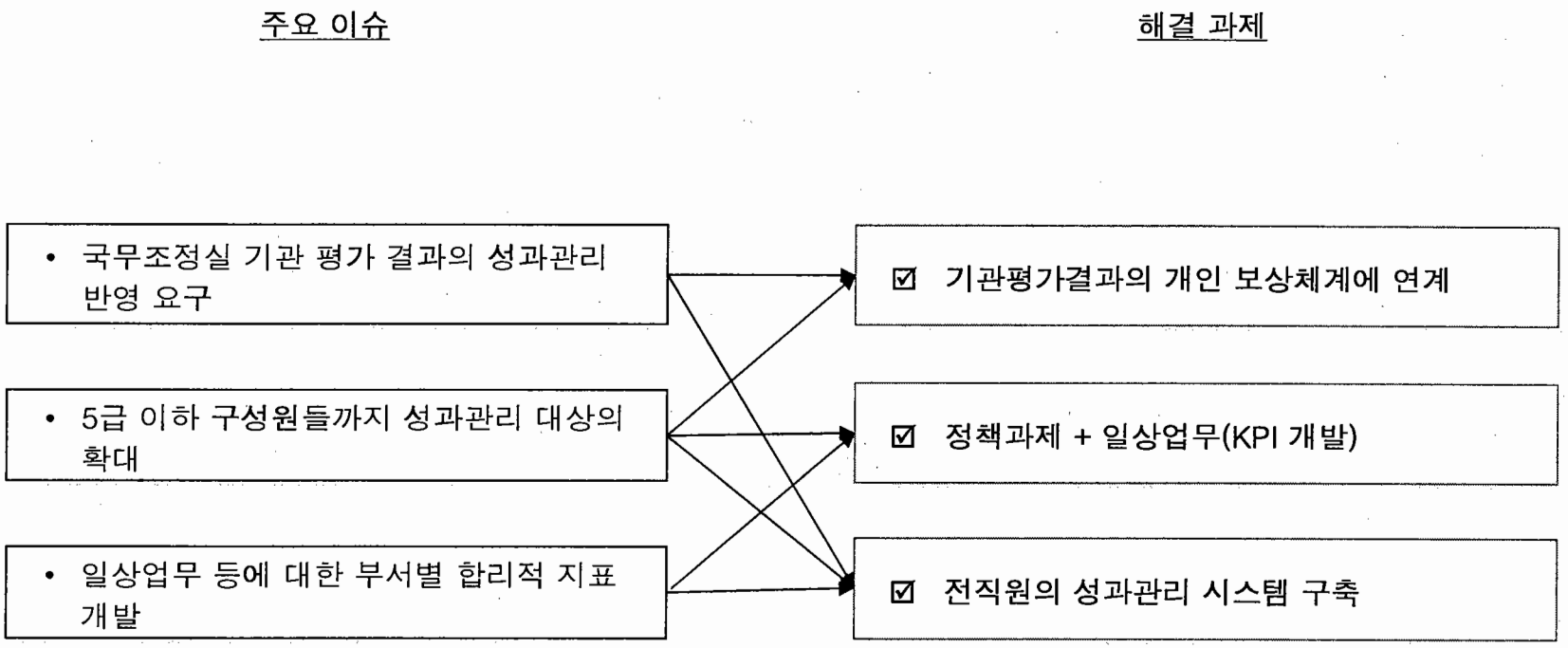

II. 세부방안 – 5. 기관평가 연계 방안

정부업무평가(기관성과)

주요정책과제	이행과제별 점수
재정성과	해당사항 없음
인사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조직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정보화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혁신관리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정책홍보관리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대통령지시사항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규제개혁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법적의무·권장사항, 법제업무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정보공개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청렴도	해당사항 없음
위기관리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보안업무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특정시책	해당사항 없음
고객만족도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부서·개인별 평가(개인성과)

항목·목표는 직무성과계약이나 근평의 항목과 목표에 연계

기관평가시기와 개인평가시기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연계 안됨

공무원평정규정 등에 따라 성과급에만 반영 가능

기관성과에 따른 개인성과급 연계방안 설계

연초에 이행과제 및 세부평가지표별 연관조직과 담당자 사전 설정

주요정책과제는 이행과제별 점수 적용
기타항목은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적용

II. 세부방안 – 5. 기관평가 연계 방안

가. 정부업무 평가의 개인평가 연계 방안

기관평가 16개 항목의 각 세부평가지표 중 금융감독위원회에 해당되는 항목의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검토

구분	대안	장점	단점
1안	◦ 평가지표를 부서단위로 통합, 실적에 따라 부서별 점수부여 : 부서원 공통 분배 ◦ 개인별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부서평가 결과의 개인평가 연계 ▪ 기관평가 결과의 일정비율 배정 가능 ▪ 개인별 업무의 중요도 반영	▪ 부서별 지표의 전략적 영향도(세부 평가지표별 배점) 반영이 어려움 ▪ 점수집계가 다소 복잡함
2안	◦ 세부평가지표를 전략적 영향도를 반영하여 실적에 따라 개인별 점수부여	▪ 개인의 성과와 전략적 영향도 반영이 명확함	▪ 개인별 지표수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큼 ▪ 제도화를 위한 일정비율 배정 시 반영이 어려움
3안	◦ 주요정책과제는 실적평가표에 직접 반영 ◦ 기타 평가지표별 실적에 따라 가감점 부여	▪ 운영이 용이	▪ 개인별 지표수의 편차에 따라 평가의 수용성 저하 ▪ 기관평가의 연계성이 떨어짐

제안 ***<u>개인평가체계에 일정비율을 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업무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1안을 권고</u>***

Ⅱ. 세부방안 – 5. 기관평가 연계 방안

1) 1안의 점수 산정 방식

점수 산출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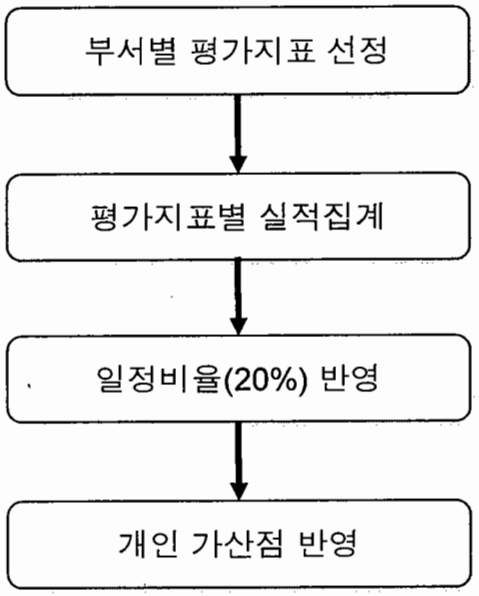

- 정부업무평가 항목의 평가지표 중 해당부서와 연관되는 지표 선정
- 부서책임지표와 부서구성원책임지표의 합계

- 지표별 배점을 반영하여 점수집계

- 부서별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전환
- 부서구성원에게 일괄 적용

- 개인가산점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부여

전 부서가 1개 이상의 평가지표와는 연계가 되며 부서별 평가지표 수와 배점은 고려하지 않음

예) "의사국제과"의 부서평가 점수 산출

주요정책과제(ⓐ40점)		정보화(ⓑ5점)			고객만족도(ⓒ5점)		
과제	점수	평가지표	배점	점수	평가지표	배점	점수
과제1	ⓓ86	정보보호수준	ⓗ6	ⓘ5	주요 정책만족도	ⓚ10	ⓞ9
과제2	ⓔ92	지식정보관리 수준	ⓘ4	ⓜ3	-	-	-
과제3	ⓕ85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정도	ⓙ10	ⓝ8	-	-	-
과제4	ⓖ89	-	-	-	-	-	-

1단계 :16개 과제중 해당 항목별 가중치를 부서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환산 가중치(ⓐ′)=ⓐ*100/(ⓐ+ⓑ+ⓒ))

2단계 : 항목별 점수 집계(주요정책과제 점수=(((ⓓ+ⓔ+ⓕ+ⓖ)/4)*ⓐ′)/100=70.4

정보화 점수=((ⓘ+ⓜ+ⓝ)*ⓑ′)/(ⓗ+ⓘ+ⓙ)=8

고객만족도 점수=ⓞ*ⓒ′/ⓚ=9)

3단계 : 부서평가 점수 87.4를 인사제도(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는 비율 20%로 환산=87.4*20/100=17.48

4단계 : 17.48점을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II. 세부방안 - 5. 기관평가 연계 방안

개인별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잠정)

전제조건

- 개인책임 지표를 대상으로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개인이 속한 부서평가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만 적용
-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가산점은 5점으로 제한
- 부서평가 점수와 개인가점의 합이 20점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주요정책과제의 경우 금감원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제외(성과계약 또는 성과계획서상에는 반영)

주요정책과제 개수	5점	4점	3점	2점	1점
10개 이상	90점 이상	89-80	79-70		
8개 이상	95점 이상	94-85	84-75	74-70	
6개 이상		90점 이상	89-80	79-70	
4개 이상			95점 이상	94-85	84-70
2개 이상				90점 이상	89-70

기타평가지표 개수	5점	4점	3점	2점	1점
10개 이상	90점 이상	89-80	79-70		
8개 이상	95점 이상	94-85	84-75	74-70	
6개 이상		90점 이상	89-80	79-70	
4개 이상			95점 이상	94-85	84-70
2개 이상				90점 이상	89-70

- 점수는 실적 평균이며, 주요정책과제와 기타평가지표의 가점은 별도 합산 가능(최대 5점 이하)

CEO Mission : 기관장은 역량, 부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가점과 합산하여 5점 이내로 줄 수 있음. 다만, 구성원간 암묵적인 공감대 필요

예시 : ① 연두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국회 또는 국정감사에서 현안이 된 사안
② 연두 업무 보고에는 없는 기관장의 특별지시사항

□ 창조적 업무수행 정도

○ **업무 챔피언(Champion) 선정** : 도전적.창조적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시 **도전성과 창조성이 뛰어난 개별 과제를 선정**(챔피언)하여 개인별 가점 부여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 등 외부평가 우수과제와 CEO미션 등에 대해 가점 부여(5점 이내)

□ 실패관리

○ (도전적 업무의 실패 용인) **Wild Card 제도 운영**

- 환경변화나 도전적인 목표 설정에 따라 당초 목표 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 (자체평가매뉴얼상 감점 대상 과제)로서 **소관 실무자가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조직내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 감점사항을 50%범위 내에서 면제
- 실패정책은행 운영 : 각 권역별 정책실패사례를 DB화하여 07년 상반기중 06년 실패사례를 분석

2) 2안의 점수 산정 방식

점수 산출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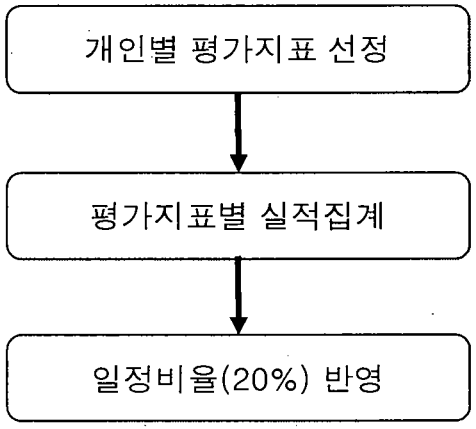

- 정부업무평가 항목의 평가지표 중 개인 해당지표 선정
- 지표별 배점을 반영하여 점수집계
- 합계점수를 20점 만점으로 전환

예) "의사국제과" B사무관의 기관평가 점수 산출

1단계 : 주요정책과제 중 과제1, 3과 정보화의 지식정보관리수준 지표 등 3가지 평가지표가 연계

2단계 : 항목별 점수 집계(주요정책과제 점수=((ⓓ+ⓕ)/2)*ⓐ/100=34.2

정보화 점수=ⓜ*ⓑ/100=0.15

3단계 : 합계점수 34.35점을 인사제도(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는 비율 20%로 환산=34.35점*20/100=6.87

3) 3안의 점수 산정 방식

점수 산출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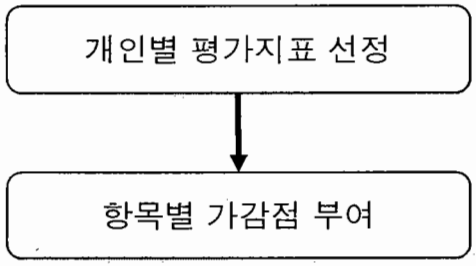

- 정부업무평가 항목의 평가지표 중 개인 해당지표 선정
- 지표별 실적을 감안하여 가감점 부여

예) "의사국제과" B사무관의 기관평가 점수 산출

1단계 : 주요정책과제 중 과제1, 3과 정보화의 지식정보관리수준 지표 등 3가지 평가지표가 연계

2단계 : 주요정책과제는 실적평가표에 직접반영

3단계 : 지식정보관리수준 지표 점수는 가감점으로 반영(상하위 20%에 대해 가감점 1점을 부여)
(9위/48개 기관)의 경우 평가결과가 상위 20%에 해당되므로 가점 1점 부여

Ⅱ. 세부방안 - 5. 기관평가 연계 방안

나. 통합성과관리체계

평가종류	실적평가		기관평가	혁신마일리지	다면평가
	성과계약	근무성적	부서평가	혁신활동	역량
평가내용/ 평가대상	개인목표 달성수준		부서목표 달성수준	혁신수준	역량수준
	4급 이상	5급 이하	부서단위	전구성원	전구성원
평가주기 평가방식	년 1회	년 2회	년 1회	년 1회	년 1회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평가등급	5등급	5등급	점수	점수	점수
평가주체	상급자	상급자	외부평가	평가단	업무유관자
결과반영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산정에 활용				
	60%	60%	20%	10%	10%

※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의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의 반영비율은 30%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함(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 4급 이상은 다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다면평가 생략 시에는 실적평가 반영비율을 70%로 조정)

다. 인사제도와의 연계 검토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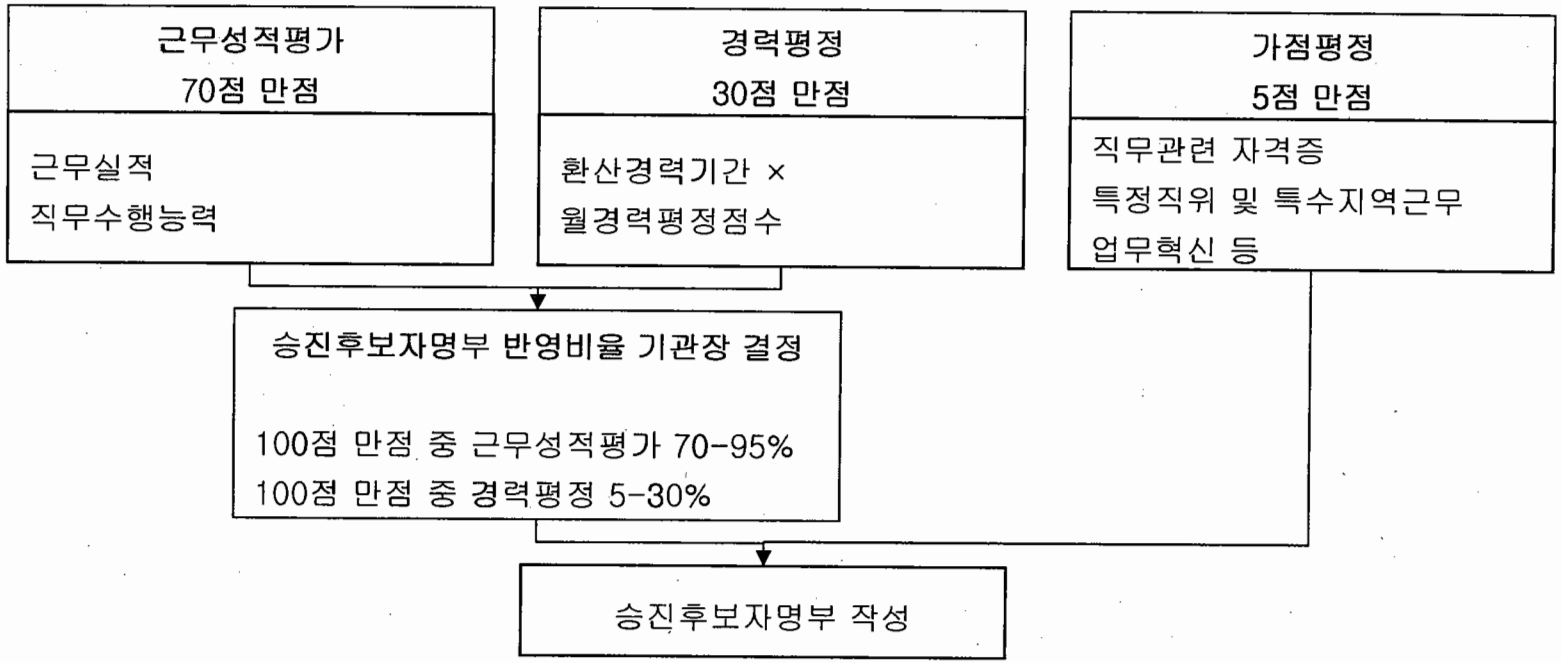

※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해 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점으로 함(공무원평정규정 전부개정령안)

→통합성과평가의 결과는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Ⅱ. 세부방안 – 5. 기관평가 연계 방안

라. 기관평가 지표유형

기관평가 항목의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

기관책임	기관 차원에서만 점수분배가 가능한 지표 →여성공무원 균형인사 지수 등
부서책임	각 단위부서 차원에서만 점수분배가 가능한 지표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등
개인책임	구성원 개개인에게 바로 적용되는 지표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등

기관책임지표는 부서평가나, 개인평가 연계 시 제외

Ⅱ. 세부방안 - 5. 기관평가 연계 방안

지표분류 체계:주요정책과제는 이행과제별 점수를 직접 적용함으로 제외, 재정성과와 청렴도는 해당사항이 없음

< Example >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인사	ㅇ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
	ㅇ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
	ㅇ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
	ㅇ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
	ㅇ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
	ㅇ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공개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
	ㅇ인사교류 제도운영의 적극성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
	ㅇ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기관책임	-	-
	ㅇ주요직위 인선시 국가인재 DB활용정도	기관책임	-	-
	ㅇ경력개발제도(CDP) 구축 정도	해당없음	-	-
	ㅇ5급 이상 공무원 사전전보 비율	기관책임	-	-
	ㅇ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기관책임	-	-
	ㅇ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	기관책임	-	-
	ㅇ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정도	기관책임	-	-
	ㅇ평가결과를 기관인사운영에 환류·활용한 정도	기관책임	-	-
	ㅇ성과관리카드 입력률	기관책임	-	-
	ㅇ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지수	부서책임	각 부서	-
	ㅇ근무성적평가시 성과면담 이행정도	부서책임	각 부서	-
	ㅇ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
	ㅇ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기관책임	-	-

II. 세부방안 - 6. KPI 도출

금감위의 성과지표는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정책과제 지표와 일상업무에 관한 지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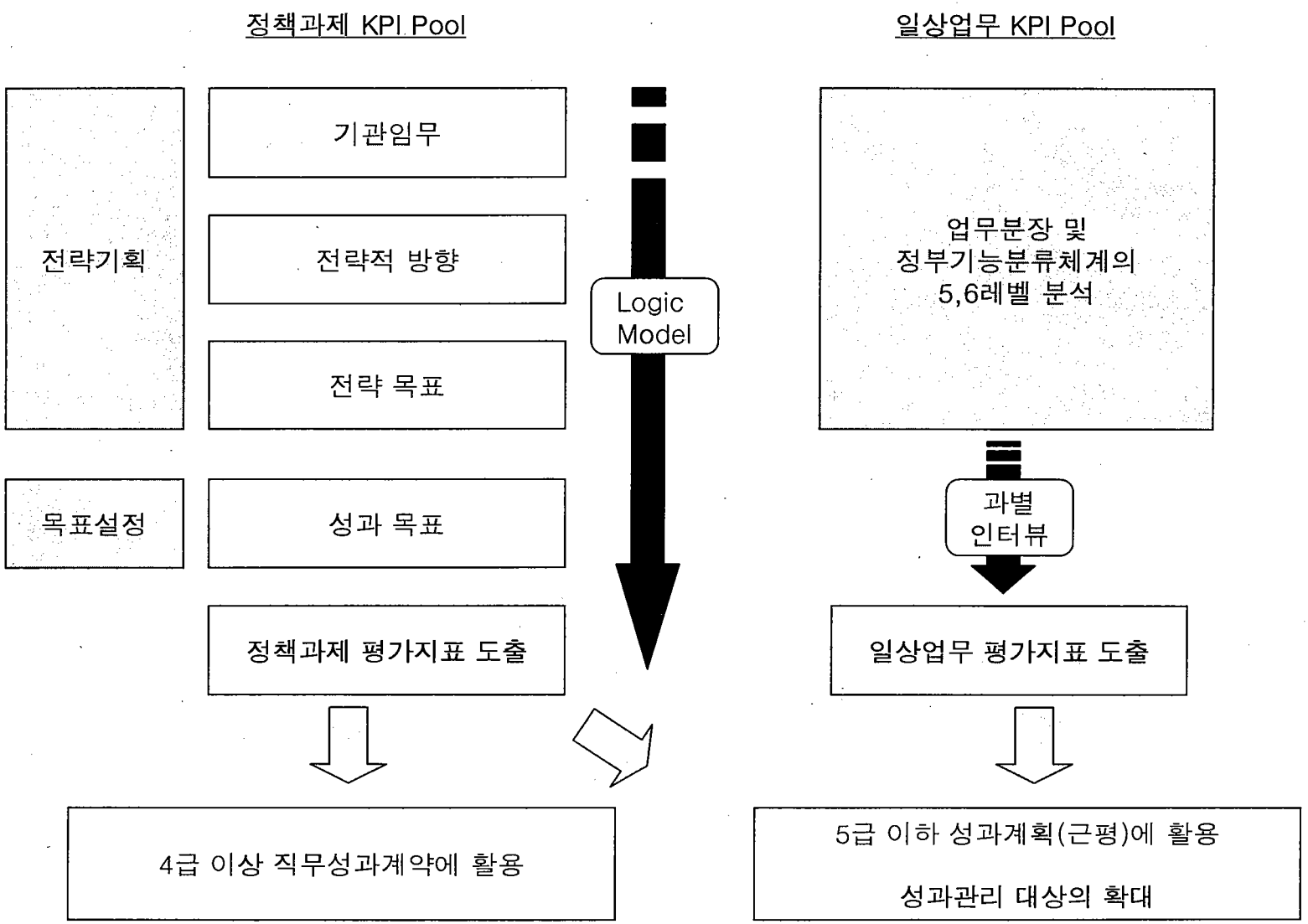

II. 세부방안 - 6. KPI 도출

KPI Pool 예시

- 자산운용감독과 정책과제 **KPI Pool**

< Example >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자산운용업을 금융허브 선도산업으로 육성	ㅇ 자산운용사의 전문성 제고	전문자산운용사설립 실적 확대방안 마련여부 및 제도개선 여부	
	ㅇ 펀드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개선방안 마련여부 활성화 방안 마련여부	
	ㅇ 펀드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직판 도입 여부 및 제도개선 여부 제도도입 여부	
	ㅇ 자산운용사등의 구조조정 유도	보완방안 마련 여부 유도방안 마련 여부	
	ㅇ 펀드 대형화.장기화 유도	평균 펀드규모	
	ㅇ 펀드관련 공시기능 및 감시기능 제고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실적 모범규준 보완여부	
	ㅇ **PEF** 활성화	심사요건 마련 여부 완화방안 마련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ㅇ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처리 모범기준 마련	모범기준 마련 여부 안내사이트 개선 여부	
	ㅇ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홍보	해설서 발간 여부 설명자료 발간 여부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장치 강화	ㅇ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ㅇ 펀드 판매 건전화 ㅇ 간접투자관련 투자자교육 확대	제도 도입 여부 표준판매 준칙 제정 재단설립 여부	

II. 세부방안 - 6. KPI 도출

• 자산운용감독과 일상업무 **KPI Pool**

< Example >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자산운용업 관련회사의 등록 및 감독	o 판매회사 등의 등록 및 감독 o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등 기타 관련회사 등록 및 감독	등록 등 관련업무의 적정성 감독업무의 적정성	
자산운용유관기관의 감독	o 자산운용협회 감독 o 펀드표준약관 심사 업무 o 자산운용협회 정관변경 인가	감독업무의 적정성 검토의 적정성	
자산운용업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 · 연구	o 간접투자제도 선진화를 위한 조사, 연구	조사, 연구 자료의 우수성 조사, 연구 자료의 적시성	
법령 제·개정 협의 및 감독규정 제·개정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협의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개정 o 유사간접투자기구 관련법령 제개정 협의 o 기타법령 제개정 협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 관련법령 개정 협의 o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제도개선안 건수 개정의 효과성	
퇴직연금 감독	o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o 퇴직연금사업자 감독	등록 등 관련업무의 적정성 감독업무의 적정성	

II. 세부방안 – 6. KPI 도출

가. KPI에 대한 이해

핵심성과지표(KPI)는 각각의 업적평가요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소수의 핵심지표로서 해당 성과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용한 도구

KPI 정의

핵심성과지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전략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즉,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함

KPI 개발이슈

Issue 1. 무엇이 핵심인가? 핵심가치 동인 규명에 관한 문제

Issue 2.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가? 지표의 선택에 관한 문제

Issue 3. 몇 개의 지표가 적절한가? 적정한 지표 개수 선정의 문제

Issue 4. 어떻게 지표들간의 균형을 맞추는가? 재무적 지표들과 비재무적 지표들간의 균형 문제

Issue 5.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도 좋은가? 상이한 전략적 사업 단위간에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는 문제

KPI 개발원칙

- ① 사업의 핵심성공 요인들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② 핵심성과지표는 적을수록 좋다.
- ③ 설정된 관점상에서 조직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이어야 한다.
- ④ 고객, 이해 관계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 ⑤ 최고 경영자의 의지로 시작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로 전파되어야 한다.
- ⑥ 지표는 변경 가능해야 하고 환경과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나. KPI 도출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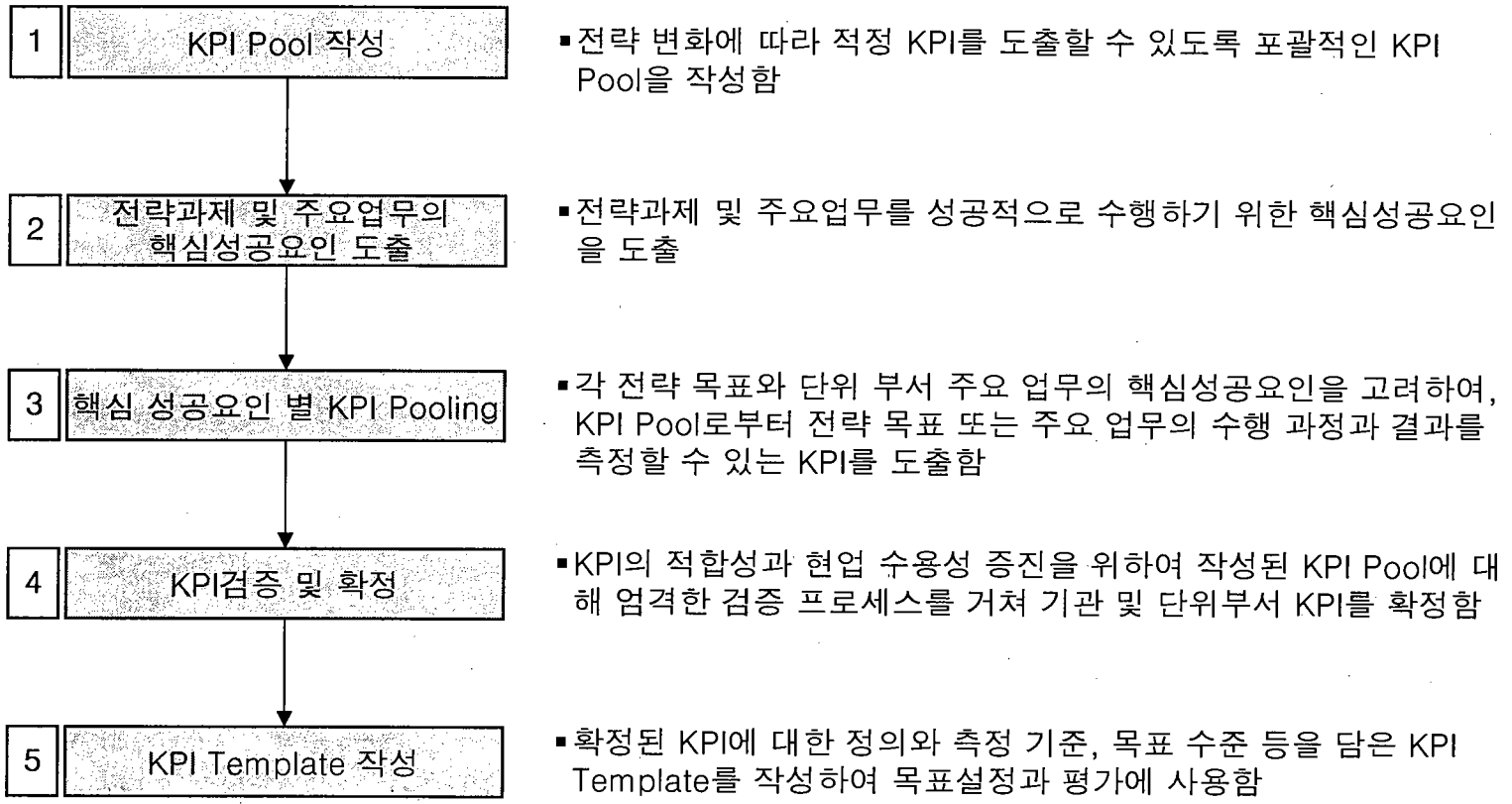

다. KPI 선정

KPI 검증 및 확정은 다음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별함

KPI 평가기준	내용	세부 작성 기준		
		5	3	1
전략과의 연계성 (Related to Tactics and Strategy)	평가지표가 기관의 장기적인 전략과 연계되어 있어야 함	평가지표가 전략과 확연하게 연결되는 경우	평가지표가 전략과 일부 연결되는 경우	평가지표가 전략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유의성 (Significant)	조직의 기능이나 CSF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정의 목표 또는 업무에 있어서 중점관리분야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어야 함	조직의 기능이나 CSF와 확연하게 연결되는 경우	조직의 기능이나 CSF와 일부 연결되는 경우	조직의 기능이나 CSF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통제 가능성 (Controllable)	피평가자의 순수한 노력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 노력으로도 성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업의 지표에 대한 수용성을 얻어야 함	피평가자의 노력으로 지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피평가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표와 관련된 다른 피평가자의 노력이 성과에 반영되는 경우	책임자의 통제(관리)가 불가능한 요인 또는 경영외적 요인에 의해 지표의 성과가 결정되는 경우
측정 가능성 (Measurable)	지표의 객관적 측정 가능성 및 평가 Data의 효율적인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평가지표가 측정가능하고 관련된 Data 수집이 전산화 되어 있는 경우	평가지표가 측정가능하지만 관련된 Data 수집을 수기로 해야 하는 경우	평가지표와 관련된 Data 수집이 불가능하여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II. 세부방안 - 6. KPI 도출

조직 성과관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구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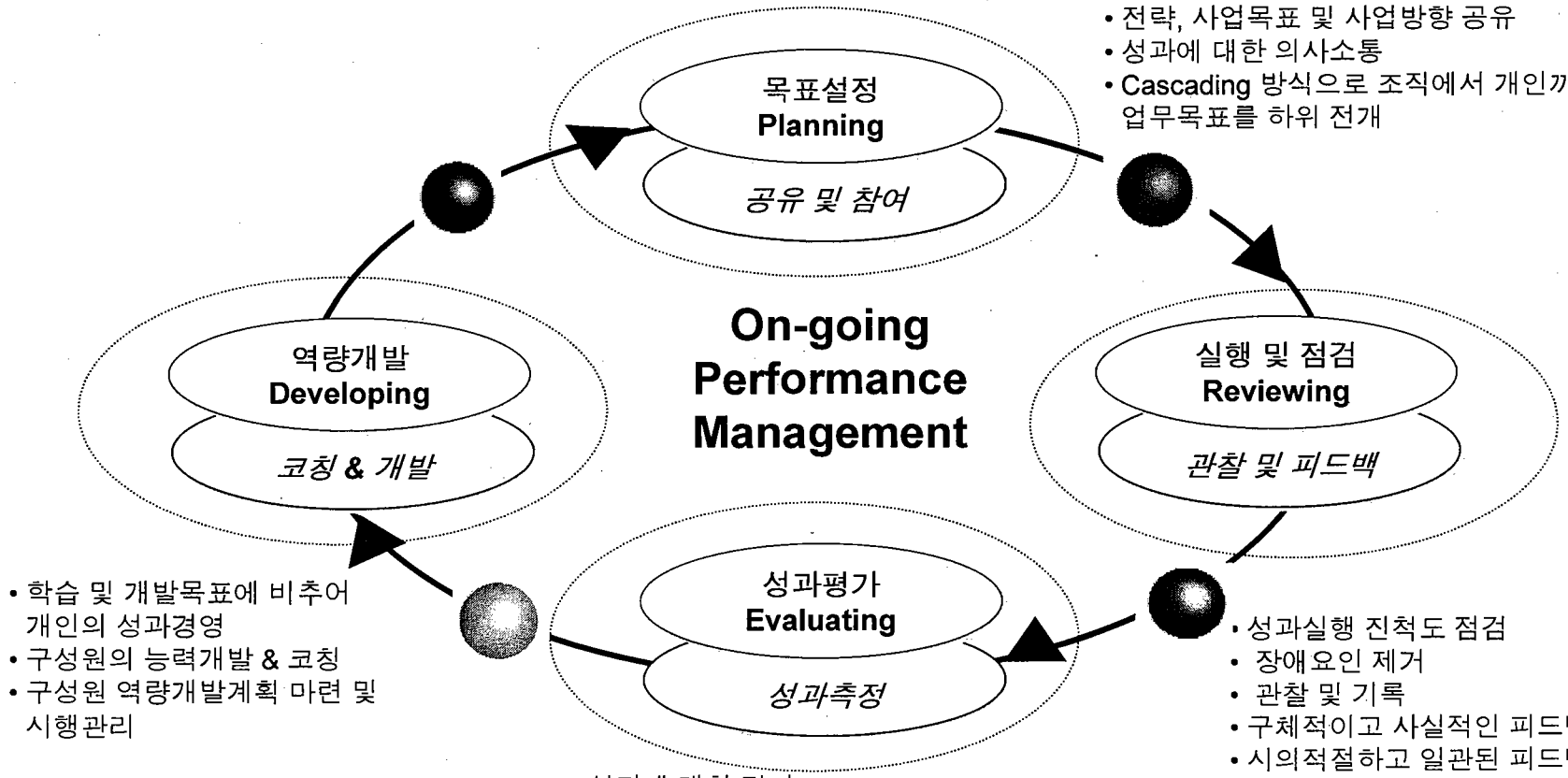

목차

Ⅰ. 총론

1. 추진경과

2. 통합성과관리 확대 • 개편방안

Ⅱ. 세부방안

□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 추진배경

2. 프로젝트 범위

3. 기대효과

□ 개인평가 체계

4. 이슈도출 및 개선방향

5.기관평가 연계방향

6. KPI 도출

Ⅲ. Appendix

1. 기관평가 지표분류

2. 팀별 KPI Pool

Ⅲ.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인사	ㅇ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상권
	ㅇ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상권
	ㅇ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공개 정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인사교류 제도운영의 적극성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기관책임	-	-
	ㅇ주요직위 인선시 국가인재 DB활용정도	기관책임	-	-
	ㅇ경력개발제도(CDP) 구축 정도	해당없음	-	-
	ㅇ5급 이상 공무원 사전전보 비율	기관책임	-	-
	ㅇ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기관책임	-	-
	ㅇ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	기관책임	-	-
	ㅇ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정도	기관책임	-	-
	ㅇ평가결과를 기관인사운영에 환류·활용한 정도	기관책임	-	-
	ㅇ성과관리카드 입력률	기관책임	-	-
	ㅇ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지수	부서책임	각 부서	-
	ㅇ근무성적평가시 성과면담 이행정도	부서책임	각 부서	-
	ㅇ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기관책임	-	-
	ㅇ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기관책임	-	-
	ㅇ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기관책임	-	-
	ㅇ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기관책임	-	-

III.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조직	ㅇ자체조직관리 계획수립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중장기 조직전략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권한의 하부위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이관수준	부서책임	각 부서	-
	ㅇ조직관리시스템 이용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구성원 의견수렴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조직관리 외부참여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조직 성과향상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기능 효율화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인력의 효율적 활용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평가결과의 반영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책임운영기관 지정·지원	기관책임	-	-
	ㅇ위원회 정비 계획·실천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ㅇ위원회 관리 효율화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이보현·김세정

III.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정보화	ㅇ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사업간 연계성·중복성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성과계획의 적절성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계획 준수성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성과목표의 달성도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평가결과의 활용성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평가결과의 대외공개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CIO·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기관책임	-	-
	ㅇ정보화 조직·인력 역량 수준	기관책임	-	-
	ㅇ정보보호수준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수준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홈페이지 운영수준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SW공공구매 혁신수준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지식정보관리 수준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ㅇ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정도	개인책임	의사국제과	남동우·임왕섭

III.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혁신관리	ㅇ혁신기획	부서책임	혁신행정과	-
	ㅇ혁신의 실천·지원	기관책임	-	-
	ㅇ혁신의 환류	부서책임	혁신행정과	-
	ㅇ혁신조직	부서책임	혁신행정과	-
	ㅇ혁신활동	기관책임	-	-
	ㅇ업무 및 성과관리	부서책임	혁신행정과	-
	ㅇ혁신의 내면화	기관책임	-	-
	ㅇ혁신적 행동양식	기관책임	-	-
	ㅇ혁신의 정착·확산	부서책임	혁신행정과	-
	ㅇ부처혁신 과제수행	부서책임	혁신행정과	-
	ㅇ혁신활동의 성과기여도	기관책임	-	-
	ㅇ가점사항	부서책임	혁신행정과	-

III.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정책홍보관리	ㅇ홍보협의 정도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홍보교육 정도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정도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문제보도 대응 정도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정책고객의 의사반영 정도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정책기사 게재 정도	부서책임	각 부서	-
	ㅇ페이지뷰 증감률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사이트 혁신성·활용 정도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장·차관 브리핑, 언론출연·기고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실·국장 브리핑, 언론출연·기고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KTV 활용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인터넷 홍보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언론보도건전비판 수용 모범·미흡사례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부처 의견달기 정도	부서책임	각 부서	-
	ㅇ문제보도 대응 모범·미흡사례	부서책임	각 부서	-
	ㅇ홍보고객 DB 고객 만족도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정책고객대상 관리 및 홍보 정도	부서책임	정책홍보팀	-
	ㅇ공공기관 협력홍보 성과	기관책임	-	-
	ㅇ정책홍보 성공·실패사례 각 1건	기관책임	-	-

III.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대통령 지시사항	ㅇ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계획수립의 신속성 정도	부서책임	해당부서	-
	ㅇ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절차 이행 여부	부서책임	해당부서	-
	ㅇ대통령지시사항 이행중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정도	부서책임	해당부서	-
	ㅇ대통령지시사항 등록관리의 신속성 정도	부서책임	해당부서	-
	ㅇ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 추진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	부서책임	해당부서	-
	ㅇ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율 향상도	부서책임	해당부서	-
규제개혁	ㅇ규제개혁 조직(기구) 구성의 적절성	부서책임	각 부서	-
	ㅇ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부서책임	기획과	-
	ㅇ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부서책임	각 부서	-
	ㅇ기관장 규제개혁 의지	기관책임	-	-
	ㅇ소속 공무원 규제개혁 의지	기관책임	-	-
	ㅇ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실적	부서책임	혁신행정과·기획과	-
	ㅇ개별규제 정비실적	부서책임	각 부서	-
	ㅇ전략과제 세부과제 이행 실적	부서책임	각 부서	-
	ㅇ신설·강화규제 증가율	부서책임	각 부서	-
	ㅇ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 및 규제심사결과 관리	부서책임	기획과	-
	ㅇ규제수요자 만족도	부서책임	기획과	-
	ㅇ전문가 만족도	부서책임	기획과	-

III.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법적 의무·권장사항, 법제업무	ㅇ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기관책임	-	-
	ㅇ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기관책임	-	-
	ㅇ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김창기
	ㅇ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김창기
	ㅇ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신기술제품 구매 포함)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김창기
	ㅇ비예산부수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한 비율	해당사항 없음	-	-
	ㅇ'06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실적	해당사항 없음	-	-
	ㅇ최초입법계획 대비 추가 또는 철회된 법안의 비율	해당사항 없음	-	-
	ㅇ'04년도 및 '05년도 정비확정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	해당사항 없음	-	-
	ㅇ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05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미정비 법령 및 '06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	해당사항 없음	-	-
	ㅇ법령 제·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중 시행일 이전에 하위규정을 정비한 비율	해당사항 없음	-	-
	ㅇ20일 이상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비율	해당사항 없음	-	-
	ㅇ의원입법 대응노력(±10점)	해당사항 없음	-	-

Ⅲ.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정보공개	ㅇ정보공개창구운영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최윤정
	ㅇ정보목록 작성·비치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최윤정
	ㅇ인터넷 정보공개방 운영	부서책임	각 부서	-
	ㅇ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의 적절성	부서책임	각 부서	-
	ㅇ비공개처분의 적정성	부서책임	각 부서	-
	ㅇ이의신청 처리의 적정성	부서책임	각 부서	-
	ㅇ행정정보의 공표실적	부서책임	각 부서	-
	ㅇ비공개기준의 충실성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최윤정
	ㅇ행정정보의 공표기준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최윤정
	ㅇ심의회 구성·운영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최윤정
	ㅇ직원교육 실시 실적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최윤정
	ㅇ자체평가 실시여부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최윤정
	ㅇ업무편람 작성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최윤정
	ㅇ지침 및 조례정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최윤정
	ㅇ친절도, 신속성, 적정성 등	부서책임	각 부서	-

III.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위기관리	ㅇ관련 법령/계획/매뉴얼 수립・운용 및 보완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위기상황 대응기구/전담조직 구성 등	기관책임	-	-
	ㅇ위기요인・징후 포착/감시 및 전파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위협・취약요소 해소방안 강구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위기관리 연습/훈련 시행(가점)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 총 배점 이외 가점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위기관리 교육실시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자체/합동 위기관리 업무・현장 점검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위기징후/상황 평가 및 경보체계 운영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인적/물적 자원 비축・관리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부처간 협조・지원 등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위기 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비상대책기구/현장 지휘체계 가동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대응조치 통합 시행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인적/물적 자원 투입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자체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보완 등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위기관리 업무 홍보체계 구축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ㅇ위기상황 대응 관련 홍보 등	개인책임	은행감독과	박재훈·이민섭

III. Appendix - 1. 기관평가 지표분류

항목	평가지표	분류	연관 부서	담당자
보안업무	ㅇ자체 내규 등 보안관련 규정 정비	개인책임	혁신행정과·의사국제과	김상권·임왕섭
	ㅇ과학보안장비 도입·보강	기관책임	-	-
	ㅇ보안교육 충실성	부서책임	각 부서	-
	ㅇ보안감사 계획 충실성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김상권
	ㅇ보안감사의 효율적 실시	개인책임	혁신행정과·의사국제과	김상권·임왕섭
	ㅇ보안감사 결과 후속조치 적절성	부서책임	각 부서	-
	ㅇ보안사고 발생 유무	부서책임	각 부서	-
	ㅇ보안사고 발생 처리결과	부서책임	각 부서	-
	ㅇ보안사고 방지 재발 대책	개인책임	혁신행정과	김상권
고객만족도	ㅇ주요정책 만족도	부서책임	각 부서	-
	ㅇ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기관책임	-	-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정책홍보팀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홍보기획 및 운영강화	ㅇ 홍보협의 강화 ㅇ 홍보교육 강화	홍보협의 실적 홍보교육 실적	
언론홍보 강화	ㅇ 대언론 홍보활동 강화 ㅇ 문제보도 적절 대응 ㅇ 건전비판 적극 수용	언론홍보 실적 보도대응실적 비판수용실적	
온라인(디지털)홍보 강화	ㅇ 국정브리핑 운영 및 관리 강화 ㅇ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ㅇ 인터넷홍보 강화	국정브리핑 운영실적 **PCRM** 운영실적 홈페이지 운영실적	
뉴미디어 등 기타홍보 추진	ㅇ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통한 입체적 홍보 추진	기타홍보 추진실적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정책홍보팀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정책과 홍보의 연계	o 정책-홍보 부서의 연계(협의 정도, 홍보자문회의 체 운영) o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사전협의 참여도, 적절성, 적시성)	홍보협의회 운영 실적 사전협의 실적	윤병훈 윤병훈
기획홍보	o 홍보기획, 창의적 홍보 o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 홍보 성과 o 정책홍보 성공-실패 사례 관리	기획홍보사례의 우수성 협력성과사례의 우수성 사례의 우수성	윤병훈 윤병훈 윤병훈
대언론홍보	o 장-차관, 실-국장 대언론홍보 추진 o 건전비판 수용 o 문제보도 대응	연간실적 연간실적 연간실적	윤병훈 윤병훈 윤병훈
온라인홍보 활성화	o 국정브리핑 금감위 뉴스(**fsc.news.go.kr**) 운영, 관리 o 홈페이지 운영, 관리 o **PCRM** o 기타 다양한 뉴미디어 홍보	연간실적 연간실적 연간실적 사례의 우수성	윤병훈 윤병훈 윤병훈 윤병훈
홍보전문성 제고	o 타 부서 및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 o 끊임없는 교육 및 학습을 통한 전문성 제고 o 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한 홍보컨설팅 또는 홍보 강화 노력	교육추진실적 교육추진실적 협력실적	윤병훈 윤병훈 윤병훈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혁신행정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민원처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o 민원상담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추진	민원인 만족도 조사	
금융회사의 민원감축 노력 유도	o 민원발생평가, 민원자율 조정제도 등 시행	민원자율조정제도 운영실적	
열린 민원행정 전개	o 민원처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위주의 순회 상담서비스 제공	민원인 만족도 조사	
효율적인 혁신 및 정부 업무평가 추진	o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체제 구축 o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 정보서비스 확충 o 혁신문화 내재화를 위한 기반 마련 o 혁신브랜드 등 혁신성과 창출 o 혁신역량 및 문화 정착 o 혁신리더쉽의 강화 o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대응 o 성과관리문화의 정착도모 o 성과평가결과와 인사·보수등과의 연계강화	행자부 혁신평가 향상도 행자부 혁신평가 향상도 혁신관리 평가결과 향상도 구성 여부 및 회의개최 횟수 혁신브랜드에 대한 평가결과 혁신역량 및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결과 혁신메세지 활성화 정부업무평가결과 향상도 평가보고서의 적시 작성 및 제출실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연계방안 마련 여부 설명회 개최 여부 직원만족도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내부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o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교육	직원 만족도 계획수립여부 인사위 개최 여부 직원교육 건수	
	o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운용	예산편성의 적절성 제도개선 여부	
	o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유지	유관기관의 불만여부 보안사고 건수 문서이관 실적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혁신행정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조직진단 및 관리	ㅇ 부내 조직개편 및 변화관리 ㅇ 소요정원 산정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각과별 소요정원 산정의 적정성	김세정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	ㅇ 혁신 교육 및 학습 ㅇ 혁신포럼 운영 ㅇ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ㅇ 혁신마일리지 운영	계획의 적정성 1인당 연간 교육,학습 시간 혁신워크숍 개최건수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개최건수 기관 혁신관리 점수	전수한
혁신관리기획	ㅇ 혁신추진계획 마련 ㅇ 혁신추진과제 점검 ㅇ 혁신평가 대응	계획의 우수성 점검횟수 보고서 우수성	전수한
혁신사례 공유 전파	ㅇ 혁신경진대회 개최 ㅇ 혁신사례집 발간	대회 진행 우수성 사례집 우수성 기관 혁신관리 점수	전수한
업무 추진방식 개선	ㅇ 정책품질관리	모니터링 실적 학습실적	김홍식
성과관리 기획·추진	ㅇ 성과지표 개발관리 ㅇ 성과와 보상연계방안 수립	개발관리 우수성 설명회 개최 건수/직원 만족도	김홍식
인사혁신 추진	ㅇ 성과 및 인사혁신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 ㅇ 다면평가제 개선 등 인사혁신방안 수립.추진	연구보고 적정성 다면평가개선방안 수립건수	김세정
업무처리절차 개선	ㅇ 업무처리절차 분석 및 업무처리과정 표준화		김홍식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부내 통합행정혁신 추진의 관리·조정	o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o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구축 우수성 오류건수	김홍식
부내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o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구축 우수성 오류건수	김홍식
업무계획 수립	o 장차관 이취임 준비	취임준비의 적정성	이보현
부패방지 추진	o 부패방지대책 확립업무 추진 o 공직기강 확립 추진 및 평가	청렴위/국조실 기관평가점수	김천현
우리부 자체감사	o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감사 o 본부 및 소속기관 일상감사 o 부내 감사결과 처리	감사의 정확성	김상권
우리부 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o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서류 관리 o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조치	재산등록서류건수 재산등록심사결과조치	김창기 김창기
다른 기관의 우리부 감사결과처리	o 감사원 위탁민원조사 o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처분사항처리건수, 처리시한	김상권
공직자 비위 직무감찰	o B.H 조사요구 사항 처리 o 검.경 통보사항 처리	지원의 적정성	김천현
민원처리	o 접수된 민원 분류 및 처리	민원만족도	전수한
민원제도개선	o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o 민원제도개선 사항 발굴	민원만족도 발굴건수	전수한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진정 및 비리신고 처리	o 공무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o 공직자전용비리신고방 운영	운영의 효과성	전수한
부내 의전 및 행사	o 장.차관 이·취임 o 부내 의전 o 주요행사(지원) o 기타행사(지원)	행사지원의 적정성	김창기
보안 관리	o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 o 보안업무 심사분석 o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조사 o 보안감사	시행계획의 적정성 심사분석작성여부 현황조사실시건수 감사실시 횟수	김상권
인사 운영	o 인사관리 o 평가관리 o 성과관리 o 교육훈련	공정성 직원만족도 수용성 직원만족도 직원만족도 실시건수 1인당 교육시간	김세정 김세정 김세정 김세정 김세정 김상권 김상권
후생복지 운영	o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만족도	송재근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정부연습 실시	ㅇ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을지연습 실시여부, 참석도	김상권
기록물 관리	ㅇ 기록관리 추진사업 ㅇ 문서수발	추진건수 건수	최윤정
자료 관리	ㅇ 도서 간행물 관리	이용자만족도	최윤정
부내 행정정보공개 운영	ㅇ 정보공개 운영	기관 정보공개 점수	최윤정
지출.회계 관리	ㅇ 자금배정 및 지출관리 ㅇ **Nafis**시스템 운영	지출업무 적절성 오류건수	송재근 김미현
계약관리	ㅇ 계약관리 ㅇ 우선구매 ㅇ 정책연구용역 관리	계약업무의 적절성 우선구매 건수 계약업무의 적절성	김창기 김동희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관리	ㅇ 물품관리 ㅇ 재물조사 ㅇ 국유재산관리	관리 적절성	김동희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충무계획 수립	o 충무계획 (충무기본계획안·충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수립여부	김상권
재정혁신관리	o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o 예산성과관리제도 운영	수립의 적정성 기관 재정성과 평가	송재근 김천현
예산안 편성	o 주요사업비 편성기본사업비 예산안 편성 o 인건비 예산안 편성 o 예산안관련 당정협의 및 예산심사관련 국회대응	기관 재정성과 평가 대응의 적정성	김천현
예산 성과	o 예산운영 o 예산절약성과금 관리	운영의 적절성 전용건수 절감액 수입증대액	김천현
정부업무평가	o 평가대응계획 등의 수립 o 평가대응계획의 이행 등 평가대응 추진	정부업무평가 결과 향상도	김홍식
목표관리	o 목표관리제 운영	운영의 적정성	김세정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o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o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o 장관 지시사항 관리	처리건수 처리기간 단축률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부내 위원회 및 산하 기관의 현황관리	o 자체평가위원회 관리 o 정책자문위원회 관리 o 정부위원회 현황관리	지원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	김홍식 김세정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	o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에너지절약 건수	김창기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o 행정심판 o 헌법재판 o 소송관련	소송 등 수행의 적정성	
부내 민원업무 총괄	o 부내 민원업무 총괄관리 o 국민제안 및 정책건의사안 처리 및 관리 o 민원행정 제도개선 운영	처리건수 처리기간 단축률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기획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금융산업의 확대균형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o 주요업무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조정	주요업무계획서 충실도 간부회의 자료 충실도 간부회의의 원활한 운영정도	
	o 원활한 대국회업무 수행	업무현황보고 회수 자료제출실적 국회관련 정보공개 건수 국회현장 대응의 적절성	
	o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경쟁적·창의적 금융환경 조성	자체 규제 합리화 실적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회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진행의 원활성	
	o 국무회의 안건 및 주요 경제정책관련회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회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의 충실도 주요 경제정책회의의 안건 검토 주요 경제정책회의의 안건검토의 충실도 정보의제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기획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정책·업무 기획·조정	o 부서간 업무 협조·조정	협조·조정의 원활성	박현철
	o 정보의제관리시스템 운영	정보수집 건수/운영의 정확성	정선인
	o 국정통계모니터링시스템 금융 부분 운영	업데이트 지연 건수/Q&A 점검 소요시간	정선인
	o 연간업무계획수립	계획 우수성	박현철
	o 주간업무계획수립	계획 우수성	박현철
	o 주요 현안보고 작성	작성 건수/보고의 적정성	박현철
국회대응	o 국회업무보고작성	작성 건수/보고의 적정성	박현철
	o 서면질문처리	처리 건수/대응의 적정성	박현철
	o 요구자료 처리	처리 건수/대응의 적정성	박현철
	o 대정부질문 대응	대응의 적절성	박현철
	o 당정업무협조 및 협의	협조의 원활성	박현철
	o 국회관련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운영의 적절성	박현철
회의안건 검토 및 총괄 조정	o 국무·차관회의 안건 검토 및 정리	지원의 적정성	정선인
	o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검토 및 정리		송현도
	o 중소기업관련 회의 안건 검토 및 정리		정선인
	o 정책홍보관리관회의 안건 작성		정선인
	o 금융업패널 및 금융소비자패널 회의 운영		정선인
			정선인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규제개혁 기획·총괄	o 자체규제심사위원회운영	개최건수/운영의 적정성	송현도
	o 등록규제 심사 및 관리	규제등록 변경 건수	송현도
	o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록규제 대비 과제 발굴 건수	송현도
	o 규제개혁 과제 검토 및 종합	규개위 협의 결과(불채택건수 비율)	송현도
	o 규제개혁 과제 이행 점검 및 관리	이행율(실적/계획)	송현도
	o 규제개혁 평가 대응	평가 결과(상·중·하)	송현도
	o 규제개혁관련 회의 대응	회의 건수	송현도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의사국제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공동검사 수행 등 외국 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o 외국감독당국 및 국제기구와 고위급.실무급 회담 개최 o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MOU**체결 및 개정	외국금융 감독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회의 참석 수 **MOU**체결 및 개정건수	
금감위·증선위 회의 및 합동간담회 운영	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의 효율적 운영 o 불공정 조사기관인 증선위의 중립적 운영 o 사전심의와 조정기능을 위한 합동간담회 운영	회의개최실적 상정안건수 회의개최실적 상정안건수 회의개최실적 상정안건수	
정보화·전산업무 지원	o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등 정보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시스템 개선 및 도입여부 전산센터 이전여부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의사국제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정보시스템 운영	o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가동률/관리의 적정성	남동우/임왕섭
행정업무 정보화	o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계획대비 실적/기관평가점수	남동우/임왕섭
국제기구와의 연례 협의	o **IOSCO, IAIS, IOPS** 등	협의의 효과성	오화세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양자 협력	o 일본, 영국, 독일 등	**MOU** 체결건수/협력의 적정성	오화세
다자 및 양자협력 추진	o **WTO** 및 **FTA** 추진	대응의 적정성	남동우
신용평가기관과의 연례협의	o **Moody's, S&P, Pitch**	협의의 효과성	오화세
위원회 회의운영	o 금감위 회의운영 o 증선위 회의운영 o 합동간담회 회의운영	불만제기 건수/운영의 적정성	남동우
회의결과 기록관리	o 의사록•속기록 기록•관리	이견 건수	남동우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o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계획대비 실적	남동우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감독정책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o 외국계 금융지주회사 감독기준 마련 o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여부 금융지주회사 협의체 구성여부	
사후규제적 검사를 업무시스템의 적정성 검사로 전환	o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구축 여부 점검실적	
전담검사제도 운영의 내실화	o **workshop**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RM** 제도 내실화 도모	**workshop** 개최실적 설문조사 실시 여부	
금융회사 검사의 효율성 제고	o 검사계획의 협의.조정	협의.조정 횟수	
거시경제 여건변화에 대한 조기경보기능 강화	o **Stress Test** 모형을 사용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 측정 o 조기경보시스템의 속보성 및 신뢰성 제고	**Stress Test** 모형 개발 및 분석실시 건수 분기별 조기경보 시스템의 분석결과 산출시차 단축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정비 유도	o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 횟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o 기촉법 연장 지연 등에 대비 사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마련	자율 구조조정시스템 가동 여부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감독정책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외국 금융회사를 위한 원스톱 체제 구축	o 금감원에 국제감독지원실 신설	원스톱체제 구축여부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통해 담보대출 관행 개선	o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적용기업비율 향상 유도 및 기업제무제표 신뢰도 제고 등	면담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여부	
중소기업 워크아웃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o 일시적 자금난의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고객별 특성화된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o 청소년 금융캠프 추진 o 청소년 금융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 o 금융교육 시범학교 확대운영 o 언론매체를 활용한 금융교육 캠페인 전개	금융교육 횟수 청소년대상 금융지수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o 조기금융활성화 추진방향 및 계획 검토 o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자료 제작	계획검토 여부 교사용 지도자료 제작 여부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체제 구축	o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평가시스템 구축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 정보 서비스 확충	o 금융교육 지식시스템 구축	표준강의교재 개발실적 및 조회건수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감독정책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금융감독제도	o 검사제도 운영.정비 o 제재제도 운영.정비 o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제도개선 실적 개선의 적정성	윤병원
금융제도 운영 개선	o 금융기관 업무위탁제도 개선 o 기타 금융제도 운영 개선 o 우체국 금융업무 o 표시광고법 관련업무 o 금융실명법 관련업무	개선실적/개선의 적정성 개선실적/개선의 적정성 참여/지원의 적정성 참여/지원의 적정성 참여/지원의 적정성	박주영 윤병원 서재홍 서재홍 서재홍
금융정보분석원 (FIU) 업무	o 자금세탁방지업무 o 테러자금조달방지업무 o **FIU** 관련 법령 협의	참여/지원의 적정성	서재홍
동북아금융허브 추진	o 금융허브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 o 제도개선업무	회의 개최대비 참석횟수 자료요청대비 발표횟수 개선의 적정성	서재홍
금융소비자 보호	o 소비자보호종합시책 o 금융소비자 교육	시책의 효과성 청소년 금융지수 금융교육 실적횟수 피교육생 만족도	서재홍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금융시장 감독	o 부동산시장 대책 o 중소기업대출 감독 o 기타 중소기업 지원정책 o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주택담보대출 동향 점검 실적/효과성 중기대출 동향 점검 실적/효과성 정책의 적정성 가동횟수/시스템 정비의 적정성	박주영 윤병원 윤병원 박주영
복합금융그룹 감독	o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o 금융지주회사 운영제도 정비 o 금융지주회사 행정조치	업무실적/결정의 적정성 개선실적/개선의 효과성 지도실적/조치의 적정성	서재홍
한국자산관리공사 감독	o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감독 o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제도 정비	감독의 우수성 개선실적/개선의 효과성	윤병원
금융기업구조조정 지원	o 구조조정 법규정비 o 구조조정 현안처리 o 예보위/공자위 지원	개선실적/적정성 효과성 참여/지원의 적정성	윤병원 윤병원 박주영
법령협의 업무	o 금융관련 법령협의 o 기타 일반 법령협의 o 자체규제개혁 관련업무	참여/지원의 적정성 참여/지원의 적정성 개정의 효과성	서재홍
비영리법인 감독	o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o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결정의 적정성 감독의 우수성	서재홍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은행감독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은행의 장기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o 은행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수익원 발굴 기반 조성	신규수익원 발굴을 위한 규정개정 실적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지원	o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추진	역모기지 상품 취급기준 마련 여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노력 지속	o 신**BIS** 협약 도입 준비	세부지침 마련 여부 워크샵 실시여부 **QIS** 실적	
유동성 비율 및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합리화	o 유동성비율 산출방식 개선 o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발전방안 모색	규정개정 실적 관련 **T/F** 운영여부 규제개선 실적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	o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감독기준을 마련 o 보안전담기구 설립	감독기준 제정여부 보안전담기구 설치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합리성 개선	o 은행임원 관련 제도 정비	공청회 실시여부 관련제도 정비실적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o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o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o 외환거래 위반 집중조사 및 엄중 제재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도입여부 외환거래 조사결과 조치 건수 및 설명회 개최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통해 담보대출 관행 개선	ㅇ 공공정보의 집중.공유 확대를 통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여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여건 조성	ㅇ 은행의 공익활동실적 자율공시제도 구축 ㅇ 휴면예금의 적극적 반환 추진	워크샵 개최 여부 공익활동 공시제도 마련여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여부	
금융거래 약관의 인터넷 공시 의무화	ㅇ 은행거래약관의 인터넷 공시 의무화	공시의무화제도 구축 여부	
고객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ㅇ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기준 시행여부 및 현장점검 실적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 정보 서비스 확충	ㅇ 고객정보 유출에 대비한 「사고예방시스템」 개발·운영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여부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은행감독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인·허가	o 은행업 인가	결정의 적정성	이윤재
	o 국외점포 신설 사전협의		이동훈
	o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인허가		이동훈
	o 신탁업 인가		이윤재
	o 신용정보업 허가		박재훈
	o 신용정보업 감독 관련 인가 및 승인		박재훈
	o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박재훈
구조조정	o 은행 등 구조조정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이윤재
은행업 등 감독	o 은행 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감독 업무의 적정성	이윤재
	o 은행업 감독관련 인가 및 승인		이윤재
	o 특수은행 등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		박재훈
	o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이동훈
	o 외국환 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조치		이동훈
	o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이동훈
	o 은행업 등 관련 감독업무의 총괄 조정		이윤재
	o 신탁업 감독 관련 인가 및 승인		이윤재
	o 신용정보업 감독		박재훈
	o 전자금융업 감독		박재훈
	o **NSC** 위기관리		박재훈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법령 제·개정 협의 및 감독규정 제·개정	o 외국환거래법령 제정 개정 협의	개정의 효과성	이동훈
	o 신탁업법령 제정 개정 협의		이윤재
	o 신용정보법령 제정 개정협의		박재훈
	o 은행법령 제정·개정 협의		이윤재
	o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개정 협의		박재훈
	o 전자금융업 감독규정 제정 개정		박재훈
	o 은행업 감독규정 제정 개정		이윤재
	o 신탁업 감독규정 제정 개정		이윤재
	o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정 개정		박재훈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비은행감독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합리성 개선	o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의 주기적 점검제도 도입	감독규정 개정안 등 제도개선안 마련 여부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서민금융회사로 확대	o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 포함	취급기관 포함 여부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활성화 촉진	o 서민층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화자동응답(**ARS**)시스템 도입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시스템의 대출안내 실적 이용자 등 만족도 조사	
서민금융 교란사범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o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금융 교란사범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모니터링 및 홍보실시 여부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여력 확충	o 지방소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o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등 영업기반 확충 o 우량저축은행 동일인대출한도 확대	검토여부 기준마련, 감독규정 등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여부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조기 경영개선 도모	o 자본확충 등 자율적 경영개선 유도 o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및 부실저축은행 조기 정리 o 저축은행간 자율적 인수.합병(**M&A**) 활성화	고정이하여신비율 적기시정조치 부과 및 구조조정 추진 여부 감독규정 개정 및 사례전파 여부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신협중앙회 및 단위 신협의 구조조정 추진	o 신협중앙회의 강력한 자구노력 유도 및 다각적 지원방안 검토 o 계약이전제도 등 다양한 구조조정방식 활용	지원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여부 제도개선 여부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체제 구축	o 중소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	중소금융회사의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대비 반영비율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비은행감독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비은행업 인허가	ㅇ 상호저축은행업 인허가 ㅇ 상호금융업 인허가 ㅇ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결정의 적정성	이윤수 성기철 성기철, 김제동
비은행업 감독	ㅇ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ㅇ 상호금융업 감독 ㅇ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건전성 지표	이윤수 성기철 성기철, 김제동
비은행업 구조조정 지원	ㅇ 상호저축은행업 구조조정 지원 ㅇ 상호금융업 구조조정 지원 ㅇ 여신전문금융업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의 적시성	이윤수 성기철 성기철, 김제동
비은행유관기관 감독	ㅇ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감독 ㅇ 신협중앙회 감독 ㅇ 여신전문금융협회 감독	감독의 우수성	이윤수 성기철 성기철, 김제동
유사금융에 관한 업무	ㅇ 유사수신행위 관련 업무 ㅇ 사금융 관련(사채 및 대부업) 업무	불법사금융 기획조사(모티터링) 실적	김제동
비은행업 감독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ㅇ 상호저축은행업 관련 조사·연구 ㅇ 상호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ㅇ 여신전문업 관련 조사·연구 ㅇ 유사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조사·연구실적/**Issue paper**의 적시성	이윤수 성기철 성기철 김제동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법령 제·개정 협의 및 감독규정 제·개정	o 상호저축은행법령 제정,개정 협의	개정의 효과성	이윤수
	o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제정,개정		이윤수
	o 상호금융업법령 제정,개정 협의		성기철
	o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제정,개정		성기철
	o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제정,개정 협의		성기철, 김제동
	o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제정,개정		성기철, 김제동
	o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 협의		김제동
	o 대부업법령 제정·개정 협의		김제동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증권감독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조성	ㅇ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강구 ㅇ 투자은행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자격증 제도 정비 ㅇ 혁신적 상품개발 촉진을 위한 업무가이드라인 선제적 제시	진입규제 개선 및 합병요건 완화 방안 마련 여부 영위업무별 자격증 제도 정비 방안 마련 여부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	ㅇ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한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유도 ㅇ 신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기회 확대 ㅇ 유가증권발행절차 등 발행제도 개선 ㅇ 주식시장 수급전망 분석 및 우량주 공급기반 확대	기업공개 증가 실적 미래수익가치산정방안 마련여부 발행제도 개선 방안 마련 수급전망 분석 외국기업 상장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ㅇ 원활한 딜링기능 수행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대상 확대	거래대상 확대 방안 마련 여부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 방안 마련	ㅇ 선물시장의 성장을 위한 신상품 도입 등의 방안 검토	선물상장상품수 증가 실적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ㅇ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감독시스템 정비	관련 **T/F** 개최실적 법령 인프라 구축 여부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	o 신용평가품질제고를 위한 신용평가회사 내부통제 기준 강화	내부통제 기준 마련 회사수	
증권투자 매매시스템의 정비	o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통합 등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의 효율성 제고	매매시스템 통합 계획 수립여부	
공시부담 경감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 정비	o 국제표준 전산언어(**XBRT**)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도입하여 기업공시 투명성 개선	**XBRT**도입 여부	
기업공시 관련 교육·홍보 강화	o 공시관련 편의성 증대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실적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증권감독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증권업 등 인허가	o 증권업 인허가 o 선물업 인허가 o 종합금융업 인허가 o 신용평가업 인허가	결정의 적정성	김기한 이헌석 김건 이헌석
증권업 등 감독	o 증권회사 감독 o 선물회사 감독 o 종합금융회사 감독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김기한 이헌석 김건
구조조정 지원	o 증권회사 구조조정 지원 o 선물회사 구조조정 지원 o 종합금융회사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의 적시성	김기한 이헌석 김건
자본시장 감독	o 주식 등 발행공시제도 정비 및 감독 o 유통시장 공시제도 정비 및 감독 o 기업경영권변동 공시제도 정비	개선실적/개선의 적정성	이진수
파생금융상품 감독	o 선물 품목의 상장 및 매매제도 정비	개선실적/개선의 적정성	이헌석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유통 감독	o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제도 정비 o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유통 감독	감독업무의 적정성	이헌석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감독	o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규정 승인 o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업무 감독	감독업무의 적정성	김건
증권유관기관 감독	o 증권유관기관 규정 등 신고, 보고 접수 o 증권유관기관 경영 및 업무 감독	감독업무의 적정성	이진수/이헌석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 · 연구	o 증권업 감독 관련 조사 o 증권업 감독 관련 연구 o 선물업 감독 관련 조사 o 선물업 감독 관련 연구 o 종합금융업 감독 관련 조사 o 종합금융업 감독 관련 연구 o 신용평가업 감독 관련 조사 o 신용평가업 감독 관련 연구	연구 및 조사 실적/ 적정성	김기한 김기한 이헌석 이헌석 김건 김건 이헌석 이헌석
법령 제·개정 협의 및 감독규정 제·개정	o 증권업 감독 관계 법령의 제 · 개정 협의 o 증권업 감독 관계 규정의 제 · 개정 o 선물업 감독 관계 법령의 제 · 개정 협의 o 선물업 감독 관계 규정의 제 · 개정 o 종합금융업 감독 관계 법령의 제 · 개정 협의 o 종합금융업 감독 관계 규정의 제 · 개정 o 신용평가업 감독 관계 법령의 제 · 개정 협의 o 신용평가업 감독 관계 규정의 제 · 개정	개정의 효과성	김기한 김기한 이헌석 이헌석 김건 김건 이헌석 이헌석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보험감독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화 지원	o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유도 및 업무범위 확대방안 강구 o 고위험자산 및 외화관련 규제재정비를 통한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보험회사 자산증가율 자산운용규제 개선 실적	
보험사 겸영 및 부수업무 지속 확대	o 모기지보험 허용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방안 마련 o 자회사 영위관련 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확대 추진 자회사 영위관련 제도 개선 실적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강구	o 민영건강보험 상품개발 활성화 유도	생.손보상품 표준화 시행여부	
노후대비·출산장려형 금융상품 개발 촉진	o 노후대비.출산장려형 상품개발 유도	고령화대비 상품 판매실적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노력 지속	o 보험사의 **RBC**제도 도입추진	지급여력 비율 수준 **RBC**제도 도입 추진 실적	
리스크 관리능력 등에 따른 감독수준 차별화	o 보험사의 리스크평가제도**(RAAS)** 도입추진	**RAAS** 도입 추진 실적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편법·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점검·제재 강화	o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활성화 및 예방활동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실적	
보험상품 판매시의 설명의무사항 확대	o 보험상품의 공시 및 광고사전심의제도 강화방안 마련	공시 및 광고관련 제도 강화 개선실적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장치 강화	o 신판매채널 모집행위 개선방안 마련 o 자동차보험의 **No-fault** 제도 도입방안 마련	신판매채널 모집행위 개선실적 자동차보험의 **No-fault**제도 도입방안 마련 여부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보험감독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보험업의 인·허가	o 생명보험업 인허가 o 손해보험업 인허가	결정의 적정성	선 욱 최유삼
보험업의 감독	o 생명보험업 감독 o 손해보험업 감독	보험회사 건전성 지표 (지급여력비율)	선 욱 이재형
보험업의 구조조정 지원	o 생명보험업 구조조정 지원 o 손해보험업 구조조정 지원	지원의 효과성	선 욱 이재형
보험업협회 등 유관단체 보험유관기관의 감독	o 보험개발원 감독 o 생명보험협회 감독 o 대한손해보험협회 감독 o 한국화재보험협회 감독	감독업무의 적정성	최유삼 선 욱 이재형 이재형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	o 관계부처와 유사보험업 감독 협의	대응의 효과성	이재형
보험관련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o 보험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 실적/보고서우수성	선 욱
법령 제개정 협의 및 감독규정 제개정	o 보험업법령 제개정 협의 o 화보법령 제개정 협의 o 보험감독규정 제개정	개정의 효과성	최유삼 이재형 선 욱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자산운용감독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자산운용산업을 금융허브 선도산업으로 육성	ㅇ 자산운용사의 전문성 제고	전문자산운용사설립 실적 확대방안 마련여부 및 제도개선 여부	
	ㅇ 펀드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개선방안 마련여부 활성화 방안 마련여부	
	ㅇ 펀드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직판 도입 여부 및 제도개선 여부 제도도입 여부	
	ㅇ 자산운용사등의 구조조정 유도	보완방안 마련 여부 유도방안 마련 여부	
	ㅇ 펀드 대형화.장기화 유도	평균 펀드규모	
	ㅇ 펀드관련 공시기능 및 감시기능 제고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실적 모범규준 보완여부	
	ㅇ **PEF** 활성화	심사요건 마련 여부 완화방안 마련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ㅇ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처리 모범기준 마련 ㅇ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홍보	모범기준 마련 여부 안내사이트 개선 여부 해설서 발간 여부 설명자료 발간 여부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장치 강화	ㅇ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ㅇ 펀드 판매 건전화 ㅇ 간접투자관련 투자자교육 확대	제도 도입 여부 표준판매 준칙 제정 재단설립 여부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자산운용감독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자산운용업의 인허가	o 자산운용회사 설립허가 o 자산운용회사 경영관련 승인	결정의 적정성	손영채
자산운용업의 감독	o 자산운용회사 감독 o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 o 펀드판매 감독 o 간접투자시장 분석 및 대응	건전성 지표/감독업무의 적정성	손영채 손영채 전태원 전태원
구조조정 지원	o 자산운용업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의 적시성	손영채
투자자문업의 등록 및 감독	o 투자자문회사 등록 o 투자자문업 감독	등록업무 적정성 감독업무의 적정성	채보정
자산운용업 관련회사의 등록 및 감독	o 판매회사 등의 등록 및 감독 o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등 기타 관련회사 등록 및 감독	등록 등 관련업무의 적정성 감독업무의 적정성	채보정
자산운용유관기관의 감독	o 자산운용협회 감독 o 펀드표준약관 심사 업무 o 자산운용협회 정관변경 인가	감독업무의 적정성 검토의 적정성	손영채
자산운용업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 · 연구	o 간접투자제도 선진화를 위한 조사, 연구	조사, 연구 실적/자료의 적시성	전태원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법령 제·개정 협의 및 감독규정 제·개정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협의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개정 o 유사간접투자기구 관련법령 제개정 협의 o 기타법령 제개정 협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 관련법령 개정 협의 o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제도개선안 건수 개정의 효과성	손영채 손영채 전태원 전태원 채보정 채보정
퇴직연금 감독	o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o 퇴직연금사업자 감독	등록 등 관련업무의 적정성 감독업무의 적정성	채보정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조사기획과 정책과제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o 테마주등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및 중대 사건 중심으로 조사 체제 전환 o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강화	조사처리율 조사적체건수 신종 불공정 심리·조사 실적 조사기법 개발여부	
제재조치의 법률 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절차 개선	o 제재의 법률적 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제재조치 개선 절차 이행여부 권리 구제 절차 개선여부	
상장기업의 증권집단소송 대응능력 강화	o 중소·벤처기업의 증권집단소송 대응능력 강화 유도	설문조사 등 대상기업 실태조사 여부 교육.홍보 실적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 마련 및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o 국제회계기준(**IAS**) 수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로드맵 마련 여부 **T/F** 의견수렴실적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로 부실 감사 사전 방지	o 품질관리감리의 원활한 정착	세부일정대비 추진 실적	
기업의 자발적인 과거분식 수정 유도	o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과거분식 수정 및 신속스크린 실시실적 홍보실적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전략과제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선진감리방식 및 회계사 시험제도 조기 정착	o 심사대상기업 확대 및 혐의기업 인지기법 개발 o 공인회계사시험의 원활한 정착 도모	감리실시율 교육·연수 및 지적사례 발표 전산시스템 개발여부 홍보실적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 조사기획과 일상업무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o 증권·선물관련 조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o 불공정거래 조사 기획,총괄,조정 o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제도개선 실적/기획,총괄,조정 업무의 적정성	정규윤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o 불공정거래 조사 o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심의, 조치 및 조치후속업무	조사 및 감독업무의 적정성	하신욱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간 업무협조	o 조사·심리기관협의회 운영 o 조사·심리기관 공동 조사 o 조사·심리기관간 보고 및 통보	업무협조의 적정성	정규윤
공시심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o 공시심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제도개선 실적/개선의 효과성	정규윤
공시심사 및 조치	o 공시심사 심의 o 공시심사 결과 조치 및 조치후속업무	심사 및 감독업무의 적정성	하신욱
회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o 회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제도개선 실적/개선의 효과성	강호산
회계감리 및 제재	o 회계감리 심의 o 회계감리 결과 조치 및 조치후속업무	감리 및 감독업무의 적정성	하신욱

III. Appendix - 2. 팀별 KPI Pool

고유업무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담당자
회계기준원 감독	o 회계기준원 정관변경 인가 o 회계기준원 감독	감독업무의 적정성	강호산
회계기준, 외부감사 기준 제·개정	o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 제·개정 o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 실무의견서 제·개정	제·개정 실적/ 제· 개정의 효과성	강호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선정 등	o 작성회사 선정 및 면제	선정 및 면제 업무의 적정성	강호산
법령 제개정 협의 및 감독규정 제·개정	o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 회계 관련 법령 제·개정 협의 o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 회계 관련 감독규정 제·개정	제도개선안 건수 /제· 개정의 효과성	정규윤 강호산 하신욱 (공 통)

6.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억원)

금융회사명	수수료 수익 합계	수탁 수수료	인수 및 주선 수수료	사채 모집 수탁 수수료	수익 증권 취급 수수료	어음 지급 보증료	자산 관리 수수료	자문 수수료	신종 증권 판매 수수료	신탁 보수	기타
교보	1,242	835	182	0	102	0	0	0	0	0	123
굿모닝 신한	3,249	2,518	89	1	117	0	11	8	92	8	405
대신	2,983	2,642	49	0	60	0	3	0	210	1	16
대우	4,830	3,735	207	2	136	0	75	92	464	10	108
신영	859	307	90	0	124	0	4	86	243	0	4
서울	987	547	102	0	75	0	0	0	0	0	263
한양	463	244	91	0	18	0	0	22	0	0	87
메리츠	819	620	31	0	73	0	1	0	0	0	95
우리 투자	3,895	2,824	174	1	217	0	48	167	328	8	128
부국	289	170	20	0	6	0	0	85	0	0	8
브릿지	174	125	7	0	3	0	0	38	0	0	1
HFG IB	751	424	82	0	17	0	0	87	128	0	13

금융회사명	수수료 수익 합계	수탁 수수료	인수 및 주선 수수료	사채 모집 수탁 수수료	수익 증권 취급 수수료	어음 지급 보증료	자산 관리 수수료	자문 수수료	신종 증권 판매 수수료	신탁 보수	기타
현대	3,498	3,006	75	1	125	0	51	33	189	5	14
한화	903	747	49	0	98	0	3	3	0	0	3
신흥	487	206	47	0	15	0	0	0	0	0	218
유화	73	70	0	0	3	0	0	0	0	0	0
동양종금	2,235	1,182	133	0	509	10	18	93	0	0	289
SK	1,193	906	83	0	80	0	3	109	0	0	12
KGI	33	6	5	0	22	0	0	0	0	0	0
NH	387	304	30	0	33	0	0	11	0	0	10
삼성	4,929	2,987	83	0	904	0	66	96	698	23	72
동부	860	550	136	1	105	0	1	0	0	0	68
한누리	419	56	197	2	2	0	0	83	0	0	80
씨티	916	707	1	0	3	0	0	39	0	0	166
푸르덴셜	1,438	224	10	0	1,200	0	0	0	0	0	4
CJ	992	431	19	0	533	0	0	0	0	0	8
한국투자	4,417	2,244	189	0	1,184	0	64	0	396	24	317
하나대투	1,811	498	20	0	1,101	0	9	33	3	0	147

금융회사명	수수료 수익 합계	수탁 수수료	인수 및 주선 수수료	사채 모집 수탁 수수료	수익 증권 취급 수수료	어음 지급 보증료	자산 관리 수수료	자문 수수료	신종 증권 판매 수수료	신탁 보수	기타
리딩	66	56	0	0	1	0	0	1	0	0	7
미래에셋	2,636	1,151	75	0	960	0	74	202	96	16	61
비엔지	70	70	0	0	0	0	0	0	0	0	0
키움	910	842	58	0	0	0	1	7	0	0	2
이트레이드	294	275	14	0	1	0	0	0	0	0	4
코리아RB	52	52	0	0	0	0	0	0	0	0	0
홍국	38	36	0	0	1	0	0	0	0	0	0
크레디트스위스	1,339	1,188	0	0	0	0	0	0	0	0	152
골드만삭스	1,372	1,229	0	0	0	0	0	0	0	0	143
다이와	140	102	12	0	0	0	0	23	0	0	3
메릴린치	1,080	926	0	0	15	0	0	20	0	0	118
모간스탠리	1,656	1,241	0	0	0	0	0	3	0	0	412
바클레이즈	52	21	1	0	0	0	0	0	0	0	30
크레디아그리콜슈브르	56	56	0	0	0	0	0	0	0	0	0
제이피모간	821	711	0	0	0	0	0	0	0	0	110
에이비엔암로	260	231	0	0	0	0	0	0	0	0	29

금융 회사명	수수료 수익 합계	수탁 수수료	인수 및 주선 수수료	사채 모집 수탁 수수료	수익 증권 취급 수수료	어음 지급 보증료	자산 관리 수수료	자문 수수료	신종 증권 판매 수수료	신탁 보수	기타
도이치	653	589	0	0	0	0	0	0	0	0	63
KIDB	28	28	0	0	0	0	0	0	0	0	0
리먼 브러더스	605	401	0	0	0	0	0	0	0	0	204
HSBC	115	67	1	0	0	0	0	38	0	0	9
비엔피 파리바	165	139	0	0	0	0	0	0	0	0	26
CLSA	620	616	0	0	0	0	0	0	0	0	4
노무라	115	110	0	0	0	0	0	1	0	0	4
에스지	152	149	0	0	0	0	0	0	0	0	3
맥쿼리	840	590	0	0	0	0	0	244	0	0	7
UBS	2,092	1,722	0	0	0	0	0	138	0	0	232
증권사 전체계	**61,359**	**41,713**	**2,362**	**8**	**7,845**	**10**	**433**	**1,762**	**2,847**	**95**	**4,282**

7. 은행의 수수료 수익 현황

"붙임1 참조"

(붙임1)

은행의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백만원)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7년06월
우리은행	원화수입수수료	333,043
	송금수수료	21,315
	(전자금융이체수수료)	15,601
	추심수수료	1,215
	대리사무취급수수료	136,002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58,005
	수익증권판매수수료	48,356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29,641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30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74,481
	외환수입수수료	75,410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1
	유가증권대여료	15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원화수입수수료	105,481
	송금수수료	9,074
	(전자금융이체수수료)	8,950
	추심수수료	324
	대리사무취급수수료	63,740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11,674
	수익증권판매수수료	27,845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24,221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19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32,324
	외환수입수수료	9,118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0
	유가증권대여료	0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7년06월
하나은행	원화수입수수료	179,827
	송금수수료	12,668
	(전자금융이체수수료)	9,661
	추심수수료	619
	대리사무취급수수료	86,086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29,437
	수익증권판매수수료	44,007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12,642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4
	팩토링수수료	2
	증권대행수수료	4,841
	기타원화수입수수료	75,607
	외환수입수수료	30,543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165
	유가증권대여료	0
한국외환은행	원화수입수수료	147,941
	송금수수료	10,552
	(전자금융이체수수료)	7,745
	추심수수료	571
	대리사무취급수수료	90,110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20,276
	수익증권판매수수료	65,568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4,266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1
	팩토링수수료	19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46,688
	외환수입수수료	79,252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26
	유가증권대여료	13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7년06월
신한은행	원화수입수수료	398,029
	송금수수료	34,557
	(전자금융이체수수료)	20,695
	추심수수료	1,165
	대리사무취급수수료	253,166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47,246
	수익증권판매수수료	130,944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74,976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156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2,897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06,088
	외환수입수수료	54,201
	금수입수수료	527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5
	유가증권대여료	13
한국씨티은행	원화수입수수료	125,506
	송금수수료	2,784
	(전자금융이체수수료)	1,983
	추심수수료	502
	대리사무취급수수료	101,603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9,429
	수익증권판매수수료	88,189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3,985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6,659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309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3,649
	외환수입수수료	7,608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1
	유가증권대여료	0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7년06월
국민은행	원화수입수수료	611,797
	송금수수료	41,102
	(전자금융이체수수료)	33,619
	추심수수료	1,024
	대리사무취급수수료	315,848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94,485
	수익증권판매수수료	192,886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28,477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55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4,845
	기타원화수입수수료	248,923
	외환수입수수료	38,576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11
	유가증권대여료	184
대구은행	원화수입수수료	54,077
	송금수수료	6,644
	(전자금융이체수수료)	6,314
	추심수수료	640
	대리사무취급수수료	30,385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8,284
	수익증권판매수수료	15,374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6,727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5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242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6,161
	외환수입수수료	2,573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16
	유가증권대여료	0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7년06월
부산은행	원화수입수수료	46,776
	송금수수료	7,743
	(전자금융이체수수료)	6,007
	추심수수료	392
	대리사무취급수수료	22,590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6,683
	수익증권판매수수료	8,149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7,758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3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174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5,874
	외환수입수수료	7,946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10
	유가증권대여료	0
광주은행	원화수입수수료	25,655
	송금수수료	2,906
	(전자금융이체수수료)	2,289
	추심수수료	83
	대리사무취급수수료	10,031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3,031
	수익증권판매수수료	6,366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634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2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87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2,546
	외환수입수수료	1,162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0
	유가증권대여료	0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7년06월
제주은행	원화수입수수료	4,332
	송금수수료	338
	(전자금융이체수수료)	199
	추심수수료	5
	대리사무취급수수료	1,394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633
	수익증권판매수수료	563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198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4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2,591
	외환수입수수료	157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0
	유가증권대여료	0
전북은행	원화수입수수료	9,039
	송금수수료	1,019
	(전자금융이체수수료)	640
	추심수수료	51
	대리사무취급수수료	3,441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1,716
	수익증권판매수수료	1,227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498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1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4,527
	외환수입수수료	331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0
	유가증권대여료	0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7년06월
경남은행	원화수입수수료	31,673
	송금수수료	3,641
	(전자금융이체수수료)	2,866
	추심수수료	216
	대리사무취급수수료	11,667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6,325
	수익증권판매수수료	4,753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589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2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6,147
	외환수입수수료	1,750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0
	유가증권대여료	18
한국산업은행	원화수입수수료	82,713
	송금수수료	671
	(전자금융이체수수료)	671
	추심수수료	4,700
	대리사무취급수수료	3,114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1,856
	수익증권판매수수료	1,238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20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0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74,228
	외환수입수수료	18,341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1
	유가증권대여료	0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7년06월
중소기업은행	원화수입수수료	142,028
	송금수수료	18,878
	(전자금융이체수수료)	14,591
	추심수수료	648
	대리사무취급수수료	62,282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45,775
	수익증권판매수수료	15,666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841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14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60,206
	외환수입수수료	50,019
	금수입수수료	37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3
	유가증권대여료	79
한국수출입은행	원화수입수수료	1,664
	송금수수료	0
	(전자금융이체수수료)	-
	추심수수료	0
	대리사무취급수수료	0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0
	수익증권판매수수료	0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0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0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664
	외환수입수수료	10,271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0
	유가증권대여료	0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7년06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화수입수수료	198,764
	송금수수료	32,292
	(전자금융이체수수료)	22,850
	추심수수료	560
	대리사무취급수수료	43,652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0
	수익증권판매수수료	18,387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25,265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7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22,253
	외환수입수수료	11,209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277
	유가증권대여료	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화수입수수료	8,095
	송금수수료	976
	(전자금융이체수수료)	578
	추심수수료	72
	대리사무취급수수료	860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	0
	수익증권판매수수료	768
	기타대리사무취급수수료	92
	보호예수및대여금고수수료	0
	팩토링수수료	0
	증권대행수수료	0
	기타원화수입수수료	6,187
	외환수입수수료	2,771
	금수입수수료	0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0
	유가증권대여료	0

주1) 은행계정 총괄분 손익계산서 기준(분기 보고)

이 원 영 의 원

1. 국제기구 권고·요청에 의해 작성하는 통계 관련
   - 관련근거(내용 포함)
   - 제출현황(기구명, 통계내용, 요구항목수, 제공항목수, 미제공시 사유 등)
   - 목록(기구명, 통계명, 작성주기, 최근 제출일자, 미제출 및 공시 사유 등)
   - 최근 5년간 통계자료 및 외국 주요국가와의 비교자료

1. 관련근거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3조 (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기구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함

2. 제출현황

기구명	통계내용	요구 항목수	제공 항목수
OECD	·은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9	39
	·우리나라 전체 금융기관수, 지점수, 직원수, 총자산 및 총부채, 총금융자산	6	6
	·은행*의 원화자산/부채, 외화자산/부채	4	4

* OECD가 제공한 작성요령에 따라 여수신 기능을 가진 금융기관 모두 포함
(은행 : 은행,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신협)

3. 목록

기구명	통계명	작성주기	최근 제출일자
OECD	· Bank Profitability-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2년	2007.2.15

4. 최근 5년간 통계자료 및 외국 주요국가와의 비교

□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통계자료를 책자(1부)로 보유하고 있는바, 요청시 사본으로 제공 가능(1994~2003년 통계자료)

2.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평가·권고했던 사항 중 금감위/금감원 소관사항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결과 및 계획 포함)

- 평가·권고 사항은 해당내용 전문 첨부

□ IMF의 ROSC* 대상 12개 규범 중 통화·금융정책의 투명성 제고 실행규범 등 **7개 규범이 우리원 소관**

* ROSC: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 우리원 소관 7개 국제규범은 **전반적으로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우리원 소관 7개 규범>

1. 통화·금융정책의 투명성제고 실행규범(IMF)
2.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Basel Committee)
3.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등(IOSCO)
4. 보험감독원칙 등 (IAIS)
5. 국제회계기준(IAS)
6. 회계감사에 관한 국제기준(ISA)
7. 기업지배구조(OECD)

※ "평가·권고 사항" 전문 및 "평가·권고 사항에 대한 대응조치"는 별첨 파일 참고

©200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arch 2003
IMF Country Report No. 03/81

Republic of Kore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ncluding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on the following topics: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 Transparency, Banking Supervision, Securities Regulation, Insurance Regulation, Corporate Governance, and Payment Systems

This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on the **Republic of Korea** was prepared by a staff team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as background documentation for the periodic consultation with the member country. It is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it was completed on **February 14, 2003.** The views expressed in this document are those of the staff team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Executive Board of the IMF.

The policy of publication of staff reports and other documents by the IMF allows for the deletion of market-sensitive information.

To assist the IMF in evaluating the publication policy, reader comments are invited and may be sent by e-mail to publicationpolicy@imf.org.

Copies of this report are available to the public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ublication Services
700 19th Street, N.W. • Washington, D.C. 20431
Telephone: (202) 623 7430 • Telefax: (202) 623 7201
E-mail: publications@imf.org • Internet: http://www.imf.org

Price: $15.00 a cop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PUBLIC OF KORE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Prepared by the Monetary and Exchange Affairs and Asia and Pacific Departments

Approved by Stefan Ingves and Wanda Tseng

February 14, 2003

In 2001/2002 Korea participated in 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Three missions examined Korea's observance of international codes and standards and assessed the overall vulnerability of the country's financial sector to short-term risks and medium term challenges. A follow-up TA mission examined in more detail issues related to derivative markets.

The main findings of the report are as follows:

- Korea has made notable progress in improving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ctor and in reforming the legal,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framework. It has achieved a high degree of observance of key standards and codes through newly revised laws and competent supervision, but supervisory independence could be strengthened to improve the ability to provide authoritative guidance and interpretation, and legal protection of supervisors should be strengthened.
- Reform of the banking sector has restored profitability and improved its strength and resilience, but weaknesses in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remain. The rapid shift to new areas of business and the fast growth of off-balance sheet exposures require close supervisory monitoring.
- Progress in the nonbank financial sector has been less pronounced. The insurance sector remains weak and undercapitalized, as do many non-bank deposit taking institutions and securities firms. The authorities are in the process of addressing the problems in the credit-union sector, taking steps towards resolving unviable institutions. Other supervisory measures to strengthen oversight for different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re warranted.
- Remaining challenges are to complete the reform agenda by adopting a new insolvency framework, to fully adapt the supervisory and regulatory regim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des and standards, to reform auditing and accounting practices and improve corporate disclosure, and to complete the necessary corporate restructuring.

The missions met with Mr. Yun-Churl Jeon,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Mr. Seung Park,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Mr. Keun-Young Lee, Chairman of the FSC/FSS; and senior officials of these institution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mission also held extensive discussions with local and foreign market participants,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and with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Mission members participating in all missions comprised Tomás J.T. Baliño (IMF, MAE–mission chief), Larry Promisel (World Bank, FSEGP–deputy mission chief); Anne-Marie Gulde (IMF, MAE—IMF team leader), Meral Karasulu, and Matthew Jones (all IMF, MAE); members participating in selected missions were Kenneth Kang, Henry Ma and Dong He (IMF, APD); Greta Mitchell Casselle and Jahanara Zaman (IMF, MAE), Thomas Laryea and Stuart Yikona (IMF, LEG); Magally Bernal and Sonia Echeverri (IMF, MAE, Administrative Assistants), Oliver Fratzscher, Peter Kyle, William Mako, Behdad Nowroozi, Craig Thorburn (all World Bank), Jonathan Katz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lan Ball (U.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Chu-Yun Pae (U.S.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Gregory Johnston (payment system expert, Reserve Bank of Australia); Pedro Teixeira (prudential supervision expert, European Central Bank); Bengt Radstam, (debt management expert, Swedish National Debt Office; and Fot Chyi Wong, (foreign exchange expert,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ontents Page

Section I—Staff Report on Financial System Stability 5

I. Summary and Overall Stability Assessment 5

II.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ector Context 7
A. Current Macroeconomic Environment 7
B. The Financial Sector Context 7
C. Market Infrastructure 13
D. Regulation, Supervision, and Compliance with Standards and Codes 15

III. Short-Term Vulnerabilities 15
A. Exposures of the Banking Sector 17
B. Exposure of Insurance Companies to Macroeconomic Shocks 18
C. Other Short-Term Risks 20

IV. Medium-Term and Structural Issues 23
A. Financial Sector Supervision and Regulation 24
B. Legal Infrastructure 25
C. Sectoral Issues 25
D. Market Development Issues 28
E. Financial Safety Nets and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30
F. Corporate Governance 32
G.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33

Section II—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34

I.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34
A. General 34
B. Institutional and Macropudential Setting, Market Structure—Overview 34
C. General Precondition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34
D. Main Findings 35
E. Authorities' Response 38

II.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Insurance Core Principles 38
A. General 38
B. Institutional and Macroprudential Setting—Overview 39
C. General Preconditions for Effective Insurance Supervision 40
D. Main Findings 40
E. Authorities' Response 43

III. Summary Assesment of Observance of the IOSCO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43
A. General 44
B. Main Findings 45
C. Authorities' Response 48

IV.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CPS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48
A. General 48
B. Main Findings 50
C. Authorities' Response 51

V.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Code of Good Practices on Transparency i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52
A. Transparency of Monetary Policy 52
B. Transparency of Payment System Oversight 54
C. Transparency of 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Supervision 55
D. Transparency of Deposit Insurance 59

VI.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60
A. General 61
B. Main Findings 62
C. Authorities' Response 65

VII.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Draft Methodology for Assessing Legal, Institutional, and Supervisory Aspectos of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66
A. Overview of AML/CFT Measures 66
B. Legal and Institutional Setting 66
C. Main Findings 67
D. Authorities' Response 71

Text Boxes
1.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Observance of Ke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16
2. Main Features of Korea's Derivative Markets 21

Tables
SECTION I
1. Structure of the Financial System, 1997–2002 8
2. Selected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for Commercial Banks, 1997–2002 10
3. Consolidated Summary Balance Sheet of the Banking Sector, 1999–2002 11
4. Balance Sheet Sensitivity of Korean Banks, June 2002 19
5. Impact of Macroeconomic Shocks on the Corporate Sector and Implied Effects on Banking Sector 2001 Base 20
6. Impact of Macroeconomic Shocks on Household Credit 22

SECTION II
1.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the Basel Core Principles 36
2.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s 42
3.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the IOSCO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47

4.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CPSS Core Principles and Central Bank Responsibilities in Applying the CPs 51
5.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MF's MFP Transparency Code Practices—Monetary Policy 53
6.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MF's MFP Transparency Code Practices—Payment Systems Oversight 55
7.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MF's MFP Transparency Code Practices—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Supervision 57
8.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MF's MFP Transparency Code Practices—Deposit Insurance 59
9.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64
10.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the Draft AML/CFT Guidelines 68

SECTION I—STAFF REPORT ON FINANCIAL SYSTEM STABILITY

I. SUMMARY AND OVERALL STABILITY ASSESSMENT

1. **Korea's macroeconomic performance since the 1997–98 crisis has been impressive.** Real GDP growth has averaged 7¼ percent annually during 1999–2002, and inflation has remained low. A downturn in 2001, which resulted from external shocks, appears to have been overcome following the recent expansion of both domestic and external demand, and real GDP is now estimated to have grown by 6 percent in 2002. Core inflation has remained within the 2–4 percent target range, partly due to the 10 percent nominal appreciation of the won against the dollar since late 2001.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expected to reach almost twice short-term debt this year. Reflecting these positive developments, major rating agencies recently upgraded Korea's credit ratings (to A- by S&P). Because of these upgrades, Korea is no longer included in the EMBI+ index.

2. **Since the crisis, Korea has made major progress in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form**: the supervisory and regulatory regime for the financial sector has been substantially strengthened, and recent reforms have helped achieve a high degree of observ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The problem of non-performing assets and widespread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largely addressed—especially for the banking sector. This sector has undergone significant consolidation: banks have become more profit oriented, cutting costs, streamlining their operations, shedding staff, and consolidating branches. As a result, in 2001 the sector registered a profi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risis.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banking sector has tripled since 1996.

3. **The recovery of the financial sector has taken place in an overall favor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which greatly facilitated the improvement of measured financial sector soundness.** However, while much has been achieved since the crisis, there are still some substantial gaps to be filled. In particular, there remain some important reform measures in the insurance and securities sectors, the adaptation of the insolvency framework, and the comple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e challenge is now to complete the unfinished reform agenda, to fully implement the revised supervisory and regulatory regime, and to address the reform needs related to domestic and global developments.

4. **Despite notable progress in prudential supervision, concerns remain about the supervisor's ability to fully supervise the management of certain risks and respond to new challenges.** Examples of such risks include the rapidly growing off-balance sheet positions of banks, the capital position of insurance companies, and the derivative activities of securities firms. Also, despite the important role of connected lending and cross ownership in the financial crisis, disclosure and monitoring of these issues remains weak. Additional concerns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asset classification and low provisioning rates, given remaining weaknesses in the corporate sector. Off-site supervisory practices should be enhanced: The supervisory agency does not yet analyze the results of stress-tests of individual institutions in a systematic manner, which would allow a better assessment of individual and systemic risk. Finally, making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MOFE, FSC, and the FSS more transparent, and reassuring markets about the independence of the regulator would be important.

5. **Recapitalization of commercial and 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is largely complete**. Stress tests on the banking sector's loan portfolio suggest that it can handle isolated shocks without compromising its soundness, although a combination of shocks could be problematic for at least some institutions. The rapid growth in off-balance sheet positions requires improvements in banks'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and adaptations to supervisory oversight. Banks are also increasingly exposed to potential adverse developments in household income, as lending to the household sector has been increasing rapidly. Recent measures to strengthen provisioning for household lending are welcome.

6. **The forthcoming Basel II Capital Accord, the introduction of bancassurance, and the growth of derivatives and other off-balance sheet activities** will pose even greater demands on bo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ervisors, including requiring more sophisticated systems to assess and price inter-related risks. The FSC/FSS will need to evaluate the adequacy of its resources, especially staff, to deal with these issues.

7. **The insurance sector remains financially weak with most life insurance companies undercapitalized**. The capital adequacy requirement also needs to be redefined. Stress tests show the vulnerability of the sector to shocks to interest rates and equity prices. Greater transparency of the 'quasi-insurance' sector would enhance competition. Pension reform is another important pending topic, since under current policies Korea's partially funded public pension system will not be able to deliver the promised benefits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8. **Nonbank deposit taking institutions face soundness problems and some parts seem inadequately supervised**. This is particularly worrisome given the sector's size and the reputational consequences should there be runs on these institutions. The FSC/FSS should continue to strengthen the oversight of these institutions and resolve promptly any that are insolvent. Securities markets are highly volatile. Tighter supervision of the securities houses—particularly to curb excessive risk-taking by weakly capitalized institutions—seems warranted. Three investment trust companies are financially weak.

9. **Money, bond,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are still less developed than could be expected in a market of Korea's size and income level**. The observed lack of depth is, in part, related to segmentation in the government debt market and a lack of key maturities. Consolidation of government and government-guaranteed debt will help to enhance transparency and reduce market segmentation. Further necessary step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short-term securities—to provide a benchmark to the market and to allow the use of MSBs solely for liquidity management—and the removal of some remaining impediments to foreign participation. Measures to increase institutional investor participation and more regular and larger issues of long-term bonds would also foster market development.

10.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have improved but further steps are needed**. Accounting and auditing reform should continue, to align Korea with evolving international best practice. Audit committees need to become more effective. Other reform areas include improved corporate disclosur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related party transactions, strengthening of shareholder rights, and a clearer role for and professional training of outside directors.

11. **Corporate restructuring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but up to a quarter of Korean corporations remain unprofitable and highly leveraged.** Exposure of banks to such companies remains a concern. While current proposals to modernize the insolvency regime go in the right direction, the delay in completing this work is unfortunate as it remains a key step to give Korea an appropriate framework to deal with corporate distress. Passage of the new draft insolvency law that has recently been issued is therefore of key importance.

12. **Korea has made considerable strides towards observance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s (FATF)** recommendation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but some measures detailed in this report remain to be taken to achieve full observance of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guidelines.

II.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ector Context

A. Current Macroeconomic Environment

13. **Korea's macroeconomic performance since the 1997–98 crisis has been impressive but the near-term outlook depends on continued global recovery.** Real GDP growth has averaged 7¼ percent annually during 1999–2002, and inflation has remained low. Vulnerability to a balance of payments crisis has been sharply reduced, with Korea operating a floating exchange rate and with foreign reserves reaching almost two times short-term debt. Reflecting such positive developments, Korea has been the first country to graduate from the EMBI+ index following credit rating upgrades by all the major rating agencies. Korea's ratings have almost regained pre-crisis levels.

14. **Recent developments in capital markets have reflected diminished confidence in the global recovery, and risks of a further run up in oil prices.** The KOSPI and KOSDAQ have given back the significant gains recorded earlier in 2002, and bond yields have moved in a similar fashion. The real estate market, however, has remained buoyant. While overall house price inflation on a 12-month basis slowed slightly from a peak of 17.7 percent in April to 17.1 percent in November, apartment price increases in Seoul remained high at 31 percent overall, and higher increases in some districts, fueling concerns about a real estate bubble. Such concerns have abated in late 2002 as house price increases have slowed notably as a result of policy measures adopted in October 2002, with small price declines in the areas with the highest previous increases.[1]

B. The Financial Sector Context

15. **Korea's financial sector is large and diversified, including banks, various non-bank deposit taking institution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Table 1).** Pension schemes are still in their infancy. In international comparison, given Korea's size and level of development, the sector seems heavily focused on bank intermediation, with a comparatively smaller role of securities and equities markets.

---

[1] The recent house price increases are also likely to reflect one-time structural chang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ortgages.

Table 1. Korea: Structure of the Financial System, 1997–2002.6

(As of the end of period, trillion won and in percentage)

	No. of Institutions			Total Assets								Assets as a % of GDP			
	1997	2001	Jun-02	1997		2000		2001		Jun-02		1997	2000	2001	Jun-02
				Amount	%	Amount	%	Amount	%	Amount	%				
Banking Institutions	84	63	62	701.3	55.8	887.7	56.9	853.1	53.9	892.5	53.1	154.7	170.1	156.5	158.5
Commercial Banks	78	58	57	483.5	38.5	598.3	38.4	606.7	38.3	639.1	38.0	106.7	114.6	111.3	113.5
National Banks	16	9	9	379.0	30.2	505.9	32.4	508.3	32.1	530.8	31.6	83.6	96.9	93.3	94.2
Regional banks	10	6	6	58.7	4.7	45.5	2.9	49.0	3.1	50.9	3.0	13.0	8.7	9.0	9.0
Foreign Bank Branches 1/	52	43	42	45.8	3.6	46.9	3.0	49.4	3.1	57.4	3.4	10.1	9.0	9.1	10.2
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6	5	5	217.8	17.3	289.4	18.6	246.4	15.6	253.4	15.1	48.1	55.4	45.2	45.0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s	6,404	4,742	1,372	234.2	18.6	215.0	13.8	227.8	14.4	232.7	13.9	51.7	41.2	41.8	41.3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2/	30	3	3	77.9	6.2	21.3	1.4	13.8	0.9	13.1	0.8	17.2	4.1	2.5	2.3
Mutual Savings Banks	231	122	120	36.0	2.9	24.2	1.6	24.2	1.5	25.7	1.5	8.0	4.6	4.4	4.6
Credit Unions	1,666	1,268	1,248	19.3	1.5	21.0	1.3	23.4	1.5	23.6	1.4	4.3	4.0	4.3	4.2
Mutual Credit Facilities	1,733	1,618	n.a.	61.8	4.9	87.0	5.6	95.9	6.1	98.9	5.9	13.6	16.7	17.6	17.6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2,743	1,730	n.a.	29.8	2.4	37.1	2.4	40.1	2.5	40.4	2.4	6.6	7.1	7.4	7.2
Postal Savings	1	1	1	9.3	0.7	24.5	1.6	30.3	1.9	31.0	1.8	2.0	4.7	5.6	5.5
Insurance Companies	46	34	35	118.1	9.4	163.6	10.5	188.9	11.9	200.0	11.9	26.0	31.3	34.7	35.5
Life Insurance Companies	31	19	19	92.5	7.4	122.8	7.9	139.1	8.8	149.8	8.9	20.4	23.5	25.5	26.6
Non-life Insurance Companies	14	14	15	19.9	1.6	28.0	1.8	32.7	2.1	33.0	2.0	4.4	5.4	6.0	5.9
Postal Insurance	1	1	1	5.6	0.4	14.8	0.9	17.1	1.1	17.2	1.0	1.2	2.8	3.1	3.1
Securities Companies 3/	36	46	44	27.4	2.2	43.8	2.8	42.0	2.7	51.7	3.1	6.0	8.4	7.7	9.2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81	242	264	174.9	13.9	249.7	16.0	270.6	17.1	303.2	18.0	38.6	47.8	49.7	53.8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mpanies 4/	49	31	31	94.6	7.5	142.1	9.1	154.2	9.7	165.1	9.8	20.9	27.2	28.3	29.3
Securities Investment Companies	-	192	214	n.a.	n.a.	4.1	0.3	6.1	0.4	8.9	0.5	n.a.	0.8	1.1	1.6
Trust Accounts of Banks 5/	32	19	19	80.3	6.4	98.9	6.3	110.3	7.0	129.2	7.7	17.7	18.9	20.2	22.9
Total	6,651	5,127	n.a.	1,255.8	100.0	1,559.7	100.0	1,582.5	100.0	1,680.1	100.0	277.0	298.8	290.4	298.3

Sources : The Bank of Korea,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and Financial System in Korea, February 15, 2002,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onthly Financial Statistics Bulletin.

1/ Number of foreign bank branches (in the banking institutions) is as of September 1997.

2/ Including investment and finance companies.

3/ Domestic companies only.

4/ The figures in 1995 are for investment trust companies.

5/ Assets in trust accounts of banks is defined as total trust assets minus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mpanies.

The banking sector

16. **As of mid-2002, the banking sector included nine nationwide commercial banks, six regional banks, five 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and 42 foreign bank branches.** Commercial banks primarily engage in traditional financing of the corporate and the household sectors, but they also have limited activities in securities business and factoring, and in derivatives—an area of recent rapid growth. Most banks have leasing and credit card operations. It is expected that bancassurance will become permissible in 2003. Commercial banks are banned from owning real estate other than for business purposes. 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include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the Korean Development Bank, (KDB), and the Korea Export Import Bank (KEXIM), and the banking arms of two federations of cooperatives. These banks were founded initially to provide funds to strategic sectors but they now also undertake significant commercial banking activities.

17. **Key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banking sector are a high share of government ownership and increasing concentration.** As part of the restructuring efforts following the crisis, government and foreign ownership increased significantly. Prior to the crisis the government held equity in only three banks, amounting to less than 18 percent of total assets. After the restructuring, eight out of 15 commercial banks are now either majority government owned or co-owned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owners. When combined with government-ownership in 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in mid-2002 nearly 60 percent of the assets of the Korean banking sector is government-controlled. Foreign ownership increased from about 10 percent in 1998 to more than 30 percent in 2002.[2] Concentration before the crisis was moderate, but increased considerably with consolidation in the sector.[3] The share of the three and five largest banks stood at 51 and 69 percent of total sector assets, respectively. Following the merger of Hana Bank and Seoul Bank in 2002, three large banks now dominate the market.[4] The structure of the banking sector continues to evolve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ongoing privatization efforts.

18. **The restructured banking sector has demonstrated improved asset quality, higher earnings, and in 2001 showed profit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risis.** Aggregate capital adequacy levels are close to 11 percent, although shareholders' equity capital remain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otal (non-risk weighted) capital. Liquidity of commercial banks is adequate. Assets reached nearly W 900 trillion at the end of 2002, amounting to about 160 percent of GDP (Tables 2 and 3).

---

[2] Since 1998, banks being restructured were exempted from foreign ownership restrictions in an effort to introduce fresh capital and managerial know-how into the sector.

[3] The Herfindahl-Hirshman index doubled from 0.07 in 1996 to 0.14 in 2001, due to the impact of the restructuring process on the number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banks.

[4] Kookmin, Woori FHC, and Hana and Seoul have a combined share of about 54 percent of the commercial banking sector assets at end-2001.

Table 2. Korea: Selected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for Commercial Banks, 1997-2002(June)

(In trillions of won and in percentage)

	1997	1998	1999	2000	2001	Mar-02	Jun-02
Capital adequacy							
Regulatory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s (BIS ratio)							
All commercial banks	7.0	8.2	10.8	10.8	10.8	10.8	10.6
Nationwide commercial banks	6.7	8.2	10.8	10.5	10.8	10.8	10.5
Regional commercial banks	9.6	8.3	11.4	10.8	10.8	10.5	11.6
Shareholders' Equity as a % of total assets	4.3	3.8	4.8	4.3	4.7	5.0	5.0
Asset quality							
Non-performing loans as a % of total loans 1/	6.0	7.4	8.3	6.6	2.9	2.5	1.9
Substandard or below loans (SBLs) as a % of total loans	--	--	13.6	8.9	3.3	2.9	2.5
SBLs net of provisions as a % of total loans	--	--	8.1	4.5	1.9	1.6	1.4
Provisions for SBLs (tri. won)	--	--	--	16.7	5.7	5.4	4.7
Provisions for SBLs as a % of SBLs	--	--	--	52.1	45.3	46.5	45.3
Provisions for total loans (tn. won)	--	--	--	19.5	9.4	10.1	8.9
Provisions for total loans as a % of SBLs	--	--	--	61.0	74.0	87.0	85.5
Provisions for total loans as a % of SBLs (including S&D banks)		--	--	59.4	76.1	86.2	91.9
Provisions for total loans as a % of NPLs	--	--	--	81.8	85.2	101.4	109.4
Large credit exposure 2/							
Large exposure as a percentage of equity capital	--	--	--	--	51.3	31.2	25.8
Large exposure as a percentage of total credit exposure	--	--	--	--	6.4	3.7	2.9
Credit concentration							
Total loans (in tri. won)	147.9	146.1	184.3	231.9	270.7	296.7	321.8
Of which:							
Share of loans to corporations	63.8	63.6	61.2	56.2	48.7	47.7	46.8
Share of loans to households	20.0	18.3	23.4	28.0	38.4	39.6	40.2
Share of housing loans 3/	13.8	14.0	12.4	11.3	11.1	11.0	11.4
Total credit exposure to Chaebol (tri. won) 4/	--	--	--	57.5	45.7	--	43.8
Total credit exposure to Chaebol % of total loans 4/	--	--	--	24.8	16.9	--	13.6
Earnings and profitability							
Return on assets (pretax net income)	-0.9	-3.3	-1.3	-0.6	0.8	--	--
Return on equity (pretax net income)	-14.2	-52.5	-23.1	-11.9	15.9	--	--
Interest income as a percentage of gross income 5/	63.0	65.7	78.0	68.3	61.1	--	--
Non-interest income as a percentage of gross income	41.5	44.5	31.0	28.8	38.7	--	--
Operating expense as a percentage of gross income	16.0	13.1	14.3	12.2	12.3	--	--
Interest rate margin 6/	2.1	3.8	3.2	2.4	2.9	2.8	2.7
Liquidity							
Liquid assets to total assets 7/	--	19.7	18.1	15.5	11.7	11.0	9.9
Liquid assets to short term liabilities 8/	--	25.2	22.4	19.4	14.5	13.6	12.0
Total loans to deposit ratio	108.7	78.8	70.2	71.9	75.1	79.3	83.8
Turnover ratio in the securities market (in percentage) 9/							
KOSDAQ stock market	16.5	20.4	108.2	1993.8	818.2	135.5	362.7
KOSPI stock market	228.6	139.9	248.0	333.5	192.1	70.6	146.6
Market-based indicators							
Change in stock market index (KOSPI, in percent, e.o.p)	-42.2	49.5	82.8	-50.9	37.5	29.1	-17.1
Change in housing price index (in percent, e.o.p)	2.0	-12.4	3.4	0.4	9.9	17.3	17.1

Sources: FSS/FSC, Bank of Korea, and staff calculations.

1/ Non-performing loans are defined as loans overdue for more than three months plus non-accrual loans.
2/ Large credit exposure is defined as credit exposure larger than ten percent of bank's capital.
3/The loans for housing is the sum of housing loans (to corporations, households, public and others) and loans with National Housing Fund.
4/ Total Credit Exposure to top 30 Large Business Groups.
5/ Gross income is defined as the sum of interest income, non- interest income, and non-operating income.
6/ Spread between reference loan and deposit rates.
7/ Total liquid assets is defined as the sum of cash and check, foreign currency, due from banks, traded securities, call loans and bills bought.
8/ Short term liabilities is defined as the sum of deposits, CDs, due to banks, due to BoK, and borrowings.
9/ Turnover ratio is defined as trading volume divided by market capitalization.

Table 3. Korea: Consolidated Summary Balance Sheet of the Banking Sector, 1999-2002.6 1/

(In trillion won and in percentage)

	1999		2000		2001		Jun-02	
	Amount	Percent	Amount	Percent	Amount	Percent	Amount	Percent
Total Assets	**661.3**	**100.0**	**748.2**	**100.0**	**809.8**	**100.0**	**840.6**	**100.0**
Total Earning Assets	592.6	89.6	669.2	89.4	724.2	89.4	765.5	91.1
Loans (Net)	359.9	54.4	425.5	56.9	465.4	57.5	515.6	61.3
of which: Loans in won	271.9	41.1	333.8	44.6	373.8	46.2	433.0	51.5
Loans to corporations	181.5	27.4	209.6	28.0	207.7	25.7	230.7	27.4
Loans to households	54.9	8.3	79.7	10.7	124.5	15.4	153.9	18.3
Other loans	35.5	5.4	44.5	5.9	41.7	5.1	48.5	5.8
of which: Off-shore loans	10.8	1.6	9.2	1.2	7.2	0.9	5.9	0.7
of which: Foreign currency loans	57.0	8.6	49.7	6.6	38.9	4.8	37.1	4.4
of which: Call loans	3.2	0.5	8.5	1.1	9.2	1.1	5.0	0.6
in Foreign currency	1.4	0.2	5.8	0.8	3.9	0.5	1.9	0.2
Loan Loss Reserves (-)	21.6	3.3	21.1	2.8	13.2	1.6	12.3	1.5
Other Earning Assets	232.7	35.2	243.7	32.6	258.8	32.0	249.9	29.7
Investment and Trading Securities	191.0	28.9	207.0	27.7	235.9	29.1	225.7	26.8
Deposits with Banks	41.7	6.3	36.7	4.9	23.0	2.8	24.2	2.9
of which: in Foreign currency	16.6	2.5	13.1	1.8	5.4	0.7	4.2	0.5
Non-Earning Assets	54.6	8.3	65.0	8.7	71.2	8.8	61.0	7.3
Cash and Due from Banks	18.8	2.8	17.1	2.3	17.1	2.1	11.4	1.4
of which: in Foreign currency	0.6	0.1	0.7	0.1	0.7	0.1	0.8	0.1
Other	35.9	5.4	48.0	6.4	54.1	6.7	49.6	5.9
Fixed Assets	14.1	2.1	13.9	1.9	14.4	1.8	14.2	1.7
Total Liabilities & Equity	**661.3**	**100.0**	**748.2**	**100.0**	**809.8**	**100.0**	**840.6**	**100.0**
Customer and Short Term Funding	486.7	73.6	566.4	75.7	626.9	77.4	657.5	78.2
Deposits	339.9	51.4	425.2	56.8	478.6	59.1	501.7	59.7
of which: in Foreign currency	15.0	2.3	18.2	2.4	20.6	2.5	18.3	2.2
Other Short-term borrowing	146.8	22.2	141.2	18.9	148.2	18.3	155.8	18.5
of which: in Foreign currency	44.3	6.7	40.1	5.4	36.2	4.5	36.2	4.3
Off shore liabilities	10.7	1.6	9.7	1.3	7.8	1.0	6.5	0.8
Call money	7.2	1.1	4.6	0.6	6.5	0.8	5.1	0.6
of which: in Foreign currency	1.4	0.2	1.4	0.2	0.9	0.1	1.5	0.2
Other Funding	94.1	14.2	85.7	11.5	84.3	10.4	85.7	10.2
Bonds and Notes	65.9	10.0	68.8	9.2	70.7	8.7	78.4	9.3
Trust A/c Funds	9.4	1.4	7.1	0.9	11.7	1.4	6.2	0.7
Borrowing from the BOK in foreign currency	18.8	2.8	9.8	1.3	2.0	0.2	1.1	0.1
Other (Non-Interest bearing)	42.1	6.4	60.7	8.1	57.3	7.1	52.4	6.2
Other Reserves	5.7	0.9	5.4	0.7	2.1	0.3	2.2	0.3
Allowances for acceptances and guarantees	1.8	0.3	1.6	0.2	0.8	0.1	0.4	0.0
Equity	32.8	5.0	30.0	4.0	39.1	4.8	42.8	5.1
Major Off Balance Sheet Items	Amount	Percent of capital 4/	Amount	Percent of capital 4/	Amount	Percent of capital 4/	Amount	Percent of capital 4/
Acceptances and guarantees outstanding 2/	45.7	116.8	47.3	105.7	41.9	65.5	40.4	59.0
Acceptances and guarantees 2/	21.9	56.0	26.0	58.3	24.7	38.6	27.0	39.5
Derivative contracts	128.8	329.1	126.2	282.4	165.6	258.9	240.1	351.1
Contracts on interest rates	55.7	142.4	50.5	113.0	74.4	116.4	123.6	180.7
Contracts on currency 3/	73.1	186.7	75.7	169.3	91.1	142.5	115.8	169.4
Receivable charge-offs	10.2	26.0	17.5	39.2	22.3	34.9	21.6	31.6
Loans sold under repurchase agreements	6.3	16.0	5.5	12.3	5.6	8.7	4.7	6.9
Total	212.9	544.0	222.5	497.9	260.1	406.7	333.8	488.1

Source: FSS, Monthly Financial Statistics Bulletin and IMF staff calculations.

1/ Includes commercial banks and specialized banks and covers only the banking accounts.

2/ Acceptances and guarantees outstanding were moved from on-balance sheet items to off-balance sheet items from 1999.

3/ Unpaid spot exchanges were removed from off-balance items from March 2000.

4/ Capital is defined as sum of Tier I and Tier II capital.

Nonbank deposit taking financial institutions

19. **Nonbank deposit taking institutions hold more than one quarter of the assets of the total deposit taking system, or about 15 percent of total financial sector assets.** The sector is diverse, including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mutual savings banks, a postal savings bank, credit unions, mutual credit facilities a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Each type of institution is specialized, and all have important limitations on their business activities.

20. **Strength varies across types of institutions, but there remain concerns about weaknesses in the sector.** Most notable are credit unions, which sustained aggregate net losses of W 6.6 billion in 2001: 15.2 percent were insolvent as of end-June 2002. Provisioning is low, and 22 percent of these institutions have been closed since 1999. The federation of credit unions (which assists in their oversight) has also reported significant losses in reserves due to low-yielding assets. Other institutions, most notably mutual savings banks, posted a decline in NPLs, even though weaknesses in different areas remain. The FSC/FSS recently suspended operations of 122 credit unions, of which 100 have been closed. In addition, improvements in supervision over the sector have been implemented.

Securities and fund management industry

21. **Three modern exchanges operate in Korea, trading equities and a wide range of securities and derivative instruments.** Foreign and individual retail investors participate heavily in these markets, which exhibit comparatively high volatilities in returns. There is a lack of actively trading institutional investors, as private pension plans are still rare. Among instruments traded, derivatives have grown the fastest.

22. **Korea's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sector represents about 63 percent of GDP.**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clude more than 260 institutions but are dominated by the ITC sector, which includes 31 funds managers managing W 165 trillion assets (29 percent of GDP) and 19 trust accounts of banks which manage about W 130 trillion (about 23 percent of GDP). Sixty securities firms manage assets of about W 50 trillion (about 9 percent of GDP).[5] Some corporate-style investment funds were introduced in 1998, but have not been very successful. Foreign participation in ten investment trust companies, mostly through minority shares, has gradually increased to 19 percent of assets. Given concerns about the soundness of the fund management industry, investors prefer to establish their own funds and roll over investments annually.[6]

[5] This compares, for example, to 85 percent in Australia and more than 160 percent in Singapore.

[6] This explains the presence of 5,700 funds and the allocation of 46 percent of assets into money market funds.

Insurance sector

23. **Korea's insurance market is large in world and regional terms, ranking seventh by premium behind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Italy**. Gross premiums as a percentage of GDP, commonly referred to as "insurance penetration," stood at 13.1 percent, the third highest in the world after South Africa and the United Kingdom. Life insurance makes up the largest segment of the market, with 22 companies in operation. The sector was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crisis and the subsequent economic conditions, which exposed past product weaknesses, poor quality assets, and management focused largely on growth.[7]

24. **Notwithstanding improvements in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surance companies currently face important financial challenges**. Most companies have issued contracts with guaranteed rates of return above current market levels, and therefore depend on capital appreciation and other underwriting profits to overcome the losses arising from outstanding contracts still in force. Companies also carry a very substantial mismatch risk between assets and liabilities as a result of this business line. Existing business continues to be written with relatively strong guarantees, although at lower rates than in the past.

25. **The non-life insurance sector has been stable over the last 15 years**. The combined ratios for the 19 companies in the sector indicate marginal but improving profitability. Non-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faced less serious asset liability mismatch issues than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Pension sector

26. **The emergence of the pension sector is a recent development in Korea**. It is widely expected to require reforms to properly serve the population in a demographically ageing environment.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are expected to emerge through reform of the current retirement allowance system, although the precise form of the new arrangements is undecided.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cheme which holds assets amounting to 15 percent of GDP is facing its own challenges as it attempts to achieve actuarial balance. These pressures arise from benefits accruing at a rate and value in excess of current contributions and an imperative to recover much of the intergenerational subsidy built into the scheme owing to lower past contributions. A small but growing tax-favored voluntary pension sector has emerged over the last five years.

C. Market Infrastructure

Money and bond markets

27. **Money and bond markets remain partially fragmented and, at least in certain maturities and instruments, insufficiently deep**. Unlike comparable markets, there is no core "interbank" market, which would be more efficient in terms of liquidity redistribution.

[7] The number of companies in the market had increased rapidly until the crisis, jumping to 33 from eight in just ten years.

Instead, the call money market encompasses more than 600 financial and non-financial institutions that can also participate in the repo market. While the market is liquid for maturities below 90 days, liquidity dries up quickly beyond that maturity given the difficulties of pricing such deals in the absence of a suitable yield curve. The BOK conducts repo operations, using its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MSBs) of different maturities.

28. **The bond market encompasses corporate and government bonds of different maturities.** The government bond sector includes a range of different instruments, including bonds issu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KAMCO and KDIC bonds), Exchange Stabilization Bonds, National Housing Bonds and MSBs. There have also been small issuances of 10-year treasury bonds. The multiplicity of instruments, the absence of a short term benchmark government bond (issued at regular intervals) and the insufficient volume of ten-year government bonds all constrain the market's ability to price risk, and hinder the further development of money and bond markets. The market for corporate bonds is deep but not particularly active, especially relative to its potential.

Foreign exchange market

29. **The trading volume in Korea's foreign exchange market has grown significantly since the crisis, when shallowness was a concern.**[8] Trading grew due to the two-stage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program that started in April 1999, and the accompanying increase in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portfolio investments. Exchange markets also grew as a result of increases in exports and imports. There has been a notable jump in foreign exchange forward and swap transaction volumes since 1999 following the removal of the *bona-fide* (real demand) principle in the use of foreign exchange forward and derivative transactions, and the authorization for onshore financial institutions to transact in offshore non-deliverable forward contracts (NDF).[9] Some of the increase in foreign exchange derivative activities reflects increasing hedging activities.

30. **Notwithstanding the sharper increase in foreign exchange forward and swap transactions, spot trading still dominates, because of various restriction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10] In addition, Korea's foreign exchange market is more end-user-and domestically-oriented, with cross-border transactions accounting for about a quarter of total foreign exchange volume in 2001, compared with about 70 percent in the comparator

---

[8] Turnover compares favorably with that in many Asian emerging market economies although it still lags behind that of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Hong Kong SAR, and Singapore.

[9] Korean data on foreign exchange forward volume includes NDF.

[10] Close to two-thirds of total trade volumes are spot, compared with less than one-third in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Hong Kong SAR, and Singapore. Possible reasons for this include restrictions on won-funding of nonresidents activities,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nvolving delivery of won, and monitor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which constrain the growth of onshore forward and spot markets.

countries. The authorities plan to further liberalize the capital account in three phases over the period 2002–11 and to implement measures to broaden and deepe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D. Regulation, Supervision, and Compliance with Standards and Codes

31. **To improve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the authorities reorganized the sector's regulatory agencies in 1998.** The FSC was created to oversee regulation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s. It is a statutorily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under the general authority of the President who appoints its nine-member Board.

32. **The FSC is responsible for policy formulation for the financial markets and is the supervisory and regulatory authority for all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e agency's powers include the authority to issue and revoke licens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activities of and setting policy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d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The FSS is the executive arm of the FSC. MOFE is required to consult with FSC on all proposed legislation pertaining to financial markets that it submits to Parliament. MOFE, the BOK, an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continue to have some involvement in the policymaking, examination, and supervisory process for the financial sector. As a result of the crisis, FSC was also given some responsibilities for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33. **Korea broadly observe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across all segments of the financial industry but full implementation is still in progress.** The legal framework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ervision is well established in a number of laws.[11] The main findings of the standards assessments are summarized in Box 1.

III. Short-Term Vulnerabilities

34. **This chapter discusses the extent to which the balance sheet exposures of the Korean financial sector alone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structural weakness could imply short-term vulnerabilities.** Korea's banking sector seems broadly resilient to isolated macroeconomic shocks of a plausible size based on the experience over the last five years. However, a combination of shocks could be problematic to at least some institutions. Stress tests for the insurance sector yield more worrisome results, showing that some companies could suffer unsustainable losses even from moderate changes in interest rates and stock prices. In addition to those quantifiable risks, the chapter also discusses structural risks—

[11] This includes the Banking Act (BA), the Bank of Korea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AEFSO),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SIFI),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Civil Code, the Bankruptcy Act,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he Act on the Insurance Business and their associated enforcement decrees, implementing regulations and rules.

Box 1.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Observance of Ke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The FSAP team conducted assessments of Korea's observance of the following ke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 The review of the **Basel Core Principles (BCP), IAIS,** and **IOSCO** shows that the FSC/FSS, the unified supervisory agency, is a competent regulator. Assessors felt though that the supervisory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should be reviewed to strengthen the supervisor's independence, including its ability to provide authoritative guidance and interpretation. Legal protection of supervisors should be strengthened.

- **Basel Core Principles**. There is a high degree of compliance with best international supervisory practices in banking supervision. Measures needed to further strengthen compliance with the BCP would include: (i) increasing staffing in key areas: this will also help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new supervisory tasks related to off-balance sheet activities, Basel II, and AML; (ii) paying greater attention to differing risk levels when setting minimum capital levels; (iii) broadening the coverage of fit and proper criteria; and (iv) giving more attention to qualitative criteria in supervision.

- **IAIS**. There is also a high degree of compliance with the IAIS. Measures initiated to strengthen the insurance sector go in the right direction but may need to go further. In particular the new capital requirements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even when fully phased-in may not be adequate given Korea's structural and financial framework. In addition, a withdrawal of the government from direct insurance business, facilitating the listing of insurance companies on the stock exchange, further price and product liberalization and further deepening of the capital markets would all help to further strengthen the insurance sector.

- **IOSCO**. Korea has achieved significant observance of the IOSCO principles, but some critical issues remain. They include: (i) the need to improve regulatory transparency, (ii) in the volatile market framework, regulators should require more frequent calculation and reporting of capital requirements, and (iii) extended enforcement of prudential rules could increase market confidence.

- **CPSIPS**. BOK-Wire, Korea's RTGS payment system, is efficient and compliant with all CPSIPS principles, but the BOK's role in the payments system should be explicitly set out in the legislation, and accompanying legislative powers should also be introduced. In addition, the check system remains important, including in OTC settlement. The BOK is aware of the systemic risks implied in the use of checks for large value payments. However, there are efforts to encourage a broadening of the use of BOK-Wire for large transfers, especially for payments related to OTC trades. It appears though that there are some significant obstacles, including the (t+0) settlement practice in debt securities trade. Other important obstacles to reducing the role of checks are related to the widespread use of cashiers' checks as a substitute for cash, encouraged further by the low value of the largest denomination bill.

- **Code of Good Practices in the Transparency of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All assesse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practice a high degree of transparency. The practice could be improved through better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s, wider consultation on technical changes to regulations and better disclosure of internal governance procedures.

-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rules are close to those in other OECD countries, but actual practice remains an issue. Effort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business practices and ensure adequate disclosure for chaebols.

- **AML/CFT**. Korea has put in plac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necessary for an effective framework for anti-money laundering (AML)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but more focus needs to be given to implementation. To make the framework operational, more staff resources should be devoted to th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The FSS/FSC should fully exercise its mandate in this area, avoiding the need to build up a parallel structure within the KoFIU.

including the exposure of banks to off-balance sheet risks, weaknesses in the securities and ITC sectors, and recent capital losses in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e latter risks deserve careful monitoring, as they could cause serious problems in the financial sector, even in the short-run.

A. Exposures of the Banking Sector

35. **Short-term risks may arise from the direct effect of shocks to interest and exchange rates on bank balance sheets, and from indirect effects through corporate and household balance sheets, and from off-balance sheet items.** This risk may be sizeable as bank lending remains a principal source of corporate financing, and, going forward, the quality of household credit is also likely to suffer. Given the recently rising level of household debt, increases in interest and exchange rates could significantly undermine household debt servicing capacity. Loans to households grew at an annualized rate of 34 percent in the first half of 2002, and, starting from low levels, total household debt has now reached average G-7 levels, but with a lower share of mortgages. Off-balance sheet exposures of banks have also been growing rapidly in the past two years.[12]

36. **In examining vulnerabilities, the guiding rod has been the size of shocks experienced since 1998, which are smaller than those experienced during the crisis.** This approach was chosen for two reasons: (i) Shocks of the magnitude experienced in 1997–98 would most likely lead to structural breaks in the relationships underlying the stress tests. The results based on models estimated in calmer times may therefore not be able to give adequate quantitative guidance for what would happen in a crisis situation. (ii) Since the crisis, Korea has put in place safeguards that would make a reoccurrence of shocks of the 1997–98 magnitude very unlikely.

Bank exposure to interest and exchange rate shocks

37. **Banks appear resilient to the direct effects of interest and exchange rate shocks on the balance sheet items considered in the tests, mainly because of the absence of large currency and maturity mismatches.** Present Basel capital ratios show little change in the face of a modest increase in interest rates (a permanent rise in interest rates by two percentage points), and virtually no change in the face of either a temporary or a permanent depreciation of the exchange rate (of 20 percent, in the temporary case reversed after one year).

---

[12] Due to data limitations, stress tests conducted for this report measure impacts on on-balance sheet items only, discussed in detail as part of the follow-up technical assistance mission, which showed that most domestic banks have matched positions. Banks are conducting regular value-at-risk (VaR) exercises for market risks for all exposures, including derivatives. In light of potential future growth, the FSS will need to be vigilant in evaluating these exercises.

Exposure to the corporate sector

38. **Exposure to interest rate risk and earnings risk are the main source of vulnerabilities for the corporate sector, despite historically low interest rates and strong growth in the economy**. Given the reduced direct foreign borrowing of corporations and the increase inhedging, the corporate sector appears less sensitive to foreign exchange rate risk than at the time of the crisis. However, many companies appear not to hedge consistently. Moreover, given the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hedges available in the Korean market, even those that do hedge may face risks. Stress tests suggest that a deterioration in corporate sector balance sheets from higher interest rates or lower operating income would worsen the quality of bank credits. As a result, capital ratios of banks would decline by less than one percentage point for the banking system as a whole, although for individual banks the fall could be higher. Given the still comfortable levels of capital, the banking system is therefore likely to be able to absorb each of these shocks individually. However, if a series of simultaneous shocks were to occur together, the potential impact on individual banks could bring capital ratios under pressure for some of the smaller, less well-capitalized institutions.

Exposure to the household sector

39. **Stress tests were also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s of changes in interest rates on the household debt burden and the implied feedback effects on nonperforming loans and on capital ratios**. From the baseline, three variations of the shocks are presented. The first allows for no reaction from interest rates. The second treats the shock as a demand shock, and allows for a 150 basis point reduction in interest rates. The third treats the shock as a supply shock, requiring a 50 basis point increase in interest rates.

40. **Stress tests for household credit indicate that the shocks used could generate very small loan defaults if they are demand shocks, but defaults as large as 8–9 percent of household credit outstanding if they are supply shocks**. The Basel capital ratio of the banking sector could decline by around 1.5 percentage points. The results of the stress test show that the banking system as a whole could be at risk of possible capital losses from their exposures to households. The risk is accentuated by the higher credit risk of new lending, and by the fact that the particular loan structure of most household loans (three-year bullet loans with only interest due in the interim) is likely to lead to an understatement of problem loans in the household sector. Against this background, added vigilance is necessary and the measures announced by the authorities in October 2002 to curb the growth in household lending are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There has also been some active provisioning against such risks.

B. Exposure of Insurance Companies to Macroeconomic Shocks

41. **The insurance sector suffers from weaknesses that might endanger its own financial standing and the wider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ector.** The life insurance sector carries considerable mismatch risk. Industry participants advised that the mean term of their liabilities is of the order of seven years and the mean term of their assets is, at best, three years. In such a situation, falls in interest rates will be unfavorable to the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are also invested in equity markets, linking their solvency

Table 4. Balance Sheet Sensitivity of Korean Banks, June 2002

(In percent of risk weighted capital)

	Average for all Banks	Largest Increase	Largest Decrease
Commercial Banks			
Initial Basel Capital Ratio 1/	10.6	-	-
After Interest Rate Shock 2/	9.4	0.0	- 2.1
After Exchange Rate Shock 3/	10.7	0.2	- 0.4
After Open Foreign Exchange Position Shock 4/	10.6	0.0	0.1
After Foreign Interest Rate Shock 5/	10.6	0.0	0.1
Specialized Banks			
Initial Basel Capital Ratio 1/	13.8	-	-
After Interest Rate Shock 2/	12.9	0.0	- 1.9
After Exchange Rate Shock 3/	13.9	0.3	0.0
After Open Foreign Exchange Position Shock 4/	13.8	0.0	- 0.1
After Foreign Interest Rate Shock 5/	13.9	0.3	0.0

Sources: Staff estimates.

1/ Basel capital ratio: Defined as Tier 1 plus Tier 2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s, at end-June 2002.
2/ Interest rate shock: A 2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domestic interest rates.
3/ Exchange rate shock: A 20 percent increase in the won value of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assets and liabilities, reversed after one year.
4/ Open foreign exchange position shock: A depreciation of the won against currencies composing the open position in the amount of the mean depreciation over 1997–2002 plus two standard deviations of the series.
5/ Foreign interest rate shock: A 2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foreign interest rates.

to equity price moves. Finally, insurance companies are allowed to invest up to 20 percent of their assets abroad.

42. **Stress tests for the insurance industry suggest that the insurance sector could suffer from changes in interest rates, stock or foreign exchange values.** As a result, for the life sector in particular, the risk of a repeat of the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some ways remains material. In contrast, based on an analysis of its balance sheets, the non-life sector is better placed with a stronger valuation basis for liabilities, more closely matched assets and liabilities, and excess capital generally sufficient to enable it to cope with foreseeable adversity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 continued strengthening of the operating framework for life insurance will be critical to reduce the sector's vulnerability.

Table 5. Impact of Macroeconomic Shocks on the Corporate Sector and Implied Effects on Banking Sector 2001 Base

	Interest Rate Shock	Exchange Rate Shock	Earnings Shock
Direct Impact on the Corporate Sector			
Change in Uncovered Borrowing Ratio (UBR)	6.0	5.4	8.7
Change in Uncovered Bank Borrowings Ratio	8.2	6.1	11.1
Uncovered Bond Ratio	3.4	6.5	6.0
Indirect Effect on Banking Sector			
Increase in Bank SDL ratios	0.5–1.9	0.3–1.4	0.7–2.6
Reduction in Bank Basel Capital Ratios	0.2–0.7	0.1–0.5	0.3–1.0

Source: Staff estimates.

Notes:
-Interest rate shock: 2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call rate and 1.24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3Y bond yield.
-Exchange rate shock: 20 percent decline in the net gain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and translations.
-Earnings shock: 20 percent decrease in operating income.
-Uncovered Borrowing Ratio (UBR) is the proportion of total industry debt for which the interest coverage ratio (ICR ≡ EBITDA to interest expenses) is less than 0.75. A threshold of 0.75 was used instead of the standard cutoff of 1.0, since some Korean firms earn substantial interest income, and the threshold of 0.75 had greater explanatory power for describing corporate performance.
-Bank SDL ratio: The impact on the ratio of substandard, doubtful, and loss loans to total loans is calculated based on cross-sectional regression for 30 industry categories (for lower bound) and a regression of the total SDL ratio with the uncovered bank borrowings ratio (for upper bound).

C. Other Short-Term Risks

43. **In addition to the directly quantifiable risks discussed above, parts of Korea's financial sector can—even in short-term—suffer significant losses from structural weaknesse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areas would need to be highlighted:

- **Derivatives.** The Korean derivatives market was established only in 1996 but has since grown very rapidly.[13] Benefits include improved price formation, larger market liquidity, and more hedging possibilities. While the nature of instruments used and the level of exposures do not indicate at present any systemic risk, continued, rapid growth and prevailing market practices have raised concerns about additional risks for institutions that are engaging in this market (Box 2). While market participants have put in place reasonable risk management systems, the extent to which these have been sufficiently adapted to the Korean markets remains an issue. The need to supervise the rapidly growing area of derivatives and to adapt to the increasing level of sophistication is

[13] The overall level of derivatives activities remains below OECD average. However, KSE was the single largest derivatives exchange in the world by number of traded contracts in 2001, even though contract size is smaller than in other markets.

Box 2. Main Features of Korea's Derivative Markets

Korean derivatives markets have grown rapidly but their overall size remains below OECD average. Notional volumes in Korean over-the-counter (OTC) derivative markets have tripled from December 2000 to September 2002 to reach KrW 756 trillion (130 percent of GDP). Growth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ETD) was even faster. Trading volumes in ETD instruments in the frist half of 2002 exceeded KrW 1100 trillion, equally shared between equity and interest risk derivatives. Korean equity derivatives are now the largest in the world by number of contracts and rank among the top five by trading value. Retail investors account for 48 percent and securities firms for thirty eight percent of trading in equity derivatives markets.

The main features of OTC and ETD markets are as follows: The market for OTC derivative instruments in Korea is mainly made up of interest rate swaps in Korean won (KrW), cross-currency swaps and to a smaller extent, currency options, and credit derivatives. ETDs in Korea consist mainly of stock index (KOSPI 200) futures and options which are trad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KSE), and Korea Treasury Bond (KTB) futures and won/dollar futures which are traded in the Korea Futures Exchange (KOFEX). Trading is about four times of cash markets, and turnover is three times in equity and six times in bond markets.[15] The average number of daily KTB futures transactions rose from 6,300 in 2000 to 37,900 in 2001. Over the same period equity derivatives transactions increased by over eighty percent in trading volume.

Korea's derivative markets may be subject to specific risks but efforts toward risk management are well advanced. Large differences among individual banks and risk factors specific to emerging nature of the Korean derivative markets indicate that overall risks might be higher than OECD averages. Aggregate credit exposures of Korean banks' derivatives business are three percent of notional amounts as compared to one percent BIS average and 1.4 percent for Japanese banks. This could be due to structural differences in the portfolio composition of derivatives that point to Korean derivatives having a greater net market value sensitivity to changes in market parameters (such as exchange and interest rates), or higher net exposures because of differences in portfolio netting characteristics. Also Korea has a large share of (generally more volatile) currency derivatives that account for 38 percent of total outstanding notional amounts as compared to a BIS average of 14 percent, although currency forwards (that typically have maturities less than a year, and less exposure implications compared to longer-term currency swaps) account for a relatively large 22 percent share in Korea. Market participants have put in place reasonable risk management systems and are in the process of adapting them to the Korean market environment. Most OTC deals are undertaken based on ISDA master agreements and the authorities are undertaking efforts to clarify the legal validity of close-out netting to increase the current low level of reported net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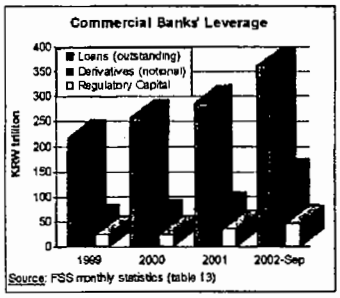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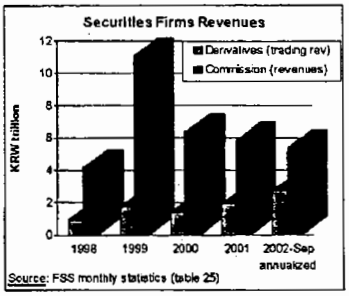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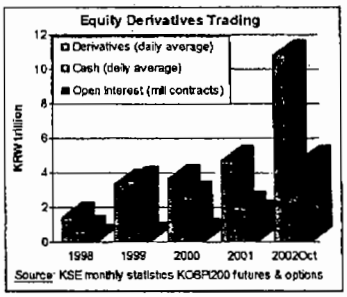

[1] There are five companies with listed options on the exchange.

Table 6. Impact of Macroeconomic Shocks on Household Credit

	Baseline 2002 Est. (Percent)	No Policy Reaction	Demand Shock 1/	Supply Shock 2/
		(Change in percent/percentage points)		
Shock				
Disposable income	...	-5.0	-3.5	-5.8
Policy reaction				
BOK target call rate	...	0.0	-1.5	0.5
Interest payments to income 3/	11.1	0.6	-0.3	0.9
Debt to income	115.0	6.1	4.2	7.0
Nominal effective interest rate 4/	9.6	0.0	-0.6	0.2
Estimates based on Norges Bank Model				
Delinquent loans/ household credit	1.2	6.2	0.0	8.7
BIS capital adequacy ratio 5/	10.6	-1.0	0.0	-1.5

1/ Assuming a reduction in BOK target call rate of 150 basis points to moderate growth reduction.
2/ Assuming a rise in BOK target call rate of 50 basis points to prevent inflation rising.
3/ Financial liabilities of the individual sector are projected to rise 30 percent, and disposable income by 7 percent compared with 2001, and the effective interest rate is assumed to fall by 50 basis points.
4/ The effective interest rate is estimated to respond with an elasticity of 0.4 to changes in the policy rate after two years.
5/ Assuming 1/3 of non-performing household loans are charged off against capital.

straining the FSS' scarce resources. Current low levels of close-out netting—a key instrument to reduce counterparty risk—are likely to increase following the authorities' efforts to clarify the legal basis.

- **Yen "carry trade."** Interest rate differentials between yen and won and a degree of exchange rate stability have induced increased interest in yen borrowing. The FSS has taken important steps to ensure that banks adequately moniotr implied credit risk and promote hedging. The authorities will also need to be mindful of the possible risks that might arise from short-term borrowing abroad by the corporate sector.

- **Securities firms.** The securities sector, which accounts for slightly more than 3 percent of financial sector assets, is structurually weak. Capital levels of some companies are low and securities firms appear pressured by declining brokerage income. In this environment, they take mostly similar leveraged positions, in part due to high usage of "program-guided trading." Systemic risks could arise if the rapid growth of leverage continued amid high volatility, and if leading securities firms were to become dominant players, with all institutions having high risk exposures of a similar type. The authorities' recent decision to extend OTC derivative trading to only three well capitalized securities firms is a first step in the necessary process of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ver the sector.

- **Supervisory challenges**: While adequate in most places, some areas in the prudential oversight process seem stretched which could leave important risks undetected. Examples include the FSS's apparent difficulties in monitoring off-balance sheet exposures, which

have grown rapidly in the recent past. Insufficient information is available on connected lending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which were a major problem at the time of the crisis. Other issues include instances of late or incomplete availability of core supervisory data.

- **Residual risks from asset-backed securities (ABS).** A significant amount of NPLs in Korean banks' balance sheets have been securitized using ABS issues, some of which included credit enhancements provided by banks in case the security performed worse than expected. Appropriate disclosure and supervisory vigilance on the valuation and provisioning practices in the ABS market will be needed to monitor remaining bank exposures.

- **The weaknesses in the non-bank deposit taking financial sector are of concern.** While neither individually nor as a group systemically important, an eventual open crisis in that sector might nevertheless tarnish the reput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 **Weak ITCs.** Public awareness of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negative capital ratios of some large ITC companies are increasing. The main danger could lie in the loss of market confidence and, additionally, possible contagion to other segments of the financial market, in particular since the securities sector as a whole remains weak.

- **Delays in completing corporate restructuring.** Despite the progress made, corporate restructuring has fail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about a quarter of the corporations, many of which have negative cash flow, are unprofitable and overleveraged, and are likely to fail. While those potential failures are probably smaller than the Daewoo and Hynix cases, they could be substantial in the aggregate, unsettle capital markets, and increase credit losses in financial institutions. The FSS mandated semi-annual review of "potentially ailing" companies based on EBIT/interest rate criteria needs to be implemented rigorously to further improve provisioning and to avoid "evergreening" and speed up restructuring.

IV. Medium-Term and Structural Issues

44. **The medium-term challenge for Korea's financial sector is to deepen markets, while ensuring that the supervisory and regulatory framework is capable of addressing any associated risks.** This section highlights the main areas that might need attention. In the legal and regulatory area there are important challenges such as ensuring the full independence of the regulator and providing a more efficient and predictable framework for insolvency. Medium-term financial stability will also require addressing structural soundness problems especially in the insurance and securities sectors. Furthermore, impediments to market development are an issue of concern. The further deepening of money, foreign exchange and bond markets all appear closely linked to supportive government debt management practices. Finally,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will enhance investor confidence—critical to all other areas discussed.

A. Financial Sector Supervision and Regulation

45. **The FSC/FSS/SFC have established a track record of issuing rules and regulations, which have generally been appropriate and timely, but concerns about some aspects of the regulatory process remain.** In particular, market participants have question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uch regulations, the opaque way in which some of them have been introduced, their interpretation, and the fact that prudential regulators lack the unfettered right to issue new regulations when they perceive a need to do so. There is also a perception in the market that violations of applicable regulations are often overlooked or weakly sanctioned. Weak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r inadequate sanctions for violations undermine the integrity of the regulatory process and encourages further inefficient and inappropriate market behavior.

46. **Given the scope and power of the FSC/FSS/SFC, their independence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Although embodied in the law, in practice independence has been called into question. Concerns arise because of the role taken by MOFE in interpreting laws and supervisory regulations, giving FSC/FSS/SFC only limited freedom in implementing supervision. In addition, the rapid turnover of the FSC chairman (who also is the governor of the FSS) and the policy where FSC staff would sometimes be moving to and from MOFE has a potential to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supervisory independence.

47. **Supervisory effectiveness may also be hampered by the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 for FSC/FSS/SFC staff against lawsuits for supervisory actions.** While there are to date no reported difficulties, this could become an issue as Korea integrates more into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participants become less bound by traditional Korean legal customs and procedures.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for supervisory staff would help to ensure that fear of retribution does not constrain supervisors when exercising their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48. **The FSC was also given, in addition to its role as regulator, responsibility for overseeing the restructuring in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it has been put in a position of having to compromise on occasion with what might be appropriate from a purely prudential perspective. Whatever the merits of this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at the time,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should now be carried forward by the private sector or in the case of government-owned entities by the agency holding the shares.

49. **The FSC/FSS/SFC appear to have sufficient well-trained staff to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but there are indications of shortages of expertise in a few key areas.** Additionally, there are some concerns about the ability of the supervisor to maintain the technical capacity of staff through ongoing recruitment and training in an increasingly complex and competitive financial system. This situation also reflects a national shortage of key professionals. Some efforts are under way to reduce these shortages over time, and other efforts might be considered.

50. **Some market participants have voiced concern that prudential supervision is not applied equally, and that there is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supervisor in day-to-day management.** Market participants also note that the complex regulatory framework makes

full compliance with all requirements impossible, leaving them exposed to inconsistent application of fines and retribution. The authorities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to make the sanctions process open and transparent, and be mindful of the need to avoid perceptions of unequal treatment and of unjustified retribution.

B. Legal Infrastructure

51. **Korea has established a sound and respected judiciary and judicial system.** Judges are well regarded and considered competent and impartial. In the area of commercial disputes including insolvency, the authorities have strengthened the ability of the courts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Court procedures have been streamlined, although further reforms would help to overcome some concerns regarding perceived delays in the court system, the ability of a creditor to issue attachment proceedings on an *ex parte* basis, and the relatively unfettered right of any party to appeal or to seek adjournments.

52. **The scope and pace of legislative reform following the 1997–98 financial crisis has been extraordinary.** New laws dealing with particular aspects of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and other specialized areas of financial sector reform have been introduced and new institutions were created. Several of these laws have been amended, reflecting the authorities' readiness to fill identified gaps in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However, the framework in place is, in certain areas, complex and has resulted in some overlapping responsibility and uncertainty as to lines of authority—particularly in relation to regulatory supervision—and in some tension between regulatory bodies.

53. **The legal framework for secured transactions is generally sound.** Company,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registers work well and debt enforcement mechanisms are relatively straightforward.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for non-possessory pledges such as the right to secure inventory and accounts receivable. The introduction of such rights together wit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ecured transactions regime as an alternative to insolvency should be considered.

54. **A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proposals for insolvency reform confirms that the authoritie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However, the delay in adopting this reform is unfortunate. The adoption of a single unitary law which also addresses consumer rehabilitation and cross border insolvency would be a welcome development. However, an improved legal framework is desirable but not sufficient. Of perhaps even greater importance will be the attitude that creditors take to the new regime and whether they will use it effectively to restructure weak companies and promote solid corporate financial health.

C. Sectoral Issues

Banking sector

55. **The government has made encouraging strides to return banks under its control to private ownership.** It has found creative ways to place parts of Woori and Chohung in the market and make a number of contingent sales. However, the process remains to be completed. The merger of Hana Bank with Seoul Bank has left the government with a 31 percent equity stake in the merged bank, which accounts for 12 percent of banking sector

assets. In addition to selling this stake, the sales of Woori, Chohung and minority stakes in KEB, KFB, and Kookmin Bank are still pending. Full divestiture would eliminat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rising from the government's role of both regulator and owner of banks.

56. **As part of its restructuring policy, banking concentration was actively pursued by the government since 2000.** These efforts helped increase efficiency and reduced the number of non-viable banks in the system. However, against the background of a now profitable sector, the market, rather than the government, seems better placed to determine the structure of the banking system over time. Despite the increased concentration in the sector, competition in both deposit and loan markets remain healthy.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policy should remain important concerns for the authorities, but they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allows for innovation.

57. **Special privileges granted to some 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undermine market competition**. For instance the IBK, the KDB, and the banking sections of the National Agriculture Credit Federation (NACF) and National Forestry and Fisheries Corporation (NFFC) carry out operations typical of commercial banks, such as deposit taking, lending, trust business, and credit card operations. They enjoy benefits that include some combination of low cost funding through government guarantees, borrowing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BOK, as well as preferential treatment regarding some prudential ratios, such as liquidity. The IBK is a main competitor in its SME lending business with many mid-sized commercial banks who do not share the same funding and guarantee privileg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level the playing field by phasing out any privileges that differentiate across financial institutions.

Insurance and pensions

58. **The principal concern for the insurance sector is the capitalization of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The industry is, at best, marginally capable of meeting the current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once they are fully phased in. A more robust valuation of liabilities, exclusion of double counting of regulatory capital in subsidiaries, and an additional margin for the substantial market risk arising from the asset liability mismatch and exposure to equities would place many companies in a marginal situation. Many of them will have access to capital from their parent, and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regime should require the allocation of this capital to the life insurance business. Others may need closer supervisory intervention. The prudential status of companies would also be enhanced if the impediments to listing were overcome.

59. **The role of the Korean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IDI) raises some concerns.** While useful in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sector, the extent of the continuing role in, for example, product development and approval may discourage individual company innovation and company development of in-house technical expertise. The procedures and basis for decisions within the KIDI are not transparent to industry participants The functions and operations of the KIDI should be refined and refocused to enhance their transparency and flexibility, in concert with a system that further encourages companies to develop advanced risk management systems.

60. **The government is involved in the insurance sector through its continuing part ownership of Korea Life via the KDIC, and the operations of the 'quasi-insurance' sector.**[14] The marked lack of transparency in the "quasi-insurance" sector operations contributes to suspicion from the commercial sector. More transparency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stated public benefit objectives of the "quasi-insurance sector" and facilitate a more soundly based consideration of the merits of its continued operation in its present form.

61. **Pension reform is recognized as necessary given the aging of Korea's population and the general level of funding of the current arrangements**. The authorities are to be commended for the priority they have attached to these initiatives to date and should continue these efforts, both in terms of the proposals for an occupational pension system in the private sector and for the continued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role and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an occupational pension system will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well considered regulatory and supervisory regime. The effort needed to achieve such a regim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62. **Regulators should devote close attention to the introduction of bancassurance**. Early attention will need to be given to the potential existence of capital and other regulatory arbitrage and differential taxation treatment of product providers. This would ensure that any refinements can be made whilst transitional issues are at a minimum.

Fund management and securities

63. **Securities markets are characterized by high retail participation and significant trading by securities firms on their own account**. In contrast, sizeable actively trading institutional investors are all but absent. This market structure has contributed to high volatility in equity markets and rapid growth in speculative derivates trading. There are also weaknesses in the investment trust industry, where some companies have negative capital.

64. **Higher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s security markets would greatly benefit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at market.** Such investors promote long-term savings, enhance productivity and innovation, emphasize trust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often become strategic investors. Although Korea has introduced a variety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cluding bank trust accounts, investment trust and management companies, investment advisory firms, corporate-style mutual funds, and contractual savings) the fund management industry has not yet been able to rebuild investor trust. Industry experts suggest that the form of investment trusts (ITC) is suitable for Korean markets, but that corporate governance must be enhanced emphasizing independence, both

[14] Fifty-one percent of Korea Life have been sold in October 2001.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Life Insurance and the Postal Life Insurance operations together account for 16.5 percent of new business by policies and premium, 23.5 percent of in force premium income, and 18.8 percent of total sector assets.

from government and corporate or sell-side pressures.[15] Moreover, the market requires substantial consolidation. In addition, new legislation on fund management should emphasize market principles and provide safeguards for independence, such as mandatory monthly disclosure of assets, and strict separation between managers and trustees.

Corporate restructuring

65. **While the corporate failures associated with the 1997–98 crisis prompted several wav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e agenda remains unfinished**. Korea has succeeded in increasing overall profitability of the corporate sector, in addressing long-term moral hazard issues, financially stabilizing distressed companies, in initiating follow-on operational restructuring, and in improving transparency in financial disclosure and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ree main risks remain: (i) In 2001, the bottom quartile of Korean companies showed very high leverage ratios, large net losses, and low interest coverage. Although Hynix and other large companies are being restructured by creditors, they remain exposed to the risk of further losses. (ii) The prospects for many of the smaller companies emerging from workouts are uncertain. Almost half of the smaller public companies in workouts remain unprofitable and most are still highly leveraged. (iii) Weaknesses in financial disclosure and corporate governance may permit insiders in Korea's largest chaebols to channel financial support from strong to weak affiliates, at the expense of the stronger affiliates (and outside shareholders).

66. **Given the risks associated with delays in corporate restructuring, care needs to be taken to minimize possible spillover effects on the financial sector**. Measures in that regard include encouraging efforts by financial institutions to identify emerging cases of corporate distress and initiate needed financial and operational restructuring in a timely manner, based on forward-looking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need to move forward aggressively with restructuring of distressed-but-viable companies, and to pursue prompt sale or liquidation of non-viable companies. Owners and supervisors will need to prevent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state-owned banks, from delaying loss recognition on over-valued corporate assets. The FSC/FSS should ensur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value workout companies at market value. Efforts to strengthe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insolvency regime will support the financial sector's ability to engage in new corporate lending activities.

D. Market Development Issues

67. **Korea has active money, bond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but further market development hinges upon overcoming some related structural problems**. These include insufficient ability to build a yield curve in won assets, which reduces the liquidity of money markets, with possible effects also on investors' ability to hedge activities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addition, the insufficient volume of longer term government

[15] The ownership of an ITC by a securities firm could lead to conflicts of interest and a weak financial base, whereas the opposite structure (the ownership of a securities firm by an ITC) or a holding company structure is more common internationally.

bonds constrains the deepening of the corporate bond market. Government debt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the choice of types and maturities of instrument offered, can play a critical role in market development.

Money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68. **Korea's short-term money market suffers from some shortcomings.** A lack of instruments prevents the determination of the short-term end of the risk-free yield curve between the overnight and one-year maturities. This complicates the determination of a prime rate that could use for pricing of loan contracts and forwar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n addition, it impedes the effectiv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to the longer end of the yield curve. Regular issuance of three-month Treasury bills would help to meet these needs without constraining the use of MSBs for monetary purposes.

69. **One problem recognized at the time of the financial crisis was the lack of liquidity in Korea's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authorities should be commended for the substantial efforts that they have taken since then to develop and deepen the liquidi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deed, this market has improved significantly over the last three years in terms of liquidity and available instruments. Nonetheless, further steps to deepen it should be considered.[16]

Public debt management issues

70. **Despite important improvements in government debt management, the market remains fragmented.** In addition, maturities demanded by the markets—most notably a three-month bill that would help deepen money markets, and a longer term bill that is in high demand by institutional investors—are not issued or issued in insufficient amounts. A review of debt management practices suggests that there may be room to further lower the cost of government borrowing, while at the same tim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deeper money and corporate bond markets.

71. **On the whole, public debt management is in line with the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 The risk management framework has been strengthen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simple, yet powerful system. The authorities may now wish to consider broadening the risk management framework towards an asset-liability management (ALM) approach.

72. **The government bond market modernization plan launched two years ago has had important results.** The introduction of a fungible issuance system and the buy-back operations have increased the average issue size and liquidity. The government has also launched a new 10-year Korean Treasury Bond (KTB). Furthermore, interest rate swaps and a futures contract based on the 3-year KTB have been introduced as hedging instruments for KTBs.

---

[16] Some measures are already envisaged in the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plan to be completed by 2011, but there may be scope for accelerating some of them.

73. **There is scope to develop the long end of the government bond market.** In the long run, such lengthening can lower the government's borrowing costs, and more importantly, facilitate the emergence of a fully developed and liquid corporate bond market. Consolidating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s and National Housing Bonds with KTBs would help in reducing market fragmentation, starting in 2003 with KDIC and KAMCO bonds.

74. **On the demand side, there is a clear need for more heterogeneous investors with different investment horizons and risk preferences.** The National Pension Fund with its growing demand for assets could be a major force in the market. In addition,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foreign investors would also be helpful. This would have two main benefits: higher long-term demand for Korean government bonds and enhanced market liquidity from more active trading. The fact that foreign investors presently hold only 1 percent of the outstanding stock of government bonds suggests the existence of impediments to foreign investor participation in the market. Such impediments could include the withholding tax on interest income and the restrictions a foreign investor meets when trying to hedge foreign exchange exposure. Constraints related to the still relatively shallow secondary market may, however, be the most important disincentive.

E. Financial Safety Nets and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Liquidity support in normal times

75. **Short-term money markets are sufficiently liquid to allow banks access to market liquidity in normal times.** In addition, the BOK has adequate facilities to manage overall liquidity and assist banks in meeting temporary shortfalls. It intervenes in the money market through repo transactions or the issuance/redemption of MSBs. Reserve requirements averaging also helps banks' liquidity management. Finally, the BOK has a number of credit facilities to complement open market operations.

Emergency liquidity

76. **The BOK Act provides sufficient flexibility for the BOK to provide 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 (ELA) to financial institutions in periods of instability.** It allows for collateral to be "temporarily defined as acceptable" and gives the BOK authority to restrict the activities of the borrower while there is ELA outstanding.

77. **The BOK provided extensive ELA during the financial crisis but operations in the post-crisis framework remain untested.** During the crisis, ELA assistance proved critical in containing the systemic liquidity crisis. However, the BOK's ELA operations at that time were conducted when the government blanket guarantee on bank liabilities was still in effect, which is no longer the case. Looking forward, therefore, there could be new challenges for the BOK ELA operations, should a need for such lending arise again. The BOK is aware that any ELA operations in an environment of partial deposit insurance would subject the central bank to higher credit risks.

78. **Given the separation of banking supervision from the BOK, assessing the systemic implications of a bank failure may be harder.** Thus, there is a need for the BOK and the FSS to strengthen their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s. While the rec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BOK and the FSS is a useful step in that direction, care needs also to be taken not to duplicate on-site inspections.

79. **On-going market consolidation will produce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with complex organizational structures, where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have inter-linkages and share common reputational risks.** How to deal with such large and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s in ELA operations should receive due attention. Moreover, as capital markets develop further, the liquidity situation of non-bank market intermediaries could have significant impact on overall market stability. Dealing with such potential contingencies is also a challenge for the authorities. The MOU between the FSS and the BOK is a welcome step in this process.

Deposit insurance and resolu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80.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mpany (KAMCO) has been instrumental in resolving dist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 paying depositor claims.** This was done under the blanket Deposit Protection System that was put temporarily in place during the crisis. With the reinstatement of the Partial Deposit Protection System from January 1, 2001, KDIC's role has broadened, from *ex post facto* deposit insurance provider, repaying deposits in the event of default, to include expanded responsibilities in monitoring and safeguarding the financial stability of insured deposits and the Deposit Insurance Fund.

81. **The KDIC has already significantly improved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to address its changing role.** To safeguard the insurance fund it i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risk-based premiums and the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models to detect potential problems at individual institutions and the system as a whole. While in principle welcome—once preconditions have been met—the introduction of risk-based premiums is a demanding exercise and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since inadequate implementation could have undesirable consequences.

82. **The KDIC has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Deposit Protection Act to cease insuring credit unions.** Th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plans to establish a private deposit insurance system for its members. The authorities should proceed with caution until all nonviable institutions are resolved, to avoid the possibility of runs.

83. **The existing safety net and resolution arrangements date from the 1997–98 crisis.** In light of the changed environment, the roles of the different institutions concerned may now need to be reviewed, to set clear responsibilities to all those institutions and establish contingency planning for crisis management. The Financial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could serve to identify priorities and establish guidelines for such planning. In assessing the respective roles of FSC/FSS, BOK, MOFE, and the KDIC arrangements for crisis management, coordination and frequent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se institutions should take precedence, perhaps through committees that establishes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early action, and meets regularly should symptoms of a systemic crisis emerge.

F. Corporate Governance

84. **In the last few years, Korea has laid a solid foundation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while formal corporate governance rules may now be substantially similar to other OECD countries, practices often fall short of the spirit, if not the letter, of the OECD principles. The challenge now lies in implementation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legislative changes to improve the corporate culture and practices. The government and the business community should take additional steps to change incentives and further promote transparency of business practices, particularly among chaebol groups; to strengthen competition policies, in order to subject chaebol and firms to stricter market discipline; to enhance and enforce shareholder rights; and to improve disclosure and monitoring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85. **To deepen its equity market, Korea needs to continue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other OEC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best practice**. While there has been good progress in upgrading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efforts should continue to further improv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ir implementation to make them fully consistent with evolving international practices. Efforts in 2002 to step up enforcement of accounting and disclosure standards and the preparation of a draft accounting bill are welcome steps. In addition, Korea should also continu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udit committees, including measures to clarify and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such committees; replace statutory auditors with audit committees for smaller companies over time; and upgrade the skills of audit committee members.

86. **Holding companies, which would be more transparent than chaebol, are allowed, but not many have been established**. To improve transparency of large chaebol, several measures could be considered, including some that may provide incentives for such entities to transform into holding companies.

87. **Shareholder rights have been improved significantly to allow reduced levels of shareholding for assertion of certain rights, but further improvements are required**. While derivative actions are allowed, these are costly and therefore have been limited so far to only a few. Shareholders lack a cost-effective way to seek redress. There is an urgent need to introduce class action lawsuits by shareholders and investors against directors, managers, and auditors for breaches of duty and violations of the law. The draft law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allow class action lawsuits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88. **The concept of independent (outside) directors is new and still not well rooted in Korea**. Directors may not know what is expected of them and how they should exercise their duti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n institute of directors to train directors on their duties, responsibilities, and accountabilities.[17] Additional efforts could include measures to expand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to shareholders and make it explicit under the law; further expand and clarify the right of directors to access all corporate information necessary

[17] One training course for directors has recently started, a second one is under preparation.

to perform their duties; and limit liability of independent directors in cases in which they have acted in good faith.

G.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89. **Korea has made considerable strides towards observance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s (FATF) recommendation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Korea's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joined the Egmont Group in June 2002, and its computer database became recently operational. A system for the strategic analysis of suspicious transactions will also become operational this year. Underscoring Korea's commitment to AML/CFT, it submitted in August of 2002 to an on-site examination by the Asia Pacific Group of the framework it has set in place to combat these activities. Nonetheless, further efforts are warranted among others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expediting the enactment of the Anti Terrorism Bill,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Anti- Terrorism of 1999. Second, the limitation of the Real Names Act on access to customer information should be addressed in order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of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cases. Third, the monetary threshold fo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should be abolished as soon as is practicable.

SECTION II—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I.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A. General

90. **This assessment of the bank supervisory system in Korea was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and the *Basel Core Principles Methodology*.**[18] It was based on a review of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banking and bank supervision and extensive discussions with government and supervisory agencies, representativ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sector associations. The assessment also drew upon a partially completed self-assessment prepared by the Korean authorities.

91. **Bank examination reports and other bank-specific analysis were not made available to the assessment team at the time of the mission,** due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concerns regarding confidentiality. In subsequent discussions after the BCP mission, the staff of the FSC/FSS offered to provide access to confidential materials.

B. Institutional and Macroprudential Setting, Market Structure—Overview

92. **As of mid-2002, the banking sector included nine nationwide commercial banks, six regional banks, five 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and 42 foreign bank branches.** The Korean banking sector is highly concentrated and at present, following crisis-related interventions, dominated by the government. The share of the three and five largest banks stood at 51 and 69 percent of total sector assets, respectively. Eight out of 15 commercial banks are either majority government owned or co-owned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owners. When combined with government-ownership in 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in mid-2002 nearly 60 percent of the assets of the Korean banking sector is government-controlled. The government is pursuing active efforts towards privatization.

C. General Precondition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93. **Presently, Korea's macroeconomic management has delivered sound and sustainable policies, and the public sector infrastructure is well-developed, with a significant body of recently-revised laws covering the financial sector.** The FSC, with the associated FSS and SFC, is an integrated supervisor,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ctor. Its powers include the authority to issue and revoke

---

[18] The assessment took place in April 2002 as part of the IMF-World Bank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The team was led by Ms. Greta Mitchell Casselle (Monetary and Exchange Affairs Department, IMF), Mr. Alan Ball, (banking supervision expert from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United Kingdom), and Ms. Chu Yun Pae (banking supervision expert from the U.S.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licens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it has some responsibilities for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94. **The power to define the scope of banking activities is vested i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Decisions regarding corrective action for problem banks rests with the FSC, the policy body, and not the FSS, the executing body**. Once decisions are taken by the FSC and a framework for remedial action is developed, it is implemented at the operational level by the FSS. Under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FSC, the FSS supervises financial institutions (via on-site examinations and off-site monitoring) and other participants in the financial markets. In addition to FSC/FSS, the MOFE, the Bank of Korea (BOK) an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also have some involvement in the examination/supervisory process.

95. **The legal machinery in place in Korea to support banking activities includes a relatively efficient court system. Korea is not fully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with differences due to the absence or incompleteness of rules governing related party disclosures and disclosures by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A new accounting standard for the banking industry is being drafted, which will be fully consistent with IAS. With respect to corporate governance, there is scope for strengthening market discipline by implementation of IAS and enhancing financial transparency for corporations. The Korean financial system is supported by a comprehensive public safety net and an explicit deposit insurance system.

D. Main Findings

96. ***Objectives, Autonomy, Powers, and Resources (CP 1)***.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FSS is embodied in law, however in practice several factors have called that independence into question. To protect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FSC/FSS, the MOFE should allow laws in the financial sector to be implemented by regulation,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nd refrain from issuing its own interpretations of those regulations. The FSC's responsibility for overseeing the financial restructuring program compromises its primary role as bank supervisor, and should, therefore, be vested with another agen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larify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FSC and the FSS and between the FSC/FSS and the BoK and KDIC and. Finally, the FSC and the FSS should address key staffing issues that could potentially undermine their effectiveness, i.e., the lack of statutory protection for the FSC/FSS and their staff against lawsuits; the frequent turnover of the Chairman of the FSC; and the lack of adequate examination staffing resources to carry out supervision duties.

97. ***Licensing and Structure (CPs 2–5)***. The FSC/FSS lacks regulatory authority to determine the scope of permissible banking activities. Additionally, the legal framework and supervisory powers with respect to the licensing processes should be strengthened. The FSC/FSS should apply fit and proper test to employees below Board level, corporate ownership of banks should be subject to rigorous fit and proper tests, and the licensing of banks should be void of political interference.

98. ***Prudential regulation and requirements (CPs 6-15)***. Capital requirements for banks are broadly in line with the Basel capital standard, but there is need for the FSC/FSS to use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capital adequacy ratios above the defined minimum. For banks, there is scope for strengthening and clarifying comprehensive loan evaluation methodologies and adherence to provision criteria, large exposure and concentration limits and transactions between insiders. The FSC/FSS also needs to strengthen their supervisory practices and banks' capital and risk management techniques for off-balance sheet derivative exposures, and other risks. In terms of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 the FSS needs to finalize and fully implement its internal procedures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new legislation. The FSC/FSS needs to strengthen the prudential rules such as capital and asset classification norms for nonbank deposit-taking institutions, to bring them in line with rules for banks.

99. ***Methods of ongoing supervision (CPs 16-20)***. There is a need to further develop risk-focused supervision examination techniques (scope and periodicity) for each type of bank and other nonbank deposit-taking institutions, consolidated supervis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supervisory data management.

100. ***Information Requirement (CP 21)***. The quality of auditing, accounting, and financial and non-financial disclosure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n order to be consistent with best international practices.

101. ***Formal Powers of Supervisors (CP 22)***. There is a full range of remedial actions that can be taken against banks. However, there is scope to strengthen and clarify the FSS' powers to initiate enforcement actions.

102. ***Cross-Border Banking (CPs 23–25)***. While the FSC/FSS undertake consolidated supervision on a global basis, provisions of the *Real Name Transactions Act* have the potential to prevent an unimpeded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foreign supervisors.

Table 1.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the Basel Core Principles

Reference Principle	Recommended Action
Objectives/Autonomy of Supervisory Agency (CP 1)	• Strengthen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FSS by allowing laws in the financial sector to be implemented by regulation. The MOFE should refrain from issuing its own interpretations of those regulations.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operation of MOFE and the RRC in interpreting and reviewing decrees, regulations, and rules do not hinder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FSS. • Clarify the role of the FSC/FSS as the main supervisory body in its dealings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e.g., the KDIC, the BOK, and the MOFE), preferably through MOUs. • Take measures to bring about continuity of the chairmanship of the FSC. • Amend the *Banking Act* to give supervisors protection for actions performed while discharging their duties in good faith, and protection against the costs of defending their actions while discharging their duties.
Permissible Activities (CP 2)	• Empower FSS to define permissible banking activities.
Licensing Criteria (CP 3)	• Develop a comprehensive list of fit and proper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of banks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 Process licensing reques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vetting processes performed by the FSC/FSS.

Reference Principle	Recommended Action
Ownership (CP 4)	• Strengthen the fitness and proper tests for owners and managers of banks.
Capital Ratios (CP 6)	• Set minimum individual capital ratios to banks in relation to the risks run by each bank.
Loan Evaluation and Loan-Loss Provisioning (CP 8)	• Strengthen supervisory review of loan evaluation and loan loss provisioning. Ensure the consistent and transparent application of FLC and urge banks to classify and provision rigorously FLC. Impose FLC for bank subsidiaries (sub prime lenders).
Large Exposure Limits (CP 9)	• Monitor geographical concentrations and banks whose large exposures are in excess of the maximum limits and develop alternative plan of actions should they continue to exceed the prescribed limits. • Review prudential norms for credit and large exposures to ensure that they appropriately capture all claims and transactions, both those on-balance sheet as well as off-balance sheet.
Connected Lending (CP 10)	• Amend the *Banking Act* and subordinated statues to include the arm's-length standard governing loans to insiders and to give the FSC/FSS the discretion to make judgments about the existence of connections between the bank and other parties.
Market Risk (CP 12)	• Continue the development of supervisory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measuring, monitoring and controlling market risk. Review the supervisory process and procedures in response to the rapid growth in derivatives and other off balance sheet activities.
Other Risks (CP 13)	• Ensure that the regulatory authorities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a bank's overall asset and liability maturity position. • Consider advancing the implementation of Basel II to introduce minimum individual capital ratios for banks, which reflect other risks (operational, reputational, liquidity, and banking book interest rate risk).
Money Laundering (CP 15)	• Issue clear guidelines to banks setting out their statutory responsibilities under Articles 4 and 5 of the new *Financial Transaction Reporting Act* (FTRA). • Ensure that all on-site examinations of banks and other deposit-taking institutions include a review of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TRA.
On-Site and Off-Site Supervision (CP 16)	• Implement fully risk-based supervision. Perform transaction testing only as a tool to validate the systems and processes in place. • Commission a study to determine the root causes of material deviations from the internal examination schedule and to assess current staffing and supervision needs, to ensure that staff levels remain commensurate with changing supervision needs. • Develop and formalize a mandated on-site examination program for each bank and nonbank deposit-taking institutions, setting out the coverage, timeframe, and periodicity of the examinations. Apply comprehensive examination approach to government-owned specialized banks instead of using a different rating system. Improve the quality of data management.
Off-Site Supervision (CP 18)	• Review practices for data collection to ensure that the frequency of information collected from banks vary by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and the size, activities, and risk profile of the individual bank.

Reference Principle	Recommended Action
Consolidated Supervision (CP 20)	• Strengthen consolidated supervision for nonbank deposit-taking institutions and for FHCs by amending the FHC Act to include managerial and financial strength and intercompany transactions norms (and require all FHCs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and procedures to cover such transactions); and to prohibit the parent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or nonbank subsidiary from posing undue hardship on the bank subsidiary. • Impose consolidated supervision rules on bank subsidiaries (sub prime lenders) to reduce regulatory arbitrage opportunities.
Accounting Standards (CP 21)	•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new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to ensure that their application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best practice.
Remedial measures (CP 22)	• Enforce PCA or other forceful measures to remove weak and insolvent non-bank deposit-taking financial institutions. • Delegate the day-to-day levying of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corrective measures to FSS, leaving major decisions such as de-licensing and intervention to the FSC. • Strengthen and clarify the powers of the FSC/FSS to remove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Globally Consolidated Supervision (CP 23)	• Conduct a forma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supervision in the countries in which Korean banks wish to operate.
Host Country Supervision (CP 24)	• Reexamin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the *Real Names Act* and if necessary seek a statutory amendment to ensure an unimpede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supervisors.
Supervision Over Foreign Banks' Establishments (CP 25)	• Assess the quality of management of local branches and subsidiaries of foreign banks on the same basis as domestic banks.

E. Authorities' Response

103. **While the authorities recognize shortcomings with compliance with other BCPs, they believe that measures are in progress to strengthen compliance.** In some cases, they note that existing practices limit potential exposures that could result from weaknesses identified through the BCP assessment. With respect to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FSS, the authorities indicated that the lack of clarity in the roles of agencies overseeing the financial sector promotes an effectiv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On legal protection for supervisors, the FSS also noted that it covers legal expenses for both civil and criminal lawsuits brought against FSS officers and staff for actions taken while lawfully discharging their official duties.

II.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Insurance Core Principles

A. General

104. **This assessment of Korea's 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s*** involved the review of the self assessment prepar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comparison with the *Core Principles* and the *Core Principles*

Methodology, and a review of parts of the insurance laws in Korea.[19] In addition, a series of meetings and presentations were held in Seoul with the FSS and the FSC, including discussions on all aspects of their operations relevant to insurance supervision. Meetings and discussions were also held with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Finance, selected larger and smaller insurers, both locally incorporated and branches. Industry groups were also consulted including the insurance industry bodies,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IDI), the actuarial body, auditors and academics. Assistance provided by these organizations is gratefully acknowledged.

105. The supervisory staff at the FSS and the FSC cooperated fully in the assessment.

B. Institutional and Macroprudential Setting—Overview

106. **In 2000, the Korean insurance market had total premiums of $58.3 billion, representing 2.3 percent of the world market, placing Korea as the seventh largest insurance market by premium in the world.** Premia as a percentage of GDP stood at 13 percent—well above most other countries and third behind South Africa and the United Kingdom. The comparisons of these figures with other countries are, however, complicated by the substantial savings element in non-life insurance business in Korea and the existence of relatively short-term life insurance policies.

107. **The sector has emerged from a difficult period after the crisis.** The life insurance sector, in particular, was hard hit by the effects of the crisis and the extensive exposure to negative spreads on in-force business. A number of companies left the market as a consequence, and one company converted to state ownership. Current circumstances are more positive as a result of restructuring, improved regulation, and increased profitability arising from restored consumer confidence and the asset price appreciation. It is cautionary to note that the structural issue that gave rise to negative spreads has been mitigated but not eliminated, and therefore continued prospects for the sector rely on continuing economic strength and asset growth.

108. **The Korean non life insurance market is the tenth largest in the world.** There are 22 companies operating as at December 2001, made up of 14 domestic and 8 foreign companies. Premium income in the year to March 2001 was W 16,478 billion. The market writes most classes of business, with the largest proportions of premia written in long-term insurance (42 percent in 2000) and automobile (39 percent).

109. **The Korean life insurance market is also large in size and ranks sixth in the world. Life insurance premiums were just under 10 percent of GDP in 2000.** The main products written are traditional endowment and whole of life insurances and various types of rider benefits. Unit linked insurance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and is growing. There are 22 companies operating in this market as at December 2001 made up of 12 domestic

[19] The assessment took place in April 2002 as part of the IMF-World Bank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and was prepared by Craig Thorburn, Senior Financial Sector Specialist, Financial Sector Vice Presidency of the World Bank.

companies, 8 foreign companies and 2 joint ventures. The sector has been improving in its performance after a severe setback in 1997. Improved investment performance and a focus on productivity improvement, both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in distribution, have contributed. Companies are, however, still conscious of the need for further improvement including the need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bancassurance.

C. General Preconditions for Effective Insurance Supervision

110. **In Korea,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falls under the FSC and the FSS**. The principal legislation for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is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legal structure in Korea operates effectively and the supervisor is able to make use of the general corporate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111. **Both the accounting and actuarial professions exist in Korea**. The accounting and audit profession is more developed than the actuarial profession, where membership is small and technical capacity is still developing. As a result, the KIDI plays a role in carrying out extensive research projects which would otherwise fall to the actuarial profession. There is scope for the actuarial profession to make greater use of more sophisticated financial techniques, and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do so. In addition, the reputational standing of the actuarial profession could be enhanced through greater use of actuarial approaches and advice by companies.

D. Main Findings

112. **The Korean authorities have made considerable strides in the development of their regulatory and supervisory structure since the 1997 crisis**. A high level of observance is achieved in the regulatory regime, reinforced by active supervision and enforcement on the part of the FSS and FSC.

113. **Organization of an Insurance Supervisor**. The insurance supervisory function is organized under the FSS and the FSC. This structure is adequately and flexibly resourced, operates clear lines of reporting and day to day decision making, and has established confidentiality and ethical requirements.

114. **The operation of MOFE and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in interpreting and reviewing decrees, regulations, and rules has the potential to reduce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 and the FSS**, by clouding its autonomy and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and regulation. While it is appropriate to have some government body act as the ultimate reviewer of the regulatory and rule-making process, care is needed to ensure that any such review does not impinge on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 and the FSS.

115. **In line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providing legal protection for the FSC/SFC/FSS** and their staffs against lawsuits when carrying out their duties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116. ***Licensing and Changes in Control***. The FSS and FSC operate a sound licensing regime which addresses all the IAIS criteria. The 'fit and proper' tests are formally applied to directors but could be more formally applied to senior management, and the inclusion of a

5-year ban could be altered to permit lifetime bans when relevant.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removing the time limit for approval of applications. A regime for advice of change of control is in place but the requirement for approval is not in place but being given active consideration.

117.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s***. With respect to corporate governance, the requirements for audit committees are relatively new and, whilst in place, have not been through a full cycle to ensure that the desired results are being achieved. Initial experience,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xternal directors, has indicated companies will need some time to gain experience in working with these requirements. Consideration may also be given to requiring separation of roles between chairmen, chief executives, and actuaries with official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it may be useful to consider a mechanism for filling casual vacancies of non executive directors so as to ensure that the relevant effect and intention of the regulations were able to be maintained continuously rather than having to await a general meeting to be convened.

118. ***Prudential Rules***. A comprehensive set of prudential rules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crisis. Asset rules provide for asset management, financial derivatives, the mixture and diversification of assets, credit risk limits, and the treatment of particular types of assets. Assets are generally valued at market value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reports. Pledging of assets is not permitted. The supervisor assesses the adequacy of liabilities and technical provisioning through off site analysis and on site inspections and assesses reinsurance recoveries being claimed against gross provisions. Particular attention is also given to catastrophe type provisions. KIDI prepares technical information to assist companies, particularly for incurred but not reported provisions for non life insurance companies. The provisioning for liabilities in Korea is consistent with a market value based environment and, therefore, the value of the assets on balance sheets.

119.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n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business imposes an EU modeled solvency regime.** With respect to the non life insurance sector, higher parameters have been adopted than applies in the EU, which is appropriate given the other financi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life insurance sector, the parameters adopted are the same as applies in the EU directives and are being phased in over a period. Solvency is monitored actively and control levels are identified. There is no specific attention under the solvency regime to the question of double gearing in groups, but there are cases in practice where this situation arises.

120.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derivatives and reinsurance show a high level of observance** of both the essential and additional criteria.

121. ***Monitoring, Inspection, and Sanctions***. Insurance distributors are required to be authorized and be fit and proper. The fair dealing with customers is elaborated extensively with regard to the taking out of contracts, point of sale disclosure and illustration, and anti-twisting rules. The supervisor encourages companies to establish customer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and, through an office within the FSS (the Customer Protection Center), also deals with and resolves customer complaints.

122. **Financial reporting to the FSS is satisfactory and all information is systematically analyzed off-site and subject to verification as part of the on-site inspection processes**. The legal basis for on-site inspections is set out in the law, including an obligation to carry out such inspections and request and obtain information. Inspections are conducted on a full scale basis as well as on specific matters.

123. **The FSS and FSC have the power to issue fines, limit business activity, force dealing with assets, and require the transfer of assets and liabilities to others or impose conservatorship**. A range of sanctions are available; licenses can be denied or revoked; and Boards of directors or management can be dismissed and replaced. There is a regime of prompt corrective action requirements in place.

124. ***Cross-Border Operations, Supervisor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nd Confidentiality***. It is permissible for overseas companies to operate through distribution in Korea with only limited requirements. As such the local authorities are reliant on the quality of the home supervisor. Consultation with home supervisors is practice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anti money laundering authorities is in its infancy and is develop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includes a broad confidentiality clause that covers the essential criteria. There are, however, no specific exclusions or permissions included that addres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other supervisory or legal authorities.

Table 2.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s

Reference Principle	Recommended Action
Organization of an Insurance Supervisor i.e., CP 1	• Give supervisors legal protection for actions performed while discharging their duties in good faith, and legal protection against the costs of defending their actions while discharging their duties • The assessment of officers should be included as part of the supervisory processes.
Licensing and Changes in Control i.e., CPs 2–3	• Time based restrictions on licensing approvals should be abolished. • Fit and proper tests, currently applied formally to board members and informally to key senior management appointments should be applied formally to both. • The five year ban on industry participation should be changed to an indefinite one,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offences under the Act. • Proposals under consideration to achieve full observance of principle 3 are to be encouraged.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s i.e., CPs 4–5	• Introduce a requirement for separation of roles between chairmen, chief executives, and actuaries with official responsibilities. • Introduce a mechanism for filling casual vacancies of non executive directors to ensure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between general meetings.

Reference Principle	Recommended Action
Prudential Rules i.e., CPs 6–10	• The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need to be further enhanced, and double counting of capital needs to be prohibited. • Address capital levels through regulatory change and sanction but also through administrative incentives such as more favorable administrative treatment.
Monitoring, Inspection, and Sanctions i.e., CPs 12–14	• The ability of the supervisor, through formal powers, to inspect outsourced service providers could usefully be clarified through indirect or direct means.
Cross-Border Operations, Supervisor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nd Confidentiality i.e., CPs 15–17	• Restrict the ability of companies to write business in Korea from other jurisdictions without limitation, so that the power to intervene in unsatisfactory situations can be provided.

E. Authorities' Response

125. As a way to ensure soundness of the insurance sector and enhance the transparency in the insurance market, the FSC/FSS has incorporated much of the IAIS core principles into the insurance regulations and has been enforcing them. In October 2002, the FSC/FSS adopted the consolidated solvency margin rule and has been taking other steps as part of our broad efforts to ensure prudential regulation of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The FSC/FSS is also looking into ways to seek greater accountability from the officers of insurance companies.

126. In response to the recommended actions in Table 2, the assessment of officers is included in the revised Insurance law, which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bolishing time-based restrictions on licensing approvals along with banning industry participation indefinetely will be given careful review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laws and circumstances.

III.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IOSCO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127. **This assessment of Korea's observance of the IOSCO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20]** is based upon interviews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s well as discussions with Korean governmental officials, representatives of securities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SROs) and members of the Korean securities industry. These interviews were supplemented with a self-assessment prepared by the FSC and additional reference materials, including copies of applicant laws, decrees, reports, and regulations. The FSC/SFC/FSS cooperated fully with the assessment.

[20] The assessment was performed by Mr. Jonathan Katz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rom April 12–23, 2002, as one component of 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Mr. Katz's views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U.S. SEC.

A. General

128. **There are two main markets for equities in Korea: the Korean Stock Exchange (KSE), and the KOSDAQ. At the end of 2001, 689 companies were listed on the KSE,** with a total market capitalization of W 255 trillion and a daily trading volume of approximately 610 million shares, with 66 percent of trading from on-line customers. Foreign investment in KSE companies is more than 36 percent. The KOSDAQ market has 721 listed companies with a market capitalization of W 52 trillion and daily trading volume of 367 million shares, predominantly short term on-line trading by individual (domestic) investors. In addition to these two markets, there is the the KOSDAQ OTC Bulletin Board system to enable trading in very small companies; the Korean Futures Exchange (KOFEX), a independent SRO; and Korea ECN Securities, a communications network that provides after hours trading in 200 KSE listed companies and 50 KOSDAQ listed companies. Korean markets function through direct interaction of orders. There are no market-makers or specialists acting as intermediaries. This may be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high volatility in the Korean securities markets.

129. **There are 60 securities companies licensed by the FSC to operate in Korea, including 17 foreign companies, with 52 of these companies being members of the KSE.** The Korean securities industry is heavily concentrated, with the largest brokerage company controlling 14 percent of the market; its affiliated investment trust company and insurance company are also dominant. As of December, 2000 there were 79 investment advisory companies registered with the FSC.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upon registration with the FSC, may only engage in underwriting and dealing in government bonds.

130. **The bond market in Korea is small. Government bonds totaled W 296 trillion in value (year 2000) and corporate W 133 trillion (2000).** While over 80 percent of debt is listed on the KSE, over 95 percent of trading occurs in the over the counter market,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specialized dealers. The secondary market for corporate debt is also very thin. The OTC market in debt is heavily concentrated in five securities companies. There is little transparency, primarily because of a lack of active trading (prices are published daily based on valuation by the KSDA) and limited liquidity. Because of the tradition of holding debt to maturity, price discovery is difficult, as is locating contra parties. Although the KSE has just begun trading in repos, the market is restricted. ITC's are only permitted to engage in repos, not reverse repos.

131. **Private pension plans are uncommon and have limited assets to invest in equities. Insurance companies invest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ir assets in equitie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nd investment trusts are relatively small players in the Korean market, with the bulk of funds under management invested in government debt. There are two types of investment trust products offered in Korea, investment trusts (ITC) and investment companies (ITMC). The ITC's are contractual agreements and account for approximately 96 percent of all assets controlled b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The limited effective life of most ITC's and ITMC's i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investment strategy for investors and, in turn, for the funds. Following the1997 financial crisis, most Korean investors consider ITC's and ITMC's to be short-term investments. Under Korean law, the standard trust agreements impose a redemption penalty on investors who withdraw any invested funds from an open-ended IT within three months or six months for a closed-

end fund. The remaining 50 percent may not be withdrawn for another three months. There is a tendency for Korean investors to regard this period as the maturity date of the fund. Because of the volatility of the Korean market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most Korean investors immediately withdraw funds as soon as possible. The result is an institutional investment sector that is focused on the short-term and a contributor to volatility rather than stability.

Oversight

132. **The FSC was created by the *Act on Establish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in 1998 to oversee regulation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s.** It is a statutorily independent agency, under the general authority of the President,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activities of and setting policy for the SFC and FSS. It has a small staff of approximately 65, supplemented with staff on loan from the FSS. The FSC is responsible for issuing and revoking license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SFC was created under the *Act* with specific responsibility for investigating market abuses and for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It, too, is a governmental entity with a small staff. The FSS, headed by a Governor who is concurrently the Chairman of the FSC, is the principal operational financial system regulator. Unlike the FSC and SFC, it is technically not a government agency and its budget is funded through annual fees imposed upon regulated entities. As such, it is not bound by Korean government civil service standards and salaries. The FSS has a staff of nearly 1500. The FSS has the authority to examine and inspect the operations of all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It may compel testimony and the production of documents from persons and entities subject to its regulation and may recommend to the FSC disciplinary action against financial institutions and associated persons.

133. **The Korea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is the principal governmental institution charged with management of the Korean fiscal system and economy.** Until the 1998 reorganization, it was the agency responsible for regulation of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MOFE continues to have primary responsibility for drafting legislation and submitting it to Parliament and for official interpretation of Korean financial laws and related Presidential Decrees. The Vice-Minister of MOFE is an *ex officio* member of the FSC.

B. Main Findings

134. ***Principles relating to the regulator.* When viewed as a consolidated regulator, the FSC/FSS/SFC has sufficient authority to perform its regulatory duties.** However, the trifurcated structure appears cumbersome and has the potential to impinge on regulatory effectiveness. While the FSC appears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solicit industry input into its policy deliberations, adoption of a formal public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for proposed regulatory actions would enhance its ability to develop high-quality, cost-effective regulatory policies. In addition to enabling it to obtain the broadest possible range of public opinion, it would dispel any perception that some entities or components of the financial industry have an inordinate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policy. A second concern is the overlap in interpretive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FSC/FSS and the MOFE. While the FSC/FSS has the authority to interpret its rules, the MOFE has the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This situation has the potential to reduce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 and

the FSS, by clouding its autonomy and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and regulation. While it is appropriate to have some government body act as the ultimate reviewer of the regulatory and rule-making process, care is needed to ensure that any such review does not impinge on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 and the FSS.

135.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Korean SRO's have sufficient authority and appear to utilize it effectively in enforcing listing standards, but their exercise of authority is limited in some other key areas**. They do not inspect or monitor member securities firms for compliance with capital adequacy standards (monthly reports to FSS are jointly filed with the appropriate SRO) or other regulatory requirements. Also, SRO disciplinary programs are limited in size and scope.

136. ***Principles for the enforcement of securities regulation.*** **The FSC/SFC/FSS combination has sufficient comprehensive regulatory authority, and recent actions suggest a commitment to the effective use of this authority**. While the SFC has statutory authority to oversee market misconduct, it relies upon FSS staff to perform much of the function. It may be useful to clarify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two organizations.

137. ***Principles for cooperation in regulation.*** **Because of the substantial infusion of foreign capital into Korean securities markets in recent year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SC/SFC/FSS may have to investigate activities on the Korean markets that involve conduct by foreign investors**. This will likely require the assistance of foreign regulators. However, foreign regulators as a general matter may not provide such assistance unless there is a memorandum of assistance that provides for reciprocity. Provisions of the *Real Name Transactions Act* have the potential to prevent an unimpeded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foreign supervisors. Thus, the inability of the FSC to reciprocate may ultimately impede its ability to regulate its own markets effectively.

138. ***Principles for issuers.*** **Korea has made a concerted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corporate disclosure through improved requirements, combined with an initiativ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Korean accounting standards**. Korean accounting standards are now approach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and auditing standards are now full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regulators have also strengthened enforcement by imposing sanctions on accountants for violations of standards or rule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standards and the quality of auditing, accounting, and financial and non-financial disclosure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n order to be consistent with practices in other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 major impediment to complete implementation of Korean GAAP and GAAS is a shortage of properly trained accountants, auditors and corporate financial officers. A second impediment may be the historically low audit fee paid by Korean companies, estimated to be roughly 20–25 percent of the comparable audit fees paid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139. ***Principles fo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There is an established system for regul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which do not play a major role in the Korean financial system. The requirement that the management company invest a minimum of W 100 million on in the start up of an ITMC may be a contributing factor in the limited use of ITMCs, given that they have a typical life span of less than two years.

140. ***Principles for market intermediaries.*** Korea has a comprehensive regulatory structure for brokerage firms. Its system for overseeing capital adequacy of firms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to ensure that it can identify firms with capital deficiencies in a timely manner. For example, the FSS could impose a more frequent comput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 Close oversight of firm capital adequacy is particularly important given the volatility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generally low capital levels of all but the largest firms. The requirement that underwriters act as market stabilizer for 30 days after an offering of securities may also create risk exposure as well as depressing the offering price, as it creates a contingent liability for underwriters for the entire offering.

141. ***Principles for the secondary market.*** **Korea's regulatory structure provides all necessary authority for adequate regulatory oversight**. In fact, it may not be necessary for Korean regulators to actively involve themselves in detailed decision making on market products, and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granting Korean markets greater latitude in making such business decisions. Conversely, it may be appropriate for the FSS to increase its direct surveillance of the markets, given the limited amount of direct enforcement performed by the SRO's.

Table 3.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the IOSCO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Principles relating to the regulator, CPs 1–5)	• Strengthen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FSS by allowing laws in the financial sector to be implemented by regulation. The MOFE should refrain from issuing its own interpretations of those regulations.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operation of MOFE and the RRC in interpreting and reviewing decrees, regulations, and rules do not hinder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FSC/FSS. • Amend relevant statutes to give FSC/SFC/FSS staff protection for actions performed while discharging their supervisory duties in good faith. • Adopt a formal public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for proposed regulatory actions.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CPs 6–7)	• Recent initiatives to promote enhanced SRO regulatory responsibilities, including an on-site inspection program of firms, should be continued.
Principles for the enforcement of securities regulation (CPs 8–10)	•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how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FC, FSS and MoFE affects overall effectiveness. • SRO's should be encouraged to increase their enforcement and disciplinary programs.
Principles for cooperation in regulation (CPs 11–13)	• Reexamin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the *Real Names Act* and if necessary seek a statutory amendment to ensure an unimpede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supervisors.
Principles for issuers (CPs 14–16)	•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new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to ensure their application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best practice. • Encourage the training and recruitment of qualified accountants, auditors, and attorneys.
Principles fo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Ps 17–20)	• Examine the impact of existing regulatory policies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to ensure they are not impeding the growth of the industry.
Principles for market intermediaries (CPs 21–24)	• Require more frequent computation and reporting of capital adequacy. • Assess the impact of recent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l compliance functions.
Principles for the secondary market (CPs 25–30)	• Regulations designed to manage market volatility should be reexamined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 A concerted effort should be made to improve transparency in the bond market. • Examine restrictions on derivatives use and hedging strategies to see if they are reducing market depth and liquidity or increasing volatility.

C. Authorities' Response

142. The FSC/FSS has been observ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most areas including capital adequacy an internal control. Especially, the FSC/FSS is reviewing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 on a regular basis to ensure that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Internal Control System (ICS) take root. Both systems were initiated in 2000 and the FSC/FSS is evaluating the ICS of securities companies when performing on-site examinations.

IV.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CPS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21]

A. General

143. **The Korean payment system consists of a central high-value funds transfer system, the Bank of Korea Financial Wire Network (BOK-Wire), which is operated by the Bank of Korea (BOK), and several other paper-based and electronic systems operated by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KFTC), a company owned by payment system participants, including the BOK.** BOK-Wire is a wholesale funds transfer system that accounts for around 7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cleared payments in Korea. All BOK-Wire transactions are settled on a 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 basis across participants' settlement accounts at the BOK. A minimum transaction value of W 1 billion for customer payments is enforced, but there is no limit on funds transfers between BOK-Wire participants. Any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a settlement account at the BOK is eligible to participate in BOK-Wire. Currently, banks, including all foreign bank branches, and non-bank institutions such as securities companies and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participate in the system. As at end-2001, there were 132 members of BOK-Wire, of which 65 were banks and 67 were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144. **The KFTC-operated systems include a variety of interbank electronic payment systems.** The KFTC also operates a check clearing system and a paper-based bank giro system. Each of the KFTC-operated systems settles on a multilateral net basis through BOK-Wire at designated times (currently 2:30 p.m. for checks and 11:30 a.m. for all other

[21] The assessment was undertaken in October 2001 by a two-person team: Anne-Marie Gulde (IMF), and Greg Johnston (payment system expert, Reserve Bank of Australia). The assessment was based on: the BOK's response to a pre-mission questionnaire; a review of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a variety of official BOK publications and documents provided on the BOK website; and discussions with the BOK,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KFTC),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the Korea Stock Exchange (KSE), and payment system participants.

KFTC systems). BOK-Wire is also used to settle high-value cash transfers between participants, BOK loans and discounts to banks, Korean Government treasury payments and receipts, and the cash leg of some securities settlement transactions. These securities transactions relate to over-the-counter (OTC) trades in debt securities markets. At present, the BOK estimates that up to 4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debt securities trades are settled on a delivery-versus-payment (DvP) basis via a link between BOK-Wire and the KSD.[22] Cash payments relating to the remaining 60 percent are made using other payment mechanisms, such as the Electronic Banking System and cashiers' checks (i.e., a check drawn by a bank on itself). These transactions are not settled on a DvP basis. It is possible that the existing market practice of settling debt securities trades on the day the trade occurred (i.e., T+0), which exceeds current international best practice, may be impeding BOK's attempts to encourage DvP settlement.

145. **The check clearing system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clearing system in Korea in terms of the value of transactions cleared, accounting for a little under 19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cleared payments**.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First, promissory notes (which are cleared in this system) are actively used as a means of payment for commercial transactions. These instruments account for around 4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items cleared in the check system. Second, cashiers' checks are widely used as a means of paying for larger-value commercial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e.g., car and house purchases) and between companies. These instruments are also used as a substitute for higher-value currency notes. (The largest currency note on issue in Korea is the W 10,000 currency note, which is worth approximately $8 dollars.) However, data provided by the BOK indicate that the substitution of cashiers' checks for higher-value currency note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volume, but not the value, of checks exchanged in the Korean payments system. Third, cash payments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some OTC debt securities trades and exchange-traded equities transactions are made using cashiers' checks. This is less than optimal as the rules of the check system allow checks drawn on a failed bank to be unwound.

Oversight

146. **The BOK is the public sector agency responsible for the oversight of the Korean payment system**. Under the *Bank of Korea Act*, the BOK has the authority to operate and manage payment systems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its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Since 1994, the BOK has operated BOK-Wire. The BOK performs other payments-related activities, including issuing currency and providing current accounts for the settlement of interbank obligations among financial intermediaries.

147. **In December 2001, the BOK's Monetary Policy Committee (MPC) passed a new regulation**—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and Oversight of Payment Systems*—that, among other things, sets out BOK's oversight objectives and requires the Governor to submit an annual report to the MPC on the BOK's oversight activities.

---

[22] Settlement on a DvP basis ensures that the transfer of cash occurs if, and only if, the transfer of title to securities occurs, and vice versa.

B. Main Findings

148. **BOK-Wire has a high degree of compliance with the Core Principles.** There is one issue, relating to the ability of the BOK to oversee private sector systems' compliance with the Core Principles that could be significantly improved.

149. ***Central Bank Responsibilities in applying the CPs.*** Under the current arrangements, the BOK is not explicitly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risks are controlled in private sector payment systems, nor does it have powers defined in legislation to intervene in circumstances where it believes that private-sector payments arrangements may compromi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ayment system. In these circumstances, the BOK's payment system policy objectives may not always be fully achieved, or achieved within an acceptable time frame. This is not optimal given the potential for poorly designed payment systems to quickly transmit financial shocks, such as the insolvency of a payment system participant, throughout the financial system.

150. **Emerging best practice around the world is for central banks to have an explicit legislative mandate for the stability, and sometimes also the efficiency of the payment system, and associated powers to ensure that this mandate can be carried out.** These powers often include the ability to require data, set risk control and other standards and issue directions to payment system operators. It is also common for the central bank to have to provide an annual report to the Government outlining key payment system issues and the actions it has taken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151. ***Efficiency and practicality of the system (CP VIII).*** The BOK-Wire system provides a low cost and effective service to its participants. At present, there is no limit on the minimum value of interbank payments. However, Article 21 of the *Working Regulation on the Operation and Oversight of Payment Systems* requires that customer payments must have a value of at least one billion won.

152. **It is recommended that steps be taken to reduce the value of payments cleared through the check system.** To promote this objective, it is recommended that the minimum transaction value of W 1 billion for customer payments through BOK-Wire be lifted, provided there is sufficient excess processing capacity to cater for the likely increase in transaction volumes. In addition, the exchange of higher-value promissory notes through the check system should be discouraged; BOK-Wire payments could be us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transferring funds to the presenters of these notes.

153. Further steps should also be taken, in concert with the KSD and financial market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that cash payments forming one side of a securities settlement transaction take place through a payments mechanism that complies with the Core Principles; that interbank obligations arising from these cash payments are settled via BOK-Wire; and that all securities settlements occur on a DvP basis.

Table 4.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CPSS Core Principles and Central Bank Responsibilities in Applying the CPs

Reference principle	Recommended action
Central Bank Responsibilities in applying the CPs	• The BOK's payment system role and objectives should be explicitly set out in legislation, along with processes to ensure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The BOK's oversight role should, at a minimum, include a responsibility for ensuring the smooth operation of the Korean payment system.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giving the BOK a mandate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payment system. • Accompanying legislative powers should also be introduced to ensure that the BOK has the ability to carry out its mandate. These should include the ability to require relevant data from payment system participants, set technical and other standards (such as membership standards) relating to the exchange and settlement of payments, and issue directions to payment system participants that are not complying with its standards. These measures could be implemented via amendments to the *Bank of Korea Act*, or through separate legislation dealing with payment system oversight.

C. Authorities' response

154. **The BOK was in broad agreement with the assessment**. With regard to having an explicit legislative mandate specifying the responsibilities and powers of the BOK for payment system operation and oversight, the BOK will strive to have these provisions inserted into the *BOK Act* at some future date when a review of the *Act* or other relevant legislation is undertaken.

155. **The BOK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already introduced various arrangements for the substitution of promissory notes, such as Corporate Procurement Loans, Electronically-Processed Secured Receivables Loans, Corporate Procurement Cards, and Electronic Receivables System for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The BOK will continue to support these arrangements for a further substitution of checks and bills, including promissory notes. Serious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implementing the recommended actions, in order to reduce the value of payments cleared through the check system.

V.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Code of Good Practices on Transparency i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A. Transparency of Monetary Policy[23]

General

156. **The *Bank of Korea Act* defines the objectiv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Bank of Korea (BOK), and requires the BOK to set a price stability target each year in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to formulate and implement an operational plan to achieve this target**. The BOK is required to publish monthly balance sheets and an annual balance sheet, as well as an annual report. The BOK is required to submit a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once a year on the implementation of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and the Governor is required to appear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o discuss the report. The internal auditor of the BOK is required to submit a comprehensive audit report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MPC on an annual basis, and the BOK must be audited by the National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official government auditing body) each year.

Main findings

157. ***Clarity of roles, responsibilities, and objectives of the central bank for monetary policy***. In general, the BOK practices a high degree of transparency in most aspects of its operations. There are a few areas where further steps could be taken to improve transparency, as discussed below. The BOK has a set of internal procedures in place that govern procurement, which are not publicly disclosed, but are provided to prospective bidders and are available to interested parties upon request.

158. ***Open process for formulating and reporting monetary policy decisions***. While the *BOK Act* requires an annual target for inflation, in practice, the operating horizon of monetary policy is often outside the target period, because monetary policy decisions will have limited impact on inflation in the remainder of the year, but a potentially significant impact on inflation next year. The adoption of a medium-term target by the MPC partly compensates for this problem. This complexity in the inflation targets and the resulting potential for public misunderstanding is a consequence of the BOK Act rather than BOK practices, and the BOK is seeking to improve the Act in due course. The BOK consults with commercial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on a consistent basis, providing them with a broad description of the proposed changes. These consultations usually occur within one to three months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change.

---

[23] The assessment was undertaken in October 2001 by a three-person team: Matthew T. Jones, Tomás J. T. Baliño, (both IMF), and Pedro Teixeira (European Central Bank).

159. ***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Monetary Policy***. The statistical releases of the BOK meet almost all of the requirements of the IMF's 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SDDS) for the coverage, periodicity, and timeliness of data and for dissemination of advance release calendars, with the exception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The BOK intends to publish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data for 2002 by June 30, 2003. The balance sheets presented in the BOK's *Annual Report* are in summary form only, and do not provide a detailed picture of the balance sheet. The accounting rules followed by the BOK in preparing its balance sheets are not publicly disclosed.

160. ***Accountability and assurances of integrity by the central bank***. The BOK also has its own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regarding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matters, accounting, and welfare issues. These intern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not published or available to the public. There are no general legal protections for BOK staff.

Table 5.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MF's MFP Transparency Code Practices—Monetary Policy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I. Clarity of Roles, Responsibilities and Objectives of Central Banks for Monetary Policy	• A clearer explanation of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governing BOK commercial transactions could enhance the quality of disclosure of the BOK's activities. This could include the disclosure of procurement procedures and guidelines.
II. Open Process for Formulating and Reporting Monetary Policy Decisions	• The BOK's 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with an annual inflation target and a medium-term inflation target, could be made more transparent by modifying the BOK Act and accompanying regulations to allow for a longer time horizon for the inflation target. • The BOK could consider consulting with a wider range of potentially interested parties on technical changes to regulations. This could be achieved, for example, by posting the text of proposed changes in regulations on the website and inviting public comments within a specified time period, for all proposed changes.
III. 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Monetary Policy	• The BOK could provide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data on a more timely basis, in order to comply fully with the requirements of SDDS.
IV. Accountability and Assurances of Integrity by the Central Bank	•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of the BOK that deal with substantive policy issues may warrant publication: for example, the internal rules of the MPC allow the MPC to not disclose all or part of the content of the minutes on the basis of financial stability considerations, or the accounting rules of the BOK that are relevant for assessing the auditing procedures of the BOK. Public disclosure of these types of regulations can help assure the public that the BOK has adequate procedures and processes in place to ensure the integrity of its operations.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IV. Accountability and Assurances of Integrity by the Central Bank (continued)	• Disclose of additional information on auditing policies and processes (including accounting rules) the BOK follows in preparing its financial statements could help to improve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operations of the BOK. • The BOK could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extent of legal protections and prescribed standards of conduct for the MPC and staff of the BOK, for example, in a separate dedicated document on staff accountability made available on its website.

Authorities' response

161. **The BOK was in broad agreement with the assessment, and intend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heighten transparency in monetary policy. Regarding the process for formulating monetary policy, the *BOK Act* requires the BOK to set an annual inflation target.** Although the medium-term target is not required by law, it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since 2000. According to the BOK, the medium-term target is intend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 annual target. Currently, the mid-point of the annual inflation target is within the range of the medium-term target. The BOK provides a detailed background explanation of the annual and medium-term inflation targets in its various publications, including the *Annual Report*, the *Monetary Policy Report*, and press releases.

162. **Regarding changes to regulations, the BOK consults with commercial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most cases, and reflects their suggestions and ideas when amending monetary policy related regulations.** In the opinion of the BOK, when major matters are to be amended, it follows reasonable procedures for gathering the opinion of the financial community. The BOK plans to publish the accounting rules, policies, and footnotes relating to financial statements from fiscal year 2003.

B. Transparency of Payment System Oversight[24]

General

163. **The BOK is the public sector agency responsible for the oversight of the Korean payment system.** Under the *Bank of Korea Act*, the BOK has the authority to operate and manage payment systems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its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In December 2001, the BOK's Monetary Policy Committee (MPC) passed a new regulation—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and Oversight of Payment Systems*—that,

[24] The assessment was undertaken in October 2001 by a three-person team: Matthew T. Jones, Anne-Marie Gulde (both IMF), and Greg Johnston (payment system expert, Reserve Bank of Australia).

among other things, sets out BOK's oversight objectives and requires the Governor to submit an annual report to the MPC on the BOK's oversight activities.

Main findings

164. ***Clarity of roles, responsibilities, and objectives of financial agencie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ayment system oversight is largely defined in the *Bank of Korea Act* and 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and Oversight of Payment Systems*. The *Regulation* sets out the BOK's payment system objectives and reporting requirements. It also seek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BOK to require data and reports from payment system participants, conduct inspections, and impose sanctions or corrective measures on payment system operators or participants that violate its regulations or rules. However, this regulation is not underpinned by legislation.

165. ***Accountability and assurance of integrity by payment systems oversight agencies***. The BOK has its own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regarding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matters, accounting, and welfare issues. These intern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not published or available to the public. The accounting rules of the BOK are also not published. They follow the general accounting rules in place for government agencies. There are no general legal protections for BOK staff, and no disclosure of this lack of protection.

Table 6.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MF's MFP Transparency Code Practices—Payment Systems Oversight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V. Clarity of roles, responsibilities and objectives of payment systems oversight agencies	• The BOK should be provided with a legislative mandate for overseeing the Korean payment system. The BOK's policy objectives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legislation, along with associated power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nd processes to ensure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These arrangements could be set out in the *Bank of Korea Act* or in separate legislation dealing with payment system oversight.
VIII. Accountability and assurance of integrity by payment systems oversight agencies	•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of the BOK that deal with substantive policy issues could be disclosed. These could include internal governance procedures for managing risks associated with its trading and other operations, policy development and approval procedures and the accounting rules and auditing procedures of the BOK. Public disclosure of these types of regulations can help assure the public that the BOK has adequate procedures and processes in place to ensure the integrity of its operations.

Authorities' response

166. **The BOK was in broad agreement with the assessment.** With regard to having an explicit legislative mandate specifying the responsibilities and powers of the BOK for payment system operation and oversight, the BOK will strive to have these provisions inserted into the *BOK Act* at some future date when a review of the *Act* or other relevant legislation is undertaken. The BOK plans to publish the accounting rules, policies, and footnotes relating to financial statements from fiscal year 2003. The BOK will also expand the public disclosure of internal governance procedures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to assure the public of the integrity of its operations.

C. Transparency of 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Supervision[25]

General

167.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AEFSO*)** establishes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s a unified regulator for Korean financial markets, covering banking, insurance, securities market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e Act states that the objective of the FSS is to examine and supervise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directions of the FSC or the SFC.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key financial agencies (the FSC, the SFC, the FSS, the BOK, the KDIC, and the MOFE) are also defined in the *AEFSO*.

Main findings

168. ***Clarity of roles, responsibilities, and objectives of financial agencies.*** The broad objectives for the FSC and the FSS are clearly defined in the AEFSO. Procedures for appointment, terms of office, and any general criteria for removal of the heads and members of the governing bodies of financial agencies are defined in AEFSO. The objectives are elaborated in speeches, articles and public documents issued by the FSC and the FSS. The FSC and FSS submit to an annual audit and inspec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receive National Assembly requests for information and testimony from officials. The AEFSO is available from the FSS in hard copy and on its website.

169. **For insurance, the FSS and the Korean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work closely together on aspects of product supervision although the KIDI is not a fully authorized self-regulatory organization.** The KIDI produces an annual report on its operations with respect to these and other aspects of it's work.

170. ***Open process for formulating and reporting of financial policies.*** The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the conduct of financial policies is outlined in the AEFSO, with operating procedure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ssued by the FSS and made available in

[25] The combined assessment was undertaken in April and October 2002 by a team consisting of Tomás J.T. Baliño, Matthew T. Jones, Greta Mitchell Casselle (all IMF); Larry Promisel, and Craig Thorburn (World Bank).

hardcopy and on the website. Policies, objectives, and changes to regulations are explained in a variety of publications available from the FSS in hard copy and on their website. For proposed substantive technical changes to the structure of financial regulations, industry consultation is conducted, although the FSS could consider consulting with a wider range of potentially interested parties by inviting public comments within a specified time period, for all proposed changes. The FSC discloses the existence of memoranda of understanding with foreign supervisory authorities in the weekly newsletters and on its website.

171. ***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financial policies***. The FSS maintains an extensive public information service that publishes and disseminate press releases and reports on financial supervisory policies to the public. The FSS publishes an *Annual Report*, which provides a broad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dustry; a Weekly Newsletter, which contains articles discussing broad trends in the industry; press releases about specific development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a Monthly Financial Statistics Bulletin with aggregate data on financial institutions. All of these publications are available in hard copy and on the extensive FSS website. Senior officials hold press conferences, deliver lectures, give interviews and attend public meetings of industry bodies, with the text of these public addresses generally made available on the FSC or FSS website.

172. ***Accountability and assurances of integrity by financial agencies***. The FSC/FSS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twice a yea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during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exchange views with members of the Assembly on the state of the financial system. The FSS is audited every year by the National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The FSS does not publish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but they do follow the general accounting rules in place for government agencies. The FSS discloses a summary balance sheet and income statement in its Annual Report. It also has its own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regarding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matters (including rules governing conflicts of interest), accounting, and auditing arrangements. The full range of intern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not published or available to the public. There are no legal protections for officials and staff of government agencies. The Legal Affairs Office of the FSS defends lawsuits brought against the FSS and its staff pertaining to the official conduct of their duties.

Table 7.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MF's MFP Transparency Code Practices—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Supervision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V. Clarity of roles, responsibilities and objectives of financial policies agencies	• Greater clarity and mor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role and operations of the KIDI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FSC/FSS would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is important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VI. Open process for formulating and reporting of financial policies	• The FSS could consider consulting with a wider range of potentially interested parties on technical changes to regulations. This could be achieved, for example, by posting the text of proposed changes in regulations on its website and inviting public comments within a specified time period, for all proposed changes.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VIII. Accountability and assurance of integrity by financial agencies	• The FSS should publish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more detailed balance sheets that provide the breakdown of expenses and sources of income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FSS internal operations. In addition, disclosure of the FSC/FSS accounting rules and policies could help improve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s an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FSC/SFC/FSS. • Provide information on the internal governance procedures, standards of conduct and conflict of interest rules in place for executives and staff, for example, in a separate dedicated document on staff accountability made available on the FSC/FSS website. • Provide information on the extent of legal protections of the executives and staff, for example, in a separate dedicated document on staff accountability made available on its website.

Authorities' response

173. The FSC/FSS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the market-driven supervision system by encouraging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all the interest parties in the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FSC/FSS has established the appraisal system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policy and the advisory committee for financial soundness.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supervision policy have been enhanced by reflecting their feedback. In addition, the FSC/FSS will implement a new system to receive consultation papers from the market participants and scholars whenever the FSC/FSS try to set out new financial measures or strengthen the current ones.

174. The FSC, as a government agency, sets up its budget through legal procedures. Plus,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 the FSC is obliged to submit financial statements to the National Audit Committee for audit and file the audit result to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ollowing fiscal year. SFC operates on the FSC's budget since they are not separate administrative entities.

175. The FS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requires and approval by the FSC. In addition, the FSS is already getting an annual audit by a private audit firm and discloses, or a regular basis, financial and budget information, including its financial statements on the web site.

176.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SC/SFC/FSS strictly observe accounting rules and the auditing and disclosure of the internal operations are being practiced in a transparent manner.

D. Transparency of Deposit Insurance[26]

General

177. The KDIC was created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DPA) of 1995 with the objective of operating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prescribed in the Act. The broad objectives, institutional framework, modalities of accountability, and procedures for appointment and removal of senior officials are defined in the DPA and in the *Public Fund Management Special Act* (PFMSA). Copies of the DPA and PFMSA ar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 which is available in hardcopy and on the website. The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the operations of the KDIC is specified in the DPA and PFMSA and their associated enforcement decrees. Major policy changes are announced and explained via press releases at the conclusion of meetings of the Policy Committee, and in regular interviews and speeches by the President of the KDIC. The KDIC also describes its objectives, performance, and policy changes in its *Annual Report*. The KDIC provides extensive, detailed information on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insured institutions on its website and in its *Annual Report*, disaggregated by type of financial institution, by type of financial support, by month, and by individual institution.

Main findings

178. ***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financial policies***. Senior officials of the KDIC appear in the media and give speeches and interviews. The transcripts of such interviews are disclosed in some instances on the KDIC website. A presumption in favor of disclosure of the text of public statements by senior agency officials would be helpful to ensure equal access to the statements of senior officials.

179. ***Accountability and assurances of integrity by financial agencies***. The accounting rules of the KDIC are not published. The accounting principles and rules utilized by KDIC are basically the same as the Korean GAAP with minor discrepancies. Additional information on discrepancies between the KDIC's accounting rules and Korean GAAP accounting rules and policies would be helpful. A more detailed breakdown of operating expenses and more extensive use of accompanying not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would enhance the transparency of operations.

180. **In general, the KDIC does not provide legal protection for the executives and staff**. However, in respect of specific circumstances related to staff of KDIC assigned as trustees of bankruptcy estates or management supervisor of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KDIC does provide legal protection as they conduct relevant business under the guidance of the KDIC even though the business is conducted outside of KDIC. The internal regulations regarding KDIC staff, such as the code of conduct for KDIC employees are not publicly disclosed.

---

[26] The assessment was undertaken in October 2001 and October 2002 by a four person team: Tomás J. T. Baliño, Matthew T. Jones, and Greta Mitchell Casselle (all IMF), and Pedro Teixeira (European Central Bank).

Table 8.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IMF's MFP Transparency Code Practices—Deposit Insurance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VII. 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deposit insurance policies	• A presumption in favor of disclosure of the text of public statements by senior agency officials would be helpful.
VIII. Accountability and assurance of integrity by deposit insurance agencies	• Public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internal governance procedures and auditing arrangements could help assure the public that the KDIC has adequate procedures and processes in place to ensure the integrity of its operations. • The KDIC could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ndards of conduct and conflict of interest rules in place for executives and staff, for example, in a separate dedicated document on staff accountability made available on its website. • The KDIC could provide information on the extent of legal protection of the executives and staff, for example, in a separate dedicated document on staff accountability made available on its website.

Authorities' response

181. **In terms of basic accounting rules or "Criteria for Account Settlement," they have been disclosed in the Annual Reports since 2000**. As the governing accounting principles and rules utilized by KDIC are basically the same as the Korean GAAP with minor discrepancies, KDIC does not necessarily believe that any further disclosure is necessary for enhancement of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KDIC accounting practices. In terms of internal governance procedures, the KDIC is considering limited disclosure of some internal governance procedure and auditing arrangements. Furthermore, KDIC views the two items as rather proprietary to each individual organization. In terms of standards of conduct for employees, the KDIC does have a "code of ethical conduct" and will consider posting it on its website. In terms of legal protections for staff, the KDIC is considering disclosure the extent of specific circumstances whe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for staff of KDIC assigned as trustees of bankruptcy estates or management supervisory of failed institutions.

VI.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82. **This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was performed as part of the joint IMF/World Bank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conducted during April 11–23 in Seoul.[27] The assessment was conducted by determining the

[27] Behdad Nowroozi from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of the World Bank prepared the assessment, based on information drawn from the template completed by Professor Kon Sik Kim for the World Bank and technical discussion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the Korea Stock Exchange (KSE), the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KSDA),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ICPA),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The (continued)

levels of observance with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OECD Principles*"). The assessment also identified areas where further development may be appropriate.

A. General

183. **For the purpose of the *OECD Principles*, corporate governance is "that structure of relationships** and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among a core group consisting of shareholders, board members, and mangers designed to best foster the competitive performance required to achieve the corporation 's primary objective."[28]

184. **Korea's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has been characterized by affiliation and cross-ownership among firms**. Families that run chaebol own far less than 50 percent of related companies, but they have had almost total control over the combined business group. Prior to 1998, ownership concentration combined with weak protection of outsider shareholders, an uncompetitive financial system, and opportunities for malfeasance and corruption by powerful insider shareholders, had led to corporate inefficiencies. In many instances, there had been little distinction between managers and owners. Collusion between chaebol and the government had further exacerbated failures of corporate governance. Large shareholders had been reluctant to install mechanisms that could erode their control and the benefits it brings.

185. **Since 1998, Korea has taken important steps to address corporate governance weaknesses**. The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has been strengthened significantly. Duties of directors on the boards of listed companies have been clarified. A 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issued.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have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reduction of thresholds for the exercise of certain rights. There has been good progress in upgrading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and practices and strengthening underlying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setting standards and ensuring compliance: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have been improved significantly and are now largel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KASB, an independent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is developing and issuing standards. The FSC/FS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role of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as been strengthened. While significant improvements have been made, efforts should continue to further improve accounting standards as well as accounting and auditing practices.

---

assessment is also based on interviews conducted with private sector firms, accounting firms, investment bankers, rating agencies, and shareholder activists. Excellent cooperation was received from all agencies.

[28] A report to the OECD by the Business Sector Advisory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 April 1998.

B. Main Findings

186. **The reform agenda for corporate governance remains unfinished**. In order for Korea to deepen and strengthen its equity market, it needs to build on the excellent progress made to date and continu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other OEC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Going forward, Korea needs to deepen the progress made in improving financial transparency and shifting corporate culture in two directions: the separation of management from ownership, and the maximization of shareholder value rather than corporate size.

187. **While formal corporate governance rules may not now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other OECD countries,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often fall short of the spirit, if not the letter, of the *OECD Principles***. The challenge now lies in implementation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legislative changes to improve the corporate culture and practices. Beyond the changes in legislation affecting corporate governance, the Government and the business community should take additional steps to change incentives and further promote transparency of business practices, particularly among chaebol groups; to strengthen competition policies, in order to expose chaebol and firms to stricter market discipline; to increase and enforce shareholder rights; and to improve disclosure and monitoring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While significant improvement has been made to improve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efforts should continue to further improve accounting standards and improve accounting and auditing practices.

Rights of shareholders

188. **Shareholder rights have been strengthened significantly to allow reduced levels of shareholdings for assertion of certain rights** such as demanding removal of directors and auditors, seeking injunctions against directors, initiating a derivative lawsuit,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inspecting the account books of a company. Cumulative voting is now permitted, unless explicitly revoked in a company 's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le significant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increase minority shareholder rights (e.g., by lowering or eliminating threshold ownership requirements) and the ease with which shareholders exercise those rights, further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se could include changing the incentives to make cumulative voting more appealing for large listed companies as a means of allowing minority shareholders a greater voice in the selection of directors (where a certain percentage of shareholders request it). Currently, more than 80 percent of listed firms have opted out of cumulative voting. Additionally, further step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process for nomina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by, for instance, requiring that at least two-thirds of members of outside nomination committees be independent directors.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189. **While derivative actions are allowed, these are costly and therefore have been limited so far to only a few cases**. The redress available to shareholders if their rights are violated remains limited. There is no cost-effective way for shareholders to seek redress.

There is an urgent need to introduce class action lawsuits by shareholders and investors against directors, managers, and auditors for breaches of duty and violations of the law.[29] The draft law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allow class action lawsuits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widespread in Korea, but since they involve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ore often affiliated persons, rather than directors, they are not covered by the Commercial Code. Further step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directors,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other related parties make full disclosure to the board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dditionally, the accounting standard concern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need to be made full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ole of stak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190.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who play a key role in corporate governance in many OECD countries, is an area tha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This could be achieved, for example, through pension system reform to encourage further capital market development. Furthe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how to better ensure the rights of stakeholders and their protection in the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Disclosure and Transparency

191. **Large chaebol have been required to prepar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since the year 2000.** However, the transparency of related party and conflict-of-interest transactions within the chaebol, particularly between unlisted subsidiaries and third parties that may not be at arms-length, remains a challenge. Whil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for large chaebol attempt to capture accounting information, non-accounting information may not be easily available or reliable. While holding companies are allowed, only a few have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improve transparency and disclosures of chaebol-affiliated operations, several measures could be considered, including changing the incentives for large chaebol to establish holding companies (e.g., through lower taxes), and a shortening of the period for preparation of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fter the close of a financial year.

192. **Listed companies are now required to produce quarterly reports.** Further efforts wi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listed companies report regularly to shareholders on the extent to which their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conform to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Code of Best Practice for Corporate Governanc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193. **Large listed companies have been required to establish audit committees of the boards of directors.** However, the concept is new and audit committees are generally perceived to be neither effective nor adequately equipped to effectively discharge their oversight responsibilities. Efforts should continu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udit committees, including measures to clarify and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audit committee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replace statutory auditors with audit

[29] The draft class-action law has stall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02, but there has been an announcement by the new president that it will be reintroduced in 2003.

committees for smaller companies over time; and upgrade the skills and knowledge of audit committee members.

194. **Securities laws have been amended to require that at least 25 percent of boards of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be outside directors.** The statutory minimum is fifty percent (three outside directors at a minimum)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large listed companies. However, the concept of independent (outside) directors is new and still not well rooted in Korea. Directors may not know what is expected of them and how they should exercise their duties. There are efforts to establish an institute of directors to train directors on their duties, responsibilities, and accountabilitie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such an organization and training of directors, and these efforts need to be expedited. Additional efforts could include measures to: expand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to shareholders and make it explicit under the law; further expand and clarify the right of directors to access all corporate information necessary to perform their duties; and limit liability of independent directors in cases in which they have acted in good faith.

Table 9.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I. Rights of Shareholders	• Make cumulative voting more appealing for large listed companies as a means of allowing taking additional steps to allow minority shareholders a greater voice in the selection of directors, including making cumulative voting more appealing for large listed companies. • Introduce, as soon as possible, class action law suits by shareholders and investors against directors, managers, and auditors for breach of duty and violation of the law. • Consider further steps to facilitate voting by foreign investors. • Consider allowing shareholders to cast vote electronically. • Improve the process for nomina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by, for instance, requiring that at least two-thirds of members of outside nomination committees be independent directors.
II.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 Introduce, as soon as possible, class action lawsuits by shareholders and investors against directors, managers, and auditors for breach of duty and violation of the law. • Consider allowing shareholders to cast votes electronically. • Require that directors,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other related parties make full disclosure to the board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 Consider further steps to strengthen rules governing self-dealing and insider trading by, for instance, excluding inside directors from decisions that involve potential conflict-of-interest 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III. Role of Stak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 Strengthen stakeholders' rights and their protection in the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 Promote participation of activ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pension funds in the equity market. Further strengthen institutional investor base through pension system reform to spur capital market development and improved governance.

Reference Practice	Recommended Action
IV. Disclosure and Transparency	• Further improve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ing practic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s. • Further improve quality of disclosure in annual and quarterly reports issued by listed companies,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related party transactions, conflicts of interest on the part of directors and parties related to directors or managers, non-financial information, material foreseeable risk factors, and compensation of individual directors. • Consider requiring large listed companies to include in their annual reports an assertion on internal controls and their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such an assertion should be certified by external auditors. • Change the incentives for large chaebol to establish holding companies, and shorten the period for preparation of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fter the close of a financial year.
V.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 Continue to improve effectiveness of audit committee, including measures to clarify and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audit committees. • Replace statutory auditors with audit committees for smaller companies over time, and upgrade the skills and knowledge of such committee members. • Further strengthe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ncluding expanding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and making it explicit under the law and limiting liability of independent directors in cases in which they have acted in good faith. • Establish an institute of directors to offer directors' certification program for training of directors, particularly independent directors. • Further expand and clarify the right of directors to access all corporate information necessary to perform their duties. • Further clarify what constitutes independence and conflicts-of-interest for individual directors.

C. Authorities' response

195. The Korean government will make sure that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initiated in the late 1990s is effectively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will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ast reform. Furthermore, additional measures will be taken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f found necessary as a result of evaluation.

196. The government has expressed its strong will to adopt class-action suits, and even the new administration has chosen this matter as one of its top policy issues to pursue once the official term kicks off; however, because of strong resistance coming from the corporate sector, the bill is pen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197. Prior to the enactment of new or revised supervisory regulations, a public hearing is held when needed. Besides, new regulations are being thoroughly reviewed through sufficient review procedures by the public, e.g., Prior Written Notice of Regulation Changes.

VII. Summary Assessment of Observance of the Draft Methodology for Assessing Legal, Institutional and Supervisory Aspects of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30]

A. Overview of AML/CFT Measures

198. **Korea has made recent strides in establishing an AML/CFT framework.** In November 2001,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ing Act* (FTRA) and the *Proceeds of Crime Act* (POCA) came into effect. The FTRA established th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and instituted a system of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s, securities firms, insurance firms and moneychangers. The POCA criminalized money laundering on the basis of a broad category of predicate crimes. There is a broad range of legal provisions for confiscation of assets associated with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B. Legal and Institutional Setting

199. **The KoFIU is at the center of Korea's AML/CFT institutional framework.** Although the KoFIU is established withi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the FTRA provides that the KoFIU shall independently perform its authorized duties and that its staff shall not work outside of the KoFIU. The KoFIU has around 60 staff members drawn from MOFE,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other agencies. Establishment within MOFE formally means that the KoFIU's annual budget is allocated b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within the total budget of MOFE. However, the mission understands that MOFE is not entitled to draw on the specific budgetary allocation made to the KoFIU. The FTRA provides that the KoFIU shall report annually to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re is no legal provision for the KoFIU to report to MOFE, the informal influence of MOFE on the KoFIU operations cannot be ruled out.

200. **Korea has a unified financial sector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in which the FSC and FSS oversee the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sectors.** However, the risk in the Korean AML/CFT institutional structure is that the KoFIU obtains undue prominence to the detriment of the rol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regulatory/supervisory agencies.

---

[30] This assessment was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s and criteria described in the April 2, 2002 draf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World Bank Methodology for Assessing Legal, Institutional and Supervisory Aspects of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The assessment took place in April and October 2002 as part of the IMF-World Bank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and was conducted by Mr. Thomas Laryea (April mission) and Mr. Stuart Yikona (October mission), both from the Legal Department of the IMF.

C. Main Findings

201. **The FTRA specifically charges the KoFIU with the tasks of: (i) gathering, analyz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STRs)** an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ports; (ii) conducting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practices on STRs and adherence to internal AML guidelines and training requirements; and (iii) cooperating with foreign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The KoFIU has delegated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practices on STRs and internal AML guidelines to the respective supervisory agencies including the FSC/FSS with respect to banks, securities and insurance firms and to the BOK with respect to money changers.

202. **One of the core functions of the KoFIU is the operation of a computerized database to analyz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STRs and other sources**. The computer database became operational in September 2002, although it is too early to assess its impact. Additionally, the strategic analysis system of suspicious transactions became operational in November 2002. The FTRA authorizes the KoFIU to provide STRs with the KoFIU's own supporting analysi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action. The FTRA define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includ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FSC.

203. **The KoFIU is also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moting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overseas agencies in order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n this regard, the KoFIU on June 5, 2002 joined the Egmont Group, established to fo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The KoFIU has also entered into a memorandum for understanding with its counterpart in Belgium and is considering other international cooperative agreements. Furthermore, in August 2002, Korea engaged in an on-site examination by the Asia Pacific Group of the money laundering framework including financing of terrorism, indicating Korea's willingness to engage in international dialogue to enhance its AML/CFT regime.

204. **Although much progress has been made within the last year, the Korean AML/CFT system is still in its infancy. It is notable that STRs have been the main focus**. Under the FTRA, STRs are submit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only to the KoFIU, which then conducts analysis and investigation that may lead to referral of the matter to a "law enforcement agency" (in principle, including a regulatory agency). The current practice of the KoFIU is to analyze STRs from the perspective of advancing criminal prosecutions, leading the KoFIU to provide STRs with supporting analyses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system does not take full advantage of the multifaceted nature of STRs in supervising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reby bolstering the defenses against us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in AML/CFT practices) in addition to being a tool for the *ex post* detection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transactions.

205. **Under the FTRA, there is a monetary threshold on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of W 50 million/$10,000**. The law does provide that related transactions should be combined for meeting the threshold and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may* file STRs where the transaction value does not reach W 50 million /$10,000. However, the threshold

inevitably acts as an inappropriate benchmark for the conduct of illegal/money laundering transactions and for their reporting.

206. **In contrast to the focus on STRs, the rules on customer due diligence, integrity standards of participants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general record keeping requirement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integrated into AML/CFT system**. Where the appropriate rules and formal guidelines in the AML/CFT system have been put in place, there are still questions as to whether the operational practices are in line with the formal rules. The enhancement in supervision by the FSS of AML/CFT practic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mid-2002, with support from the KoFIU, should help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written regulations and industry practice. The limitation that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nd Guarantee of Security Act* (*Real Names Act*) imposes on financial institutions' disclosure of customer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risks compromising the iden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incidents and impedes international cooperation.

207. **CFT has not received requisite attention in the Korean AML/CFT system**. CFT is obliquely addressed by provisions in the *Punishment of Violence Act*, 1962 (as amended)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1987 (as amended). Furthermore, the POCA incorporates CFT within the scope of predicate crimes. However, it is notable that relatively little regard has been given to CFT issues in the supervisory and industry guidelines associated with the recent legal reforms. The absence of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by Korea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Terrorism Convention), which Korea has signed, contributes to the deficiencies in the incorporation of CFT in the AML/CFT system. The Korean authorities are currently preparing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errorism Convention.

Table 10. Recommended Action Plan to Improve Observance of the Draft AML/CFT Guidelines

Reference Principle	Recommended Action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Customer due diligence	• Elaborate *Real Names Act* regulations to require an additional verification by financial service providers (FSPs) where doubts arise as to the original customer identification. • Extend customer identification provisions of the *Real Names Act* to branches or majority owned subsidiaries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 Require that FSPs note originator information and related messages on funds transfers documentation through the payment chain.
Record keeping	• FSC/FSS should introduce a comprehensive requirement that FSPs maintain records on customer identity for at least five year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an account or business relationship (or longer if requested by an authorized government official) and that these documents b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e FSS.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ing	• Introduce regulations to require broad scrutiny by FSPs of complex or unusual transactions. • The W 50 million/$10,000 threshold for the mandatory filing of STRs should be eliminated and replaced with a criterion of suspicion (explicated through guidelines). • Regulations should require enhanced scrutiny of funds transfers that do not contain originator information. • STR guidelines should be thoroughly updated to address CFT issues. Furthermore the guidelines should be more nuanced in countering the traditional practice of FSPs of not

	inquiring into their customers' business affairs.
AML/CFT internal controls	• The FTRA provisions on the STR Reporting Officer should be rationalized with the other provisions on internal controls and compliance officers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Sanctions	• Scrutiny of general record keeping practices should be enhanced in FSS inspections with regulatory sanctions for violation.
Integrity standards	• Require that the fit-and-proper tests with respect to appropriate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s, insurance firms and securities firms be extended to managers and significant shareholders, including for shell corporations that transact business, 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s and charitable organizations.
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 Implementation of the Terrorism Convention (through the proposed Anti-Terrorism Act) should be expedited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or assets	• Rules for confiscation of assets associated with terrorism financing should be explicitly provided for in the proposed Anti-Terrorism Act.
Process for handling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 Explicit restatement of (i) the legal protection of KoFIU employees and employees of regulatory/supervisory agencies for actions while carrying out their official duties; and (ii)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KoFIU from MOF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ML/CFT matters	• Remove uncertainty as to the legal ability of FSC/FSS to provide customer information to foreign counterparts though a reinterpretation or an amendment to the *Real Names Act*.
FOR AML/CFT CORE CRITERIA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 KoFIU and industry guidelines should underline that the roles of the supervisory agencies and the FSPs are integral to the AML/CFT framework, should give clear direction to the FSC/FSS in supervising compliance with AML/CFT precepts, and should emphasize that the front-line responsibility is with FSPs for guarding against their use i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 The KoFIU should take a more proactive role in AML/CFT training and education within the supervisory agencies and FSPs.
Customer identification and due diligence	• Customer identification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should be more closely integrated into the AML/CFT framework. KoFIU and industry guidelines on AML/CFT should more fully explain the importance of customer identification and due diligence. Scrutiny of FSP's practices in customer identification and due diligence should be enhanced within FSS inspections.
Monitoring and reporting suspicious transactions	• KoFIU guidelines should give clearer direction to the FSC/FSS in inspections of STR practices. The KoFIU should give greater feedback to the FSC/FSS on investigations proceeding from STRs. KoFIU should consider providing identified senior personnel at the FSC/FSS with controlled access to the file of the KoFIU's investigations deriving from STRs.
Record keeping, compliance and audit	• Supervision of record keeping practices by the FSC/FSS should be enhanced,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banks and securities firms.
Cooperation between supervisors/regulators and competent authorities	• Uncertainty as to the legal ability of FSC/FSS to provide customer information to foreign counterparts should be removed though a reinterpretation or amendment to the *Real Names Act*.

AML/CFT MEASURES IN THE BANKING SECTOR	
Customer identification and due diligence	• FSC/FSS regulations should expand the customer identification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for banks, particularly in the following areas: (i) conduct of more extensive due diligence in the case of high-risk customers; (ii) establishment of specific identification procedures when entering into activity with non-face-to-face customers; (iii) refusal to enter into or continue a correspondent bank relationship with a bank incorporated in a jurisdiction in which it has no physical presence and which is unaffiliated with a regulated financial group; (iv) paying particular attention when continuing relationships with respondent banks located in jurisdictions that do not apply sufficient AML/CFT measures; (v)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correspondent banking services for wire transfer services and with respect to correspondent accounts that might be used directly by third parties to transact business on their own behalf; and (vi) requiring that banks include accurate and meaningful originator information on funds transfers and related messages.
Monitoring and reporting suspicious transactions	• A specific requirement that banks monitor accounts on a global consolidated basi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Regulations on Supervision of Banking Business.
Record keeping, compliance and audit	• The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Banking Business should require that banking groups apply "Know Your Customer" standards on a global basis, including requirements for documentation, and compliance testing by the parent.
Cooperation between supervisors/regulators and competent authorities	• Uncertainty as to the legal ability of FSC/FSS to provide customer information to foreign counterparts should be removed though a reinterpretation or amendment to the *Real Names Act*. Explicitly require the FSC/FSS to ensure that home jurisdiction supervisors have on a controlled basis access to information, including from onsite examinations, needed to verify foreign operations' compliance with "Know Your Customer"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home jurisdiction.
AML/CFT MEASURES IN THE INSURANCE SECTOR	
Customer identification and due diligence	• The FSC/FSS regulations should require that insurers have in place due diligence requirements along the lines of "Know Your Customer" rules. Additionally, insurers should be required to (i) determine that the insurance entity establishes to reasonable satisfaction that every verification subject relevant to the application for insurance business actually exists; (ii) require that the insurance entity does not enter into a business relationship or carry out a significant one-off transaction unless it is fully implementing the above systems; (iii) require that an insurance entity carries out verification in respect of the parties entering into the insurance contract; and (iv) if payments are to be made to persons other than the policyholder, the proposed recipients should be the subjects of verific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suspicious transactions	• Impose specific requirements that insurers (i) are alert to the implications of the financial flows and transaction patterns of existing policyholders; (ii) are extra vigilant to the particular risks from the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second hand endowment policies, as well as the use of single premium unit-linked policies; (iii) check any reinsurance or retrocession to ensure the monies are paid to bona fide re-insurance entities at rates commensurate with the risks underwritten; and (iv) have put in place internal reporting procedures.
Record keeping, compliance and audit	•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documentation and record keeping should be imposed on insurers.
AML/CFT MEASURES IN THE SECURITIES SECTOR	
Record keeping, compliance and audit	• For the internal compliance officer system to be effective, it is critical that a compliance officer have adequate resources to monitor firm activities and the authority to ensure that appropriate action is taken by the company against employees who violate FSC/FSS regulations or internal firm policies. The FSS should cover this issue in inspections of brokerage firms. • Computation and reporting to the FSS of net capital should be required more frequently than once a month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et capital ratio method as a systemic risk management tool.

Cooperation with regulators and competent authorities	• Uncertainty as to the legal ability of FSC/FSS to provide customer information to foreign counterparts should be removed though a reinterpretation or amendment to the *Real Names Act*. • Regulations should set out the parameters for access from the FSC/FSS of brokerage records by foreign counterparts.

D. Authorities' response

208. The authorities provided the following comments:

Paragraph 194

"Korea has a unified financial sector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in which the FSC and the FSS oversee the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sectors."

Since Korea was at its rudimentary stage with regard to implementing AML/CFT system, KoFIU had to imply imperative and unavoidable measures to perform the role of a coordinator among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system stabilizes, relevant authorities are expected to play a prominent role within Korea's AML/CFT system.

As we view our current progress, the FSC/FSS, in terms of performing their inspection duties with respect to anti-money laundering system, are developing necessary manuals by using knowledge from their own field-experiences, as well as reflecting guidelines that KoFIU had provided to them. With respect to financial institutions, they strive to implement the AML/CFT system by spontaneously establishing a computerized monitoring system for identifying unusual or suspicious transactions.

Paragraph 204

"Although much progress has been made within the last year, the Korean AML/CFT system is still in its infancy."

After conducting its own STR analysis, KoFIU disseminates the results to the law enforcement agency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underlying predicate offense. In the specific cases where STRs are connected with criminal activities originating from predicate offenses related to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system, KoFIU sends the results of their analysis to the FSC/FSS.

The reason why STRs are only submitted to KoFIU in accordance with Korea's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 is to prevent other authorities from misusing the analysis result, which would be detrimental to sound financial activities by the general public.

Paragraph 205

"Under the FTRA, there is a monetary threshold on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of W 50 milliion/$10,000."

At the early stage of introducing the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TR) system a less stringent threshold for suspicious transactions was introduced to minimize the burden by the publ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system stabilizes, however, a plan to lower or abolish the threshold for suspicious transactions is being reviewed.

Paragraph 207

"CFT has not received requisite attention in the Korean AML/CFT system."

Although there is the absence of ratification by Korea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within its current legislation, Korea sufficiently implements international duties such as filing STR and criminalization of terrorist financing, as well as freezing terrorist assets.

Paying attention to terrorist financing issues; KoFIU plans to supplement *Guidelines* or *Examples of STR* with additional materials regarding terrorist financing.

Reference Principle	Recommended Action	Respons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Customer Due Diligence	• Extended customer identification provisions of the *Real Names Act* to branches or majority owned subsidiaries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Recently the competent office reinterpreted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Real Names Act*. As a result, customer identification provisions are extended to foreign branches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ing	• The W 50 million/$10,000 threshold for the mandatory filing of STRs should be eliminated and replaced with a criterion of suspicion (explicated through guideline).	Refer to the above section (3) of our response to Paragraph 205 of the draft ROSC.
AML/CFT Internal Controls	• The FTRA provisions on the STR Reporting Officer should be rationalized with the other provisions on internal controls and compliance officers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Most financial institutions appoint the compliance officer controlling the overall issues of AML/CFT as a reporting officer. In addition, most compliance officers in financial institutions are at managerial level.
Process for Handling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 Explicit restatement of (i) the legal protection of KoFIU employees and employees of regulatory/supervisory agencies for actions while carrying out their official duties; and (ii)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KoFIU from MOFE.	Article 3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 (FTRA) stipulates that KoFIU can independently carry out its duties, and MOFE is not entitled to draw on the budgetary allocation made to the KoFIU.

FOR AML/CFT CORE CRITERIA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 The KoFIU should take a more proactive role in AML/CFT training and education within the supervisory agencies and FSPs.	From December 2001 until January 2003, KoFIU provided a total of 32 training and education seminars. – Consultation meeting with staff and compliance officers (18 occasions) – Seminars on the AML system (4 occasions) – Consultation meeting with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3 occasions) – Working-level employers of FIs (4 occasions) – Tour conference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3 occasions)

IMF의
금융정책 투명성 기준 평가 결과

< IMF의 금융정책 투명성 기준 관련 FSAP 평가내용 >

□ IMF와 세계은행은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의 일환으로 2001.10~2003.1월중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투명성 기준'에 대한 평가 실시

○ 기준에 대한 '준수'(대체로 준수 포함) 평가비율은 90.6%(은행, 증권, 보험감독 평균기준)로 국제기준을 상당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IMF가 2002~2003년중 FSAP 평가한 37개국의 평균(78.1%)보다 높은 수준

○ 이는 우리나라가 '97년말 금융위기 이후 감독시스템, 정보공유체계와 내부통제제도 공시 등의 여러 부문에서 투명성 기준을 향상시킨데 주로 기인

금융정책 투명성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세부항목 기준)

(단위 : 개, %)

구 분	준수 (이행)	대체로 준수	부분적 준수	미준수 (미이행)	해당없음	합 계
은행감독	24 (77.4)	4 (12.9)	3 (9.7)	- (-)	5	36
보험감독	25 (78.1)	4 (12.5)	3 (9.4)	- (-)	4	36
증권감독	25 (75.8)	5 (15.2)	3 (9.1)	- (-)	3	36
비율 평균	(77.1)	(13.5)	(9.4)	(-)	(-)	(100)
주요국 평균[주]	(67.7)	(10.4)	(14.1)	(7.7)	(-)	(100)

주 : 37개국 은행감독, 보험감독, 증권감독의 평균 비율, ( )내는 합계(해당없음 제외)대비 각 항목별 비중
자료 : IMF, "Assesment of the IMF Code of Good Practices on Transparency i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s - Review of Experience", December 23, 2003.

□ '금융정책 투명성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대체로 준수' 이하의 개선을 권고한 평가항목은 4개(대항목 기준)임

개선권고 주요 핵심준칙

평가	핵심준칙	권고사항
대체로 준수	○ 시장친화적 규정변경 (핵심준칙 6.4)	○ 규정개정시 사전에 웹사이트에 개정 내용을 게시하는 등 이해관계인과 공중의 의견을 수렴
	○ 감독기관 재무제표의 감사 (핵심준칙 8.2)	○ 감독당국의 회계원칙을 공시하고, 재무상태를 감사받고 이를 상세하게 공개 ○ 일반인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절차 공시
	○ 감독기관 수입지출내역 공개 (핵심준칙 8.3)	○ 감독당국의 비용과 수입원천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공시함으로써 내부운영의 투명성 증진
부분적 준수	○ 이해상충 등의 공개 (핵심준칙 8.4)	○ 감독당국 임직원의 윤리강령과 이해상충 관련 규정 등을 공시 ○ 감독당국 임직원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정보 공시

< 주요 개선사항 >

□ 시장친화적 규정변경(핵심준칙 6.4)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홈페이지에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감독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2003년 하반기)를 마련

□ 감독기관 재무제표의 감사(핵심준칙 8.2)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2005회계연도부터 안진회계법인으로 부터 재무상태를 감사받고, 이를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

□ 감독기관 수입지출내역 공개(핵심준칙 8.3)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경영공시를 추진(2005년)

○ 경영공시의 주요항목으로는 설립근거, 업무추진계획 등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현황, 인건비현황, 예·결산, 상세한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분석 자료 등이 있음

< 향후 계획 >

□ 이해상충 등의 공개(핵심준칙 8.4)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내부통제절차, 이해상충관련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임직원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먼저 관련법규에 반영한 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

바젤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 이행 현황

Ⅰ. 규범 개요

1. 제정 배경

□ 바젤위원회는 1997. 9월 **은행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을 제정

* 바젤위원회의 G-10 회원국이 제정작업에 참여하고 16개 국가(칠레, 중국, 러시아, 홍콩, 한국 등)는 의견 개진

2. 성격

□ 핵심준칙은 **은행감독의 기본적 준거**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국 은행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

* 바젤위원회 회원국 및 동 준칙 작성에 의견을 개진한 16개국 감독당국은 모두 동의

○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동 준칙을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감독제도**를 **보강**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는데 활용

3. 주요 내용

□ 핵심준칙은 **효과적인 은행감독에 필요한 25개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

○ 동 준칙은 은행감독 여건(목적, 독립성, 권한, 투명성 등), 설립인가 및 지배구조, 건전성규제, 감독수단, 회계 및 공시, 시정조치 권한, 연결기준 감독 및 감독당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괄

Ⅱ. 최근의 평가 결과

□ 2003. 9월 **IMF**와 **세계은행**은 금융부문평가(FSAP)를 통해 한국의 **은행부문**이 그간의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하는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 **바젤위원회의 핵심준칙**이 **대부분 이행**되고 있으나 일부 추가 개선을 권고

<주요 권고사항>

□ 은행감독 여건(목적, 독립성, 권한, 투명성 등) 관련

○ 감독기관 직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보호 장치** 확보 필요

○ 은행업에 허용되는 활동을 정의하고 이를 인가하는 행위는 금융감독기관의 고유권한이어야 함

□ 인가 및 건전성규제 관련

○ 은행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금융업 근무경력, 교육수준 등 기본적 자질을 포함하여 구체화할 필요

○ 자산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감독 강화

○ **시장리스크**를 평가·감시·통제할 수 있는 감독의 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신BIS협약 도입** 고려

□ 감독수단 및 회계·공시 등 관련

○ 현장검사시 **리스크 중심의 검사**에 주력하고 감독수요에 부합한 검사인력의 운영

○ **경영실태평가 4등급 이하** 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1등급 은행에 대하여도 정기검사 필요

○ 은행에 대한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Ⅲ.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

1. 주요 개선사항

□ 은행감독 여건(목적, 독립성, 권한, 투명성 등) 관련

○ 감독원 임직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행위와 관련된 **소송비용 지원** 및 **변상책임 면제** 등 **임직원 보호장치**를 **내규**에 **반영**('05.2)

□ 인가 및 건전성규제 관련

○ 은행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05.12)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추진

○ 은행의 신용손실 흡수능력 제고 및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충당금 적립**을 **지도**('04.10)하고, **난외계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05.12)

○ 은행의 편중여신 방지를 위하여 **신용파생상품거래의 신용공여한도 규제기준 마련**('06.3) 등 신용공여한도 규제 강화

○ 국내은행의 **시장리스크 측정시 자체 내부모형 사용을 유도**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의 정확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 유도를 위해 **신BIS협약**을 **'08.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04.4)하여 기준 마련 등 준비작업 수행

□ **감독수단 및 회계·공시 등 관련**

○ 검사체계를 **기관별 전담체제(RM)**로 **전환**('05.1)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검사** 실시

○ 리스크관리, IT 등 **전문검사역그룹을 별도 조직으로 편성·운영**('05.1)하여 기능별 전문성을 보완

○ **경영실태평가등급에 따라 종합검사 주기**를 **차등 운영**함으로써 경영부진은행에 대한 검사 강화

○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중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위한 로드맵(안)을 마련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IFRS 도입**을 **의무화**할 예정

2. 개선노력에 대한 자체 평가

□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핵심준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추진

○ 다만,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될 예정

Ⅳ. 향후 이행계획

□ 그동안 **금융부문평가(FSAP)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 **은행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하여 **적격성 심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국내은행에 대한 **신BIS협약**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도입시 영향 분석**과 함께 **은행의 준비상황 지속 점검·지도**

○ **국제회계기준(IFRS)**의 **2011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등

<참고>

은행감독 핵심준칙 항목별 평가('03. 9)

핵심준칙	이행상황 평가				
	준수	대체로 준수	대체로 미준수	미준수	해당 없음
1. 목적, 독립성, 권한 및 자원보유			x		
1.1 목적		(x)			
1.2 독립성			(x)		
1.3 법률 구조		(x)			
1.4 법적 권한	(x)				
1.5 법률적 보호				(x)	
1.6 정보공유			(x)		
2. 은행업 허용 행위	x				
3. 인가기준			x		
4. 소유구조	x				
5. 투자기준	x				
6. 자본적정성	x				
7. 여신정책	x				
8. 자산평가 및 대손충당금		x			
9. 거액신용공여		x			
10. 연결 여신		x			
11. 국가리스크	x				
12. 시장리스크		x			
13. 기타리스크		x			
14. 내부통제 및 감사	x				
15. 자금세탁			x		
16.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x		
17. 경영진 접촉	x				
18. 상시감시		x			
19. 감독정보의 검증	x				
20. 연결감독		x			
21. 회계기준		x			
22. 시정조치		x			
23. 국제 연결감독	x				
24. 모국가의 감독		x			
25. 외국은행 감독	x				

IOSCO의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이행 현황

Ⅰ.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개요

1. 제정 배경

□ 98.9월 IOSCO 연차총회의 의장위원회는 증권규제가 지향하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규제수단의 설정·운용에 대한 기준으로써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을 채택

○ 03년 5월 그간 추가된 IOSCO 보고서와 결의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수정

2. 성격

□ 개별 국가의 증권규제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장려하면서, 증권시장의 규제를 위한 건전성 원칙과 관행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나타냄

○ 국경없는 자본의 이동 등으로 세계가 하나의 투자의 장으로 되는 추세에서 증권규제의 국제적 수렴화의 전형(典型)으로 기능

3. 주요 내용

□ IOSCO 원칙은 증권규제에 관하여 3대 목적(①투자자 보호 ②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 ③시스템 리스크 축소)을 기초로 30개 규제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동 목적달성을 위해 규제원칙이 적절한 법률체계하에서 이행되어야 함

* 규제기관, 자율규제, 규제의 집행, 규제기관간 협력, 발행인, 집합투자기구, 시장중개업, 유통시장,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원칙 등으로 구분

Ⅱ. 최근의 평가 결과

1. 평가 내용

□ 증권규제시스템, 발행·유통시장 및 시장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외국규제기관과의 협력 등 제시된 30개 원칙이 우리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반영된 내용을 평가

○ 각 원칙별로 우리의 일반적인 규제내용을 설명하고 원칙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개별질문사항(202개)에 답변

2. 평가 방법

□ IOSC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체평가기반 프로그램'에 직접 평가내용 및 결과를 입력(06.5~6월중)

3. 평가 결과

□ 대체로 우리의 증권규제 법규내용이 IOSCO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고 있음

○ 다만, '거래소 인가권한 보유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거래소 설립은 인가사항이 아닌 법률상(증권선물거래소법) 설립기관인 점에서 차이가 존재

Ⅲ. 그동안의 이행 노력

1. 주요 개선사항

□ 그동안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 관련 원칙이 금융실명법상 제한으로 미충족 사항이었으나, 06.3월 동 법령 개정으로 미충족을 해소

※ 현재 미충족사항인 '거래소 인가권한 보유'는 단일 거래소 설립주의 입법원칙의 전환이 필요

2. 개선노력에 대한 자체 평가

□ 당초 외국규제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제한하였던 관련법령(금융실명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노력이 있었으며, 아울러 외국규제기관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 MOU체결을 통하여 정보교환 및 감독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Ⅳ. 향후 이행계획

□ 현재 단일 거래소인 증권선물거래소가 IPO를 추진중에 있어 이의 결과에 따라 복수 거래소 인정 등 정책방침이 정하여질 것으로 예상

○ 복수 증권거래소가 인정되면 규제기관이 '거래소 인가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

참 고

규범 항목별 세부 이행 실적

핵심준칙	이행상황 평가			
	이행	부분적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1. 권한	x			
2. 독립성 및 책임	x			
3. 적절한 권한 및 재원	x			
4. 규제절차	x			
5. 비밀유지	x			
6. 자율규제기관의 활용	x			
7.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감독	x			
8. 검사·조사 및 감독권	x			
9. 법적 권한	x			
10. 법적 규제제도	x			
11. 정보공유 권한	x			
12. 정보공유 체제	x			
13. 협조체제	x			
14. 공시	x			
15. 주주 보호	x			
16. 회계 및 감사기준	x			
17. 집합투자자산 규제기준	x			
18. 집합투자자산 고객자산 보호	x			
19. 집합투자자산 정보공시	x			
20. 집합투자자산 기준설정	x			
21. 시장중개기관 진입기준	x			
22. 시장중개기관 건전성 기준	x			
23. 시장중개기관 책임	x			
24. 시장중개기관 퇴출절차 규정	x			
25. 거래시스템 설립			x	
26. 거래시스템 감독	x			
27. 거래 투명성	x			
28. 불공정거래 방지	x			
29. 시장실패에 대한 관리	x			
30. 결제시스템	x			

국제보험감독기구의
보험핵심준칙 이행 현황

Ⅰ. 개 요

1. 제정 배경

□ IAIS*는 **보험감독제도의 선진화** 및 **국가간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94년 이후 보험감독 제도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 제정**을 추진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94년 설립되었으며 130개국 180개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감독관련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 (우리나라는 94년 가입)

○ 97.7월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핵심준칙***을 발표하여 회원국에 준수를 권고

* 최초 제정시에는 감독기구, 인허가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03.10월 리스크관리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현재는 28개 항목으로 구성

2. 성 격

□ **보험감독 및 검사**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님**

○ 그러나 IMF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이 **본 준칙**을 따르고 있고

*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각국의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각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IMF의 금융평가프로그램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으로 99년 도입

○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국내 금융부문 평가시 이의 준수 여부를 감안할 수도 있어 **사실상 국제규범의 역할 수행**

3. 주요 내용

□ **보험감독시스템, 인허가, 건전성 감독기준, 보험영업** 등 **보험감독 및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

Ⅱ. 최근의 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IMF와 세계은행**은 02.4.12-23 기간중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험감독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보험핵심준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

○ **IMF**는 한국의 **보험부문**은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감독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 **전체 17개** 평가 항목중 **15개** 항목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2개** 항목은 **미흡**하다고 **평가**

IAIS 핵심준칙 평가결과

핵심준칙		이행상황 평가				
		준수	대체로 준수	대체로 미준수	미준수	해당 없음
1	보험감독당국의 조직		○			
2	허가	○				
3	**지배구조 변경**				○	
4	지배구조		○			
5	내부통제	○				
6-7	자산, 부채	○				
8	**자본적정성 및 지급능력**			○		
9	파생상품과 부외거래 항목	○				
10-12	재보험, 영업활동, 재무보고	○				
13-14	현장검사, 제재	○				
15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활동		○			
16-17	조정 및 협력, 비밀유지		○			

* 준수 : 10개, 대체로 준수 5개, **대체로 미준수 1개, 미준수 1개**

2. 개선권고 사항

□ **IMF**는 평가후 **3개부문 5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

①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 (준칙 제8조 관련)

○ 보험회사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 **허가제도가 없음**

* 보험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적 통제기능이 없어 부적격자가 보험회사를 인수할 위험을 지적

〈준칙 제8조〉 지배권의 변경 및 사업이전

감독당국은 보험사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여타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안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음
(03.10월 준칙 변경전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② **지배구조 개선** (준칙 제9조 관련)

○ **이사, 집행임원, 보험계리인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

* 이사와 사실상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임원에 대해 임원자격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험계리인의 책임 및 권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

○ **사외이사 결원시** 차기 주주총회 이전에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사외이사 결원시 차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원 발생 이후 차기 주주총회까지 공백이 발생함을 지적

〈준칙 제9조〉 지배구조

감독당국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기업지배 기준의 준수를 감독하여야 함
(03.10월 준칙 변경전에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③ **자본적정성 및 지급여력 감독제도 개선** (준칙 제23조 관련)

○ **지급여력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독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 당시의 지급여력기준 금액은 EU 등 선진국 기준의 약 50% 수준에 불과

○ **계열 회사간 지급여력금액**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보험회사가 출자한 회사에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출자금액 전부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지적

〈준칙 제23조〉 자본적정성 및 지급능력

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가 명시된 지급여력제도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03.10월 준칙 변경전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Ⅲ. 그동안의 이행 노력

1. 주요 개선사항

□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 도입

○ **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보완(03.5)

* 10% 이상 주주 등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03.5월 보험업법 개정)

□ 지배구조 개선

○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임원과 같은 **자격 심사***를 **실시**하고 **선임계리사**** **제도를 도입**, 선임계리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03.5)

* 금융관련 법률위반 여부, 타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지의 여부 등을 심사

**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로 보험업법에 선임계리사의 책임과 권한, 선임 및 해임요건을 규정

□ 자본적정성 및 지급능력제도 개선

① 지급여력기준의 점진적 강화 추진

○ IMF 평가(02.4) 이후 매 반기별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04.3월**부터 **EU와 동일한 지급여력제도 운영**

* EU기준의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우리나라의 수준
(02.9 → **62.5%** , 03.3 → **75.0%**, 03.9 → **87.5%**, 04.3 → **100.0%**)

②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 **경영실태평가***를 통하여 매분기별로 **지급여력비율** 등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검사주기** 및 **투입인원 차별화***(05.4)

* 경영실태평가 : 매분기별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자본적정성 등 5개 부문에 걸쳐 평가(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취약, 5등급 위험)

** 검사주기 : 경영실태평가등급 1~2등급 (2년이상), 3등급 (1.5년 이상), 4등급 (매년), 검사인원 ±40%

※ 향후 RAAS*, RBC** 등 선진감독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현재의 직접적인 감독방식을 리스크 총량을 규제하는 간접규제로 전환할 계획

*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리스크평가제도(07.4 시행예정)
** RBC(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③ 계열 회사간 지급여력금액 중복 계산 방지

○ 02.6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를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 방식**에서 자회사를 포함하는 **연결방식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자회사의 자본과부족금액**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에 **반영**되게 되어 **지급여력금액**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를 **해결**

* 예시) ①보험회사 지급여력금액 100억원, ②자회사 자본과부족 △50억원, ③출자비율 50%의 경우

⇒ 지급여력금액 : 과거(100억원), 02.6월 이후 [75억원 ← (100억원 - 25억원)]

2. 개선노력에 대한 자체 평가

□ **IMF**의 **평가 이후** 보험감독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 **03.5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IMF**의 **개선권고**를 **수용**

* 집행임원에 대한 자격심사, 선임계리사 제도 도입 등

○ 또한 **연결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의 이중 계상**을 **방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다만, **사외이사** 결원시 차기주주총회 이전에 선임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은

○ **사외이사**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 각 금융권역의 공통적인 사항임

○ 그러나 **결원발생시 신속히 충원**하도록 지도하여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상태임

Ⅳ. 향후 이행계획

1. IMF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 지속 실시

□ 우리의 보험감독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

○ 06.12월 **자체평가 결과 28개 평가항목** 모두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IAIS 활동에 적극참여 추진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외형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IAIS 등 **보험관련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참여**

○ 우리의 입장이 **국제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보완**을 **유도**할 계획

* 07.6월 아주지역보험감독자회의(AFIR), 08년 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정기회의 및 11년 제18차 IAIS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

3. 보험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 도입동향 모니터링 등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제정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남아공, 스웨덴 등 8개국으로 구성)

○ **2010년 시행 예정**으로 **부채의 시가 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내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이 예상**

* 국내보험회사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
- 금리 1% ↑ 부채 19조원 감소, 금리 1% ↓ 부채 19조원 증가
- 06.9말 기준 보험회사 총부채(282조원)의 약 6.7% 가 변동

< 참 고 >

보험핵심준칙 자체평가 결과(06.12)

핵심준칙	이행상황 평가				
	준수	대체로 준수	대체로 미준수	미준수	해당 없음
1. 효과적인 보험감독조건	○				
2. 감독목적	○				
3. 감독당국	○				
4. 감독절차	○				
5. 감독당국간 협조와 정보공유		○			
6. 허가	○				
7. 임원, 주주자격 등의 적정성	○				
8. 지배권의 변경 및 사업이전	○				
9. 지배구조	○				
10. 내부통제	○				
11. 시장분석		○			
12. 재무보고 및 상시점검	○				
13. 임점검사	○				
14. 시장개입	○				
15. 시정조치 또는 제재	○				
16. 시장으로부터의 청산·퇴출	○				
17. 연결감독		○			
18. 리스크측정 및 관리	○				
19. 보험인수 등	○				
20. 부채	○				
21. 투자		○			
22. 파생상품 및 부외거래 항목	○				
23. 자본적정성 및 지급능력	○				
24. 모집조직	○				
25. 소비자보호	○				
26. 정보, 공시 및 시장투명성	○				
27. 사기	○				
28. 자금세탁방지	○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이행 현황

※ 국제회계기준(IFRS)의 채택·준수여부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국제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참고 목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Ⅰ. (규범의) 개요

1. 제정 배경

□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IASB*에서 국제회계기준서(IFRS)*를 제정

※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기존의 IAS를 대체한 기준서)

2. 성격

□ 1998.12월 IAS 39가 IASC에서 승인됨에 따라 core standards(주요 핵심 기준서) 완성

□ 2001년 IASC*에서 IASB로 조직을 개편한 후 기존의 기준서를 대폭 개정한 기준서 발표(2003. 12월)

※ 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 1973년 설립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3. 주요 내용

□ 회계 주제별로 작성된 회계 기준서는 회계처리방법, 표시,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

○ 각 기준서는 목차, 요약,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주석공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약 40여개의 기업회계기준서와 20여개의 기준 해석서가 제정되어 있음

II. 최근의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III. 그동안의 이행 노력

1. 주요 개선사항

□ **국제회계기준(IFRS)에 준거한 기준서 제·개정**

○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99.8)하고

○ **국제회계기준(IFRS)에** 준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제·개정**

○ 36개 국제회계기준(IFRS) 중 24개(66.7%)가 기업회계기준서로 제정되었고, **실질내용상 국제회계기준(IFRS)을 대부분 수용**

□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도입 로드맵 발표**

○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 등에 대응**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을 공표**('07.3.15)

- 2009년부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회사에게 의무적용**
- 연차 및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등 **모든 공시내용을 연결중심으로 단계적 전환**(자산 2조원이상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은 2013년부터)

2. 개선노력에 대한 자체 평가

□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을 준거한 기준서를 제정함으로서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 마련으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회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회계인프라 기반 마련**

○ 우리나라는 동 로드맵에 따른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으로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이행하게 됨**

IV. 향후 이행계획

◆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세부추진과제를 일정에 맞추어 추진**

□ **2007년말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완료**

○ **조기적용기업의 편의*** 및 의무적용기업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2007년말까지 59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공표**

*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조기적용할 수 있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비교표시되는 전기(2008년)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 **법령 정비안 마련**

○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현행 법령과의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말까지 법령**(증권거래법·외감법 등) **정비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2008년 중 개정완료**

□ **우리회계기준(K-IFRS)의 국제동등성 확보**

○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09년부터 EU가입국이외 국가의 기업에 대하여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증받은 회계기준'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므로, **2008년 상반기 중 K-IFRS의 동등성 인증 추진**

□ **국제회계기준 교육 및 홍보** 등

○ 상장기업 CEO, CFO를 대상으로 한 경영진 세미나 등과 회계담당자·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등을 추진

<참고>

항목별 세부 이행 실적

국제회계기준	국내회계기준	준수	대체로준수	대체로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기준서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X			
IAS 2 Inventories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X				
IAS 7 Cash Flow Statements	기업회계기준		X			
IAS 8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X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X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X			
IAS 12 Income Taxes	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X				
IAS 14 Segment Reporting	기업회계기준 및 해석서		X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X			
IAS 17 Leases	기준서 제19호 리스	X				
IAS 18 Revenue	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X				
IAS 19 Employee Benefits					X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기업회계기준		X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기업회계기준		X			
IAS 23 Borrowing Costs	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 자본화	X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공시	X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X
IAS 27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연결재무제표 준칙		X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기준서 제15호 지분법		X			

국제회계기준	국내회계기준	준수	대체로준수	대체로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IAS 30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기준서 제8호, 제9호, 제 24호에 포함		X			
IAS 31 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s in Joint Ventures	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투자	X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기준서 제8호, 제9호, 제24호에 포함		X			
IAS 33 Earnings per Share	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X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X				
IAS 36 Impairment of Assets	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X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X				
IAS 38 Intangible Assets	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X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X			
IAS 40 Investment Property	기준서 제5호 일부 포함			X		
IAS 41 Agriculture	기준서 제4호 일부 포함			X		
IFRS 2 Share-based Payment	제22호 주식보상기준	X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인수합병회계 준칙		X			
IFRS 4 Insurance Contract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		X			
IFRS 5 Asset disposals discontinued operations	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		X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X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 Disclosures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X		

IFAC가 제정한
국제감사기준 이행 현황

※ 국제감사기준(ISA)의 채택·준수여부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국제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참고 목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Ⅰ. (규범의) 개요

1. 제정 배경

□ **국제회계사연맹*은** 자본시장자유화 및 국제교류활성화에 따라 **감사기준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제감사기준(ISAs,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을 마련

※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 국제회계사연맹)

2. 성격

□ 국제감사기준(ISAs)은 1970년대 이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되다 1994년 코드화(codified core set)된 형태로 제정

3. 주요 내용

□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범위, 감사계획, 감사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 감사증거,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으로 구성**

II. 최근의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III. 그동안의 이행 노력

1. 주요 개선사항

□ **회계감사준칙 개정(99.2)**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의 하위규정인 회계감사준칙*을 국제회계사연맹이 제정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전면 개정

※ **국제감사기준(ISA)**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채택**

□ **국제감사기준(ISA)을 기반으로 한 회계감사기준 제정(05.3)**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미국의 회계감사기준서(SAS)의 주요 원리 및 외감법상의 요구사항을 결집하여 제정된 **기존의 회계감사기준을 폐지하고**

○ **국제감사기준(ISA)**의 **기본원리와 주요절차**(Basic Principle and Essential Procedures)를 **제정기반**으로 한 **새로운 회계감사기준 제정**(05.3)

※ 형식상 하위규정으로 운영되어 왔던 회계감사준칙 중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회계감사기준으로 변환하고 기존 회계감사준칙 중 실무적용 안내목적으로 제정된 기타 '적용안내' 사항들을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으로 하여 별도 제정

2. 개선노력에 대한 자체 평가

□ 국제감사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서 **감사업무의 신뢰도 향상**

□ 국제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을 적용함으로서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

□ 국제적으로 인정된 감사절차를 실시함으로서 보다 **투명한 회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IV. 향후 이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항목별 세부 이행 실적

주요내용	이행상황 평가				
	준수	대체로 준수	대체로 미준수	미준수	해당 없음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X			
210. 감사계약	X				
220. 감사의 품질관리	X				
230. 문서화	X				
240.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X				
250.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법률과 제규정에 대한 고려	X				
260. 내부감사관련 감사문제에 관한 내부감사기구와의 협의	X				
300. 감사계획	X				
310. 사업에 대한 이해	X				
320. 감사의 중요성 원칙	X				
400. 감사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	X				
401. 정보시스템 환경에서의 감사	X				
402.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 고려사항	X				
500. 감사증거	X				
501. 감사증거-구체적 항목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	X				
505. 외부조회	X				
510. 초도감사- 기초잔액의 감사	X				
520. 분석적 절차	X				
530. 표본감사와 기타의 추출방법에 의한 시사 절차	X				
540.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	X				
545. 공정가치의 평가와 그 공시에 대한 감사	X				
550. 특수관계자	X				
560.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X				
570. 계속기업	X				
580. 경영자 진술	X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X				

주요내용	이행상황 평가				
	준수	대체로 준수	대체로 미준수	미준수	해당 없음
610. 내부감사업무의 고려	X				
620. 전문가 활용	X				
70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X				
710. 비교정보	X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내의 기타의 정보	X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

Ⅰ. IMF의 점검내용 중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1. 배경

□ 외환위기 이후 IMF는 IBRD와 공동으로 금융안정성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우리정부 당국과의 연례협의를 진행

* FSAP :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Program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의 비교평가, 그동안의 입법조치 등 이행상황을 점검('01.10~'03.1)

2. IMF의 평가·권고사항

□ 지난 몇 년간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

○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OECD국가 및 국제적 모범 관행(practices)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

○ 재벌체제보다 더 투명한 지주회사가 허용되었으나 설립실적은 많지 않음

○ 주주권리는 크게 향상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 향상이 요구됨

○ 독립적 (사외)이사의 개념이 새로 도입되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음

Ⅱ. OECD 준칙 등의 이행실적 및 자체 평가내용

1. 이행실적

□ 그간 미국 등 선진국의 모범규준과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 등을 정비하는 한편,

○ 정부 등 관계당국 차원의 지속적 점검 및 법제화 조치와 병행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바람직한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안내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가 최초 제정(1999년) 후 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정(2003년)

○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가 매년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2. 자체 평가내용

□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등 국제적인 기준이나 사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체계를 확립

○ 좋은 기업지배구조 관행(practices)을 정립하고, 법적·제도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붙임> OECD 원칙에 대한 이행실적 자체 평가내용

(증권감독-OECD 기업지배구조 핵심준칙)

핵심준칙	이행상황 평가				
	준수	대체로 준수	대체로 미준수	미준수	해당 없음
1. 주주권한 보호	○				
2. 소액주주·외국인 주주 보호	○				
3. 기업공시 활성화	○				
4. 이사의 책임 강화	○				
5. 재무·경영 공시 보장	○				
6. 경영판단의 자율성 보장	○				

3. 외화대출 관련
-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외화대출규모(분기별, 기관별, 화폐별)
- 환율변동이 외화대출 등 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기타 외화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

□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외화대출규모(분기별, 기관별, 화폐별)

은행권의 외화대출 동향 (증감액 기준)

단위: 억달러

		'05년	'06년	'07년			'07.6말
			상반기	상반기	1/4	2/4	잔액
외화대출		49.3	162.9	91.9	21.1	13.4	7.7	440.7
· 국내은행		47.5	142.1	85.2	19.9	11.1	8.7	389.9
· 외은지점		2.3	20.9	6.7	1.3	2.2	△1.0	50.8
통화별	미달러화	42.0	107.3	51.5	30.2	14.7	15.5	283.7
	일본엔화	3.6	51.1	37.1	△10.0	△1.1	△8.9	140.5
	기타통화	3.7	4.5	3.3	0.9	△0.2	1.1	16.5

자료: 한국은행

□ 환율변동이 외화대출 등 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은행부문의 환리스크는 대부분 헤지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외화대출 차주의 경우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만기시점에 환율 방향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외화대출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은행 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기타 외화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

○ 외화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에 대한 은행의 사후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건전성을 분류토록하여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토록 지도하고 있음

4.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감원에 보고된 내역 및 조치결과

□ '00년 이후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보고건수('06년말 기준)

<붙임 참조>

<붙임>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보고건수

구분	'00	'01	'02	'03	'04	'05*	'06	계
위탁	15	7	13	16	39	265	726	1,081
수탁	-	-	-	1	1	6	31	39
계	15	7	13	17	40	271	757	1,120

* '05.7월 업무위탁규정 개정으로 '05년 하반기부터 보고대상 확대(동일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감독원장에 기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업무위수탁인 경우 사후보고)
  - '05년 하반기(위탁220건, 수탁6건)
  - '06년 상·하반기(위탁686건, 수탁28건)

정 봉 주 의 원

1. 은행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성과 및 노력 조치사항 관련
   - 금감원 발표 보도자료
   - 현재 은행권에서 사회적 책임 제고를 추진 중인 사항

(1) '05년 금감원 발표 보도자료('05.12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도방안" 발표)

→ (별첨1) 정례브리핑 자료

(2) 현재 은행권에서 사회적 책임 제고를 추진 중인 사항

→ (별첨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6

<별첨 1>

	정 례 브 리 핑 자 료		금융감독원
· 작성부서	금감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 담 당 자	장현기 팀장(3786-8066), 이준수 수석조사역(3786-8033)		
· 배 포 일	2005. 12. 27.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12월 28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방안

주요내용

□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경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국제기준 및 외국사례를 참고로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할 예정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은행이 이윤추구 외에 국가·지역 경제발전, 윤리경영, 환경보호, 사회공헌 등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공공성과 유사한 개념

(국내은행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은행들은 공익재단 설립,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의 기대나 사회적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또한,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에 치중함으로써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기능** 수행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수행이 미흡하였던 주요 원인은

○ 외환위기 이후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단기 성과위주의 경영문화**가 확산된 반면,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는 성숙한 경영문화는 정착되지 못한 점,

○ 사회적 책임경영을 **기업가치 제고**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데다, 사회적 책임경영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기준 및 외국사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준(붙임 1)이 있으며,

○ 최근에는 **금융자원 배분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는 추세이다.

□ 특히, 대다수 선진국은행들은 국제기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붙임 2)되었는데,

○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 등 **공익활동을 평가**하거나,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활동 평가: 미국, 공익활동 공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방안)

□ 국내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경제·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이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확충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방안>

①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은행의 인식 및 관심 제고 유도

□ 우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은행의 관심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인프라***를 **은행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은행내 사회적 책임경영 전담조직 설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규범 가입 등

②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공표 장려

□ 둘째, 감독당국은 현행의 은행경영공시* 외에 은행의 제반 사회적 책임활동도 **자율적으로 공표**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 재무 및 손익,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 이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 은행들처럼 은행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발간(매년)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 필요할 경우 국제기준*을 참고로 하여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및 공표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s)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 Forge guideline(영국): 지역사회 기여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공시

③ 對고객 윤리경영 강화 유도

□ 셋째, 감독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고객 윤리경영**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특히, 휴면예금의 적극 반환 유도, 불공정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 근절, 금융소비자 권익의 적극 보호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④ 관계형 대출(relationship banking) 활성화 유도

□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취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미래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하나 **기업정보 부족**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 대출'**의 활성화를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 관계형 대출이란 은행과의 장기 거래관계를 통해 획득한 정성적 정보에 기초하여 취급되는 대출로서 객관적 기업정보를 기초로 취급되는 '거래형 대출'(transactional lending)과 대비됨

○ 이를 위해 관계형 대출에 적합한 신용평가시스템 및 여신취급기준 개발, 은행의 RM(Relationship Manager) 기능 활성화,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지원 강화 등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1)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요 국제기준

1 OECD 다국적기업 기준('00.6)

*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다국적기업은 현지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당국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원칙

2 UN Global Compact('00.7)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글로벌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 (87개국 2,400여개 기업(208개 금융기관) 참여)

3 UNEP 금융기관 선언('97.5)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ial Institutions Initiative (UNEP-FI)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한 선언 (250개 금융기관, 국민·우리은행)

4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02.10)

○ 기업 영업활동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평가·공시하는데 활용되는 국제기준 (747개 기업(75개 금융기관))

* 현대자동차, POSCO, 삼성SDI 등 8개 회사가 공식 발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동 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 발간

5 Equator principle(적도 원칙)('03.6)

○ 5,000만 달러이상의 **Project Financing** 취급시 **환경 및 사회적 영향평가** 후, 일정기준 충족시만 취급(36개 선진국 은행)

(붙임 2)

은행의 사회적 책임 관련 외국사례

1 미국

○ 은행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 시행('77년)

- 감독당국은 CRA실적을 평가, 동 평가등급을 인수·합병, 지점 설치 등 **인허가시 심사요건**으로 활용

- 감독당국 및 개별은행은 CRA 등급, 지역사회 공헌실적을 **일반에 공시**

2 캐나다

○ **자본금 1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공익활동 공시** 의무화**('02.3)**

* 해당은행은 공익활동 보고서(Public Accountability Statement)를 매년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일반인에 공시하여야 함(은행법§459.3)

- **주요 공시항목**: 자국기업에 대한 여신실적, 지역사회개발, 중소기업 여신, Micro-credit 지원, 기부 등

3 영국

○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제도는 없으나, 대부분의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수행

- 주요 기준

·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London Principle('02년)

* 영국 정부와 은행 등 민간기구 공동으로 마련한 원칙으로, 경제적 번영, 환경보호, 사회발전 분야의 7개 항목으로 구성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보고 기준 (Forge Guideline)('02.7)

* Forge 그룹(은행권 T/F)이 영국정부, 은행연합회(BBA), 보험협회(ABI)와 공동으로 제정·활용

4 일본

○ 금융청은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 **('03.3, '05.3)**

* 금융기관은 자체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청에 제출하고, 동 계획 추진 상황을 매반기 대외공표

대출의 구분(미 FRB, Allen Berger)

- **관계형대출(relationship lending)**: 은행과의 장기 거래관계를 통해 획득한 정성적 정보에 기초하여 취급되는 대출로서 객관적 기업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적합
- **거래형대출(transactional lending)**: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담보자산을 기초로 취급되는 대출

○ 최근 전국은행협회는 사회적책임(CSR) 관련내용(사회공헌, 환경보존 등)이 대폭 포함된 "행동헌장" 발표('05.11.21)

금융평가법 제정 논의

◦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실적을 평가하고, 점포 설치, 합병 등 인가시 동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2차례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함

5 프랑스

○ **상장은행**은 여타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 환경 · 근로**분야에서의 기여내용을 **공시**할 의무**('01년)**

- **주요 공시항목**: 고용, 지역사회 기여내용, 환경관리 등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2006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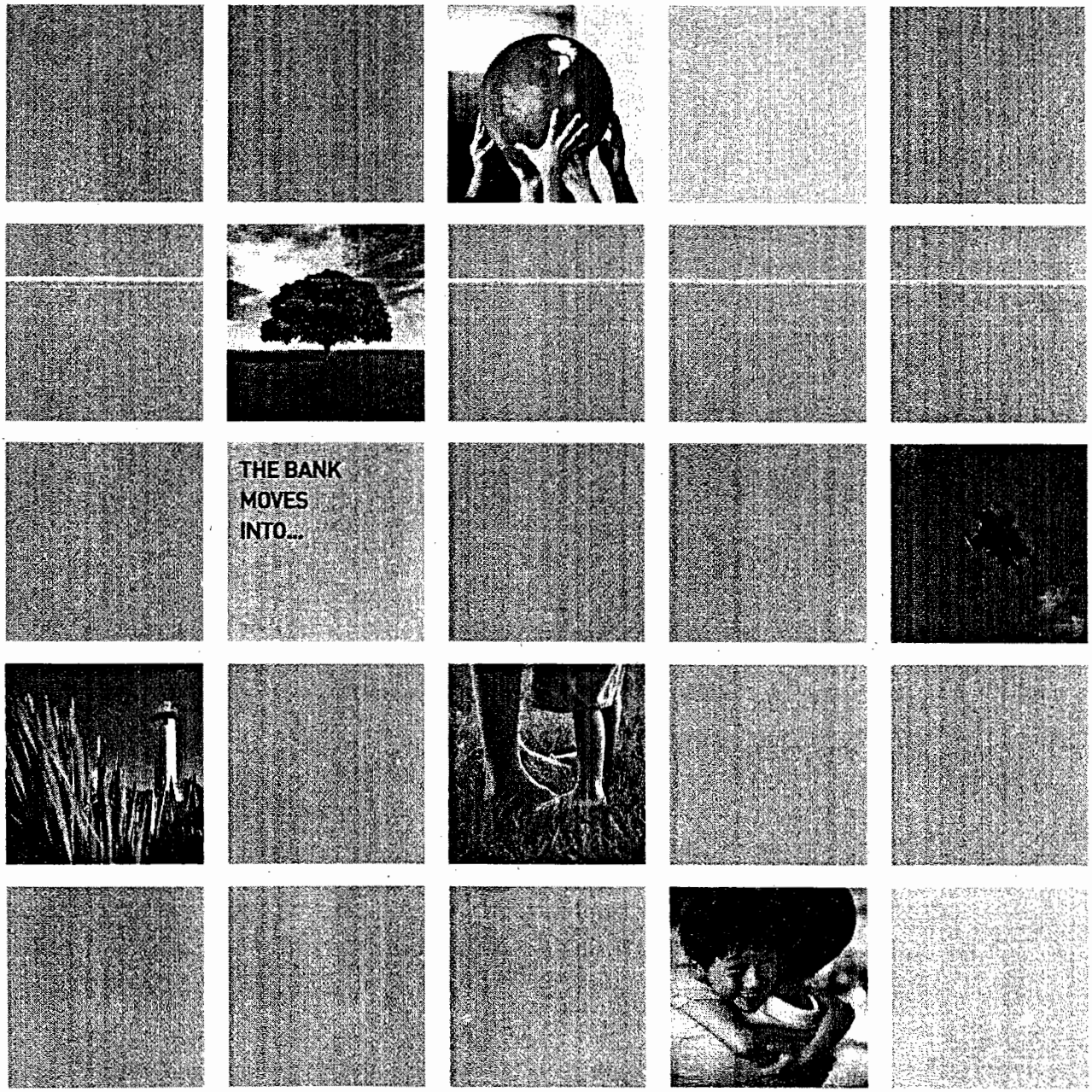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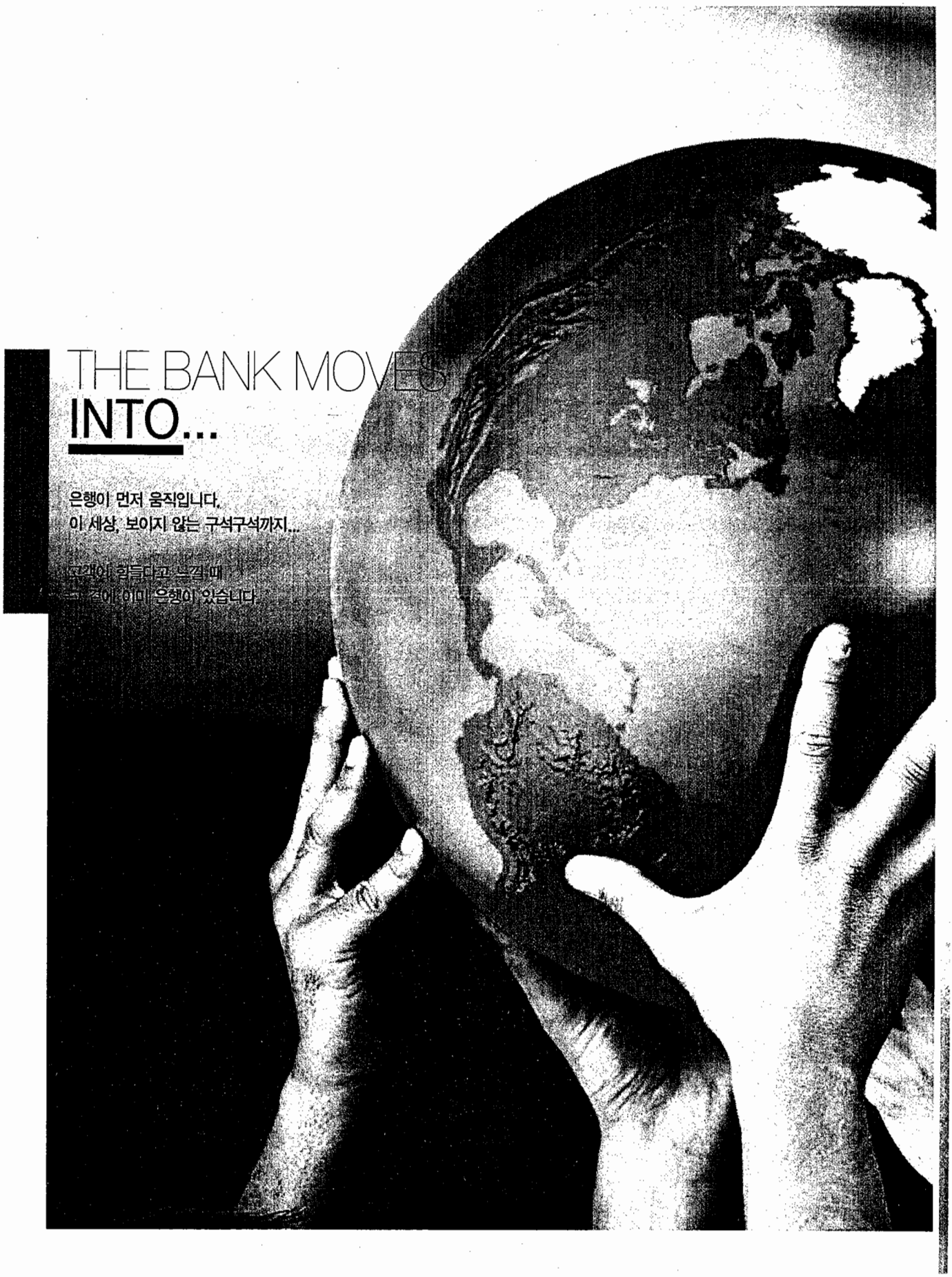
THE BANK MOVES
INTO...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 세상,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고객이 힘들다고 느낄 때
그 곁에 이미 은행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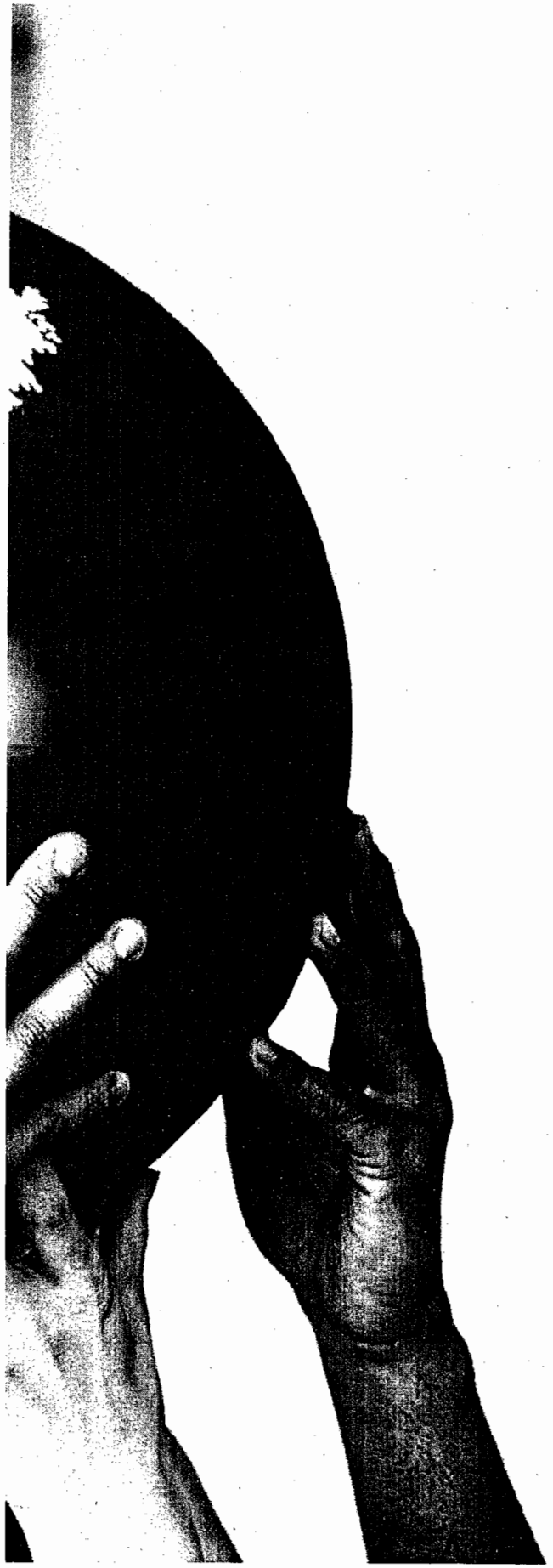

CONTENTS

보고 개요 04
- 사회공헌과 공익성 제고에 대한 약속 06
- 보고서 소개 08
- 참여은행 09

은행산업과 사회공헌활동 10
- 은행산업 개요 12
-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 12
- 은행 사회공헌활동 13

은행 사회공헌활동 성과 16
- 공동활동 성과 18
- 종합 성과 19
- 분야별 성과 20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24
- 한국산업은행 26
- 농협중앙회 28
- 신한은행 30
- 우리은행 32
- SC제일은행 34
- 하나은행 36
- 중소기업은행 38
- 국민은행 40
- 한국외환은행 42
- 한국씨티은행 44
- 한국수출입은행 46
- 수협중앙회 48
- 신용보증기금 50
- 대구은행 52
- 부산은행 54
- 광주은행 56
- 제주은행 58
- 전북은행 60
- 경남은행 62
- 기술보증기금 64
- 한국주택금융공사 66

은행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 68
- 설문조사 결과 70
- 은행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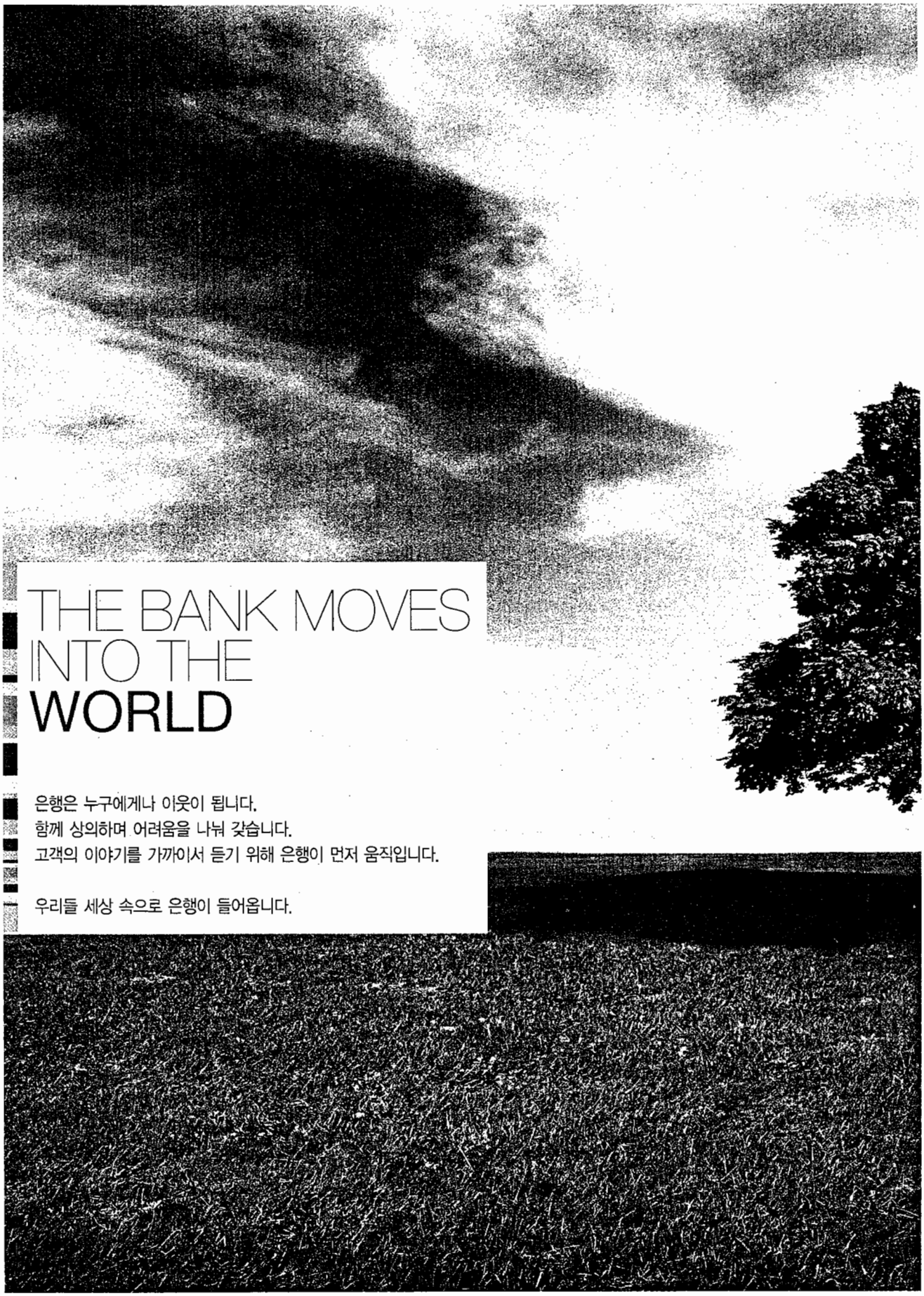

THE BANK MOVES INTO THE WORLD

은행은 누구에게나 이웃이 됩니다.
함께 상의하며 어려움을 나눠 갖습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들 세상 속으로 은행이 들어옵니다.

[보고 개요]

사회공헌과 공익성 제고에 대한 약속

은행은 경제의 혈맥이자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폭넓게 공헌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의 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기규율을 바탕으로 한 책임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은행들은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첫째, '고객과 함께 사회와 함께' 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은행은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고객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둘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행은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은행은 지속가능 경영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은행은 이와 같이 은행산업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보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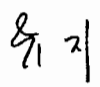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_ 유지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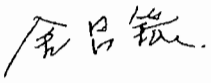

한국산업은행
총재 _ 김창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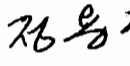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_ 정용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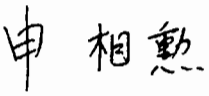

신한은행
은행장 _ 신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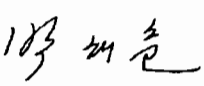

우리은행
은행장 _ 박해춘

SC제일은행
은행장 _ John Filmeri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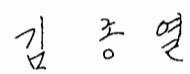

하나은행
은행장 _ 김종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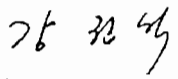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_ 강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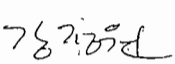

국민은행
은행장 _ 강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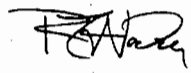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_ Richard F. Wa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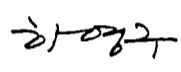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_ 하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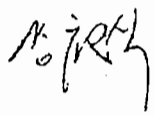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_ 양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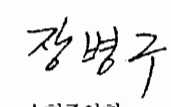

수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_ 장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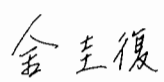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_ 김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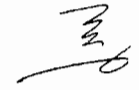

대구은행
은행장 _ 이화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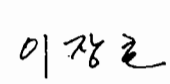

부산은행
은행장 _ 이장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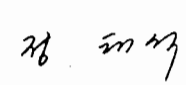

광주은행
은행장 _ 정태석

제주은행
은행장 _ 윤광림

전북은행
은행장 _ 홍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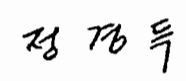

경남은행
은행장 _ 정경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_ 한이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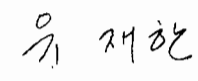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_ 유재한

보고서 소개

작성원칙

2006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수립한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경제 · 사회 · 환경적 측면의 활동실적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보고범위

2006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는 전국은행연합회 21개 정사원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종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성과를 유사한 분야별로 통합하여 보여주고 활동실적이 중복으로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개 분야로 보고하였습니다.

1. 문화 · 예술 · 스포츠
2. 지역사회 · 공익
3. 환경
4. 학술 · 교육

일부 데이터에 포함범위 및 기준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보고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성경과

전국은행연합회 사원총회는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 표준안'을 제정(2006. 6. 7.)하고, 은행 전체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연차보고서로 발간하여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 발간 계획'을 수립(2007. 2. 6.)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여은행

한국산업은행
윤리준법실
www.kdb.co.kr

농협중앙회
금융전략팀
www.nonghyup.com

신한은행
홍보부
www.shinhan.com

우리은행
홍보팀
www.wooribank.com

SC제일은행
기업문화팀
www.scfirstbank.com

하나은행
홍보팀
www.hanabank.com

중소기업은행
고객지원실
www.ibk.co.kr

국민은행
사회협력지원부
www.kbstar.com

한국외환은행
업무협력팀
www.keb.co.kr

한국씨티은행
커뮤니케이션부
www.citibank.co.kr

한국수출입은행
인사부
www.koreaexim.go.kr

수협중앙회
준법감사실
www.suhyup.co.kr

신용보증기금
인사부
www.kodit.co.kr

대구은행
공공금융부
www.daegubank.co.kr

부산은행
지역사회공헌부
www.pusanbank.co.kr

광주은행
고객지원부
www.kjbank.com

제주은행
총무지원부
www.e-jejubank.com

전북은행
종합기획팀
www.jbbank.co.kr

경남은행
지역공헌부
www.kyongnambank.co.kr

기술보증기금
홍보팀
www.kibo.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www.khfc.co.kr

THE BANK MOVES INTO EVERYWHERE

은행은 공기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 숨을 쉽니다.
고객이 원하기 전에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고객이 계신 곳 어디에나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산업과 사회공헌활동]

I 은행산업 개요 I

우리나라 은행은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 및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고유업무와 부수업무의 경우 별도 인가 없이 영위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직접 겸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겸영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일반은행은 예금 수입, 대출 및 지급결제 등 전통적인 상업금융업무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권업무와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탁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부터는 은행의 보험업 진출(방카슈랑스)도 허용되었습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특수은행은 자금운용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원조달 면에서도 민간의 예금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더 많은 부분을 의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I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 I

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기관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의 확립과 금융인의 자질향상, 복리후생의 증진을 기하여 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연혁

- 1928. 11. 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 1975. 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로 개편
- 1984. 5. 9.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 1995. 7.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

은행연합회는 2007년 3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5개 특수은행, 6개 지방은행 및 3개 은행 관련기관 등 21개의 정사원과 36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준사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원

■ 정사원 (21)

- 일반은행
  -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 지방은행 :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 은행 관련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 준사원 (36)

- JPMorgan Chase Bank, N.A.
-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 Bank of America
- Mizuho Corporate Bank
- CALYON
- BNP Paribas
- American Express Bank
- ING Bank N.V.
- Indian Overseas Bank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 Scotiabank
- Deutsche Bank AG
- ABN AMRO
- U.B.A.F.
- DBS Bank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 Societe Generale
- United Overseas Bank
- The Yamaguchi Bank
- National Bank of Pakistan
- The Bank of New York
- HSBC
- Bank of China
- Metropolitan Bank & Trust Company
- Credit Suisse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UBS AG
- Bank Mellat
-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 Barclays Bank PLC
- China Construction Bank
- Wachovia Bank, N.A.
-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 Bank of Communications
- 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Limited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

I 은행 사회공헌활동 I

최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도 함께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와 은행은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서 은행산업에 기대되고 있는 경제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사회에 더욱 폭넓게 기여하기 위해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설치(2006. 2. 27.)하였습니다.

은행사회공헌협의회는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강화,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 추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와 경영' 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은행별 및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추진하여 왔습니다.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구성원 공동 이익의 향상 즉 공익에의 기여도에 따라 소극적 공익활동, 중립적 공익활동 및 적극적 공익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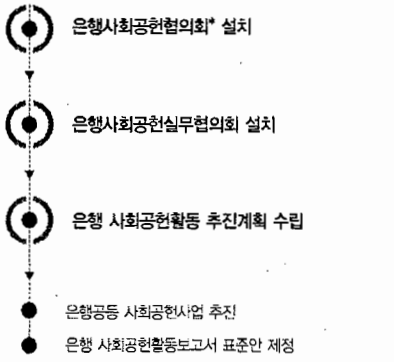

* 은행사회공헌협의회
- 구성 : 은행연합회장(의장), 신입은행 총재,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기업은행장, 국민은행장, 대구은행장, 은행연합회부회장(총 10인)
- 기능 : 은행 사회공헌활동 기본 방향 수립, 은행공동 사회공헌사업 심사, 사회공헌활동 홈브 등

은행[1] 총여신[2] 추이 단위 :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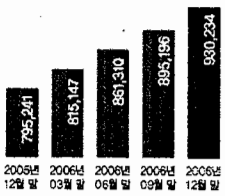

자료 : http://fisis.fss.or.kr(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 1) 18개 국내일반은행
2) 총여신 = 은행계정여신+신탁계정여신+증금계정여신

은행[1] 총예금[2] 추이 단위 :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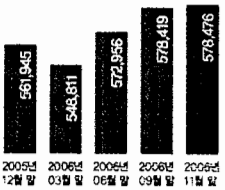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7. 1.

주 : 1) 17개 국내일반은행(수출입은행 제외)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2) 총예금 =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은행계정[1] 원화대출금 형태별 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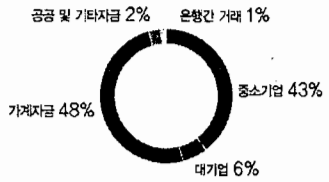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7. 2.

주 : 1) 18개 국내일반은행 + 외은지점
2) 2006년 9월말 기준

은행[1] 중소기업 대출 추이 단위 :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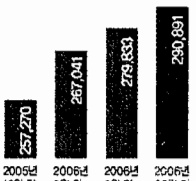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7. 2.

주 : 18개 국내일반은행 + 외은지점

첫째, 은행은 자금중개, 지급결제 및 신용창조라는 은행의 기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등 경제의 혈맥으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소극적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은행은 중소기업대출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등 중립적 공익활동을 통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대표적 공익상품

분 야	공익상품명
문화 · 예술 · 스포츠	2014 Winter Sports 예금(농협중앙회)
	2014 인천아시아드예금(농협중앙회)
	2011 세계육상선수권유치기원통장(대구은행)
	부산국제영화제통장(부산은행)
	광주문화수도후원통장(광주은행)
지역사회 · 공익(예금)	u-bank 스타트정기예금(산업은행)
	지역사랑예금(농협중앙회)
	사촌통장(농협중앙회)
	농촌사랑카드(농협중앙회)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농협중앙회)
	아름다운은행(신한은행)
	사랑의약속정기예적금(신한은행)
	의인후원정기예금(신한은행)
	아빠의향기(신한은행)
	희망 새출발보통예금, 희망 새출발자유적금(우리은행)
	사랑의열매통장(SC제일은행)
	하나행복나눔신탁(하나은행)
	고구려지킴이통장(기업은행)
	독도는우리땅통장(기업은행)
	갱거루통장(국민은행)
	KB포인트리카드(국민은행)
	KB의사카드, KB교육자카드(국민은행)
	KB갱거루적립식주식투자신탁(국민은행)
	KEB나눔예금(외환은행)
	어민사랑예금(수협중앙회)
	어촌사랑예금(수협중앙회)
	KGPS카드(수협중앙회)
	대구사랑마이홈러브카드(대구은행)
	대구광역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카드(대구은행)
	영주시마이홈러브카드(대구은행)
	태극기사랑정기예금(부산은행)
	아이(i)꿈통장(부산은행)
	후원예금(광주은행)
	선생님사랑통장(광주은행)
	제주사랑주거래서비스통장(제주은행)
	제주애향카드(제주은행)
	JDC제주사랑카드(제주은행)
	웰컴투전북사랑예금(전북은행)
	경남사랑통장(경남은행)
	통일로세계로적립신탁(경남은행)
지역사회 · 공익(대출)	탑스 자영업자 스피스 대출(신한은행)
	사회책임경영대출(신한은행)
	일반 헌혈, 혈소판 및 등록헌혈, 장기등록자 등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할인(국민은행)
	대구시희망경제특별보증대출(대구은행)
	SOHO PLUS LOAN3(제주은행)

분 야	공익상품명
학술 · 교육	독도사랑학생부금(수협중앙회)
환 경	늘푸른예금(농협중앙회)
	녹색환경신탁(기업은행)
	바다사랑예금(수협중앙회)
	독도사랑예금(수협중앙회)
	독도사랑카드(수협중앙회)
	청량산사랑카드(대구은행)
	DGB우리독도카드(대구은행)
	녹색시민통장(부산은행)
	사이버예금(광주은행)
	자연사랑신탁(광주은행)
	새만금사업성공기원예금(전북은행)

은행[1] 역외유출 비율[2]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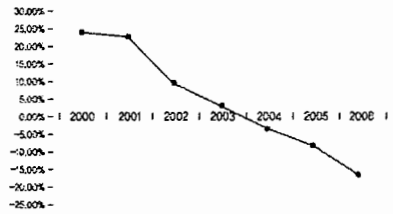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 호를 토대로 작성

주 : 1) 17개 국내일반은행(수출입은행 제외)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2) 역외유출비율 = (예금-대출)/예금x100

* 역외유출 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비율'은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외지역 (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비율을 말함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산업기반이나 지역 금융의 취약성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임
(삼성경제연구소,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SERI 경제 포커스」, 2005. 6. 13., p.6.)

셋째, 은행은 공익법인 설립,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기부 등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적극적 공익활동을 통해서 사회구성원 공동이익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현황

기관명	법인명칭	설립	출연금(억원)	주요산업
농협중앙회	농협문화복지재단	2004. 7.	3,004	• 농촌문화복지증진사업 • 장학사업 • 학술 · 교육 · 연구 지원사업
신한은행	신한은행 충북장학회	1988. 4.	28.5	• 충북지역 인재육성사업
	신한은행 강원장학회	1994. 12.	12.4	• 강원지역 인재육성사업
	신한은행 희망재단	1996. 11.	15.6	• 국내외 장학사업 •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한장학재단	2006. 1.	500	• 장학사업 • 학술 · 교육 · 연구 지원사업
하나은행	하나금융공익재단	2006. 10.	300	• 노인요양시설 설립 · 운영 • 어린이 집 설립 · 운영 • 자원봉사활동 지원
기업은행	기은복지재단	2006. 4.	52	•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치료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
외환은행	외환은행 나눔재단	2005. 12.	75	•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사업 • 장학사업 • 불우아동 및 저소득 소외 계층 지원
한국씨티은행	Citigroup Foundation	1994.	-	• 금융교육 및 차세대 교육 • 지역사회 및 기업인의 사업기반 발전 •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대구은행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	1990. 12.	100	• 장학사업 • 문화 · 체육사업
광주은행	광주은행 장학재단	1981. 11.	18.5	• 장학사업
경남은행	경남은행 장학회	1986. 2.	10	• 장학사업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2005. 12.	50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지원 • 문화예술 · 체육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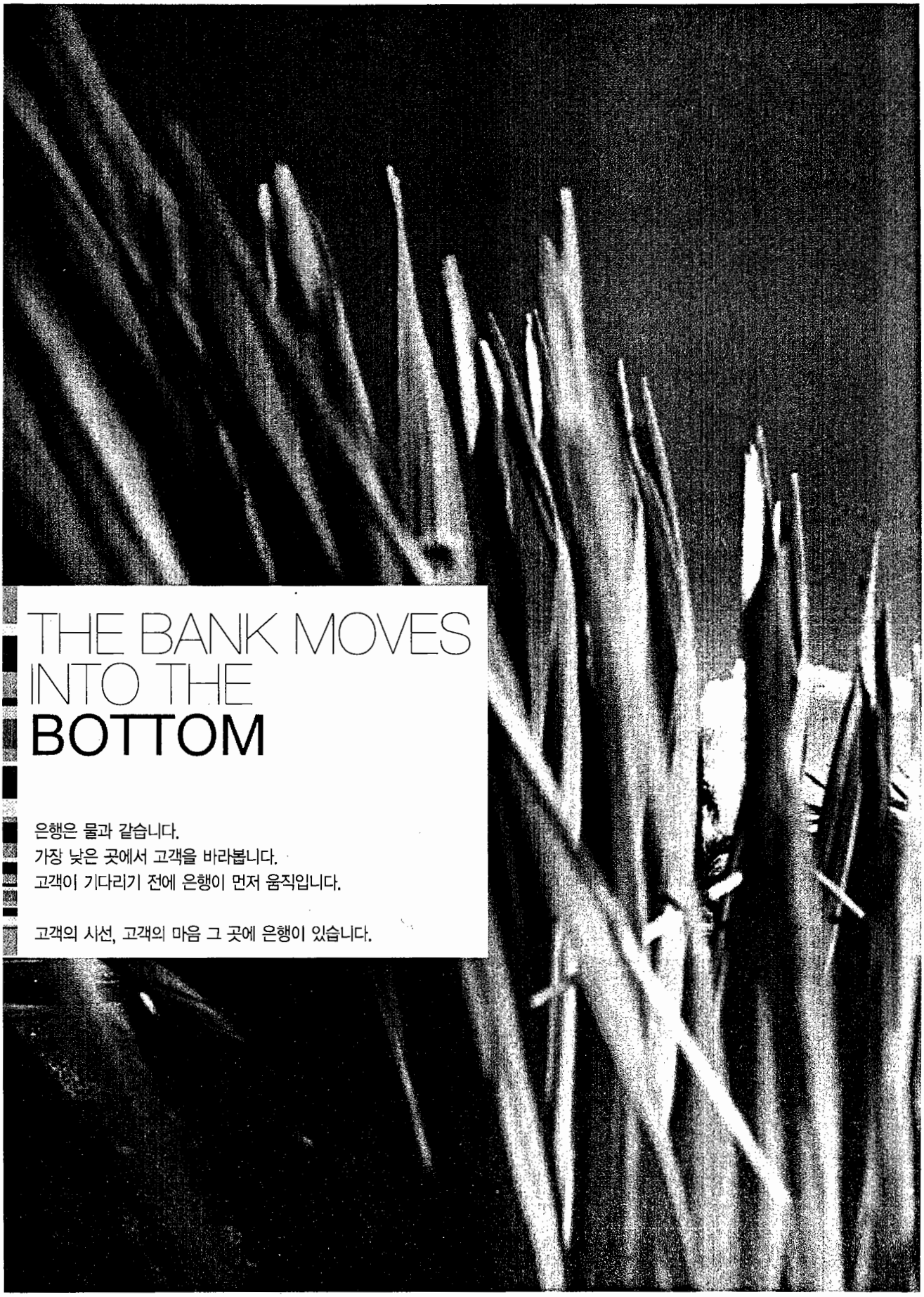

THE BANK MOVES INTO THE **BOTTOM**

은행은 물과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객을 바라봅니다.
고객이 기다리기 전에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고객의 시선, 고객의 마음 그 곳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사회공헌활동 성과]

I 공동활동 성과 I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설치(2006. 2. 27.)하고 매년 11월 둘째 월요일부터 1주일 간을 '은행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제정(2006. 6. 9.)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와 21개 사원은행은 '제1회 은행 사회공헌활동 주간(2006. 11. 13.~11. 19.)'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과 '조부모와 손자·손녀만 사는 가정' 5,750세대를 은행 본·지점과 연결하는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월동생활용품 전달과 함께 보살핌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을 '은행 환경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자연환경 정화운동을 펼치는 등 환경적 책임 수행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봉사 및 물품 지원, 사랑의 연탄나눔,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등 은행별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제1회 은행 사회공헌활동 주간 실적

구분	지원금액(억원)	참여인원(명)	참여인시[주1]
은행 사랑나눔 네트워크	5.0	1,165	4,088
은행 환경보호의 날	2.3	7,442	17,813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12.8	6,003	33,738
계	20.1	14,610	55,639

주 : 1) 참여인시 = Σ(참여인원수 x 참여인원 1인당 평균 참여시간)

사회공헌활동 평균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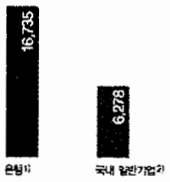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6.

주 : 1)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중 실적
2) 197개 일반기업의 2005년 중 실적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원금 비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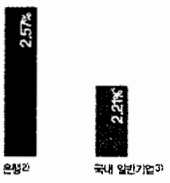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6.

주 : 1) 지원금액/당기순이익
2)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중 실적
3) 197개 일반기업의 2005년 중 실적

해외 주요은행의 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원금 비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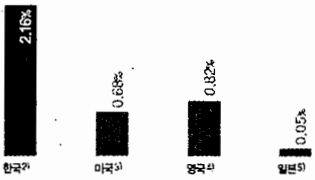

자료 : *The Banker* (July 2006), 각 은행 홈페이지

주 : 1) 한국 : 지원금액/법인세비용차감전수익, 외국 : Grant/Pre-tax profit
2) 한국 : 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2006년 기준
3) 미국 : CitiGroup·BOA·JP Morgan·Wells Fargo·Wachovia, 2005년 기준 (단, Wachovia는 2004년 기준)
4) 영국 : HSBC·Royal Bank of Scotland·HBOS·Barclays·Lloyds TSB, 2005년 기준
5) 일본 : Mitsubishi UFJ·Mizuho, 2005년 기준

사회공헌활동 참여 인원 및 인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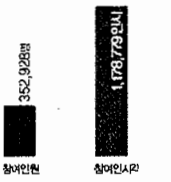

주 : 1)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중 실적
2) 참여인시 = Σ(참여인원수 x 참여인원 1인당 평균 참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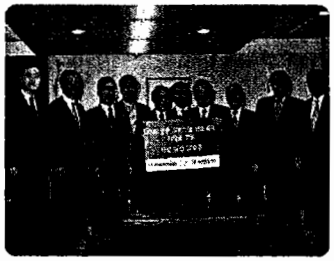

| 종합 성과 |

지원금액 및 당기순이익 대비 지원금 비율

은행은 2006년 중 사회공헌활동에 3,5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2.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익 대비 지원비율은 해외 주요은행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참여

은행은 2006년 중 352,928명(누계)의 임직원이 1인당 평균 3.34시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은행전체 임직원(121,910명) 1인당 연간 2.8회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것에 해당됩니다.

분야별 지원금액 및 비율

은행은 2006년 중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에 1,514억원(43%), 지역사회 및 공익 분야에 1,231억원(35%), 학술 및 교육 분야에 742억원(21%), 환경분야에 27억원(1%)을 지원하였습니다. 은행은 국내기업과 일본기업에 비해 특히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이 높았으나 일본기업에 비해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비율이 낮았습니다.

사회공헌업무 담당 부서

은행의 사회공헌업무는 3개 은행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홍보부 · 고객지원부 · 경영기획부 · 인사부 · 총무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업무 담당 인원

은행은 사회공헌업무를 최소 1명, 최대 7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당 평균 담당 인원은 3.8명입니다.

국내 은행의 분야별 지원 금액 및 비율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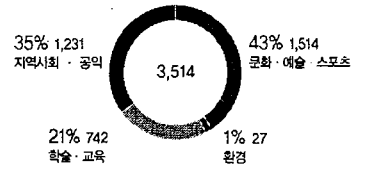

주 :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중 실적

국내 제조업의 분야별 지원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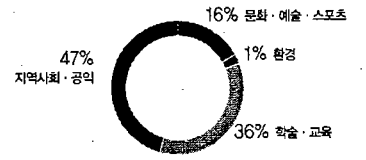

자료 : 문형구,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와 현황 및 효율화를 위한 공통지표」(연구발표자료), 2005

국내 서비스업의 분야별 지원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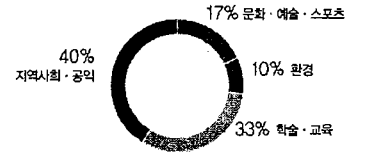

자료 : 문형구,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와 현황 및 효율화를 위한 공통지표」(연구발표자료), 2005

일본기업의 분야별 사회공헌 지원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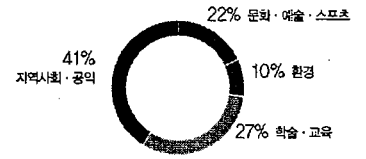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05년 사회공헌활동실적조사결과」, 2006

은행 사회공헌업무 담당 부서 단위 :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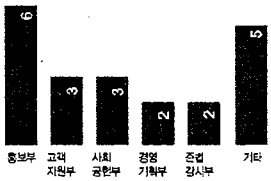

주 :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말 기준

은행 사회공헌업무 담당 인원 단위 :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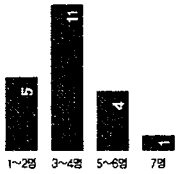

주 :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말 기준

| 분야별 성과 |

문화 · 예술 · 스포츠 세부분야(금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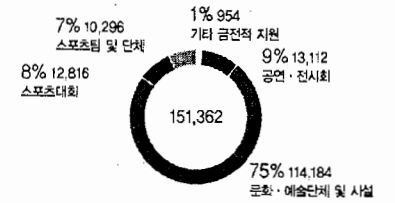

문화 · 예술 · 스포츠 세부분야(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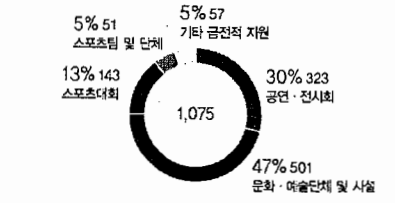

주 :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중 실적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

지원금액 및 성과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은 총 1,514억원으로 전체 사회공헌 지원금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의 75%에 달하는 1,141억원이 문화 · 예술단체 및 시설을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그 밖에 공연 · 전시회 지원과 스포츠대회, 스포츠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원 금액과는 달리 지원건수 측면에서는 문화 · 예술단체 및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공연 · 전시회에도 총 323건(30%)이라는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활동내용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 · 전시회 지원 :** 뮤지컬 및 연주회 등의 공연 후원, 무료 전시회 개최, 독거노인 돕기 및 자선 콘서트 개최, 전통문화축제 지원, 명절맞이 고유문화행사 기획 등
- **문화 · 예술단체 및 시설 지원 :** 미술 아카데미 지원, 연극협회 및 메세나 활동 지원 등 아마추어를 포함한 작가들의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 **스포츠분야 :** 스포츠 관련 협회 지원, 스포츠팀의 운영 및 후원, 체육진흥기금 기탁, 세계 스포츠 대회 후원, 기초 스포츠 종목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지역사회 및 공익 세부분야(금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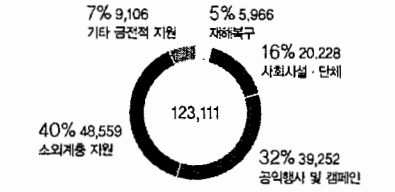

지역사회 및 공익 세부분야(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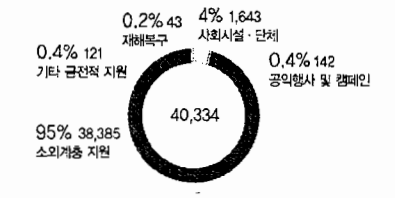

주 :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중 실적

지역사회 및 공익 분야

지원금액 및 성과

지역사회 및 공익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은 총 1,231억원으로 전체 사회공헌 지원금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외계층(40%, 485억원)과 공익행사 및 캠페인(32%, 392억원)에 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시설 및 단체(16%, 202억원), 재해복구(5%, 59억원) 등 세부분야별로 비교적 균형 있게 지역사회 및 공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건수의 경우, 95%에 해당하는 총 38,385건의 활동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활동내용

지역사회 및 공익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시설 및 단체 지원**
  - 은행별 자원봉사단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봉사활동 수행
  - 사회복지센터, 농아원, 재활원, 양로원, 고아원, 농촌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통한 정기적인 봉사활동 수행
  - 복지재단, 협회, 사회사업 수행 NGO 지원

- **소외계층 지원 :** 소년소녀가장 · 무의탁독거노인 돕기, 장애우 지원(PC보내기, 채용박람회 후원 등), 연탄나눔, 김장 담그기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수행
- **공익행사 및 캠페인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활동참여 및 지원, 사랑의 헌혈캠페인, 재활용품 수집 ·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달
  - 사회적 기업 지원, 공익재단 출연 및 운영, 무료법률 서비스 등
- **재해복구 지원**
  - 태풍 및 수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원봉사단을 통한 긴급재난구호팀 운영
  - 긴급구호용품이나 수재의연금을 통한 지원
- **기타 금전적 지원 :** 급여 및 상여금 등의 우수리 공제 및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프로그램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학술 및 교육분야

지원금액 및 성과

학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규모는 총 742억원으로 전체 사회공헌 지원금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발전기금(63%, 469억원), 장학금(15%, 110억원) 및 학술 · 교육 관련 단체 지원(14%, 101억원)에 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건수 측면에서는 개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총 1,305건(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학술 및 교육 세부분야(금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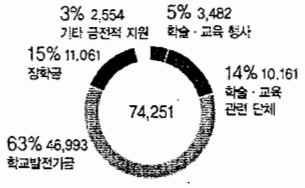

학술 및 교육 세부분야(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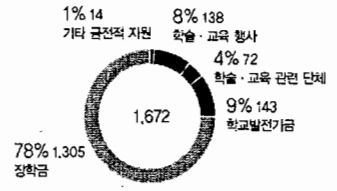

주 :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중 실적

활동내용

학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술 · 교육 행사 지원**
  - 연구 · 세미나 · 학술대회 · 국제포럼 등 후원
  - 지역주민 등을 위한 금융교실 · 경제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술 · 교육 관련 단체 지원**
  - 금융학회 등 학회 후원 및 학술발표대회 지원
  - 산학협력 연구지원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협찬
  - 어린이도서관 설립 지원
- **학교발전기금 :** 대학교 · 연구소 등 발전기금 출연
- **장학금**

환경 세부분야(금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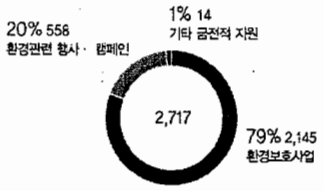

환경 세부분야(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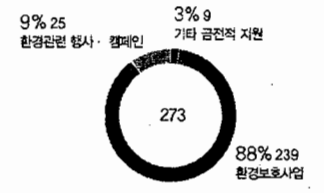

주 :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8년 중 실적

환경분야

지원금액 및 성과

환경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 규모는 총 27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1% 수준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금액의 79%에 달하는 21억원이 환경보호사업에 지원되었으며 그밖에 환경관련 행사 · 캠페인에 5억원(20%)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건수의 경우에도 환경보호사업에 총 지원건수의 88%에 해당되는 239건의 지원활동이 이루어 졌습니다.

활동내용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보호사업 지원

- 환경보호사업 실시 : 남산 가꾸기, 국립공원 수목표찰 부착사업, 신천 치어방류, 낙동강 보호 등
- 환경보호사업 지원 : 생태복원사업,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사업, 수목원 보호사업 등 지원
- 환경보호단체 지원 : 녹색연합 ·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지원 및 봉사활동 공동 실시
- 국제적 활동 지원 : UNEP/FI 등 국제기구 활동 지원

- 환경 관련 행사 · 캠페인 지원

- 행사 개최 및 지원 : 환경 캠프, 자연사랑 음악회 · 미술 대회, 전국환경사진 공모전 등
- 캠페인 지원 : 천연기념물 보호 캠페인, 청소년을 위한 환경 캠페인 등

- 기타 금전적 지원 : 환경 관련 공익상품 개발 등

금융 상품 및 교육 분야

현황 및 성과

은행의 공익 금융상품은 2006년 말 현재 86개(318만 계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은 203억원입니다. 또한 은행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4만명을 대상으로 456,903 인시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익금융상품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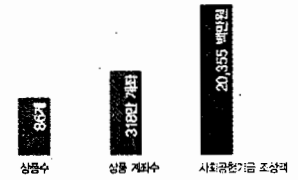

주 :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말 기준

금융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주 : 1) 21개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의 2006년 중 실적
2) 수혜자 인시 : 1)수혜자 수 X 수혜자 1인당 평균 교육이수시간

활동내용

금융상품 및 금융교육 분야에 대한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금융상품
  - 예금상품 : 예금금액 또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은행이 기금으로 적립하여 사회공헌활동 지원
  - 카드상품 : 카드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은행이 기금으로 적립하여 사회공헌활동 지원
  - 대출상품
    - ▸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
    - ▸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
    - ▸ 신용불량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한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
  - 기타상품 및 서비스 : 노약자, 장애인, 노숙자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 면제
- 금융교육 : 다양한 계층(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지역주민 등)을 위한 금융 · 경제교실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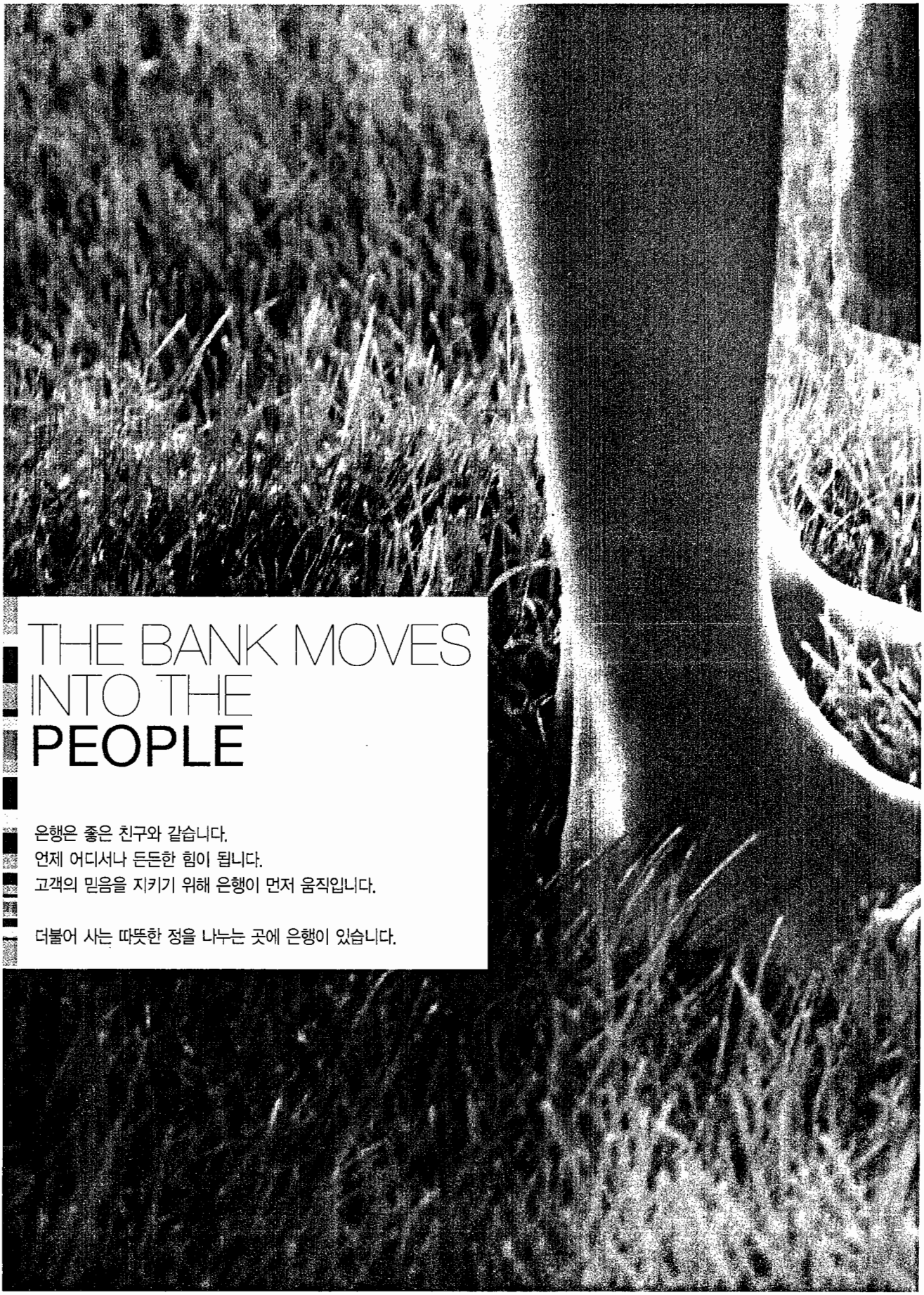

THE BANK MOVES INTO THE PEOPLE

은행은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힘이 됩니다.
고객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혜별 사회공헌활동]

한국산업은행
KOREA DEVELOPMENT BANK

ⓤ bank kdb 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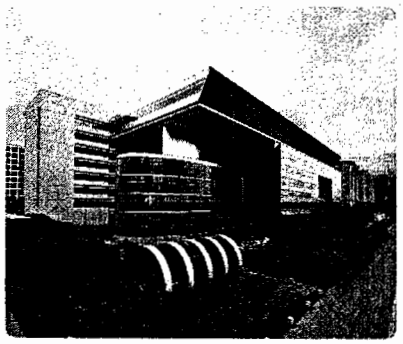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김창록
설립연도	1954. 4.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임직원수	2,245명
영업점규모	49개 지점 (해외 8개지점 포함)
자본금	8조 2,419억원
총자산	104조 5,233억원
당기순이익	2조 1,008억원

○ 연혁

1954. 04	한국산업은행 설립
1961. 12	주식인수, 사채보증, 외자도입업무 취급
1969. 02	산업금융채권 일반매출 실시
1973. 03	갑류 외국환은행업무 취급
1985. 03	본점 이전(종로구 관철동 10-2)
1989. 01	신탁업무 취급
1990. 08	유가증권 인수, 매출, 모집업무 취급
1993. 12	기업 해외투자 인허가업무 취급
1998. 01	법정자본금 증액(10조원)
1998. 12	사외이사제 도입
1999. 05	금융감독위원회 경영건전성 감독 수감기관 편입
1999. 07	국채전문딜러 자격 취득
2001. 07	본점 이전(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2003. 09	빙카슈랑스 업무 취급
2004. 04	자본금 1조원 증자 (증자후 납입자본금 8조 2,419억원)
2005. 01	수탁회사 업무 취급
2005. 03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2005. 12	혁신평가 우수기관 및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2006. 12	2006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및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등급 획득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산업은행은 고객중심경영, 내실위주경영, 인재중시경영을 경영이념으로 'Global Investment Bank'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구조조정 및 컨설팅 등 핵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및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를 선진 우량은행 수준으로 개선하고 핵심업무의 경쟁력 제고 및 업무관행, 의식 등을 Global Standards 수준으로 제고할 것이며, 적정이익 실현을 통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안정적 성장 및 국제적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Fee Business 업무강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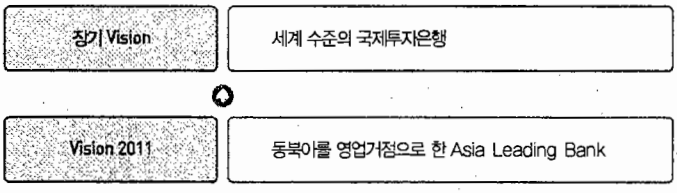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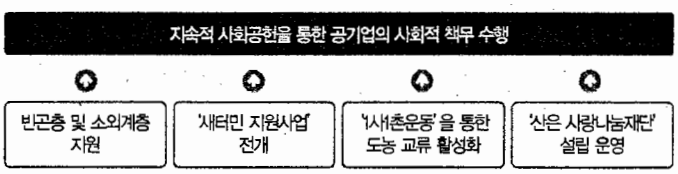

【 주요 사회공헌활동 】

(산은장학금)

산업은행은 임직원 급여의 10,000원 미만 끝전을 모아 은행에서 매칭 기부하여 조성된 기금을 산은장학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은장학금은 소년 · 소녀가장, 조손가정, 편부모가정, 장애가정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학자금 및 생활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2기까지 126명의 불우청소년에게 지급되었으며, 3기 100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산은창업지원기금)

산업은행은 산은창업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저소득 빈곤계층 및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은창업지원기금의 재원조달은 산업은행의 기부 및 공익형 예금 시판을 통한 일정률의 기금적립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파산자, 신용불량자 등이 이 기금의 수혜대상이며 현재 총 27명에게 무담보 신용대출 형태로 창업지원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산은가족자원봉사단)

1996년 3월 산업은행 임직원 및 그 가족을 구성원으로 '산은가족자원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산은가족봉사단은 자원봉사단, 이웃사랑팀, 봉사지원팀, 긴급재난구호팀으로 각각 봉사활동 특성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팀은 삼성농아원, 주몽재활원 등 6개 복지시설에서 매월 정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지원팀은 자원봉사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구호팀은 수해 및 재해 발생시 피해지역에 파견되어 긴급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누기 캠페인)

산업은행은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연 2회 헌혈행사와 매 분기마다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씩 성금 모금 캠페인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촌사랑 1사 1촌 운동)

산업은행은 2005년부터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후 특산물 구매 등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주민 서울초청행사와 어린이 경제교육 및 환경체험 캠프, 어린이 철새탐사 및 농촌체험 캠프 등 다양한 도농교류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1,765	–
환경	3	40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381	35
지역사회 · 공익	1,288	1,360
총 합계	3,437	1,435

농협중앙회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농협

○ 개요

2006.12. 기준

회장	정대근
설립연도	1961. 8. 15.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임직원수	15,622명
영업점 규모	987개 지점 (해외 1 개 지점 포함)
자본금	9조 2,773억원
총자산	229조 679억원
당기순이익	1조 545억원

○ 연혁

1961. 08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설립
1961.10	공제(보험)업무 개시
1991. 04	공공예금업무 전산화(국내은행 최초)
1997. 03	농협선물(주) 설립
1998~1999	대일경제 금융대상 금상 수상
1999.12	수신 · 여신 · 신탁부문 ISO 9001 인증 (국내은행 최초)
2000. 07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축협, 인삼협 통합)
2002. 06	한겨레신문 은행선호도 조사 5년 연속 1위
2003. 01	농협CA투신(주) 설립
2004. 08	농협문화복지재단 설립
2006. 02	NH투자증권 설립
2006. 10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5대 협동조합에 선정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 · 소비자 ·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

농협은 비전인 '세계일류 협동조합 금융그룹'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그룹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케팅역량 강화로 영업력 배가와 글로벌 경쟁을 위한 Infra구축, 기본사업의 양적 · 질적 확대, 신성장동력 확충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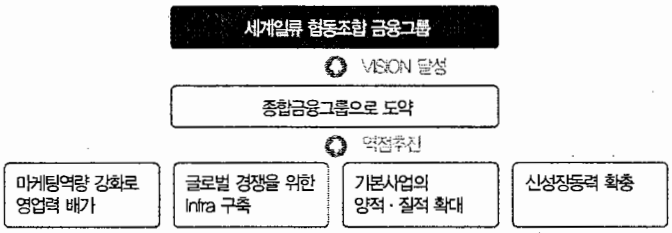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농협은 '고마운 농협 · 꼭 필요한 농협'이 되기 위해 나눔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형 사회공헌 확대, 특화된 사회공헌사업 추진, 공익 연계 마케팅 전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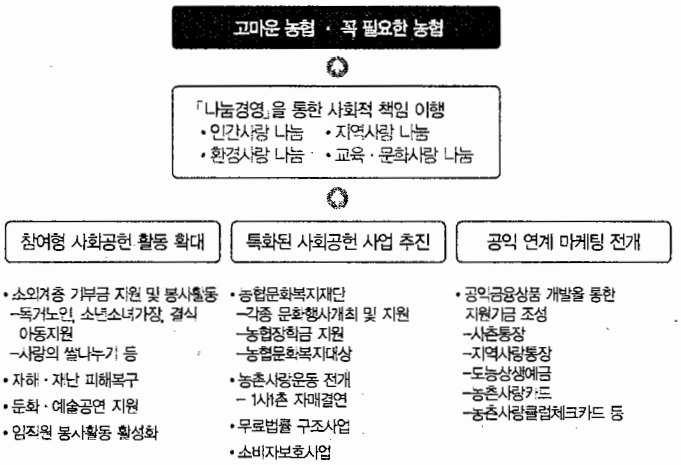

【 주요 사회공헌활동 】

(공익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운영)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농협문화복지재단'을 2004년 7월에 설립하여 농촌문화의 계승 ·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 ·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출연한 기금은 3,004억원이며 2008년까지 6,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요성과

- 농촌지역 자연속 맑은 콘서트 개최(17회)
- 농촌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실시(180명)
- 전통문화공연단체 및 농촌문화계승 지원(1,143백만원)
- 농촌지역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돕기, 농촌사랑 간병인육성지원 등 농촌복지증진 지원(222백만원)
- 농촌대학생 400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754백만원)
- '도전 골든벨(KBS)' 참여 등 장학사업 실시(1,184백만원)
- 농협문화복지대상 시상(363백만원)

(농촌사랑운동 전개)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전환과 지원으로 농업, 농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농촌사랑운동은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국민건강 증진과 도시민 · 농업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는 도 · 농 상생운동이자 나라사랑 운동입니다. 도 · 농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1사1촌 자매 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에게는 고품질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기업에게는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 · 농 상생의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2006년 주요성과

- 농촌사랑 회원모집 : 200만명(누계 337만명)
- 1사1촌 자매결연 : 6,712쌍(누계 14,498쌍), 자매결연 교류를 통해 1,395억원 농산물 판매
- 한국경제신문 주간 사회공헌대상 수상(2006. 11. 9.)

(농업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농업인의 영농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과 억울함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의 부족, 법원과 원거리 거주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 소송절차의 복잡 등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요성과

- 무료법률구조 : 6,316명(누계 66,254명)
- 무료법률구조기금 출연 : 13억원(누계 146억원)
- 법률상담 : 651회 실시하여 17,065명 교육, 2,017명 상담

(농업인 소비자보호사업)

농업인은 일상 및 영농활동에 있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 절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도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요성과

-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 : 224건 (누계 6,374건)
- 농협 자체해결 : 12,984건 (누계 148,332건)
- 농업인 소비자보호사업을 위해 '농협 이동상담실' 운영 : 56개 시 · 군지역, 5,485명 교육, 827명 상담

(공익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지원기금 조성)

무의탁 노인 등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고 농촌사랑운동 등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금융상품을 판매하여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보전, 소외계층지원, 농촌지원기금 등 총 354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주요성과

- 사촌통장, 지역사랑예금,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 등 다양한 공익상품 개발 · 판매로 273억원의 기금을 조성
- 1사1촌운동 등 농촌사랑운동, 지방자치단체발전기금,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과 양로원, 소년소녀 가장에게 쌀, 김치, 이불 전달 등 다양한 지원 실시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107,072	8,740
환경	1,038	12,691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4,798	1,827
지역사회 · 공익	17,457	106,632
총 합계	130,365	129,890

신한은행

○ 개요

2006.12. 기준

CEO	신상훈
설립연도	1897. 2. 19.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임직원수	10,741명
영업점 규모	1,026개 지점 (해외 19개 지점 포함)
자본금	7조 5,280억원 (납입자본금)
총자산	176조 9,745억원
당기순이익	1조 4,311억원

○ 연혁

1897.02	한성은행(舊조흥은행) 설립
1982.07	舊신한은행 설립
1993.07	국내은행 최초 고객만족센터 설치
1995.11	국내 最古은행, 最古법인기업 인증 획득
1998.06	동화은행 인수
1999.05	충북은행과 합병
1999.07	국내 은행 최초 인터넷뱅킹 서비스 실시
1999.09	강원은행과 합병
2001.09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
2003.09	신한금융지주회사 뉴욕 증시 상장
2004.09	여자프로농구단 S-birds 창단
2005.07	국내은행 최초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2006.04	통합 신한은행 출범
2006.04	금융권 최초 e-sports대회 창설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신한은행은 고객에게는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주주로부터는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임직원에게는 존경받는 일터를 제공하며, 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또한 한 차원 높은 경영문화 구현을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금융권을 선도하여 고객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일등은행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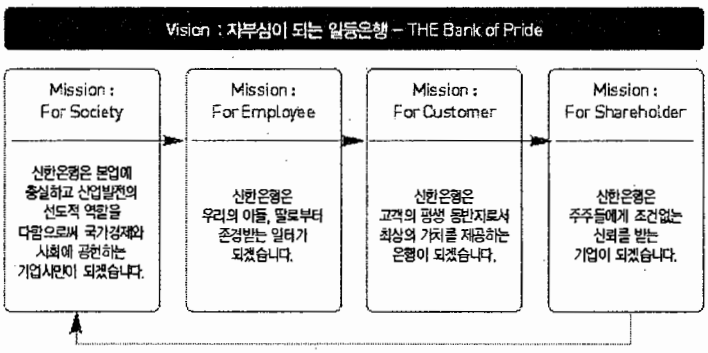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신한은행은 '자부심이 되는 일등은행'이라는 경영 비전을 지향점으로 하여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목표를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신한은행'으로 정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따뜻한 세상', '밝은 세상',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복지, 학술교육, 자원봉사, 환경보전, 문화예술, 체육진흥, 공익상품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로 인한 성과와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최근 사회의 트렌드 변화, 소비자 인식변화, 글로벌 스탠다드 강화, 은행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세대', '행복공감', '환경지향', '문화나눔' 등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합 후 더욱 커진 '신한은행 봉사단(단장 : 신상훈 은행장)'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및 지역공동체와 늘 함께 호흡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2006년에 구축한 사회공헌 커뮤니티 '아름다운 은행(The Beautiful Bank)'을 활성화하여 사회책임경영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Happy Messenger '신한은행 봉사단')

2004년 '신한은행 봉사단(단장 : 신상훈 은행장)'을 설립하여 전통문화 보존,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전 부점에서 문화재 지킴이 활동,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인간사랑 참여 캠페인, 결식아동 지원, 사랑의 연탄 · 김장 나눔, 긴급 재해복구 지원 등 릴레이식 나눔사랑을 전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국내외 장학사업)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신한은행 희망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신한은행 희망재단은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학술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주요사업은 국내장학사업으로 매년 소년소녀가장과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해외장학사업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한인 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매년 1억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신한은행 강원장학회'와 '신한은행 충북장학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메세나의 산실 '한국금융사박물관 · 신한갤러리')

신한은행은 한국금융의 역사를 소개하고 관련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금융사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거리인 중구 태평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금융사박물관은 총359평 규모에 3,000여점의 금융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금융사박물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신한갤러리'는 특별 기획전을 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각종 전시회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젊은 유망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연계 프로그램)

최근에는 아름다운 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NPO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나눔교육, 저소득빈곤층 지원사업과 같은 공익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금융기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경제교실,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행사, 선생님 해외보내기 사업, 생활체육 육성 지원 등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책임경영 대출, 아름다운 펀드, 의인후원 정기예금, 사랑의 약속 예적금 등 공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프로그램)

신한은행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자연친화적인 내용의 수목표찰 부착을 통해 등산객들의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환경 훼손현장 고발'을 주제로 환경부 후원 하에 매년 '전국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평 공원 가꾸기 사업, 천연기념물(동 · 식물) 보호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그린 복리신탁, 낙동강 살리기 통장 등 환경상품을 개발하여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직 · 간접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전 세계 금융기관 협의체인 '온실가스 정보공개 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가입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한 축인 환경관련 금융기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8,457	1,101
환경	251	2,651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21,514	39,586
지역사회 · 공익	17,639	7,546
총 합계	47,861	50,884

우리은행

개요

2006.12. 기준

CEO	박해춘
설립연도	1899. 1. 30.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임직원수	14,154명 (비정규직 3,528명 포함)
영업점 규모	734개 지점 (해외 19개 지점 포함)
자본금	3조 1,797억원
총자산	186조 5,305억원
당기순이익	1조 6,427억원

연혁

1899. 01	대한천일은행 설립[(구)한국상업은행]
1932. 12	조선신탁주식회사 설립[(구)한일은행]
1956. 03	증권거래소 상장 1호
1982. 10	국내 최고 민영화 은행
1998. 07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결합
1999. 01	한빛은행 설립
2001. 04	우리금융그룹 출범
2001. 12	평화은행 분할 합병
2002. 05	우리은행으로 은행명 변경
2003. 07	우리은행-우리종금 합병
2006. 02	우리은행 총자산 140조 돌파
2006. 12	은행권 최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 비전 및 경영전략 】

(비전 및 가치체계)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1등 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고객, 도전, 정직, 인재차원의 WOORI WAY라는 4가지 핵심가치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1등 은행'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Woori's Goal 고객에 대한 헌신과 공감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인의 존재 目的입니다.
- Woori's Power 창의와 혁신을 통해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성과를 창출하려는 우리인의 부단한 意志입니다.
- Woori's Rule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지켜 나가는 우리인의 한결같은 姿勢입니다.
- Woori's Quality 글로벌 일류 금융전문가로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우리인의 기본적인 資質입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우리은행은 인간사랑, 행복추구, 희망실현을 통해 '함께 하는 사랑, 꿈과 희망을 키우는 나눔 금융'이라는 사회공헌활동 비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추진 목표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임직원 직접참여 위주의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로 새로운 은행 이미지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마케팅 강화와 임직원의 일체감 조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추진,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문화확산, '우리사랑기금' 조성 및 운영 활성화로 일체감 조성, 비영리단체 연계를 통한 공익마케팅 활동 강화, 행내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공헌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 전략을 통해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Together Woori 임직원 자원봉사 캠페인)

우리은행은 'Together Woori' 임직원 자원봉사 캠페인을 2004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상 · 하반기 각 2개월 씩 전부 실점이 자발적으로 봉사처 및 봉사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에는 158개 부점에서 2,728명의 임직원이 이 캠페인을 통해 자원봉사를 실천하였습니다.

(우리사랑기금 · 우리어린이사랑기금 조성 운영)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사랑기금 · 우리어린이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랑기금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1구좌 당 1천원 씩 모금하여, 은행 내 봉사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또는 재해복구 · 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4,60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월평균 29백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어린이사랑기금은 임직원이 급여일에 1만원 미만 끝전에 대해 일괄 모금하여 결식아동도시락 지원 및 북한어린이 돕기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NGO · NPO단체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우리은행은 NGO · NPO단체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랑의 헌혈행사, 수해복구 자원봉사,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등을 개최하고 우리은행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소외계층 지원활동)

우리은행은 우리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마을 교류와 도서벽지어린이 서울 초청행사를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마을 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한마당, 과실수 및 텃밭 분양, 자매결연마을 생산쌀 임직원 판매, 자매결연마을 생산배추 전량 수매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거제 명사초등학교와 함양 금반초등학교의 도서벽지 어린이 각 40명을 초청하여 우리은행의 주요시설 견학 및 서울여행과 같은 초청행사를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개선활동)

우리은행은 우리의 자연보호 및 환경개선활동을 앞장 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사1산 남산가꾸기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왕벚나무를 남산에 식수하고 임직원이 참여하여 서양등골나무 제거 및 등산로 청소 등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3,521	-
환경	38	250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20,930	-
지역사회 · 공익	3,971	3,683
총 합계	28,460	3,933

SC제일은행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Standard Chartered
SC 제일은행

○ 개요

2006.12. 기준

CEO	John Filmeridis
설립연도	1929. 7.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임직원수	6,019명
영업점 규모	403개 지점
자본금	1조 2,366억원
총자산	56조 8,258억원
당기순이익	1,546억원

○ 연혁

1929. 07	조선저축은행 설립
1950. 05	한국저축은행으로 은행명 변경
1958. 12	제일은행으로 은행명 변경
1995. 04	시중은행 최초 가용 총수신 20조 돌파
1999. 12	예금보험공사와 뉴브리지캐피탈 간의 당행 발행주식 매각을 위한 본 계약 체결
2005. 01	뉴브리지캐피탈과 SCB간 당행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2005. 04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 완료
2005. 09	SC제일은행으로 은행명 변경
2005. 12	자본금 1조 1,160억원 (유상증자 864억원)

【 비전 및 경영전략 】

(비전 및 경영전략)

SC제일은행은 한국 금융산업의 선도은행을 비전으로 하고 Leading The Way(앞서가는 선도은행)라는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의도는 은행의 성장을 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올바른 전략과 은행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비전	한국 금융산업의 선도 은행 /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의 선도은행			
브랜드 약속	진정한 파트너 – 모범적 리더십			
핵심가치	신속 · 적극	신뢰	창의	국제적	개척정신
접근방법	**참여** 우리의 장점인 고객관리 및 경험을 활용 할 수 있는 매력적이며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참여한다.	**경쟁력 있는 포지셔닝** 세계적인 금융서비스와 현지 토착화 그리고 창의력을 결집하여 경쟁은행을 앞서 간다.	**원칙적인 경영**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철저한 비용 및 리스크 관리로 균형 잡힌 경영을 추구한다.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을 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 사전 예방, 개안수술, 안과병원 설립, 의료 교육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 지원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전반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Seeing is Believing)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시각장애의 예방과 시각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봉사활동, 개안수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의 마라톤과 산책 및 산행 도우미, 안과병원과 연계한 진료 및 수술, 시각장애 예술인 지원, 시각장애 어린이와 함께 하는 여름캠프, 각종 행사 시 시각장애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나눔캠페인)

SC제일은행의 '한사랑 나눔캠페인'은 2002년 이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모금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임직원 본인이 약정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직장내 모금 캠페인입니다. 이에 더해 임직원의 모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은행에서 출연하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점자도서관, 기타 사회사업을 전개하는 NGO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휴가 제도 도입)

SC제일은행은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의 활성화와 임직원 봉사활동의 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자원봉사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연간 2일간의 유급 자원봉사휴가(사회봉사휴가 3일 별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실적은 연 인원 475명, 연 봉사시간 2,850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선바자)

매년 연말 본점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하여 자선 바자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사회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 및 행사 지원)

전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술인 또는 각 사회 단체에 본점 로비와 본점 앞 광장을 개방하여 예술활동, 소외 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 자선기금 모금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1,370	-
환경	-	-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150	-
지역사회 · 공익	1,290	475
총 합계	2,810	475

하나은행
HANA BANK

하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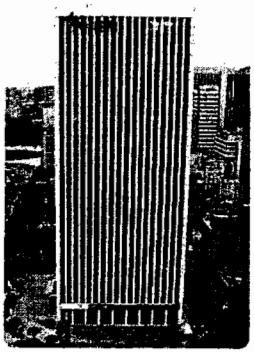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김종열
설립연도	1959. 12.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임직원수	9,180명 (비정규직 포함)
영업점 규모	610개지점 (해외 6개 지점포함)
자본금	9,872억원
총자산	123조 9,012억원
당기순이익	1조 458억원

○ 연혁

1959. 12	서울은행 설립
1971. 06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1991. 07	하나은행 설립
1998. 06	충청은행 인수 (P&A)
1999. 01	보람은행과 합병
2002. 12	서울은행과 합병
2004. 01	중국 청드국제은행 인수
2005. 12	하나금융지주 출범
2006. 06	하나금융 공익재단 출연
2006. 12	국내은행 유일 36년 연속흑자달성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하나은행의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며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식회사로서의 주주가치의 극대화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만족입니다. 또한 시장중심, 고객중심, 사람중심, 성과중심의 4대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성과중심의 문화, 사람중심의 문화, 다양성의 문화, 즐거운 직장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

하나은행은 '초우량 종합금융서비스 네트워크'를 비전으로 은행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한 금융네트워크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고객, 주주, 공동체 직원의 가치증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유수의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우량 종합금융서비스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하나은행은 소외된 이웃, 자연, 경제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동체 기여를 위해 나눔은행, 푸른은행, 문화은행이라는 3가지 사회공헌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천 ·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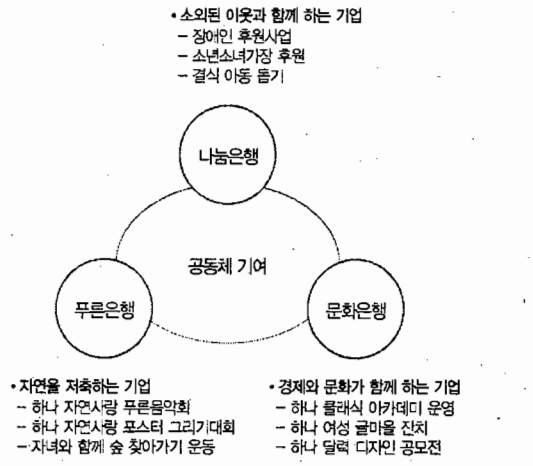

【 주요 사회공헌활동 】

(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은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하나캐피탈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건립,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운영, 사회복지지원사업 및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유료 노인요양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회공헌활동을 보면 불우이웃돕기(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선포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진행), 한국해비타트 참가, 사랑의 김장나누기, 결식 아동지원사업, 사회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 스키캠프 등을 개최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나눔은행 프로그램)

기업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은 장애인 복지후원사업, 결식아동을 위한 자선사업,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1997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인연을 맺고 매월 급여일에 5천원씩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후원을 하고 있으며, 1997년 장애우를 위한 화장실 만들기, 사랑의 나들이 행사, 1999년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PC보내기, 2000년 장애우 채용 박람회 후원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장애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한국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소년소녀가장 63명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최초의 행복나눔선탁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우리 주위의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푸른은행 프로그램)

1993년부터 하나은행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미술 재능을 아름답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어린이 포스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환경부의 공식후원대회로 매년 전국에서 25,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초등학교 재학생 그리기 대회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단체부문 우승학교에 친환경적 공간인 '꿈의 미술실'을 꾸며주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양평에 환경보전의 숲을 가꾸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숲 찾아 가기 행사, 푸른 음악회 등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화은행 프로그램)

하나은행은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은행, 무료 전시공간 운영,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미술품 시장의 활성화 및 미술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1년 청담동과 평창동에 신진작가들을 위한 무료전시공간인 '하나사랑'을 개관하여 신진작가 초대전 및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 미술품에 여신담보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미적 가치 뿐만 아닌 경제적 가치의 부각을 통해 미술품 시장의 경제적 활성화를 시도하였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생활의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거리의 미술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클래식 아카데미, 하나 미술 아카데미, 하나 달력디자인 공모전, 하나 여성 글마을 잔치, 하나빌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후원)

하나은행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후원활동 및 대표팀 공식 후원은행 지위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 스폰서로 참여를 하였고, 오필승코리아 적금, 태극펀드상품에서 조성된 금액을 기부금으로 해남 동초등학교 축구선수단의 월드컵 관람을 지원하였으며,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의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하여 한국 축구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9,942	-
환경	331	-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11,616	-
지역사회 · 공익	35,657	1,123
총 합계	57,546	1,123

중소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기업은행

○ 개요

2006.12. 기준

CEO	강권석
설립연도	1961. 8.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임직원수	8,949명
영업점 규모	466개지점 (해외 9개지점포함)
자본금	2조 2,914억원
총자산	106조 1,142억원
당기순이익	1조 533억원

○ 연혁

1961. 08	중소기업은행 설립
1991. 03	기은전산개발㈜ 설립
1991. 11	뉴욕지점 개설 (국외지점 1호)
1992. 07	기은팩토링㈜ 설립
1999. 04	㈜기은캐피탈 설립
2003. 12	KOSDAQ에서 증권거래소로 이전 상장
2004. 10	기은 SG 자산운용주식회사 설립
2005. 05	PB 브랜드 WIN CLASS 출범
2006. 04	제4회 2006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 수상
2006. 05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획득 (은행권 최초)
2006. 08	국제표준 ISO20000 인증
2006. 10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텔레마케팅 부문)
2006. 12	최우수 인터넷뱅킹 서비스 은행 연속 선정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기업은행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 제일주의와 혁신과 창의의 문화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은행의 공익성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적 책임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

기업은행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금융시장의 치열한 경쟁구도 하에서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IBK2010 글로벌 50대 선도금융그룹'이라는 비전과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Vision	IBK2010 글로벌 50대 선도금융그룹		
재무목표	총자산 220조원	시가총액 15조원	ROA 1.5%
6대 균형성장 과제	개인여신 강화체계 구축	핵심고객 수신 증대를 위한 점포망 재구축	바젤II 대응 체계 조기구축
	사업 다각화 체제 구축	기업여신고객 사전 선별역량 강화	본부·영업점 생산성 제고
4대 역량확보 과제	핵심인재 관리	통합CRM 구축	전략추진 역량 강화	조직문화 재구축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기업은행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확대, 특화된 사회공헌 사업추진 및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과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확대	특화된 사회공헌사업 추진	공익연계마케팅 전개
↓	↓	↓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참여와 나눔 실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가족 지원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상품 개발
•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 지원 • 이웃사랑 실천운동 지속적 전개 • 사회공헌관련 행사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기은복지재단 설립 –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의 난치성 질환 치료비 지원 –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 1직원 1기업 멘토링 실시	• 공익상품 개발 확대 – 우리나라 역사지키기 – 우리땅 독도지키기 – 내고향, 내고장 살리기

【 주요 사회공헌활동 】

(따뜻한 세상을 위한 사랑 나눔 실천)

기업은행은 은행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기은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우리사회의 불우한 이웃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랑의 연탄나르기 행사, 고아원, 정신지체 장애자 수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수해지역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사랑의 헌혈행사 등 전직원의 참여를 유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 나눔 실천)

기업은행은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며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난치병 질환 어린이 수술비 지원,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행사,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눔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업은행은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봉사, 환경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농번기 때마다 자매결연마을을 찾아 정기적으로 일손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2006년 6월 14일 1사 1촌 자매결연마을인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1리를 찾아 농번기 일손돕기로 도농간 형제의 정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업은행은 2006년 11월 17일 북한산 구기동 계곡 일대에서 '1사 1산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자연보호활동에는 기업은행 직원과 '캠퍼스 IBK 대학생 홍보대사' 30여 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줍기와 생태표지판 세척, 산불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 지원 및 기부활동)

기업은행은 매년 당기 순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개발하고 사회공헌 관련 행사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은사랑나눔기금 모금운동, 무담보소액신용대출재원 기부,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약정, JA(Junior Achievement)Korea 지원, MBC 사회봉사대상 후원 등 2006 년에 총 102억원을 지역사회발전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사회공헌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가족 지원)

기업은행은 2006년 4월 5일 40억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은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첫해인 2006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녀의 난치성질환 치료비 지원(49명, 233백만원),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활동(250백만원), 자녀장학사업(201명, 149백만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은복지재단은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민경제교육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2006년 3월 2일 '1직원1기업 자원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 1명이 하나의 기업을 담당하여 금융, 세무, 법률 등 경영컨설팅을 하는 상시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2,721	-
환경	-	8,979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1,604	699
지역사회 · 공익	7,234	5,114
총 합계	11,559	14,792

국민은행
KOOKMIN BANK

KB 국민은행

○ 개요

2006.12. 기준

CEO	강정원
설립연도	2001. 11.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임직원수	25,572명
영업점 규모	1,132개 지점
자본금	1조 6,819억원
총자산	약 211조원(신탁포함)
당기순이익	2조 4,721억원

○ 연혁

2001.11	합병은행(국민은행) 출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2001.11	증권거래소 국민은행 주식 상장
2002.04	Moody's로부터 국내 시중은행 최초 신용등급 A3획득
2002.05	국내 금융권 최초 세계 500대 기업 선정(Financial Times)
2002.12	ING 그룹과 새로운 전략적 제휴 약정 체결
2003.03	중국 광주사무소 개소
2003.09	국민카드 합병
2003.12	인도네시아 BII 은행 지분 인수
2003.12	정부지분 매각에 따른 완전 민영화
2005.01	3개 노조 통합
2005.09	S&P로부터 신용등급 A- 획득(BBB+ ▶ A-)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KB국민은행은 '편한 은행, 튼튼한 은행, 자혜로운 은행'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향상, 자산건전성 제고, 상품개발 등 대한민국 대표은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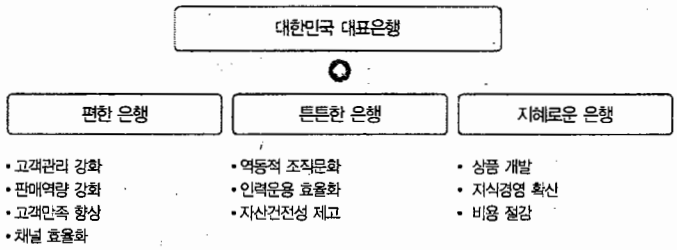

(비전 및 경영전략)

KB국민은행은 2007년 경영전략의 방향을 '미래 성장동력 강화'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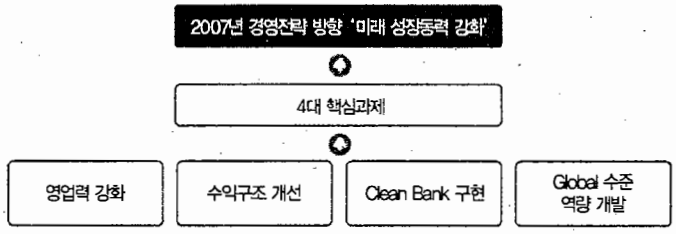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KB국민은행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과 고객에게 다가가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B국민은행만의 독자성이 부각되는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여 수혜자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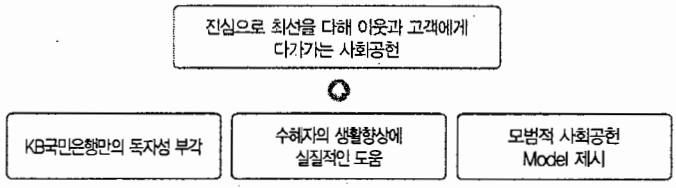

【 주요 사회공헌활동 】

(2006 KB국민은행 영어캠프)

KB국민은행은 서울특별시와 (사)KYC 좋은친구만들기 운동본부와 함께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2006 KB국민은행 영어캠프'는 평소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 청소년들에게 영어마을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저소득층 어린이 1,79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풍납 · 수유 영어마을캠프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6차(풍납 2차, 수유 4차)에 걸쳐 각 회차 당 5박 6일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 일체를 KB국민은행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2007년 이후에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위문품 기탁)

KB국민은행은 군부대를 방문해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위로하는 행사도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11월 14일 국군장병의 체육활동 지원 및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하여 육 · 해 · 공군 장병들의 체육과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축구공 등 다양한 위문품 40,000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용품 지원)

KB국민은행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용품의 사전 비축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긴급구호용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28일에는 총 30,000세트(해외 20,000세트, 국내 10,0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구호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눔)

KB국민은행은 2006년 11월 18일 불우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는 전국 12개 곳에서 2,6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배추 5만 포기(약 100톤 분량)의 김장을 담그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지정한 1만여 무의탁 독거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가구에 가구당 10kg씩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쓰인 2억원의 재원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마련한 것으로 직원들 스스로 비용을 조달하고 김장 담그기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은행 차원의 사회봉사 활동과는 달리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해복구 참여)

KB국민은행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2006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사회봉사단 575명이 강원도 홍천, 평창, 인제군을 방문하여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KB 국민은행 사회봉사단은 수해장소 토사제거 등 재해지역 복구활동, 구호물품 전달, 마을회관 건립 지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지역의 정리정돈 뿐만 아니라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수해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복구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강원방송 및 강원일보 등에 보도되는 등 KB국민은행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7,941	-
환경	79	9,615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4,072	-
지역사회 · 공익	18,272	55,053
총 합계	30,364	64,668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KEB 외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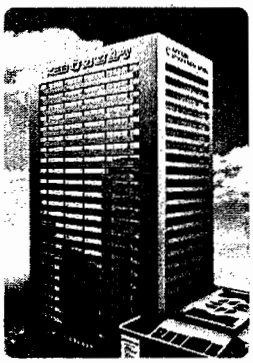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Richard F. Wacker
설립연도	1967. 1. 30.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임직원수	7,047명
영업점 규모	353개 (해외 28개 출장소 및 사무소 포함)
자본금	3조 2,245억원
총자산	69조 4,415억원
당기순이익	1조 62억원

○ 연혁

1967. 01	한국외환은행 설립
1967. 01	홍콩, 동경, 오사카, 사이공지점 개설 (국외지점 1호)
1972. 11	국내 최초 온라인 보통예금 개시
1978. 04	국내 최초 신용카드(비자) 업무 취급
1989. 12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
1990. 11	국내 최초 365일 자동화 코너 설치
1991. 11	외환은행 주식 일반 공개 모집
1994. 0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1997. 12	북한 금호출장소 개점
2002. 06	국내 최초 외화 자동인출기 개발
2004. 11	이라크 자이툰부대 내 아르빌 지점 개점
2005. 12	사회복지공익법인 '외환은행나눔재단' 설립
2006. 09	한국최우수은행(유로머니誌) 수상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외환은행은 무역금융 중심의 기업금융, 우수고객 위주의 개인금융, 다양한 카드 상품 등을 통해 'Smart & Profitable Growth'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Smart & Profitable Growth

- 무역금융 중심의 기업금융
- 우수고객 위주의 개인금융
- 다양한 카드 상품

건실한 자본 기반 확립 | 자산건전성 제고 | 수익력 강화 | 비용구조 효율화

고객중심 성장,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 시장 선도 역량 구축

(비전 및 경영전략)

외환은행은 내부역량 강화 및 전략적 마케팅과 같은 경영전략 아래 이를 통한 업계 최고의 명성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적의 전략적 마케팅
  - '고객맞춤형 상품 제공'
- 자본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 성장과 주주잉 보상 최적화
  - 경쟁우위 분야에 집중
- 경쟁우위 확보 수단으로서 서비스역량 강화
  - 고객만족 및 생산성 제고
- 업계 최고의 명성 및 수준 높은 윤리경영
  -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 내부 팀워크 강화
  - 개방적 의사소통 및 상호 신뢰
- 'Global Standard'에 입각한 인사관리
  - '적재적소'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외환은행은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질적 지원과 사랑의 수고가 함께 가는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가지 방향 및 전략에 의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사랑을 전하는 은행 : 태풍 등 긴급상황 발생시 자원봉사단 구성하여 구호활동 실시,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봉사활동 실천
- 두 번째, 마음을 나누는 은행 : 사내밴드의 자선행사와 후원금 모집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
- 세 번째, 희망을 주는 은행 :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및 환경보호운동 전개
- 네 번째, 미래를 밝히는 은행 :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

【 주요 사회공헌활동 】

(외환은행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외환은행 나눔재단')

외환은행은 사회복지법인 '외환은행 나눔재단'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인적 · 물적 지원을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세상에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에 총 97.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수해 복구 지원)

외환은행은 수해로 인하여 수심에 잠겨있는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에 참여하였습니다. 임직원 모금액 125백만원, 은행 수재의연금 500백만원 등 총 625백만원을 각 언론사에 기탁하여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Micro-Credit 재원 지원)

외환은행은 2006년 10월 31일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액자금대출 기금에 20억원을 기부하여 금융소외계층이 신용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소액자금대출(Micro-credit)은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관심을 모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유사한 제도로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무담보 · 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해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만으로는 신용지원을 받는 채무불이행자들이 신용회복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외환은행은 향후에도 금융지원을 받기 힘든 금융소외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활동 실천)

외환은행은 개발도상국 불우학생, 동남아 지진참사 구호성금 지원, 국제빈곤아동 돕기 등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지원을 위해 연간 1회씩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제 빈곤아동과의 1:1 후원 결연, 국제 빈곤아동 질병퇴치를 위한 백신개발 지원, 재외 한국인 동포 초청 치료비 지원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외환은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사회안전망구축사업' 지원, 노숙자 무료점심 제공 및 식비 지원, 노숙자 재활프로그램 지원, 한국해비타트운동본부 '사랑의 집짓기' 지원 및 봉사활동 참여, 사랑의 떡국나누기 행사 지원 및 참여, 노숙자, 빈곤층,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기관 지원,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 건립기금지원 등 직원 참여의 봉사활동에서부터 기부활동에 이르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장병 위문행사 실시)

외환은행은 2006년 12월 7일에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25명이 육군 9사단을 위문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래방 기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여 병사들이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군 9사단(백마부대)은 1950년 10월 26일에 창설되어 6.25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 끝에 백마고지를 사수하고 베트남 전에도 참여하여 용맹을 떨친 사단입니다. 외환은행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나눔경영을 지속적 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19	876
환경	–	386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246	–
지역사회 · 공익	4,210	1,431
총 합계	4,475	2,693

한국씨티은행
CITIBANK KOREA INC

citi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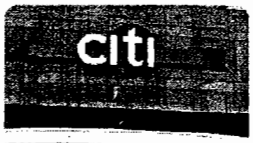

○ 개요

2006. 12. 기준

CEO	하영구
설립연도	1983. 3. 16.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임직원수	6,000명 이상
영업점 규모	249개 지점
자본금	1조 3,099억원 (납입자본금)
총자산	45조 3,450억원
당기순이익	3,240억원

○ 연혁

1983. 03	한미은행 설립
2000. 11	J.P.Morgan & Carlyle Consortium CDR 인수
2001. 05	제7대 하영구 은행장 취임
2004. 11	씨티은행 한국지점의 영업양수 ㈜한국씨티은행으로 상호 변경
2006. 11	제1회 씨티그룹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개최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한국씨티은행은 '가장 존경 받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신뢰와 자부심의 한국씨티은행'을 비전 2010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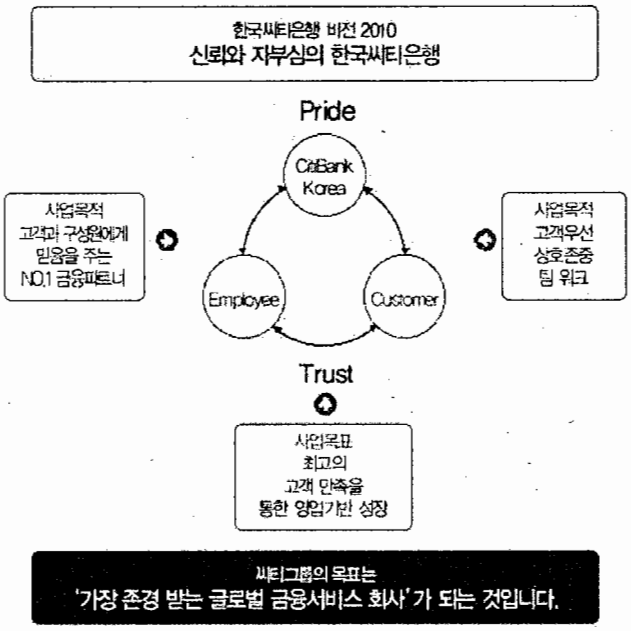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씨티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금융교육, 차세대교육, 지역사회 및 기업인의 사업기반 발전 등 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 역시 한국씨티은행의 지역사회공헌활동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30만 씨티그룹 직원이 함께 하는 본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매년 하루 유급 자원봉사 휴가를 제공하고, 직원이 연간 50시간 이상 일정 비영리단체를 통해 봉사하면 해당 단체에 500달러의 지원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1년에 하루 유급 근무일을 선택하여 본인의 '자원봉사일(Volunteer Day)'로 정하고 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인센티브 프로그램(Volunteer Incentive Program)'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YWCA연합회, 신나는 조합, JA(Junior Achievemnt)코리아 등의 단체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씨티그룹재단에서 500달러의 지원금액을 해당 단체에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4곳인 해당 단체는 앞으로 직원들의 신청과 회사의 심사 과정을 거쳐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씨티그룹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금융교육 프로그램)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Think Money)
한국씨티은행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인식을 갖게 하고 어릴 때부터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에 지혜롭게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 프로그램을 2006년도 핵심 프로그램으로 정하여 대한YWCA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씨티-이화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
한국씨티은행은 2001년부터 이화여대 경영대학과 함께 '씨티-이화 글로벌 금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은행 임직원이 자산관리, 투자은행 업무 등 은행전반 업무에 관한 사례 중심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학기에 걸쳐, 58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차세대의 교육 프로그램)

창의적인 경제생활 교육방법 공모전 석세스 프로그램(Success Program)
씨티그룹은 2005년부터 대한YWCA연합회가 진행하는 '석세스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교사들이 창의적인 경제·환경·생활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방법을 널리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말에 공모작 중 우수프로젝트를 시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기업인의 사업기반 발전)

사랑의 집짓기 운동 (Habitat for Humanity)
사랑의 집짓기운동(Habitat for Humanity)에는 1998년부터 참여하여 9년째 집없는 우리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채의 집을 건설하였으며 총 380여명의 씨티은행 직원들이 건축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신나는 조합 (마이크로 크레디트)
한국에서 씨티그룹재단은 1999년 그라민 은행을 통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회원들이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인 '신나는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신나는 조합은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이웃들에게 저리의 자활자금을 빌려주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 사업을 지난 8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씨티그룹 - 경희대학교 NGO 인턴쉽 프로그램
씨티그룹이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씨티그룹-경희대학교 NGO 인턴쉽 프로그램'은 차세대 시민사회 리더를 육성하고 국내 다양한 중소규모 NGO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국내 NGO에서 경력 개발을 원하는 전국 4년제 대학 2, 3학년 재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집 진행과정을 거쳐 255여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90명의 인턴들은 2007년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주요 6개 지역(서울 51명, 경기 13명, 경상도 17명,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에 위치한 30~40여개 주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
2003년부터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YWCA연합회와 함께하는 이 상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 제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로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도위원)씨와 젊은 지도자상 수상자로 동원호 취재를 기획한 김영미(분쟁지역 전문 프리랜서 방송 프로듀서)씨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1,000	-
환경	100	5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1,461	80,000
지역사회 · 공익	2,700	1,800
총 합계	5,261	81,805

한국수출입은행

○ 개요

2006.12. 기준

CEO	양천식
설립연도	1976. 7.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임직원수	707명
영업점 규모	23개 지점 (해외 12개 지점 포함)
자본금	3조 3,058억원
총자산	17조 4,485억원
당기순이익	1,683억원

○ 연혁

1969. 07	한국수출입은행법 제정 · 공포
1969. 10	한국외환은행 수은업무 대행
1976. 07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1987. 06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 개시
1991. 03	남북협력기금업무 취급 개시
1999. 11	경영혁신 최우수상 시상
2003. 09	남북한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지정
2005. 05	정부 5,000억원 증자(현물 납입)
2006. 10	신용등급 Aa3(Moody's) 획득 - 국내(정부통합) 최고 등급임
2006. 12	혁신 최우수상 대통령 표창
2006. 12	연간 여신지원 규모 30조원 돌파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국제거래 지원 및 최상의 공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경제발전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자 경영, 혁신경영, 인재경영,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고객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

수출입은행은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수출입금융의 창조적 선도은행,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전문은행, 대외경제협력 전담기관, 남북협력 전담창구, 국제정보 서비스 및 컨설팅 전문은행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혁신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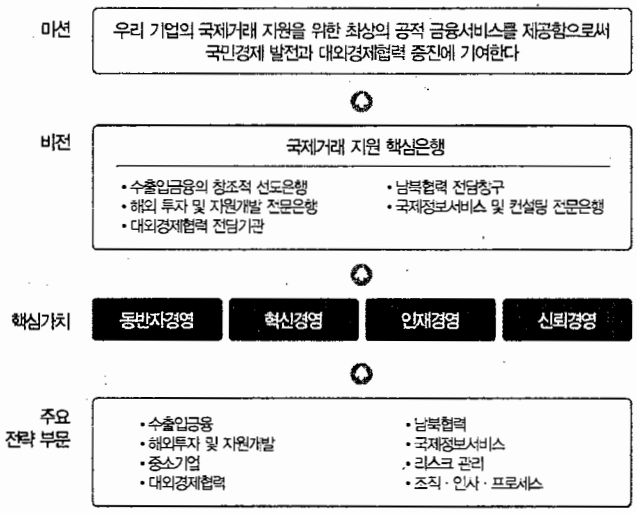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수출입은행은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봉사활동으로부터 탈피하여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매년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에 환원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확충 등을 통해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어울리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들도 이전의 일회적인 자원봉사로부터 벗어나 전 직원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외되고 아픈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봉사활동)

'수은나눔봉사단'은 임직원 중 자원자로 구성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봉사단입니다. 봉사단은 임직원이 매월 후원하고 있는 아동이 거주하는 보육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노인 및 장애인 목욕 시키기,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지역 긴급구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장애우, 무의탁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부활동)

수출입은행은 임직원 개인기부 활동을 통해 한국복지재단에 매월 정기적으로 불우아동을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임직원의 급여에서 끝전을 적립하여 아동보육원 · 양로원 ·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랑의 열매 달기, KBS 수재의연금 성금기탁, 탈북청소년 돕기, 대한적십자사 성금기탁 등 임직원이 참여한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수출입은행은 어린이 날 및 명절에 영등포 인근 초 · 중학교를 방문하여 가정형편이 불우한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의 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JA Korea의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초등학생 경제교육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국제화 고취 및 국제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매년 글로벌 비즈니스 열린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농촌마을 지원)

수출입은행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체육대회 참가, 마을주민 초청행사, 농산물 직거래 등 화합과 교류를 통해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수출입은행이 정성을 모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	–
환경	–	–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47	49
지역사회 · 공익	206	530
총 합계	253	579

수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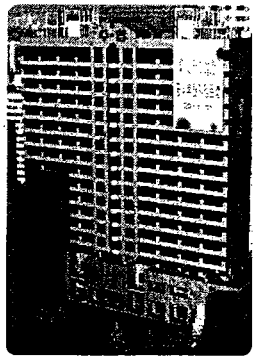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장병구(신용대표이사)
설립연도	1962. 4.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임직원수	1,783명
영업점 규모	106개 지점
자본금	11,581억원
총자산	155,487억원
당기순이익	1,186억원

○ 연혁

1962. 04	수협중앙회 창립
1963. 05	여신(대출)업무 개시
1969. 04	수신(예금)업무 개시
1974. 06	회원조합 상호금융업무 개시
1979. 01	외국환업무 개시
1988. 02	신탁업무 개시
1991. 10	신용카드업무 개시
2001. 04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영혁신운동 지속적 추진 - 2001. 04 ~ 2001. 09 New start 180운동 - 2002. 02 ~ 2002. 11 Jump 2&2 운동 - 2003. 01 ~ 2003. 11 Dash-3M 운동 - 2004. 01 ~ 2004. 11 OK ACE 0506 운동 - 2007. 01 ~ 2008. 11 BLUE I 0708 운동
2004. 06	Moody's 신용평가등급 'A3' 획득
2004. 11	국내신용평가등급 'AAA' 획득
2005. 07	S&P신용평가등급 'A-(s)' 획득
2005. 10	준법감시인 도입 운용
2005. 10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은행 지정
2006. 01	고객중심사업부제 도입

【 비전 및 경영전략 】

(비전 및 경영전략)

수협은 '고객과 함께하는 일류 해양수산은행'을 비전으로 영업경쟁력 강화, 성장인프라 구축, 해양수산금융 활성화, 협동은행 역할제고, 비전실현을 위한 평판 구축을 경영전략으로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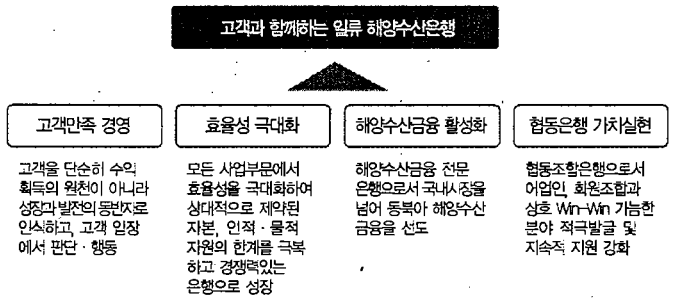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수협은 축적된 실천 운동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나눔경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수협 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나눔경영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 ·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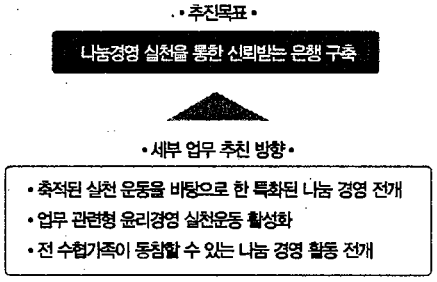

【 주요 사회공헌활동 】

(사랑海 헌혈행사)

수협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생명 나눔 사랑海헌혈행사'는 최근 사회적인 혈액부족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나눔 경영을 통한 자선적 책임을 이행코자 헌혈증서를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증하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혈증서의 기증으로 사회공헌, 봉사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2006년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간 2회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행사)

아름다운 가게 행사는 쓰지 않는 헌 물건,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에 새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물건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환경을 살리며 수익금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여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은 두 번 활용의 날로 지정하여 수협의 각 부서 및 영업점에서는 고객의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과 임직원들의 가정에서 쓰지 않는 재활용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수협은행과 아름다운 가게는 2006년부터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재활용품 기증과 자원활동을 통해 재사용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임직원 1,306명으로부터 12,177점의 재활용품을 기증받아 아름다운 가게 판매 행사에 참여하여 판매수익금 630만원을 아름다운 가게 재단에 기부 하였습니다.

(ONE-TO-ONE 운동)

수협은행이 '1직원 1봉사활동 전개'를 목표로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봉사와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직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서나 지점 단위로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자연환경 보호 활동,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ONE-TO-ONE 운동'의 세부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전 부점이 '1부점 1단체 결연 운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푸른 산타 봉사단)

수협은 2003년부터 지역별로 전국 15개의 '푸른 산타 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지역 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독거노인 등 1개 이상 후원처를 선정하여 후원금 지급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요활동으로 서울 중부권역 봉사단은 독거노인에게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쌀, 미역, 굴을 전달하였으며 후원처(테레사의 집) 어린이를 초청하고 본부견학 및 인근 공원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랑海 동전 모으기 행사)

수협은 임직원의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임직원 급여 지급 시 세후 1,000원 미만 금액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사랑海 동전 모으기'를 통해 조성된 모금액은 푸른산타 봉사단 활동시 불우이웃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8명의 임직원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급여 끝전에서 모은 후원금액만큼 추가로 은행에서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환대신 사랑海 쌀 보내기)

수협은 영업점 개점이나 이전식이 있을 때마다 축하화환 대신 쌀로 기증받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축하화환은 한번 전시 후 시들면 버려야 하는 소모품으로 낭비성이 있으나 쌀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선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711	-
환경	3	-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54	-
지역사회 · 공익	75	269
총 합계	843	269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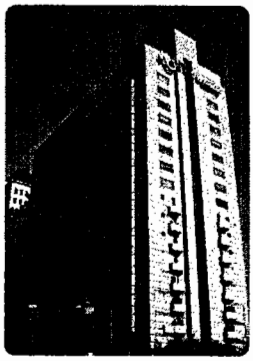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김규복
설립연도	1976. 6.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임직원수	2,147명
영업점 규모	85개 지점
자본금	-
총자산	43,752억원
당기순이익	-

○ 연혁

1961. 11	신용보증기금 준비금제도 실시
1974. 12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 공포
1975. 0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1976. 06	신용보증기금 설립 (1976. 06. 01)
1995. 0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설치
1997. 04	어음보험업무 시행
1998. 05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지정
2004. 03	대출채권보험업무 시행
2006. 06	신용보증기금 New CI 선포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합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

코딧 신용보증기금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HOPE-KODIT 실현'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희망을 함께하는 최고의 종합지원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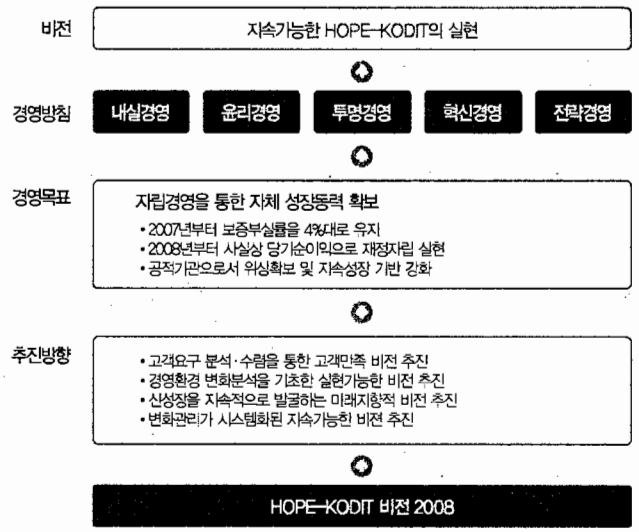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나눔경영, 감동경영, 이미지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

1. '이웃사랑나눔단'을 통한 조직적인 봉사활동
2.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1사1촌 자매결연 추진 등)
3. 중소기업과 연계한 봉사활동 추진으로 특화된 고객만족 실천
4.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신규 프로그램 발굴

〈전략〉

- 조직시스템 강화
- 동기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홍보 강화

【 주요 사회공헌활동 】

('이웃사랑나눔단'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 전개)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이웃사랑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5년 12월 2,200여 명의 전직원이 참여하는 '이웃사랑나눔단'을 결성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나눔단은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지역별로 지부를 두고 있으며, 2006년 한 해 청솔노인복지회관, 성심의 집, 방주원, 일심재활원 등 전국 20여 개 복지시설을 200여 회 이상 방문하여 목욕, 청소, 식사준비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전국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증기업 자녀 난치병 치료비 지원)

2006년 6월 1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보증기업 직원 자녀의 난치병 치료비 1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딧 신용보증기금의 동반자인 보증기업의 직원이 자녀의 난치병 치료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 환경보호활동 참여)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관리사업소와 '1사-1지구' 협약을 체결하고, 한강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강 나무심기 행사(직원 및 가족 100여 명 참여)를 통해 꽃과 나무를 심는 한편, 수해로 몸살을 앓은 밤섬을 찾아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봉사단은 정기적으로 한강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봉사단' 활동)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나마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 총18회 174명 참여)

(불우어린이 초청행사)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불우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속초 연수원으로 초대하여 2박 3일간 설악산, 통일전망대, 정동진 안보전시관 등을 관람하는 등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남 김해시 소재 방주원(고아원) 어린이 35명 및 보육교사 6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실시)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마포구 관내 10여 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성금 및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 소재 '삼동소년촌'에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직원들이 '도서모으기운동'을 전개하여 마련한 도서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행사)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부족한 혈액으로 인해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작은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영업본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번 행사 때마다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	-
환경	-	104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7	-
지역사회 · 공익	81	428
총 합계	88	532

대구은행
DAEGU BANK

DGB 대구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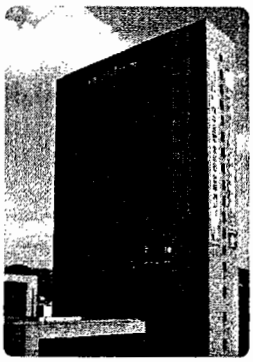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이화언
설립연도	1967. 10. 7.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임직원수	2,828명 (상시 근로자 총수)
영업점 규모	202개 지점
자본금	6,606억원
총자산	23조 714억원
당기순이익	2,405억원

○ 연혁

1967. 10	대구은행 설립
1995. 01	국내은행 최초 파랑새 폰 뱅킹 서비스 실시
2001. 08	국내 최초 사이버 독도 지점 개설
2003. 07	DGB봉사단 이웃 돕기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2004. 06	'존경 받는 30대기업' 선정, 금융권 1위
2005. 10	'한국을 빛낸 CEO' 윤리경영부문 대상 수상
2006. 04	'제5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06. 07	UN Global Compact가입
2006. 09	UNEP / FI 가입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비전 및 경영전략)

지역점유율 50% '세계 초우량 지역은행'

- 지역점유율 50%는 지역금융시장에서 질적 · 양적 성장을 통한 리딩뱅크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 세계 초우량 지역은행은 경영성과, 손익측면에서 세계 초일류 지역은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이고 경영 및 시스템을 세계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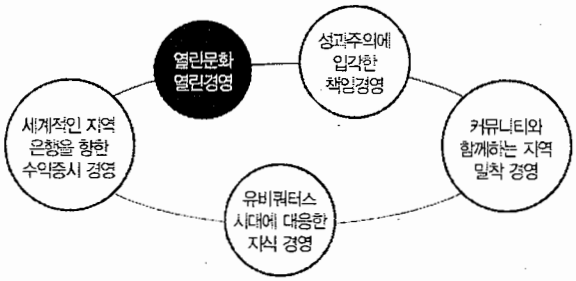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대구은행은 지역사회의 발전이 곧 은행의 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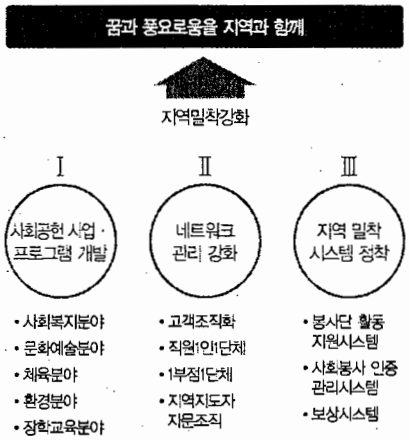

【 주요 사회공헌활동 】

(DGB봉사단 운영)

금융권 최초로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DGB 봉사단은 대구지역 18개, 경북지역 4개, 서울지역 1개 등 총 23개의 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현재 2,626명(가입률 90.30%)의 임직원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496건의 봉사활동에 19,627명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DGB러브펀드 운영)

대구은행은 2003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DGB 러브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동일한 금액을 은행에서 출연(매칭 그랜트)하여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내의 보내기 운동, 무료급식소 지원 등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러브펀드 모금행사는 현재 약 90%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고향사랑운동 전개)

기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사1촌을 뛰어넘어 1봉사단1촌을 실천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23개 시군에 속한 마을과 대구은행 23개 봉사단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마을회관 시설 개선, 농산물 구입 등 결연마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독도 사랑운동 전개)

대구은행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독도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01년 사이버독도지점을 개점하였으며 지속적인 독도사랑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독도 지점을 통해 발생한 이자의 일정 부문과 자체 기부금으로 독도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독도박물관과 독도 경비대에 성금 및 필요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매년 '독도탐방행사' 및 '독도사랑 사생대회, 글짓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노사가 함께 독도사랑 한마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도 사랑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사업 지원)

대구은행은 본점 내에 문화예술 공간인 DGB갤러리를 마련하여 무료전시 및 개방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편리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주요 문화공연 예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이 계간지로 발간하는 '향토와 문화'는 대구, 경북지역의 문화, 환경, 지역정보 등을 다루는 문화 종합지로, 지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역문화 발굴 및 계승사업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어린이 사생대회 및 여성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구미, 포항지역까지 행사범위를 확대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주최 및 후원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에 기여)

대구은행은 지역발전 기여도가 큰 국제대회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은행장이 직접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은행 차원에서도 대회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대구에 유치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울릉도 섬말나리 생태복원 사업 지원)

대구은행은 세계적 희귀종인 울릉도 섬말나리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섬말나리는 지구상에서 울릉도에만 유일하게 자생하는 백합과의 꽃으로 1996년 '희귀 및 멸종 위기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섬말나리 생태복원팀과 연계하여 섬말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로잡고 생태계 보고인 울릉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4차에 걸쳐 400여 포기의 섬말나리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독도지점의 수익금으로 매년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울릉도에 섬말나리 동산을 조성하고 군락지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2,068	1,600
환경	684	10,105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4,084	12,312
지역사회 · 공익	2,715	96,855
총 합계	9,551	120,872

부 산 은 행

○ 개요

2006.12. 기준

CEO	이장호
설립연도	1967. 10. 25.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2동 830-38
임직원수	2,673명
영업점 규모	220개 지점
자본금	7,334억원
총자산	22조 5,428억원
당기순이익	1,839억원

○ 연혁

1967. 10	부산은행 설립
1972. 06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1997. 06	㈜ 부은선물 설립
2000. 01	'내사랑부산운동' 부산시 유공표창 수상
2001. 09	'내고장 사랑21 PROGRAM' 시행
2002.12	부산은행지역봉사단 창단
2003. 06	국내 금융권 최초 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
2004. 06	'존경받는 30대 한국기업' 선정
2005.12	사회공헌활동 백서 발간
2006.12	제 1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대통령표창 수상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

지역	고객	주주	임직원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은행	가장 거래하고 싶은 내고장 은행	장기적으로 가장 투자하고 싶은 은행	가장 근무하고 싶은 최고의 은행

(비전 및 경영전략)

경영이념(Philosophy)	地域과 함께 더 높은 價値創造를
경영비전(Vision)	동남경제권 일등은행
경영목표	Triple Four 총자산 40조원, 순이익 4,000억원, 점유율 40%
전략방향	• 영업 체질의 질적 변화 시도 • 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 리스크관리 제고로 지속성장 견인 •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신뢰 확보 •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핵심추진과제	• 신성장동력 발굴 및 거점 확충 • 수익구조 선진화 • 마케팅 Mix 역량 제고 • 역동적 기업문화 창조
혁신 Slogan	Challenge for Change(변화를 위한 도전)

(비전 및 경영전략)

부산은행은 '동남 경제권 일등은행'이라는 경영비전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이란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나눔경영을 사회공헌 활동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산은행은 2003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지역 최대의 봉사단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내고장사랑 21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발한 사회공헌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제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공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회공헌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체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2007년 장학재단 설립, 세자녀 가정지원, 부산지역 문화재 복원지원, 문화단체 지원, 소외계층 대상 문화마당, 빈곤층 지원 등 기존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천 프로그램들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자원봉사)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지역봉사의 날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002년에 창단한 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은 부산 전역을 활동대상으로 하는 15개 지구 봉사대를 비롯하여 울산, 양산, 김해지역 또한 봉사대가 결성되어 모두 18개 봉사대를 구성, 매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생활하천이나 시민공원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활동과 수시활동을 통해 태풍피해 복구, 범시민도서교환전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봉사단과 함께 부산은행에는 전문 상설봉사팀인 釜銀볼런테크와 직원들의 순수 자원봉사 동아리인 '조은이웃'이 조직되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찾아 더욱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전문봉사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산은행은 장애우와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나눌수록 희망은 커진다는 신념으로 장애우, 노숙인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소중한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장애우 등산대회에 참여하고, 노숙인 무료급식 활동, 경로위안행사 개최, 사랑의 호프데이를 통한 결식아동돕기 기금 전달, 소년소녀가정 결연사업인 '참사랑 울타리 운동'의 전개 등으로 이웃을 위한 소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부산은행은 인류의 공동과제인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 은행인 부산은행은 '푸른부산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고 녹색시민통장을 개발해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하천인 온천천, 학장천의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부산 하천 살리기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부산은행은 우리사회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문화 · 예술 ·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전개하고 있는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도서배부 캠페인 및 'One Book One Busan운동' 등을 참여 · 지원하고 있으며 5년 간에 걸쳐 범시민 도서교환전을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시민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 · 교육)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장학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려 실질적이고 건전한 경제생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독특한 형태의 어린이 독서 · 경제체험 학교를 통하여 독서기행 및 문화재 탐방과 함께 금융경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선상 체험학습을 통해 내실있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우리 고장의 천혜 자연과 함께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아동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인 '한새 방과후 학교'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초 · 중학생의 특기 · 적성교육 기회는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을 동시에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금융캠프를 개최하는 등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와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지원, 학교 발전기금 후원 등의 장학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장학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1,426	324
환경	14	1,684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566	1,996
지역사회 · 공익	5,127	2,685
총 합계	7,133	6,689

광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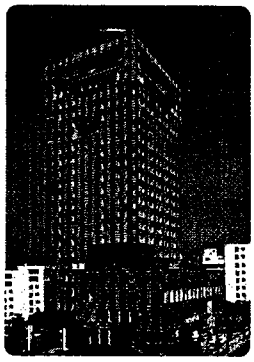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정태석
설립연도	1968. 11. 20.
본점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번지
임직원수	1,491명
영업점 규모	124개 지점
자본금	2,204억원
총자산	13조 9,972억원
당기순이익	901억원

○ 연혁

1968. 11	광주은행 설립
1969. 01	광주광역시 시금고 업무 개시
1973. 02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1983. 05	신탁업무 개시
1985. 02	신용카드업무 개시
1989. 12	자본금 1천억원으로 증자
1994. 01	제4세대 전산시스템 OPEN
1998. 11	직업능력개발 최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1999. 02	전라남도금고 전담은행 선정
2001. 03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04. 06	국내신용평가 'AA' 등급 획득
2005. 06	세계 1,000대 은행으로 선정
2005. 12	자본금 2,204억원으로 증자
2006. 08	Fitch Rating社 신용등급 BBB+ 등급 획득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및 비전)

광주은행은 최고의 종합금융서비스를 통하여 고객과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 정직과 신뢰, 창의와 열정으로 '최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초우량 지역은행'이 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목적 (존재이유)

최고의 종합금융서비스를 통하여 고객과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한다

핵심가치 (우선적 가치판)

고객중심 | 정직과 신뢰 | 창의와 열정

비전화된 미래 (vision 2015)

최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초우량 지역은행

-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
-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 은행
- 우리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은행

(경영전략)

2007년 경영목표를 '강소은행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경영전략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강소은행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성장기반 강화	수익기반 강화
수신 M/S 확대 •	• 신용카드 활성화
여신 M/S 확대 •	• Cross-Selling 확대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	• 외환수익기반 강화
공공금고 관리 및 지역밀착활동 강화 •	• 디지털뱅킹 강화
경영전략	
자산관리 강화	내부역량 강화
우량여신 증대 지속 추진 •	•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핵심예금 증대 및 수신구조 지속 개선 •	• 비용통제 강화 및 효율성 증대
선제적 건전성 관리 강화 •	• 직원역량 강화
유가증권 운용력 제고 •	• 시스템인프라 구축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광주은행은 '우리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은행'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바라는 은행 및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지역사회와 광주은행의 일체감 형성 뿐만 아니라, 행복 · 사랑 · 나눔 실천으로 직원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 · 사랑 · 나눔 실천으로 자아실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원봉사 활동
-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참여위주의 봉사활동 강화
- 담당직원(CM) 지정 및 활용
- 지역사랑 봉사단 운영
  - 지역별 봉사활동
  - 정기적인 봉사활동

기본방향

지역사회, 지역민, 광주은행 일체감

차별화된 지역밀착 프로그램 운영
-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자매결연
- 사회공헌기금 조성 (Matching Grant)
  - 예 :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 모금
- 사랑의 호프데이 개최
- 광주 · 전남 환경대상 제정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 등
  -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 주요 사회공헌활동 】

(지역발전)

광주은행은 자치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로 자치단체 업무지원,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기부, 지역협력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버스승강장 및 노선도 설치와 목포시 '빛의 거리여행' 루미나리에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축제행사 등 지역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효 사랑 브랜드 사업참여 및 지역축제 지원, 광주 7080 충장로 축제 등 성공적인 지역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광주은행 29개 지역사랑 봉사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광주은행 임직원의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봉사활동 외에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해 2002년부터 광주 · 전남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어르신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모금액으로 이웃사랑 1% 나눔운동을 통하여 복지 차량 및 사랑의 '쌀기증 행사' 등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과 함께 결식아동 돕기 '사랑의 HOT-DAY'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행사 및 지역사랑봉사단의 시설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광주은행은 맑고 깨끗한 우리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 봉사단'을 중심으로 무등산과 광주천 주변의 자연보호활동과 '개나리회'에서 매년 개나리 심기 식목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활동을 통해 매년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무등산 사랑 범시민 대회'에 참가하여 실천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환경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 및 후원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광주은행은 각종 교육 및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발전기금 출연, 학자금 대출지원, 청소년 금융교육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재)광주은행장학회에서 지역인재에 장학금 전달, 연구기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역 인재 육성기금 지원과 함께 미래 경제활동 주역에 대한 청소년 금융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광주은행은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로 남도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세계문화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은행은 1995년부터 개최한 제1회 광주비엔날레행사 후원을 시작으로 2005년 5회까지 공식 후원하였으며, 광주시립예술단 등 예술단체 공연 지원, 목포문화진흥재단 출연, 연극제와 발레단 후원 등으로 지역사회 예술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후원, 광주국제공연 예술제 후원,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가을 음악회 개최, 어린이날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 및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각종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1,056	162
환경	10	3,280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700	766
지역사회 · 공익	1,497	782
총 합계	3,263	4,990

제주은행

○ 개요

2006.12. 기준

CEO	윤광림
설립연도	1969. 3. 20.
본점소재지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349번지
임직원수	470명
영업점 규모	36개 지점
자본금	776억원
총자산	2조 4,825억원
당기순이익	142억원

○ 연혁

1969. 03	제주은행 설립
1972. 12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1980. 01	제주시 금고업무 취급계약 체결
1983. 05	신탁업무 취급
1984. 06	VISA 카드업무 개시
1995. 07	종합온라인 전산시스템 가동
1996. 12	총수신 1조원 돌파
2002. 05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06. 07	2010 Local Top Bank 비전 선포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제주은행은 고객을 위한 앞선 은행, 미래를 위한 알찬 은행, 인간을 위한 바른 은행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

제주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밀착 경영을 강화하고, 거래고객 저변확대 및 안정적 수익기반 조성을 통해 '2010 Local Top Bank'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
- 2010 Local Top Bank

중기 경영전략
- 지역밀착경영 강화, 거래고객 저변 확대
- 경영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안정적 수익 기반 조성

2007 경영목표
- 2010 Local Top Bank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 및 안정된 리스크 관리기반 구축

당기순이익 : 160억원
ROA : 0.65%
ROE : 10.83%
BIS자기자본비율 : 11.20%
고정이하 여신비율 : 1.0%

2007 경영전략
- 지속적인 양적성장을 통한 전 부문 도내 M/S 1위 달성
- 안정적 경영을 위한 수익기반 구축 및 수익중시 경영 추구
- 리스크관리체계 재정비 및 리스크 Taking 기법 발전
-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IR 활동 강화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제주은행은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동반자 역할'에 초점을 두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지역발전, 사회복지, 자원봉사, 문화예술, 환경보전, 장학교육, 공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성과와 가치를 지역도민과 함께 공유하여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제주도 내 기업을 선도하는 모범적 향토기업이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아울러 제주은행은 사회복지관련 도정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여 항상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제주은행 봉사단)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 봉사를 꾸준하게 전개하고 대표향토 기업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2003년 9월에 '제주은행 봉사단' (단장 : 오경화)을 설립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각종 결연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익 프로그램)

제주은행은 아름다운재단, 한국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가게 운영 및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감귤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시행 중인 감귤작목 주주제와 제주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제주 재래시장 사랑 상품권 발행은 도민들의 반응과 관심이 매우 폭발적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실과 지역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건립 후원 및 각급학교 난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전개 등 교육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월 실시하는 사랑의 진지상과 전문 요양원 자원봉사 활동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실천코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래 서비스 통장 및 제주사랑카드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기금 출연에도 앞장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동반자 역할에 충실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연 프로그램)

제주은행은 1부점 1자매결연 사업, 1인 1사회복지단체 가입을 통하여 전 부점과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주 이웃사랑의 넉넉한 인심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모범이 되고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정협력 프로그램)

제주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성장과 발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외자 유치 및 도외 기업의 본사 이전 지원, 버스 승강장 교체사업, 고등학교 난방시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행사, 세계자연유산 등재 서명운동, 재래시장 사랑 상품권 발행, 감귤 작목 주주제 등을 시행 또는 후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이 제주은행의 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향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프로그램)

제주은행은 청정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늘푸른 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제은 푸르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이상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푸르미 운동은 공원, 관광지 등 인구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하천과 해안가처럼 사람의 손길이 자주 미치지 못하는 장소를 찾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점 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해 매월 1회 영업점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1사 1바다 가꾸기',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의 지속 전개와 '제주 오름 가꾸기', '해수욕장 환경 지킴이' 운동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날 등의 환경사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169	250
환경	21	2,550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467	1,392
지역사회 · 공익	1,072	450
총 합계	1,729	4,642

전북은행

개요

2006.12. 기준

CEO	홍성주
설립연도	1969. 12. 10.
본점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임직원수	963명
영업점 규모	76개 지점
자본금	1,782억원
총자산	5조 6,481억원
당기순이익	313억원

연혁

1969. 12	전북은행 설립
1993. 06	본점건물 신축 이전(연건평 12,951평)
1995. 06	국내최초 Drive-in Bank 개설
1998. 08	신 종합전산시스템 국내은행 최초 ISO9001인증
2000. 01	금융기관 최초 다산금융상 은행부문 대상 수상
2000. 02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시
2002. 12	종합수익·성과관리시스템 개발
2003. 09	방카슈랑스업무 시행
2003. 12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KOGI편입
2003. 12	Moody's 신용평가 실시(Baa3/P-3)
2004. 11	신 ALM시스템 오픈
2005. 05	2005 한국의 CEO대상 금융부문 수상
2005. 06	기업지배구조 최우수기업 수상 (증권선물거래소)
2005. 12	2005년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 수상(한국경영학회)
2006. 03	Moody's 신용등급 상향(Baa3/P-3→Baa2/P-2)
2006. 04	여신종합관리시스템, 통합단말시스템 오픈
2006. 07	통합인터넷뱅킹시스템 오픈
2006. 12	자원봉사활동공로 대통령표창 (행정자치부)

【 비전 및 경영전략 】

(비전 및 경영전략)

전북은행은 21세기 '일류 지역은행'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고객만족, 지역만족, 주주만족, 직원만족을 바탕으로 소매금융 중심의 내실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전북은행은 지역기여활동을 위해 5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인재 육성, 체육 및 문화행사 활동의 적극 지원, 고용창출을 사회공헌활동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지역 내 조성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중소·영세기업 육성과 지역상공인 및 도민의 가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지역특화 금융서비스 제공은 지역 내 가장 편리한 은행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편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지역인재 육성은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을 위해 발전기금 및 장학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네 번째, 체육 및 문화행사 활동의 적극 지원은 예술과 전통문화의 고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문화단체와 지역민의 사회체육 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육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고용창출은 대표적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인재를 최우선으로 채용하겠습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지역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지원)

전북은행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육성을 위하여 도내 소재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여 지역출신 초·중·고·대학생의 학자금 및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전북애향장학재단, 진안사랑장학재단, 정읍시민장학재단, 전북충효장학재단에 2006년 31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전북은행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는 주요 문화행사로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풍남제, 남원춘향제, 무주반디불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 다수이며, 전주마라톤대회, 컬링선수권대회, 단체장배 각종대회 등 체육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총 42건의 지역 문화·예술·체육행사에 67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랑봉사단)

전북은행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랑봉사단'을 창립하고, 재해복구 지원, 무의탁노인 돕기, 장애우 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돕기, 호프데이 행사 실시로 모금된 금액을 교육청 및 기관에 전달하여 불우 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서비스 실시)

전북은행은 도내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체에 대해 친절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밀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친절 전문강사팀인 CE(Customer Emotion, 고객감동)아카데미팀 14명을 중심으로 도내 공공기관(관공서, 경찰서 등) 및 기업체 등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교육은 고객감동 실천과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사례 소개, 직장인의 기본예절과 응대요령, 호감가는 표정만들기, 전화응대 예절 등을 미디어매체를 이용한 이론 설명과 실기를 병행하여 질적 향상을 꾀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2005년에는 17개 기관 2,700여명, 2006년에는 29개 기관 3,000여명에 대해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전북은행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북은행은 금융교육부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예술·스포츠	1,134	-
환경	30	-
학술·교육(교육 수혜자 수)	968	4,890
지역사회·공익	384	185
총 합계	2,516	5,075

경남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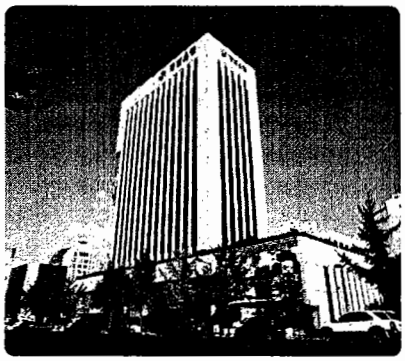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정경득
설립연도	1970. 5. 22.
본점소재지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임직원수	1,986명
영업점 규모	139개 지점
자본금	2,590억원
총자산	19조 4,951억원
당기순이익	1,555억원

○ 연혁

1970. 05	경남은행 설립
1987. 10	기업이미지 통일화(CI) 도입
1992. 05	본점 신축 이전
1995. 09	총자산 5조원 돌파
2001. 03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2002. 09	총자산 10조원 돌파
2004. 03	제9대 정경득 은행장 취임
2004. 09	경남은행 봉사단 창단
2006. 03	신용등급 AA^+ 획득
2006. 05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설립
2006. 12	총자산 19조원 돌파

【 비전 및 경영전략 】

(비전 및 경영이념)

경남은행은 주주가치 증대, 직원복지 향상, 지역사회 공헌을 통하여 비전인 초우량 지역은행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춘 은행,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은행,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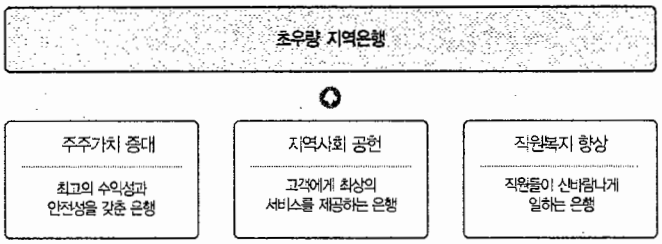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경남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전략으로 봉사단활동을 통한 전 임직원의 참여와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문화 · 예술 지원, 체육단체 지원,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5대 핵심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지역내 아름다운 산 가꾸기 사업)

경남은행은 지역내 유명산인 정병산, 천주산, 무학산 등 등산로에 등산안내 표시판, 정상표시석, 쉼터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안민고개 데크로드 설치구역(등산로 입구)에 보행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구호품 전달)

경남은행은 대한적십자사의 경남 · 울산지사와 연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취약계층 2,100여 세대에 부식세트를 준비하여 은행 봉사대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경남은행은 동절기에는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울산지역 여성단체 협의회와 공동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계층 불우이웃에게 개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 · 예술 지원사업)

경남은행은 지역 내 경남은행의 대표적 문화예술사업인 여성 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실기대회(제1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창작의식을 제고하고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순수문화 예술 단체인 경남 오페라단의 정기공연을 총 4회에 걸쳐 후원하고 지역민을 초청하는 관람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 내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 강화)

경남은행은 2004년 9월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봉사단'을 통하여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정화활동, 농번기 농촌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990	30
환경	115	114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574	2,299
지역사회 · 공익	2,132	290
총 합계	3,811	2,733

기술보증기금
KIBO TECHNOLOGY FUND

kibo
기술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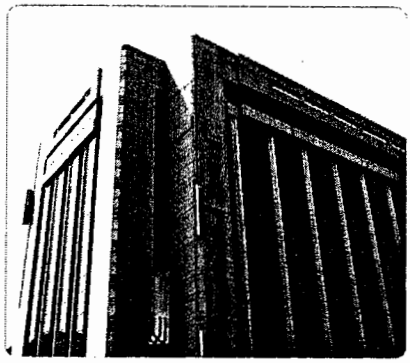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한이헌
설립연도	1989. 4. 1.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
임직원수	951명
영업점 규모	51개 지점
자본금	7,980억원
총자산	11,016억원
당기순이익	-

○ 연혁

1986. 1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989. 04	기술보증기금 설립
1997. 03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개소
1997. 1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1998. 08.	보증잔액 10조원, 벤처확인평가업무 시행
2002. 08	설립근거법 변경(기술신용보증기금법)
2004. 08	총보증공급 100조원 달성
2006. 10	'2006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 비전 및 경영전략 】

(경영이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중시 미래경영, 고객감동 현장경영, 변화선도 혁신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중시 미래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기금의 발전적 미래상 구현과 발로 뛰는 고객밀착 영업전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는 혁신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경영이념	기술중시 미래경영	고객감동 현장경영	변화선도 혁신경영
비전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		

(비전 및 경영전략)

기술보증기금은 VISION 2010인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금융 특화·전문화, 기술평가 역량 강화, 경영안정 기반 구축, 경영혁신 지속 추진이라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직원들의 인식 전환 및 자발적인 참여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회공헌활동 】

(무료급식 봉사활동)

기술보증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1회당 약 400명 정도의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사 1촌 농촌사랑운동)

기술보증기금은 2006년 5월 경남 합천군 가야면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사랑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기보사랑봉사단 150명이 농번기 일손돕기에 참여하였으며, 이 외에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배인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1사 1촌 농촌사랑운동은 매년 지속적으로 임직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여 우수리 공제로 불우이웃돕기)

기술보증기금은 사회공헌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전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액의 5천원 미만액을 공제하여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사회복지시설, 한국복지재단 추천 및 자체 선정한 저소득 가정 등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미래포럼 활성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산경제미래포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미래포럼은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학계와 언론, 경제유관단체, 기업 및 금융기관 인사로 구성된 순수 자생적 지역경제 연구모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학생발명경진대회 후원)

기술보증기금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꿈나무를 지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에서 주최하는 '전국 학생발명경진대회'에 이사장 상장 및 상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	-
환경	-	-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12	24
지역사회 · 공익	55	242
총 합계	67	266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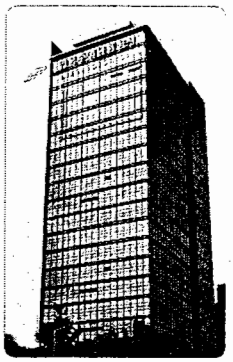

○ 개요

2006.12. 기준

CEO	유재한
설립연도	2004. 3.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임직원수	382명
영업점 규모	13개 영업점
자본금	3,766억원
총자산	4,445억원
당기순이익	55억원

○ 연혁

2003.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 공포
2004. 03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보금자리론(모기지론) 최초 공급
2004. 06	공사 MBS(주택저당증권) 최초 발행
2004. 11	'윤리헌장' 및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규정' 제정 · 선포
2005. 08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출범
2005. 10	공사 SLBS(학자금대출증권) 최초 발행
2005. 11	'고객서비스 헌장' 제정 · 선포
2006. 05	보금자리봉사단 발족
2006. 06	e-모기지론 출시, 통합콜센터 오픈
2006. 07	재해복구 특별보증 실시
2006. 10	공사 통합노조 출범
2006. 12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개발

【 비전 및 경영전략 】

(비전 및 경영전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자금 등의 장기 ·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사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 일류기업'을 비전으로 금융시장 선도, 선진경영체제 구축, 조직역량 강화를 경영전략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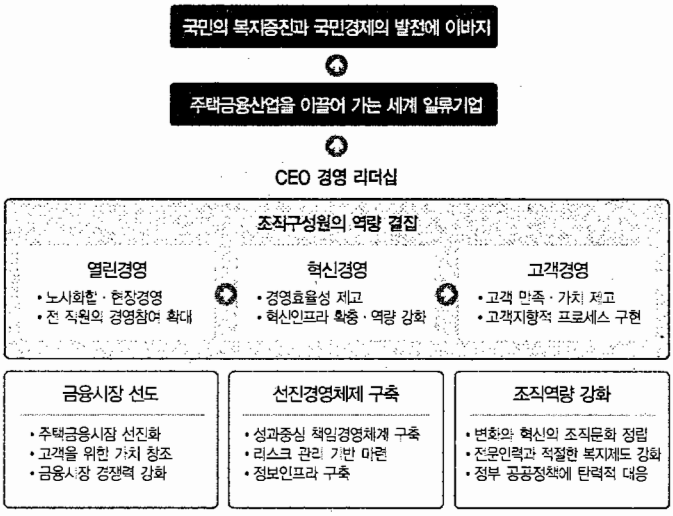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설립 3년차의 신생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체 마스터플랜에 의한 활동은 물론,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전사적 ·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두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봉사단 결성을 통한 실천적 봉사 활동과 보금자리펀드 조성을 통한 기부금 지원 활동을 양대 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의 주된 공적 미션인 주택금융 지원과 국민 복지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으로 해비타트를 비롯하여 어촌봉사활동, 환경보호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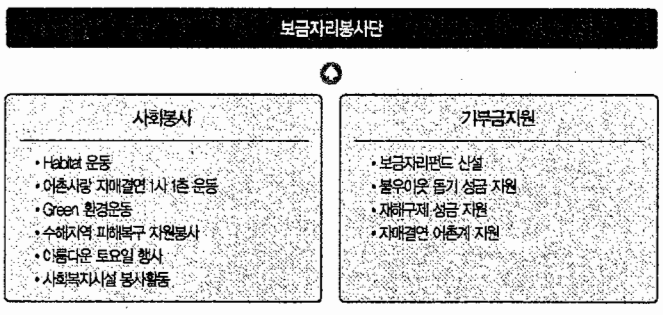

【 주요 사회공헌활동 】

('해비타트 운동' 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영세 가정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짓기 행사인 '해비타트 운동'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희망의 마을' 건축현장에 직원 20여 명이 참가하여, 목재나르기, 골조 세우기 등 직접 집짓기 체험과 함께 봉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어촌사랑 자매결연을 통한 '1사1촌운동' 전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촌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어촌 환경보호 및 봉사를 통한 어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강후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고 '1사1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어촌마을에 컴퓨터 세트와 복합기를 기증하고, 지역 특산물(새우젓) 공동구매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환경보호운동)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와 숭례문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공원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어촌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갯벌 및 마을 정화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수해지역 피해복구 자원봉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개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나눔'과 '순환'의 실천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임직원의 기증물품 총 1,500여 점을 일일 판매 자원봉사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인수
문화 · 예술 · 스포츠	-	-
환경	-	40
학술 · 교육(교육 수혜자 수)	-	-
지역사회 · 공익	49	418
총 합계	49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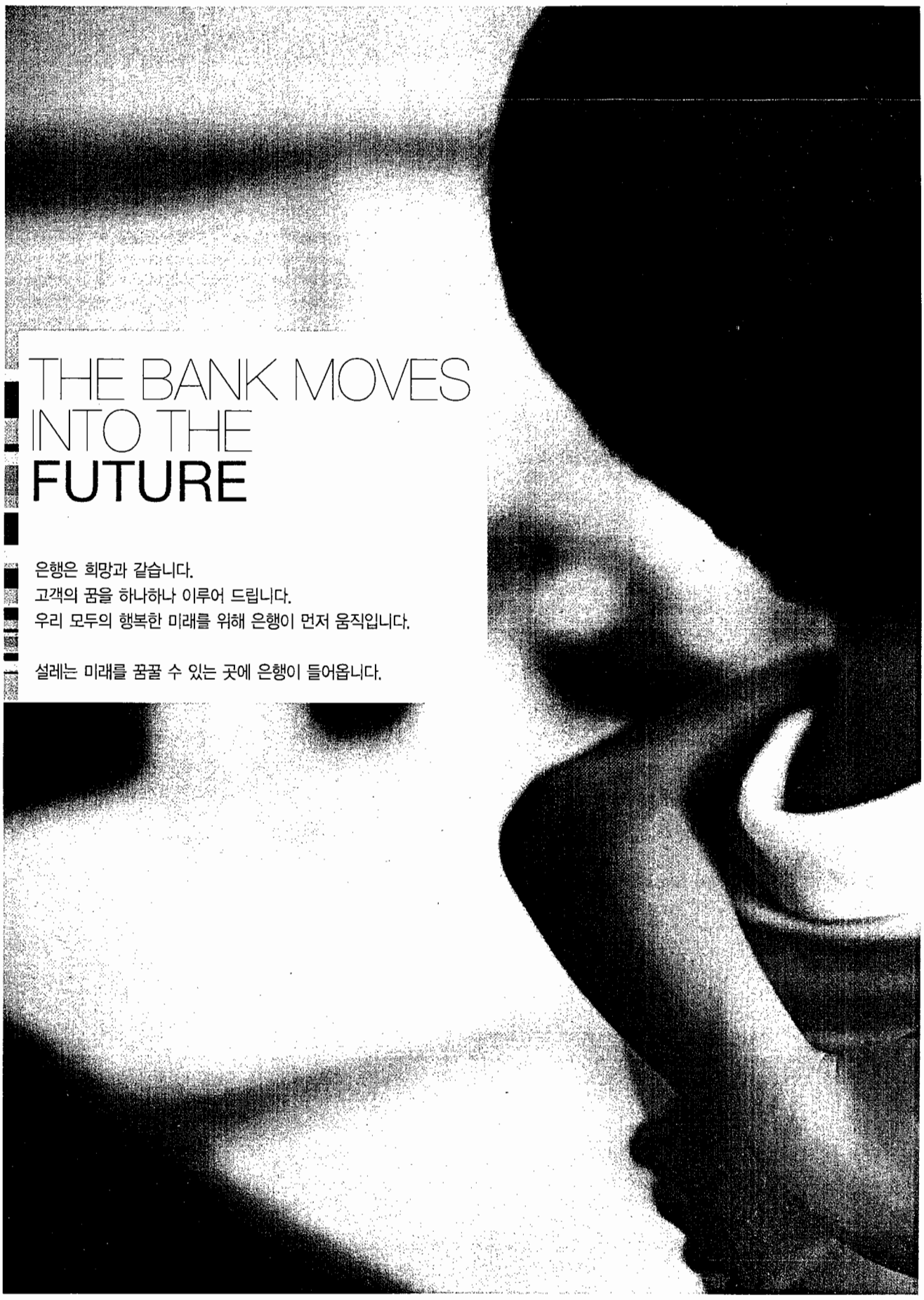
THE BANK MOVES
INTO THE
FUTURE
은행은 희망과 같습니다.
고객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설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에 은행이 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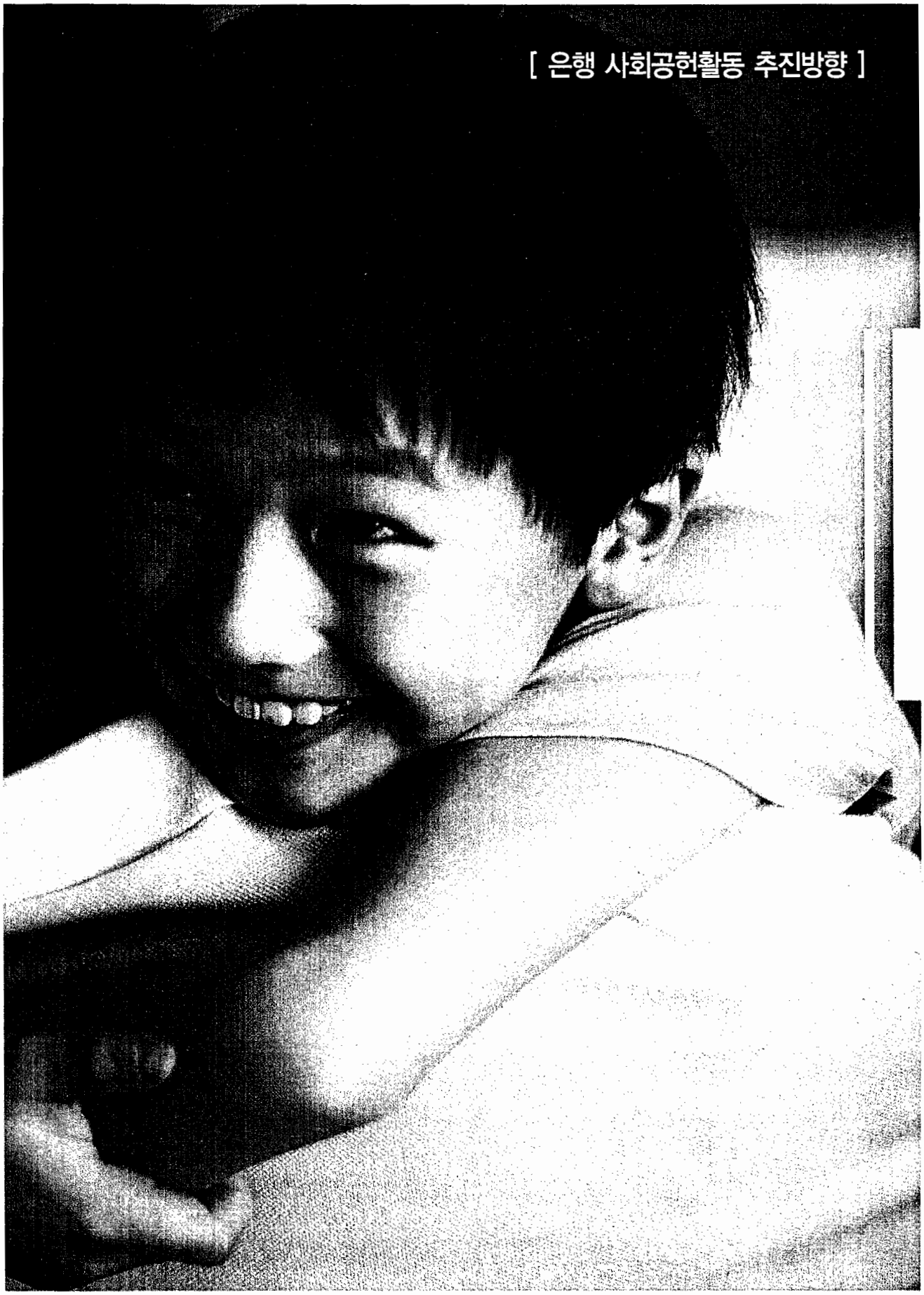
[은행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

| 설문조사결과 |

은행 사회공헌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기간 : 2007년 3월 19일 ~ 30일
- 설문조사 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정사원 기관의 사회공헌업무 담당자(81명)
- 설문조사 응답률 : 80%
- 설문조사 방법 : 서면조사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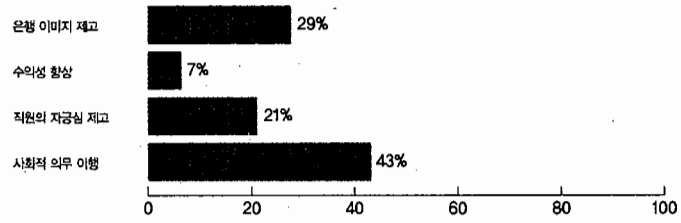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외부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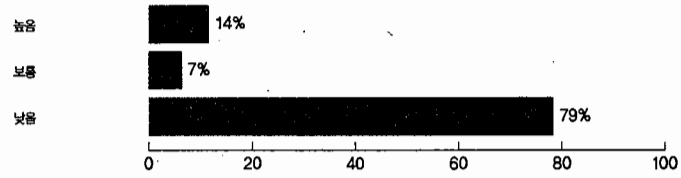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은행 임직원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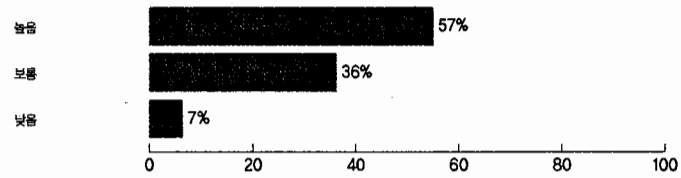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저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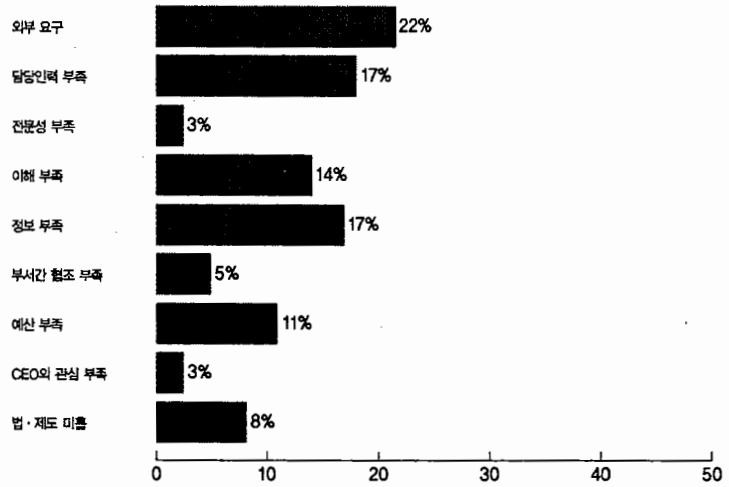

은행 사회공헌활동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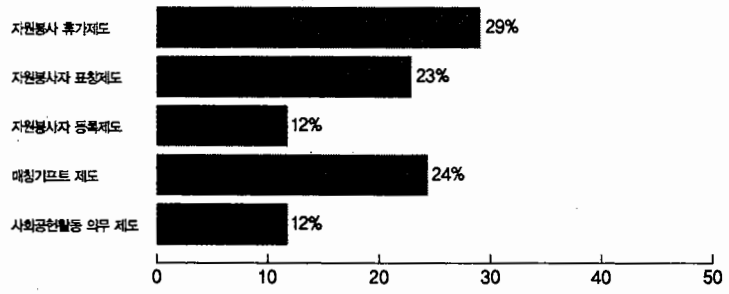

은행 사회공헌활동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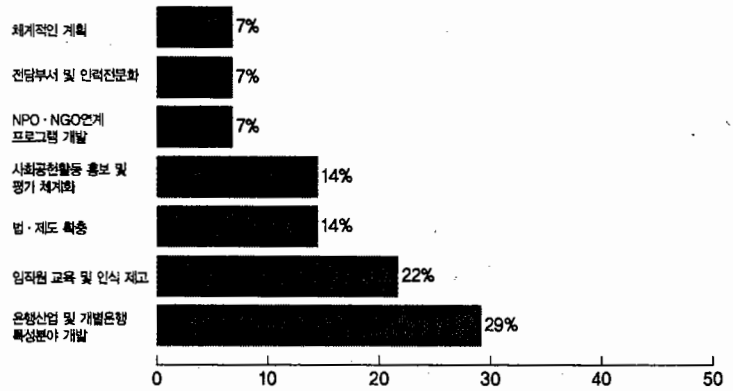

I 은행 사회공헌활동 추진 방향 I

최근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패러다임으로 정립되면서 세계적 기업들은 '3가지 축(Triple Bottomlines)'에 입각하여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그 노력과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 은행산업은 은행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 보고서에 그 실적을 수록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은행산업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부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선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훌륭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서 내부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생산부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자·평가자·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속가능금융이 은행의 경영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주요 국제기준인 UN 국제협약(UN Global Compact), UNEP 금융기관 선언(UNEP/FI), 적도원칙 등에 참여하고 그 이행에 노력하며,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표준안'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고 공시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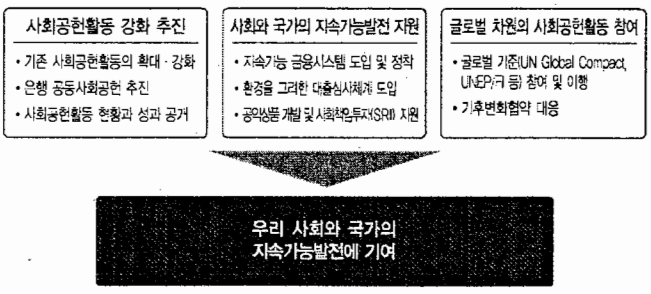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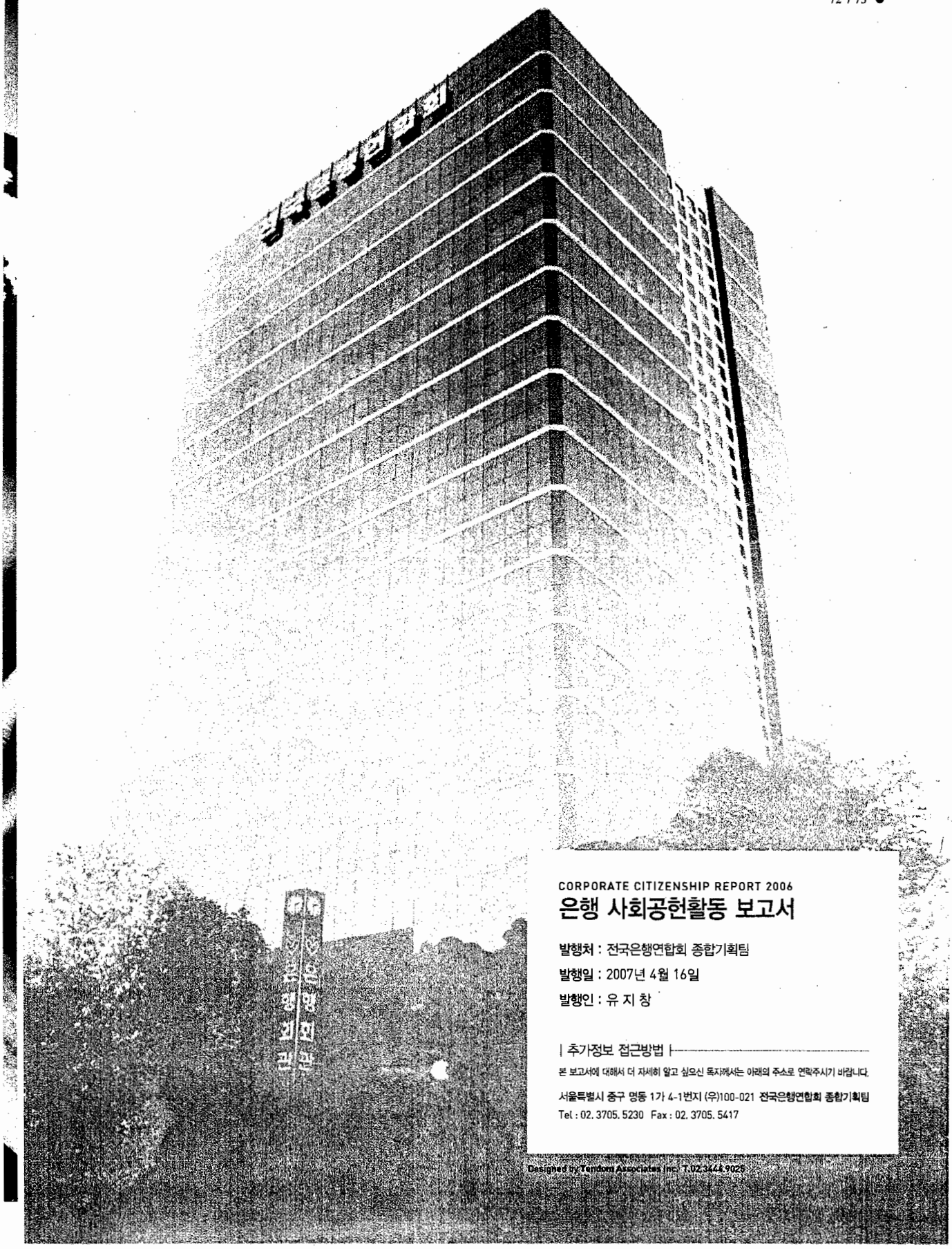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06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행처 :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기획팀

발행일 : 2007년 4월 16일

발행인 : 유 지 창

| 추가정보 접근방법 |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독자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번지 (우)100-021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기획팀**

Tel : 02. 3705. 5230 Fax : 02. 3705. 5417

Designed by Tendomi Associates Inc. T.02.3444.9029

진 수 희 의 원

1.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원의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업무 추진 내역 일체 및 상세 현황

1.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02년부터 시행)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불이행자로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배우자 및 제3자의 지원 등에 의해 채무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 가능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개인채무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 지원 내용

①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

② 이자율 조정

-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 인하, 원금 전액상환시 이자 감면

③ 변제기 유예

-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④ 채무감면

-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금액이 강제집행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 범위 내에서 감면하되,

  이자 및 상각채권은 1/3을 초과할 수 있음. 다만, 원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상각채권에 한함

2. 소액금융지원 사업('06.11월부터 시행)

□ 사업 개요

○ 국내 7개 은행이 기부한 총 140억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중 저소득자·영세자영업자·고금리차환대상자에 대해 소액자금을 지원

※ 우리·하나·국민·기업·신한·외환·농협 등 7개 은행에서 20억원씩 기부

□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자 중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세부 지원내용

종 류	대출한도(만원)	금 리	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	500	4%	5년이내 분할상환
학 자 금	500	2%	5년이내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1,000	4%	5년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500	4%	3년이내 분할상환
고금리차환자금	500	4%	5년이내 분할상환

2. 대부업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규정

□ 현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신협,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대부업에 대한 별도의 자금대여 관련 규정은 없음

3. 외국인의 매수매도 및 FDI 비율

□ 참여정부 출범('02년) 이후 분기별 외국인 매수매도 및 FDI 비율 현황

(단위:억원, %)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매수	매도	순매수	직접투자비율[1]	매수	매도	순매수	직접투자비율[1]
'02	1/4	220,926	234,731	△13,805	2.2	31,301	27,852	3,449	3.1
	2/4	231,294	256,867	△25,573	2.4	23,288	24,821	△1,533	3.0
	3/4	167,433	180,919	△13,486	2.2	13,271	15,201	△1,930	2.9
	4/4	213,486	186,151	27,335	2.0	13,795	11,760	2,035	3.0
'03	1/4	169,201	177,991	△8,790	1.8	10,748	12,168	△1,420	2.7
	2/4	180,631	160,591	20,040	1.9	18,471	18,970	△499	3.0
	3/4	247,749	184,996	62,753	1.9	24,341	18,992	5,349	2.7
	4/4	314,230	250,562	63,668	1.7	22,756	17,812	4,944	5.0
'04	1/4	354,777	276,379	78,398	1.8	22,762	14,344	8,418	5.4
	2/4	385,951	349,912	36,039	2.0	27,875	20,557	7,318	5.5
	3/4	270,870	242,633	28,237	3.2	18,308	17,390	918	6.5
	4/4	310,543	343,423	△32,880	3.3	14,269	14,477	△208	3.9
'05	1/4	357,678	351,857	5,821	3.3	19,410	19,321	89	3.1
	2/4	328,027	329,980	△1,953	3.3	19,796	15,684	4,112	2.6
	3/4	439,340	438,978	362	2.8	27,156	26,246	910	2.2
	4/4	476,097	509,886	△33,789	2.4	36,137	34,547	1,590	1.6
'06	1/4	595,136	580,149	14,987	2.4	39,086	38,948	138	1.6
	2/4	574,872	633,478	△58,606	2.2	34,458	37,561	△3,103	1.7
	3/4	453,934	510,606	△56,672	2.1	26,829	30,398	△3,569	1.9
	4/4	521,659	534,435	△12,776	2.1	28,298	26,412	1,886	1.9
'07	1/4	596,064	598,855	△2,791	2.1	37,472	32,291	5,181	2.0
	2/4	791,678	801,726	△10,048	2.5	50,981	50,205	776	2.1
	3/4	788,785	960,908	△172,123	2.4	50,322	52,449	△2,127	2.1

주1) 상장주식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4호가목에 의한 투자분(분기말기준)

4. 05년 이후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PF ABS 발행 상세 내역

□ PF ABS 발행 현황('05.1.월 ~ '07. 8월말 기준)

(단위: 억원,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1월~8월	합계
PF ABS 발행금액	48,760	58,979	11,726	119,465
PF ABS 발행건수	105	88	16	209
ABS 발행총액	286,072	232,223	121,757	640,052
PF ABS 비중*	17.0%	25.4%	9.6%	**18.7%**

* 전체 ABS 발행금액 대비 PF ABS 발행금액 비중

5.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금감원, 금감위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연도별 정리)

- 행정처분 대상, 관련규정, 처분내용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규정

□ 행정처분 대상 및 처분내용

(단위 : 건)

구 분	처분대상		계	처분내용	
	기 업	개 인		거래정지	경고 등
'03년	124	91	215	133	82
'04년	98	97	195	182	13
'05년	120	213	333	306	27
'06년	128	150	278	198	80
'07년	54	75	129	88	41
계	524	626	1150	907	243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규정

○ 외국환거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

○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외국환거래법」제19조(행정처분),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31조(행정처분) 및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에 의거하여 처분(붙임참조)

<붙임>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9조(행정처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5. 허가·신고수리 또는 신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최근 1년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행정처분)】

①법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미화 2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3.9]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1조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재심의절차)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제재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통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항을 각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외국환업무감독규정』, 동 『세칙』 및 『절차』는 폐지한다.

부 칙(2003. 12. 31)

이 규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06. 3. 3)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1	가.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①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1	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경 고	①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1	다.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거래 또는 행위를 착오 또는 과실에 따라 한 경우	경 고	①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거래 또는 행위를 착오 또는 과실에 따라 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1	라.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경 고	①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2	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외국환은행의 장앞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앞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3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2	나.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외국환은행의 장 신고수리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신고수리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2	다.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조 또는 변조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감위(감독원장)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조 또는 변조 ③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급 또는 영수를 하였거나 신고, 신고수리, 허가절차를 이행한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위규사항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2	라.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감위(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② ①에서 정한 기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동 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①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기관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④ ①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기관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동 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마. 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관련서류의 중복사용으로 관련 지급 또는 영수를 하였거나 신고, 신고수리, 허가절차를 이행한 경우 ② 관련서류를 중복사용 하였으나 ①에서 정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바. 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위반대상 허가사항 등이 당해 허가사항 등의 중요부문인 경우 ② 위반대상 허가사항 등이 당해 허가사항 등의 중요부문이 아닌 경우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사. 최근 1년간 2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최근 1년간 2회이상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위규사항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Ⅱ. 가중 또는 감경 1.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정을 감안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행정처분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 수 있음 가. 행정처분 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 나. 위규행위의 기간, 동기, 수단, 결과 다. 위규금액의 규모 라. 위규사실 확인후 보완 및 시정조치 노력 여부 마. 기타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2. 행정처분의 양정시 둘 이상의 위규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행정처분 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음	

6.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중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대출 종류별 연도별 증감 현황

□ 저축은행 고정이하 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3.6월	'04.6월	'05.6월	'06.6월	'07.6월
총여신	216,881	269,686	314,479	371,209	430,395
고정이하여신	24,463	33,358	48,382	39,509	38,159
증감률	-	36.4	45.0	△18.3	△3.4
고정이하 여신비율	11.3	12.4	15.4	10.6	8.9

주) 저축은행 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은 없음

※ 고정이하 여신 중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 대출종류별 현황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07년 8월말 현재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대부업체 현황

* 외부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작성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은 관할 시·도에, 법령 개정관련 권한은 재정경제부에 있음

□ '06.12월말 기준 20개 대형 대부업체의 재무현황

: 붙임 참조

(붙임)

20개 대형 대부업체의 재무현황[1)]

('06.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업체명	구분	자 산	대부잔액[2)]	자본금
동양파이낸셜㈜	국내계	6,831	2,116	340
동양캐피탈	국내계	5,731	1,694	2,182
페닌슐라캐피탈㈜	미국계	5,366	5,044	13
지이리얼에스테이트㈜	미국계	4,131	766	200
산와㈜	일본계	3,370	3,455	200
㈜매화케이스타스	미국계	2,241	1,963	34
프로그레스㈜	일본계	1,601	1,851	111
현대기업금융㈜	국내계	1,351	196	915
아프로소비자금융㈜	일본계	1,090	1,412	184
㈜파트너크레디트	일본계	1,045	1,248	11
㈜현진캐피탈	국내계	1,024	1,032	150
씨앤씨캐피탈㈜	국내계	940	392	20
프라임캐피탈㈜	국내계	916	864	51
㈜리드코프	말레이시아계	911	527	126
이에스캐피탈㈜	국내계	752	583	50
㈜기협기술금융	국내계	624	544	290
웰컴크레디라인㈜	국내계	618	578	131
퍼스트머니㈜	일본계	586	566	2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미국계	526	630	62
㈜서울코스모홀딩스	국내계	436	377	5
계		40,090	25,838	5,077

1) '06년 외부감사보고서 기준

2) 대손충당금 적립전

8. 공인회계사 시험 안내자료

□ 붙임 참조

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안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내용(요약)

구 분	新공인회계사 시험제도	2006년 이전
응시자격 (학점이수제)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 회계·세무 관련과목 : 12학점 • 경영학과목 : 9학점 • 경제학과목 : 3학점	없 음
제1차시험 영어과목 대체	TOEIC 등 외부 영어시험으로 대체 • TOEFL(PBT : 530점, CBT : 197점, iBT 71점) 이상 • TOEIC : 700점 이상 • TEPS : 625점 이상	필기시험
과목 배점 조정	1차 회계학, 2차 재무회계 과목 배점을 각각 150점으로 확대	모든 과목 배점 : 100점
제2차시험 부분합격제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면제	없 음
제1차시험 합격자결정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상대평가)	영어 포함 상대평가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절대평가)	매과목 배점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상대평가)
제2차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제	절대평가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 시, 그 미달된 인원 범위 내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	없 음 (다만, 선발예정인원제 시행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

1. 응시자격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세무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 영어 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와 "학점이수제도에 의한 학점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만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의 경우 학점이수요건은 충족해야 하나 영어시험성적(1차 시험에서 시행되던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1차시험에만 국한됨)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공인회계사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시행됩니다.

-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시험과 다음년도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교부합니다.

(나) 시험장소

제1차시험은 서울과 지방 4곳(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행되며, 제2차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됩니다.

(다) 매 교시별 시험과목 및 배점

매 교시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출제문제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차시험 매 교시별 시험과목 및 배점▐

교시 (시험시간)	과 목	문제수	배 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 법 (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50	150점

▌제2차시험 매 교시별 시험과목 및 배점 ▐

구 분	교시 (시험시간)	과 목	배 점
1일차	1교시 (120분)	세 법	100점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3. 학점이수제도

(가) 개 요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응시자격제입니다.

(나) 학점이수 해당과목 및 학점의 수

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또는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회계·세무 관련과목 : 12학점 이상
- 경영학과목 : 9학점 이상
- 경제학과목 : 3학점 이상

(다) 학점취득기관 및 학점취득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합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합니다.

*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 대학)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소명시, 위 해당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도 자퇴하기 전까지 당해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가능합니다.

— 해당 학교의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로 소명 가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인정교육 훈련기관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일정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에 개설된 시간제등록강좌를 이수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독학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정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시험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 무역학과 졸업자는 경영학 학위와 동일계열의 학위를 소지하였으므로 독학사과정중 경영학 전공과목의 시험을 볼 수 없음 ⇒ 독학학위검정원의 동일전공인정학과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요망

(라) 학점이수인정과목

학점이수인정과목

- 학교 등 학점취득기관에 개설된 과목중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세무 관련과목, 경영학 과목 및 경제학 과목으로 각각 인정한 과목들을 말합니다.

  ※ 학점이수인정과목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의 학점이수과목 검색란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인정과목 결정 및 분류기준

- 학교, 학과, 학부·대학원과정 여부, 전공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과목의 내용이 회계·세무관련, 경영학, 경제학 과목의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과목의 내용에 따라 회계·세무관련과목, 경영학과목, 경제학과목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으로 분류합니다.
- 과목의 내용이 두개 이상 해당과목 학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 하나로만 분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중복하여 둘 다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으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응시자가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하여 학점이수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ex) "조세론"은 회계·세무과목과 경제학과목으로 각각 인정되어 있으므로 둘중 응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학점이수소명 가능(둘다 신청은 不可)
- 타 학위 과정의 전공분야 성격이 높은 과목은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 "기업영어", "무역영어" 등은 영어과목에 해당되며, "경제법", "상법", "회사법", "어음수표법"(단 세법은 제외) 등은 법학과목에 해당.

(마) 학점인정기준

해당과목 학점인정기준은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 "농업경영사특론" 과목의 경우 농과대학에 개설된 과목이나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고 있어 경영학과목으로 인정된 반면 경영학과에 개설된 "상법" 과목의 경우 법학과목이므로 경영학과목으로 불인정.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하며, 동일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동일한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해당학교의 학칙에 따라 동일(대체)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과목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학점취득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응시자가 스스로 중복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학점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할 때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ex 1) 대학재학중 "회계원리1" 및 "회계원리2" 과목을 이수하여 각각 3학점씩 총 6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후 학점은행제의 시간제등록으로 "회계원리" 과목 3학점을 취득한 경우 "회계원리1,2" 과목과 "회계원리" 과목은 동일과목으로 봄 ⇒ 둘중 응시자에게 유리한 "회계원리1" 및 "회계원리2" 과목의 6학점만 인정.

ex 2) A대학 재학중 2학년 1학기때 "중급회계1" 3학점을 이수하고 교환학점제로 B사이버대학의 "재무회계" 2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A대학에서 "중급회계1"과 "재무회계"의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취득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면 A대학의 총장이 A대학의 중급회계1과 B사이버대학의 재무회계를 별개과목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동일과목으로 보지 않음 ⇒ 5학점 인정

■ 개설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 · 석사 · 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만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학점이수인정과목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은 설령 그 과목의 내용이 회계·세무 관련, 경영학, 경제학 과목의 학문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회한 그 시점까지는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해당과목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동 과목으로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소명을

할 수 없습니다.

ex) "고급재무회계"과목은 회계학과목으로 인정된 상태이나 "고급재무회계연습"과목은 2007.9월말 현재 회계학과목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을 하여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함

4. 제1차시험 영어과목 대체

(가) 개 요

-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시험을 필기시험에서 전문영어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토플, 토익, 텝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적용하는 전과목 총득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영어시험성적표 인정기준

-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 토익, 텝스 중 하나의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 200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2006.1.1.이후 실시한 영어시험의 성적표 제출 필요.

-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고 200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응시한 자가 성적표 유효기간내에 재응시할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이 면제됩니다.

  ex) 2007.1.15. 실시된 토익시험성적표를 제출하고 200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응시한 자가 2009년도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불필요

- 영어시험성적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시험성적표 분실 등으로 인하여 각 시험주관기관에서 재발행한 성적표도 원본이며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영어시험성적표는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을 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청해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청각장애인(2, 3급)의 경우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합니다
  - 영어시험성적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구 분		합격에 필요한 점수	내 용
토플 (TOEFL)	PBT	530점 이상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 (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EIC)		700점 이상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스 (TEPS)		625점 이상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5. 합격자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 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제)합니다.

- 따라서 합격점수는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에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각 과목별 60점 이상, 단 재무회계과목은 90점 이상)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제)합니다.

▣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시험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중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최소선발예정인원제 및 상대평가제)합니다.

ex) (최소선발인원 : 750명 가정)

(case1) 2차 수험생중 전과목에서 과목별 배점이 6할을 초과하는 수험생의 수=700명	
절대평가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700명
상대평가	상대평가로 50명 추가합격 (최소선발예정인원 750명까지)
최종합격자	750명

(case2) 2차 수험생중 전과목에서 과목별 배점의 6할을 초과하는 수험생의 수=1,000명	
절대평가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1,000명
상대평가	추가 합격자 없음
최종합격자	1,000명

(다) 제2차시험 부분합격제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과목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의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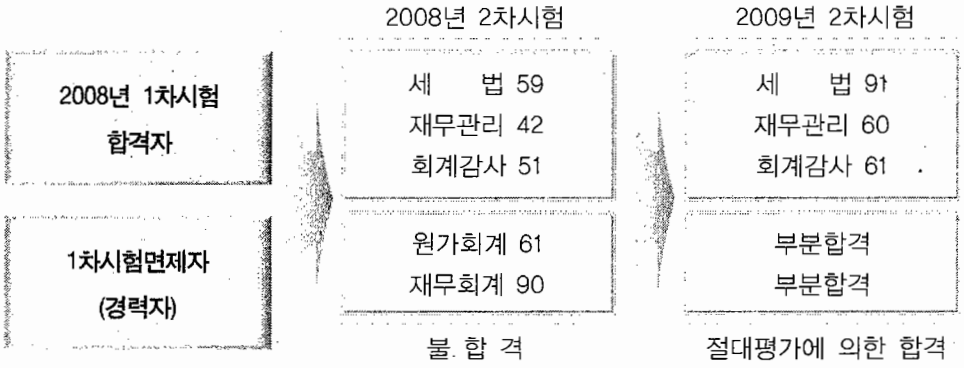

II. 2008년 공인회계사시험 시행방안

서류접수계획(요약)

구 분		2008년도 시험
시험서류	접수방법	모든 시험서류를 응시원서와 분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험서류를 제출(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접수기간	1차시험 : '07. 8. 8(수)~'08. 1. 18(금) 17:00 2차시험 : '08. 3. 5(수)~'08. 4. 25(금) 17:00
	영어시험성적 확인신청서류 접수기간	'07. 8. 8(수)~'08. 1. 18(금) 17:00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서류 접수기간	1차시험: '07. 8. 8(수)~'07. 11. 30(금) 17:00 2차시험: '08. 3. 5(수)~'08. 4. 4(금) 17:00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 접수기간	'08. 3. 5(수)~'08. 4. 4(금) 17:00
응시원서	접수방법	서면접수는 폐지되고, 인터넷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1차시험 응시원서와 2차시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다음 접수기간중에 각각 제출 1차시험: '08. 1. 9(수) 09:00~'08. 1. 22(화) 20:00 2차시험: '08. 5. 7(수) 09:00~'08. 5. 20(화) 20:00

1. 시험서류의 제출

시험서류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전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였음을 소명하거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말하며,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류(선택사항), 경력자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가 있습니다.

(가) 시험서류의 종류

1)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는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입니다.

- 학점이수소명신청서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회계·세무 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과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였음을 소명하는 신청서를 말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소명란에 학점이수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동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 성적증명서(학점취득증명서도 가능)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서,
  -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학점취득증명서도 가능)을 제출하고,
  - 학점은행제를 이용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취득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급하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2)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와 해당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말하며,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란에 영어시험성적 확인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동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자가 공인영어시험기관(토플, 토익, 텝스)의 영어시험성적이 영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이상 득점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말하며,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자만 제출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는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정규시험 성적표 원본을 말하며,

- 토플 PBT 530점 이상, 토플 CBT 197점 이상, 토플 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획득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합니다.
-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의 성적과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일본 정규 토익시험은 인정)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후 제출하신 영어시험성적의 진위여부를 각 시험주관기관에 의뢰하여 최종합격처리 합니다.

3)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류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류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와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 견서입니다.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는 응시자가 이미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회계 및 세무 관련과목, 경영학과목 또는 경제학 과목의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시험위원

회에 심의요청하는 신청서를 말하며,

- 홈페이지의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란에 학점이수과목인정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동 신청서를 인쇄후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을 한 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사본(서식없음)과 해당 과목을 강의한 담당교수의 의견서(VI. 기타 참고자료의 각종 서식참조) 원본을 제출합니다.

4)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에는 제1차시험면제신청서,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이 있습니다.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는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회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말하며,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의 제1차시험면제 신청란에 제1차시험면제 신청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동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은 업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 기관에서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사본(당해기관의 원본대조 필요)을 제출합니다.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제1차시험 면제 해당자

-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제외)에서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외부감사 관련업무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시험서류의 제출절차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해당 시험서류에 신청 내용 입력

- 학점이수소명신청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 제1차시험면제신청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해당신청서 출력후 서명 or 날인

+

증빙서류

등기발송 or 금감원 회계제도실 방문제출

⇓

시험서류 도착 및 접수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확인

- 해당 시험서류가 모두 제출되어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명 또는 합격처리된 것으로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공인회계사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로 통보되므로 처리진행상황 등은 "내문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제1차시험에 한함)을 하고, 해당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서류의 제출시기

구 분	제1차시험 접수기간	제2차시험 접수기간
학점이수소명신청	'07. 8. 8(수)~ '08. 1. 18(금) 17:00	'08. 3. 5(수)~ '08. 4. 25(금)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07. 8. 8(수)~ '08. 1. 18(금)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07. 8. 8(수)~ '07. 11. 30(금) 17:00	'08. 3. 5(수)~ '08. 4. 4(금) 17: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08. 3. 5(수)~ '08. 4. 4(금) 17:00
응시원서접수	'08. 1. 9(수) 09:00~ '08. 1. 22(화) 20:00	'08. 5. 7(수) 09:00~ '08. 5. 20(화) 20:00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의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를 포함한 시험서류가 서류접수기간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본원 17층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시험서류접수처)에 도달하여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

- 시험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내문서보기"를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므로 응시자는 서류도달·접수여부, 보완요구사항 유무 및 처리결과 등을 "내문서보기"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적시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서류의 허위기재 행위에 대한 제재

학점이수소명서류,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합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응시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또한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의 접수

(가) 응시원서접수 자격요건

제1차시험 응시자는 제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전에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와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학점이수사실이 소명("소명됨")되거나 영어시험성적이 확인("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원서의 접수가 거부됩니다.

- 제2차시험 응시자중 학점이수미소명자(1차시험 면제대상자이나 학점이수소명을 하지 않은 자)는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전에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학점이수사실을 소명("소명됨")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면제자는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외에도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 확인("면제")받아야만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제출절차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응시수수료 결제	공인회계사시험 . 홈페이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응시원서 기재사항 입력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접수증 출력	접수종료일 2일후부터 응시표 출력

-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공고(VI. 기타 참고자료의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참조)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서면접수가 폐지되고 인터넷접수만 허용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원서와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응시원서 접수기간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비로소 응시원서 접수절차가 완료되며, 응시수수료 결제·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가상무통장 입금의 방법에 의합니다.
  - 가상무통장 입금은 결제대행업체가 부여하는 가상계좌(은행명, 계좌번호)로 결제될 수수료(응시수수료+결제대행수수료)를 한번에 입금해야만 결제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해당시험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②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당해년도의 제2차시험에 응시하는 자도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별도로 접수하여야 하고, 유예자(2007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와 제1차시험 면제자는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해당 접수기간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마감일시가 경과된 이후에도 일체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④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입력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방법 선택시 응시원서 작성후 바로 결제 또는 납부화면으로 넘어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수수료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 변경 및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⑦ 응시원서만 기재하고 응시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시료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의 접수시기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2008년도 제43회 제1차시험	'08. 1. 9(수) 09:00 ~ 1. 22(화) 20:00
2008년도 제43회 제2차시험	'08. 5. 7(수) 09:00 ~ 5. 20(화) 20:00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확인

응시원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의 여부는 인터넷원서접수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증 출력시 정상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응시표 출력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응시표를 직접 출력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는 아니합니다.

- 응시표의 출력은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2일 후부터 가능하므로 응시원서 접수기간중에는 응시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가 모두 마감된 후에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주의사항

접수증은 응시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응시표출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Ⅲ.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응시절차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프로세스

제1차시험 응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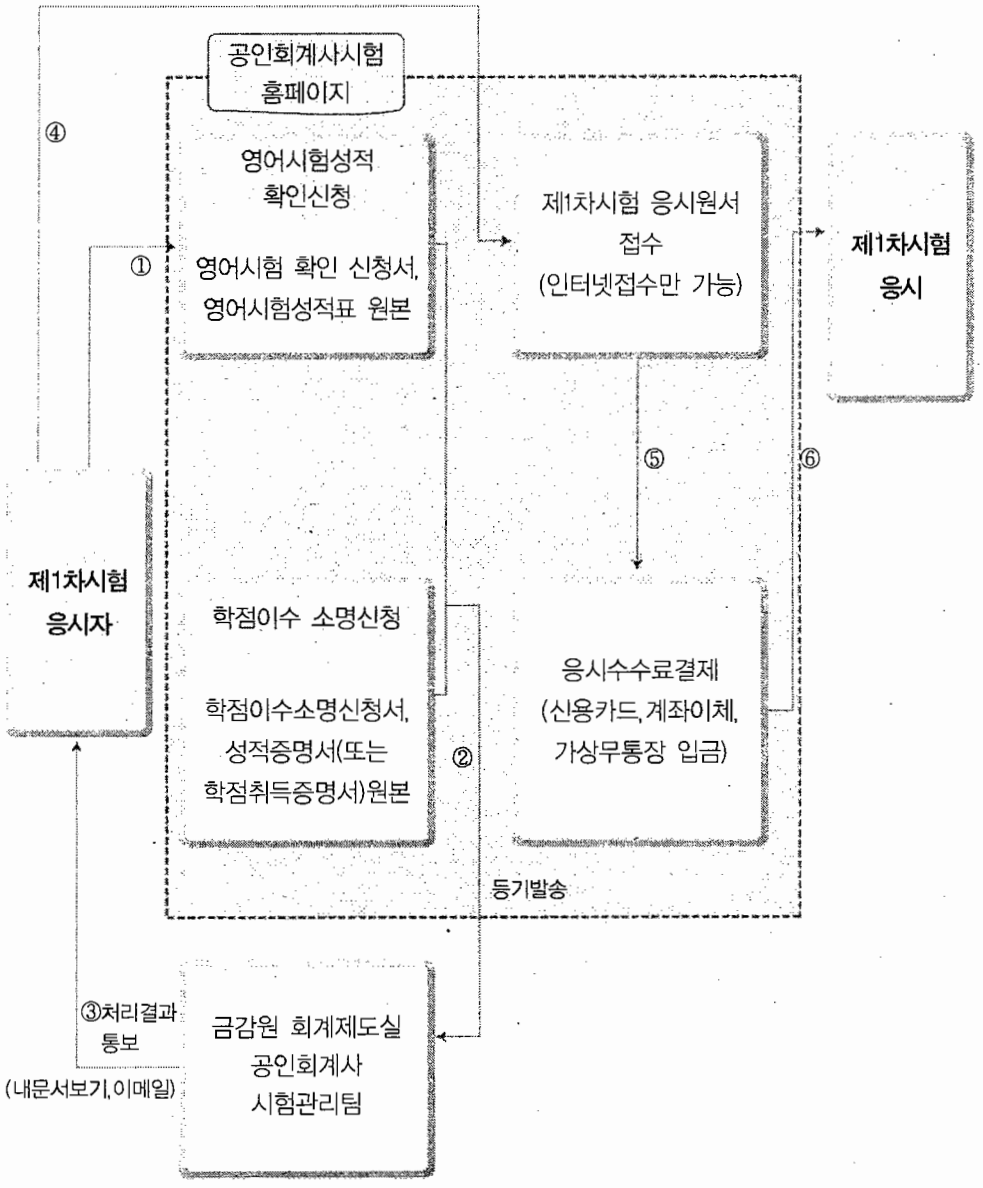

제2차시험 응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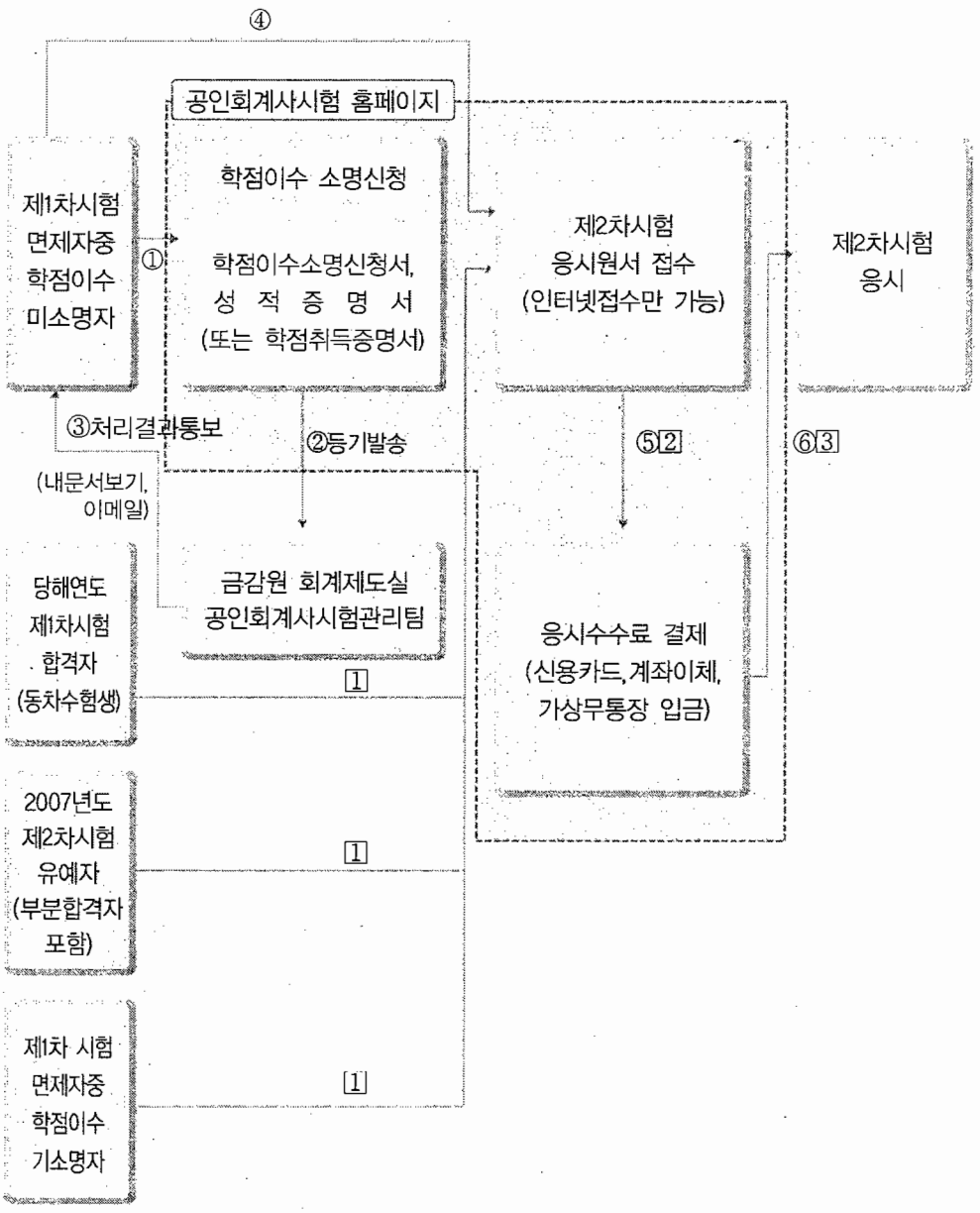
④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제1차시험 면제자중 학점이수 미소명자
①
학점이수 소명신청
학점이수소명신청서, 성 적 증 명 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제2차시험 응시
③처리결과통보
(내문서보기, 이메일)
②등기발송
⑤2
⑥3
당해연도 제1차시험 합격자 (동차수험생)
금감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응시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1
2007년도 제2차시험 유예자 (부분합격자 포함)
1
제1차 시험 면제자중 학점이수 기소명자
1

1.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는

회원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고, 원서접수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는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등 시험서류의 제출 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처리가능하게 하여 한번 시험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들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켰으니 필히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기능과 내용을 숙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응시자가 시험서류 제출시 개인정보를 잘못 기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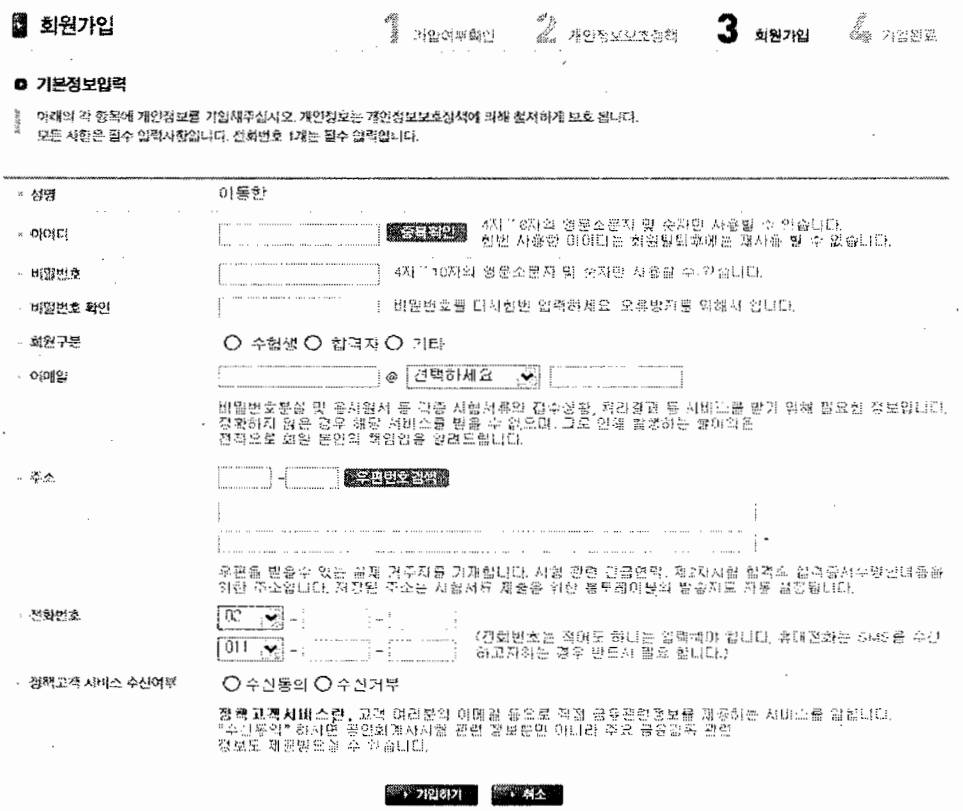

회원가입을 위하여 정확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서비스업체(한국신용평가정보)에 실명확인 등록신청을 한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실명확인 등록신청 문의처 (☎ 02-3771-4815, e-mail : callcenter@kisinfo.com)

2. 시험서류의 제출

(가) 학점이수소명신청

학점이수소명신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은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학점이수소명을 해야 합니다.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은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은 9점이상, 경제학 과목은 3점이상으로 총 24학점이상을 이수해야만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점이수 소명이 확인된 분은 또 다시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점이수 소명 확인이 안된 분은 당해연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은 원서접수 전에 마감될 예정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이수소명신청

학점취득기관	학점인정기관	이수과목구분	취득과목명	취득학점	학위과정구분
학점취득기 검색		== 선 택 ==	취득과목명검색 검색		== 선 택 == 과목추가

등록된 과목

회계학 · 세무관련과목 회계학 · 세무관련과목 학점이 12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학점취득기관	학점인정기관	이수과목구분	취득과목명	취득학점	학위과정구분

취득학점 합계 : 0

경영학과목 경영학과목은 학점이 9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학점취득기관	학점인정기관	이수과목구분	취득과목명	취득학점	학위과정구분

취득학점 합계 : 0

경제학과목 경제학과목은 학점이 3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학점취득기관	학점인정기관	이수과목구분	취득과목명	취득학점	학위과정구분

취득학점 합계 : 0

1)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에 필요한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해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학점취득기관은 실제 강의를 들은 기관(학교, 학점은행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등)을 선택합니다

- 학점인정기관은 학점취득사실을 인정해 주는 기관으로서 대학(교)에서 학점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교)를,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한국교

육개발원을 선택합니다.

ex) S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으로 학점이수시 학점취득기관·학점인정기관을 "S대학교"로 선택하고, S대학교의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이수한 경우 학점취득기관은 "S대학교", 학점인정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을 선택

- 이수과목구분은 회계·세무, 경영학, 경제학으로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 학교, 학과, 전공여부를 불문하고 동 홈페이지의 학점이수과목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수과목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취득과목명은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에 기재된 과목명과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동 홈페이지의 학점이수과목란에 기재된 과목이어야 합니다.

- 취득학점은 증빙서류인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에 기재된 취득학점을 기재합니다.

- 학위과정구분은 대학 재학중에 취득한 학점의 경우에는 "학사"를 선택하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 제출서류목록은 학점이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대학(교)장 또는 한국교육개발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or 학점취득증명서)만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2)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를 출력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않은 학점이수소명신청서에 대해서는 보완요청후 정해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다시 보완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종결처리합니다.

3) 봉투레이블출력란에서 발송자 주소, 성명과 수신자 주소(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등이 표기된 봉투레이블을 출력하여 우편발송봉투 겉면에 붙입니다.

- 출력사이즈가 A4횡(가로)이므로 인쇄시 프린터설정을 A4횡(가로)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출력목록종류를 명확히 표시하기 바라며, 인터넷상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오류발생시에는 수기로 정정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4) 학점이수소명신청서,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등기우편발송시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의 국내등기/"소포(택배)조회"란에서 시험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가 제출한 시험서류의 처리현황은 내문서보기의 "진행상황"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서류확인중)』는 시험서류가 접수되어 업무담당자가 제출된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 중인 상태입니다.

- 『서류보완요청』은 시험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내문서보기"를 통해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응시자는 서류도달·접수여부, 보완요구사항 유무 및 처리결과 등을 "내문서보기"를 통하여 직접 적시에 확인하여야 하고 적시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서류의 인터넷입력이 잘못되었거나 시험서류의 일부가 누락되는 등 시험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보완요구기일내에 보완해야 하며, 등록된 이메일로도 보완요청사항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소명됨』은 응시자가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이수요건, 즉 이수과목 구분별로 총 24학점이상을 이수한 사실이 소명된 상태로써 이후 다시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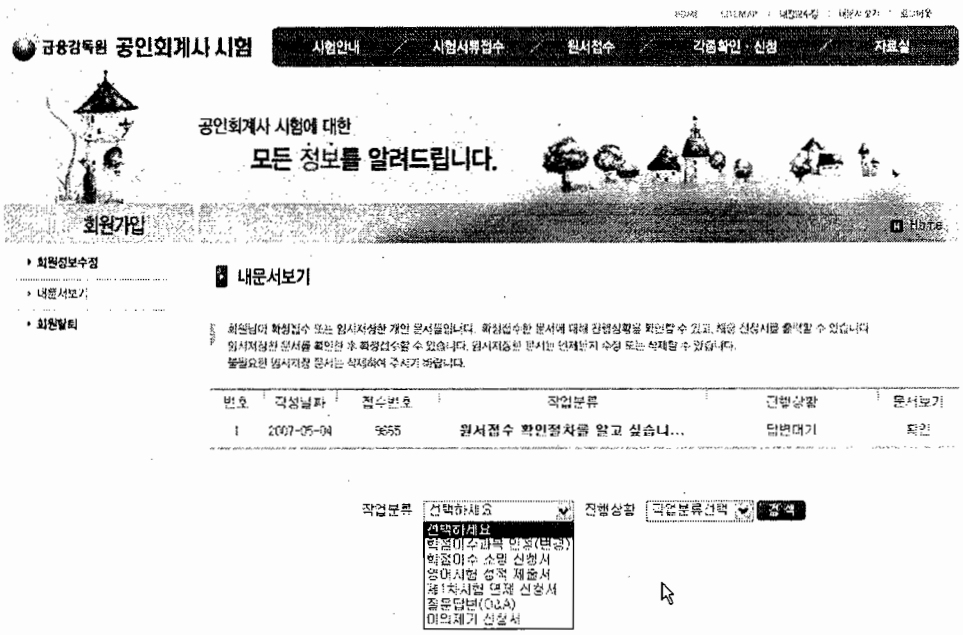

주의사항

① 개설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 석사, 박사)과정이 다르면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②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되나 동일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③ 학점이수인정과목 목록에 없는 과목은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목이므로 먼저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을 하여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학점이수소명신청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④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독학학위취득시험 합격)를 이용하여 학점이수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에는 먼저 동 제도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침 등 해당 제도의 운영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뒤늦게 학점취득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학점취득증명서와 성적증명서중 하나만으로 학점이수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 하나만 제출합니다.

⇒ 대학에서 24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만 제출 가능

⑥ 등록한 이메일주소가 다음메일(@hanmail.net)이라면 감독원에서 보내는 메일이 스팸메일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스팸메일함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메일을 허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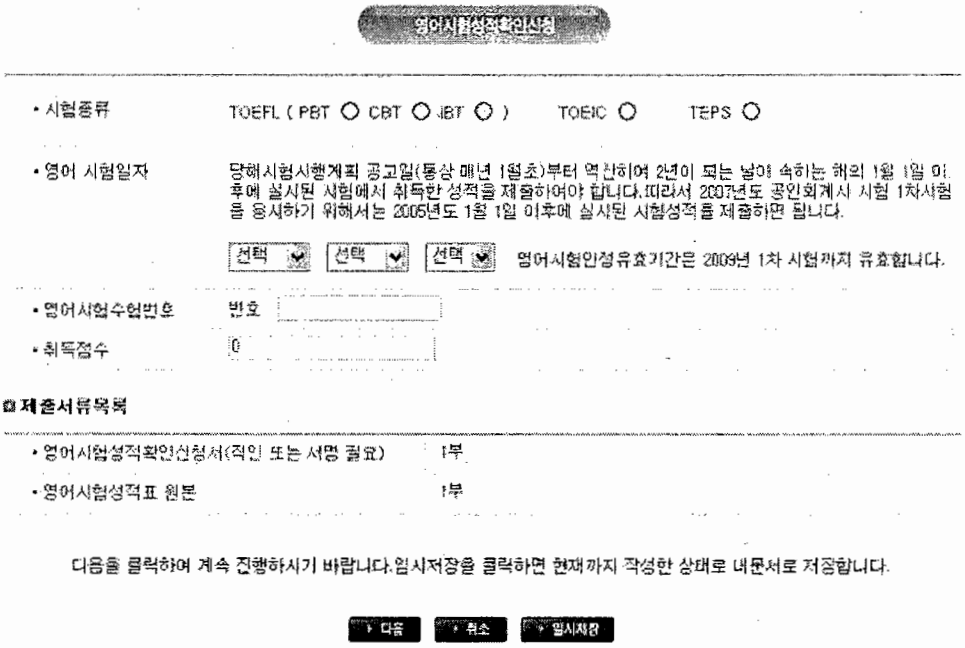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 시험종류 TOEFL (PBT ○ CBT ○ iBT ○) TOEIC ○ TEPS ○

• 영어 시험일자 당해시험시행계획 공고일(통상 매년 1월초)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1차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택 선택 선택 영어시험인정유효기간은 2008년 1차 시험까지 유효합니다.

• 영어시험수험번호 번호

• 취득점수 0

■ 제출서류목록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직인 또는 서명 필요) 1부

• 영어시험성적표 원본 1부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시저장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작성한 상태로 내문서로 저장합니다.

다음 취소 임시저장

1) 응시자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영어과목 시험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해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시험종류는 토플, 토익, 텝스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국내 및 해외에서 시행된 토플정규시험성적, 국내 토익정규시험 및 일본의 토익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 성적은 인정하나,
  - 기관토플성적, 해외에서 시행된 토익성적과 기관토익, 텝스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영어시험일자는 해당 영어시험에 응시한 날을 선택하며, 당해시험공고일(통상 매년 1월초)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의 날짜이어야 유효합니다.

- 영어시험수험번호는 해당 영어시험기관에서 부여한 수험번호를 기입합니다.

- 취득점수는 토플 PBT 530점 이상, 토플 CBT 197점 이상, 토플 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를 출력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않은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후 정해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다시 보완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종결처리합니다.

3) 봉투레이블출력란에서 발송자 주소, 성명과 수신자 주소(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등이 표기된 봉투레이블을 출력하여 우편발송봉투 겉면에 붙입니다.

- 확정접수한 이후에는 인터넷상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오류발생시에는 수기로 정정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4)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 응시자가 제출한 시험서류의 처리현황은 내문서보기의 "진행상황"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접수완료(서류미접수)』는 시험서류가 감독원에 접수되기 전인 상태입니다.

- 『서류보완요청』은 시험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내문서보기"를 통하여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서류도달·접수여부, 보완요구사항 유무 및 처리결과 등을 "내문서보기"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적시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영어시험일자를 영어시험성적표와 틀리게 입력하였거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를 누락 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시험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기일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영어과목합격』은 공인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이 제1차시험 영어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한 사실이 소명된 상태이며, 당해 영어시험성적 유효기간내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① 시험서류를 인터넷접수한 후 7일이내에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서류접수시 도달주의 채택으로 인하여 시험서류의 접수마감무렵에는 시간적여유가 없으므로 미리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는 "내문서보기"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하고 있으므로 시험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내문서보기"를 통하여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보완요구내용을 응시자가 홈페이지에 등록한 이메일로도 안내하고 있으나 전달과정에서 스팸메일로 분류되거나 특정메일계정의 외부메일수신불량으로 메일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1차시험 면제신청

1)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분야의 일정한 경력이 있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무기관은 국가기관, 대학(교), 은행, 정부투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권상장법인, 국방부, 금융감독원 등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근무기간은 제1차시험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당해 사무를 담당한 기간을 기재하며,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경력기간을 산정합니다.

직위와 직급은 제1차시험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당해 직위 또는 직급(5급이상 공무원,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 대리급,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 등)을 기재합니다.

담당부서와 담당업무는 제1차시험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당해 업무와 동 업무를 담당할 당시 근무한 부서를 기재하며,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신청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을 첨부하여 제1차시험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응시원서와 함께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시험을 볼 때 마다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1차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 면제되신 분은 또 다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1차시험 면제신청"은 제2차시험 원서접수전에 마감될 예정이나, 경력요건이 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면제신청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부서	담당업무	
	-					경력추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부서	담당업무

제출서류목록

• 제1차시험면제신청서(직인 또는 서명 필요)	1부
• 경력증명서	통
•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통

2)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를 출력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않은 제1차시험면제신청서에 대해서는 보완요청후 정해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다시 보완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종결처리합니다.

3) 봉투레이블출력란에서 발송자 주소, 성명과 수신자 주소(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등이 표기된 봉투레이블을 출력하여 우편발송봉투 겉면에 붙입니다.

출력목록종류를 명확히 표시하기 바라며, 인터넷상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오류발생시에는 수기로 정정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4) 제1차시험면제신청서,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을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 응시자가 제출한 시험서류의 처리현황은 내문서보기의 "진행상황"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심의대기중)』는 시험서류가 이상없이 접수되었고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 『면제됨』은 제1차시험을 면제신청한 응시자가 제1차시험 면제대상으로 인정된 상태이며 이후 제1차시험 면제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① 경력증명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합니다.

②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가)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200 년도 제 회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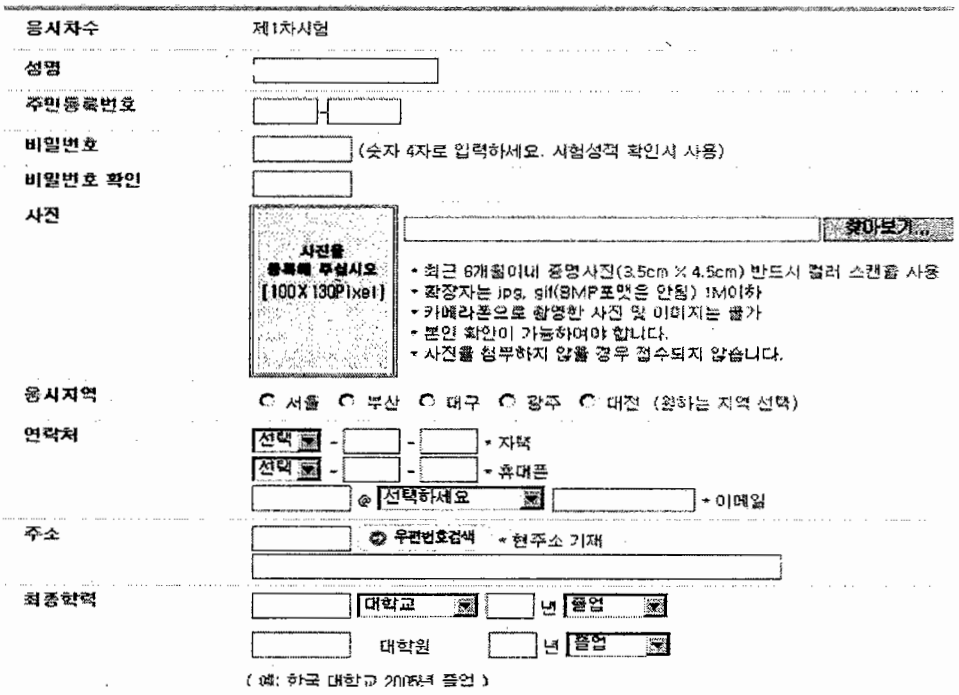

1)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제1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원서접수전 반드시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받고,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영어과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5×4.5cm)이어야 하며 비규격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부착방법

① 먼저 사진을 스캔 받습니다. 사진 스캔시 해상도는 72dpi이상으로 하고, 사진의 사이즈는 가로를 95~105Pixel, 세로는 95~136Pixel로, gif나 jpg포맷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시켜 놓습니다.

② 지원서 작성의 "사진첨부"에 있는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파일 선택 대화상자가 나오는데, 이 때 ①에서 저장한 파일을 선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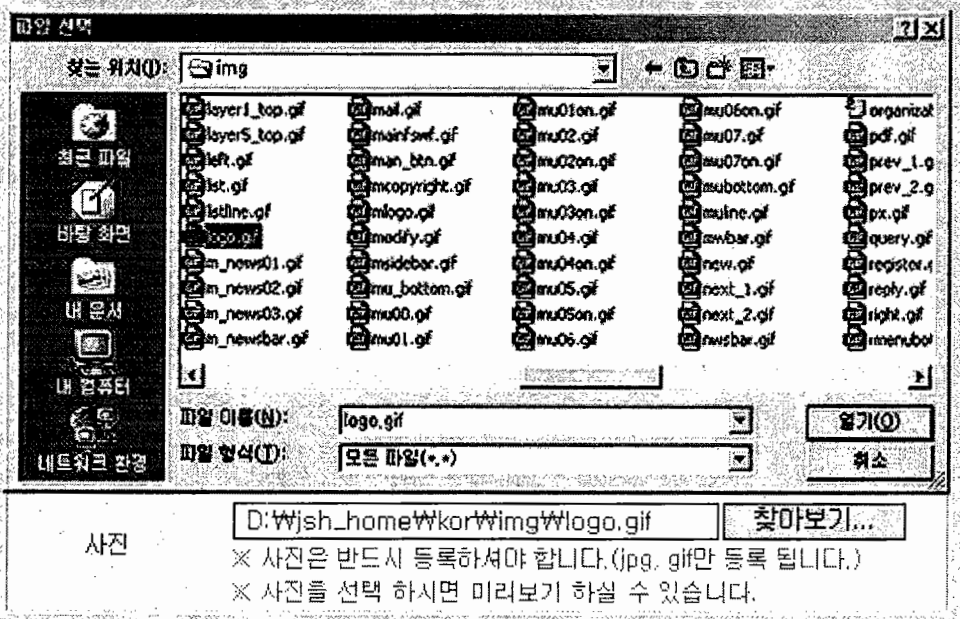

③ 파일을 선택하시면, 첨부될 사진을 미리 보기 하실 수 있으며, 제출된 사진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사진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한 후 제출바랍니다

- 응시지역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서울, 지방 등)에서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므로 응시지역 선택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력은 공인회계사시험과 관련된 각종 통계처리 및 시험제도개선 및 학교에 따라서는 합격자 장학금 수령 등에 반영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및 가상무통장 입금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 결제가능 카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로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내역(카드종류, 카드번호, 카드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카드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을 입력하고 응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계좌이체

- 출금계좌는 SC제일,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외환,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조흥, 하나, 한미(현 한국씨티) 중 어느 한 곳에 개설된 본인 또는 타인(부모, 배우자, 기타) 명의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 출금할 계좌내역(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명의인의 성명,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을 입력하고 응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가상무통장 입금

- 결제대행업체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국민 · 신한 · 농협,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가상계좌에 응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를 입금합니다.
  - 한번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재부여가 불가하므로 부여받은 계좌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무통장 입금시 발생하는 부대 수수료는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가상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응시수수료가 결제되지 않는 경우 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며 분할 입금이 안되므로 가상계좌에 응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를 한번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① 가상무통장 입금은 은행창구방문,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 가상무통장 입금시 받는사람(예금주)을 "(주)데이콤"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② 가상무통장 입금은 계좌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날까지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당일에 입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입금은 원서접수마감일 오후 22시에 최종 마감합니다.

③ 가상무통장 입금후 결제확인을 위해 인터넷원서접수확인을 하시고 접수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에 따라 가상무통장 입금취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가상무통장 입금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결제가 취소되므로 원서가 접수되지 아니합니다.
⑤ 응시원서 입력을 한 이후에는 원서접수 마감기간까지는 입력사항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⑥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응시수수료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정상 접수 처리되며 반드시 정상 접수여부를 인터넷원서 접수확인 또는 접수증 출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증은 응시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1)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자(경력자)는 원서접수전 반드시 학점이수사실이 소명처리되어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및 가상무통장 입금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 결제가능 카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로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내역(카드종류, 카드번호, 카드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카드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을 입력하고 응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계좌이체

- 출금계좌는 SC제일,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외환,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조흥, 하나, 한미(현 한국씨티) 중 어느 한 곳에 개설된 본인 또는 타인(부모, 배우자, 기타) 명의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 출금할 계좌내역(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명의인의 성명,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을 입력하고 응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가상무통장 입금

- 결제대행업체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국민 · 신한 · 농협,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가상계좌에 응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를 입금합니다.
  - 한번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재부여가 불가하므로 부여받은 계좌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무통장 입금시 발생하는 부대수수료는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가상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응시수수료가 결제되지 않는 경우 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며 분할 입금이 안되므로 가상계좌에 응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를 한 번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① 가상무통장 입금은 은행창구방문,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 가상무통장 입금시 받는사람(예금주)을 "(주)데이콤"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② 가상무통장 입금은 계좌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날까지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당일에 입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입금은 원서접수마감일 오후 22시에 최종 마감합니다.

③ 가상무통장 입금후 결제확인을 위해 인터넷원서접수확인을 하시고 접수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에 따라 가상무통장 입금취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가상무통장 입금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결제가 취소되므로 원서가 접수되지 아니합니다.

3)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정상 접수 처리되며 반드시 정상 접수여부를 인터넷원서접수확인 또는 접수증 출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증은 응시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을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시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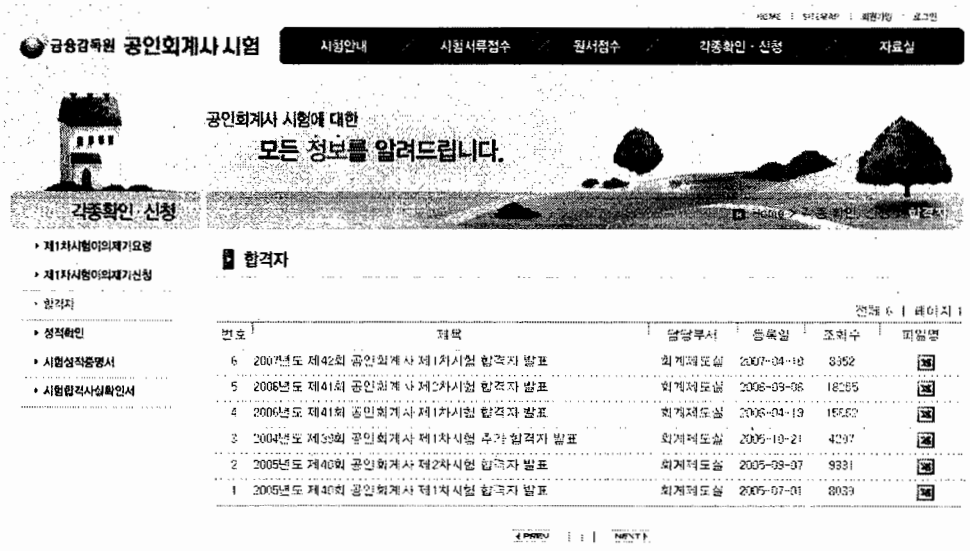

(나) 시험성적 조회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시험성적조회란에서 본인의 시험성적(과목별 점수, 평균, 합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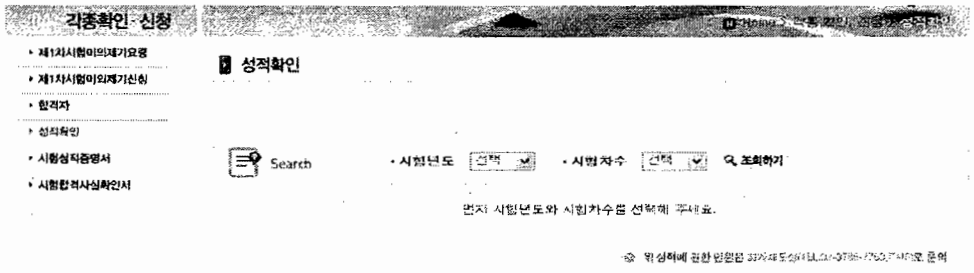

(다) 시험합격사실 확인서 발급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군입대 연기, 입사원서 작성 등 필요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의 합격사실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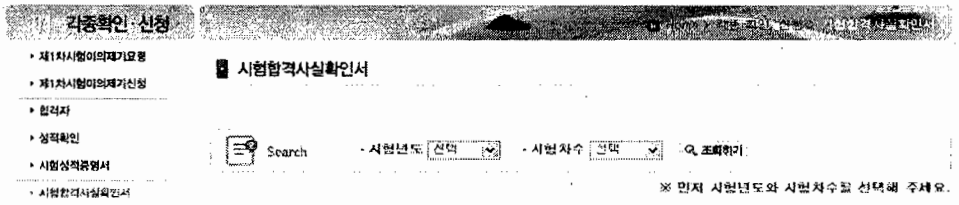

5. 합격증서의 교부 및 실무수습 안내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100)에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실무수습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 제2차시험 합격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Ⅳ.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방법

학점이수 소명 프로세스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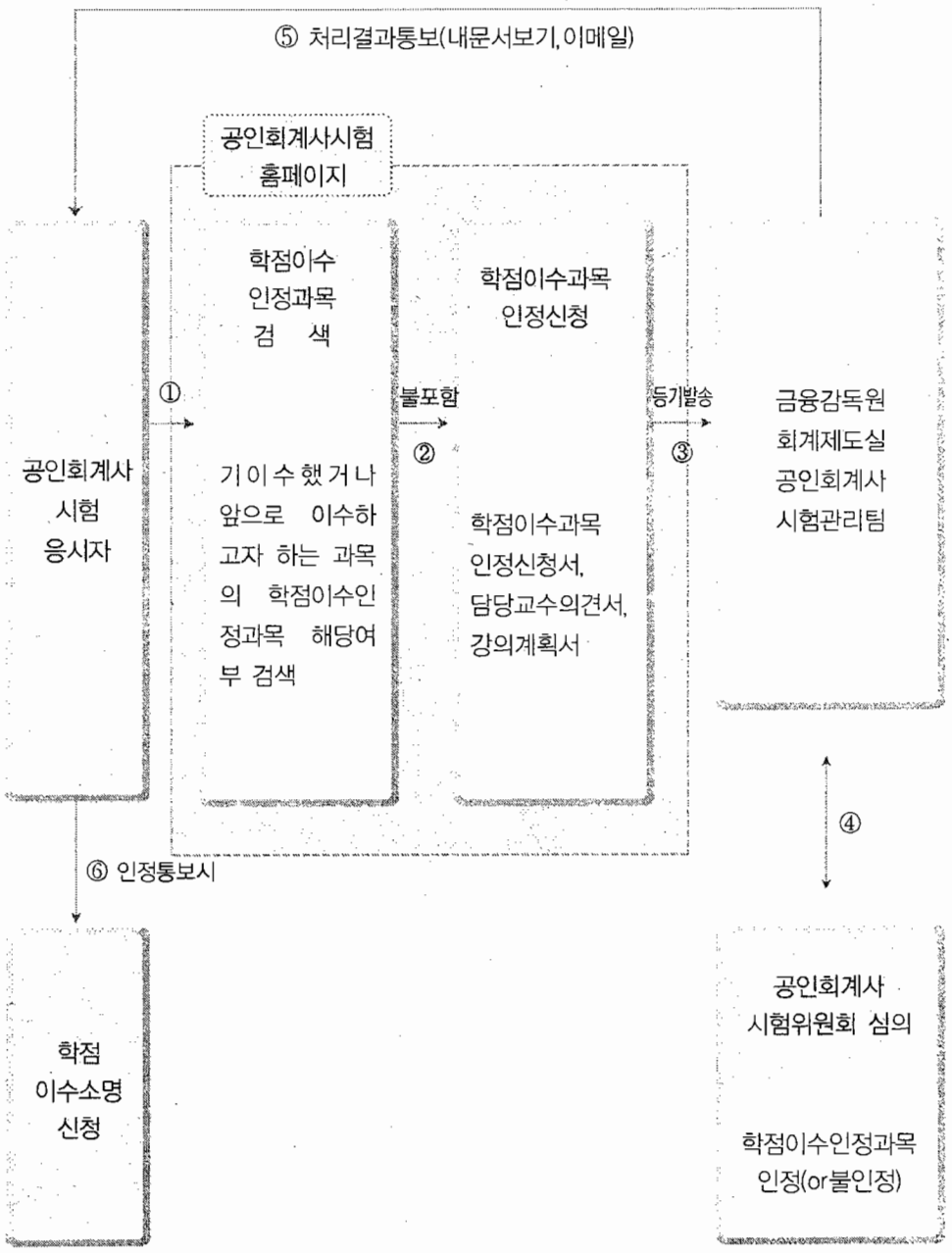

시험응시를 위한 학점이수방법

1.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

(가) 개 요

응시자 또는 학점취득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의 학점이수인정과목란을 검색하여 학점이수인정과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자 할 때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을 합니다.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

- 학점이수인정과목의 검색은 응시자가 기 학점취득한 과목이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거나, 학점이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강신청 전에 당해과목이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점이수인정과목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 특히, 응시자가 학점이수사실을 소명하고자 할 경우 먼저 본인이 취득한 과목의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상에 기재된 과목명과 학점이수인정과목상의 과목명이 일치하는 지를 검색하여 해당 과목이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수과목구분(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과목, 경제학과목)별로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시 아래 "일러두기"의 내용을 숙지한 후 검색하여 학점이수인정과목 여부를 잘못 인식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응시자가 기 이수한 과목이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족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을 하거나, ②학교에서 학점취득 또는 ③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이수과목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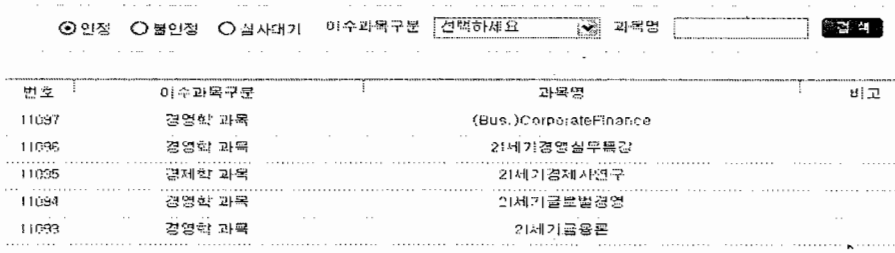

번호	이수과목구분	과목명	비고
11097	경영학 과목	(Bus.)CorporateFinance	
11096	경영학 과목	21세기경영실무특강	
11095	경제학 과목	21세기경제사연구	
11094	경영학 과목	21세기글로벌경영	
11093	경영학 과목	21세기금융론	

일 리 두 기

- 과목명은 띄어 쓰지 아니하고 모두 붙여서 표기
  ex) 경영혁신과 회계 ⇒ 경영혁신과회계
- 로마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과목명 끝의 아라비아숫자와 함께 쓰인 괄호는 생략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함께 쓰인 온점(“.”), 가운데점(“·”), 슬래시(“/”) 등 특수문자는 반점(“,”)으로 표기
  ex) Ⅰ ⇒ 1, Ⅰ,Ⅱ ⇒ 1,2, (Ⅰ) ⇒ 1, (Ⅰ,Ⅱ) ⇒ 1,2
  (1) ⇒ 1, (1,2) ⇒ 1,2, 1,2 ⇒ 1,2, (1,2) ⇒ 1,2,
  1·2 ⇒ 1,2, (1·2) ⇒ 1,2, 1/2 ⇒ 1,2, (1/2) ⇒ 1,2,
- 과목명 중간의 반점(“,”), 온점(“.”)은 가운데점(“·”)으로 표기함. 다만, 과목명 끝의 아라비아숫자 사이의 특수문자는 반점(“,”)으로 표기하고, 과목명 중간의 슬래시(“/”)는 그대로 유지
  예) 운송,물류론 ⇒ 운송·물류론 , 선물.옵션 ⇒ 선물·옵션
  예) 세무회계 1,2, 세무회계1·2, 세무회계1/2, ⇒ 세무회계1, 2
- 가운데점(“·”)이 있는 과목명과 가운데점(“·”)이 없는 과목명은 동일한 과목으로 간주
  예) 운송·물류론 = 운송물류론, 선물·옵션 = 선물옵션
- 영어의 경우 맨 앞 글자 및 명사의 시작은 대문자로 하며 전치사 등은 소문자로 표기. 다만 통상 사용되는 “e-” 또는 “e” 등은 소문자로 함
  예) PROGRAM DESIGN AND VALUATION
  ⇒ ProgramDesignandValuation
- 한자는 한글로 표기
  예) e-business下의회계학 ⇒ e-Business하의회계학

(나)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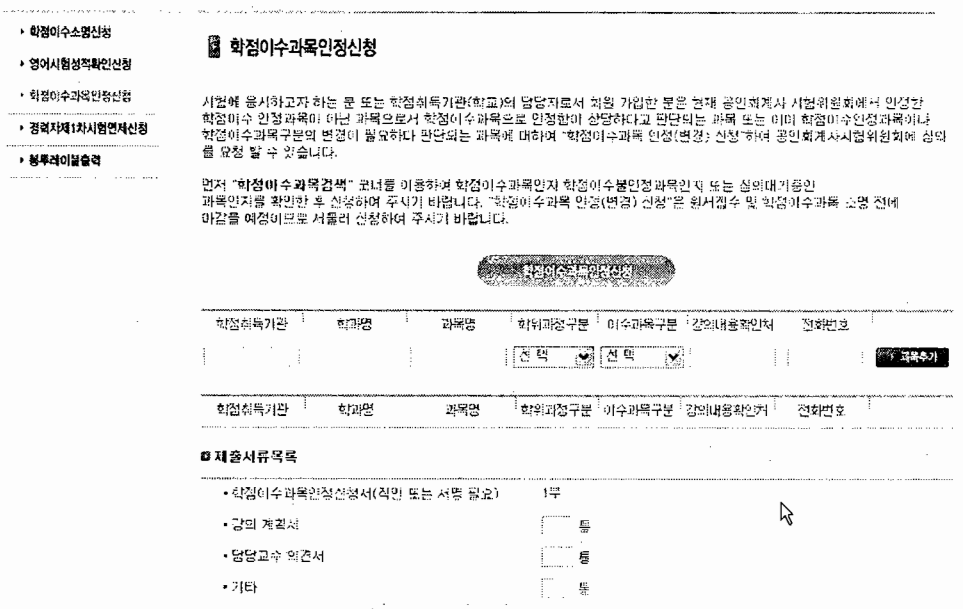

1) 홈페이지에서 학점이수인정과목을 검색합니다.

학점이수인정과목이란 학교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회계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 및 경제학 과목으로 각각 인정한 과목들을 말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의 학점이수인정과목검색란에서 직접 검색 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응시자는 학점이수소명신청시 학점이수인정과목을 검색하여 본인이 이수하였거나 앞으로 이수할 예정인 과목이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이수과목구분(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과목, 경제학과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이수과목명과 학점이수인정과목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러두기"에 의하여 동일하게 표기되거나 동일과목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 "운송.물류론"이나 "운송,물류론"은 "운송·물류론"으로 표기되며, "운송·물류론"과 "운송물류론"은 같은 과목으로 간주됨. 그러나 "벤치경영전략"과 "벤치경영과 전략"은 별개의 과목임.

2) 학점이수인정과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원하는 이수과목구분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학점취득기관은 학교, 학점은행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독학사(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의 명칭을 선택합니다.

- 학과명은 학교와 같이 학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과목명은 성적증명서(or 학점취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목명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학위과정구분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며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 강의내용 확인처는 강의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주로 각 대학(교)의 학과사무실이나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등을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는 학교 대표전화와 같은 일상적인 전화번호는 피하고, 강의내용 확인처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제출서류목록은 각 제출서류의 수량을 정확히 기입하고, 강의계획서는 해당 학점취득기관의 양식을 따르며, 담당교수의견서는 담당교수의 사인 또는 날인이 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는 강의계획서나 담당교수의견서 이외에 인정신청한 과목이 해당 학점이수과목구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선택사항)를 말합니다.

3)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않은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후 정해진

기일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다시 보완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종결 처리합니다.

4) 봉투레이블출력란에서 발송자 주소, 성명과 수신자 주소(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등이 표기된 봉투레이블을 출력하여 우편발송봉투 겉면에 붙입니다.

출력목록종류를 명확히 표시하기 바라며, 인터넷상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오류발생시에는 수기로 정정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5)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를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6) 응시자가 기제출한 시험서류의 처리현황은 공인회계시험 홈페이지「내문서보기」의 "진행상황"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심의대기중)』는 서류가 이상 없이 접수되어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인정/불인정』은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신청과목을 심의하여 학점이수인정과목으로 인정/불인정 결정한 상태입니다.

주의사항

① 접수된 학점이수과목의 인정여부는 2개월여 간격으로 개최되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처리에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란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미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지 신청 전에 반드시 학점이수인정과목란을 검색하여 확인합니다.

2. "학교"에서 학점이수

(가) 대상기관(이하 "학교"로 명기)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학, 산업·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

(나) 학점이수방법

- "학교"의 정규과정(1,2학기) 또는 계절학기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며, 증빙서류로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만으로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만 제출합니다.

-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 단,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① 응시자가 2학기에 학점이수를 완료한 경우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당해 연도 시험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 관리팀에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와 "학교"에서 학점은행제의 "시간제 등록"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는 학점이수소명신청절차가 상이하니 절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F"학점을 받은 과목이거나 선수과목 등 성적증명서에 학점이 표시되지 않는 과목은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 학점이수소명절차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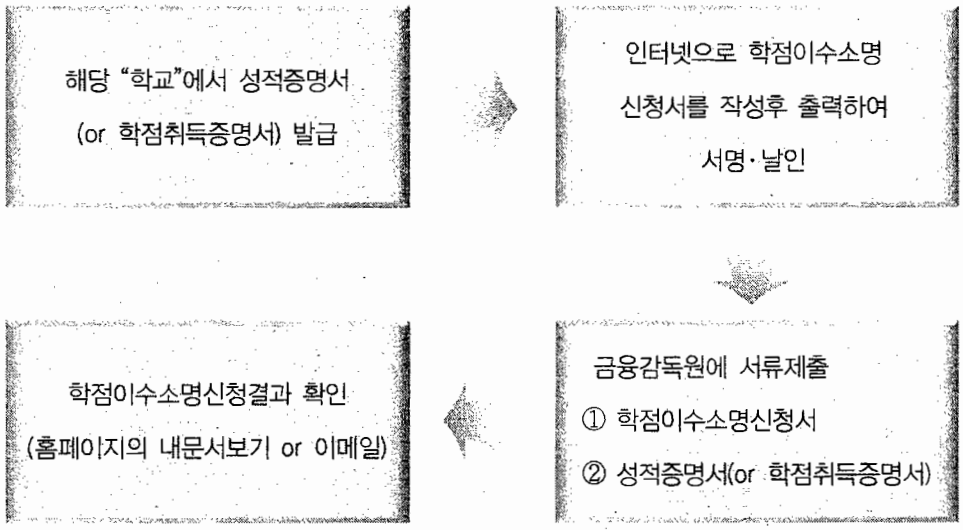

3.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가) 개 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하여 학점이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중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가 인정한 학점이수과목을 이수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인정을 받아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직업훈련원기본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대학 및 전문대학 수준의 각종학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중에서 교수 및 강사, 시설 및 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등의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학점은행제의 학습과목을 개설한 기관을 말합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강의가 이루어지는 과목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학점이수방법

1) 교육훈련기관 검색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edubank.kedi.re.kr)에서 「교육훈련기관」의 하단메뉴 [기관유형별, 과목별, 전공별, 지역별]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 [기관유형별]에서는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유형별(대학부설사회교육원, 전산원, 원격교육기관 등)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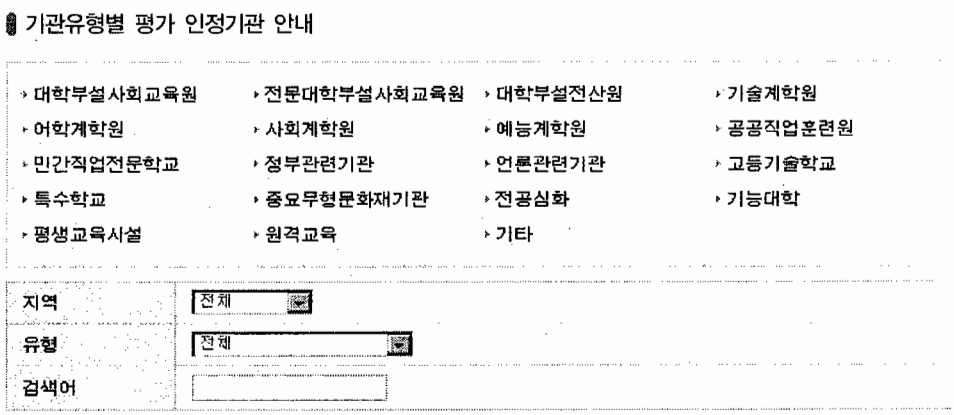

• [과목별]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과목중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과 동 과목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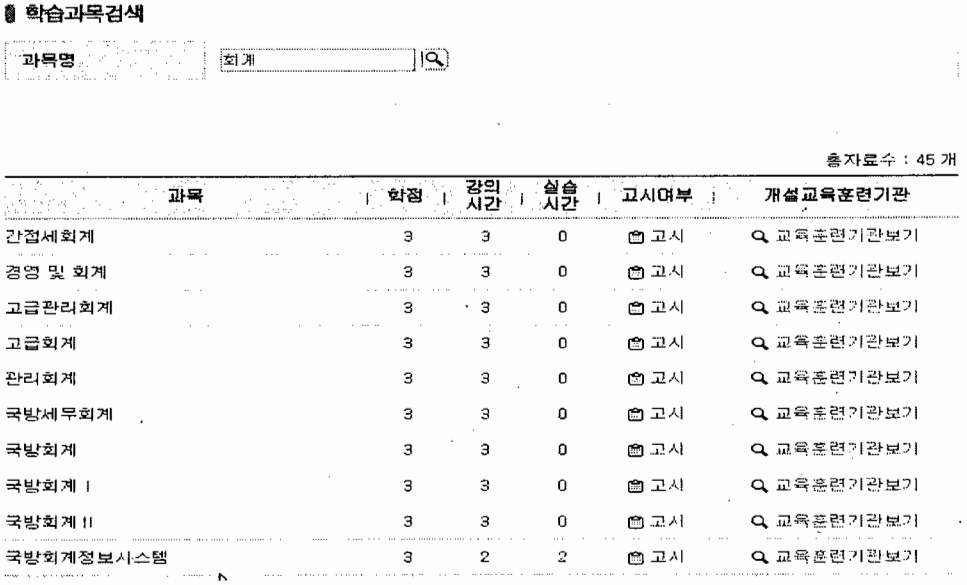

과목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고시여부	개설교육훈련기관
간접세회계	3	3	0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경영 및 회계	3	3	0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고급관리회계	3	3	0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고급회계	3	3	0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관리회계	3	3	0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국방세무회계	3	3	0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국방회계	3	3	0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국방회계 I	3	3	0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국방회계 II	3	3	0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국방회계정보시스템	3	2	2	고시	교육훈련기관보기

• [전공별]에서는 전공 또는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과 과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해당 전공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검색하여 동 기관에서 개설된 과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러 과목을 이수해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별 평가 인정기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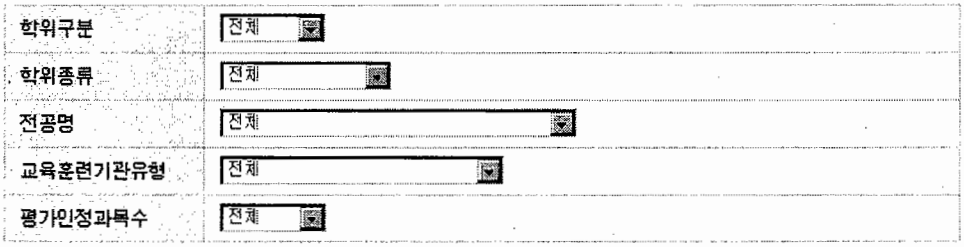

• [지역별]에서 [서울특별시]를 누르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기관들이 검색되며, 특정 교육기관명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정보 및 학점인정과목(개설과목)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중 학습과목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그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평가 인정기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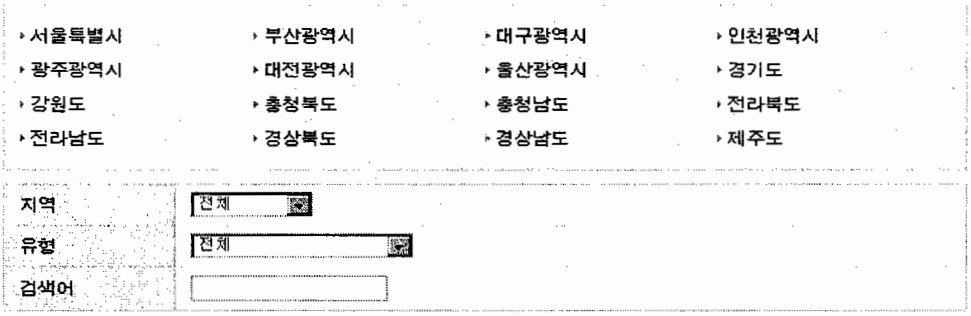

2)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이수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과목이 개설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 이수시기, 수강비용 등 제반사항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방침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이 개설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유선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수시기, 수강비용, 강사 및 교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교육개발원장의 학점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교육개발원장의 학점인정을 받아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학습자등록신청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 및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약 한달간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만 받고 있으며,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점인정신청을 한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기까지 약 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취득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수험생이 11월 이후에 수료한 경우 다음해 1월 학점이수소명신청 마감기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인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두차례의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특별학점인정 처리일정 ▐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	매년 1월 2일 부터 5일간*	매년 4월 1일 부터 5일간*
학점인정처리완료 및 증명서 발급시점	매년 1월 15일 이후	매년 4월 15일 이후

*업무일 기준(공휴일은 제외)

주의사항

①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등을 이용하여 학점이수 시 1년 또는 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이 제한되고 있으니 사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본인이 이수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학점 및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학위취득시험 합격과목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을 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때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학점이수소명절차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or 학점취득증명서)를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원하는 과목 수강 →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후 성적증명서 (or학점취득증명서) 발급 → 학점이수소명신청 [학점이수소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or학점취득증명서) 제출]

4. 독학학위취득시험 합격

(가) 개 요

독학학위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란 혼자 힘으로 공부하여 국가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에서는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분에 대해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합니다.

- 독학학위취득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뉘어 있고,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는 전공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나 2단계(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는 전공별로 시험과목이 달라집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검정원 홈페이지(http://bdes.knou.ac.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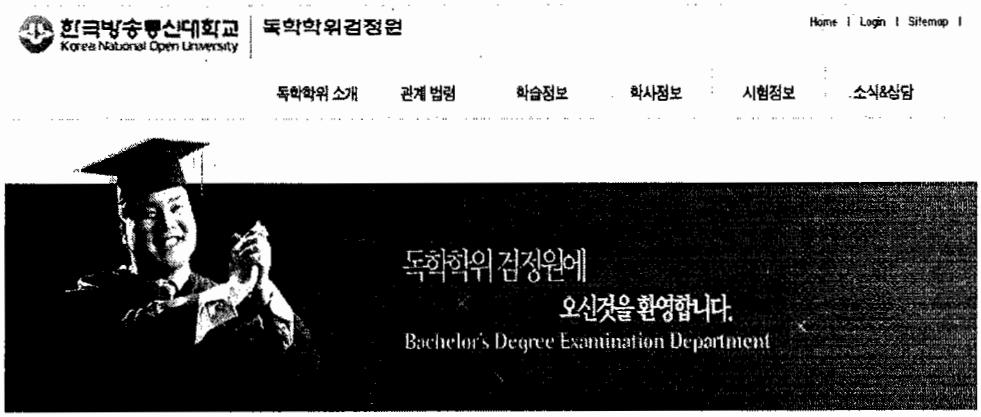

* 시험일정, 응시요건 및 시험과목 등 제도전반에 대하여는 독학학위검정원(02-3668- 4411)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점이수방법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하여 학점이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전공별(주로 경영학) 1단계~4단계 중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로부터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의 독학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인정을 받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독학학위취득시험일정 및 과목 확인하기

독학학위취득시험일정은 매년 발표되는 한국독학학위검정원의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독학학위취득시험일정 ▐

과정별 시험	응시원서 접수(교부) 일정		시험일	합격자 발표	비고
	인터넷 접수 (단계별 5일간)	방문 접수 (단계별 3일간)			
교양과정인정시험 (1단계)	2007. 2. 5(월) 10:00 ~ 2. 9(금) 17:00	2007.2.13(화)~2.15(목) 09:00~17:00	3.18 (일)	4.19 (목)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단계)	2007. 4.23(월) 10:00 ~4.27(금) 17:00	2007.5. 2(수)~5.4(금) 09:00~17:00	6.10 (일)	7.12 (목)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단계)	2007. 7.16(월) 10:00 ~7.20(금) 17:00	2007.7.25(수)~7.27(금) 09:00~17:00	8.26 (일)	9.28 (금)	
학위취득종합시험 (4단계)	2007. 10.1(월) 10:00 ~ 10.5(금) 17:00	2007.10.10(수)~10.12(금) 09:00~17:00	11.11 (일)	12.13 (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는 학점이수인정과목이 주로 경영학 전공과목에 편성되어 있지만, 일부 타 전공과목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시험대상과목이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2007년도 독학학위취득시험과목 중 학점이수인정과목(2007.8.31기준) ▐

구 분	전공분야	과 목
교양과목	전공구분없음	경제학개론, 경영학개론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경영학	회계원리, 인적자원관리, 마케팅원론, 경영조직론, 경영정보론, 마케팅조사, 계량경영학, 관리회계론
	행정학	재정학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경영학	재무관리론, 경영전략, 생산관리론, 투자론, 재무회계, 경영분석, 소비자행동론, 노사관계론
	행정학	공기업론
학위취득 종합시험	경영학	재무관리, 마케팅원론, 회계학, 인사조직론
	행정학	조직행태론

2) 독학학위취득시험의 각 단계별 응시자격을 확인합니다.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인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한 자
  -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6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2과목)에 합격한 자
-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합격 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년제 대학교(산업대학, 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 동일전공 인정분야(학과)에 한함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2과목)에 합격한 자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합격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년제 대학교(산업대학, 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 동일전공 인정분야(학과)에 한함

-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전과목(17과목)을 합격 면제한 자

- 4년제 대학교(산업대학, 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수업년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점(전공16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3) 독학학위취득시험중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에 응시하여 합격합니다.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합니다.

- 독학학위검정원에서는 독학학위취득시험 시행 후 학력조회 등을 통하여 동일학과 불인정, 학점 및 이수(합격)과목 미달, 학력 불인정 등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단 될 시에는 그로 인하여 합격된 모든 과목은 무효 조치 됩니다.

특히 학사학위소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전공의 독학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학전공과 동일전공으로 인정된 학과(경영학 동일전공 인정학과 참조)를 졸업한 자는 독학학위취득시험 중 경영학전공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영학 동일전공 인정학과 ▐

전공분야	동일전공인정(학)과
경영학	경영경제, 경영정보, 공업경영, 무역, 상, 상업교육, 세무, 세무회계, 내국세, 관세, 창업경영, 회계, 관광경영, 농업경영, 축산경영, 산림경영, 수산경영, 해운경영, 항공경영, 호텔경영, 호텔관광경영, 증권금융, 증권경영, 금융보험, 보험실무, 보험경영, 무역실무, 금융, 회계정보, 유통정보, 인터넷비즈니스정보, 산업기술경영, 경영정보시스템, 부동산, 기업경영학, 산업시스템경영, 인터넷무역, 세무정보, 국제통상정보, 해양산업경영 등

4) 한국교육개발원장의 학점인정

- 독학학위취득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여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공분야	동일전공인정(학)과
교양과목인정시험	과목당 4학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
학위취득종합시험	과목당 5학점

- 4단계 시험합격과목이 1~3단계에서 시험합격한 과목과 일치되는 경우 이중 하나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ex) 재무관리론(3단계)와 재무관리(4단계), 마케팅원론(2단계, 4단계)

- 독학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과목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교육개발원장의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학습자등록신청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 및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약 한달간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만 받고 있으며,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점인정신청을 한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기까지 약 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취득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수험생이 11월 이후에 수료한 경우 다음해 1월 학점이수소명신청 마감기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인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두차례의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특별학점인정 처리일정▐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	매년 1월 2일 부터 5일간*	매년 4월 1일 부터 5일간*
학점인정처리완료 및 증명서 발급시점	매년 1월 15일 이후	매년 4월 15일 이후

*업무일 기준(공휴일은 제외)

주의사항

①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등을 이용하여 학점이수 시 1년 또는 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이 제한되고 있으니 사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본인이 이수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학점 및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학위취득시험 합격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을 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③ 독학학위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02-3668-4411)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점이수소명절차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or 학점취득증명서)를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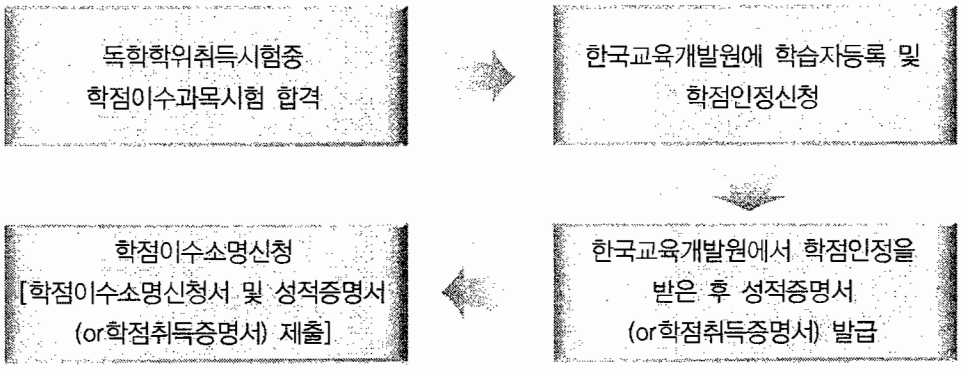

5. 시간제 등록

(가) 개 요

응시자가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학점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제 등록과정을 개설한 대학(교)에서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인정을 받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학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등록은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로서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등록 대상기관에는 시간제등록과정이 개설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치를 인가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이 있습니다.

(나) 학점이수방법

1) 시간제등록과정을 개설한 대학(교) 검색

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과정을 많이 개설하고 있으며, 정규과정(1학기, 2학기)외에도 계절학기에 시간제등록과정을 개설하는 학교도 있으니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등에서 개설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한 정보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학교정보검색을 통해 인가된 대학 및 원격대학들의 리스트, 홈페이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학(교)에서 학점 이수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과목이 개설된 학교를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 시간제등록은 대학(교)에서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시간제 등록생 모집여부 및 개설과목을 확인한 이후에 수강해야 합니다.

3) 한국교육개발원장의 학점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교육개발원장의 학점인정을 받아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학습자등록신청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 및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약 한달간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만 받고 있으며,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점인정신청을 한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기까지 약 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취득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수험생이 11월 이후에 수료한 경우 다음해 1월 학점이수소명신청 마감기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인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두차례의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특별학점인정 처리일정 ▐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	매년 1월 2일 부터 5일간*	매년 4월 1일 부터 5일간*
학점인정처리완료 및 증명서 발급시점	매년 1월 15일 이후	매년 4월 15일 이후

*업무일 기준(공휴일은 제외)

주의사항

①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등을 이용하여 1년 또는 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이 제한되고 있으니 사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본인이 이수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학점 및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육개발원에는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학위취득시험 합격과목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을 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때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③ 대학 재적생의 "시간제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이 폐기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점이수소명절차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or 학점취득증명서)를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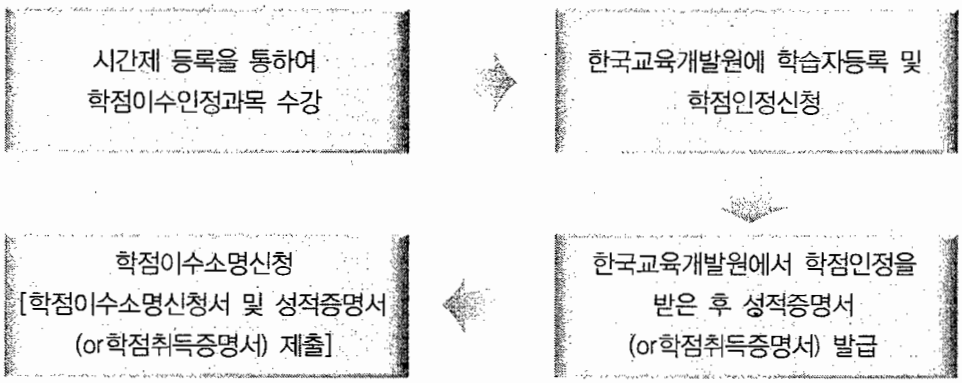

대학생(재직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요 내용〉

①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 관련 문서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6.12)

-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1)~(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 위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 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 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이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대학생(재직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4)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1)~(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5)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주의사항〉

①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음 가, 나, 다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

→ 해당 대학 정규 학생의 1/2학점 취득 가능

나. 원격대학 시간제 계절제 수업 이수 학점 제한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정규학생 또는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 외의 신규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이 불가함.

→ 여러 원격대학에서 시간제 8주 미만의 계절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6학점만 인정됨.

다.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

②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타 행정사항〉

① 자격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 및 "해당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불필요

②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가능함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발췌 〉

V.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FAQ

목 록

(질문 1) 학점이수소명신청과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이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 2) 학점이수소명신청시 성적증명서와 학점취득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까?

(질문 3) 2007년도 2학기에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도 2008년 제1차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소명신청이 가능합니까?

(질문 4) 회계·세무관련 학점이수와 관련하여 회계학과목과 세무관련과목을 다 포함해서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계학과목 또는 세무관련과목만으로 12학점을 이수해도 됩니까?

(질문 5) 동일 대학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대학(기관)에서 학점을 각각 취득한 과목의 중복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질문 6) 대학에 재학 중 이수한 학점이수인정과목의 성적이 학점이수소명신청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예를 들어 A학점을 받은 과목과 D학점을 받은 과목간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7)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고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보냈는데,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진행상황」 란에"서류보완요청"으로 나타납니다. 보완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질문 8) 학점이수소명신청 등 시험서류를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질문 9) 학점이수소명 및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을 하고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보냈는 데, 서류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 10) A대학 학부과정에서 중급회계 3학점을 수강하였고, 석사과정에서 또 중급회계 2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중복과목에 해당합니까?

목 록

(질문 11)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게 되었으나, 학교 재학중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통하여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24학점은 충족하였습니다. 자퇴한 학교의 성적증명서로 학점이수소명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 1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전산회계운용사」 라는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경영학 및 회계학전공 18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요?

(질문 13)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21세기금융"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는 "21세기금융론"만 현재 경영학 학점이수과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목명이나 내용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21세기금융"이라는 과목을 "21세기금융론"으로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문 14)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에서 "재무제표분석"이라는 과목이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과 경영학과목으로 중복인정되고 있는 데,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동 과목을 수강하여 3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이수소명신청시 각각 회계·세무과목 및 경영학과목으로 총 6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질문 15) 법학대학에서 개설된 재무회계를 교양과목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전공이 아니어도 학점이수소명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질문 16) A대학에서 "회계원리"를 수강하고 자퇴한 후, B대학으로 편입하여 "공학회계원리"를 수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대학과 B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각각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 17) 2007년 4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였던 수험생입니다. 2008년 4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질문 18) 공인회계사 시험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바로 응시원서가 출력이 안되는데 정상접수된 것인가요?

질문 1 학점이수소명신청과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이 어떻게 다릅니까?

- "학점이수소명신청"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등 총 24학점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며,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은 응시자가 이미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 중 학점이수인정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질문 2. 학점이수소명신청시 성적증명서와 학점취득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까?

-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대학(교)에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다면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나 학점취득증명서중 어느 하나만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고 동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학점인정증명서는 과목명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대학에서 일부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 등을 이용하여 나머지 학점을 취득한 응시자는 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2개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편입, 재입학 등)이거나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각각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3. 2007년도 2학기에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도 2008년 제1차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소명신청이 가능합니까?

- 2008.1.18.(금) 17:00시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시험서류 접수처)에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가 도착하고 보완사항도 없어 소명처리될 수 있다면 2007년도 2학기성적으로 학점이수소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2학기 성적증명서가 학점이수소명신청 마감일 전에 발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회계·세무관련 학점이수와 관련하여 회계학과목과 세무관련과목을 다 포함해서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계학과목 또는 세무관련과목만으로 12학점을 이수해도 됩니까?

-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은 회계학과목 또는 세무관련 과목만으로 12학점을 이수하여도 되고, 두 과목을 합하여 12학점을 이수하여도 됩니다.

질문 5. 동일 대학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대학(기관)에서 학점을 각각 취득한 과목의 중복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동일 대학내에서 같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과목의 유사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ex) 같은 A대학에서 중급회계와 재무회계 이수시 각각의 학점을 인정
- 편입이나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대학(기관)에서 동일한 과목명을 가진 과목을 이수한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한 개의 과목만 인정되며, 유사한 과목명과 내용을 가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과목의 중복여부를 강의계획서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ex) A대학 중급회계, B대학 중급회계 각각 이수 : 한과목만 인정
  A대학 중급회계1, B대학 중급회계2 각각 이수 : 중복여부 판단

질문 6. 대학에 재학 중 이수한 학점이수인정과목의 성적이 학점이수소명신청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예를 들어 A학점을 받은 과목과 D학점을 받은 과목간 차이가 있습니까?

-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를 통해 해당 과목의 학점이수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학점의 등급으로 차별을 두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미이수과목으로 처리되는 F학점의 경우만 제외하고 A학점이든 D학점이든 학점이수소명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 7.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고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보냈는데,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진행상황」 란에 "서류보완요청" 으로 나타납니다. 보완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 학점이수소명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학점취득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상의 과목명과 학점이수소명신청서상의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한지 90일이 경과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에 "서류보완요청"으로 게재됩니다.

- "서류보완요청"등 시험서류의 처리상황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요청 후 보완요구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다시 보완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종결처리합니다.

질문 8. 학점이수소명신청 등 시험서류를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 감독원 문서처리센터에 접수된 후 각 부서로 전달되는 데 약 1일정도 소요되며 각 담당자가 문서처리하는 데 약 1일정도 소요됩니다.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끼여있으면 해당일에는 휴무이므로 처리기간을 더 감안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시험서류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먼저 인터넷우체국의 국내등기조회란에서 본인의 서류가 감독원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도착일로부터 2일뒤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업무담당자와 학점이수소명신청 업무담당자가 다른 관계로 위 서류를 같이 보냈다 하더라도 동시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서류가 처리(소명됨/합격됨 또는 보완요청)될 때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한 본인의 핸드폰 및 이메일로 SMS와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만약 SMS나 이메일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홈페이지의 내정보란을 정확하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9. 학점이수소명 및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을 하고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보냈는데, 서류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에서 제출된 서류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서류가 감독원에 도착하였으니 여부를 인터넷우체국의 국내등기조회란에서 확인한 뒤 도착일로부터 2일뒤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 처리시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한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처리결과가 SMS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시험서류가"보완요청" 또는 "소명됨/합격됨"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메일주소나 핸드폰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이니 수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메일주소로 다음메일(***@hanmail.net)을 등록한 경우에는 감독원에서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메일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동 사실을 확인하고 스팸설정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A대학 학부과정에서 중급회계 3학점을 수강하였고, 석사과정에서 또 중급회계 2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중복과목에 해당합니까?

• 아니오. 원칙적으로 개설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복과목으로 보아 응시자에게 유리한 과목 하나만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개설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석사·박사과정은 심화과목으로 보아 개별과목으로 인정, 총 5학점이 인정됩니다.

질문 11.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게 되었으나, 학교 재학중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통하여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24학점은 충족하였습니다. 자퇴한 학교의 성적증명서로 학점이수소명신청이 가능한지요?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는 대학교의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도 가능하며, 자퇴한 학교의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로 학점이수소명이 가능합니다.

질문 1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전산회계운용사」라는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경영학 및 회계학전공 18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요?

• 자격증으로 취득한 학점은 경영학 또는 회계학 학위취득의 학점으로는 인정받고 있지만 어떤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시험에서는 해당과목이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과목 또는 경제학 과목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공인회계사시험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13.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21세기금융" 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였는 데,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는 "21세기금융론"만 현재 경영학 학점이수과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목명이나 내용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21세기금융" 이라는 과목을 "21세기금융론" 으로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불가능합니다. 현재 학점이수과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과목과 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과목으로는 학점이수소명신청이 어렵습니다.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1세기금융"과목에 대하여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을 하시거나 경영학과목의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된 다른 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4.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에서 "재무제표분석" 이라는 과목이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과 경영학과목으로 중복인정되고 있는데,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동 과목을 수강하여 3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이수소명신청시 각각 회계·세무과목 및 경영학과목으로 총 6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재무제표분석"과목과 같이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과목 및 경제학과목 중 2개 이상 과목으로 중복 인정되는 경우 학점이수소명신청시 한 과목으로만 인정되니 수험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5. 법학대학에서 개설된 재무회계를 교양과목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전공이 아니어도 학점이수소명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 학교, 학과, 학부·대학원과정 여부, 전공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과목의 내용이 회계·세무, 경영학, 경제학 과목의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무회계의 경우, 회계·세무관련과목으로 기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16. A대학에서 "회계원리" 를 수강하고 자퇴한후, B대학으로 편입하여 "공학회계원리" 를 수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대학과 B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각각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동일한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해당학교의 학칙에 따라 동일(대체)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과목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학점취득기관이 다른 경우는 과목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는 학점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할 때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위 과목의 경우 중복 과목으로 보여지므로 수험생에게 유리한 과목 하나만 인정합니다.

질문 17. 2007년 4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였던 수험생인데 2008년 43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이수소명과 영어시험성적합격(토익 700점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학점이수소명의 경우, 2007년 42회 시험 응시 하였을 때 기소명되었으므로 2008년 시험을 응시할 때는 별도로 학점이수소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영어시험성적(http://cpa.fss.or.kr.)을 조회한 결과 "2008년 1차 시험까지 유효"라고 표기된 경우는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2007년 1차시험까지 유효"로 표기된 경우에는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성적은 1차시험에서 영어시험이 폐지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2차시험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2차시험을 다시 보는 수험생의 경우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18. 공인회계사 시험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바로 응시원서가 출력이 안되는데 정상접수된 것인가요?

• 응시원서가 통상 원서접수마감 후 2일뒤에 출력이 가능하므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여도 응시원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수접수 후 접수증이 출력되오니 이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Ⅵ. 기타 참고자료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06-1호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6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1. 시험서류의 종류

(가)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와 제2차시험 응시자(제1차시험 면제자를 포함)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학점이수소명신청서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http://cpa.fss.or.kr)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홈페이지 "학점이수자료" 코너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급하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

■ 제1차시험 응시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서류이며 제2차시험 응시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 홈페이지에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

- 공인영어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합니다.
- 영어시험성적표는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일본 정규 토익시험의 성적은 인정)

(다)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

■ 응시자가 학점이수인정과목이 아닌 과목으로서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

-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

- 해당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사본 및 담당교수의견서(홈페이지 "학점이수자료" 코너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합니다.

(라)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

■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면제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제1차시험면제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 2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각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시험서류 제출 방법

(가) 모든 시험서류는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인터넷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17층 회계제도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나) 인터넷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소명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면제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는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를, 제2차시험 응시자(2006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1차시험 면제자 포함)는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정해진 접수기간 마감시각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3. 시험서류 제출 절차

(가)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실명으로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로그인)합니다.

(나) 홈페이지의 해당 신청코너를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에 관한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으로 확정 접수합니다.

- 확정 접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재차 확인한 후 확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확정 접수한 신청서를 인쇄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합니다.

(라) 서명한 신청서와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 모두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17층 회계제도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등기우편 이용 시 수신처가 표기된 봉투 레이블을 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해당 시험서류 모두가 제출되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 "내문서 보기"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당해 시험서류를 보내지 아니하면 임의 종결되어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시험서류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의 보완을 "내문서 보기"를 통해 요구합니다. 보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 종결합니다.
- 응시자는 서류 도달·접수여부, 보완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의 "내문서 보기"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4. 응시원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은 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서면접수는 폐지하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원서접수" 코너를 이용합니다.

(라)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므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제출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시기

구 분	2007년도 제1차시험 서류접수기간	2007년도 제2차시험 서류접수기간
학점이수소명신청	'06. 4. 26.(수)~ '07. 1. 19.(금) 17:00	'07. 3. 7.(수)~ '07. 4. 27.(금)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06. 4. 26.(수)~ '07. 1. 19.(금)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05. 12. 26.(월)~ '06. 11. 30.(목) 17:00	'07. 3. 7.(수)~ '07. 4. 13.(금) 17: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07. 3. 7.(수)~ '07. 4. 13.(금) 17:00
응시원서접수	'07. 1. 11.(목) 09:00~ '07. 1. 24.(수) 20:00	'07. 5. 3.(목) 09:00~ '07. 5. 16.(수) 20:00

(가)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의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서류접수기간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본원(17층 회계제도실)에 도달하여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

-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의 "국내등기/소포(택배)조회" 코너에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배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점이수소명 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가 제한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제1차시험 응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라) 제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시험서류를 제1차시험 서류접수기간중에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제1차시험 응시원서와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인터넷으로만 각각 접수합니다. 2007년도 제42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당해연도 제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2007년 1월 초순경에 공고하는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서류의 제출 면제 또는 대체

(가)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 신청하여 확인받은 자는 재차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시험공고일(2007년 1월 초순경)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을 신청하여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취득을 확인받은 자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재응시할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대체합니다. 다만,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경력자로 인정받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재차 제1차시험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라) 시험서류의 제출 면제 또는 대체는 2007년도 이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한합니다.

7. 시험서류의 허위기재 행위에 대한 제재

(가) 학점이수소명서류,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합니다.

(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응시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또한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미리미리 학점이수소명 및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학점이수소명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제1차시험에 한함) 신청을 하고, 해당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학점이수인정과목(홈페이지 "학점이수과목검색" 코너에서 확인 가능)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은 설령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하여 시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특히 2007년도 제1차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은 2006년 11월말에 먼저 마감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력자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라 하더라도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은 후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제1차시험 면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담당자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 2007년도 시험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07-1호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1. 시험서류의 종류

(가)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와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 면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학점이수소명신청서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http://cpa.fss.or.kr)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홈페이지 "학점이수자료" 코너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합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

■ 제1차시험 응시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 홈페이지에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

- 공인영어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합니다.
- 영어시험성적표는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일본 정규 토익시험의 성적은 인정)

(다)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

■ 응시자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

-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

- 해당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사본 및 담당교수의견서(홈페이지 "학점이수자료" 코너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합니다.

(라)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

■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면제신청서

- 홈페이지에 제1차시험면제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합니다.

▣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 2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각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시험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가) 시험서류는 각 시험서류별 해당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실명으로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로그인)합니다.

(다)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의 종류에 따라 홈페이지의 아래 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제출은 "학점이수소명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제출은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제출은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제출은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라) 해당 신청코너를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에 관한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확정접수합니다.

- 확정접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내용을 재차 확인한 후 확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확정접수한 당해 신청서를 "내문서보기"에서 인쇄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합니다.

(바) 서명(또는 날인)한 신청서와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 모두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17층 회계제도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등기우편 이용시에는 수신처가 표기된 봉투레이블을 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해당 시험서류 모두가 제출되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합니다.

-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 종결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시험서류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의 보완을 "내문서보기"를 통해 요구합니다. 서류보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 종결합니다.

- 응시자는 서류 도달·접수여부, 보완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응시원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점이수소명 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가 제한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별로 각각 해당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원서접수" 코너를 이용합니다.

(라)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므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시기

구 분	제1차시험 접수기간	제2차시험 접수기간
학점이수소명신청	'07. 8. 8(수)~'08. 1. 18(금) 17:00	'08. 3. 5(수)~'08. 4. 25(금)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07. 8. 8(수)~'08. 1. 18(금)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07. 8. 8(수)~'07. 11. 30(금) 17:00	'08. 3. 5(수)~'08. 4. 4(금) 17: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08. 3. 5(수)~'08. 4. 4(금) 17:00
응 시 원 서 접 수	'08. 1. 9(수) 09:00~'08. 1. 22(화) 20:00	'08. 5. 7(수) 09:00~'08. 5. 20(화) 20:00

※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의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서류접수기간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본원(17층 회계제도실)에 도달하여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

-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의 "국내등기/소포(택배)조회" 코너에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배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서류의 제출 면제 또는 대체

(가) 이미 학점이수소명신청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지 아니합니다.

(나) 시험공고일(2008년 1월 초순경)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이미 확인받은 경우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합니다.

-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경력자로 인정받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재차 제1차시험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합니다.

(라) 시험서류의 제출 면제 또는 대체는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한합니다.

6. 시험서류의 허위기재 행위에 대한 제재

가 학점이수소명서류,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합니다.

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응시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또한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미리미리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2008년도 제1차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은 2007.11.30(금)에 먼저 마감되며, 특히 2008년도 시험 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2008년 1월 초순경에 공고하는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참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담당자(☎3786-7759, 7760, 784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서식

학 점 취 득 증 명 서

제2007-1호

성 명	홍길동	학 번	200412116
생년월일	85.6.20.	전 공	경영학

구 분	취득기관	취득과목	취득학점
1.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대학	○○○	3
	취득학점 합계		
2. 경영학과목	○○대학	○○○	3
	취득학점 합계		
3. 경제학과목	○○대학	○○○	3
	취득학점 합계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08년 월 일

학교의 장(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 인

[취득기관란 기재요령]

1.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한 자 : 학교의 명칭
2.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명칭

학점인정신청(변경)과목에 대한 담당교수 의견서

작성일자 : . . .

<table>
<tr><td>과목명</td><td colspan="6"></td></tr>
<tr><td>학점이수구분</td><td>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td><td></td><td>경영학과목</td><td></td><td>경제학과목</td><td></td></tr>
<tr><td colspan="7">※ 해당되는 학점이수구분에 ○ 표시</td></tr>
<tr><td colspan="7">학점이수과목 인정여부 의견 및 근거

담당교수 : ○ ○ ○ (직인 또는 서명)</td></tr>
<tr><td rowspan="2">담당교수</td><td>소속학과</td><td colspan="2"></td><td>Tel</td><td colspan="2"></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2"></td><td>H.P</td><td colspan="2"></td></tr>
</table>

금융감독원 약도 및 교통안내

❖ 금융감독원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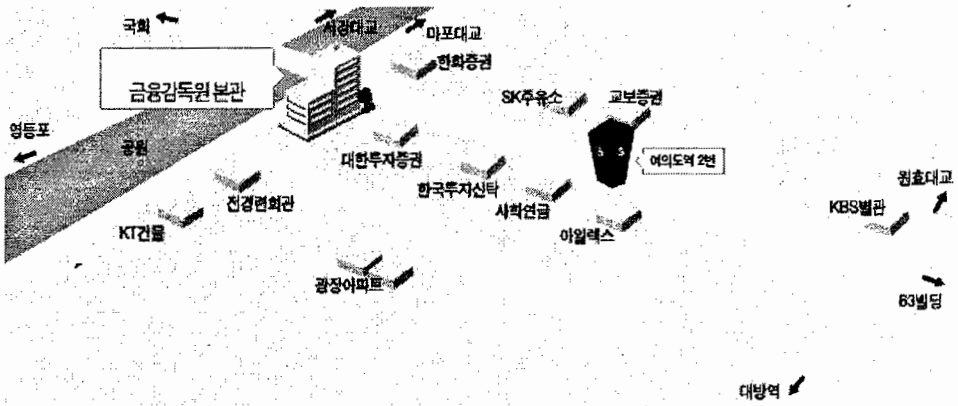

■ **본원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150-743)

■ **대표전화** (02) 3771-5114

■ **민원전화** 국번없이 1332

■ **교통편 안내**

- 지하철 :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 버스
  - 여의도역 하차
  - 순환버스 : 61
  - 간선버스(파랑) : 162, 261, 262, 360, 362, 461, 503, 753
  - 지선버스(초록) : 5012, 5613, 5618, 5623, 6630
  - 광역버스 : 700, 1008, 7007-1, 9409
- 전경련 빌딩 앞 하차
  - 간선버스(파랑) : 160, 162, 260, 262, 360, 600, 661
  - 지선버스(초록) : 5012, 5615, 5618, 5713, 6628, 6630
- 여의도 환승센터 (도심방향)
  - 광역버스 : 11-1, 11-2, 301, 302
  - 간선버스(파랑) : 160, 162, 260, 261, 262, 360
  - 지선버스(초록) : 5012, 5615 , 5618, 5623, 6630, 6633

  (외곽방향) - 광역버스 : 88, 510, 905
  - 간선버스(파랑) : 160, 260, 360, 362, 363, 461, 600, 601
  - 지선버스(초록) : 5012, 6623, 6628

차 명 진 의 원

1. 불성실공시법인의 유형, 지정절차, 지정 후 페널티 내용 일체

□ 붙임 : 불성실공시제도의 의의 및 절차

불성실공시제도의 의의 및 절차

Ⅰ. 불성실공시제도의 의의

1. 불성실공시제도의 개념
2. 불성실공시의 유형
   1) 공시불이행(§29), 2) 공시번복(§30), 3) 공시변경(§31)
3.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32)

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33)
2. 이의신청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34 · 35)
   1) 이의신청의 접수
   2)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1) 매매거래정지(§40①3)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의 공표(§36)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의 금감위 통보(§37)
   4)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38)
   5)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요구(§39)
4. 벌점의 부과기준(세칙 §13)

※ 관련규정

- 공시규정: §29~§39(제4장 불성실공시), §80, §81
  - 세칙 : §8~§15, <별표>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예고벌점기준
- 상장규정 : §75①8 · §75④3(관리), §80/12호(폐지)
-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세부기준(규정 §32①5, 세칙 §11/2호)

Ⅰ. 불성실공시제도의 의의

1. 불성실공시제도의 개념

○ **불성실공시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제도

○ 거래소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지연의 정도 등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여 **벌점 부과**

2. 불성실공시의 유형

1) 공시불이행(§29)

○ **공시불이행**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공시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아래 표(공시불이행 항목 요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공시불이행 항목(§29) 요약표】

구분	공시불이행 내용	관련규정	비고
1	· 주요경영사항 : 당일공시	§7①	*익일7:20
2	· 주요경영사항 : 익일공시	§7②	*익일7:20
3	· 주요경영사항 : 자회사	§8	당일/익일
4	· 주요경영사항 : 부동산투자회사	§9	익일
5	· 주요경영사항 : 선박투자회사	§10	익일
6	*- 삭 제('05.12.23) -*		
7	· 공정공시	§12~14	
8	· 조회공시요구 : 미답변/근거사실 미확인/ 투자판단에 혼란 야기	§18, §43/3호	당일/익일
9	·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20①	1월 or 명시기한
10	· 사업보고서등/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미제출	§21	법정기한
11	·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취소·변경) 신고	§45	해당기한

* 당일·익일 공시시한과 관련하여 당해법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익일 07시20분까지 신고가능(세칙 제25조5호)

2) 공시번복(§30)

○ **공시번복**이란 주권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경우

【공시번복 항목(§30) 요약표】

구분	공시번복 내용	비고
1	· 주요경영사항(§7~10), 공정공시(§12 · 13), 조회공시(§18), 자율공시(§28) 내용의 전면취소 · 부인 등	
2	· 풍문등의 조회공시(§18①)에 대한 부인공시 or 기공시 내용의 변동사항 신고(§45)후 1월*이내 전면취소 · 부인 * 합병등(§7①13·45호), 최대주주변경등(§7②2호) 사항은 3월 이내	*역일
3	· 현저한 시황관련(§18②) 조회공시 답변후 15*일이내에 답변 공시사항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공시(14항목)	*역일
	* 세칙에서 정하는 14개 공시항목(세칙 제9조 1 · 2호) 1) 매매거래정지사항(7항목) ① 증자 · 감자(§7①7) ② 이익소각(§7①8) ③ 주식배당(§7①12) ④ 합병 · 영업양수도 · 분할 · 분할합병 등(§7①13) ⑤ 주식교환 · 주식이전(§7①16) ⑥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 탈퇴(§7①17) ⑦ 주권상장폐지(§7①18) 2) 기타 중요공시사항(7항목) ① 자기주식 취득 · 처분(§7①11) ② 타법인 출자 · 출자지분 처분(§7①25) ③ 주식분할 · 병합(§7①28) ④ 주식관련사채 · 해외 DR 발행(§7①32) ⑤ 현금배당(§7①44) ⑥ 간이합병 · 소규모합병(§7①45) ⑦ 단일판매계약 · 공급계약(§7②3)	

3) 공시변경(§31)

○ **공시변경**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기공시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로서

- **①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 및 **②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구분

(1)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31①)

※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50%이상 변경**, **20%이상 변경** 및 **기타**의 경우로 분류

□ 100분의 50이상 (10항목 : 주로 '금액'변경)

구분	규정	공시내용	해당사항
1	§31①6	· 영업양수 · 도(§7①13)	양수 · 양도금액
2	§31①8	· 신규시설투자(§7①24)	투자금액
3	§31①9	· 타법인출자 · 처분(§7①25)	출자 · 출자지분 처분금액
4	§31①10	· 유형자산취득 · 처분(§7①27)	유형자산 취득 · 처분금액
5	§31①12	· 주식관련사채발행등(§7①32)	발행금액, 전환가격, 신주 인수권행사가격, 교환가격
6	§31①14	· 채무보증 · 담보제공, 채무인수 · 면제(§7①35)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인수, 채무면제 금액
7	§31①15	· 단기차입금 증가(§7①36)	단기차입금액
8	§31①19	· 단일판매계약 · 공급계약(§7②3)	단일판매계약 · 공급계약금액
9	§31①20	· 특별이익 · 특별손실(§7②7)	특별이익 · 특별손실금액
10	§31①22	· 자율공시 사항(§28①)	비율, 금액, 수량

□ 100분의 20이상 (7항목 : 주로 '수량·비율'변경)

구분	규정	공시내용	해당사항
1	§31①1	증자(§7①7)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가
2	§31①2	감자(§7①7)	감자비율, 감자주식수
3	§31①3	주식의 이익소각(§7①8)	소각주식수
4	§31①5	주식배당(§7①12)	주식배당비율
5	§31①7	합병·분할·분할합병(§7①13)	합병비율, 분할비율, 분할합병비율
6	§31①11	주식분할·병합(§7①28)	분할비율, 병합비율
7	§31①18	현금배당(§7①44)	주당 배당금(소액주주 기준)

□ 기타(4항목)

구분	규정	공시내용	해당사항
1	§31①4	· 자기주식취득·처분 (§7①11)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예정기간 내에 취득·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한 경우
2	§31①23	· 자회사(10%이상)의 주요 경영사항(§8①) ·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율 공시사항(§28①)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31① 1~21호)에 해당된 때 비율,금액,수량 50%이상 변경 (§31①22)에 해당된 때
3	§31①24	· 공정공시사항(§12·13)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31① 1~23호)에 해당된 때
4	§31①25	· 기타 거래소가 중요하게 인정한 사항(세칙 규정)	-

(2)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31②, 세칙 §10)

※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31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공시내용의 변경 **(세칙§10에서 규정)**

구분	근거 규정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
1	§31②, 세칙 §10(1)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31①)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 수량 등 기준의 1/2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31②, 세칙 §10(2)	자율공시(§28②의 장래계획등)사항의 비율, 금액, 수량등을 1/2이상 변경하는 경우

3.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32, 세칙§11)

○ 주권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사실이 발생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를 적용 예외 가능

※ 단, 5번의 주의조치를 1년 이내에 2회이상 받은 경우 제외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항목(§32)】

구분	내 용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정공시사항을 예측정보의 공시방법(§47)으로 공시한 경우로서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세칙 §11	1) 공시의무사항을 확정공시한 후 당해 법인이 부도등(§7①1), 회생절차개시신청등(§7①3), 해산사유발생등(§7①6)의 사유에 해당되어 확정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불이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번 사유로 예외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에게 당해사실에 대한 경위서 징구, 주의 등의 조치

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일반적 절차】

순서	절 차	내 용(기한등)	규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예고사실 공시매체 게재, 당해법인 통보	§33
2	이의신청 접수	통보받은날부터 7일(매매일) 이내	§34①
2-1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진실성여부와 관련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가능(종료일부터 12일내)	§34③
3	공시위원회 심의	신청받은날부터 12일(매매일) 이내	§34②
4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 결정	심의일부터 3일(매매일) 이내	§34②
5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35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일반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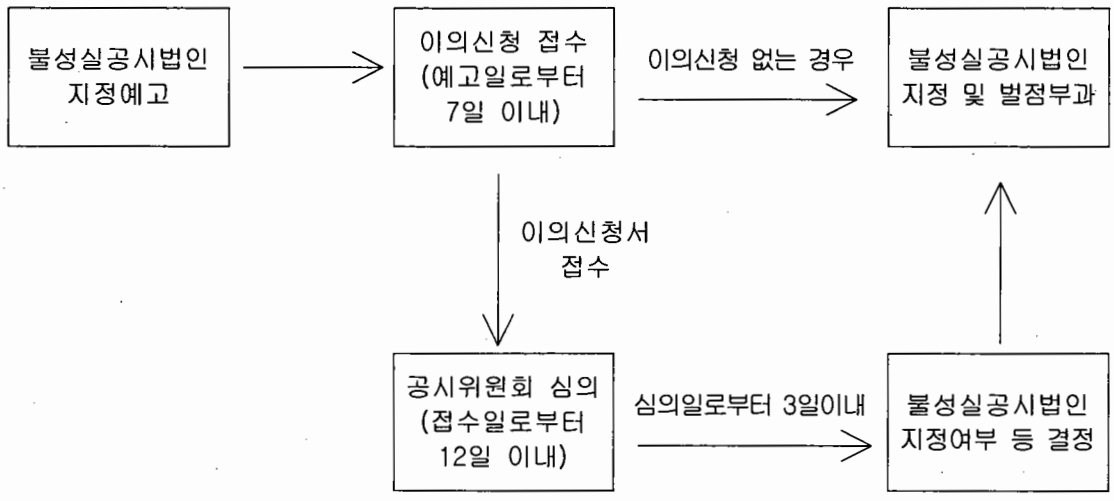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33)

○ 불성실공시 해당 사항이 발생시(정기보고서 미제출은 제외) 당해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를 예고

- 예고벌점은 예고벌점기준에 의하며, 동일 사안이 2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벌점을 예고

○ 사업보고서등과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 예고절차없이 법정제출기한 마감일익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당해 예고 사유가 「**조회공시 불이행**에 따른 예고」인 경우,

- **조회공시답변시**까지 정지(§40①1, 세칙§16③1)[단, 업무규정 §26②의 사항(부도, 영업정지, 해산 등)은 답변시점부터 **30분간 추가정지**(동세칙 §40②1)]

2. 이의신청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34 · 35)

1) 이의신청의 접수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에 대한 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당해 조치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매매일)이내 거래소에 이의

신청(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 등)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세칙 §12①)

☞ 신청법인명 및 신청일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시의무사항의 이행 경과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기간 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 마감일 익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기 예고 벌점과 동일한 벌점을 부과 및 당해 사실 공표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시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 당해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을 결정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을 결정

3.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벌점부과)되는 경우 거래소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각각 별도의 조치받음

1) 매매거래정지(§40①3)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 단, 공정공시, 자율공시, 기공시내용 변동사항의 공시의무위반 및 경미한 공시변경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벌점이 5점미만인 경우 매매정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의 공표(§36)

- 증권시장지에 지정일부터 5회 연속 당해 사실 및 경위 등 기재
- 증권시장지 및 증권정보문의단말기 등의 시세표상에 1월간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
- 전자공시 배포시스템(http://kind.sm.krx.co.kr)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정기보고서의 미제출 제외)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의 금감위 통보(§37, 법 §186③)

○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6장제2절)에서 동시에 정하고 있는 사항(공통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조회공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4)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38)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당해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거래소의 불성실공시예방교육(세칙§24①3)을 이수해야함

- 교육 미이수시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교체요구, 교체불응시에는 2점의 벌점부과[단, 당해벌점으로 관리종목지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 or 면제 가능] (§80⑤, 세칙§24④·⑤)

5)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요구(§39)

○ 부과된 벌점의 누계가 10점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1년내 누계벌점 15점 이상)되는 경우 불성실공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

- 당해 법인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매매일)에 제출

○ 제출된 개선계획서는 공시매체를 통하여 1개월간 공표되며, 미제출시 벌점 2점 부과 가능[단, 당해벌점으로 관리종목지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 or 면제 가능] (세칙 §15②)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거래법 §193, 령 §84의26 ⇒ 령 §9의3]

- ㅇ 당해 사실의 공고 및 정정 명령
- ㅇ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 ㅇ 임원의 해임권고
- ㅇ 위법내용의 공표 요구
- ㅇ 각서 징구
- ㅇ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 ㅇ 경고 또는 주의 등

※ 증권거래법상 벌칙 [법 제10장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

- ㅇ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07의3/2호)
- ㅇ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 부과(법 §206의11③·④)
  -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시의무위반에 한정
  - 수시공시·조회공시 및 사업·반기보고서 등의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

4. 벌점의 부과기준 (세칙 §13)

1) 예고벌점 부과(벌점부과기준 참조)

○ 벌점은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예고벌점을 부과

- 동일 사안이 2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벌점을 예고하여 적용

- 다만,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당시 공시의무위반 발생시점이 **3년 이상** 경과된 사안으로서 그 공시내용의 원인사유가 이미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과벌점 기준(§35②)]

① 중요내용공시(매매정지) 위반 : 8~12점
② 공정공시, 자율공시(§28②), 기공시내용 변동신고,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 위반 : 2~5점
③ 기타 일반공시(①·②제외) 위반 : 6~10점

2) 예고(부과)벌점의 조정(가중 or 경감)

○ 공시위반의 경위, 과실의 정도, 공시내용의 진실성여부 기타 사안의 경중 등 벌점가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예고된 예고벌점에 대해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벌점을 가감 또는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음

[부과벌점 조정 범위(§35③)]

① 중요내용공시(매매정지) 또는 기타 공시의무위반 : 2점 범위
② 공정·자율공시 or 기공시내용 변동신고 : 벌점부과 범위내

3) 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예고(부과)벌점 경감(§35④)

○ 성실공시법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고부과벌점의 3점 벌점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부과 가능

【성실공시법인의 기준(세칙 §13의2)】

구분	내 용
1	최근 5년 이상 공시위반사실이 없는 법인
2	최근 3년 이상 공시위반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당해법인 총 공시건수 중 자율공시의 비율이 30% 이상이고 그 공시건수가 15건 이상인 법인 · 최근 1년간 풍문·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건수가 없는 법인

<별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예고벌점기준(세칙§13)]

공시사항	불성실유형	위반 내용	벌점
① 중요공시사항	공시불이행	공시사항의 미공시	12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 이후 공시	10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	8
	공시번복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미공시	12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10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	8
	공시변경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12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10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이내 공시	8
② 일반공시사항	공시불이행	공시사항의 미공시	10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 이후 공시	8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	6
	공시번복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미공시	10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8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	6
	공시변경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10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8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이내 공시	6
③ 자율공시사항 (규정 제28조제1항)	공시번복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미공시	10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8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	6
	공시변경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10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8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이내 공시	6
④ 공정공시사항	공시불이행	공시사항의 미공시	5
		공시사항의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3
	공시번복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미공시	5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	3
	공시변경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의 미공시	5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의 공시	3
⑤ 자율공시사항 (규정 제28조제2항)	공시번복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미공시	5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	3
⑥ 경미한 내용의 변경사항	공시변경	경미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4
		경미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	2
⑦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공시불이행	기타 기공시내용 취소 또는 변경사항의 미공시	2

※ 예고벌점기준

동일 사안으로 2가지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벌점부과

i) ① 중요공시사항
- 매매거래정지대상 공시의무사항

ii) ② 일반공시사항
- 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 중 i)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시의무사항

iii) ③ 자율공시사항
- 규정 제28조제1항 및 세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

iv) ④ 공정공시사항
-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

v) ⑤ 자율공시사항
- 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

vi) ⑥ 경미한 내용의 변경사항
- 규정 제31조제2항 및 세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vii) ⑦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 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으로서 당해 공시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① 내지 ⑥의 불성실공시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viii) 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규정 제2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 제30조제2호의 규정 중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이를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풍문 등

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벌점을 부과하되, 공시불이행의 경우 "공시사항의 미공시"로 봄

ix) 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현저한 시황변동 관련)에 의한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규정 제2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불이행(불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일반공시사항 위반내용 중 "공시사항의 미공시"로 보며, 규정 제30조제3호(15일내 번복)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용의 해당공시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벌점을 부과

x) 규정 제2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확정공시 내용에 해당하는 공시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벌점을 부과하되, "공시사항의 미공시"로 봄

xi) ①중요공시사항 및 ②일반공시사항에 대한 위반내용 기준 중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의 공시시한은 규정상의 공시시한(당일 또는 익일)

xii) "미공시"는 당해 법인이 공시하지 아니한 공시의무사항을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투자자 제보 또는 관계기관의 조치 등에 따라 사후에 거래소에서 적발한 공시의무위반 사항

2. 금융권역별 민원처리 현황 (2003~2007년 상반기)

□ 권역별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은행·비은행	**38,764**	**44,890**	**36,627**	**30,246**	**15,110**
담보·보증	1,988	2,594	2,008	1,562	846
여신	7,856	12,299	11,386	6,621	2,558
예·적금	1,649	1,607	1,574	1,367	655
신용카드	20,215	17,774	9,672	5,553	2,575
신용정보	2,722	3,496	2,931	2,464	1,452
기타	4,334	7,120	9,056	12,679	7,024
보 험	**13,634**	**16,537**	**21,243**	**27,171**	**16,053**
보험모집	1824	2,975	4,944	5,944	3,903
계약성립·실효	1241	1,520	1,424	1,437	996
고지·통지의무	679	732	840	1,191	616
보험금 지급 관련	2676	3,308	3,341	4,079	2,195
보험금 산정 관련	3203	3,248	3,359	3,513	2,039
장해·상해등급 적용	1090	1,107	1,572	1,692	720
기타	2921	3,647	5,763	9,315	5,584
증권·투신	**2,702**	**2,433**	**2,051**	**2,951**	**1,526**
발행·유통시장 공시	330	431	136	146	53
회계 관련 질의	386	315	234	231	105
임의·일임매매	368	246	192	146	79
매매주문·부당권유	200	118	84	71	41
불공정거래조사	146	215	92	115	71
신탁상품·운용수익률 보장	215	88	77	98	45
기타	1,057	1,020	1,236	2,144	1,132
합계	**55,100**	**63,860**	**59,921**	**60,368**	**32,689**

주) 기타는 상담성 민원, 제도관련 질의 등

3. 금융권역별 고정이하 여신 현황(2007년 06월말 현재)
- 은행, 종금,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금융기관(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붙임1 참조"

(붙임1)

금융권역별 고정이하 여신 현황(2007년 06월말 현재)
- 은행, 종금,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금융기관

(단위:십억원)

기준년월	은행[1]		종금사[2]		상호저축은행[3]		여신전문금융회사[5]		보험회사[6]		증권회사[7]		상호금융기관[8]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2007년06월	999,520.5	7,819.6	923.9	11.6	43,039.5	3,815.9	60,681.9	1,973.3	66,365.9	1,598.3	26,858.8	1,013.8	137,993.2	2,912.2

1)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합계(은행계정+신탁계정+종금계정)
2)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합계(대출채권+사모사채+리스채권+여신성가지급금+미수금+확정지급보
3) 여신합계(대출채권+콜론+지급보증)
4) 영업정지(경북, 흥익) 제외
5) 총채권 등(건성성분류대상자산-유가증권-비여신성신기술자산-현금서비스이용한도)
6) 자산건전성분류 대상 중 대출채권
7)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의 합계(신용공여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사모사채+대지급금+부도어음+부도채권+회사채지급보증 및 자회사지급보증+대출금(종금)+할인어음(종금)+CMA운용자산(종금)
8)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

4. 보험관련 분쟁현황 및 처리 현황
5. 보험관련 합의권고 현황

□ 처리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1.~6.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생보	요청 수용	2,242	44.8	2,793	48.4	3,595	48.6	3,954	46.7	2,061	46.4
	오해 등 해명	2,515	50.3	2,748	47.6	3,565	48.2	4,149	49.0	2,207	49.6
	기 타	245	4.9	230	4.0	239	3.2	358	4.2	178	4.0
	소 계	5,002	100.0	5,771	100.0	7,399	100.0	8,461	100.0	4,446	100.0
손보	요청 수용	2,235	43.8	2,979	49.7	3,487	52.5	3,890	55.4	2,129	56.4
	오해 등 해명	2,445	48.0	2,673	44.6	2,748	41.3	2,919	41.5	1,566	41.5
	기 타	417	8.2	346	5.8	413	6.2	217	3.1	78	2.1
	소 계	5,097	100.0	5,998	100.0	6,648	100.0	7,026	100.0	3,773	100.0
합계	요청 수용	4,477	44.3	5,772	49.0	7,082	50.4	7,844	50.6	4,190	51.0
	오해 등 해명	4,960	49.1	5,421	46.1	6,313	45.0	7,068	45.6	3,773	45.8
	기 타	662	6.6	576	4.9	652	4.6	575	3.8	256	3.2
	합 계	10,099	100.0	11,769	100.0	14,047	100.0	15,487	100.0	8,219	100.0

□ 보험관련 합의권고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의권고		
	생보	손보	계
2003	2,242	2,235	4,477
2004	2,793	2,979	5,772
2005	3,595	3,487	7,082
2006	3,954	3,890	7,844
2007.1.~6.	2,061	2,129	4,190

* 합의권고는 구두 및 서면권고의 합계임.

6. 금융권역별 고정이하 여신 현황
- 은행, 종금,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붙임1 참조"

(붙임1)

(단위:십억원)

기준년월	은행[1]		종금사[2]		상호저축은행[3]		여신전문금융회사[4]		보험회사[5]		증권회사[6]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2006년12월	930,248.0	7,800.8	768.5	9.8	42,841.2	4,512.5	54,919.0	2,137.7	63,559.7	1,702.6	12,406.7	996.5
2007년06월	999,520.5	7,819.6	923.9	11.6	43,699.3	4,364.3	60,681.9	1,973.3	66,365.9	1,598.3	26,858.8	1,013.8

1)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합계(은행계정+신탁계정+종금계정)
2)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합계(대출채권+사모사채+리스채권+여신성가지급금+미수금+확정지급보증)
3) 여신합계(대출채권+콜론+지급보증)
4) 총채권 등(건성성분류대상자산-유가증권-비여신성신기술자산-현금서비스이용한도)
5) 자산건전성분류 대상 중 대출채권
6)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의 합계(신용공여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사모사채+대지급금+부도어음+부도채권 +회사채지급보증 및 자회사지급보증+대출금(종금)+할인어음(종금)+CMA운용자산(종금)+리스자산(종금)+기타)

7. 금융권역별 민원처리 결과
- 2003~2007 상반기까지 연도별 자료

□ 권역별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은행·비은행	**38,764**	**44,890**	**36,627**	**30,246**	**15,110**
담보·보증	1,988	2,594	2,008	1,562	846
여신	7,856	12,299	11,386	6,621	2,558
예·적금	1,649	1,607	1,574	1,367	655
신용카드	20,215	17,774	9,672	5,553	2,575
신용정보	2,722	3,496	2,931	2,464	1,452
기타	4,334	7,120	9,056	12,679	7,024
보 험	**13,634**	**16,537**	**21,243**	**27,171**	**16,053**
보험모집	1824	2,975	4,944	5,944	3,903
계약성립·실효	1241	1,520	1,424	1,437	996
고지·통지의무	679	732	840	1,191	616
보험금 지급 관련	2676	3,308	3,341	4,079	2,195
보험금 산정 관련	3203	3,248	3,359	3,513	2,039
장해·상해등급 적용	1090	1,107	1,572	1,692	720
기타	2921	3,647	5,763	9,315	5,584
증권·투신	**2,702**	**2,433**	**2,051**	**2,951**	**1,526**
발행·유통시장 공시	330	431	136	146	53
회계 관련 질의	386	315	234	231	105
임의·일임매매	368	246	192	146	79
매매주문·부당권유	200	118	84	71	41
불공정거래조사	146	215	92	115	71
신탁상품·운용수익률 보장	215	88	77	98	45
기타	1,057	1,020	1,236	2,144	1,132
합계	**55,100**	**63,860**	**59,921**	**60,368**	**32,689**

주) 기타는 상담성 민원, 제도관련 질의 등

채 일 병 의 원

1. 2002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별 수신 규모 및 금리 변동 현황

□ 상호저축은행 수신 규모 및 금리변동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6월	'04. 6월	'05. 6월	'06. 6월	'07. 6월
보 통 예 금	4,886	4,857	6,396	8,494	9,717
별 단 예 금	39	23	12	25	85
수 입 부 금	3,856	3,813	4,031	3,942	3,891
자유 적립 예금	260	375	640	738	862
정 기 예 금	218,842	273,195	321,269	377,707	427,114
저 축 예 금	200	201	240	272	415
기업 자유 예금	487	228	331	318	897
정 기 적 금	3,066	4,531	7,701	11,359	15,681
근로자장기저축	19	4	4	0	0
가계 장기 저축	612	9	5	2	1
근로자우대저축	2,355	2,616	2,327	1,019	572
장기주택마련저축	25	137	300	556	908
기 타 예 수 금	0	1	1	0	2
표지어음예수금	5,481	5,842	7,691	6,342	5,172
총 수 신	240,131	295,831	350,948	410,776	465,318
수신 평균 금리*	6.2	5.9	5.4	5.0	5.2

* (예수금이자 + 표지어음예수금 이자)/(총수신(평잔))

2. 2007년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 및 개수

□ 상호저축은행 소재지별 본점 및 지점 수

('07.6월말 현재)

소재지	본점	지점	합계
서울	26	58	84
인천	6	5	11
경기	18	28	46
강원	2	6	8
충북	5	5	10
대전	1	3	4
충남	5	7	12
대구	4	3	7
경북	7	5	12
전북	7	6	13
광주	5	6	11
전남	3	5	8
울산	1	1	2
경남	5	7	12
부산	12	11	23
제주	2	2	4
합계	109	158	267

※ 출장소 제외

3. 헤지펀드 도입에 관한 감독당국의 입장 / 의견

□ 정부는 제2차 금융허브회의('07.7.18.)에서 향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2012년에는 헤지펀드를 허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의 불안 증폭, 금융시스템 리스크 초래라는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제거,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통한 유동성 공급, 효과적인 대체 투자수단 제공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음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재정경제부 주도로 헤지펀드 도입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 중임을 말씀드림

4. 신용카드 발급 조건 및 절차

- **발급신청서 수령 시 발급주체 카드사에서 고지하여야 할 사항 포함**
- **발급신청자의 신용상태 파악 의무 여부 포함**

<신용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고지하여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의 신용상태 파악 의무 여부>

□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의한 개인신용한도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 시 반영할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의 존재 여부
- 연체채무가 상환 또는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 또는 변제방법

5. 외국인 투자자 국내주식 보유 현황

□ '02년 이후 외국인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주식보유 현황

(단위 : 억원, %)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9말
KOSPI	보유시가	931,607	1,425,341	1,731,577	2,602,626	2,625,335	3,241,806
	(증감)	(··)	(493,734)	(306,236)	(871,049)	(22,709)	(616,471)
	보유비율[1)]	36.0	40.1	42.0	39.7	37.3	33.3
KOSDAQ	보유시가	39,291	53,922	47,995	95,752	105,589	176,105
	(증감)	(··)	(14,631)	(Δ5,927)	(47,757)	(9,837)	(70,516)
	보유비율[1)]	10.5	14.4	15.4	13.5	14.6	16.6

주1) 상장주식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투자자 보유주식시가 비중

6.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금융감독기관 간 국제공조 현황
-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정보 교환하여 공조한 내용과 근거법 포함

□ 감독기구는 S사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2005년에 영국 감독당국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2006년에 미국 증권감독당국이 자국에서의 금융사기행위 조사와 관련, 우리 감독기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협조한 바 있습니다.

□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 교환을 위한 근거 법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6호,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로 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관 련 법 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및 「선물거래법」 제9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개정 2000.1.2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5.25>

③ 금융감독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는 외국증권감독기관이 목적·범위 등을 명시하여 이 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7. 파생상품금융 거래에 관하여
-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규모[1] 및 잔액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거래규모 (연중기준)		11,508	21,548	26,755	38,427	44,291
	장내	10,196	19,465	23,036	34,417	39,345
	장외	1,312	2,083	3,719	4,010	4,946
거래잔액 (연말기준)		544	1,022	1,299	1,726	2,628
	장내	28	30	35	48	79
	장외	516	992	1,264	1,678	2,549

주) 1. 명목금액기준 :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파생상품 만기일에 거래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액(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집계방식임)
2.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선물사, 카드사, 종금사의 거래내역

8. 파생상품금융 거래에 관하여 - 그에 관한 리스크 실태 현황 및 점검내용

□ 금융감독당국은 '03년 이후 격년으로 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

○ 점검내용은 리스크관리 조직 및 시스템, 내부통제, 한도관리, 리스크측정 및 가치평가 등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포괄

○ '07년 점검결과 점검대상 금융회사 모두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수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파생상품 전문감사인력 확보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지도

□ 아울러 금융회사의 파생상품관련 리스크관리 및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중('06.11월 제정)

* 가치평가,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등 파생상품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규모·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를 4그룹으로 분류하여 권고수준을 차별화

9. 파생상품금융 거래에 관하여
-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감독시스템 내용

□ 파생상품업무 감독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대형사고나 거액손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업무진입, 취급가능 상품종류, 거래한도, 리스크관리, 자기자본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금융권역별로 감독 및 규제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 이러한 권역별 차이는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손익 레버리지가 큰 파생상품의 특성상 거래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미흡할 경우,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시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바,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적정수준의 파생상품을 보유토록 지도

10. 2000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현황 - 분류기준,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구 분	분류기준
정 상	연체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고 정	연체 6개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연체 6개월 이상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연체 6개월 이상 (회수불능이 확실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1.6.말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07.6.말
총여신(A)	141,301	174,607	216,881	269,686	314,479	371,209	430,395
연체여신(B)	39,876	31,646	42,406	57,040	70,339	57,330	58,958
연체율(B/A)	28.2	18.1	19.6	21.2	22.4	15.4	13.7
고정이하여신(C)	30,182	21,698	24,463	33,358	48,382	39,509	38,159
고정이하비율(C/A)	21.4	12.4	11.3	12.4	15.4	10.6	8.9

11. 2000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개수 및 M&A 내역

□ 상호저축은행 연도별 개수

('07.6월말 현재)

'00.6.말	'01.6.말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07.6.말
166	125	117	115	114	112	110	109

□ 상호저축은행 M&A 내역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
합병	13	2	1	0	0	1	0	0
계약이전	14	1	0	0	0	3	1	1
경영권 이전	4	13	11	12	7	3	10	2
합계	31	16	12	12	7	7	11	3

1) '07.1.1.~'07.6.30.

12. 대부업 관련 광고심의기관, 근거규정, 광고부적합 사례(사유포함)

가. 대부업 관련 광고심의기관 및 근거규정

□ 대부업 관련 광고 심의기관 및 근거규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

○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광고심의에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담당

나. 광고 부적합 사례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내용 광고
(표시 ·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사실이 없음에도 대부광고시 허위광고

□ 금융기관과 상호 및 로고 무단 사용 광고 (상법 제23조 위반)

○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상고 및 로고 무단사용

□ 대부광고시 필수기재사항 누락(대부업법 제9조의2 위반)

○ 대부업 등록번호,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주소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

□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대부업법 제9조의2 위반)

○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광고 등에 대한 심의권한 등은 없으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금융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대부업자들의 대부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혐의가 있는 대부광고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 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음

13. 국내은행의 해외진출관련
- 해외진출에 필요한 절차
- 당국의 감독 내역/ 현황, 진출은행의 애로사항 및 지원 현황
- 현재 국내은행 해외점포수, 증감율, 국가(지역)분포

1 해외진출관련 절차

□ 국내 일반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감위와 사전협의 및 재경부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고, 타 금융권(특수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은 재경부 신고수리만으로 가능

* 제13조 (지점의 신설·이전등) [전문개정 2000.1.21] 금융기관이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거나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또는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당국의 감독 내역/ 현황, 진출은행의 애로사항 및 지원 현황

□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영업현황을 분석하여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 「Emerging Market의 은행 영업환경 및 인가제도」 책자를 발간 배포함으로써('07.3.) 은행들의 현지 인허가제도 및 관련 법제 습득을 지원하는 한편

○ 현지 감독당국의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의 인적 네크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

3 국내은행 해외진출 현황

□ '07.6말 현재 국내은행이 29개국에 114개 해외점포를 운영중

주요 국가별 해외점포 현황

(단위 : 개)

구 분	02년(비중)	07.6월(비중)	증감율(%)
북 미	19(18.4%)	15(13.2%)	△21%
미 국	18	14	
아시아	57(55.4%)	69(60.5%)	21%
중 국	12	23	
홍 콩	12	11	
일 본	13	11	
베트남	7	8	
싱가폴	6	5	
인 니	3	3	
인 도	1	2	
북 한	1	2	
유 럽	19(18.4%)	16(14.0%)	△16%
영 국	9	7	
독 일	4	4	
프랑스	1	2	
기 타	8(7.8%)	14(12.3%)	75%
브라질	2	3	
UAE	-	2	
러시아	1	2	
바레인	2	2	
합 계	103(100%)	114(100%)	11%

※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이후 활동내역 및 운영현황'은 '07.8.14. 채의원님 보좌관실과의 통화를 거쳐 질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음.

14. 상호저축은행 관련(2002년 이후)

○ 상호저축은행의 PF 관련

- 연도별 PF여신 규모, 증감율, 전체여신대비 비율
- 각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 상호저축은행 PF대출 규모, 증감율, 전체여신대비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3.6.말	'04.6.말	'05.6.말	'06.6.말	'07.6.말
총여신(A)	216,881	269,686	314,479	371,209	430,395
PF대출(B)	9,481	26,302	40,262	82,496	123,641
PF대출비중(A/B)	4.4	9.8	12.8	22.2	28.7
전년대비 PF대출 증감율	-	177.4	53.1	104.9	49.9
PF대출 대손충당금(C)	N.A	N.A	1,206	2,201	7,467
PF대출 고정이하여신(D)	331	2,305	2,769	2,557	7,411
Coverage Ratio(C/D)	N.A	N.A	43.6	86.1	100.7

* 각 기준 시점별 영업정지 저축은행 제외

황 우 여 의 원

1.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연도별 외국인 지분율 변동 추이

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변동 추이

은행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한	49.36	0*	0*	0*	0*	0*	0*
우리	0	0*	0*	0*	0*	0*	0*
SC제일	50.99	50.99	50.99	48.56	48.6	100.0	100.0
하나	32.17	52.14	28.71	43.16	68.3	0*	0*
외환	33.50	33.53	33.53	71.04	68.3	73.24	76.0
한국씨티	61.49	53.22	66.39	89.59	99.9	99.9	99.9
국민	58.15	71.11	70.23	73.56	76.1	85.68	82.88
대구	0.786	3.77	20.13	31.31	55.8	57.76	66.56
부산	7.02	10.64	12.04	38.46	59.2	60.21	56.06
광주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04	0.12	0.11
전북	0.05	0.05	0.10	0.25	12.1	29.08	28.12
경남	0	0*	0*	0*	0*	0*	0*

* 지주회사가 100% 주식 보유

2.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자산 기준 외국계 은행의 연도별 은행산업 시장점유 추이

"붙임1 참조"

(붙임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자산 기준 외국계 은행의 연도별 은행산업 시장점유 추이

(단위:억원)

금융회사명	2000년12월	2001년12월	2002년12월	2003년12월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06월
은행전체계	8,023,672	8,660,892	9,748,745	10,891,054	11,280,186	11,990,288	13,709,288	15,070,834
외국계 은행 계	1,521,307	1,586,044	1,899,567	2,327,550	2,522,763	2,475,201	2,816,621	3,230,56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254,526	264,917	322,313	394,807	417,127	573,852	568,258	562,357
한국외환은행	445,452	484,289	558,476	609,633	602,380	638,609	677,970	714,329
한국씨티은행	281,688	284,147	370,974	430,012	521,414	453,450	481,771	507,993
외은지점 계	539,642	552,690	647,803	893,098	981,842	809,290	1,088,622	1,445,887

* 은행계정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기준

3.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시중은행들의 연도별 배당금액, 외국인에 대한 배당액 변동 추이

□ 붙임 참조

(붙 임)

금융기관별 배당현황(2002.1~2006.12월)

(단위 : %, 백만원)

은행명	연도	배당액	배당시기	외국인지분율 (배당일기준)	외국인배당액
국민은행	2002	325,233	2003.3	69.93	227,435
	2003	-	-	73.26	-
	2004	168,574	2005.3	76.13	128,335
	2005	184,889	2006.3	85.53	158,136
	2006	1,227,784	2007.3	82.69	1,015,255

금융기관별 배당현황(2002.1~2006.12월)

(단위 : %, 백만원)

은행명	연도	배당액	배당시기	외국인지분율	외국인배당액
신한은행	2002	183,473	2003년 3월말	0	0
	2003	244,807	2004년 3월말	0	0
	2004	367,210	2005년 3월말	0	0
	2005	428,412	2006년 3월말	0	0
	2006	301,123	2007년 3월말	0	0

* 신한은행의 지분은 신한금융지주에서 100% 보유

(붙 임)

금융기관별 배당현황(2002.1~2006.12월)

(단위 : %, 백만원)

금융 회사명	연도	배당액	배당시기	외국인지분율	외국인배당액
우리은행	2002	138,220	2003년 4월	0	0
	2003	239,638	2004년 3월	0	0
		400,017	2004년 9월	0	0
	2004	0	해당없음	0	0
	2005	592,712	2006년 3월	0	0
	2006	424,819	2007년 3월	0	0

* 우리은행의 지분은 우리금융지주에서 100% 보유

배당현황(2002.1~2006.12월)

(단위 : %, 백만원)

은행명	연도	배당액	배당시기[1)]	외국인지분율	외국인배당액
하나은행	2002	86,068	2003-03-28	28.7%	24,702
	2003	84,963	2004-03-26	37.1%	31,521
	2004	131,810	2005-03-28	66.9%	88,181
	2005	65,594	2005-07-29	-	-
	2006	234,688	2006-09-08	-	-

2) 당행은 2005년 12월 1일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배당현황(2002.1~2006.12월)

(단위 : %, 백만원)

은행명	연도	배당액	배당시기	외국인지분율	외국인배당액
외환은행	2002	해당사항없음			
	2003	해당사항없음			
	2004	해당사항없음			
	2005	해당사항없음			
	2006	644,907	2007-04-11	76.93%	496,127

배당현황(2002.1~2006.12월)

(단위 : %, 백만원)

은행명	연도	배당액	배당시기	외국인지분율	외국인배당액
SC제일은행	2002	해당사항없음			
	2003				
	2004				
	2005				
	2006				

배당현황(2002.1~2006.12월)

(단위 : %, 백만원)

은행명	연도	배당액	배당시기	외국인지분율	외국인배당액
(주)한국씨티은행	2002	76,724	2003.3.21	61.13%	49,997
	2003	30,671	2004.2.18	86.26%	27,128
	2004	무배당	무배당	99.87%	무배당
	2005	91,666	2006.3.29	99.95%	91,616
	2006	65,493	2007.3.28	99.95%	65,461

4. 외국인 투자자 주식보유 비중 추이

□ '98년 이후 외국인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주식보유 비중 추이

(단위 : %)

외국인 보유비중	'98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9말
KOSPI	19.6	21.9	30.1	36.6	36.0	40.1	42.0	39.7	37.3	33.3
KOSDAQ	3.4	7.5	7.0	10.4	10.5	14.4	15.4	13.5	14.6	16.6

주1) 상장주식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투자자 보유주식시가 비중

5.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율 현황

□ '98년 이후 시가총액 상위 10개사('06말 기준) 주식의 외국인 보유비중 변동 추이

(단위 : %)

	기업명	'98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9말
1	삼성전자	47.2	47.1	54.2	59.6	53.9	57.3	54.1	53.8	49.1	48.5
2	한국전력	19.9	22.4	26.1	26.6	25.0	28.9	30.5	30.0	29.3	28.9
3	POSCO	30.0	30.0	49.0	62.0	61.6	66.7	69.3	67.9	62.3	53.6
4	SK텔레콤	33.0	31.7	33.8	32.4	39.2	47.0	48.4	49.0	47.7	49.0
5	하이닉스	3.5	11.4	35.6	8.0	0.8	1.0	5.5	18.8	21.0	22.5
6	현대차	24.5	29.9	41.0	52.8	47.2	51.3	55.8	45.1	40.8	36.9
7	KT	0.0	5.0	19.4	37.2	41.7	45.4	49.0	46.3	47.6	47.1
8	롯데쇼핑	–	–	–	–	–	–	–	–	22.6	20.7
9	신세계	21.7	24.4	39.3	53.4	48.8	48.9	50.8	45.9	45.8	41.2
10	LG필립스LCD	–	–	–	–	–	–	52.2	54.0	52.0	46.2

6. 각 시도별 대부업자 관리 현황(관리부서, 관리자 직급, 관리 인원 등)

□ 본 자료는 각 시·도에 협조요청하여 입수한 대부업 관련 업무 수행 인원을 단순 집계한 것임

○ 현재, 대부업 관리·감독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없다고 함

※ 붙임 : <시·도 대부업자 관리인원 현황>

<붙임>

시·도 대부업자 관리인원 현황

('07. 9월)

구 분	관리부서	관리인원	관리자 직급	비 고
서 울	생활경제과	특별시청 6명	5급(1), 6급(1), 7급(2), 8급(1), 9급(1)	-
부 산	경제정책과	광역시청 2명	7급(2)	-
대 구	산업지원기계금속과	광역시청 2명	7급(2)	-
인 천	경제정책과	광역시청 1명	9급	군, 구위임
		10개 구, 군 각 1명	7~9급	-
광 주	경제정책과	광역시청 1명	7급	구 위임
		5개 구 각 1명	7, 8, 9급	-
대 전	경제정책과	광역시청 2명	7급(1), 9급(1)	-
울 산	경제정책과	광역시청 1명	7급	-
경 기	지역경제과	경기1·2청 각 1명	7급(1), 8급(1)	시, 군 위임
		31개 시, 군 각 1명	7~9급	
강 원	경제정책과	도청 1명	7급	-
충 남	경제정책과	도청 1명	6급	시, 군 위임
		16개 시, 군 각 1명	7급	-
충 북	경제과	도청 1명	7급	시, 군 위임
		12개 시, 군 각 1명	7 ~ 9급	-
전 남	경제정책과	도청 1명	8급	시, 군 위임
		22개 시, 군 각 1명	7 ~ 8급	-
전 북	민생경제과	도청 1명	7급	시, 군 위임
		14개 시, 군 각 1명	7 ~ 9급	-
경 북	경제기획팀	도청 1명	8급	-
경 남	경제정책과	도청 1명	7급	시, 군 위임
		20개 시, 군 각 1명(양산시 2명)	7 ~ 8급	-
제 주	경제정책과	도청 1명	7급	시 위임
		2개 시 각 1명	7급	-
16개 시, 도 총 계	-	**총 158명**	**9개 지자체 하부 위임**	-

7. 금감위의 과징금부과와 관련하여

가. 과징금 부과의 법적근거

나. 2004년부터 2007. 8월까지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 등)

다. 위 기간동안 금감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현황(제기일시, 제기자, 이의 내지 소송결과 등)

가. 과징금 부과의 법적근거

종 류	근 거 법 령	비 고
과징금	(1)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2) 은행법 제65조의3	
	(3) 보험업법 제196조	
	(4)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6)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나. 2004년부터 2007. 8월까지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 등)

⇒ 붙임 자료

다. 위 기간동안 금감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현황(제기일시, 제기자, 이의 내지 소송결과 등)

□ 이의제기 현황

제기일시	제기자	이의결과	비고
04년 1월	(주)휴닉스	기각	공시관련
04년 1월	(주)미디어솔루션	기각	공시관련
04년 2월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기각	공시관련
04년 2월	(주)신한SIT	기각	회계관련
04년 10월	삼일회계법인	기각	회계관련
04년 10월	삼일회계법인	기각	회계관련
05년 1월	(주)동아정기	기각	공시관련
05년 1월	(주)대륜	기각	회계관련
05년 5월	(주)모나미	자체 취하	공시관련
05년 9월	(주)아세아조인트	기각	공시관련
05년 12월	플래닛팔이(주)	기각	회계관련
07년 1월	벅스인터랙티브(주)	기각	회계관련
07년 2월	(주)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	기각	공시관련
07년 6월	(주)조이토토	기각	공시관련

□ 행정소송 제기 현황

업 체 명(원고)	부과금액(원)	부과일	소제기일	소송 결과
(주)페이지원	43,575,000	'02. 1.25	'02. 3.22	금감위 승소

(주)에이디칩스	863,800,000	'02. 8.30	'03. 7. 8	**금감위 패소**
(주)씨모스	200,000,000	'03. 6.25	'03.11.28	원고 소취하
(주)포커스	245,400,000	'03. 6.27	'03. 9.29	〃
(주)화인썬트로닉스	166,500,000	'03. 9. 3	'04. 2.24	〃
삼일회계법인	770,400,000	'04.10.01	'05. 2.25	**대법원 파기환송**
(주)동아정기	73,900,000	'04.12.23	'05. 3.24	금감위 승소
삼일회계법인	394,500,000	'04.12.28	'04.12.29	**대법원 파기환송**
플래닛팔이(주)	600,700,000	'05.11.14	'06. 4.11	**항소심 계류중**

(붙 임)

부과일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여부
2004-01-30	신○○	63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미납
2004-01-30	박○○	10,000,000	〃	납부
2004-01-30	조○○	30,000,000	〃	미납
2004-01-30	동○○	939,400,000	〃	〃
2004-02-16	실○○	87,300,000	〃	납부
2004-02-16	옌○○	137,300,000	〃	〃
2004-03-04	신○○	46,100,000	〃	〃
2004-03-04	와○○	22,600,000	〃	〃
2004-03-04	룸○○	183,800,000	〃	〃
2004-03-04	피○○	38,800,000	〃	〃
2004-03-10	마○○	43,100,000	〃	〃
2004-03-15	경○○	10,000,000	〃	미납
2004-03-15	대○○	10,000,000	〃	납부
2004-03-15	세○○	30,000,000	〃	〃
2004-03-15	티○○	169,700,000	〃	〃
2004-03-15	제○○	361,300,000	〃	〃
2004-04-16	티○○	217,521,000	〃	〃
2004-04-16	이○○	163,400,000	〃	〃
2004-04-16	아○○	180,300,000	〃	〃
2004-04-16	비○○	263,900,000	〃	〃
2004-04-29	앤○○	185,600,000	〃	미납
2004-05-04	텔○○	454,123,690	〃	〃
2004-05-27	시○○	21,000,000	〃	납부
2004-05-27	두○○	30,900,000	〃	〃
2004-05-27	세○○	87,500,000	〃	〃
2004-05-27	리○○	30,000,000	〃	〃
2004-05-27	한○○	68,600,000	〃	〃
2004-05-29	싸○○	10,000,000	〃	〃
2004-05-29	노○○	10,000,000	〃	〃
2004-07-21	김○○	35,100,000	〃	〃
2004-07-21	기○○	70,200,000	〃	〃
2004-07-22	나○○	12,000,000	〃	〃
2004-07-22	쌍○○	16,000,000	〃	〃
2004-07-22	디○○	30,000,000	〃	〃
2004-07-22	이○○	12,000,000	〃	〃
2004-07-22	오○○	20,000,000	〃	〃
2004-07-22	넥○○	134,700,000	〃	〃
2004-07-23	골○○	10,000,000	〃	〃
2004-08-27	위○○	10,800,000	〃	〃
2004-08-27	한○○	47,300,000	〃	〃
2004-08-27	예○○	127,800,000	〃	〃
2004-08-27	문○○	20,000,000	〃	미납
2004-08-27	에○○	119,800,000	〃	납부
2004-08-27	정○○	30,000,000	〃	미납
2004-08-27	신○○	216,000,000	〃	〃
2004-08-27	해○○	106,700,000	〃	납부
2004-08-30	L○○	5,000,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2004-09-06	금○○	1,762,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4-09-16	국○○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4-09-30	아○○	4,5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4-09-30	신○○	3,700,000	〃	〃
2004-09-30	흥○○	828,300,000	〃	〃
2004-10-01	삼○○	77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4-10-01	하○○	2,000,000,000	〃	〃
2004-10-06	프○○	10,000,000	은행법 위반	〃
2004-10-20	하○○	11,700,000	〃	〃
2004-10-28	한○○	17,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부과일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여부
2004-10-28	금○○	12,000,000	〃	〃
2004-10-28	동○○	18,000,000	〃	〃
2004-10-28	무○○	18,000,000	〃	〃
2004-10-28	쓰○○	30,000,000	〃	〃
2004-10-28	고○○	30,000,000	〃	미납
2004-10-28	대○○	95,900,000	〃	납부
2004-11-01	뉴○○	47,600,000	〃	〃
2004-11-01	김○○	30,000,000	〃	〃
2004-11-01	엔○○	321,200,000	〃	미납
2004-11-01	드○○	150,000,000	〃	납부
2004-11-01	한○○	107,400,000	〃	〃
2004-11-03	네○○	5,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4-11-23	김○○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미납
2004-11-30	비○○	5,000,000	보험업법 위반	납부
2004-12-09	국○○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4-12-09	바○○	27,000,000	〃	미납
2004-12-09	태○○	80,400,000	〃	납부
2004-12-13	코○○	53,100,000	〃	〃
2004-12-13	김○○	10,000,000	〃	〃
2004-12-17	동○○	1,257,200,000	〃	〃
2004-12-17	동○○	1,616,800,000	〃	〃
2004-12-23	동○○	73,900,000	〃	미납
2004-12-28	현○○	2,000,000,000	〃	납부
2004-12-28	사○○	231,000,000	〃	〃
2004-12-28	엠○○	105,000,000	〃	〃
2004-12-28	삼○○	394,500,000	〃	〃
2004-12-28	장○○	10,000,000	〃	〃
2004-12-28	노○○	20,000,000	〃	〃
2005-01-24	동○○	5,000,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2005-01-24	동○○	100,000,000	〃	〃
2005-02-07	마○○	79,800,000	〃	〃
2005-02-28	조○○	10,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5-02-28	중○○	10,000,000	〃	〃
2005-02-28	국○○	10,000,000	〃	〃
2005-02-28	한○○	10,000,000	〃	〃
2005-02-28	한○○	10,000,000	〃	〃
2005-02-28	신○○	10,000,000	〃	〃
2005-02-28	우○○	10,000,000	〃	〃
2005-02-28	하○○	10,000,000	〃	〃
2005-02-28	조○○	5,000,000	〃	〃
2005-02-28	유○○	5,000,000	〃	〃
2005-02-28	삼○○	10,000,000	〃	〃
2005-02-28	동○○	10,000,000	〃	〃
2005-02-28	동○○	2,935,000,000	〃	〃
2005-03-25	영○○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5-03-25	신○○	24,000,000	〃	〃
2005-03-25	유○○	24,000,000	〃	〃
2005-03-25	아○○	24,000,000	〃	〃
2005-03-25	성○○	30,000,000	〃	〃
2005-03-25	세○○	48,600,000	〃	〃
2005-03-25	대○○	51,200,000	〃	미납
2005-03-25	아○○	149,100,000	〃	납부
2005-04-11	A○○	10,000,000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
2005-04-11	슈○○	10,000,000	〃	〃
2005-04-21	네○○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5-04-21	영○○	12,000,000	〃	〃
2005-04-21	제○○	30,000,000	〃	〃
2005-04-21	포○○	105,600,000	〃	〃

부과일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여부
2005-04-21	모○○	114,200,000	〃	〃
2005-04-21	이○○	169,000,000	〃	〃
2005-04-25	코○○	10,000,000	〃	〃
2005-05-16	삼○○	95,500,000	〃	〃
2005-05-26	대○○	69,200,000	〃	〃
2005-05-26	한○○	6,000,000	〃	〃
2005-05-26	파○○	12,000,000	〃	〃
2005-05-26	백○○	12,000,000	〃	〃
2005-05-26	신○○	18,000,000	〃	〃
2005-05-26	현○○	18,000,000	〃	미납
2005-05-26	한○○	18,000,000	〃	납부
2005-05-26	베○○	21,400,000	〃	미납
2005-05-26	와○○	24,000,000	〃	납부
2005-05-26	한○○	250,300,000	〃	〃
2005-06-22	대○○	24,600,000	〃	〃
2005-06-22	신○○	68,300,000	〃	미납
2005-07-11	월○○	5,000,000	보험업법 위반	납부
2005-07-11	피○○	5,000,000	〃	〃
2005-07-11	제○○	5,000,000	〃	〃
2005-07-11	에○○	5,000,000	〃	〃
2005-07-11	코○○	5,000,000	〃	〃
2005-07-11	마○○	10,000,000	〃	〃
2005-07-11	넥○○	5,000,000	〃	〃
2005-07-11	지○○	5,000,000	〃	미납
2005-07-11	코○○	5,000,000	〃	납부
2005-07-11	아○○	5,000,000	〃	〃
2005-07-11	두○○	5,000,000	〃	〃
2005-08-25	천○○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5-08-25	에○○	6,000,000	〃	〃
2005-08-25	시○○	6,000,000	〃	〃
2005-08-25	벽○○	6,000,000	〃	〃
2005-08-25	아○○	18,000,000	〃	〃
2005-08-25	아○○	21,000,000	〃	〃
2005-08-25	김○○	12,000,000	〃	〃
2005-08-25	김○○	12,000,000	〃	〃
2005-08-25	케○○	56,700,000	〃	〃
2005-08-25	우○○	110,100,000	〃	〃
2005-09-09	강○○	30,000,000	〃	〃
2005-09-09	제○○	112,800,000	〃	〃
2005-09-30	아○○	10,000,000	〃	미납
2005-09-30	에○○	12,000,000	〃	납부
2005-09-30	대○○	14,500,000	〃	〃
2005-10-14	메○○	5,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5-10-31	유○○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5-10-31	벨○○	24,000,000	〃	〃
2005-11-14	그○○	10,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5-11-14	그○○	302,000,000	〃	〃
2005-11-14	플○○	60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5-11-24	한○○	181,800,000	〃	미납
2005-12-23	한○○	5,000,000	보험업법 위반	납부
2005-12-23	한○○	5,000,000	〃	〃
2005-12-23	지○○	5,000,000	〃	〃
2005-12-23	이○○	5,000,000	〃	미납
2005-12-23	교○○	47,000,000	〃	납부
2005-12-23	인○○	5,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5-12-23	한○○	3,000,000	〃	〃
2005-12-23	알○○	30,400,000	〃	〃
2005-12-23	엘○○	37,100,000	〃	〃

부과일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여부
2005-12-23	인○○	39,500,000	〃	〃
2005-12-23	최○○	30,000,000	〃	미납
2005-12-23	대○○	130,400,000	〃	납부
2005-12-26	세○○	26,500,000	〃	〃
2005-12-26	울○○	301,200,000	〃	〃
2005-12-26	삼○○	108,000,000	〃	〃
2005-12-26	김○○	50,000,000	〃	〃
2005-12-26	우○○	1,035,000,000	〃	〃
2006-01-20	이○○	5,000,000	보험업법 위반	납부
2006-02-09	오○○	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6-03-10	씨○○	1,222,700,000	〃	미납
2006-03-10	미○○	5,000,000	보험업법 위반	납부
2006-03-10	아○○	5,000,000	〃	〃
2006-05-12	박○○	5,000,000	〃	〃
2006-05-15	골○○	159,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6-05-15	세○○	41,900,000	〃	〃
2006-05-15	대○○	2,000,000,000	〃	〃
2006-05-15	이○○	10,000,000	〃	〃
2006-05-15	남○○	720,000,000	〃	〃
2006-06-09	메○○	64,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6-06-09	동○○	83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6-06-22	무○○	10,300,000	〃	〃
2006-06-22	케○○	18,000,000	〃	〃
2006-06-22	넥○○	23,800,000	〃	〃
2006-06-22	아○○	37,900,000	〃	〃
2006-06-22	시○○	39,800,000	〃	〃
2006-06-22	코○○	76,900,000	〃	〃
2006-06-22	성○○	268,100,000	〃	〃
2006-08-24	넷○○	11,300,000	〃	〃
2006-08-24	젠○○	21,400,000	〃	〃
2006-08-28	김○○	2,5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6-08-28	트○○	5,000,000	〃	〃
2006-08-28	L○○	33,000,000	〃	〃
2006-08-28	L○○	10,000,000	〃	〃
2006-09-11	마○○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6-09-28	인○○	96,100,000	〃	〃
2006-10-30	대○○	7,5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6-10-30	동○○	10,000,000	〃	〃
2006-12-11	현○○	10,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6-12-11	뮌○○	2,500,000	〃	〃
2006-11-09	신○○	25,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6-11-09	터○○	500,000,000	〃	〃
2006-11-09	한○○	30,000,000	〃	〃
2006-11-23	에○○	360,000,000	〃	〃
2006-12-08	아○○	231,000,000	〃	〃
2006-12-08	두○○	2,000,000,000	〃	〃
2006-12-08	벅○○	1,112,700,000	〃	〃
2006-12-22	에○○	64,300,000	〃	〃
2006-12-22	서○○	52,800,000	〃	〃
2006-12-22	신○○	36,000,000	〃	〃
2007-02-05	에○○	10,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7-02-02	에○○	247,400,000	〃	〃
2007-02-15	큐○○	254,500,000	〃	〃
2007-02-15	코○○	252,800,000	〃	〃
2007-02-15	세○○	245,700,000	〃	〃
2007-02-15	김○○	12,000,000	〃	〃
2007-02-15	티○○	129,100,000	〃	〃
2007-03-16	키○○	50,000,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부과일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여부
2007-03-19	멘○○	5,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7-03-19	완○○	5,000,000	〃	〃
2007-03-19	케○○	5,000,000	〃	미납
2007-04-02	알○○	10,000,000	〃	납부
2007-04-02	양○○	5,000,000	〃	〃
2007-04-02	김○○	5,000,000	〃	〃
2007-04-02	박○○	5,000,000	〃	〃
2007-04-02	손○○	5,000,000	〃	〃
2007-04-02	구○○	5,000,000	〃	〃
2007-04-02	이○○	5,000,000	〃	〃
2007-04-02	강○○	5,000,000	〃	〃
2007-04-02	천○○	5,000,000	〃	〃
2007-04-02	최○○	5,000,000	〃	〃
2007-03-19	키○○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7-03-19	케○○	5,500,000	〃	〃
2007-03-30	씨○○	449,200,000	〃	〃
2007-04-02	알○○	182,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7-04-13	큐○○	25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7-05-15	서○○	645,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7-05-28	솔○○	17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7-05-28	조○○	96,000,000	〃	미납
2007-05-28	큐○○	23,400,000	〃	납부
2007-05-28	우○○	23,800,000	〃	〃
2007-06-22	롯○○	156,500,000	〃	〃
2007-06-22	케○○	72,000,000	〃	〃
2007-06-22	오○○	148,500,000	〃	〃
2007-08-27	세○○	359,900,000	〃	기일미도래
2007-08-27	삼○○	200,000,000	〃	〃
2007-08-27	고○○	2,000,000,000	〃	〃
2007-08-27	나○○	6,000,000	〃	〃
2007-08-27	모○○	50,000,000	〃	〃
2007-08-27	모○○	67,800,000	〃	〃
2007-08-27	티○○	89,200,000	〃	〃
2007-08-27	한○○	12,000,000	〃	〃
2007-08-27	교○○	249,000,000	보험업법 위반	〃
2007-08-27	국○○	10,000,000	〃	〃
2007-08-27	린○○	2,500,000	〃	〃

2007년 8월 현재

8.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은행 등 금융산업에 미치는 효과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업의 **"업무영역"과**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이 획기적으로 확대**됨으로서

○ 우리 **자본시장**은 첨단 금융상품과 혁신적 금융기법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금융혁신의 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금융 혁신은 **금융산업간 경쟁의 촉진** 등을 통해 **금융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더 작은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으며

○ 기업들도 보다 편리하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9.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금지를 우회하여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현재 **엄격한 소유 제한***이 있음

* 비금융주력자 4%(은행법§16의2), 동일인 주식소유 10%(은행법§15)

10. 자통법 시행 이후 삼성증권이 우리 금융산업을 독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 및 자통법 이후 삼성증권의 금융시장점유율 예상 변동 추이?

□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임

□ 또한, 통합법이 개별 **금융회사의 경쟁구도, 수익성 등 경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 시점에 예단하기 어려우며,**

○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함

11.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가. 금산분리 문제에 관한 금감위의 입장
나. 최근 5년간 작성된 금산분리 문제에 관한 내부 또는 외부 용역보고서 목록 일체(작성기관, 제목, 요약된 내용 등 포함)
다. 금산분리 관련 법규 일체

가. 금산분리 문제에 관한 금감위의 입장

□ 금산분리는 금산결합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예 : 부당자금지원, 기업구조조정 곤란 등)을 고려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음

나. 최근 5년간 작성된 금산분리 문제에 관한 내부 또는 외부 용역보고서 목록 일체(작성기관, 제목, 요약된 내용 등 포함)

□ 별도첨부 : 재경부에서 발주하여 금융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06.12)

다. 금산분리 관련 법규 일체

□ 별도첨부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2006. 12

— 目　次 —

< 要 約 >

I. 서 론 ····

II. 주요 선진은행과 산업자본과의 관계

1. 각국의 제도 현황

가. 우리나라 ····

나. 미국 ···

다. 일본

라. 영국

마. 독일

바.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

사. EC Second Banking Directive

아. 기타 국가들

2. 산업자본의 주요 선진은행 소유 현황

가. 총괄 분석 ···

나. 국가별 분석

3. 주요 선진은행의 산업자본 소유 현황

III. 주요 보험회사와 산업자본과의 관계

1. 각국의 제도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우리나라

2. 산업자본의 주요 선진보험사 소유 현황

가. 총괄 분석
나. 국가별 분석
3. 주요 보험회사의 산업자본 소유 현황

IV. 주요 선진국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 영국
2. 미국

<참고문헌>

- 表 目 次 -

<표 Ⅱ-1> 주요 국가들의 산업자본-금융자본간 결합규제
<표 Ⅱ-2> 국가별 세계 100대 은행 보유 수
<표 Ⅱ-3> 세계 100대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분포
<표 Ⅱ-4> 세계 100대 은행 개별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별 분포
<표 Ⅱ-5> 세계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 지분의 합계가 10% 이상인 은행의 국가 분포
<표 Ⅱ-6> 국가별 세계 100대 은행의 산업자본 회사 보유 현황
<표 Ⅲ-1>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표 Ⅲ-2> 일본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표 Ⅲ-3> 세계 100대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분포

<표 Ⅲ-4> 세계 100대 보험사 개별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별 분포
<표 Ⅲ-5> 산업자본의 국가별 소유지분합 분포
<표 Ⅲ-6> 상위 5개사에 대한 산업자본 주주 지분율
<표 Ⅲ-7> 국가별 세계 100대 보험사 보유 수 및 산업자본 주주 수
<표 Ⅲ-8> 세계 100대 보험사의 관계회사 현황
<표 Ⅲ-9> 국가별 보험사의 산업자본 종속회사 현황
<표 Ⅳ-1> FSA가 분류한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
<표 Ⅳ-2> 한국과 영국의 적격성심사 제도 비교
<부표 1> 세계 100대 은행의 산업자본 주주 현황
<부표 2> 세계 100대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현황
<부표 3> 세계 100대 보험사의 주주 현황
<부표 4> 세계 100대 보험사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현황

— 그 림 目 次 —

<그림 Ⅱ-1> GE 및 삼성그룹의 출자구조

<그림 Ⅱ-2> 세계 100대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분포

<그림 Ⅱ-3> 세계 100대 은행 개별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별 분포

<그림 Ⅱ-4> 세계 100대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 지분 합계 분포

<그림 Ⅲ-1> 세계 100대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 지분 분포

<그림 Ⅲ-2> 세계 100대 보험사 개별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별 분포

<그림 Ⅲ-3> 세계 100대 보험사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합계 분포

<그림 Ⅲ-4> 세계 100대 보험사별 산업자본 지분율 분포

I. 서 론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업무 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 약화,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폐단이 상존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이 약화

○ 또한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 야기

□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은 법·제도 등을 통해 특히 은행에 있어서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왔으며 우리 정부도 은행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오고 있음.

○ 재경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음.

□ 이처럼 여러 선진국에서 법과 제도 등에 금산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세계 주요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분구조 및 이들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선진 금융회사들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진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업 허가시 어떠한 방식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금산분리를 구현하고 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

□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은행과 산업자본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 볼 것임.

○ 세계 100대 은행 등 주요 선진은행에 대한 지분구조 파악을 통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현황 조사

○ 주요 선진은행의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을 통해 이들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현황 조사

□ 또한 본고는 세계적인 보험회사와 산업자본과의 관계도 조사해 보려고 함.

○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주요 주주현황 파악을 통해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 세계적인 제2금융권 기관(특히, 보험사)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현황 조사

□ 한편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영국 등)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임.

II. 주요 선진은행과 산업자본과의 관계

1. 각국의 제도 현황

가. 우리나라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

○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 : 금융지주회사(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

○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5호 :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이러한 조항들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에 의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규율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우리나라 금융법상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이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없음.

○ 은행법 제16조의 2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 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보유 할 수 없고(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보유 가능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 :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4%초과 10%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제한

3)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로 규율

○ 은행(은행법 제37조)과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도 제한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 2)"을 만들어 실천해 가고 있음.

○ 동 로드맵에서는 1)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거래의 투명성 확보), 2)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3)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4)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5)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6)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7)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등 7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

○ 동 로드맵의 내용 중 법개정이 필요 없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되었음.

나. 미국

□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음.

○ 즉 이 당시에는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에서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글래스-스티갈 법 20조(Section 20 of Glass-Steagall Act)에 의해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principally engaged) 기업은 회원은행(member bank)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규정이 있었을 뿐임.

○ 또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은 기업이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미국 역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많이 있었음.

○ 1799년 뉴욕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맨하탄사(Manhattan Company)가 맨하탄사 은행(Bank of Manhattan Company)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1954년에는 트랜스아메리카사(Transamerica Corporation)가 서부 5개 주에서 은행을 지배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1933년 글래스-스티갈 법(Glass-Steagall Act) 그리고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미국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원칙이 확실하게 자리잡기 시작하였음.

○ 먼저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갈 법 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가 명시됨으로써 은행과 산업의 결합 소지가 제거되었음.

○ 즉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게

된 것임.

○ 또한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 1999년 제정된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화를 허용함으로써 글래스-스티갈 법이 천명하였던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산업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방지 원칙은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음[1)2)].

1) BHCA에서의 산업과 금융의 분리

□ 1956년 BHCA 도입 이후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면 이 기업은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 BHC)가 되는데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은행 지배를 불가능하게 함.

○ 1956년 도입된 BHCA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한 개의 은행만 지배하는 회사가 많이 설립되었으나 1970년 법 수정으로 이러한 허점 보강

---

1)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하에서도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가 일반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기업의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 소유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2) 한편 최근 월마트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법 및 은행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미국 은산분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는 ILC(Industrial Loan Company) 인수를 추진하자 FRB의 버낸키(Bernanke) 의장이 국회답변을 통해 은산분리는 미국 금융정책의 원칙인데 ILC와 같은 법의 허점(loophole)이 있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국회가 ILC관련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 BHCA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12 U.S.C. §1841 (a)(2))

○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

○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지배

○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FRB가 결정하는 경우

* 다만,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을 지배한다고 보지 않음(12 U.S.C. §1841 (a)(3)).

원문 : § 1841. Definitions

(a)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5) of this subsection, "bank holding company" means any company which has control over any bank or over any company that is or becomes a bank holding company by virtue of this chapter.

(2) Any company has control over a bank or over any company if

(A) the company directly or indirectly or acting through one or more other persons owns, controls, or has power to vote 25 per centum or more of any class of voting securities of the bank or company;

(B) the company controls in any manner the election of a majority of the directors or trustees of the bank or company; or

(C) the Board determines,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 that the company directly or indirectly exercises a controlling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or policies of the bank or company.

(3)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 under paragraph (2)(C) of this subsection, there is a presumption that any compan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owns, controls, or has power to vote less than 5 per centum of any class of voting securities of a given bank or company does not have control over that bank or company.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설립 2년 후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하며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금지(12 U.S.C. §1843 (a) (1)(2), 12 U.S.C. §1843 (c)(8))

○ 은행지주회사는 설립 이후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롭게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음.

○ 은행지주회사가 된 2년 이후부터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지배를 유지해서는 안 되고, 은행업이나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해서도 안됨.

원문 : § 1843. Interests in nonbanking organizations

(a) Ownership or control of voting shares of any company not a bank; engagement in activities other than banking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no bank holding company shall

(1) after May 9, 1956, acquir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r control of any voting shares of any company which is not a bank, or

(2) after two years from the date as of which it becomes a bank holding company, or in the case of a company which has been continuously affiliated since May 15, 1955, with a company which was registered under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15 U.S.C. 80a 1 et seq.], prior to May 15, 1955, in such a manner as to constitute an affiliated company within the meaning of that Act, after December 31, 1978, or, in the case of any company which becomes,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Amendments of 1970, a bank holding company on December 31, 1970, after December 31, 1980, retain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r control of any voting shares of any company which is not a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or engage in any activities other than .....

(c)

.....

(8) shares of any company the activities of which had been determined by the Board by regulation or order under this paragraph as of the day before November 12, 1999, to be so closely related to banking as to be a proper incident thereto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such regulation or order, unless modified by the Board); .....

□ 한편 산업의 은행지배를 규제하려면 은행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BHCA는 은행에 대한 정의를 계속 정비해 왔음.

○ 1956년 BHCA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저축은행 및 신탁은행을 모두 은행으로 정의(any national banking association or state bank, savings bank or trust company)

○ 1966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을 받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 1970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상업적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 이 정의에 의해 예금만 받거나 대출만 하는 기관은 은행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자 1987년 Competitive Equality of Banking Act of 1987에서 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거나 또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2) 그 밖에 금산분리를 지원하는 법률

□ 미국에서는 BHCA에 의한 금산분리 이외에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 제한, 내부자와 주요 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의 보고 및 공시 의무화, 사후 감독 등으로 인해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할 유인을 제거

○ 주요 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insiders)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등 설정(12 U.S.C 375 b(4) 84(a)-(1)(2)), (12 CFR 215.2(i))

*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은행 자기자본의 15%이내) 및 내부자 전체에 대한 여신한도(은행 자기자본의 100%이내) 설정

○ 단일 계열기업과의 거래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10%이내, 전체 계

열기업과의 거래총액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계열기업과의 거래 제한

○ 내부자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여(12 CFR 215.8)

* 주요주주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 또는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일반인의 공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함(12 CFR 215.11(b)).

○ 또한 FRB는 은행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은행 대출 및 기타 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

* 은행관련기관(Bank-related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실시

3) GE의 금융업 영위

□ 일부에서는 은행소유 금지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의 주요 논거로 미국 혼합금융그룹 GE의 금융업 영위 사례를 거론

□ 그러나 기본적으로 GE는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배 완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음.

□ 오히려 GE는 모회사가 100% 출자한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혼합금융그룹의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금융부문 자회사와 제조업부문 자회사간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등 우리의 혼합금융그룹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음.

○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혼합금융그룹은 계열화 방식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 지급보증 등으로 금융부문을 계열기업 지배 및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그림 II-1> GE 및 삼성그룹의 출자구조(2005년말 기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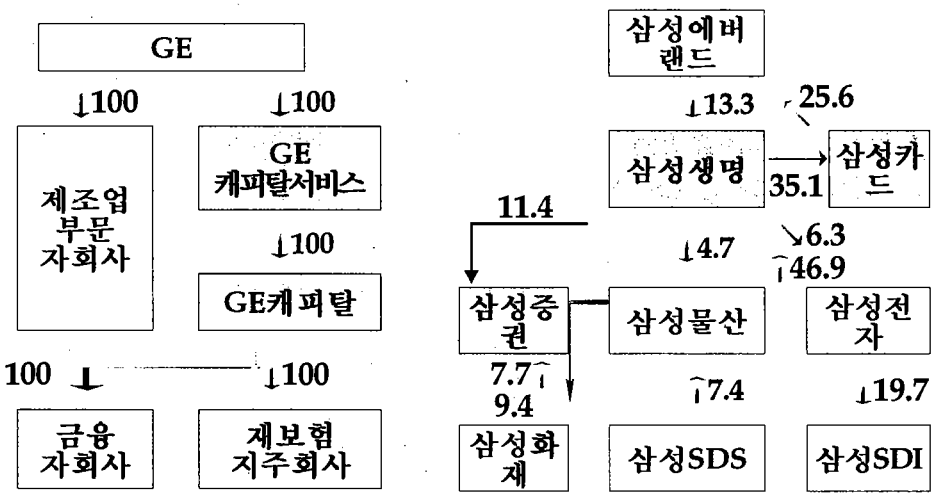

주 : 1) 숫자는 출자회사의 지분율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다. 일본

□ 일본에서는 세계대전과 OECD 가입 이후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 진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기업지배가 심화

○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 강화

○ OECD 가입(1964년)후 지속적인 자본자유화 조치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늘어나자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이 기업 지분을 적극적으로 늘려감.

□ 은행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업 진출에 대응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 도입

○ 법인이나 개인이 은행(은행지주회사)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52조의 9).

*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은행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은행주식을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는 금융청장관에게 사후 신고(「은행법」 제52조의 2)

○ 주식 취득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일반회사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본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제10조)

□ 또한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에 대해서도 규제

○ 은행 및 그 자회사는 국내회사(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전문회사, 보험회사 등 제외)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은행법」 제16조)

* 5% 초과 소유시 이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금융청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

○ 독점금지법상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타회사 발행주식의 5%(보험회사는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제11조).

□ 일본에서는 또한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 일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유인을 제거

○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은행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 은행 주요주주 : 은행 자기자본의 15%

* 은행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은행 자기자본의 25%

○ 은행은 주요주주, 계열사, 지주회사, 모법인 등과의 거래시 동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 또는 행위를 금지(「은행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 금융청장관은 은행 주요주주에 대해 당해 업무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징구하거나 임점 검사를 실시(「은행법」 제52조11, 동 법 제52조의12)

○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50% 초과 주요주주에 대해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요구 가능(「은행법」 제52조의14)

라. 영국

□ 영국에서는 특별히 '산업자본'을 지칭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유지 관점에서 대주주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은행지분에 대한 직접적 소유제한은 없고,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승인 제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FSMA) 2000 §179, §422)만 갖추고 있음.

○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비금융회사가 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여 지배주주(controller)가 되는 경우 FSA의 승인(적격성 심사)을 받아야 함.

○ 지배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및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자립가능성 등을 적격성으로 고려(FSMA 2000 §186)

□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규제(Interim Prudential Sourcebook for Banks(IPRU(bank)), vol 1, LE sec 5)

○ 대주주에 대한 여신 및 투자에 있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이 일반 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large exposure) 한도를 적용

* 은행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tier 1 + tier 2)의 25% 범위내(IPRU(bank), vol 1, LE sec 9)

○ FSA는 은행 임원이나 주주 등 관련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며, 동 대출액이 은행 자산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순수 상업적 관점에서 실행되었는지 확인

□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감독당국이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규는 없으나, FSA는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상황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성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주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 은행 및 계열사가 금융그룹에 속할 경우 금융그룹 연결 감독기준(consolidated supervision)에 의하여 감독 실시

□ 대주주의 확약서(Comfort Letter)제출 요구(IPRU(bank), vol 1, CL sec 1)

○ 통상 은행 의결권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자 또는 15%미만이더라도 영향력이 지대할 경우 확약서를 요구하는데 동 확약서에는 대주주가 주식보유에 따른 유한책임을 넘어 필요할 경우 고객예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 포함(법적 구속력은 없음).

마. 독일

□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체제가 정착되어 왔음.

□ 영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출자자 적격성을 심사(「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KWG 2b ①,②)

○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이상 취득하거나 지분율이 20%,

33% 또는 50%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출자자 적격성 승인이 필요

□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은행법」 2b ②)

○ 은행의 건전경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금융감독청은 거액자본 참여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음.

□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 제한(「은행법」 10 ②a)

○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시장원리에 의하지 않고 제공되거나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자기자본에서 차감

○ 동일인에 대한 여신(대출, 지급보증) 한도는 자기자본의 25%이내이며 동 한도 초과시 연방금융감독청 승인 필요

○ 금융회사의 이사, 동 이사가 주요주주인 기업, 금융회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여신은 은행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와 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은행의 투자한도

○ 은행, 비은행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에 대한 은행의 투자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되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총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검사(「은행법」 44b ①) 및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공시 의무(「증권거래법」 15 ①)

○ 은행 주요지분 보유자 및 보유 예정자에 대해 연방금융감독청이 검사 실시

○ 은행법에는 은행이 대주주와 거래한 경우 공시규정이 없으나 은행이 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대주주와의 거래가 유가증권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시토록 규정

바.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 한국, 미국, 일본이외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을 두는 나라는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임.

□ 호주는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 회사의 지분소유한도를 15%로 제한하고 1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장관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승인 (「Financial Sector Act 1998」 Sect.8, Sect.14)

□ 이탈리아에서는 은행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control)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고, 주주의 기업부문 비중이 금융부문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경우 은행지분 15% 초과 소유 금지 (「Banking Law」 ChapterⅢ, Article 19)

- ○ 또한 대부분 은행의 경우 자기자금 15% 이상의 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비상장 기업의 경우 7.5%) 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3%이상 지분보유를 금지
- ○ 몇몇 대형 및 안전성이 검증된 은행은 제한이 다소 완화(리딩뱅크의 경우 전체 50%, 개별 6%, 특수은행의 경우 60%, 15%로 제한)

□ 캐나다는 1967년 은행지분소유 한도를 10%로 제한하였으나 이후 2001년 은행지분소유한도를 은행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Bill C8」, 2001)

- ○ 자기자본이 50억달러 초과 :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내
- ○ 자기자본이 10억달러 이상 50억달러 이하 : 대주주이외 일반 주주의 지분율이 35% 이상
- ○ 자기자본이 10억달러 미만 : 지분소유제한 없음

사. EC Second Banking Directive

□ EU 국가들은 대부분 은행산업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EC의 제2차 은행지침(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을 적용하고 있음.

○ 동 지침은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은행 주식의 일정 비율(10%, 25%, 33%)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고(Article 11.1), 동 비율별로 감독당국의 출자자 적격성 심사를 받으며,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sound and prudent) 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를 승인

아. 기타 국가들

□ 기타 여러 나라들의 산업과 금융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Santos(1998)의 논문을 인용하여 아래 표에 정리해 보았음.

<표 II-1> 주요 국가들의 산업자본-금융자본간 결합규제

	비금융회사의 상업은행 소유	상업은행의 비금융회사 소유
오스트리아 (Austria)	EU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
벨기에 (Belgium)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름. 그러나 Banking and Finance Commision이 은행자본의 5% 이상 주주에 대해 "fit and proper" 심사를 함.	단독 주주의 경우 은행 소유 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들을 합한 것이 소유 자금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과도기에는 EC 2nd Banking Directive 보다 엄격함.
캐나다 (Canada)	어떤 주주도 은행지분의 10% 이상을 가질 수 없음.	은행은 어떤 비금융회사 지분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총지분합이 은행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덴마크 (Denmark)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름. 그러나 기업은 은행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음.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르지만 은행이 비금융회사에 영속적이고 결정적인 참여를 할 수 없음.
핀란드 (Finland)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름. 그러나 기업은 은행의 연차 이사회에서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행사할 수 없음.	EC 2nd Banking Directive
프랑스 (France)	EC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
독일 (Germany)	EC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
그리스 (Greece)	EC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
아일랜드 (Ireland)	은행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하려면 미리 공시해야 하고, 이사를 지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정도인 10% 이상의 은행 의결권이나 소유권을 가지려면 사전 승인 필요	EC 2nd Banking Directive
이탈리아 (Italy)	은행 또는 금융 이외의 다른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합하여 총 보유지분이 은행 의결권의 15%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됨.	대부분 은행의 경우 자기자금 15% 이상의 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비상장 기업의 경우 7.5%) 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3%이상 지분보유 금지. 몇몇 대형 및 안전성이 검증된 은행은 제한이 다소 완화(리딩뱅크의 경우 전체 50%, 개별 6%, 특수은행의 경우 60%, 15%로 제한)

	비금융회사의 상업은행 소유	상업은행의 비금융회사 소유
일본 (Japan)	기업의 자본이나 순자산 금액에 따라 총투자 한도가 있음. 반독점법은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요 업무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룩셈부르크 (Luxembourg)	비금융회사는 법률적으로 은행의 주요 주주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정책은 비금융그룹 또는 개인이 은행의 주요 주주가 되지 못하게 함.	EC 2nd Banking Directive
네덜란드 (Netherlands)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름. 그러나 은행자본의 5%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있어야 함.	EC 2nd Banking Directive를 따름. 그러나 기업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은행의 투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있어야 함.
포르투갈 (Portugal)	EC 2nd Banking Directive	EU 2nd Banking Directive를 따름. 그러나 은행은 비금융회사 의결권의 25%를 초과 보유할 수 없음.
스페인 (Spain)	EC 2nd Banking Directive을 따름. 그러나 비금융회사는 신규은행 설립초기 5년간 은행주식의 20% 이상을 가질 수 없음.	EC 2nd Banking Directive
스웨덴 (Sweden)	은행이 파산 위기에 있거나 외부자본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50% 이상 소유 금지. 이 특별한 경우에는 신규 소유자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은행주식의 50% 이상 소유도 허용됨.	은행의 총투자한도는 은행자금의 40%로 제한. 개별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은 이 한도의 5% 그리고 개별회사 의결권의 5%로 제한. 이 한도는 은행이 신용손실을 방어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시장상황이 허락하는 한 은행이 회사지분을 매각해야 함.
스위스 (Switzerland)	규제 없음.	회사지분에 대한 단독 참여의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20%로 제한. 그러나 Swiss Banking Commision이 이 한도 초과를 허용할 수 있음.
영국 (U. K.)	EC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를 따름. 그러나 20%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동 투자금액을 위험기준 자기자본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거나, 대출로 계산.

자료 : Santos(1998)

2. 산업자본의 주요 선진은행 소유 현황

가. 총괄 분석

□ 「The Banker」 지가 발표한 세계 1000대 은행 중 2006년 7월말 현재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 100대 은행을 선정하여 동 은행들의 주주 현황을 분석하였음(<부표 1> 참조).

○ 주주 현황 관련 자료의 출처는 BankScope Dataset임.

○ BankScope Dataset는 Fitch Ratings가 제공하는 전세계 25,000개 이상 은행의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자료로 현존하는 가장 광범위한 은행관련 데이터 소스임.

□ 세계 100대 은행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총 23개국임.

○ 독일이 15개로 가장 많고, 미국 11개, 일본 9개, 영국 7개, 프랑스 6개 등의 순임.

○ 우리나라는 국민은행(70위), 신한지주(79위), 농협(90위), 우리은행(91위) 등 4개를 세계 100대 은행에 올려놓았음.

<표 II-2> 국가별 세계 100대 은행 보유 수

국가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은행수	15	11	9	7	6	5	5	5
국가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스위스
은행수	4	4	4	4	4	3	3	2
국가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브라질	
은행수	2	2	1	1	1	1	1	

□ <부표 1>은 세계 100대 은행의 주주 중 산업자본인 주주[3] 현황과

동 주주의 보유 지분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표에서 "direct"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며 "total"은 간접 지분까지 포함한 총 지분을 나타냄.

* 간접지분이 없는 경우 직접 지분이 총지분을 나타냄.

□ 먼저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292개 산업자본 중 89%인 260개 산업자본의 지분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인 4% 미만이었음.

○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은 전체의 93.8%인 274개였음.

<그림 II-2> 세계 100대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분포

(단위: 산업자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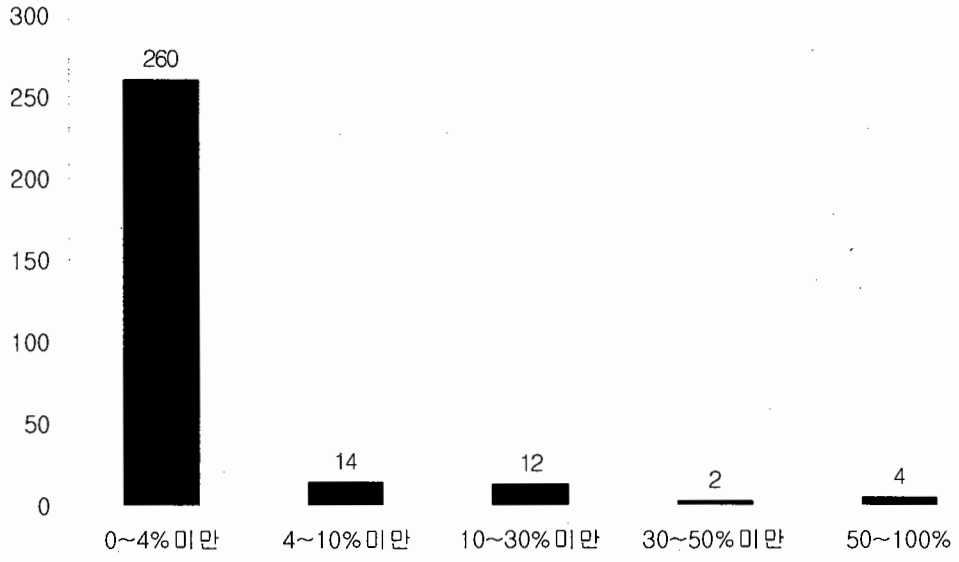

자료: BankScope

3) BankScope Dataset에서는 주주들의 회사 형태를 밝히고 있는데 산업자본은 이중 "Industrial company"로 분류된 주주들이다. BankScope에서는 "Industrial company"가 "은행이나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가 아니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과 관련된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II-3> 세계 100대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분포

	산업자본수	0~4% 미만	4~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100%
독일	20	12	1	4	1	2
미국	43	42	1			
일본	9	9				
영국	10	9	1			
프랑스	4	4				
이탈리아	22	17	5			
중국	1		1			
캐나다	21	21				
한국	8	8				
네덜란드	5	2	2			1
스페인	47	46		1		
스웨덴	7	6		1		
호주	16	15	1			
벨기에	52	48	1	3		
아일랜드	5	5				
스위스	3	3				
덴마크	3	1		2		
오스트리아	5	4				1
노르웨이	3	2			1	
인도	1	1				
남아프리카 공화국	6	4	1	1		
싱가포르	0					
브라질	1	1				
합계	292	260	14	12	2	4

○ 국가별로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한국, 아일랜드, 스위스,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의 경우 4%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

본이 존재하지 않았음.

* 싱가포르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아예 없음.

○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보유한 국가는 독일(7개), 네덜란드(1개), 스페인(1개), 스웨덴(1개), 벨기에(3개), 덴마크(2개), 오스트리아(1개), 노르웨이(1개), 남아프리카공화국(1개) 임.

□ 따라서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한 산업자본의 숫자도 292개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산업자본이 4%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은행소유와 관련한 영향력이 작음.

□ 세계 100대 은행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은 18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유럽 국가에 속해 있었음.

<그림 II-3> 세계 100대 은행 개별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별 분포

(단위: 은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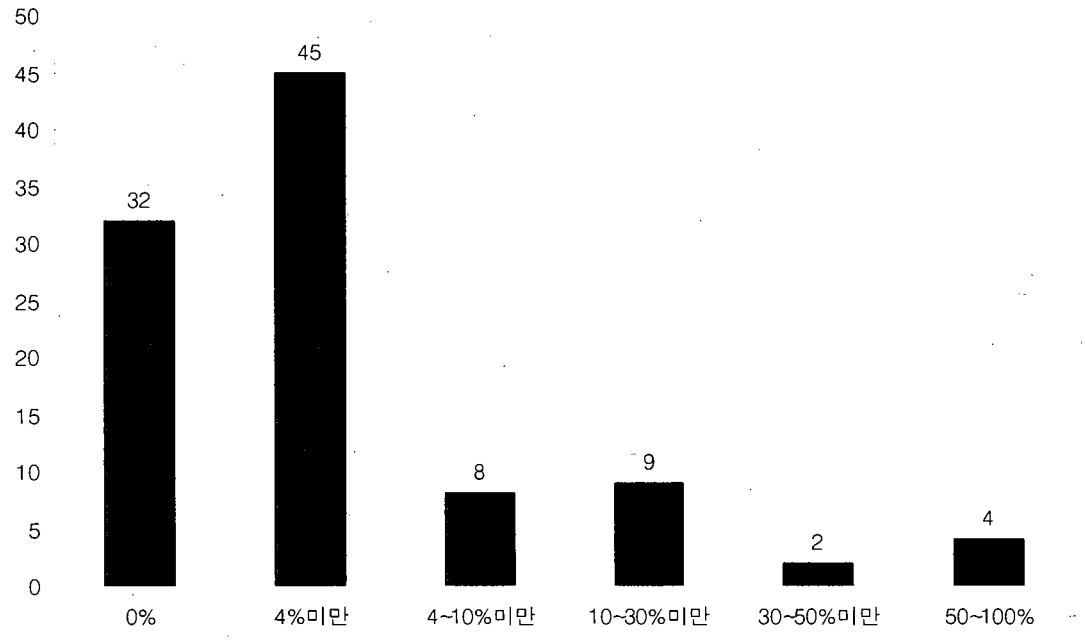

자료: BankScope

□ 한편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의 지분이 전혀 없는 은행이 32개나 되었으며, 개별은행의 산업자본 주주 중 가장 지분이 큰 산업자본의 지분이 4%미만인 은행도 45개에 달해 총 77개 은행의 산업자본 최대주주 지분이 4% 미만이었음.

○ 개별은행 산업자본 주주 중 가장 지분이 큰 산업자본의 지분이 10% 미만인 은행은 총 85개에 달했음.

○ 세계 100대 은행 중에 산업자본 주주 중 가장 지분이 큰 산업자본의 지분이 10% 이상인 은행은 15개였는데, 이중 6개가 독일 은행이었으며, 벨기에 은행이 2개였고,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은행이 각 1개였음.

□ 세계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이 4%가 안되는 은행이 77개에 달해 대부분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최대주주가 우리나라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한도인 4%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 최대주주가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15개 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유럽 국가에 속해 있었음.

<표 II-4> 세계 100대 은행 개별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별 분포

	은행수	0%	4% 미만	4~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100%
독일	15	6	3		3	1	2
미국	11	2	8	1			
일본	9	5	4				
영국	7	1	5	1			
프랑스	6	3	3				
이탈리아	5		2	3			
중국	5	4		1			
캐나다	5		5				
한국	4	2	2				
네덜란드	4	2		1			1
스페인	4	2	1		1		
스웨덴	4	1	2		1		
호주	4		3	1			
벨기에	3	1			2		
아일랜드	3		3				
스위스	2	1	1				
덴마크	2	1			1		
오스트리아	2		1				1
노르웨이	1					1	
인도	1		1				
남아프리카 공화국	1				1		
싱가포르	1	1					
브라질	1		1				
합계	100	32	45	8	9	2	4

□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1%미만인 은행이 58개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동 수치가 10%미만인 은행이 82개였음.

○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10% 이상인 은행은 총 18개였는데 이들의 국가분포를 보면 독일이 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가 각 2개였음.

<그림 II-4> 세계 100대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 지분 합계 분포

(단위: 은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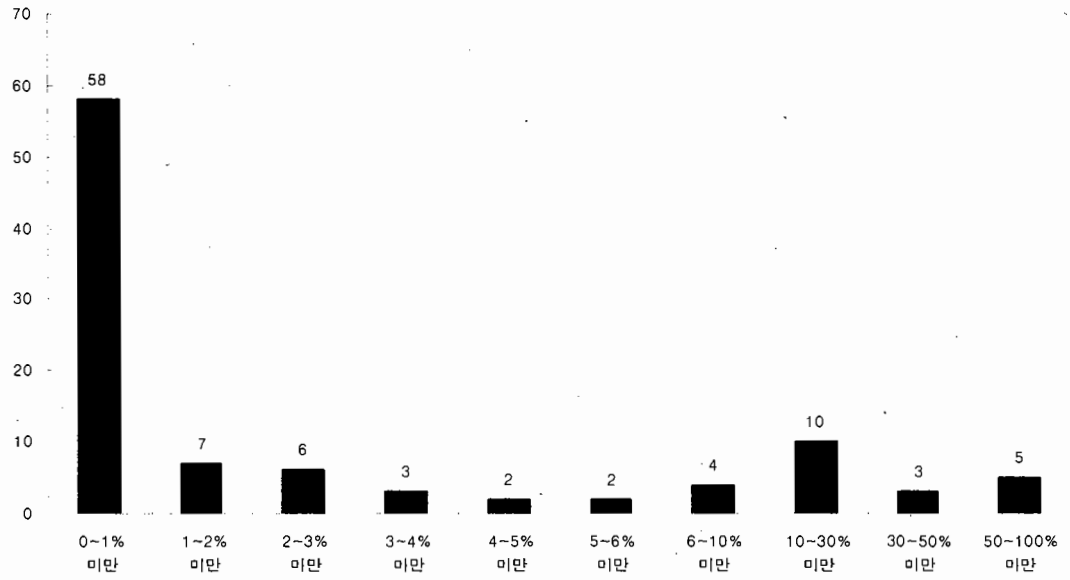

자료: BankScope

<표 II-5> 세계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 지분의 합계가 10% 이상인 은행의 국가 분포

개별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합계	은행 수	국가 분포
10%~30%	10	독일(3), 이탈리아(2), 스페인(1), 벨기에(1), 스웨덴(1), 네덜란드(1), 남아프리카(1)
30%~50%	3	덴마크(1), 노르웨이(1), 벨기에(1)
50%~100%	5	독일(3), 오스트리아(1), 네덜란드(1)

□ 세계 100대 은행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미미한 편임.

○ 세계 100대 은행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 중 4%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본은 전체의 11%인 32개에 불과

○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지분의 4%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전체의 23%인 23개에 불과

○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10% 이상인 은행은 전체의 18%인 18개에 불과하여 산업자본 지분비율이 미미한 실정임.

□ 영·미계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요 주주인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유럽대륙 국가 특히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요주주인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았음.

○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이 높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님.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이 많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소속 세계 100대 은행은 27개인데 이중 개별 산업자본이 4%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은행이 14개로 절반 이상임.

나. 국가별 분석

□ 이번 절에서는 국가별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현황에 대한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함.

○ 특히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가 4%인 점을 감안하여 4%를 기준으로 분석

□ 미국 은행들의 경우 JP Morgan Chase & Co.를 제외하고는 개별 산업자본이 4%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없음.

○ JP Morgan Chase& Co.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인 LYNAS CORPORATION LIMITED가 5.5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자본의 총 지분은 6.62%임.

○ 그 밖에 미국은행들의 경우에는 개별 산업자본 뿐 아니라 산업자본의 총 지분이 4%를 넘는 은행도 없음.

*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1% 미만인 은행 : 6개
*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1%~2% 미만인 은행 : 1개
*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2%~3% 미만인 은행 : 2개
*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3%~4% 미만인 은행 : 1개

□ 영국계 은행의 경우에는 Standard Chartered Plc.만이 지분 4% 이상의 산업자본이 존재

○ Standard Chartered Plc.는 산업자본인 GLEN HOLDINGS (PTE) LIMITED가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총 지분은 4.78%임.

○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7개의 영국은행들 중 Standard Chartered Plc.를 제외한 6개 은행들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지분 합계가 1%를 넘지 않아 미국 은행들보다도 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적은 상황임.

□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캐나다 은행 5개 중에는 산업자본이 지분 4% 이상을 가지고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은행은 없으며 호주 은행 4개 중에는 1개가 있음.

○ 캐나다 은행 중 세계 50위인 Toronto Dominion Bank의 경우 산업자본인 JARISLOWSKY FRASER LTD가 3.6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8.77%임.

○ 세계 63위인 호주의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의 경우 산업자본인 WOTIF.COM HOLDINGS LIMITED가 5.0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자본의 지분 합계는 6%임.

□ 따라서 영·미계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주요주주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100대 은행 중 미국과 영국 국적의 은행은 총 18개인데 이 중 산업자본이 4% 이상 지분을 소유하여 주요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은 단 2개뿐임.

○ 미국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및 지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미국의 경우 은행 소유지분이 5% 미만이면 은행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25% 이상이면 은행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며, 5%~25%미만이면 감독당국이 은행 지배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어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25%까지는 소유가 가능

* 그러나 세계 100대 은행에 드는 미국 은행의 경우 개별 산업자본의 지분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영국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및 지배가 금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철저한 적격성 심사 및 사후 감독 때문에 은행 주요주주 중 산업자본이 드문 것으로 보임.

○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영국 은행들처럼 산업자본의 지분이 미미한 실정임.

□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독일 은행 15개 중에는 6개 은행의 경우에 개별 산업자본이 지분 4% 이상을 가지고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Bayerische Landesbank(39위)의 경우 산업자본인 BAYERNLB

HOLDING AG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Landesbank는 The Banker지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 WestLB AG(48위)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인 LAND NORDRHEIN-WESTFALEN이 17.07%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총 지분 합계는 18.56%임.

○ HSH Nordbank AG(61위)의 경우에는 유일한 산업자본인 WESTLB BETEILIGUNGSHOLDING GMBH가 26.58%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LBB Holding AG-Landesbank Berlin Holding AG(76위)의 경우에는 유일한 산업자본인 NORDDEUTSCHE INVESTITIONEN BETEILIGUNGSGESELLSCHAFT MBH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Deutsche Postbank AG(77위)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인 DEUTSCHE POST AG가 50%, DEUTSCHE POSTBANK BETEILIGUNGS GMBH가 16.77%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총 지분 합계는 67.06%임.

○ DekaBank Deutsche Girozentrale(88위)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인 GLB GMBH & CO. OHG가 49.17%, SPARKASSENVERBAND NIEDERSACHSEN이 6.46%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총 지분 합계는 58.83%임.

○ 세계 100대 은행에 드는 15개 독일 은행 중 위의 6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합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산업자본 지분이 없는 은행 : 6개
*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1% 미만인 은행 : 1개
*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1%~2% 미만인 은행 : 1개
*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3%~4% 미만인 은행 : 1개

□ 일본 은행 중 세계 100대 은행에 속하는 은행은 9개인데 이중 산업자본이 지분 4% 이상을 가지고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은행은 없음.

○ 9개 은행 중 세계 20위인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등 5개 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지분이 전혀 없음.

○ 산업자본의 지분이 있는 4개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현황

* 세계 3위인 Kabushiki Kaisha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의 경우 산업자본인 HERO AND CO가 3.3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5.96%

* 세계 10위인 Mizuho Financial Group의 경우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0.12%

* 세계 75위인 Sumitomo Trust & Banking Company Ltd.의 경우 산업자본인 KUBOTA CORPORATION이 1.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3.94%

* 세계 96위인 Mitsui Trust의 경우 산업자본인 TOBU RAILWAY CO LTD가 1.6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2.74%

○ 일본의 경우 비교적 산업과 은행간 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이 미미한 편임.

□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프랑스 은행 6개 중에는 산업자본이 지분 4% 이상을 가지고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은행은 없음.

○ 6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산업자본의 지분이 없으며, 2개 은행은 산업자본 지분이 1% 미만, 1개 은행은 산업자본 지분이 2% 미만임.

○ 따라서 프랑스 은행들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참여가 미미한 실정임.

□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이탈리아 은행 5개 중에는 산업자본이 지분 4% 이상을 가지고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 3개나 있음.

○ 세계 19위인 UniCredito Italiano SPA의 경우 산업자본인 CARIMONTE HOLDING SPA가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자본 지분 합계는 6.3% 이하임.

○ 세계 47위인 Banca Intesa SpA의 경우 산업자본인 LOMBARDO GROUP이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자본 지분 합계는 4.93%임.

○ 세계 49위인 San Paolo IMI의 경우 산업자본인 COMPAGNIA DI SAN PAOLO가 7.33%, GIOVANNI AGNELLI & C.가 6.28%, SANTUSA HOLDING S.L.이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자본 지분 합계는 18.43%임.

○ 세계 80위인 Capitalia SpA의 경우 지분 4% 이상인 산업자본은 없지만 여러 산업자본이 1~2%대의 지분을 골고루 소유하여 산업자본 지분 합계는 11.86%에 달함.

□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중국 은행 5개 중에는 산업자본이 지분 4% 이상을 가지고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 1개 뿐이고 나머지 4개 은행은 산업자본의 지분이 없음.

○ 세계 27위인 Bank of China Limited의 경우 산업자본인 RBS가 9.61%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3. 주요 선진은행의 산업자본 소유 현황

□ 이번 절에서는 세계 100대 은행에 드는 선진은행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 중 산업자본인 회사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함.

○ 즉 이번 절에서는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 현황을 살펴보는 것임.

□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The Banker」 지가 발표한 세계 1000대 은행 중 2006년 7월말 현재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 100대 은행을 선정하여 동 은행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였음(<부표 2> 참조).

<표 II-6> 국가별 세계 100대 은행의 산업자본 회사 보유 현황

(단위: 개, %)

국가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은행수	15	11	9	7	6	5	5	5
보유 산업자본 회사수(A)	912	1,680	32	95	694	99	47	1,655
총 보유 회사수(B)	1,395	3,988	108	213	1,288	247	92	1,748
비율(A/B)	65.4	42.1	29.6	44.6	53.9	40.1	51.1	94.7
국가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스위스
은행수	4	4	4	4	4	3	3	2
보유 산업자본 회사수(A)	24	129	280	44	85	176	44	60
총 보유 회사수(B)	48	248	601	106	206	418	79	207
비율(A/B)	50.0	52.0	46.6	41.5	41.3	42.1	55.7	29.0
국가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브라질	합계
은행수	2	2	1	1	1	1	1	100
보유 산업자본 회사수(A)	18	62	14	2	16	4	3	6,175
총 보유 회사수(B)	35	148	31	23	78	15	12	11,334
비율(A/B)	51.4	41.9	45.2	8.7	20.5	26.7	25.0	54.5

주 : 은행이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

□ 세계 100대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총 11,334개이며 이중 산업자본 회사는 6,175개로 전체의 54.5%를 점하여 세계 100대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미미하였으나 은행의 산업자본 회사 소유는 상당히 많은 편임.

○ 이처럼 은행이 보유한 산업자본 회사수가 많은 것은 은행이 대출 회수가 어려울 때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금융자본이 먼저 발달하고 거대해진 금융자본이 산업에 진출하는 형태로 경제가 발전하여 금융의 산업지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

□ 국가별로 보면 세계 100대 은행 보유 수 상위 5개국 중 독일 은행들의 산업자본 회사 보유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은행들이 53.9%, 영국과 미국 은행들이 각각 44.6%와 42.1%를 기록하였고, 일본 은행들은 29.6%를 기록하였음.

○ 독일은 전통적으로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계 숫자도 그러한 통설을 입증해 주고 있음.

□ 세계 100대 은행 보유 국가중 캐나다 은행들의 산업자본 회사 보유 비율이 94.7%로 가장 높았고 독일 은행들이 65.4%로 그 다음이었으며 일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이 20%대나 그 이하를 기록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40~50% 수준을 보여 국가별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III. 주요 보험회사와 산업자본과의 관계

1. 각국의 제도 현황

가. 미국

1) 미국 보험규제의 경과 및 현황

□ 미국 보험사와 관련된 규제는 주법에 의해 적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역사는 다음과 같음.

○ 1868년, 대법원 판결(Paul v. Virginia)에 의해 보험증권 발행은 주간(interstate) 영업이 아니므로 헌법상 연방정부의 입법적·규제적 권한 범위밖에 있다고 판시

○ 1944년, 대법원은 상기 판결을 번복(U.S. v. South Eastern Underwriters Association)하여 보험은 연방규제 및 반독점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시

○ 그러나 1945년, McCarran-Ferguson법 제정으로 보험규제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주법에 의해 규제되는 한, 연방법률 적용을 면제

□ 미국 보험규제의 기본 체계는 다음과 같음.

○ 각 주는 보험규제책임자인 commissioner를 선임하여 주 보험법 집행, 규제 제정 및 보험감독의 책임 부여

○ commissioner는 대부분 주지사가 임명하나,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는 선출직이고, 각 주의 commissioner는 보험감독자협의회인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회원이 되며, NAIC는 주간 정보교환, 조정 역할 등 수행

○ 각 주는 고유한 보험법과 규제를 보유하고 있고, NAIC는 규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모델법(model laws)과 규제를 개발

2) 자회사·지주회사 업무범위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

□ 미국 거의 모든 주의 보험법은 면허를 발급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업 및 그 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배권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관계회사(affiliate)를 통해 비보험업, 나아가 비금융업과도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 있음.

□ 이처럼 미국의 보험법은,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보험회사와 일반 산업기업 간의 결합을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금융 분리 원칙이 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됨.

○ 다시 말해서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없다는 것만으로,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없음.

○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은 은행(금융)지주회사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은행(금융)지주회사법이 사전적·직접적 금지 방식에 입각하고 있는 반면 보험지주회사법은 광범위한 공시 및 자산운용규제를 기초로 한 개별적 심사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즉,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관련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중요거래에 대해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중요거래 건건별로 보험감독관에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결국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엄격한 자산

운용규제를 통해, 비록 사전적·직접적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 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국 보험사의 자회사·지주회사 관련 자산운용규제에 대해 설명

① 보험회사 일반의 자산운용규제

□ 미국의 보험법은 보험회사가 그 임원 및 이사에 대해 또는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 대출, 유가증권투자,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

○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금제공은, 보험지주회사체계에 속한 경우가 아닌 한, 금지

○ 그리고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금제공은 보험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허용

○ 결국, 보험지주회사체계에 편입되어 이에 따른 규제를 받는 자회사 내지 관계회사가 아닌 한, 보험회사의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회사에 보험회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NAIC 모델법에 따르면, 분산투자의 일반원칙으로서, 생명보험회사는 개별기업에 총적격자산(total admitted asset; 총자산에서 각 항목별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한 자산을 제외한 것)의 3% 이상을, 손해보험회사는 총적격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할 수 없음.

○ 이때의 한도는 유가증권투자만이 아니라 대출 및 지급보증 등 모든 형태의 자금제공을 포괄

○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을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에 총적격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할 수 없음.

□ 또한 운용자산 중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총한도를 두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총적격자산의 20% 이상을 주식(및 기타 지분적 이익 포함)에 투자할 수 없으며, 그 중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는 총적격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총적격자산의 25% 또는 보험계약자잉여금(insurer's surplus as regards policyholders)의 10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

□ 한편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적격자산의 10%로 설정하여, NAIC 모델법의 3%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 반면, 뉴욕주 보험법은 생명보험회사의 개별기업 주식(및 기타 지분적 이익 포함)에 대한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고 있음.

○ 즉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 총적격자산의 2% 이상을 투자할 수 없음.

②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체계(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는 하나 이상의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계자(affiliated person)로 구성되며,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또한 보유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통

지 및 의견개진(notice and hearing) 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를 판정할 수 있음.

□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핵심 목적은 보험지주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로 전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i) 보험회사 자체 및 ii) 보험회사와 관계회사와의 거래 양 측면을 모두 규제

○ 규제의 원칙은, 특정 행위의 금지(outright prohibition) 원칙에 입각한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경영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

□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험회사와 그 관계회사간의 모든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임.

○ NAIC 모델법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체계 내의 보험회사와 관계회사간에 각 거래유형별로 설정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울러, 그 기간 내에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음.

○ 예컨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전년도 말 총적격자산의 3%를 초과하는 판매, 구매, 교환, 대출, 신용공여, 투자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 특히 자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보험관계회사(non-subsidiary insurance affiliates)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지배회사나 여타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는 직접적인 투자액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투자액까지 합하여 보험계약자잉여금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 그 외 보험감독관이 규정(regulation)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모든 중요거래가 사전보고 절차의 대상이 됨.

□ 보험감독관은 이상의 규정에 의해 사전보고된 거래에 대해 (앞서 살펴본) 거래의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 또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보험지주회사체계 전체가 어떤 특정 기업(관계회사가 아닌 경우도 포함)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 뉴욕주의 보험법은 명시적인 사전승인을 요하는 거래와 사전보고를 요하는 거래를 구분하고 있음(자회사와의 거래나 보험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제외).

○ 보험회사가 총적격자산의 5%를 초과하는 판매, 구매, 교환, 대출, 신용공여, 투자 등의 거래를 여타 관계회사와 하는 경우 보험감독관의 명시적인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보험회사 총적격자산의 0.5% 이상 5% 미만의 거래나 보험감독관이 규정을 통해 중요거래로 결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보험감독관에 사전보고하고 그 기간 내에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음.

○ 또한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계약자, 가입자, 공중의 이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험감독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라미드 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III-1>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은행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정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직·간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지배력 보유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1이상의 브로커 또는 딜러를 소유하는 회사 및 투자은행지주회사의 관계회사를 소유하는 회사	·보험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타 한 회사의 경영권 및 정책에 대한 지도 권한 보유하는 경우
설립 및 자회사 편입 규제	·은행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은행자회사의 편입, 은행지주회사간 합병 등을 위해서는 사전승인 필요	·별도의 규정 없음	·비보험사에 의한 보험사의 지배권 인수시 당해 보험사에 통지 및 사전승인 필요 ·보험사의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 당해 지주회사에 대한 정보와 그 편입사실 보고 필요
업무 및 자회사 범위	·비은행회사의 주식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 금지 ·다만, 증권업에서의 수입이 총수입의 25% 이내인 경우 증권자회사 보유 가능 ·대출관련보험의 인수 또는 인구 5천명 이하 지역에서 보험자회사 보유 가능	·별도의 규제 없음	·업무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음 ·다만, 비보험업무 영위시 보험자회사 편입을 위한 사전승인 필요 ·자회사의 범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음
감독 및 건전성 규제	·소유제한: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25% 이상 보유 또는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통지 필요 ·별도 신용공여한도규제 無 ·내부거래규제: 개별 관계회사 및 전체 관계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 연결자기자본의 각각 10%, 20% ·기타 적기시정조치제도 및 경영실태평가제도 운영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한도규제나 행위제한규정 없음 ·검사는 브로커 및 딜러 자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에 대하여 가능	·보험자회사의 운영, 경영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감독관에게 제출 및 검사 ·내부거래규제: 보험자회사의 他 자회사와의 거래시 거래금액이 보험자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일 경우 사전승인 필요, 자산총액의 0.5~5.0% 또는 보험계약자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시 통지 필요

나. 일본

□ 일본의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회사(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제11조).

○ 보험사를 포함 금융회사에 의한 동일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를 두는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가진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취득·소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비금융회사가 일본 국내회사(보험사 및 금융회사 포함)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10조).

○ 이 경우 일반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지분율 수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 한편 이하에서는 일본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살펴봄.

1) 설립 인가

□ 일본은 1998년 3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 증권 및 보험사들이 타금융업 또는 유사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 짐.

□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회사로 정의

○ 여기서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

를 말하며, 자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

□ 한편, 보험지주회사가 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을 자회사로 둘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되어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따라서 이들 회사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의 관련규정을 적용을 받음.

□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경영관리 하는 것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순수 지주회사만 허용

○ 한편,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합병 및 분할 또는 영업권의 양도·양수의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자회사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

□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의 업종과 관련하여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열거된 금융관련회사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부거래 규제를 두고 있음.

□ 보험지주회사그룹 차원에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가 없으며, 다만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일반적인 동일인 운용한도 규정이 적용

○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자신 및 동일인(동일인자신+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10%, 보험회사 주요주주 및 보험회사 주요주주의 동일인(주요주주+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6%로 제한

□ 보험회사는 특정관계자 및 이들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 부당한 거래 및 행위를 금지(여기서의 특정관계자는 당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 당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여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

○ 즉, 특정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조건과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의 매매나 기타 거래 금지

○ 당해 특정관계자간 또는 당해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해당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

<표 III-2> 일본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은행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정의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금융자회사(은행 포함) 를 보유하는 회사로서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	·별도의 규정 없음	·보험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금융회사(보험사 포함)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회사로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
설립 및 자회사 편입 규제	·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설립시 인가 필요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인가 필요	·설립인가 및 자회사의 범위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 없음 ·일반사업회사도 자회사로 편입 가능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설립은 인가 필요 ·금융회사는 사전승인 없이 자회사로 편입 가능, 일반회사는 승인 필요
업무 및 자회사 범위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부수업무 이외에는 타업무의 영위 금지 ·자회사로는 장기신용은행, 증권사, 보험사, 외국 금융사, 은행 등이 가능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으며, 비금융회사 발행주식의 소유는 15% 이내로 제한	·별도의 규제 없음 ·다만, 증권지주회사 산하에 은행이 있는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됨에 따라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 불가능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부수업무 이외에는 타업무의 영위 금지 ·사전승인 없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는 생보사, 손보사, 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사, 외국 금융사, 금융업 관련회사 등
감독 및 건전성 규제	·거액여신규제: 동일인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자기자본의 40% ·내부거래규제: 은행지주회사 및 他 자회사와 불이익을 주는 거래 금지 ·건전성규제: 연결기준의 자기자본규제제도 운영, 해외영업점을 보유한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 유지, 해외영업점을 미보유한 경우에는 4% 이상 유지	·별도의 규제 없음 ·자본적정성 규제는 개별 증권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할 뿐 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미적용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의무 ·감독기관의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적기시정조치 가능 ·내부거래규제: 보험자회사는 보험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와의 거래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을 제공 금지

다.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재벌)의 은행 지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반면, 보험사 등의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규제 없이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가 용인되고 있는 실정

□ 한편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보험업법 제109조).

○ 다만, 보험업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예외

>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사의 대주주와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는 다음과 같음.

○ 보험사의 자기계열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중 적은 금액으로 규제(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 또한 자기계열 채권·주식 소유(동 채권·주식 담보대출 포함)한도를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적은 금액으로 규제(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2)
>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 3)

2. 산업자본의 주요 선진보험사 소유 현황

가. 총괄 분석

□ 2006년 7월말 현재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 100대 보험사를 선정하여 동 보험사들의 주주 현황을 분석하였음(<부표 3> 참조)

○ 주주 현황 관련 자료의 출처는 OSIRIS Dataset임.

○ 본 Database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일반 기업 등을 포함한 세계 130여개국 총 38,000여개 상장기업에 대한 자료(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합병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자산기준 세계 100대 상장보험회사의 총 주주 3,410개 중 산업자본 주주가 306개로 전체의 8.9%를 차지

○ 보험사 주주는 318개(9.3%), 은행 주주는 1,141개(33.5%), 기타 금융회사는 1,362개(39.9%) 임.

□ 먼저 세계 100대 보험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306개 산업자본 중 88.9%인 272개 산업자본의 지분이 4% 미만이었음.

○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은 전체의 92.4%인 283개였음.

○ 국가별로는 스위스, 일본, 스페인, 한국, 싱가포르의 경우 4%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이 존재하지 않았음.

○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보유한 국가는 독일(8개), 이탈리아(3개), 오스트리아(3개), 미국(2개), 프랑스(2개), 캐나다(1개), 영국(1개), 네덜란드(1개), 중국(1개), 홍콩(1개) 임.

□ 따라서 세계 100대 보험사의 지분을 소유한 산업자본의 대부분이

4%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 소유와 관련한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100대 보험사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은 전체 306개 중 23개 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럽 국가에 속한 산업자본이 18개로 가장 많았음.

<그림 III-1> 세계 100대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 지분 분포

(단위 : 산업자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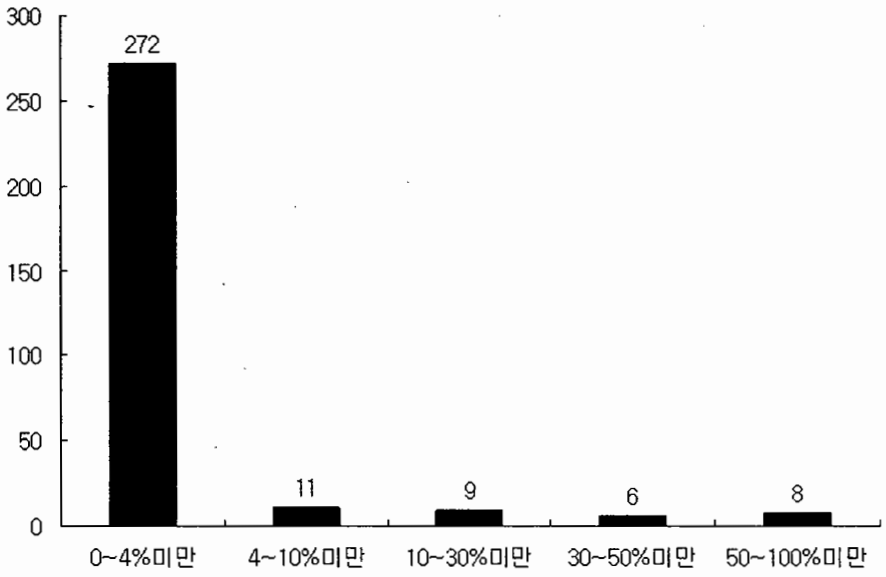

자료 : OSIRIS

<표 III-3> 세계 100대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분포

국가	산업 자본수	0~4% 미만	4~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 100%
미국	133	128	3	1		1
이탈리아	33	30		3		
독일	24	16		3	2	3
캐나다	22	20	1			1
영국	12	11				1
프랑스	12	9	1		2	
스위스	10	10				
일본	9	9				
중국	9	8		1		
호주	9	8	1			
스페인	8	8				
오스트리아	6	1	2		2	1
한국	6	6				
싱가포르	4	4				
홍콩	4	2	1			1
남아공	3	2	1			
네덜란드	1			1		
버뮤다	1		1			
합계	306	272	11	9	6	8

자료 : OSIRIS

□ 한편 세계 100대 보험사 중 산업자본의 지분이 전혀 없는 보험사가 16개나 되었으며, 개별 보험사의 산업자본 주주 중 가장 지분이 큰 산업자본의 지분이 4%미만인 보험사도 50개에 달해 총 66개 보험사의 산업자본 최대주주 지분이 4% 미만이었음.

○ 개별 보험사 산업자본 주주 중 가장 지분이 큰 산업자본의 지분이 10% 미만인 보험사는 총 82개에 달했음.

○ 세계 100대 보험사 중에 산업자본 주주 중 가장 지분이 큰 산업

자본의 지분이 10% 이상인 보험사는 17개였는데, 이중 6개가 독일 보험사이었으며, 미국 보험사가 3개, 오스트리아 보험사가 2개였고,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홍콩, 중국 보험사가 각 1개였음.

□ 세계 100대 보험사 중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이 10%가 안되는 보험사가 82개에 달해 대부분 보험사의 경우 산업자본 최대주주가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100대 보험사 중 산업자본 최대주주가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는 17개 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유럽 국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 세계 100대 보험사 개별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별 분포

(단위 : 보험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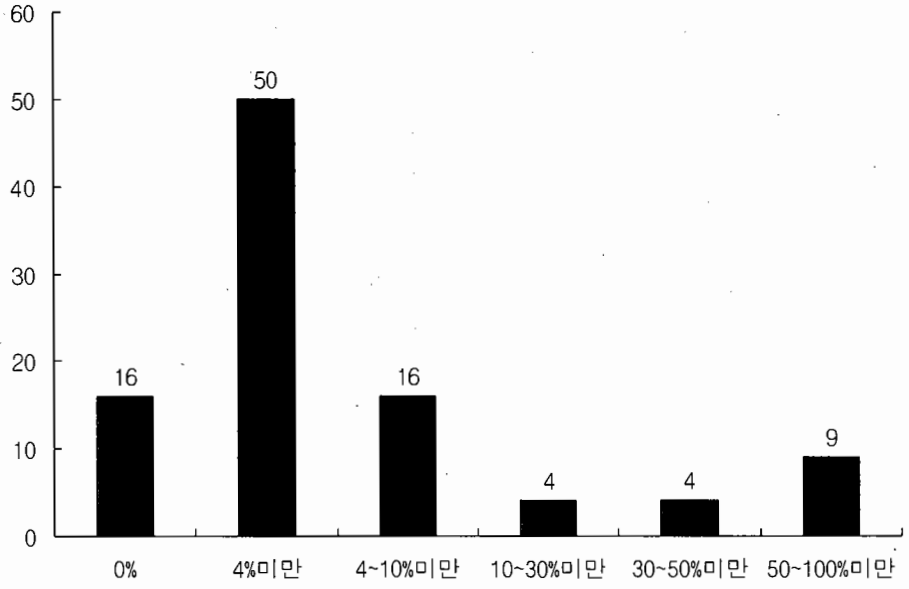

자료 : OSIRIS

<표 III-4> 세계 100대 보험사 개별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지분별 분포

국가	보험사수	0%	4% 미만	4~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100% 미만	기타
미국	34	4	18	9	2		1	
독일	11	2	3			1	5	
영국	10	1	7	1			1	
이탈리아	7	2	3			1		1
캐나다	7	2	3	2				
일본	6	1	5					
프랑스	4	1	1	1		1		
남아공	3	1	1	1				
버뮤다	3	2		1				
스위스	3		3					
호주	3		2	1				
오스트리아	2						2	
중국	2		1		1			
네덜란드	1				1			
스페인	1		1					
싱가포르	1		1					
한국	1		1					
홍콩	1					1		
합계	100	16	50	16	4	4	9	1

주 : 기타는 산업자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분율 수치가 N/A로 기록된 경우
자료 : OSIRIS

□ 세계 100대 개별 보험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지분합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산업자본 지분합계가 1% 미만인 보험사가 16개사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는 지분합계가 2~3%미만(14개사), 1~2%미만(13개사), 50%이상(10개사), 3~4%미만 및 6~10%미만(8개사) 등의 순임.

○ 산업자본의 소유지분합이 10~50%인 경우는 미국이 2개사, 50% 이상인 경우는 독일이 4개사로 가장 많음.

<그림 III-3> 세계 100대 보험사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합계 분포

(단위: 보험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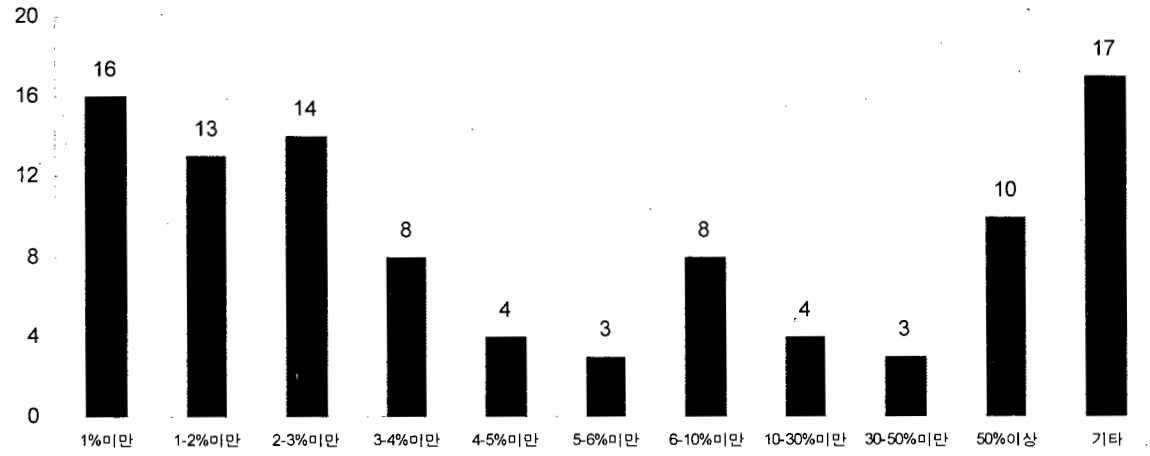

주 : 1) 자산기준 세계100대 상장보험회사
2) 기타는 n.a, 또는 결측값

자료 : OSIRIS

<표 III-5> 산업자본의 국가별 소유지분합 분포

(단위 : 개)

국 가	10%미만	10~30%미만	30~50%미만	50%이상
미국	27	2		1
영국	8			1
일본	5			
캐나다	5			
독일	3		1	4
스위스	3			
이탈리아	3		1	
호주	3			
남아공	2			
프랑스	2		1	
버뮤다	1			
스페인	1			
싱가포르	1			
중국	1	1		
한국	1			
네덜란드		1		
오스트리아				2
홍콩				1

□ 한편 자산기준 상위 5개 보험사에 대한 산업자본 주주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위인 독일의 Allianz사는 총 52개의 주주 중 산업자본회사가 1개로 1.9%, 2위인 미국의 AIG사는 산업자본 회사가 7개로 7.9% 임.

○ 3위인 프랑스의 AXA사는 산업자본회사가 2개(3.2%), 4위인 미국의 Metlife사는 산업자본회사가 3개(4.4%), 5위인 영국의 Aviva사는 산업자본 회사가 1개(1.5%) 임.

□ 자산기준 상위 5개사에 대한 산업자본회사 주주의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위인 독일의 Allianz사는 1개의 산업자본회사가 1.17%의 지분을, 2위인 미국의 AIG사는 7개의 산업자본회사들이 총 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3위인 프랑스의 AXA사는 2개의 산업자본회사들이 총 1.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4위인 미국의 Metlife사는 3개의 산업자본회사들이 총 1.49%의 지분, 5위인 영국의 Aviva사는 1개의 산업자본회사가 0.2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표 III-6> 상위 5개사에 대한 산업자본 주주 지분율

(단위 : %)

보험회사	산업자본회사 주주	지분율	합계
ALLIANZ (IFRS)	BAYERNLB HOLDING AG via its funds	1.17	1.17
AIG GROUP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0.98	2.2
	FAYEZ SAROFIM & CO (UK) LIMITED via its funds	0.29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0.28	
	GENERAL ELECTRIC COMPANY via its funds	0.25	
	BRANDES WORLDWIDE HOLDINGS LP via its funds	0.17	
	KLINGENSTEIN FIELDS & CO LLC via its funds	0.12	
	BRISTOL, JOHN W & CO INC via its funds	0.11	
AXA (IFRS)	MATIPAR	1.06	1.1
	BAYERNLB HOLDING AG via its funds	0.11	
METLIFE INC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0.96	1.49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0.4	
	CAXTON ASSOCIATES, LLC via its funds	0.13	
AVIVA PLC (IFRS)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0.26	0.26

자료: OSIRIS

□ 세계 100대 보험사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자본의 보험사 소유는 미미한(앞에서 살펴본 은행의 경우에서 보다는 다소 많지만) 편임.

○ 세계 100대 보험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 중 4%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산업자본은 전체의 11.1%인 34개에 불과

○ 세계 100대 보험사 중 최대 산업자본 주주의 지분이 4% 이상인 보험사는 은행에서 보다는 많은 전체의 33%인 33개

○ 하지만 세계 100대 보험사 중 산업자본 지분 합계가 10% 이상인 보험사는 전체의 16%인 16개에 불과

□ 산업자본이 보험사의 주요 주주인 경우는 유럽대륙 국가 특히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았음.

나. 국가별 분석

□ 세계 100대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총 18개국인 것으로 나타남.

○ 100대 보험사를 가장 많이 소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34개사이며, 독일 11개, 영국 10개, 캐나다 7개, 일본 6개사 순임.

○ 산업자본 주주가 많은 국가로는 미국이 133개로 가장 많으며, 이탈리아 33개, 독일 24개, 캐나다 22개, 영국 12개 등의 순임.

○ 100대 보험사에 우리나라의 경우 1개 보험사가 들어 있는데 동사의 산업자본 주주는 6개 임.

<표 III-7> 국가별 세계 100대 보험사 보유 수 및 산업자본 주주 수

(단위: 개)

국가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버뮤다	스위스	스페인
보험사수	3	1	11	34	3	3	1
산업자본 주주수	3	1	24	133	1	10	8
국가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보험사수	1	10	2	7	6	2	7
산업자본 주주수	4	12	6	33	9	9	22
국가	프랑스	한국	호주	홍콩	기타	전체합	
보험수	4	1	3	1		100	
산업자본 주주수	12	6	9	4		306	

□ 주요 개별 국가의 산업자본의 선진보험사 소유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 보험사에 대한 개별 산업자본 지분 및 보험사당 산업자본의 총지분이 대부분 10% 미만에 집중되어 있음.

○ 개별 산업자본 지분의 경우 10%미만인 경우가 131개, 10~30%가 1개, 50%를 넘는 산업자본이 1개가 있음.

○ 또한 보험사당 산업자본의 총지분의 경우도, 10%미만이 27개 보험사, 10~30% 및 50% 이상이 각각 2개사와 1개사임.

○ 개별 보험사의 최대 산업자본 주주의 지분도 대부분 10%미만에 집중되어 있음.

□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보험사에 대한 개별 산업자본 지분 및 보험사당 산업자본의 총지분이 대부분 10% 미만에 집중되어 있음.

○ 개별 산업자본 지분의 경우 10%미만인 경우가 11개, 50%를 넘는 산업자본이 1개가 있음.

○ 또한 보험사당 산업자본의 총지분의 경우도, 10%미만이 8개 보험사, 50% 이상이 1개사임.

○ 개별 보험사의 최대 산업자본 주주의 지분을 살펴보면, 4%미만이 10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많음.

□ 독일은 보험사에 대한 개별 산업자본 지분의 경우, 10%미만인 경우가 16개, 10~30%, 30~50%, 50%이상이 각각 3개, 2개, 3개인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당 산업자본의 총지분의 경우엔, 10%미만이 3개 보험사, 50%이상이 4개 보험사 임.

○ 개별 보험사의 최대 산업자본 주주의 지분은 50%이상이 11개사 중 5개사로 많은 편임.

□ 프랑스는 보험사에 대한 개별 산업자본 지분의 경우, 10%미만인 경우가 10개, 30~50%가 2개인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당 산업자본의 총지분의 경우엔, 10%미만이 2개 보험사, 30~50%가 1개 보험사 임.

□ 오스트리아의 경우엔, 개별 산업자본 지분이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보험사당 산업자본의 총지분도 2개사가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개별 보험사의 최대 산업자본 주주의 지분을 살펴보면, 2개사 모두 최대 산업자본 지분이 50% 이상임.

□ 일본의 경우엔 미국과 같이 보험사에 대한 개별 산업자본 지분 및 보험사당 산업자본의 총지분이 대부분 10% 미만에 집중되어 있음.

○ 개별 보험사의 최대 산업자본 주주의 지분은 대부분 4% 미만임.

□ 국가별 분석을 요약하면 100대 보험사에 대한 개별 산업자본 주주의 지분율은 미국, 영국 등 영·미계의 국가보다는 독일, 오스트리

아, 네덜란드 등 여타 유럽국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개별 보험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지분합이 높은 국가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였음.

□ 세계 100대 보험사 중 산업자본 최대주주가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의 대부분도 유럽 국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보험회사의 산업자본 소유 현황

□ 이번 절에서는 세계 100대 보험사에 드는 선진 보험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 중 산업자본인 회사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함 (<부표 4> 참조).

○ 즉 이번 절에서는 보험사의 산업자본 지배 현황을 살펴보는 것임.

□ 자산기준 세계 100대 보험사의 전체 관계회사 수의 합계는 20,819개이며, 이 중 산업자본 관계회사는 15,073개로 전체의 72.4%를 차지

○ 다음으로 기타 금융회사(11.2%), 보험회사(8.3%), 은행(8.0%) 순 임.

□ 세계 100대 보험사의 총 20,819개 관계회사 중, 15,073개 산업자본에 대한 보험사의 지분율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산업자본 관계회사 15,073개 중, 보험사의 개별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가 11,716개로 77.6%를 차지

○ 보험사의 개별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율이 1% 미만인 경우가 7,892개(52.3%), 지분율이 1~5%인 경우가 3,320개로 22.0%, 지분율이 5~10% 인 경우가 504개로 3.3%를 차지

○ 보험사의 개별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율이 10~50%인 경우는 440개(2.9%) 이고,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는 2,390개(15.9%)임.

<표 III-8> 세계 100대 보험사의 관계회사 현황

(단위: 개, %)

		보험	은행	산업	금융	기타	합계
전체	합산	1,731	1,667	15,073	2,332	16	20,819
	비율	8.3	8.0	72.4	11.2	0.08	100.00
1% 미만	합산	272	1,112	7,892	340	3	9,619
	비율	15.71	66.71	52.36	14.58	18.75	46.20
1~5%	합산	121	411	3,320	231	4	4,087
	비율	6.99	24.66	22.03	9.91	25.00	19.63
5~10%	합산	31	56	504	61	0	652
	비율	1.79	3.36	3.34	2.62	0.00	3.13
10~50%	합산	88	26	440	172	0	726
	비율	5.08	1.56	2.92	7.38	0.00	3.49
50% 이상	합산	1,003	51	2,390	1,275	6	4,725
	비율	57.94	3.06	15.86	54.67	37.50	22.70
결측값	합산	216	11	527	253	3	1,010
	비율	12.48	0.66	3.50	10.85	18.75	4.85

주 : 자산기준 세계100대 상장회사이며 결측값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값
자료 : OSIRIS

□ 100대 개별 보험사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율합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개별 보험사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율합이 10% 미만인 보험사는 100개사 중 총 11개사로 나타남.

○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율합이 10~50%인 경우는 49개사이고, 50% 이상인 보험사는 36개사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Ⅲ-4> 세계 100대 보험사별 산업자본 지분율 분포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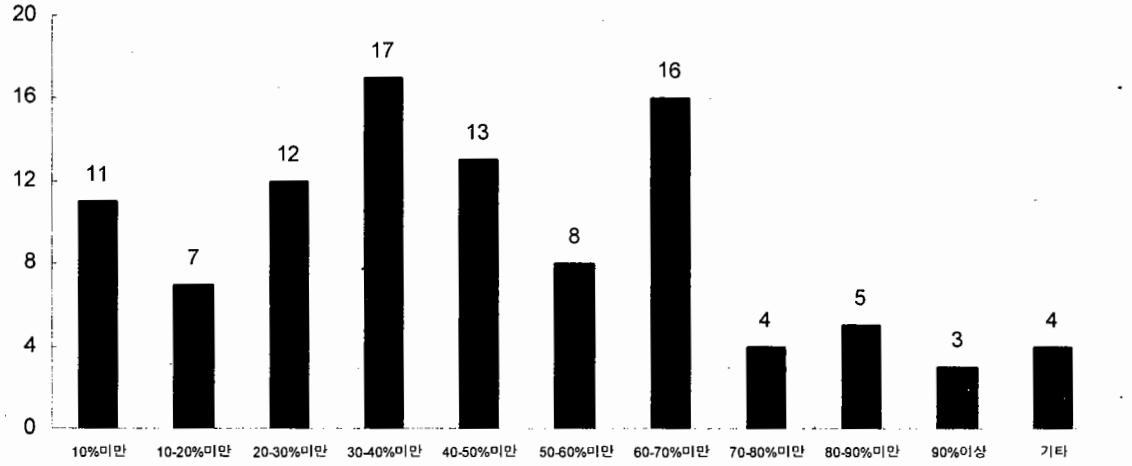

주 : 1) 자산기준 세계100대 상장회사
2) 기타는 n.a., 결측값
자료: OSIRIS

□ 한편 세계 100대 보험사의 종속회사(보험사의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 현황은 <표 Ⅲ-9>과 같음.

○ 100대 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총 산업자본 종속회사 수는 2,390개이고, 보험사당 평균 23.9개의 산업자본 종속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 자산기준 상위 5개 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 종속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위인 독일의 Allianz사는 총 133개의 종속회사 중 산업자본 회사가 31개로 23.3%, 2위인 미국의 AIG사는 총 803개의 종속회사 중 산업자본 회사가 20개로 31.7% 임.

○ 3위인 프랑스의 AXA사는 총 109개의 종속회사 중 산업자본 회사가 40개(36.7%), 4위인 미국의 Metlife사는 산업자본 회사가 14개(34.2%), 5위인 영국의 Aviva사는 산업자본 회사가 4개(44.4%) 임.

□ 한편 국가별 100대 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총 산업자본 종속회사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자본 종속회사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34개 보험사가 총 1,439개의 산업자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영국(417개), 독일(183개), 호주(172개), 프랑스(170개), 오스트리아(130개) 등의 순임.

□ 국가별로 보험사들의 산업자본 종속회사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산업자본 종속회사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네덜란드로 66.7%를 보이고 있음.

○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캐나다(64.6%), 오스트리아(63.1%), 미국(62.8%), 스페인(46.2%) 등의 순임.

<표 III-9> 국가별 보험사의 산업자본 종속회사 현황

(단위: 개, %)

국가 (보험사수)	총 종속회사수 (A)	총 산업자본 종속회사 수(B)	비율(B/A)
미국(34)	2,291	1,439	62.8
독일(11)	496	183	36.9
호주(3)	482	172	35.7
프랑스(4)	449	170	37.9
오스트리아(2)	206	130	63.1
영국(10)	253	78	30.8
이탈리아(7)	176	78	44.3
스위스(3)	194	59	30.4
캐나다(7)	48	31	64.6
남아공(3)	36	11	30.6
버뮤다(3	24	10	41.7
일본(6)	22	10	45.5
네덜란드(1)	9	6	66.7
스페인(1)	13	6	46.2
중국(2)	16	5	31.3
싱가포르(1)	7	1	14.3
홍콩(1)	3	1	33.3
한국(1)	0	0	0.0
전체합(100)	4,725	2,390	

□ 주요 보험회사의 산업자본 소유 현황을 요약하면 100대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됨.

□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계 국가들의 경우,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산업자본 종속회사 수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자본 종속회사 보유 비율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IV. 주요 선진국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 영국

□ 영국의 적격성심사제도는 지배력 또는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을 행사하는 모든 자(controller 및 approved person)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기준에 미달하면 주식매각, 의결권제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제정된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에 의거, 금융기관의 지배주주(controller) 및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경우 지속적인 사전·사후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를 받도록 되어 있음.

○ FSA는 금융업무중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이 필요한 27가지 업무기능을 FSA 규정집(Handbook)에 명시하고 동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FSA로부터 승인(approved)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금융회사 모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 비율 이하이더라도 금융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controller로 규정

<표 Ⅳ-1> **FSA가 분류한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

형태	통제기능의 종류
Governing functions	Director function, Non-executive director function, Chief executive function, Partner function, Director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function
Required functions	Apportionment and oversight function, EEA investment business oversight function, Compliance oversight function, Money laundering reporting function, Appointed actuary function
Systems and controls functions	Finance function, Risk assessment function, Internal audit function
Significant management functions	Significant management(designated investment business) function, Significant management(other business operations) function, Significant management(insurance underwriting) function, Significant management(financial resources) function, Significant management(settlement) function
Customer functions	Investment adviser function, Investment advisor(trainee) function, Corporate finance adviser function, Pension transfer specialist function, Adviser on syndicate participation at Lloyd's function, Customer trading function, Investment management function

자료 : Supervision 10.4, FSMA2000, www.fsa.co.uk

□ 이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들이 모든 여타 인가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업 인가권이 부여되지 않음.

○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의 하나로 지배권 획득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배주주로 하여금 유한책임 이상으로 도덕적 책임을 수용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사전 적격성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배주주가 적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FSA

는 주식매각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금융감독청(FSA)은 청렴성, 전문성, 건전성에 대해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 금융기관 경영진 및 임원의 경우도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청(FSA)은 ① 청렴성(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② 전문성(competence and capability) 및 ③ 건전성(financial soundness)에 대해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제 적격성 심사는 이 항목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 부적격자가 경영진 및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 금융감독청(FSA)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재임기간 중 적격성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청(FSA)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① 정직, 청렴, 평판(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 FSA는 신청자의 정직, 청렴, 평판을 평가하기 위해 세부 사항들을 검토

○ 주로 신청인이 형사범죄, 민사범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과거 금융규제 위반 경력,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으로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또 규제위반 등 문제가 있었던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

○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청이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검토사항들이 규제체계의 요구조건 및 기준 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고려하게 됨.

○ 예를 들어 형사범죄의 경우 FSA는 신청서를 case-by-case로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범죄의 심각성 및 범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피의자의 설명, 신청자의 금융회사에서의 역할과 범죄간 관련성, 범죄가 얼마나 오래전에 발생했는지, 피의자의 복권에 대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됨.

<원문>

FIT 2.1 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FIT 2.1.1 In determining a person's 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the FSA will have regard to matt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set out in FIT 2.1.3 G which may have arisen either in the United Kingdom or elsewhere. The FSA should be informed of these matters (see SUP 10.13.16 R), but will consider the circumstances only where relevant to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example, under FIT 2.1.3 G(1), conviction for a criminal offence will not automatically mean an application will be rejected. The FSA treats each candidate's application on a case-by-case basis, taking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offence, the explanation offered by the convicted person, the relevance of the offence to the proposed role, the passage of time since the offence was committed and evidence of the individual's rehabilitation.

FIT 2.1.2 In considering the matters in FIT 2.1.1 G, the FSA will look at whether the person's reputation might have an adverse impact upon the firm for which the controlled function is or is to be performed and at the person's responsibilities.

FIT 2.1.3 The matters referred to in FIT 2.1.1 G to which the FSA will have regard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1) whether the person has been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this must include, where relevant, any spent convictions excepted under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 (Exceptions) Order 1975 (see Articles 3 and 4 of the order); particular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offences of dishonesty, fraud, financial crime or an offence whether or not in the United Kingdom or other offences under legislation relating to companies, building societies,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credit unions, friendly societies, banking and or other financial services, insolvency, consumer credit companies, insurance, and consumer protection, money laundering, market manipulation or insider dealing;

(2) whether the person has been the subject of any adverse finding or any settlement in civil proceedings,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investment or other financial business, misconduct, fraud or the formation or management of a body corporate;

(3) whether the person has been the subject of, or interviewed in the course of, any existing or previous investigation or disciplinary proceedings, by the FSA, by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including a previous regulator), clearing houses and exchanges, professional bodies, or government bodies or agencies;

(4) whether the person is or has been the subject of any proceedings of a disciplinary or criminal nature, or has been notified of any potential proceedings or of any investigation which might lead to those proceedings;

(5) whether the person has contravened any of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the regulatory system or the equivalent standards or requirements of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including a previous regulator), clearing houses and exchanges, professionalbodies, or government bodies or agencies;

(6) whether the person has been the subject of any justified complaint relating to regulated activities;

(7) whether the person has been involved with a company, partnership or other organisation that has been refused registration, authorisation, membership or a licence to carry out a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or has had that registration, authorisation, membership or licence revoked, withdrawn or terminated, or has been expelled by a regulatory or government body;

(8) whether, as a result of the removal of the relevant licence, registration or other authority, the person has been refused the right to carry on a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requiring a licence, registration or other authority;

(9) whether the person has been a director, partner, or concerned in the management, of a business that has gone into insolvency, liquidation or administration while the person has been connected with that organisation or within one year of that connection;

(10) whether the person, or any business with which the person has been involved, has been investigated, disciplined, censured or suspended or criticised by a regulatory or professional body, a court or Tribunal,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11) whether the person has been dismissed, or asked to resign and resigned, from employment or from a position of trust, fiduciary appointment or similar;

(12) whether the person has ever been disqualified from acting as a director or disqualified from acting in any managerial capacity;

(13) whether, in the past, the person has been candid and truthful in all his dealings with any regulatory body and whether the person demonstrates a readiness and willingnes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with other legal, regulatory and profession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 ② 전문성(competence and capability) :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항목(다른 항목도 함께 고려)을 주로 고려 함.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수행 또는 수행하려는 지배·관리기능이 FSA의 Tranining and Competence(TC) 원전사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지배·관리기능을 수행할만한 경험과 교육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마약, 알콜중독 또는 다른 불법행위의 경력이 있을 경우엔, 동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지배·관리기능에 한해서 지속적인 수행 능력이 가능한지를 판단

<원문>

FIT 2.2 Competence and capability

FIT 2.2.1 In determining a person's competence and capability, the FSA will have regard to matt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whether the person satisfies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FSA's Training and Competence sourcebook (TC) in relation to the controlled function the person performs or is intended to perform;

(2) whether the person has demonstrated by experience and training that the person is able, or will be able if approved, to perform the controlled function.

FIT 2.2.2 A person may have been convicted of, or dismissed or suspended from employment for, drug or alcohol abuses or other abusive acts. This will be considered only in relation to a person's continuing ability to perform the particular controlled function for which the person is or is to be employed.

□ ③ 건전성(financial soundness) : 금융기관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항목(다른 항목도 함께 고려)을 주로 고려 함.

○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게 영국내외에서 현재에도 남아있거나 적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부채 또는 손해배상이 있는지의 여부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영국내외에서 과거에 파산신청을 하거나 파산청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파산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

○ FSA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지배주주 및 경영진 후보로 하여금 개인의 자산 및 부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지 않음.

* 또한, 동 후보자가 충분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자체로서 특정한 지배·관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적격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문>

FIT 2.3 Financial soundness

FIT 2.3.1 In determining a person's financial soundness, the FSA will have regard to any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whether the person has been the subject of any judgment debt or award, in the United Kingdom or elsewhere, that remains outstanding or was not satisfi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2) whether, in the United Kingdom or elsewhere, the person has made any arrangements with his creditors, filed for bankruptcy, had a bankruptcy petition served on him, been adjudged bankrupt, been the subject of a bankruptcy restrictions order (including an interim bankruptcy restrictions order), offered a bankruptcy restrictions undertaking, had assets sequestrated, or been involved in proceedings relating to any of these.

FIT 2.3.2 The FSA will not normally require the candidate to supply a statement of assets or liabilities. The fact that a person may be of limited financial means will not, in itself, affect his suitability to perform a controlled function.

□ 한편 아래 표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적격성 심사제도를 비교하고 있음.

<표 Ⅳ-2> 한국과 영국의 적격성심사 제도 비교

	한 국	영 국
심사 취지	주식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지속적 감독을 통해 금융회사와 주주간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고 금융회사(은행,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지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지
심사 대상	·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금융회사15%), 25%, 33% 보유자 · 금감위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 ·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의 전환대상자(정부 및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외)	· Part Ⅳ permission을 신청한 기업 및 지원자 · 영국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EEA기업 및 Treaty기업 · UCITS(양도성유가증권집합투자펀드) · 지배주주(controller) 및 적임자(approved)
심사 기준	·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 당해 금융회사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정직성, 청렴성 및 명성, 능력 및 적임성 그리고 재무적 건전성 등과 같이 공인된 자격(qualification), 경험 및 훈련(undergoing function or training), 전문능력(levelof competence)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적용 범위	· 제한적 적용 심사 대상은 주식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중심 단, 주식운용자에 대한 적격성평가 등과 같이 개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심사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초과보유주주를 제외한 다른 대상에 적용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광범위한 적용 통제기능을 수행하려는 모든 사람(기업)에 적용 * FSA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업무를 카테고리화하여 이를 수행하려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심사시 주안점	· 사후적 심사 중심 · 주식한도초과보유요건 평가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에 초점	· 사전적 및 사후적 심사 포괄 · 통제기능 수행 가능여부 평가시 각 상황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case by case basis) 심사
근거	· 은행법(시행령 및 세칙)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세칙), · 금융감독규정	· Fina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FSA Handbook · Explanatory Notes

자료: 김동환(2006)

2. 미국

□ 미국은 은행법을 통해 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 소수의 은행이 금융산업을 지배할 경우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여 은행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취득할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도 철저하게 배제

○ 감독당국은 적격성 심사시 독점적 지위가 발생하거나 은행업의 경쟁 제한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해당 국가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지 못한 외국 금융회사와 관련된 경우 등에는 적격성 승인을 거부

○ 은행 경영진 및 이사 선임에 대한 사전 승인은 모든 은행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인가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소유구조에 변화가 있는 은행, 혹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은행 등의 경우에만 적용

○ 이와 더불어 은행법에 명시적으로 국법은행 이사의 자격을 미국 시민권자로 제한

* 국법은행의 이사는 특별한 면제허가가 없는 한 재직 중 미국 국법은행 이사의 경우 자국민으로 국적을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수는 감독당국의 면제허가가 없는 한 은행이 소재한 주나 은행소재지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도록 규정

○ 또한 감독당국은 은행의 이사회가 경영진, 특정 이사 혹은 특정 주주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은행 임원 및 주요 주주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독을 실시

<참고문헌>

김동환 (2006),『산업·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김상조 (2006),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 보험지주회사법상의 자산운용규제를 중심으로」,『사회경제평론』, 제26호, pp. 7-37

안철경, 이상우 (2006), 「보험지주회사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보험개발원

이건범, 김우진 (2005),『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2005),「주요국의 은행관련 적격성 심사제도와 시사점」,『주간금융브리프』제14권 38호, 한국금융연구원, pp. 3-7

이병윤 (2006),「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금융연구』20권 별책, pp. 1-40

이병윤 (2006),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논리」,『BFL』제1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이병윤, 이건범, 한상일 (2003),『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재정경제부 (2004),「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

맵」, 보도자료

전성인 (2004),「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제도적 검토: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산업조직연구』, Vol.12, No.2

BankScope, CD-ROM, Fitch Ratings

FSA, FSA Handbook

OSIRIS, CD-ROM, Fitch Ratings

Santos, J. A. C. (1998), "Banking and Commerce: How Does the United States Compare to Other Countries?", *Economic Review* Vol. 34, No. 4, FRB of Cleveland

Saunders, A. (1994), "Banking and commerce: An overview of the public policy issu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8, pp. 231-254

Shull, B. (1994), "Banking and Commerc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8, pp. 255-270.

Walter, J. R. (2003), "Banking and Commerce: Tear Down This Wall?", *Economic Quarterly* Vol. 89/2,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pp. 7~31

<부표 1> 세계 100대 은행의 산업자본 주주 현황

(단위: %)

Mark	Bank Name	Cty	Shareholder Name	Direct	Total
1	Barclays Bank Plc	GB	합계	0	0
2	UBS AG	CH	합계	0	0
3	Kabushiki Kaisha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	JP	HERO AND CO	3.39	n.a.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1.81	n.a.
			BRANDES WORLDWIDE HOLDINGS LP via its funds	-	0.76
			합계	5.2	0.76
4	HSBC Holdings Plc	GB	FAYEZ SAROFIM & CO (UK) LIMITED via its funds	-	0.21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8
			합계	0	0.39
5	Citigroup Inc	US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66
			FAYEZ SAROFIM & CO (UK) LIMITED via its funds	-	0.52
			GENERAL ELECTRIC COMPANY via its funds	-	0.37
			ARONSON, JOHNSON & ORTIZ LP via its funds	-	0.31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	0.26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7
			합계	0	2.29
6	BNP Paribas	FR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25
			합계	0	0.25
7	Credit Agricole Group-Credit Agricole	FR	합계	0	0
8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The)	GB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32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6
			합계	0	0.58
9	Bank of America	US	MARSH & MCLENNAN	-	0.67

	Corporatio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	0.27
			FAYEZ SAROFIM & CO (UK) LIMITED via its funds	-	0.24
			GENERAL ELECTRIC COMPANY via its funds	-	0.20
			ARONSON, JOHNSON & ORTIZ LP via its funds	-	0.16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6
			합계	0	1.7
10	Mizuho Financial Group	JP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12
			합계	0	0.12
11	JP Morgan Chase & Co.	US	LYNAS CORPORATION LIMITED	5.58	n.a.
			FAYEZ SAROFIM & CO (UK) LIMITED via its funds	-	0.41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	0.22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15
			J & W SELIGMAN & CO INCORPORATED via its funds	-	0.14
			FLIPPIN, BRUCE & PORTER, INC via its funds	-	0.12
			합계	5.58	1.04
12	Deutsche Bank AG	DE	BAYERNLB HOLDING AG via its funds	-	0.12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1
			합계	0	0.23
13	ABN Amro Holding NV	NL	DE ZONNEWIJZER	>5.00	n.a.
			PACIFICA GROUP LIMITED	5.20	n.a.
			BRANDES WORLDWIDE HOLDINGS LP via its funds	-	1.29
			BAYERNLB HOLDING AG via its funds	-	0.15
			합계	>10.20	1.44
14	Credit Suisse Group	CH	BZ GRUPPE HOLDING AKTIENGESELLSCHAFT	1.36	n.a.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24
			PICTET via its funds	-	0.15
			합계	1.36	0.39
15	Societe Generale	FR	SANTUSA HOLDING S.L.	1.50	n.a.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	0.31
			BAYERNLB HOLDING AG via its funds	-	0.13
			합계	1.50	0.44
16	ING Bank NV	NL	합계	0	0
17	Santander Central Hispano Group-Banco Santander Central Hispano	ES	ADEPA SA SOCIEDAD GESTORA DE INSTITUCIONES DE INVERSION COLECTIVA	13.94	n.a.
			SOGEPLUS	2.00	n.a.
			BRANDES WORLDWIDE HOLDINGS LP via its funds	-	0.33
			ABENGOA S.A.	0.20	n.a.
			INVERSIONES ALEROE SL.	0.19	n.a.
			BANIF GESTION SOCIEDAD ANONIMA SOCIEDAD GESTORA DE INSTITUCIONES DE INVERSION COLECTIVA via its funds	-	0.12
			CORPORACION MASAVEU SA	0.12	n.a.
			BAYERNLB HOLDING AG via its funds	-	0.11
			CARTIVAL SA	0.11	n.a.
			TELSEN SA	0.10	n.a.
			LATIMER INVERSIONES SL.	0.09	n.a.
			PUENTEPUMAR SL.	0.07	n.a.
			CRONJE SOCIEDAD LIMITADA.	0.06	n.a.
			SIMANCAS SA	0.06	n.a.
			COMYFISA S.A.	0.05	n.a.
			INVERSIONES AMILEA S.L.	0.04	n.a.
			INVERSIONES DALIEL S.L.	0.04	n.a.
			INVERSIONES EIDA S.L.	0.04	n.a.

			INVERSIONES ILEA S.L.	0.04	n.a.
			INVERSIONES NOVEMBER SL.	0.04	n.a.
			PUENTE DE SAN MIGUEL SA	0.02	n.a.
			INVERSIONES NAIRA SICAV SA	0.01	n.a.
			MATAPEGAS S.L.	0.01	n.a.
			MUELLE 6 S.L.	0.01	n.a.
			TUDELA VEGUIN SA	0.01	n.a.
			합계	17.25	0.56
18	HBOS Plc	GB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5
			합계	0	0.25
19	UniCredito Italiano SpA	IT	CARIMONTE HOLDING SPA	4.30	n.a.
			AZIMUT HOLDING	<2.00	n.a.
			합계	<6.30	0
20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JP	합계	0	0
21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The) - ICBC	CN	합계	0	0
22	Fortis Bank	BE	합계	0	0
23	Groupe Caisse d'Epargne	FR	REBELCO	0.40	0.40
			합계	0.40	0.40
24	Dexia	BE	CAISSE DES DEPOTS DEVELOPPEMEN	10.08	n.a.
			합계	10.08	0
25	Rabobank Group-Rabobank Nederland	NL	합계	0	0
26	Agricultural Bank of China	CN	합계	0	0
27	Bank of China Limited	CN	RBS	9.61	n.a.
			합계	9.61	0
28	China Construction Bank Corporation	CN	합계	0	0
29	Dresdner Bank AG	DE	합계	0	0
30	Norinchukin Bank (The)	JP	합계	0	0

31	Lloyds TSB Group Plc	GB	GERRARD LIMITED	0.38	n.a.
			합계	0.38	0
32	Commerzbank AG	DE	SANTUSA HOLDING S.L.	3.72	n.a.
			합계	3.72	0
33	Wachovia Corporation	US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	0.31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3
			FLIPPIN, BRUCE & PORTER, INC via its funds	-	0.15
			GENERAL ELECTRIC COMPANY via its funds	-	0.12
			합계	0	0.81
34	Credit Mutuel Centre Est Europe	FR	합계	0	0
35	Wells Fargo & Company	US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22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	0.16
			ARONSON, JOHNSON & ORTIZ LP via its funds	-	0.14
			합계	0	0.52
36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DE	합계	0	0
37	Deutsche Zentral-Genossenschaftsbank-DZ Bank AG	DE	합계	0	0
38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	ES	TELEFONICA SA	1.06	n.a.
			BRANDES WORLDWIDE HOLDINGS LP via its funds	-	0.88
			GRELAR GALICIA S. A.	0.17	n.a.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4
			CORPORACION INDUSTRIAL Y DE SERVICIOS SOCIEDAD LIMITADA.	0.11	n.a.
			TALPOS 91 SL	0.07	n.a.
			ELGUERO SA	0.06	n.a.
			BELEGAR INVERSIONES SL.	0.04	n.a.
			EIRAS DE INVERSIONES S.A.	0.04	n.a.
			GRUPO VIPS SA	0.02	n.a.

			LANGARICA SA	0.02	n.a.
			MANSUELA SOCIEDAD LIMITADA.	0.02	n.a.
			AZATRA SL	0.01	n.a.
			DEHESA FRIAS SL	0.01	n.a.
			FEDERICO LIPPERHEIDE WICKE SL	0.01	n.a.
			INVERSIONES LUZMELA 88 SA	0.01	n.a.
			ONDARGAIN SOCIEDAD LIMITADA.	0.01	n.a.
			SAN PREGE SOCIEDAD LIMITADA.	0.01	n.a.
			SOFERMON SL	0.01	n.a.
			SOFICAR SA	0.01	n.a.
			SOFIM INVERSIONES SA	0.01	n.a.
			TARULL SA	0.01	n.a.
			합계	1.71	1.02
39	Bayerische Landesbank	DE	BAYERNLB HOLDING AG	100.0	100.0
			합계	100.0	100.0
40	Royal Bank of Canada RBC	CA	LETKO BROSSEAU & ASSOC. INC via its funds	-	0.21
			3Q HOLDINGS LIMITED via its funds	-	0.19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2
			합계	0	0.52
41	Danske Bank A/S	DK	A.P. MOLLER - MAERSK A/S	20.00	n.a.
			REALDANIA	>10.0	n.a.
			INVESTERINGSFORENINGEN SYDINVEST INTERNATIONAL via its funds	-	0.21
			합계	>30.0	0.21
42	KBC Group-KBC Groep NV/ KBC Groupe SA	BE	ALMANCORA SCA	-	20.70
			MAATSCHAPPIJ VOOR ROEREND BEZIT VAN DE BOERENBOND	11.61	n.a.
			CERA	6.40	n.a.
			PLASTICHE	0.72	n.a.

			DE EIK	0.53	n.a.
			3 D NV	0.52	n.a.
			PULA SAK	0.50	n.a.
			VRIJ EN VRANK	0.47	n.a.
			SETAS SA	0.41	n.a.
			BELUVAL	0.23	n.a.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22
			RAINYVE	0.22	n.a.
			SEGIMEF CVA	0.18	n.a.
			VAN HOLSBEEK NV	0.16	n.a.
			CECO	0.15	n.a.
			PARLAPAR SA	0.15	n.a.
			SOPAVER SA	0.13	n.a.
			CGS	0.12	n.a.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1
			CECAN INVEST	0.10	n.a.
			KREGFIMA	0.10	n.a.
			MIDELCO	0.10	n.a.
			NIRAMORE INT. SA	0.10	n.a.
			COLVER	0.09	n.a.
			COPPERFIELD INT. SA	0.08	n.a.
			RODEP	0.08	n.a.
			SERENO SA	0.08	n.a.
			MEANDRE SA	0.07	n.a.
			ALGIMO	0.06	n.a.
			ROBOR	0.06	n.a.
			FORALIM SA	0.05	n.a.
			LUTHERICK	0.05	n.a.
			PROMARK NV	0.05	n.a.
			QRS	0.04	n.a.
			CHRISTEYNS	0.03	n.a.
			MERALPA	0.03	n.a.

			SPERO	0.03	n.a.
			TRADISUD	0.03	n.a.
			COBETON	0.02	n.a.
			EDILU	0.02	n.a.
			FROU-FROU	0.02	n.a.
			GUY J KREUSCH EN CO	0.02	n.a.
			IBERVEST	0.02	n.a.
			INKAO - INVEST	0.02	n.a.
			BEVEK 21 COM VLAM 21	0.01	n.a.
			FINAMI HOLDING SA	0.01	n.a.
			LYCOL	0.01	n.a.
			MERCURIUS INVEST	0.01	n.a.
			VAN VUCHELEN EN CO CVA	0.01	n.a.
			WILIG	0.01	n.a.
			합계	23.91	21.03
43	Nordea Bank AB	SE	합계	0	0
44	Resona Holdings, Inc	JP	합계	0	0
45	Washington Mutual Inc.	US	합계	0	0
46	Groupe Banques Populaires	FR	합계	0	0
47	Banca Intesa SpA	IT	LOMBARDO GROUP	-	4.70
			BRANDES WORLDWIDE HOLDINGS LP via its funds	-	0.23
			합계	0	4.93
48	WestLB AG	DE	LAND NORDRHEIN-WESTFALEN	17.07	n.a.
			LAND NRW	0.79	n.a.
			LANDSCHAFTSVERBAND RHEINLAND	0.35	n.a.
			LANDSCHAFTSVERBAND WESTFALEN-LIPPE	0.35	n.a.
			합계	18.56	0
49	San Paolo IMI	IT	COMPAGNIA DI SAN PAOLO	7.33	n.a.
			GIOVANNI AGNELLI & C.	6.28	n.a.

			SANTUSA HOLDING S.L.	4.50	n.a.
			LA PETROLIFERA ITALO RUMENA SPA	0.32	n.a.
			합계	18.43	
50	Toronto Dominion Bank	CA	JARISLOWSKY FRASER LTD	3.66	n.a.
			MCLEAN BUDDEN LTD.	1.50	n.a.
			AIC LTD	1.09	n.a.
			CONNOR, CLARK & LUNN INVESTMENT MANAGEMENT LTD	1.09	n.a.
			3Q HOLDINGS LIMITED via its funds	-	0.41
			LETKO BROSSEAU & ASSOC. INC via its funds	-	0.32
			DYNAMIC HOLDINGS INC via its funds	-	0.30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7
			BEUTEL GOODMAN & COMPANY LTD via its funds	-	0.13
			합계	7.34	1.43
51	National Australia Bank	AU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0
			SUNRISE PARTNERS LIMITED PARTNERSHIP via its funds	-	0.19
			DJERRIWARRH INVESTMENTS LIMITED via its funds	-	0.15
			MILTON CORPORATION LIMITED via its funds	-	0.14
			합계	0	0.68
52	Eurohypo AG	DE	합계	0	0
53	Depfa Bank Plc	IE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1.28
			FPM FRANKFURT PERFORMANCE MANAGEMENT AG via its funds	-	0.37
			INVESTERINGSFORENINGEN SYDINVEST INTERNATIONAL via its funds	-	0.11
			합계	0	1.76
54	Bank of Nova Scotia (The) -	CA	3Q HOLDINGS LIMITED via its	-	0.28

	SCOTIABANK		funds		
			LETKO BROSSEAU & ASSOC. INC via its funds	-	0.17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5
			합계	0	0.6
55	Banque de Montreal-Bank of Montreal	CA	LETKO BROSSEAU & ASSOC. INC via its funds	-	0.57
			BLUEWATER INVESTMENT MANAGEMENT INC via its funds	-	0.27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8
			BEUTEL GOODMAN & COMPANY LTD via its funds	-	0.10
			합계	0	1.12
56	Shinkin Central Bank	JP	합계	0	0
57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AU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1
			MILTON CORPORATION LIMITED via its funds	-	0.13
			합계	0	0.34
58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AB	SE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1
			합계	0	0.11
59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CIBC	CA	LETKO BROSSEAU & ASSOC. INC via its funds	-	0.49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7
			합계	0	0.66
60	Nord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NORD/LB	DE	합계	0	0
61	HSH Nordbank AG	DE	WESTLB BETEILIGUNGSHOLDING GMBH	26.58	n.a.
			합계	26.58	0
62	Standard Chartered Plc	GB	GLEN HOLDINGS (PTE) LIMITED	4.60	n.a.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2
			합계	4.60	0.12

63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AU	WOTIF.COM HOLDINGS LIMITED	5.05	n.a.
			PSS BOARD	0.53	n.a.
			JAMES FIELDING GROUP via its funds	-	0.21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1
			합계	5.58	0.42
64	Caja de Ahorros y Pensiones de Barcelona, LA CAIXA	ES	합계	0	0
65	US Bancorp	US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1.69
			ARONSON, JOHNSON & ORTIZ LP via its funds	-	0.48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	0.41
			SOUND SHORE MANAGEMENT INC via its funds	-	0.27
			BAHL & GAYNOR INC via its funds	-	0.25
			MAIRS AND POWER INC via its funds	-	0.20
			GENERAL ELECTRIC COMPANY via its funds	-	0.19
			WALLACE R WEITZ & COMPANY INC via its funds	-	0.13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via its funds	-	0.12
			합계	0	3.74
66	Svenska Handelsbanken	SE	AB INDUSTRIVARDEN	10.30	n.a.
			AFA	2.10	n.a.
			L E LUNDBERGFRETAGEN AB	1.30	n.a.
			BRUMMER & PARTNERS AB via its funds	-	0.17
			합계	13.7	0.17
67	Westpac Banking Corporation	AU	PSS BOARD	0.33	n.a.
			MILTON CORPORATION LIMITED	0.28	n.a.
			MILTON CORPORATION LIMITED via its funds	-	0.28

			JAMES FIELDING GROUP via its funds	-	0.21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0
			DJERRIWARRH INVESTMENTS LIMITED via its funds	-	0.15
			합계	0.61	0.84
68	Landesbank Hessen-Thueringen Girozentrale - HELABA	DE	합계	0	0
69	Gruppo Monte dei Paschi di Siena-Banca Monte dei Paschi di Siena SpA	IT	UNICOOP FIRENZE SOCIETA' COOPERATIVA IN SIGLA UNICOOP FIRENZE SC	2.43	n.a.
			합계	2.43	0
70	Kookmin Bank	KR	GOLDMAN SACHS & CO	1.14	n.a.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30
			LETKO BROSSEAU & ASSOC. INC via its funds	-	0.23
			EMERGING MARKETS INVESTORS CORPORATION via its funds	-	0.19
			NEWGATE, LLP via its funds	-	0.15
			PICTET via its funds	-	0.15
			GENERAL ELECTRIC COMPANY via its funds	-	0.12
			합계	1.14	1.14
71	Erste Bank der Oesterreichischen Sparkassen AG	AT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3
			합계	0	0.13
72	Hypo Real Estate Holding AG	DE	BRANDES WORLDWIDE HOLDINGS LP via its funds	-	0.39
			PICTET via its funds	-	0.34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27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4
			합계	0	1.24
73	Bank of Communications Co. Ltd	CN	합계	0	0

74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US	WALLACE R WEITZ & COMPANY INC	1.87	n.a.
			BASSWOOD PARTNERS LLC	1.11	n.a.
			합계	2.98	0
75	Sumitomo Trust & Banking Company Ltd	JP	KUBOTA CORPORATION	1.43	n.a.
			SUMITOMO REALTY & DEVELOPMENT CO LTD	1.43	n.a.
			THE SUMITOMO WAREHOUSE CO LTD	1.08	n.a.
			합계	3.94	0
76	LBB Holding AG-Landesbank Berlin Holding AG	DE	NORDDEUTSCHE INVESTITIONEN BETEILIGUNGSGESELLSCHAFT MBH	10.00	n.a.
			합계	10.00	0
77	Deutsche Postbank AG	DE	DEUTSCHE POST AG	50.00	n.a.
			DEUTSCHE POSTBANK BETEILIGUNGS GMBH	16.77	n.a.
			DR. JENS EHRHARDT KAPITAL AKTIENGESELLSCHAFT via its funds	-	0.29
			합계	66.77	0.29
78	DnB Nor ASA	NO	NORINGS- OG HANDELSDEPARTEMENTET	34.00	34.00
			ORKLA ASA	0.90	n.a.
			SPAREBANKSTIFTELSEN DNB NOR	-	0.05
			합계	34.9	34.05
79	Shinhan Financial Group	KR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3
			합계	0	0.23
80	Capitalia SpA	IT	SPA DI ANTONIO ANGELUCCI SAPA SCA	-	2.11
			PIRELLI & C. S.P.A.	1.92	n.a.
			CINECITTA' CENTRO COMMERCIALE - SOCIETA' PER AZIONI	1.83	n.a.
			KELUMA SRL	1.14	n.a.
			ALGEMENE BANK NEDERLAND B.V.	1.09	n.a.

			COLACEM S.P.A.	1.00	n.a.
			FININVEST SPA	1.00	n.a.
			IMMSI SPA	0.43	n.a.
			OMNIAHOLDING	0.43	n.a.
			FINELDO S.P.A.	0.40	n.a.
			ITALMOBILIARE S.P.A.	0.25	n.a.
			SIREFID SPA	0.15	n.a.
			DE AGOSTINI -	-	0.11
			합계	9.64	2.22
81	Allied Irish Banks plc	IE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27
			합계	0	0.27
82	Bank of Ireland	IE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14
			합계	0	0.14
83	Swedbank AB	SE	BRUMMER & PARTNERS AB via its funds	-	0.18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12
			합계	0	0.3
84	State Bank of India	IN	PICTET via its funds	-	0.31
			합계	0	0.31
85	Northern Rock Plc	GB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53
			STANDARD LIFE GROUP LIMITED via its funds	-	0.27
			합계	0	0.8
86	National City Corporation	US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	0.40
			PARTHENON LLC. via its funds	-	0.15
			BLACKROCK INC via its funds	-	0.14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via its funds	-	0.11
			합계	0	0.8
87	Nykredit Realkredit A/S	DK	합계	0	0
88	DekaBank Deutsche Girozentrale	DE	GLB GMBH & CO. OHG	49.17	n.a.

			SPARKASSENVERBAND NIEDERSACHSEN	-	6.46
			SPARKASSEN- UND GIROVERBAND RHEINLAND-PFALZ	-	3.20
			합계	49.17	9.66
89	Caja Madrid-Caja de Ahorros y Monte de Piedad de Madrid	ES	합계	0	0
90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 NACF	KR	합계	0	0
91	Woori Bank	KR	합계	0	0
92	Golden West Financial Corp	US	합계	0	0
93	Standard Bank Group Limited	ZA	OLD MUTUAL GROUP	11.15	n.a.
			TUTUWA PARTICIPANTS	7.60	n.a.
			LIBERTY GROUP LIMITED (IFRS)	3.40	n.a.
			INVESTMENT SOLUTION	3.10	n.a.
			SANLAM GROUP	2.80	n.a.
			METLIFE	1.10	n.a.
			합계	29.15	0
94	Raiffeisen Zentralbank Oesterreich AG - RZB	AT	R-LANDESBANKEN-BETEILIGUNG GMBH	81.19	n.a.
			RWA RAIFFEISEN WARE AUSTRIA AKTIENGESELLSCHAFT	2.56	n.a.
			RAIFFEISENLANDESBANK NIEDEROESTERREICH-WIEN AG	0.61	n.a.
			RLB- STMK HOLDING REGISTRIERTE GENOSSENSCHAFT MIT BESCHRAENKTER HAFTUNG	-	0.19
			합계	84.36	0.19
95	BB&T Corporation	US	EATON VANCE CORP via its funds	-	0.37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via its funds	-	0.29
			BLACKROCK INC via its funds	-	0.11
			합계	0	0.77

96	Mitsui Trust Holdings, Inc	JP	TOBU RAILWAY CO LTD	1.62	n.a.
			NAGOYA RAILROAD CO LTD	1.12	n.a.
			합계	2.74	0
97	DBS Bank	SG	합계	0	0
98	Bank Nederlandse Gemeenten NV, BNG	NL	NED. GEMEENTEN EN PROVINCIES EN WATERSCHAP	50.00	n.a.
			합계	50.00	0
99	Banco do Brasil S.A.	BR	PICTET via its funds	-	0.11
			합계	0	0.11
100	Shoko Chukin Bank, Ltd	JP	합계	0	0

주: 1) 세계 100대은행 선정은 「The Banker」 2006년 7월 자산총계 순위임.

2) 국가(Cty)는 AT(Austria), AU(Australia), BE(Belgium), BR(Brazil), CA(Canada), CH(Switzerland), CN(China-reople's Rep), DE(Germany), DK(Denmark), ES(Spain), FR(France), GB(United Kingdom), IE(Ireland), IN(India), IT(Italy), JP(Japan), KR(Korea), NL(Netherlands), NO(Norway), NZ(New Zealand), SG(Singapore), SE(Sweden), US(USA), ZA(South Africa)

자료: BankScope

<부표 2> 세계 100대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현황

(단위: 개, %)

Mark	Bank Name	Cty	A	B	C	D	E	F	G
1	Barclays Bank Plc	GB	5	18	17	10	37	87	42.5
2	UBS AG	CH	2	21	65	14	40	142	28.2
3	Kabushiki Kaisha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	JP	0	10	2	2	2	16	12.5
4	HSBC Holdings Plc	GB	0	9	4	3	12	28	42.9
5	Citigroup Inc	US	24	77	496	319	657	1573	41.8
6	BNP Paribas	FR	16	71	70	107	388	652	59.5
7	Credit Agricole Group-Credit Agricole	FR	0	2	1	1	1	5	20.0
8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The)	GB	1	8	0	0	7	16	43.8
9	Bank of America Corporation	US	18	35	338	164	595	1150	51.7
10	Mizuho Financial Group	JP	0	1	0	0	0	1	0.0
11	JP Morgan Chase & Co.	US	4	6	19	19	59	107	55.1
12	Deutsche Bank AG	DE	1	33	111	63	282	490	57.6
13	ABN Amro Holding NV	NL	1	2	4	1	2	10	20.0
14	Credit Suisse Group	CH	26	9	5	5	20	65	30.8
15	Societe Generale	FR	7	57	29	44	169	306	55.2
16	ING Bank NV	NL	2	24	27	22	86	161	53.4
17	Santander Central Hispano Group-Banco Santander Central Hispano	ES	14	46	28	34	63	185	34.1
18	HBOS Plc	GB	1	5	4	4	15	29	51.7
19	UniCredito Italiano SpA	IT	1	20	7	6	5	39	12.8
20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JP	0	13	10	15	16	54	29.6
21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The) - ICBC	CN	0	3	0	1	1	5	20.0
22	Fortis Bank	BE	2	11	34	23	64	134	47.8
23	Groupe Caisse d'Epargne	FR	3	25	12	23	109	172	63.4
24	Dexia	BE	12	32	56	34	103	237	43.5
25	Rabobank Group-Rabobank Nederland	NL	0	13	11	7	37	68	54.4
26	Agricultural Bank of China	CN	0	1	0	1	0	2	0.0
27	Bank of China Limited	CN	2	16	4	3	5	30	16.7
28	China Construction Bank Corporation	CN	0	2	1	0	0	3	0.0

29	Dresdner Bank AG	DE	0	9	1	1	22	33	66.7
30	Norinchukin Bank (The)	JP							
31	Lloyds TSB Group Plc	GB	3	5	0	2	4	14	28.6
32	Commerzbank AG	DE	0	14	4	8	39	65	60.0
33	Wachovia Corporation	US	2	3	30	11	48	94	51.1
34	Credit Mutuel Centre Est Europe	FR	0	3	1	2	6	12	50.0
35	Wells Fargo & Company	US	19	19	141	329	139	647	21.5
36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DE	0	8	5	10	47	70	67.1
37	Deutsche Zentral-Genossenschaftsbank-DZ Bank AG	DE	1	10	10	0	31	52	59.6
38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	ES	17	38	44	54	155	308	50.3
39	Bayerische Landesbank	DE	0	5	9	2	29	45	64.4
40	Royal Bank of Canada RBC	CA	0	10	9	2	351	372	94.4
41	Danske Bank A/S	DK	1	3	6	1	14	25	56.0
42	KBC Group-KBC Groep NV/ KBC Groupe SA	BE	12	18	4	4	9	47	19.1
43	Nordea Bank AB	SE	3	6	0	0	3	12	25.0
44	Resona Holdings, Inc	JP	0	3	2	1	3	9	33.3
45	Washington Mutual Inc.	US	0	1	4	1	1	7	14.3
46	Groupe Banques Populaires	FR	0	26	3	91	21	141	14.9
47	Banca Intesa SpA	IT	1	14	11	5	20	51	39.2
48	WestLB AG	DE	0	12	13	9	46	80	57.5
49	San Paolo IMI	IT	0	18	7	6	11	42	26.2
50	Toronto Dominion Bank	CA	0	4	7	2	483	496	97.4
51	National Australia Bank	AU	0	1	4	1	5	11	45.5
52	Eurohypo AG	DE	0	1	9	1	13	24	54.2
53	Depfa Bank Plc	IE	0	4	6	0	16	26	61.5
54	Bank of Nova Scotia (The) - SCOTIABANK	CA	1	10	10	1	363	385	94.3
55	Banque de Montreal-Bank of Montreal	CA	1	2	11	6	210	230	91.3
56	Shinkin Central Bank	JP	0	1	4	0	3	8	37.5
57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AU	11	6	33	24	51	125	40.8
58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AB	SE	2	9	11	4	19	45	42.2
59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CIBC	CA	0	4	10	3	248	265	93.6
60	Norddeutsche Landesbank	DE	2	8	8	6	74	98	75.5

	Girozentrale NORD/LB								
61	HSH Nordbank AG	DE	0	11	4	6	46	67	68.7
62	Standard Chartered Plc	GB	0	7	5	2	5	19	26.3
63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AU	1	3	5	6	7	22	31.8
64	Caja de Ahorros y Pensiones de Barcelona, LA CAIXA	ES	5	6	7	12	26	56	46.4
65	US Bancorp	US	5	6	6	4	31	52	59.6
66	Svenska Handelsbanken	SE	2	5	7	3	16	33	48.5
67	Westpac Banking Corporation	AU	0	3	17	6	22	48	45.8
68	Landesbank Hessen-Thueringen Girozentrale - HELABA	DE	0	5	6	2	54	67	80.6
69	Gruppo Monte dei Paschi di Siena-Banca Monte dei Paschi di Siena SpA	IT	3	12	7	5	36	63	57.1
70	Kookmin Bank	KR	1	3	7	1	5	17	29.4
71	Erste Bank der Oesterreichischen Sparkassen AG	AT	2	13	6	13	21	55	38.2
72	Hypo Real Estate Holding AG	DE	0	4	11	2	33	50	66.0
73	Bank of Communications Co. Ltd	CN	2	0	6	3	41	52	78.8
74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US	14	2	15	20	59	110	53.6
75	Sumitomo Trust & Banking Company Ltd	JP	0	3	4	4	8	19	42.1
76	LBB Holding AG-Landesbank Berlin Holding AG	DE	1	5	13	5	157	181	86.7
77	Deutsche Postbank AG	DE	2	5	9	4	22	42	52.4
78	DnB Nor ASA	NO	2	7	4	4	14	31	45.2
79	Shinhan Financial Group	KR	1	2	1	2	4	10	40.0
80	Capitalia SpA	IT	1	8	8	8	27	52	51.9
81	Allied Irish Banks plc	IE	1	4	8	6	24	43	55.8
82	Bank of Ireland	IE	0	2	1	3	4	10	40.0
83	Swedbank AB	SE	1	6	2	1	6	16	37.5
84	State Bank of India	IN	1	16	2	2	2	23	8.7
85	Northern Rock Plc	GB	1	0	2	2	15	20	75.0
86	National City Corporation	US	3	2	40	72	53	170	31.2
87	Nykredit Realkredit A/S	DK	1	2	0	3	4	10	40.0
88	DekaBank Deutsche Girozentrale	DE	0	7	5	2	17	31	54.8
89	Caja Madrid-Caja de Ahorros y	ES	1	3	3	9	36	52	69.2

	Monte de Piedad de Madrid								
90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 NACF	KR	0	0	1	1	14	16	87.5
91	Woori Bank	KR	0	2	1	1	1	5	20.0
92	Golden West Financial Corp	US	0	1	2	0	1	4	25.0
93	Standard Bank Group Limited	ZA	4	32	15	11	16	78	20.5
94	Raiffeisen Zentralbank Oesterreich AG - RZB	AT	2	14	15	21	41	93	44.1
95	BB&T Corporation	US	2	7	16	12	37	74	50.0
96	Mitsui Trust Holdings, Inc	JP	0	1	0	0	0	1	0.0
97	DBS Bank	SG	0	1	10	0	4	15	26.7
98	Bank Nederlandse Gemeenten NV, BNG	NL	0	0	2	3	4	9	44.4
99	Banco do Brasil S.A.	BR	0	4	0	5	3	12	25.0
100	Shoko Chukin Bank, Ltd	JP	0	0	0	0	0	0	0
Total			277	1,059	2,045	1,778	6,175	11,334	54.5

주: 1) 세계 100대은행 선정은 「The Banker」 2006년 7월 자산총계 순위임.

2) 각 항목은 A(Insurance company), B(Bank), C(Mutual & Pension fund/Trust/Nominee), D(Financial company,Foundation), E(Industrial company), F(50%이상=A+B+C+D+E), G(산업자본비율=(E/F)×100)

3) 국가(Cty)는 AT(Austria), AU(Australia), BE(Belgium), BR(Brazil), CA(Canada), CH(Switzerland), CN(China-reople's Rep), DE(Germany), DK(Denmark), ES(Spain), FR(France), GB(United Kingdom), IE(Ireland), IN(India), IT(Italy), JP(Japan), KR(Korea), NL(Netherlands), NO(Norway), NZ(New Zealand), SG(Singapore), SE(Sweden), US(USA), ZA(South Africa)

자료: BankScope

<부표 3> 세계 100대 보험사의 주주 현황

(단위: 개, %)

순위	보험회사	국가명	주주	보험	은행	산업	금융	기타	산업비율	지분현황
1	ALLIANZ AKTIENGESELLSCHAFT	DE	52	3	32	1	14	2	1.9	0.1
2	AIG	US	88	6	33	7	40	2	8.0	2.2
3	AXA	FR	62	10	31	2	16	3	3.2	1.1
4	METLIFE INC	US	69	6	22	3	37	1	4.3	1.5
5	AVIVA PLC	GB	67	7	21	1	18	20	1.5	0.3
6	GENERALI ASSICURAZIONI SPA	IT	46	5	25	6	9	1	13.0	2.7
7	AEGON NV	NL	1	0	0	1	0	0	100.0	22.4
8	PRUDENTIAL PLC	GB	84	4	29	1	20	30	1.2	0.2
9	LEGAL & GENERAL GROUP PLC	GB	72	7	25	1	17	22	1.4	0.2
10	ZURICH FINANCIAL SERVICES	CH	55	2	20	5	16	12	9.1	1.7
11	HARTFORD FINANCIAL SERVICES	US	21	1	7	1	12	0	4.8	1.6
12	CNP ASSURANCES	FR	23	1	11	3	6	2	13.0	35.6
13	MANULIFE FINANCIAL CORP	CA	30	4	10	1	14	1	3.3	0.1
14	MUNICH RE GROUP	DE	46	3	27	3	12	1	6.5	0.6
15	STANDARD LIFE PLC	GB	14	0	1	0	1	12	0.0	
16	BERKSHIRE HATHAWAY INC	US	36	1	8	5	18	4	13.9	2.9
17	SWISS REINSURANCE COMPANY	CH	36	2	16	3	14	1	8.3	1.0
18	ALLSTATE CORPORATION (THE)	US	96	7	29	10	49	1	10.4	2.4
19	SUN LIFE FINANCIAL INC	CA	49	3	14	6	25	1	12.2	2.6
20	ALLIANZ LEBENSVERSICHERUNGS	DE	5	1	1	2	0	1	40.0	91.0
21	OLD MUTUAL PLC	GB	55	8	18	2	14	13	3.6	3.9
22	ERGO VERSICHERUNGSGRUPPE	DE	2	1	1	0	0	0	0.0	
23	AGF (GROUP)	FR	25	3	11	0	9	2	0.0	
24	PRINCIPAL FINANCIAL GROUP INC	US	63	8	22	6	27	0	9.5	2.4
25	LINCOLN NATIONAL CORPORATION	US	108	10	42	9	46	1	8.3	4.1
26	MILLEA HOLDINGS INC	JP	41	1	22	2	16	0	4.9	3.0
27	T&D HOLDINGS INC	JP	24	3	13	2	6	0	8.3	3.2
28	NATIONWIDE FINANCIAL	US	1	0	0	1	0	0	100.0	94.4
29	GREAT-WEST LIFE ASSURANCE	CA	3	3	0	0	0	0	0.0	
30	ST PAUL TRAVELERS	US	17	0	6	0	11	0	0.0	
31	AMB GENERALI HOLDING AG	DE	28	14	5	5	3	1	17.9	60.1
32	GENWORTH FINANCIAL INC	US	12	1	3	0	8	0	0.0	

33	POWER CORPORATION OF CANADA	CA	31	1	7	6	15	2	19.4	7.6
34	GREAT-WEST LIFECO INC	CA	16	1	5	2	8	0	12.5	0.3
35	FRIENDS PROVIDENT PLC	GB	54	10	12	1	12	19	1.9	0.3
36	MITSUI SUMITOMO INSURANCE	JP	42	3	23	2	13	1	4.8	0.4
37	LOEWS CORPORATION	US	50	3	15	4	26	2	8.0	1.3
38	CHINA LIFE INSURANCE	CN	61	6	23	6	22	4	9.8	1.6
39	RESOLUTION PLC	GB	41	8	7	1	9	16	2.4	4.0
40	ALLEANZA ASSICURAZIONI SPA	IT	26	8	11	0	7	0	0.0	
41	AMP LIMITED	AU	46	5	10	2	25	4	4.3	0.2
42	ACE LIMITED	BM	10	0	2	0	8	0	0.0	
43	CNA FINANCIAL CORPORATION	US	1	1	0	0	0	0	0.0	
44	SOMPO JAPAN INSURANCE INC	JP	24	0	14	0	10	0	0.0	
45	HENDERSON GROUP PLC	GB	38	4	7	1	24	2	2.6	1.9
46	AFLAC INCORPORATED	US	85	6	29	5	42	3	5.9	2.9
47	XL CAPITAL LIMITED	BM	1	0	0	1	0	0	100.0	6.3
48	UNUMPROVIDENT CORPORATION	US	24	1	6	4	13	0	16.7	9.7
49	WELLPOINT INC	US	17	0	5	2	10	0	11.8	3.9
50	AXA KONZERN	DE	6	1	2	3	0	0	50.0	65.4
51	COMPAGNIA ASSICURATRICE	IT	31	1	6	18	4	2	58.1	
52	CIGNA CORPORATION	US	19	0	6	2	11	0	10.5	2.7
53	AETNA INC	US	71	6	23	4	38	0	5.6	1.0
54	CHUBB CORPORATION	US	70	5	24	5	35	1	7.1	2.1
55	PREMAFIN FINANZIARIA SPA	IT	20	3	3	4	6	4	20.0	45.9
56	SANLAM LIMITED	ZA	6	1	0	1	1	3	16.7	6.5
57	UNITEDHEALTH GROUP INC	US	15	0	6	0	9	0	0.0	
58	HANNOVER	DE	46	4	20	6	15	1	13.0	50.0
59	PING AN INSURANCE	CN	22	2	11	3	6	0	13.6	19.9
60	ROYAL & SUN ALLIANCE	GB	78	8	30	2	18	20	2.6	3.2
61	MBIA INC	US	13	0	6	3	4	0	23.1	5.1
62	DBV WINTERTHUR HOLDING AG	DE	4	1	0	2	0	1	50.0	72.1
63	NIPPONKOA INSURANCE COMPANY	JP	19	0	5	1	13	0	5.3	0.5
64	CONSECO INC	US	2	0	0	1	1	0	50.0	4.5
65	CORPORACI¢N MAPFRE	ES	57	2	13	8	18	16	14.0	3.3
66	PROTECTIVE LIFE CORPORATION	US	12	0	4	2	6	0	16.7	3.6
67	AON CORPORATION	US	15	0	3	1	10	1	6.7	1.6
68	PHOENIX COMPANIES INC (THE)	US	63	9	15	7	32	0	11.1	10.3
69	FAIRFAX FINANCIAL HOLDINGS	CA	0	0	0	0	0	0	0.0	

70	CHINA INSURANCE INTERNATIONAL	HK	27	1	12	4	9	1	14.8	56.1
71	LIBERTY HOLDINGS LIMITED	ZA	13	2	4	0	7	0	0.0	
72	AXA LEBENSVERSICHERUNG	DE	2	2	0	0	0	0	0.0	
73	AIOI INSURANCE COMPANY LIMITED	JP	20	1	7	2	10	0	10.0	0.6
74	UNIQA VERSICHERUNGEN AG	AT	12	2	3	5	2	0	41.7	79.4
75	ASSURANT INC	US	16	1	5	1	9	0	6.3	2.1
76	AMERUS GROUP COMPANY	US	107	8	29	11	58	1	10.3	7.4
77	SOCIET?CATTOLICA	IT	5	1	3	0	1	0	0.0	
78	GREAT EASTERN HOLDINGS	SG	25	1	3	4	8	9	16.0	1.2
79	HELVETIA HOLDING	CH	19	3	9	2	5	0	10.5	0.7
80	FONDIARIA - SAI SPA	IT	37	5	16	4	11	1	10.8	0.9
81	AMERICAN FINANCIAL GROUP INC	US	75	5	19	9	38	4	12.0	5.1
82	N"RNBERGER	DE	12	3	4	1	4	0	8.3	42.5
83	AXA ASIA PACIFIC HOLDINGS	AU	30	3	3	4	18	2	13.3	5.6
84	MEDIOLANUM SPA	IT	16	0	5	1	7	3	6.3	0.0
85	WIENER STADTISCHE ALLGEMEINE	AT	2	0	1	1	0	0	50.0	71.3
86	LIBERTY GROUP LIMITED	ZA	15	1	1	2	6	5	13.3	2.6
87	AMBAC FINANCIAL GROUP INC	US	10	0	4	3	2	1	30.0	4.5
88	PROGRESSIVE CORPORATION (THE)	US	32	2	10	4	15	1	12.5	11.7
89	QBE INSURANCE GROUP LIMITED	AU	62	9	14	3	33	3	4.8	0.6
90	ST. JAMES'S PLACE CAPITAL PLC	GB	24	2	9	2	8	3	8.3	60.0
91	AMERICAN NATIONAL INSURANCE	US	29	3	8	4	13	1	13.8	2.7
92	SAMSUNG FIRE & MARINE	KR	36	2	16	6	12	0	16.7	2.2
93	INDUSTRIAL-ALLIANCE	CA	35	6	8	7	14	0	20.0	6.9
94	EVEREST RE GROUP LIMITED	BM	1	0	0	0	1	0	0.0	
95	W"RTTEMBERGISCHE	DE	5	0	3	1	0	1	20.0	1.3
96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US	64	6	16	7	35	0	10.9	3.9
97	CINCINNATI FINANCIAL	US	80	5	33	3	34	5	3.8	1.4
98	SCOR SA	FR	44	11	11	7	11	4	15.9	8.2
99	TORCHMARK CORPORATION	US	79	8	25	6	40	0	7.6	4.4
100	SAFECO CORPORATION	US	9	0	2	3	2	2	33.3	6.3

주 : 국가(Cty)는 ZA(South Africa), NL(the Netherlands), DE(Germany), US(U.S.A.), BM(Bermuda), CH(Switzerland), ES(Spain), SG(Singapore), GB(Great Britain), AT(Austria), IT(Italy), JP(Japan), CN(China), CA(Canada), FR(France), KR(Korea), AU(Australia), HK(Hongkong),

자료 : OSIRIS

<부표 4> 세계 100대 보험사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현황

(단위: 개, %)

순위	보험회사	국가	전체합	종속회사	보험	은행	산업	금융	기타	산업비율
1	ALLIANZ AKTIENGESELLSCHAFT	DE	2,143	133	67	11	31	24	0	23.3
2	AIG	US	803	63	33	3	20	7	0	31.8
3	AXA	FR	3,585	109	56	4	40	9	0	36.7
4	METLIFE INC	US	238	41	13	0	14	14	0	34.2
5	AVIVA PLC	GB	971	9	4	0	4	1	0	44.4
6	GENERALI ASSICURAZIONI SPA	IT	274	68	29	2	28	9	0	41.2
7	AEGON NV	NL	306	9	2	0	6	1	0	66.7
8	PRUDENTIAL PLC	GB	1,084	10	1	2	5	2	0	50.0
9	LEGAL & GENERAL GROUP PLC	GB	331	31	6	1	7	17	0	22.6
10	ZURICH FINANCIAL SERVICES	CH	105	58	33	0	14	11	0	24.1
11	HARTFORD FINANCIAL SERVICES	US	143	61	12	0	28	21	0	45.9
12	CNP ASSURANCES	FR	69	38	12	1	25	0	0	65.8
13	MANULIFE FINANCIAL CORP	CA	582	3	2	1	0	0	0	0.0
14	MUNICH RE GROUP	DE	120	78	46	0	26	6	0	33.3
15	STANDARD LIFE PLC	GB	46	12	4	1	3	4	0	25.0
16	BERKSHIRE HATHAWAY INC	US	175	122	35	0	73	14	0	59.8
17	SWISS REINSURANCE COMPANY	CH	123	102	37	0	33	32	0	32.4
18	ALLSTATE CORPORATION (THE)	US	97	69	39	1	17	12	0	24.6
19	SUN LIFE FINANCIAL INC	CA	671	1	0	0	0	1	0	0.0
20	ALLIANZ LEBENSVERSICHERUNGS	DE	26	20	2	0	8	10	0	40.0
21	OLD MUTUAL PLC	GB	1,017	70	19	4	19	27	1	27.1
22	ERGO VERSICHERUNGSGRUPPE	DE	113	74	53	0	15	6	0	20.3
23	AGF (GROUP)	FR	312	258	37	2	77	142	0	29.8
24	PRINCIPAL FINANCIAL GROUP INC	US	1,036	84	8	1	36	39	0	42.9
25	LINCOLN NATIONAL CORPORATION	US	18	11	4	0	5	2	0	45.5
26	MILLEA HOLDINGS INC	JP	0	0	0	0	0	0	0	0.0
27	T&D HOLDINGS INC	JP	39	2	2	0	0	0	0	0.0
28	NATIONWIDE FINANCIAL	US	17	2	1	0	1	0	0	50.0

29	GREAT-WEST LIFE ASSURANCE	CA	50	15	2	0	12	1	0	80.0
30	ST PAUL TRAVELERS	US	36	22	4	0	15	3	0	68.2
31	AMB GENERALI HOLDING AG	DE	96	32	19	1	11	1	0	34.4
32	GENWORTH FINANCIAL INC	US	95	93	29	0	34	29	1	36.6
33	POWER CORPORATION OF CANADA	CA	1,127	7	0	0	6	1	0	85.7
34	GREAT-WEST LIFECO INC	CA	9	6	1	0	4	1	0	66.7
35	FRIENDS PROVIDENT PLC	GB	48	37	6	0	14	17	0	37.8
36	MITSUI SUMITOMO INSURANCE	JP	88	2	0	0	2	0	0	100.0
37	LOEWS CORPORATION	US	50	5	1	0	3	1	0	60.0
38	CHINA LIFE INSURANCE	CN	3	1	0	0	0	1	0	0.0
39	RESOLUTION PLC	GB	31	20	7	0	6	7	0	30.0
40	ALLEANZA ASSICURAZIONI SPA	IT	15	5	1	0	3	1	0	60.0
41	AMP LIMITED	AU	374	290	4	1	103	182	0	35.5
42	ACE LIMITED	BM	11	9	2	0	4	3	0	44.4
43	CNA FINANCIAL CORPORATION	US	19	10	3	0	1	6	0	10.0
44	SOMPO JAPAN INSURANCE INC	JP	84	2	2	0	0	0	0	0.0
45	HENDERSON GROUP PLC	GB	800	36	1	0	12	23	0	33.3
46	AFLAC INCORPORATED	US	4	4	1	0	3	0	0	75.0
47	XL CAPITAL LIMITED	BM	12	8	2	0	5	1	0	62.5
48	UNUMPROVIDENT CORPORATION	US	16	12	4	0	6	2	0	50.0
49	WELLPOINT INC	US	135	128	10	0	105	13	0	82.0
50	AXA KONZERN	DE	29	14	7	1	6	0	0	42.9
51	COMPAGNIA ASSICURATRICE	IT	25	10	5	1	2	1	1	20.0
52	CIGNA CORPORATION	US	56	0	0	0	0	0	0	
53	AETNA INC	US	23	15	5	0	9	1	0	60.0
54	CHUBB CORPORATION	US	17	6	2	0	1	3	0	16.7
55	PREMAFIN FINANZIARIA SPA	IT	17	2	1	0	1	0	0	50.0
56	SANLAM LIMITED	ZA	20	14	1	2	5	6	0	35.7
57	UNITEDHEALTH GROUP INC	US	37	17	1	0	14	2	0	82.4
58	HANNOVER	DE	48	32	11	0	12	9	0	37.5
59	PING AN INSURANCE	CN	19	15	5	1	5	4	0	33.3
60	ROYAL & SUN ALLIANCE	GB	39	21	17	0	3	1	0	14.3
61	MBIA INC	US	43	40	6	0	18	16	0	45.0
62	DBV WINTERTHUR HOLDING AG	DE	46	40	13	0	25	2	0	62.5
63	NIPPONKOA INSURANCE	JP	33	1	1	0	0	0	0	0.0

	COMPANY									
64	CONSECO INC	US	21	3	0	0	1	2	0	33.3
65	CORPORACI¢N MAPFRE	ES	52	13	2	0	6	5	0	46.2
66	PROTECTIVE LIFE CORPORATION	US	29	22	3	0	10	9	0	45.5
67	AON CORPORATION	US	1,430	1400	80	2	997	319	2	71.2
68	PHOENIX COMPANIES INC (THE)	US	5	0	0	0	0	0	0	
69	FAIRFAX FINANCIAL HOLDINGS	CA	28	14	3	0	9	2	0	64.3
70	CHINA INSURANCE INTERNATIONAL	HK	8	3	1	0	1	1	0	33.3
71	LIBERTY HOLDINGS LIMITED	ZA	3	1	1	0	0	0	0	0.0
72	AXA LEBENSVERSICHERUNG	DE	19	5	0	0	5	0	0	100.0
73	AIOI INSURANCE COMPANY LIMITED	JP	34	15	5	0	8	2	0	53.3
74	UNIQA VERSICHERUNGEN AG	AT	144	111	29	0	71	11	0	64.0
75	ASSURANT INC	US	20	11	2	0	8	1	0	72.7
76	AMERUS GROUP COMPANY	US	7	5	1	0	1	3	0	20.0
77	SOCIET?CATTOLICA	IT	39	18	11	0	5	2	0	27.8
78	GREAT EASTERN HOLDINGS	SG	23	7	2	0	1	4	0	14.3
79	HELVETIA HOLDING	CH	42	34	9	0	12	13	0	35.3
80	FONDIARIA - SAI SPA	IT	67	39	8	1	22	8	0	56.4
81	AMERICAN FINANCIAL GROUP INC	US	11	5	2	0	3	0	0	60.0
82	N"RNBERGER	DE	81	62	13	1	40	8	0	64.5
83	AXA ASIA PACIFIC HOLDINGS	AU	91	66	4	0	8	54	0	12.1
84	MEDIOLANUM SPA	IT	41	34	1	4	17	12	0	50.0
85	WIENER STADTISCHE ALLGEMEINE	AT	126	95	26	0	59	10	0	62.1
86	LIBERTY GROUP LIMITED	ZA	27	21	0	1	6	13	1	28.6
87	AMBAC FINANCIAL GROUP INC	US	8	8	2	0	1	5	0	12.5
88	PROGRESSIVE CORPORATION (THE)	US	40	0	0	0	0	0	0	
89	QBE INSURANCE GROUP LIMITED	AU	136	126	37	0	61	28	0	48.4
90	ST. JAMES'S PLACE CAPITAL PLC	GB	9	7	1	0	5	1	0	71.4
91	AMERICAN NATIONAL INSURANCE	US	34	10	1	0	8	1	0	80.0
92	SAMSUNG FIRE & MARINE	KR	3	0	0	0	0	0	0	

93	INDUSTRIAL-ALLIANCE	CA	55	2	2	0	0	0	0	0.0
94	EVEREST RE GROUP LIMITED	BM	8	7	3	0	1	3	0	14.3
95	W"RTTEMBERGISCHE	DE	21	6	2	0	4	0	0	66.7
96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US	15	14	7	0	6	1	0	42.9
97	CINCINNATI FINANCIAL	US	25	3	1	0	0	2	0	0.0
98	SCOR SA	FR	53	44	9	1	28	6	0	63.6
99	TORCHMARK CORPORATION	US	8	4	4	0	0	0	0	0.0
100	SAFECO CORPORATION	US	57	1	0	0	1	0	0	100.0

주 : 국가(Cty)는 ZA(South Africa), NL(the Netherlands), DE(Germany), US(U.S.A.), BM(Bermuda), CH(Switzerland), ES(Spain), SG(Singapore), GB(Great Britain), AT(Austria), IT(Italy), JP(Japan), CN(China), CA(Canada), FR(France), KR(Korea), AU(Australia), HK(Hongkong),

자료 : OSIRIS